

발 간 등 룩 번 호
11-1352000-000962-12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조사 보고 -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혜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김영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보 건 복 지 부
육아정책연구소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차 례

요약	1
I. 서론	25
1. 조사 배경 및 목적	25
2. 조사방법	27
II. 어린이집의 설치	45
1. 어린이집 유형 및 설치 특성	45
2. 어린이집 건물 및 설비	65
3. 시사점	89
III. 어린이집 운영 일반	91
1. 어린이집 반 운영	91
2.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현황	97
3. 운영시간 및 운영일수	111
4. 보험 및 안전 관리	118
5. 어린이집 차량운행	131
6. 영유아 건강관리	141
7.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실내공기 질, 석면	150
8. 애로사항 및 요구	162
9. 시사점	171
IV. 보육 교직원 운영실태 및 요구	174
1. 보육 교직원 특성 전반	174
2. 보육 교직원 근로시간 및 급여	185
3. 보육 교직원 신규채용 및 이직률	197
4. 보수교육	201
5. 보육교사 조사 결과	205
6. 보육교사 의견 및 만족도	235
7. 시사점	243

V. 보육 영유아 특성과 다양한 보육	246
1. 보육 영유아 일반현황	246
2. 시간연장형 보육	258
3. 장애 영유아 보육	271
4. 다문화 영유아 보육	285
5. 시사점	299
VII. 보육 프로그램 운영	302
1. 보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구성	302
2. 3-5세 누리과정	316
3. 특별활동	327
4. 시사점	336
VIII. 운영평가·관리 및 정책 관련 의견	338
1. 어린이집 평가	338
2. 어린이집 행·재정	351
3. 어린이집과 가정 연계	367
4. 보육 정책	378
5. 시사점	397
VIII. 정책 제언 및 개선 과제	399
1. 어린이집의 설치	399
2. 어린이집 운영 일반	400
3. 보육교직원 운영 실태 및 요구	403
4. 보육 영유아 특성과 다양한 보육	405
5. 보육 프로그램	407
6. 운영평가·관리 및 정책 관련 의견	409
7. 향후 조사를 위한 개선 과제	412
참고문헌	413
부 록	415
부록 1. 부록 표	417
부록 2. 어린이집 조사표(전체)	449
부록 3. 보육교사 조사표(전체)	479

표 차례

〈표 I-2- 1〉 모집단 현황	30
〈표 I-2- 2〉 시설유형별 제곱근 비례 배분 결과	31
〈표 I-2- 3〉 시설유형별 지역 및 정원 규모에 따른 층별 표본	32
〈표 I-2- 4〉 가정 어린이집 20인 이하 표본배분	33
〈표 I-2- 5〉 최종 표본할당 결과 및 조사완료 현황(어린이집)	33
〈표 I-2- 6〉 최종 표본할당 결과 및 조사완료 현황(보육교사)	34
〈표 I-2- 7〉 어린이집 조사항목	40
〈표 I-2- 8〉 보육교사 조사 항목	41
〈표 I-2- 9〉 지역별 조사기관 및 투입 조사원수	42
〈표 II-1- 1〉 어린이집 인가년도	45
〈표 II-1- 2〉 어린이집 소재 지역	46
〈표 II-1- 3〉 어린이집 설립유형	47
〈표 II-1-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유형	48
〈표 II-1- 5〉 법인·단체어린이집 법인체 유형	49
〈표 II-1- 6〉 직장어린이집의 운영형태	49
〈표 II-1- 7〉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정 여부	50
〈표 II-1- 8〉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여부	51
〈표 II-1- 9〉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여부	53
〈표 II-1-10〉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선정 후 달라진 점	54
〈표 II-1-11〉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인지 여부	55
〈표 II-1-12〉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의사	56
〈표 II-1-13〉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의사 있는 이유	56
〈표 II-1-14〉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의사 없는 이유	57
〈표 II-1-15〉 어린이집 대표자 단독 대표 여부	58
〈표 II-1-16〉 (공동대표일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들 간 관계	59
〈표 II-1-17〉 원장과 대표자 동일 여부(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제외)	60
〈표 II-1-18〉 대표자의 동시 운영 어린이집 수	61
〈표 II-1-19〉 대표자가 동시 운영 어린이집 수(급간)	62

<표 II-1-20> 대표자의 동시 운영 유치원 수	62
<표 II-1-21> 대표자의 동시 운영 유치원 수(급간)	63
<표 II-1-22> 어린이집 운영에 가족 및 친인척 참여 여부 및 인원 수	64
<표 II-1-23> 가족 및 친인척 참여 시 참여업무와 참여 인원	65
<표 II-2- 1> 어린이집 건물 형태	66
<표 II-2- 2> 어린이집 사용 층	67
<표 II-2- 3>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면적	68
<표 II-2- 4> 어린이집 구비 설비	69
<표 II-2- 5>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놀이터	70
<표 II-2- 6> 놀이터 놀이기구의 설치 검사 여부 및 교체, 추가설치 여부	71
<표 II-2- 7>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및 확보 여부	73
<표 II-2- 8> 가장 필요한 장애아동을 위한 설비	74
<표 II-2- 9> 어린이집의 소유 임대 형태	75
<표 II-2-10> 어린이집 전세 보증금 및 계약기간	76
<표 II-2-11> 어린이집 월세 보증금	77
<표 II-2-12> 어린이집 융자금	78
<표 II-2-13> 어린이집 설치 시 권리금 지불 금액 (국공립, 법인, 직장 어린이집 제외)	79
<표 II-2-14> 지난 3년간 개보수·증개축 공사 여부 및 횟수	80
<표 II-2-15> 개보수 공사 이유	81
<표 II-2-16> 증개축 공사 이유	82
<표 II-2-17> 개보수·증개축 정부지원 여부	84
<표 II-2-18> 개보수시 정부지원금 및 정부 보증용자 비용	85
<표 II-2-19> 개보수시 자부담금액 및 총비용	86
<표 II-2-20> 증개축시 정부지원금 및 정부 보증용자 비용	86
<표 II-2-21> 증개축시 자부담금액 및 총비용	88
<표 II-2-22> 시급한 개보수 공사	89
<표 III-1- 1> 어린이집 반 운영 개수	91
<표 III-1- 2> 운영하는 반당 평균 영유아 수	92
<표 III-1- 3> 혼합연령반 운영 여부 및 운영 개수	92
<표 III-1- 4> 상위반 또는 하위반 편성 어린이집 비율	94

<표 III-1- 5> 상위반 또는 하위반 편성 해당 영유아 평균 수	94
<표 III-1- 6> 반별 정원 초과반 운영 어린이집 비율 및 영유아 수	96
<표 III-2- 1> 신규 입소 시 제출서류	98
<표 III-2- 2> 우선 입소순위 자격 부여 시 기준 관련 의견	100
<표 III-2- 3> 입소대기 영유아 유무 및 입소대기 영유아 수	102
<표 III-2- 4> 입소대기 있는 경우 최대 대기자 수	103
<표 III-2- 5> 입소대기 영유아가 발생하는 이유	104
<표 III-2- 6> 입소대기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106
<표 III-2- 7> 새로운 입소대기 시스템에서 만족스러운 부분	107
<표 III-2- 8> 새로운 입소대기 시스템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	108
<표 III-2- 9> 입소대기 어린이집 수 제한으로 인한 충원 용이성 인지	110
<표 III-2-10> (입소대기 제한 없는 경우) 입소대기 어린이집 수 제한으로 인한 충원 용이성 예측	110
<표 III-3- 1> 평일 운영시간	112
<표 III-3- 2> 토요일 운영 여부 및 횟수	113
<표 III-3- 3> 토요일 근무 보육교직원	114
<표 III-3- 4> 연간 휴원 일수: 2014년	115
<표 III-3- 5> 자율 보육기간 운영 횟수: 2014년	116
<표 III-3- 6> 자율 보육 일수: 2014년	117
<표 III-4- 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원 가입 비율	118
<표 III-4- 2> 안전공제회 공제 종류별 가입여부: 종류1	119
<표 III-4- 3> 안전공제회 공제 종류별 가입여부: 종류2	119
<표 III-4- 4> 민간보험 가입 여부	120
<표 III-4- 5>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 비율 및 횟수	121
<표 III-4- 6>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비율 및 횟수	122
<표 III-4- 7> 2014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1 발생비율 및 건수	124
<표 III-4- 8> 2014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2 발생비율 및 건수	124
<표 III-4- 9> 안전사고 발생원인별 건수	125
<표 III-4-10> 안전사고 발생장소	126
<표 III-4-11> 안전 관련 마련 또는 실행하고 있는 사항	127
<표 III-4-12>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상 기관	128

〈표 III-4-13〉 등·퇴원 일지 비치 및 작성 여부	129
〈표 III-4-14〉 CCTV 설치 현황: 2016년 1월 기준	130
〈표 III-4-15〉 실내 CCTV 설치 현황: 2015년 7월 기준	130
〈표 III-4-16〉 아동학대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인지 여부	131
〈표 III-5- 1〉 등·하원 차량 운행 여부 및 소유형태	132
〈표 III-5- 2〉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133
〈표 III-5- 3〉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	134
〈표 III-5- 4〉 어린이집 주 차량 월 평균 운행거리	135
〈표 III-5- 5〉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수와 탑승 시간	137
〈표 III-5- 6〉 통학차량비 수납 여부 및 금액	138
〈표 III-5- 7〉 차량 운행 시 준수하는 내용	139
〈표 III-5- 8〉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확인 내용	139
〈표 III-5- 9〉 차량운영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140
〈표 III-6- 1〉 영유아 간호 장소	142
〈표 III-6- 2〉 영유아 간호 담당자	143
〈표 III-6- 3〉 영유아 건강 검진 사전 안내 여부 및 점검 여부	144
〈표 III-6- 4〉 예방접종 유무 확인 여부: 2014년	145
〈표 III-6- 5〉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에 대한 조치	146
〈표 III-6- 6〉 계절별 예방접종 확인 및 관리 여부	146
〈표 III-6- 7〉 전염성 질환에 대한 준비	147
〈표 III-6- 8〉 전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 조치사항	148
〈표 III-6- 9〉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여부	149
〈표 III-7- 1〉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 여부	151
〈표 III-7- 2〉 식재료 공동구매의 장점	151
〈표 III-7- 3〉 식재료 공동구매의 단점	152
〈표 III-7- 4〉 어린이집 식단 작성	153
〈표 III-7- 5〉 급식 조리 담당자	155
〈표 III-7- 6〉 보육교사 식사 장소 및 식단	156
〈표 III-7- 7〉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대상 인지 여부	157
〈표 III-7- 8〉 실내공기질 측정 검사 횟수	158
〈표 III-7- 9〉 석면안전관리법 인지 여부	159

〈표 III-7-10〉 석면 안전검사 실시 계획(2015년)	160
〈표 III-7-11〉 보건복지부 개발 매뉴얼 보유 비율 및 인지·활용 정도	161
〈표 III-8- 1〉 어린이집의 운영 어려움 정도 개요	162
〈표 III-8- 2〉 어린이집 운영 시 재정적 어려움 요인	163
〈표 III-8- 3〉 보육교직원 채용 어려움 정도	165
〈표 III-8- 4〉 보육교직원 채용이 어려운 이유	165
〈표 III-8- 5〉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	166
〈표 III-8- 6〉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167
〈표 III-8- 7〉 어린이집 지원체계로부터 받는 지원내용	168
〈표 III-8- 8〉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지원	169
〈표 III-8- 9〉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받는 지원	170
〈표 III-8-10〉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는 지원	170
〈표 IV-1- 1〉 어린이집 근무 전체 보육교사 최종 학력	174
〈표 IV-1- 2〉 어린이집 근무 전체 보육교사 학교 전공	175
〈표 IV-1- 3〉 어린이집 근무 전체 보육교사 자격증	176
〈표 IV-1- 4〉 어린이집 근무 전체 보육교사 최초 자격취득 기관	177
〈표 IV-1- 5〉 원장의 성별 및 연령	178
〈표 IV-1- 6〉 원장 최종 학력	179
〈표 IV-1- 7〉 원장 최종 학교 전공	180
〈표 IV-1- 8〉 원장 소유 자격증	180
〈표 IV-1- 9〉 원장이 최초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관	181
〈표 IV-1-10〉 원장의 어린이집 경력	182
〈표 IV-1-11〉 원장의 호봉	183
〈표 IV-1-12〉 원장의 월 급여	184
〈표 IV-2- 1〉 어린이집 근무 전체 보육교사 근무경력 및 근무시간	185
〈표 IV-2- 2〉 어린이집 근무 전체 보육교사 근무시간(보조교사 포함)	186
〈표 IV-2- 3〉 어린이집 근무 전체 보육교사의 급여	187
〈표 IV-2- 4〉 2015년 초임교사 기본급, 제수당, 총액	188
〈표 IV-2- 5〉 (정부/지자체 급여성 수당을 제외한) 기타 수당	189
〈표 IV-2- 6〉 보조교사(비담임교사) 유무 및 근무시간	189
〈표 IV-2- 7〉 보조교사(비담임교사) 월 급여 및 담당업무	190

〈표 IV-2- 8〉 기타 보육교직원 보유 어린이집 비율	191
〈표 IV-2- 9〉 기타 보육교직원 평균 직원수	192
〈표 IV-2-10〉 기타 보육교직원 월 평균 급여	193
〈표 IV-2-11〉 대체교사 평균 수 및 평균 채용기간	193
〈표 IV-2-12〉 보육교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194
〈표 IV-2-13〉 보육교직원 초과근무 여부 및 지급 비율 관련 실태	195
〈표 IV-2-14〉 보육교직원 시간외 수당 지급률 및 지급방식	196
〈표 IV-2-15〉 운영 중인 퇴직급여제도	197
〈표 IV-3- 1〉 2015년 신규 채용 보육교사 여부	198
〈표 IV-3- 2〉 사직한 보육교사가 있는 기관 및 교사 수(2014년)	198
〈표 IV-3- 3〉 어린이집 사직 이유	199
〈표 IV-3- 4〉 어린이집을 그만 둔 이후 직업경로	200
〈표 IV-4- 1〉 일반직무 보수교육 현황(2014년): 전체 교사	201
〈표 IV-4- 2〉 보육교사 1·2급 승급 및 보수교육 현황(2014년)	202
〈표 IV-4- 3〉 특별직무 보수교육 실시 비율(2014년)	203
〈표 IV-4- 4〉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	204
〈표 IV-4- 5〉 기관 자체 재교육 유무 및 내용	204
〈표 IV-4- 6〉 기관 자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내용	205
〈표 IV-5- 1〉 보육교사의 하루 총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	206
〈표 IV-5- 2〉 보육교사 월간 주말근무 횟수	207
〈표 IV-5- 3〉 급여 책정 시 기존 어린이집 경력 반영 및 경력에 따른 급여 상승 여부	208
〈표 IV-5- 4〉 어린이집 지급 수당	208
〈표 IV-5- 5〉 정부 지급 수당	209
〈표 IV-5- 6〉 자자체 지급 수당	210
〈표 IV-5- 7〉 보육교사 월 급여 내역 수령 여부	210
〈표 IV-5- 8〉 보육교사의 월 희망 급여	211
〈표 IV-5- 9〉 초과근무시 시간외 수당 지불 여부 및 방식	212
〈표 IV-5-10〉 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편의 공간 및 시설 확보 여부	214
〈표 IV-5-11〉 휴가 사용 가능 비율 및 실제 사용 휴가 일수(2014년 기준)	214
〈표 IV-5-12〉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이용 가능 여부	215

〈표 IV-5-13〉 어린이집 이용시 복무규정 내용 안내 여부	217
〈표 IV-5-14〉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217
〈표 IV-5-15〉 최저임금법 규정 적용 여부	218
〈표 IV-5-16〉 보육교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	219
〈표 IV-5-17〉 사직 및 이직 계획	220
〈표 IV-5-18〉 사직 및 이직을 고려하거나 계획하는 시기	221
〈표 IV-5-19〉 사직 또는 이직 이유	221
〈표 IV-5-20〉 이직하고 싶은 어린이집 유형	223
〈표 IV-5-21〉 일반직무 보수교육 현황(2014년)	223
〈표 IV-5-22〉 보육교사 1·2급 승급 및 보수교육 현황(2014년)	224
〈표 IV-5-23〉 보수교육 형태	225
〈표 IV-5-24〉 보수교육 시 대체인력 지원 여부	225
〈표 IV-5-25〉 보수교육 만족도	226
〈표 IV-5-26〉 보수교육 만족/불만족 요인	227
〈표 IV-5-27〉 보육교사 응답자 특성	227
〈표 IV-5-28〉 보육교사의 성별 및 연령	228
〈표 IV-5-29〉 보육교사 최종학력	229
〈표 IV-5-30〉 보육교사 최종학력 전공	229
〈표 IV-5-31〉 보육교사 자격증	230
〈표 IV-5-32〉 보육교사 최초 자격 취득 기관	231
〈표 IV-5-33〉 보육교사 최초 자격 취득시 전공	232
〈표 IV-5-34〉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 취득시 수강 방법	233
〈표 IV-5-35〉 교사의 어린이집 경력	233
〈표 IV-5-36〉 (교사가 바로 직전에 다른 시설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 시설 유형	234
〈표 IV-5-37〉 조사대상 교사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반 분포	235
〈표 IV-6- 1〉 교사의 근로만족도	236
〈표 IV-6- 2〉 교사의 어려움	236
〈표 IV-6- 3〉 교사의 직무효능감	237
〈표 IV-6- 4〉 교사의 심리적 건강	237
〈표 IV-6- 5〉 교사의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238
〈표 IV-6- 6〉 교사의 보육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	238

〈표 IV-6- 7〉 교사의 보육정책 만족도	238
〈표 IV-6- 8〉 교사 지원에 대한 의견	239
〈표 IV-6- 9〉 누리과정 연수 여부 및 형태	240
〈표 IV-6-10〉 누리과정 연수 시 대체인력 지원 여부	241
〈표 IV-6-11〉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 및 보육교사의 업무량 변화 ·	242
〈표 IV-6-12〉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변화 여부	242
〈표 V-1- 1〉 연령별 반 운영 비율 및 연령반별 아동 수	247
〈표 V-1- 2〉 모 취업별 보육 영유아 비율	248
〈표 V-1- 3〉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비율	249
〈표 V-1- 4〉 장애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및 장애 영유아 비율	250
〈표 V-1- 5〉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취약계층 영유아 비율	252
〈표 V-1- 6〉 시간연장보육 이용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영유아 비율	253
〈표 V-1- 7〉 야간·24시간보육 이용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영유아 비율	255
〈표 V-1- 8〉 휴일보육 이용 영유아 재원 시설 및 영유아 비율	256
〈표 V-1- 9〉 토요보육 이용 영유아 재원 시설 및 영유아 비율	258
〈표 V-2- 1〉 영유아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	259
〈표 V-2- 2〉 시간연장보육 시 저녁급식비 별도 수납 여부 및 금액	261
〈표 V-2- 3〉 시간연장 보육료 시간당 비용 적정 금액 및 상향시 적정 금액	262
〈표 V-2- 4〉 60시간의 시간연장보육 지원에 대한 의견	264
〈표 V-2- 5〉 시간연장보육 이용 확인서명 여부	265
〈표 V-2- 6〉 시간연장보육 제도의 최우선적인 개선 요구사항	266
〈표 V-2- 7〉 24시간 보육 영유아의 부모인계 빈도	267
〈표 V-2- 8〉 가정유형별 24시간 보육 아동 수	268
〈표 V-2- 9〉 24시간 보육 이용 이유	268
〈표 V-2-10〉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어려움	269
〈표 V-2-11〉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269
〈표 V-2-12〉 시간연장형 보육 참여 의향	270
〈표 V-2-13〉 운영 가능 취약 보육	271
〈표 V-3- 1〉 장애 영유아 자격기준별 분류	272
〈표 V-3- 2〉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진단서 소지 시 장애 영유아 장애유형별 분류 (전체 장애 영유아 대비)	273

〈표 V-3- 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시 장애 영유아 장애유형별 분류 (전체 장애 영유아 대비)	274
〈표 V-3- 4〉 장애인등록증 소지 시 장애 영유아 장애등급별 분류 (전체 장애 영유아 대비)	275
〈표 V-3- 5〉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분류	276
〈표 V-3- 6〉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이유	277
〈표 V-3- 7〉 장애영유아 연령별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배치 법령 인지 여부	279
〈표 V-3- 8〉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중 자격요건 충족 교사 수(평균)	280
〈표 V-3- 9〉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인지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전환 의향	281
〈표 V-3-10〉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전환 의향이 없는 이유	283
〈표 V-3-11〉 장애아 보육에 필요한 지원	284
〈표 V-4 1〉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어려움	285
〈표 V-4 2〉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종합	287
〈표 V-4 3〉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	287
〈표 V-4 4〉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이중언어 프로그램	289
〈표 V-4 5〉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인지발달 프로그램	290
〈표 V-4 6〉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한글지도 프로그램	291
〈표 V-4 7〉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 알림장 등 외국어로 작성	293
〈표 V-4 8〉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부모교육 프로그램	294
〈표 V-4 9〉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부모상담	295
〈표 V-4-10〉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기회 제공 비율 및 방법	296
〈표 V-4-11〉 일반아동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여부	298
〈표 V-4-12〉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추가 부모면담 실시 여부	299
〈표 VI-1- 1〉 보육과정 운영 수준	303
〈표 VI-1- 2〉 영아반 영역별 보육활동 실시정도: 4점 평균	304
〈표 VI-1- 3〉 유아반 영역별 보육활동 실시정도: 4점 평균	305
〈표 VI-1- 4〉 영아반 영역별 교재교구 비치정도: 4점 평균	306
〈표 VI-1- 5〉 유아반 영역별 교재교구 비치정도: 4점 평균	307
〈표 VI-1- 6〉 영아반 영역별 교재교구 활용정도: 4점 평균	308

〈표 VI-1- 7〉 유아반 영역별 교재교구 활용정도: 4점 평균	309
〈표 VI-1- 8〉 보육프로그램 작성을 위하여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	310
〈표 VI-1- 9〉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보유 여부	311
〈표 VI-1-10〉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활용 정도	312
〈표 VI-1-11〉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만족도	313
〈표 VI-1-12〉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미활용 이유	314
〈표 VI-1-13〉 보육 또는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강조점	315
〈표 VI-2- 1〉 3-5세 누리과정 반 편성	317
〈표 VI-2- 2〉 3-5세 누리과정 운영 시 활용 자료	318
〈표 VI-2- 3〉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세, 4세, 5세)」 활용 정도	319
〈표 VI-2- 4〉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세, 4세, 5세)」 만족도	320
〈표 VI-2- 5〉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세, 4세, 5세)」 미활용 이유	321
〈표 VI-2- 6〉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처	322
〈표 VI-2- 7〉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좋아진 점	323
〈표 VI-2- 8〉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어려워진 점	324
〈표 VI-2- 9〉 3-5세 누리과정 개선 요구사항	326
〈표 VI-2-10〉 누리과정 보조교사 업무 수행빈도: 4점 평균	327
〈표 VI-3- 1〉 특별활동 실시비율 및 영유아별 프로그램 수	328
〈표 VI-3- 2〉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실시 비율	329
〈표 VI-3- 3〉 특별활동 프로그램 장소	330
〈표 VI-3- 4〉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영유아 1인당 최대 비용	330
〈표 VI-3- 5〉 지자체가 정한 특별활동 상한액과 비교하여 받는 정도	331
〈표 VI-3- 6〉 특별활동 프로그램 참여 영유아 1인당 최대 비용	332
〈표 VI-3- 7〉 특별활동 운영 업체 수 및 외부 강사 수	333
〈표 VI-3- 8〉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	334
〈표 VI-3- 9〉 특별활동 전원 참여 비율 및 미참여 영유아의 활동	335

〈표 VII-1- 1〉 어린이집 자체 운영평가 주기 및 내용	339
〈표 VII-1-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태	342
〈표 VII-1- 3〉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343
〈표 VII-1- 4〉 평가인증 컨설팅 유무	344
〈표 VII-1- 5〉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지 않은 이유	345
〈표 VII-1- 6〉 평가인증 참여 시 어려움	346
〈표 VII-1- 7〉 현재의 평가지표 적절성 여부 및 부적절 이유	347
〈표 VII-1- 8〉 평가인증 적용 사항에 대한 의견	349
〈표 VII-2- 1〉 재무회계규칙 세부내용별 준수 여부	352
〈표 VII-2- 2〉 재무관리 담당자의 재무교육 횟수	354
〈표 VII-2- 3〉 클린카드 사용 여부	355
〈표 VII-2- 4〉 재정적인 여유 발생 시 사용처	356
〈표 VII-2- 5〉 추가 보육료 수납액	357
〈표 VII-2- 6〉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수납액 정도	358
〈표 VII-2- 7〉 비용 상한액 준수 여부	359
〈표 VII-2- 8〉 특별활동 운영비 관리 방법	361
〈표 VII-2- 9〉 보육 담당 공무원 지도점검 여부 및 방문 횟수(2014년)	362
〈표 VII-2-10〉 기타 관계공무원 지도점검 여부 및 방문 횟수(2014년)	363
〈표 VII-2-11〉 부모모니터링단 방문 여부와 횟수(2014년)	364
〈표 VII-2-12〉 어린이집 질 개선 도움 여부 및 이유	365
〈표 VII-2-13〉 어린이집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366
〈표 VII-3- 1〉 운영위원회 구성원 인원수 및 상반기 운영 횟수	367
〈표 VII-3- 2〉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와 방법	369
〈표 VII-3- 3〉 운영위원회 활성화 정도	370
〈표 VII-3- 4〉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운 점	371
〈표 VII-3- 5〉 어린이집과 부모의 의사소통 방법	372
〈표 VII-3- 6〉 2015년 상반기 부모교육: 교육설명회와 강연회	373
〈표 VII-3- 7〉 2015년 상반기 부모교육: 프로그램화된 교육과 자료 배부	374
〈표 VII-3- 8〉 2015년 상반기 부모참여: 아동행사와 지원봉사	376
〈표 VII-3- 9〉 2015년 상반기 부모참여: 의사결정과 수업 참여	377
〈표 VII-3-10〉 2015년 상반기 부모참여와 상담: 가정 연계 및 상담	378

〈표 VII-4-1〉 ‘보육은 공공서비스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	379
〈표 VII-4-2〉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대해 책무성을 지닌 기관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	380
〈표 VII-4-3〉 ‘어린이집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	381
〈표 VII-4-4〉 ‘관할청의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	382
〈표 VII-4-5〉 보육사업의 공공성 향상 여부	383
〈표 VII-4-6〉 보육내용의 충실성 향상 여부	384
〈표 VII-4-7〉 어린이집 재정운영 안정화 향상 여부	385
〈표 VII-4-8〉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여부	386
〈표 VII-4-9〉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만족도	387
〈표 VII-4-10〉 보육 전자행정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388
〈표 VII-4-11〉 아이행복 카드제에 대한 만족도	389
〈표 VII-4-12〉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390
〈표 VII-4-13〉 0-5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에 대한 만족도	391
〈표 VII-4-14〉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만족도	392
〈표 VII-4-15〉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만족도	393
〈표 VII-4-16〉 시간제 보육 사업에 대한 만족도	394
〈표 VII-4-17〉 정보공시제에 대한 만족도	395
〈표 VII-4-18〉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396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교사 지급 수당: 명절수당	417
〈부록 표 2〉 교사 지급 수당: 휴가수당	417
〈부록 표 3〉 교사 지급 수당: 직책수당	418
〈부록 표 4〉 교사 지급 수당: 시간외수당	419

〈부록 표 5〉 보육교사 급여: 시간외수당 지급 주기-중간경력교사	419
〈부록 표 6〉 보육교사 급여: 근속수당 지급 주기-중간경력교사	420
〈부록 표 7〉 보육교사 급여: 직책수당 지급 주기-중간경력교사	420
〈부록 표 8〉 보육교사 급여: 초과수당 지급 주기-중간경력교사	421
〈부록 표 9〉 보육교사 급여: 연구수당 지급 주기-중간경력교사	422
〈부록 표 10〉 보육교사 급여: 누리과정 담임수당-중간경력교사	422
〈부록 표 11〉 보육교사 급여: 0-2세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중간경력교사	423
〈부록 표 12〉 보육교사 급여: 농어촌특별수당-중간경력교사	423
〈부록 표 13〉 보육교사 급여: 시도 처우개선비-중간경력교사	424
〈부록 표 14〉 보육교사 급여: 시군구 처우개선비-중간경력교사	424
〈부록 표 15〉 보육교사 급여: 영아전담수당-중간경력교사	425
〈부록 표 16〉 보육교사 급여: (장기)근속수당-중간경력교사	426
〈부록 표 17〉 보육교사 급여: 어린이집 비정기적 수당 2 지급 횟수 및 평균 금액 -중간경력교사	426
〈부록 표 18〉 보육교사 급여: 비정기적 수당 지자체 지급액-중간경력교사	427
〈부록 표 19〉 보육교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재소득	427
〈부록 표 20〉 보육교사의 근무 만족도: 일에 대한 보람과 급여 수준	428
〈부록 표 21〉 보육교사의 근무 만족도: 근무 환경	429
〈부록 표 22〉 보육교사의 근무 만족도: 근로시간 및 사회적 인식	429
〈부록 표 23〉 보육교사의 근무 어려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과 부모와의 관계	430
〈부록 표 24〉 보육교사의 근무 어려움: 보육 프로그램 운영과 업무 처리	431
〈부록 표 25〉 보육교사의 근무 어려움: 보육교직원과의 관계와 개인적 문제	431
〈부록 표 26〉 보육교사 심리적 건강: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피로도	432
〈부록 표 27〉 보육교사 심리적 건강: 신체적 피로와 우울감	432
〈부록 표 28〉 보육교사 근무 관련 의견: 프로그램 변화 대응과 다양한 연령 보육	433
〈부록 표 29〉 보육교사 근무 관련 의견: 보호자 신뢰	434
〈부록 표 30〉 보육교사 근무 관련 의견: 적절한 놀이지도·도움 제공과 보육환경 준비	435
〈부록 표 31〉 보육교사 지원 관련 의견	435
〈부록 표 32〉 보육 정책 의견: 보육은 공공서비스이다	436
〈부록 표 33〉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대해 책무성을 지닌 기관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	437

〈부록 표 34〉 ‘어린이집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	437
〈부록 표 35〉 ‘관할청의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	438
〈부록 표 36〉 보육사업의 공공성 향상 여부	439
〈부록 표 37〉 보육내용의 충실성 향상 여부	439
〈부록 표 38〉 어린이집 재정운영 안정화 향상 여부	440
〈부록 표 39〉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여부	440
〈부록 표 40〉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만족도	441
〈부록 표 41〉 보육 전자행정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442
〈부록 표 42〉 아이행복 카드제에 대한 만족도	442
〈부록 표 43〉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443
〈부록 표 44〉 0-5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에 대한 만족도	443
〈부록 표 45〉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만족도	444
〈부록 표 46〉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만족도	445
〈부록 표 47〉 시간제 보육 사업에 대한 만족도	445
〈부록 표 48〉 정보공시제에 대한 만족도	446
〈부록 표 49〉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446

그림 차례

[그림 I-2-1] 어린이집 조사 추진 일정	27
[그림 I-2-1] 가중치 작성 단계	36
[그림 III-3-1] 조사 연도별 토요일 운영 비교	113
[그림 III-7-1] 보건복지부 개발 매뉴얼 인지 및 활용 정도	161
[그림 III-8-1]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정도 연도별 비교	163
[그림 III-8-2] 어린이집 지원체계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	169

요약

I.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매 3년마다 추진되는 조사로, 보육정책의 변화를 점검하고, 다변하는 보육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보육정책 수립에 준거를 제공하고자 함.
 -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요구 파악 등 보육 공급과 이용, 운영 전반에 걸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다변하는 국내 보육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보육 정책 수립에 준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방법

- 조사내용은 어린이집 조사와 보육교사 조사로 나누어짐.
 - 어린이집 조사는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현황, 보육 영유아 현황, 보육교직원 운영실태, 보육프로그램 운영실태, 운영 평가 및 관리에 대해 조사함.
 - 보육교사 조사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 중 중간정도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를 선정하여 근무조건과 처우 관련 질문, 근무만족도, 보육정책에 관한 의견, 누리과정 연수 여부, 누리과정에 관한 전반적 의견 등에 대해 조사함.
 - 2015년 조사에서는 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상세 내용과 구체적 수당 및 상세 소득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함.

□ 표본 추출

-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15년 4월 기준 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집으로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제외되어 총 43,100개소가 해당함.
 - 이를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모집단 층을 나누고 충별로 배분된 표본 크기에 따라 계통 추출을 함. 표본 배분은 제곱근 비례배분으

로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우선 표본을 배분하고 지역규모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을 배분함.

- 2015년 조사의 경우 메르스 확산과 민간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조사 진행이 계획했던 기간보다 늘어났고, 대체 표본이 증가함. 최종 표본 할당 및 조사 결과, 시설유형별로 국공립 506개소, 사회복지법인 377개소, 법인·단체 283개소, 민간 1,134개소, 가정 1,480개소, 직장 266개소 할당됨. 지역별로는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별로 각각 1,464개소, 1,631개소, 951개소가 할당됨.
- 보육교사 조사의 경우 국공립 511명, 사회복지법인 380명, 법인·단체 283명, 민간 1,144명, 가정 1,474명이 조사 완료하여 총 4,063명의 응답이 분석됨.

□ 가중치 작성

- 어린이집 조사 가중치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 규모 층에 따라 추출확률의 역수로 설계가중치를 계산함. 무응답조정은 응답자가 조사 자체에 불응한 단위무응답일 경우 가중셀 조정방법을 적용함.
 - 모집단의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어린이집 정원규모 분포에 맞게 사후증화를 조정하여 계산함.
- 보육교사 가중치는 표본추출 단계에서 1단계로 어린이집을 추출하고 2단계로 어린이집에서 중간경력자의 보육교사를 추출함에 따라 설계가중치에서 어린이집 추출확률과 해당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사 추출확률을 모두 계산함.
 - 보육교사의 추출확률은 2015년 4월 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육교사 수를 활용하여 추출확률을 역수를 계산하였고, 무응답조정은 어린이집 조사 가중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후증화가중치는 모집단의 보육교사 분포에 맞게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와 어린이집 정원 규모에 따라 사후증을 구성하여 작성함.

□ 조사방법

- 조사업체 전문조사원에 의한 조사로, 어린이집 조사표를 미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조사 협조 공문과 함께 업로드 함. 사전에 발송된 조사표를 수거하기 위해 전문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함.
 -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보육교사 조사표의 경우 미리 조사 대상 교사에게 온라인으로 발송하여 설문 응답을 받음.

- 조사기간: 2015. 9. 7 ~ 2015. 12. 30

3. 조사결과 및 처리

- 자료 오류를 수정한 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SPS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음.
 - 가중치는 어린이집 조사와 보육교사 조사를 구분하여 산정함.
- 조사 자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빈도분석 및 평균을 산출하였고, 시설유형별, 지역별, 어린이집의 규모별로 집단간 비교 분석이 실시되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경우를 중심으로 수록함.

II. 조사결과

1. 어린이집의 설치

가. 어린이집의 유형 및 설치 특성

- 어린이집의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됨(99.1%).
 -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2005년 이후 설립되었으며, 2013년에서 2015년의 3년 사이에 설립 비율은 7.8%로 다소 주춤한 추세를 나타냄.
-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개인 위탁이 절반 이상이었고, 사회복지법인 19.0%, 종교법인 14.5% 순이며, 직영 비율은 5.2%임.
 - 2012년도에 비해 개인 위탁 비율이 증가하였고, 직영 비율이 감소함. 읍·면 지역의 경우 개인 위탁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대도시의 경우 종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위탁 비율이 높았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직영 비율이 높았음.
 - 법인·단체어린이집은 종교법인이 위탁하는 경우가 약 80%였고, 특히 읍·면 지역에 종교법인 어린이집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장어린이집은 전문운영기관 위탁 운영 41%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탁이 21.1%, 학교법인 위탁 16.3% 순으로 나타남.
 - 2012년에 비해 전문운영기관에 위탁한다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음.
-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정 여부를 살펴보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이 20.5%로 가장 높았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비율은 2.1%로 나타남.
- 조사 대상의 6.0%가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임.
-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은 4.0%, ‘서울형 어린이집’ 비율은 2.8%임.
 - 공공형 혹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어린이집의 이미지와 자부심 향상’(31.5%), ‘교사 만족도 향상’ (25.0%), ‘교사 채용 용이’(21.4%) 등 순임.
 - 공공형 혹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 중 향후 공공형 혹은 서울형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는 비율은 40.4%임. 운영 의사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지원’임.
- 어린이집 대표자의 단독 대표 여부를 살펴본 결과 단독(1인) 대표인 경우가 99.0%임.
 - 공동 대표인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들의 관계는 ‘부부’가 가장 많았음.
-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사례 중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66.3%에 해당함.
 - 어린이집 운영에 가족 및 친인척의 참여 비율은 20.1%임.
 - 참여 인원은 평균 1.55명으로 2012년도 조사 결과와 비슷하고, 보육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62.9%).

나. 건물과 설비

- 어린이집의 건물 특성은 단독건물(40.8%), 아파트(32.8%)에 위치한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12년과 비교해보면 단독건물 비중이 비교적 높아졌고, 관리동의 비율은 근소하게 높아짐.
 - 사용 건물 층수는 1층 93.9%, 2층 23.7%, 3층 10.8% 순이고, 4층 이상 사용률

은 2.3%로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사용하는 경우인 4.0%보다 적었음.

- 어린이집의 면적은 영유아 1인당 대지면적 $19.8m^2$, 보육실 $4.9m^2$, 실외놀이터 $6.8m^2$, 옥상놀이터 $3.9m^2$, 인근놀이터 $24.3m^2$ 으로 나타남.

□ 기본 설비 구비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음.

- 비상재해대비시설(99.4%), 조리실(98.5%), 영유아용 변기(92.9%)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구비하고 있음.
-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 비율의 경우 2012년의 65.5%에 비해 99.4%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급배수 시설의 경우에도 2012년의 41.9%에 비해 72.1%로 큰 폭으로 상승함.
- 어린이집의 99.2%가 어떠한 형태이든 놀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이용 놀이터가 없는 경우는 0.8%로 나타남.
 - 옥외놀이터가 있는 어린이집 중 91.2%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놀이기구 설치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함.
 - 놀이터 놀이기구를 교체 및 추가 설치했다는 비율은 28.1%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조사의 37.2%에 비해 감소한 결과임.
-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 실태로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시설은 양방향 대피 를 위한 비상구, 출구로 91.1%임. 이외 자동화재탐지설비(39.7%), 비상계단(37.0%), 스프링클러(33.0%) 등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시설이 2012년에 비해 구비 비율이 늘어남.
- 장애아 보육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설비는 바닥안전을 위한 설비(안전봉 등)로 21.6%가 이에 응답함. 이외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19.6%), 휠체어 등 이동용 보장구(13.7%) 순으로 높음.

□ 건물은 자가가 59.1%, 전월세 20.0%, 월세 4.6%, 무상 12.2%임.

- 자가는 2012년도보다 약 4% 이상 감소함. 전월세 비율이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폭 하락함.

□ 응자금이 있다고 응답한 1,10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초응자금은 평균 2억여만원 수준이며, 잔여응자금은 1억 8,000만원 수준으로 2012년 조사 결과보다 최초 응자금과 잔여 응자금 모두 2~3,000만원 정도 늘어남.

- 권리금 지불에 관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의 설치 시에 권리금 지불 비율은 28.5%였으며, 지불한 권리금 평균 금액은 약 5,600만원임.
- 지난 3년간 조사 대상의 52.1%가 개보수를 1회 이상 하였고, 9.9%가 증개축을 1회 이상 실시하였다고 응답함.
 - 개보수는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실시한 경우가 많고, 증개축은 직장어린이집이 많았음.
 - 개보수 공사와 증개축 공사 이유로는 전반적인 노후화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음.
 - 개보수 경험 어린이집 중 28.1%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고, 증개축 공사의 경우는 25.9%가 정부 지원금을 받음.
 - 어린이집에서 가장 시급한 개보수 공사는 창호, 바닥, 방수, 지붕 등 어린이집의 기본설비에 대한 개보수 공사인 것으로 나타남(26.8%).

2. 어린이집의 운영

가. 어린이집 반 운영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반 수는 평균 5.48개임.
 - 어린이집 중 56.6%에서 평균 1.56개의 혼합연령반이 운영됨.
 - 연령별 반편성 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상위반 편성 비율은 6.1%, 하위반 편성 비율은 4.9%로 나타남.
-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반별 정원 초과 반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22.5%로 여연령반별로는 2세반이 15.3%로 가장 많고, 1세반 11.4%, 3세반 4.2%, 4세반 1.7%, 5세반 1.5%, 0세반 1.3% 순으로 초과반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남.

나. 입소대기 관리 현황

- 신규 입소 시 기관에서 영유아로부터 받는 서류는 응급처치동의서 99.2%, 귀가동의서 99.1%, 생활기록부 92.4% 순으로 2012년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남.
 - 부모 취업증빙서류를 받는 비율은 2012년 17.5%에서 2015년 63.1%로 급증함.

- 입소우선순위 자격 부여 항목으로는 '부모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38.2%로 가장 높고, '기초생활수급자' 25.8%,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13.8%,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11.0% 순으로 나타남.
- 시설의 입소 대기 영유아가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은 65.0%이고, 입소 대기 영유아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설의 프로그램 및 운영을 선호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36.8%로 조사됨.
 -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77.5%, 54.2%로 가장 높음.
- 2014년 4월 전국적으로 도입된 새로운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8점으로 나타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만족하는 경우 '결원 충원 시 편리함'이 29.5%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어린이집에서 관리할 부분이 없음' 25.7%, '번거로운 업무 감소' 15.3% 순으로 나타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불만족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재량권이 없어짐'이 59.3%로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온라인 시스템 이용 어려운 대기자 관리 업무 증가' 11.0%, '부모 민원 증가' 9.9%, '지나치게 빨리 입소대기를 함' 8.8% 순으로 나타남.
 - 입소대기 어린이집 수를 제한함으로써 결원 충원이 용이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용이해졌다라는 응답이 51.1%로 집계됨(매우 용이해졌다 19.2%+용이해졌다 31.9%).

다. 운영시간 및 운영일수

- 어린이집 평일 운영시간은 평균 아침 7시 39분에 문을 열어 저녁 7시 34분경에 닫는 것으로 나타남. 평일 기준 하루 평균 11시간 55분 동안 운영함.
- 토요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 중 전체의 30.3%로 나타남. 2012년 57.8%, 2009년 84.4%에 비해 그 비율이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14년 1년 동안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휴원한 적이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79.9%이며, 휴원을 했던 어린이집의 전체 휴원 일수는 평균 9.65일임.
- 2014년 1년 동안 69.4%의 어린이집이 1회 이상 자율보육기간을 가짐. 자율보육

기간을 가졌던 어린이집에서는 평균 5.96일 자율보육을 한 것으로 조사됨.

라. 보험 및 안전관리

- 보육통합시스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98.2%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함.
 - 영유아 및 방과후 공제에 가장 많이 가입하고, 영아를 위한 돌연사증후군 특약, 화재관련 공제의 가입비율이 높음.
 - 민간보험을 통해서는 화재보험, 상해보험, 사고배상책임보험, 영유아관련 종합보험의 순으로 가입이 많음.
-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살펴보면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실종유괴 예방교육 등 대부분의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 중 96%이상에서 실시함.
 - 보육교사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98.1%)과 안전관리(96.8%) 교육이 이루어짐.
-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부딪힘(35.2%)과 넘어짐(35.2%)이 주류를 이루며, 그 원인은 유아의 부주의, 아동간 다툼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안전사고 발생장소는 보육실(60.3%), 유희실(13.4%), 실외놀이터(13.1%) 순임.
- 소방서(88.7%), 병원(87.5%), 경찰서(84.2%)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비상연락체계가 구축 비율이 높음.
- 등하원시 영유아 인계과정에 대한 등·하원일지 비치 및 작성이 73%, 비치하고 있으나 작성하지 않음이 8.4%, 전혀 작성하지 않음 18.6%임.
- 2016년 현재 CCTV 설치 비율은 100%이며, 조사시점과 비교하여 법 개정으로 인해 가정어린이집에의 설치율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규정을 정확하게 안다는 원장은 85.2%로 2012년 조사 시 47.1%보다 월등히 증가함.

마. 차량운행

- 어린이집의 57.6%는 아동 등하원을 위한 차량을 운행함. 2012년 62.3%에 비해 감소한 수준임.
 - 주 차량 소유형태는 소유차량 87.1%, 임대차량 11.3%, 기타 1.6% 순서임.
- 주 운전자는 운전기사가 56.4%, 원장 36.8%로 나타남. 시설규모가 작을수록 운

전기사보다는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차량 동승자는 보육교사(98.3%), 원장(1.6%) 순서임.

차량의 월평균 운행거리는 1,000km 이하가 54.3%, 1,000~2,000km 이하가 27.9%의 순서임.

통합차량의 이용 영유아 수는 평균 26명, 차량 최대 탑승시간은 평균 28.29분임.

– 부모로부터 차량이용비를 별도 수납하는 어린이집은 54.3%로 2012년 42.2%에 비해 증가함. 차량 이용 시 별도 수납금액은 월평균 25,000원임.

정부로부터 차량운영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비율은 38.1%이며, 금액은 월 평균 283,200원 정도임.

바. 영유아 건강관리

아픈 영유아 발생 시 보육실(61.6%), 원장실(26.1%), 교사실(5.7%)에서 돌봄.

– 아픈 영유아 담당은 보육교사 47.8%, 원장 45.8%임.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대부분(99%)의 어린이집에서 사전안내를 하고, 검사결과 확인서를 철저하게 점검(91.6%)함.

–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입소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확인(46.5%)하거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달 확인(42.7%)하고 있음.

– 전체 응답 어린이집 중 89.3%에서 계절별 예방 접종을 관리함.

전염성 질환에 대비하여 의심 시 등원시키지 않도록 안내(88.3%), 병원의 결과 확인 후 출근 또는 등원(79%), 보육교직원대상 교육 강화(76.6%), 주기적 체열체크(62.6%) 등이 이루어짐.

전체의 98.7% 어린이집에서 모든 교직원이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응답함.

사.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 실내공기 질, 석면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 비율은 21.8%로 조사됨.

– 장점으로는 식재료의 안정된 수급(37.9%)이, 단점으로는 개별구매 시보다 비용이 높음(50.8%)이 높게 나타남.

어린이집의 식단 작성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식단 자료를 활용하는 비율이

52.7%이며, 조리담당자는 조리사 자격이 있는 조리원(52.1%)이 주로 담당함.

-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94.4%, 같은 식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96.3%임.
- 실내공기 질 측정 의무 사항에 대해 70.3%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응답 어린이집 중 45.4%에서 실내공기 질 측정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 석면안전관리가 의무조항임에 대해 70.6%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실시한 비율은 54.5%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개발 매뉴얼 중 보유비율은 안전관리매뉴얼(2009)이 84.2%로 가장 높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2014), 운영위원회 매뉴얼(2012)이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게 나타남.

아. 애로사항 및 요구

- 어린이집 운영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재정문제이었으며, 원아모집, 행정관련 문제 순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급간식과 보육프로그램 관련 문제는 별로 어려움 없음.
 - 재정적 어려움 요인은 교사인건비(43.5%)가 가장 높아 2012년 결과와 유사함.
- 보육교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은 60%이며, 희망 인건비가 높음이 그 주된 이유임.
- 어린이집에서 시급하게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29.5%, 시설설비 23.6%로 지원요구도 보조인력의 지원에 55.1%가 응답함.
- 지원체계의 이용을 중심으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표준보육과정의 교육과 관련 지원(75%),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는 안전 및 학대 예방 교육(67.6%), 보육진흥원으로부터는 보육 관련자료 제공(51%)을 중심으로 지원 받음.

3. 보육 교직원 운영실태 및 요구

가. 보육교직원 특성 전반

- 조사대상 어린이집 4,046개소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

는 총 26,047명의 전체 교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전체 보육교사 26,047명의 최종학력은 고졸 18.5%, 2-3년제대학 재학/졸업 51.2%, 4년제대학 재학/졸업 27.5%, 대학원 재학/졸업이 2.6%로 2012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고졸 학력 교사의 비율이 2.8%p 늘고, 2-3년제 대학은 3.4%p 줄었으며, 4년제 대학은 1.3%p 늘어남.
- 보육교사의 전공은 유아교육(2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학(14.7%), 기타 비 관련학과(14.3%)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의 유아교육 전공자 비율(42.0%)에 비해 감소함.
- 조사대상 전체 보육교사 26,047명 중 1급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가 48.6%로 가장 많았고, 2급 보육교사 자격 34.7%, 원장 자격 20.5%로 나타남. 3급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4.6%임.
- 보육교사의 32.7%는 보육교사교육원, 37.1%는 2-3년제 대학에서, 16.1%는 4년제 대학에서, 12.3%는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2012년 대비 보육교사교육원과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에서의 취득은 다소 증가하고, 2-4년제 대학에서 취득은 다소 줄어듦.
-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근무경력은 4년 7개월임.

□ 어린이집 원장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 원장 4,046명 중 여성 96.3%, 남성이 3.7%였고, 평균연령은 약 47세로 27세에서 86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함.
- 최종학력은 2-3년제 대학 재학/졸업(27.9%), 4년제 대학 재학/졸업(37.5%), 대학원 대학 이상(29.3%) 순으로, 2012년에 비해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이상의 원장 비율이 증가함.
- 유아교육 전공자가 49.3%로 가장 많고, 보육관련 전공(아동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가정학)이 35.7%, 기타 비 관련학과 8.6%임.
- 원장의 33.0%는 최초 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관이 보육교사교육원임. 2-3년제 대학 39.0%, 4년제 대학 이상 23.0%,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 4.0%임.
- 원장 경력은 평균 8년 4개월, 어린이집 총 경력 평균 14년 6개월로, 평균 14.9호봉임. 2012년의 11.3호봉(원장 평균경력 14년 1개월)에 비해 3.6호봉 가량 상승함.

- 원장 급여는 266만 3천원(기본급 220만 7천원, 수당 45만 6천원)으로, 2012년 23만원의 수당을 포함한 215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함. 직장어린이집에서 원장의 호봉이 증가할수록 원장 급여가 증가하는 추세가 분명함.

나. 보육교직원 근로시간 및 급여

- 전체 교사의 평균 호봉은 4.8호봉으로, 이는 보육교사의 평균 총 경력 4년 7개월과 대략 일치함.
- 전체 교사의 월 급여는 기본급 평균 147만 8천원, 수당 평균 36만 5천원을 합친 184만 3천원으로, 2012년 대비 전체 29만 3천원, 기본급 평균 16만 4천원, 수당 평균 12만 9천원이 오른 금액임.
- 2004년 약 96만원, 2009년 약 138만원, 2012년 약 155만원, 2015년 약 184만원으로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가 증가세를 유지함.
- 2015년 초임교사의 급여는 월 평균 158만 4천원(기본급 평균 132만 8천원, 제수당 평균 25만 6천원)으로 나타남. 이는 보육교사 전체 급여평균의 84.9%임.
- 정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급여성 수당(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제외한 기타 수당의 경우, 명절수당 지급이 2,700개소로 가장 많은 어린이집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휴가수당, 직책수당으로 조사됨.
- 보육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으나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비담임 보조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38.6%로 나타남.
 - 비담임교사 1일 평균 근로시간은 5시간 17분, 월 급여는 월 93만 6천원으로 나타남.
- 기타 보육교직원으로 조리사를 둔 어린이집은 72.0%이고 운전기사를 둔 어린이집은 30.1%, 누리과정운영 도우미 15.6%, 영양사 7.7%, 간호/간호조무사 5.4%임.
 - 월 급여는 특수교사(196만원), 치료사(189만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무원/관리원(164만원), 간호사(154만원), 운전기사(122만원)의 순임. 영양사와 누리과정 도우미는 평균 80만원대임.
- 39.4%의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쓴 적이 있으며, 이 경우 연간 평균 1.9명의 대체교사를 약 5.6주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초과근무가 있다는 어린이집은 전체 70.8%로, 이 중 64.7%의 기관에서 시간외수

당을 지급하고 있음. 초과근무시간만큼 지급 61.2%, 상한선 있음 19.0%, 초과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교사에게 일괄지급 18.4%로 나타남.

보육교직원 채용 및 운영

- 근로계약서 작성 99.6%, 계약서에 임금/근로시간/근로조건 등의 요건을 기재 99.9%임.
- 어린이집의 95.4%가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며, 운영방법은 개인계좌 퇴직금제도 46.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23.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24.7%, 기타 10.0%임.

다. 보육 교직원 신규채용 및 이직률

- 75.5%의 어린이집에서 2015년 교사를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신규교사의 수는 전체 교사의 27.4%임.
- 68.9%의 어린이집에서 2014년 지난 한 해 사직한 교사가 있었으며, 전체 교사의 24.1%임.
 - 사직 이유로는 출퇴근시간 때문이라는 응답이 2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계약만료(18.6%), 건강상의 이유(17.5%)로 나타남.

라. 보수교육

- 전체 보육교사의 일반직무 보수교육 대상자 이수율은 91.3%이고, 원장 일반직무 보수교육 대상자 이수율은 91.8%임.
 - 전체 보육교사의 1급 승급교육 대상 시설은 34.7%였고, 이들 보육교사의 승급 교육 이수 비율은 91.1%임.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 대상자 근무 시설은 7.1%이고 이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교사 비율은 81.7%임.
 - 특별 직무교육의 경우 영아보육 28.7%, 장애아 보육은 5.9%, 방과후보육은 3.8%의 어린이집에서 보수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마. 보육교사 조사결과

- 교사 조사 결과, 중간경력 교사 4,063명의 1일 근로시간은 9시간 36분으로 나타남.

- 보육 7시간 54분, 보육준비 및 기타업무 약 1시간, 점심시간은 1일 평균 30분, 휴식시간 18분으로 나타남.
- 교사를 위한 시설이 구비된 비율은 교사실 45.0%(2012년: 28.0%), 개인책상 34.8%(2012년: 27.7%), 사물함 72.0%(2012년: 64.5%), 성인화장실 70.1%, 식사공간 9.7%임.
- 2014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연월차 휴가 사용률은 91.6%(2012년: 93.4%)이며, 연간 평균 약 9.1일로 나타남. 산전후 휴가 가능 58.0%(2012년: 64.6%), 육아휴직 가능 55.4%(2012년: 58.4%)로 2012년 대비 운용률이 다소 줄어듦.
- 보육교사들의 근무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일에 대한 보람은 91.0%,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82.9%인 반면,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55.3%,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도는 30.3%로 낮게 나타남.
 -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만족도에서 2012년(40.4%) 대비 떨어짐.
 - 근무상 애로사항은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0% 이상이고,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은 업무처리 항목이 29.4%, 개인적 문제 26.3%, 영유아 부모와의 관계가 22.5%임.
- 교사의 직무효능감은 긍정응답이 85% 이상으로 양호한 가운데, 보호자의 신뢰를 얻음 98.2%, 적절한 지도/도움 제공 및 보육환경 준비 95.7%로 높게 나타남.
 - 교사의 심리적 건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체적 피로가 59.8%로 가장 커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피로(56.4%), 직무 스트레스'(49.4%)로 나타남.

4. 보육 영유아 특성과 다양한 보육

가. 일반 현황

-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연령별 운영 비율은 만0세반 58.3%, 만1세반 91.6%, 만2세반 95.3%, 만3세반 54.7%, 만4세반 44.4%, 만5세반 39.2%로 나타남. 영아반 운영비율이 유아반 운영비율에 비해 높은 경향은 2012년 결과와 유사함.
 - 단, 영아반 운영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유아반 운영비율이 극히 낮은 가정어린이집의 시설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규모가 큰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어린이집은 유아반의 운영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고 있음.

- 어린이집 보육 영유아 중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는 53.2%를 차지함.
 - 전체 영유아 대비 취업모 가정 영아는 36.1%, 유아는 17.1%임.

나. 특성별 영유아 보육 현황

- 다문화 가정 영유아 중 1명이라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53.4%이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보육비율은 80% 이상을 보임.
 - 다문화 가정 영유아는 전체 보육 아동 중 4.9%에 해당하며, 다문화 가정 영아가 3.0%, 다문화 가정 유아가 1.9%로 나타남.
- 장애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8.6%에 해당하며, 장애 영아 보육 어린이집은 2.6%, 장애 유아 보육 어린이집은 7.4%임.
 - 전체 보육 아동 중 장애 영아 수는 0.2%, 장애 유아는 1.1%에 해당함.
- 취약계층 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26.7%에 해당하며, 취약계층 영아 보육 어린이집은 15.1%, 취약계층 유아 보육 어린이집은 18.6%임.
 - 취약계층 영아는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전체 보육아동 중 0.9%, 유아도 0.9%로 나타남.
- ‘시간연장보육’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으로 ‘시간연장형 보육(24시간보육,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휴일보육)’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임. 이러한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1명이라도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시설 중 21.5%에 해당하며,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18.4%,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12.9%로 나타남.
 - 시간연장 보육 이용 영아는 전체 보육 아동의 3.0%이고, 유아는 1.3%로 나타남.
- 야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 영유아가 1명이라도 있는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0.4%에 해당함. 야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0.4%, 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0.2%임.

- 야간 및 24시간 보육 이용 영아 수는 조사 대상 영유아의 0.1%이고, 유아는 0.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휴일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1명이라도 있는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3.2%에 해당하며, 휴일보육 이용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이 2.9%, 휴일보육 이용 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1.9%임. 휴일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업모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2.4%이고, 휴일보육 이용 취업모 가정 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1.6%임.
- 영아 수는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보육 아동 중 0.4%이고, 유아 수는 0.2%임. 휴일보육 이용 취업모 가정 영아 수는 보육 아동 중 0.3%, 유아는 0.2%임.
- 토요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1명이라도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15.9%에 해당함.
- 토요보육 이용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12.9%이며, 토요보육 이용 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10.5%임.
- 토요 보육 이용 영아 수는 대상 아동의 1.2%이고, 유아 수는 0.7%로 2012년 대비 감소함.

다. 시간연장형 보육 현황

-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24시간 보육, 시간연장보육(19:30~24:00), 야간보육(19:30~익일 07:30), 휴일보육을 모두 치칭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23.9%임.
-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향후 시간연장형 보육에 참여 의향을 살펴 본 결과 28.1%가 참여 의향을 나타남. 운영 가능 취약보육의 형태로는 '시간연장보육'이 91.1%, '야간보육' 21.6%, '휴일보육' 15.2%, '24시간 보육' 8.0% 순으로 나타남.
- 시간연장보육 이용 이유는 맞벌이 가구로 부모의 퇴근이 늦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3.6%로 가장 높았고, 야간근로 등으로 저녁시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11.6%였음.
- 시간연장보육 실시 어린이집의 28.1%가 저녁급식비를 별도로 수납함. 저녁급식비를 별도 수납 시 수납금액은 월 평균 20,480원이라고 응답함.

- 시간연장 보육료 금액이 현재 시간당 2,800원 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5.0%고, 보육료 상향시 적정 금액은 평균 4,563원으로 조사되었음.
- 전체 시설의 74.0%에서 현재의 60시간의 시간연장보육 지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15.9%가 적음, 10.0%가 많음이라고 응답함.
- 지원시간이 적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시간은 월 평균 82.9시간, 지원시간이 많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시간은 38.05시간이라고 응답함.
- 시간연장보육 제도의 개선 요구사항은 41.8%가 인건비 지원단가 상향으로 응답해 가장 높았고, 시스템상 5명 아동 등록에 대한 제한 완화 19.5%, 이용자 객 제한 10.2%, 대체 인력풀 구축 9.6%,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7.4% 순임.

라. 24시간 보육·시간제 보육

-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24시간 보육 제공어린이집은 총 19개소였음.
 - 24시간 보육 이용 영유아의 부모인계 빈도는 '1주에 한번 이상'이 96.8%였음.
 - 24시간 보육 이용 이유로는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이 83.2%로 2012년 조사 당시 44.8%가 부모의 야간경제활동이었던 것에 비해 급증함.
- 시간제 보육 제공 시 어려움으로는 '안정적 운영 어려움'이 25.2%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이밖에 '낮은 시간제 보육료' 24.4%, '전담인력 구인 어려움' 16.0%, '프로그램 구성 어려움' 11.4% 순으로 응답됨.
 - 시간제 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으로는 '시간제 보육료 단가 인상' 21.8%,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조건 완화' 20.9%, '담당인력 파견 등 인력 지원' 18.2%, '시간제 보육료 정부지원 비율 인상' 15.9% 등 다양하게 응답됨.

마. 장애 영유아 보육

- 조사대상 어린이집 4,046개소에서 보육하고 있는 장애영유아는 총 2,203명으로 집계됨.
 -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는 62.0%,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63.5%,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는 10.3%임(중복응답).
-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12.4%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43.3%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전문 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44.3%를 차지함.

- 장애아전문 및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이유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가 5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기준은 갖추었으나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신청 안함'이 18.7%, '지정취소됨' 1.0% 순으로 나타남.
 - 제출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진단서에 의해 장애 영유아의 장애 유형을 살펴 본 결과 지적 장애가 45.4%로 가장 많고, 자폐 40.2%, 언어장애가 34.7%, 뇌병변 장애 25.9%, 지체장애 14.0% 순으로 나타남(중복집계).
 - 집계 현황에 따르면 특히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재원 장애영유아는 중복장애를 지닌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장애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와 보육교사 중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교사 수는 평균 특수교사 2.76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71명으로 나타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58.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이들 중 15.3%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함.
- 전환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장애아 및 일반 영유아 안전 관리의 어려움 31.0%로 가장 크고,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의 어려움 28.4%, 장애아 담당 교사 확보의 어려움 17.8% 순임.
- 장애아 보육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보조인력지원'이 46.4%로 가장 높고, 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19.1%, 장애아 시설설비 설치 9.6%, 특수교사 수당 인상 4.0%, 교사 교육 3.3% 순으로 응답됨.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보육료 단가 인상'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게 나타남 (47.5%).

바.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보육

-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언어발달 지연의 문제가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신감, 자아정체감 부족이 9.7%, 기본생활습관 문제 9.7%, 또래관계 형성 문제 8.6%, 학습발달 지연 8.4% 순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 자녀·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부모대상의 ‘부모상담 프로그램’이 55.3%로 운영비율이 가장 높고, 다문화 가족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중에서는 ‘한글지도’ 프로그램이 31.2%로 가장 높았음. 이외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사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28.4%,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12.9%, 인지발달 프로그램 26.3%, 알림장 번역서비스 9.8%, 부모교육 29.1%임.
 - 반면에 다문화가족 자녀와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 정도는 높아서, 필요하다는 비율은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은 80.2%, 이중언어 73.3%, 인지발달 프로그램 78.7%, 한글지도 79.4%, 알림장 번역서비스 65.7%, 부모교육 81.8%, 부모상담 88.0%였음.
- 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비율은 49.6%이고, 일반 아동 대상 교육은 54.5%로 2012년에 비해 증가함.

5. 보육 프로그램 운영

가.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환경 구성

- 보육과정 운영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개별 특성 반영, 보육내용 연계성, 통합적 일과운영, 활동 균형성, 정기적 평가 여부의 4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4점 기준 평균 3.4점~3.8점의 분포를 보여 조사에 참여한 시설의 보육과정 운영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 영역별 보육활동 실시 정도는 4점 기준 평균 3.5~3.6점대로 높은 편임.
 - 영아반은 기본생활 및 신체운동 영역의 실시정도가 높게,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 영역의 실시정도가 그보다 약간 낮았음.
 - 유아반은 전 영역의 실시정도가 3.6~3.7점대로 평이했음. 또한 가정어린이집과 20명 이하 시설의 보육활동 실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영역별 교재교구 비치정도는 영아반과 유아반 모두 4점을 기준으로 평균 3.3 점~3.5점의 분포를 보임.
- 영역별 교재교구 활용정도는 영아반과 유아반 모두 4점을 기준으로 평균 3.2 점~3.5점의 분포를 보임.
 - 영아반은 가정어린이집의 교재교구 활용 정도가 평균보다 소폭 낮게,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활용 정도가 평균보다 소폭 높았음.

- 유아반은 법인·단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교재교구 활용 정도가 전체 평균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금 낮았고,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활용 정도가 전체 평균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금 높았음.

- 보육프로그램 작성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는 44.1%가 복지부 개발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20.7%가 영유아 잡지 제공 프로그램을 참고한다고 응답함.
 - 가정, 민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잡지 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비율이 타 시설유형에 비해 조금 높았음.
-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은 전체의 86.3%가 연령별로 모두 보유하고 있고, 활용한다는 응답이 87.5%이었으며, 만족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96.2%임.
 - 미활용 이유로 ‘교재교구 준비가 어렵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쓰던 프로그램이 있어서’에 응답한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음.
- 보육 또는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강조하는 점에 인성지도를 강조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균형있는 발달, 안전한 보호 순으로 나타남.
 - 직장어린이집은 자유놀이 중심의 활동을 강조한다는 비율이 19.7%로 민간어린이집이 3.8%인데 반해, 약 6배 가량 높게 나타남.
 - 가정어린이집은 안전한 보호를 강조한다는 비율이 26.9%로 타 시설유형에 비해 8% 이상 높게 나타남.

나. 3~5세 누리과정 운영

- 3~5세 누리과정 반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3, 4, 5세 독립반이 64.7%, 연령혼합반이 31.7%, 3~5세 장애아 독립반이 2.0%, 장애아 연령 혼합반이 1.5%이었음.
- 누리과정 운영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로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세, 4세, 5세)」과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하는 비율이 전체의 39.8%와 30.6%로 나타남.
 - 2012년 조사결과 민간업체 판매프로그램을 참고하는 비율이 5.2%였으나, 2015년 조사결과에서는 17.9%로 집계되어 10% 가량 증가
-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세, 4세, 5세)」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90.9%,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95% 이상이었음.

- 미활용 이유로 교재교구 준비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과 쓰던 프로그램이 있어서에 응답한 비율이 다음 순임.
- 누리과정 지원금의 사용처로 전체의 61.3%가 교재교구 구입, 25.7%가 보조교사 채용에 사용하고 있음.
-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좋아짐 점에 '프로그램의 질적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재정운영 안정화와 교사처우가 개선되었다에 응답한 비율 높게 집계됨.
- 어려워진 점으로는 임금 형평성 문제가 전체의 2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출범위 제한에 전체의 18.0%가 응답함.
- 개선사항으로는 재정지원이 강화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운영비 사용 항목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업무로 일상생활 지도와 수업 및 놀이 참여, 수업전후 준비 및 정리가 높게 나타났고, 행정업무 수행빈도가 가장 낮았음.

다. 특별활동

-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85.9%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평균개수는 영아 2.6개 유아는 3.13개로 집계됨.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실시 비율을 살펴보면 체육이 전체의 6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어와 음악 순이었음.
 - 특별활동 장소로 원내에서 실시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92.7% 이었음.
- 특별활동에 전원 참여하는 비율은 전체의 34.2%로 나타남.
 -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의 활동으로는 '교사와 자유선택 활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8.0%로 가장 높음.
 - 특별활동 운영 업체는 평균 2.78개, 외부 강사는 3.03명으로 집계됨.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가장 많이 지불한 영유아의 월 평균 금액은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 3만 4천원대로 조사됨.
 - 특별활동 프로그램당 최대 비용은 영아의 경우 영어가 1만 5천원대로 가장 높고, 유아의 경우 컴퓨터가 1만 9천원대로 가장 높았음.

- 지자체가 정한 특별활동 상한액과 비교하여 상한액보다 적게 받는다는 응답이 74.4%로 가장 높고, 상한액보다 많다는 응답은 0.9%로 낮았음.

6. 운영 평가·관리 및 정책 관련 의견

가. 어린이집 평가

- 어린이집 자체 운영 평가는 반년에 1회가 38.1%로 가장 많고, 자체 운영 평가를 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22.0%이며 평가의 내용은 운영전반, 보육프로그램, 교사 업무관리, 재정운영, 부모 만족도 조사, 담당교사 평가, 기타 자체 운영 평가임.
-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태는 재인증을 받은 경우는 55.7%, 신규인증을 받은 경우는 24.6%, 신규인증 진행 중인 경우는 9.1%, 참여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0.8%임.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은 경우는 70.0%정도이며, 컨설팅을 받지 못한 이유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경로의 도움을 이용하거나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랐다는 내용임.
-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서류 등)업무과중이 58.1%, 비용소요가 11.1%, 지표수가 많음이 9.6%, 시설 개보수의 어려움이 6.1%, 우수교사 확보의 어려움이 5.1% 등 순으로 나타남.
- 향후 평가인증 개선 사항으로는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율이 40% 이상인 항목은 평가인증의 부모참여, 의무화, 유효기간 차등화, 정부 재정지원의 연계 등임.

나. 어린이집 행·재정

-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규칙의 세부 내용에 대해 준수 정도를 알아본 결과 별도의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 사용, 수입과 지출 행위 시 관련 서류 첨부와 회계보고 의무화는 99%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나 기타 운영비 15% 한도 준수는 약간 낮은 97.6%, 보육교직원 소득 신고 항목은 96.2%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어린이집 재무관리자는 원장이 하는 경우가 82.0%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재무교육을 받는 평균 횟수는 1.47회임.
- 클린카드의 소지비율은 37.3%이며 클린카드를 소지한 어린이집에서 클린카드를

항상 사용하는 비율은 87.8%임.

- 추가 보육료 수납액은 3세아 평균 11,400원, 4세아 평균 9,200원, 5세아의 평균 9,100원으로 조사됨.
 - 필요경비 수납액은 월평균 현장학습비는 17,400원, 행사비는 13,900원, 아침·저녁 급식비는 16,900원 등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는 대부분 상한액대로 받고 있었음.
-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비 관리를 다른 운영비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49.9%로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33.3%보다 높았음.
- 공무원의 지도 점검은 보육 담당 공무원의 지도점검 비율은 81.0%이며 평균 방문 횟수는 1.34회, 기타 관계 공무원의 지도 점검은 40.1% 정도임.
- 부모모니터링단은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77.1%를 방문했으며 평균 방문 횟수는 1.11회임.

다. 어린이집과 가정 연계

-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구성 전체 인원수는 평균적으로 5.8명 정도이며 구체적으로 보육교사는 1.5명, 학부모는 3.0명, 지역사회 인사는 1.1명 참여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 구성 시 상반기에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는 평균 1.96회임.
-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3.1%이며 평균 점수로는 4점 만점에 2.86점임.
-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80.9%이며 부모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40.3%,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가 13.1%임.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운영위원의 일정 조정에 대한 어려움이 47.0%로 가장 높았고, 운영위원의 낮은 관심이 30.9%, 운영 경험 및 전문성 부족이 11.8% 순임.
- 어린이집이 부모(보호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중복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락장이나 대화수첩을 통해서 88.0%, 전화 83.7%, 상담, 부모회의 등의 직접 대면 77.9%, 문자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50.6% 등의 다양한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음.

- 2015년 상반기 동안 어린이집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은 교육설명회와 오리엔테이션이 94.3% 실시비율이 높고, 강연회와 워크숍 실시는 32.4%, 프로그램화된 부모교육은 46.5%, 부모교육 자료 배부가 86.8%, 실시횟수는 10.24회로 가장 높음.
 - 소풍, 견학과 발표회 등의 아동행사에 참여한 부모참여는 실시비율은 69.3%, 실시횟수는 3.59회, 일일 등하원, 급식지원 및 청소 등의 자원봉사는 30.6%, 4.26회 실시함.
 - 설문조사와 같은 의사결정에의 참여 실시비율은 50.6%, 실시횟수는 3.07회, 수업진행 참여 실시비율은 52.9%, 실시횟수 평균은 2.13회, 기관의 활동이 가정으로 연계된 활동참여는 34.6%, 평균 실시횟수는 4.15회임.

라. 보육정책

- 보육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 어린이집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95.9%,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대해 책무성을 지닌 기관이다 94.0%, 보육은 공공서비스이다 92.4% 등의 보육정책 내용에 대해 95%内外로 동의 정도가 높았고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87.0% 정도였음.
- 지난 3년간 보육 수준 향상 정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보육내용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90.1%, 보육의 공공성은 85.1%,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73.3%, 어린이집 재정운영 안정화는 51.5%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함.
- 보육정책 만족도는 보육 전자행정 시스템과 아이행복 카드제, 3-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70%를 넘고 평균점수는 각각 3.06점, 3.26점, 2.93점 정도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일곱 가지 주제들의 만족도는 만족하는 비율과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I.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보육 환경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회적 책임으로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현실적인 실태를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의 조성'을 보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다면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새싹 플랜', '아이사랑 플랜'에 이어 보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보육 시설의 다양성 유지를 기초로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최선의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국무조정실 이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은 13개 통합과제별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정확한 보육 실태 및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보육 현장에 관한 충분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하고 부모들의 다양화된 보육·교육적 수요에 부응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단위 보육현장을 기반으로 현재의 보육서비스 운영 상황을 분석하여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그간에도 2004년, 2009년, 2012년에 3차례 실시된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통하여 아동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에 관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여 정부의 보육정책 수립의 근거로 제공하여 왔다. 즉, 2004년 보육실태 조사를 토대로 처음으로 보육 수요율을 추정하여 보육정책에 활용하였으며, 2009년 조사에서는 2004년 대비 부모 비용 부담의 경감과 특별활동의 증가, 보육비용 증가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환경, 운영 실태와 요구, 보육교사 근무 환경, 처우 등도 본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각종 보육정책 수립에 활용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011년에 개정된 영유아교육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국 차원의 보육 실태와 요구에 관한 정책 기초자료를 주기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보육정책

을 수립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는 정부가 부모, 아동, 운영자의 입장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비용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어린이집 제공 보육서비스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실태, 보육 영유아 현황, 보육교직원 운영실태, 보육프로그램 운영실태, 운영평가 및 관리 등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번 2015년 조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현황자료가 수집되고 통계자료가 구축되었음을 반영하여 보육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또는 교사 자료를 일부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조사를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실시되었던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 문항들은 유지하는 한편,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문항을 보완하고 새로운 문항도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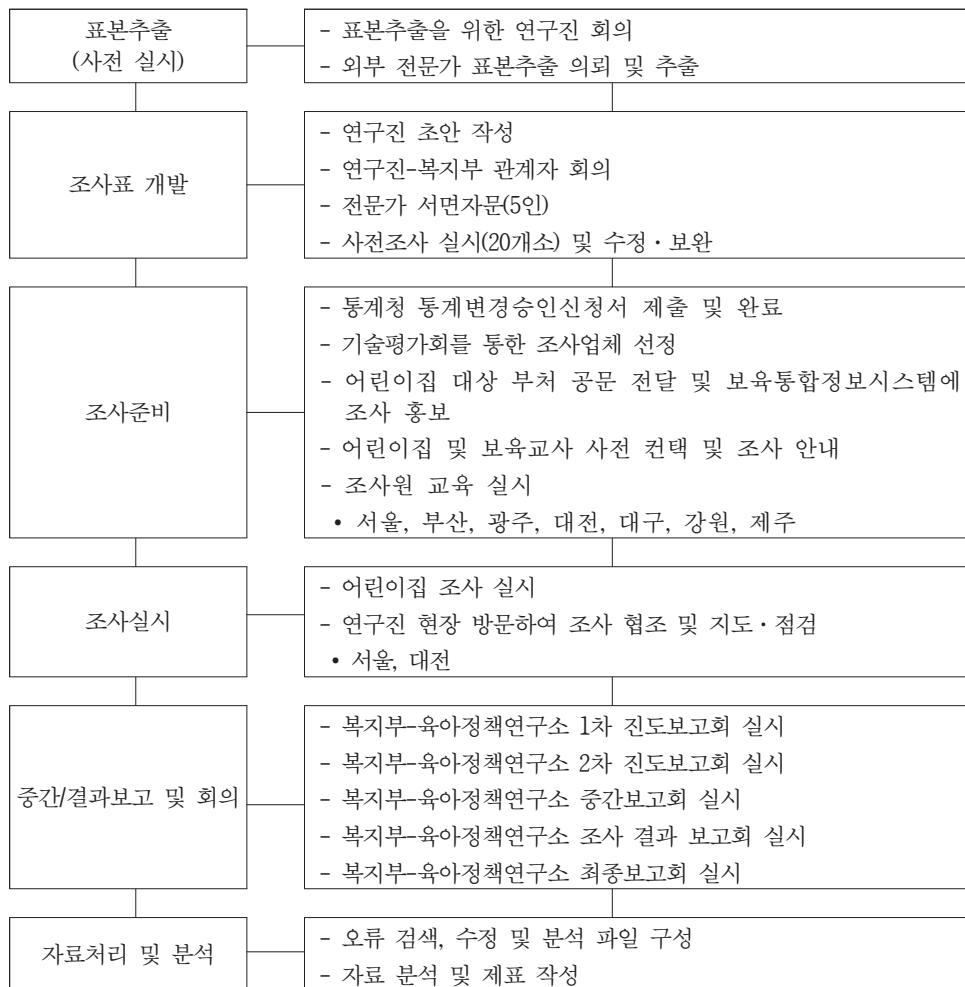
어린이집 설치 현황으로 어린이집의 유형, 물리적 특성, 임대나 용자 여부, 놀이터·화장실, 장애아를 위한 설비 등을 조사하였다. 어린이집 운영 현황으로는 보육시간 운영, 운영 어려움, 보험 및 안전사고 현황, 안전관리 실태, 차량운행 실태, 영유아 건강 및 급식·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교직원 운영 실태 부분에서는 종사자의 학력, 경력, 자격증, 임금, 근무시간 등 일반 현황과,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보수교육 참여,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복지 수준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보육 영유아 현황에서는 보육 영유아 현황과 부모 및 가족 특성, 대기자 현황, 특수아 보육 현황, 이용시간, 장애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관련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보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서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중점 보육내용, 특별활동 운영, 3~5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인력, 자료, 반 편성 현황 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살펴보았으며, 어린이집 운영 평가 및 관리에서는 자체 시설운영 평가 실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의견과 평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행·재정 관리,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실태, 지역사회기관 연계 실태, 보육정책 운영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최근 단기간 동안 보육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의 보육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현재를 기점으로 보육현장 운영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보는 이러한 노력은 다변하는 국내 보육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보육정책 수립에 준거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조사방법

가. 조사 절차 및 구성

어린이집 조사는 문헌연구를 통한 기초자료 분석 후, 표본 설계 및 조사대상 선정, 조사표 개발, 조사업체 선정 및 조사원 교육 등 조사준비, 조사실시, 자료처리 및 분석의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



[그림 1-2-1] 어린이집 조사 추진 일정

나.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어린이집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선정하고 이에 준한 조사표 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2012년도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이후 영유아보육법의 변경 내용,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2년도 이후 보육정책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주요 통계지표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동시에 그간 정부 및 주요 연구기관에서 추진하였던 보육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다. DW 데이터 추가 분석

이번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현장 조사와 별개로 기준에 구축되어 있던 어린이집 DW 정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어린이집 DW 정보 분석은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받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 및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와의 회의를 거쳐 DW 추출이 가능한 문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회의를 통해 추출이 가능하며 정확성이 보장된 어린이집 인가년도, 소재 지역, 특수보육 지정 여부, 어린이집 면적, 안전공제회 관련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받았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관련된 DW 정보를 요청하였고, 이 자료를 추가 분석하였다.

라. 연구 및 조사팀 구성

본 어린이집 실태조사는 조사표 개발에서부터 자료 분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육아정책연구소 원내 연구진이 수행하였고, 표본 추출과 가중치 작업은 본 연구의 원외 연구진인 통계 전문가가 수행하였다. 또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조사 전문업체가 조사원 선정과 현장 조사를 담당하였고, 현장 실사 및 분석 파일 구축은 외부의 지원을 받았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표본과 관련하여 기초 자료 확보, 대체 표본 관리를 담당하였고, 실사 과정에서도 조사원 교육, 조사업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감독하고 코딩 지침서와 에디팅 지침서를 마련하여 데이터의 코딩·입력과 오류 점검 및 수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실태조사를 계획·실시하는 등 최종적으로 데이터

를 얻기 위한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다.

마. 조사 내용

1) 어린이집 조사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중 어린이집 조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실태, 보육 영유아 현황, 보육교직원 운영실태, 보육프로그램 운영실태, 운영 평가 및 관리에 대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설치 현황에서는 어린이집의 유형, 건물·설비 등 물리적 특성, 임대나 움자 여부, 놀이터·화장실, 개보수, 장애아를 위한 설비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서는 반, 평일·토요보육, 자율 보육기간 등 보육시간 운영,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 영유아 및 교사 대상 보험·안전사고 현황, CCTV 설치 등 안전관리 실태, 차량운행 실태, 영유아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교직원 운영 실태 부분에서는 종사자의 학력, 경력, 자격증, 임금, 근무시간 등에 관한 일반 현황과,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보수교육 참여현황, 시간외 수당·퇴직급여 등을 포함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복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 영유아 현황에서는 보육 영유아 현황과 영유아 부모 및 가족 특성별 현황, 대기자 현황, 특수아 보육 현황, 이용시간에 따른 실태, 보육 영유아 관리 실태, 장애 영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관련 실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서는 보육과정에 기초하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중점 보육내용, 특별활동 운영실태, 3~5세 누리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2012년도에 도입되어 2013년에 3~4세로 확장된 누리과정과 관련해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인력, 자료, 반 편성 현황 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운영 평가 및 관리에서는 자체 시설운영 평가 실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및 이에 대한 의견과 평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행·재정 관리,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실태, 지역사회기관 연계 실태, 보육 정책 운영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 보육교사 조사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조사원이 사전 전화 연

락을 통해 2014년 1월 이전부터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 중 중간 정도의 경력자를 원장으로부터 추천받았다. 해당 보육교사의 동의하에 개인 연락처를 수집하게 되었고, 이들을 보육교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육교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육교사 조사표의 내용으로는 근무시간과 휴가휴직 이용, 보수교육 등 근무조건과 처우 관련 질문, 근무만족도, 보육정책에 관한 의견, 누리과정 연수 여부, 누리과정과 관련한 변화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었다. 2012년도에 실시되었던 조사표의 내용에 기초하지만, 특히 2015년도에는 교사의 하루 및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상세 현황과 교사의 급여에 대한 상세 내역(기본급, 정기적 수당, 비정기적 수당),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 등 보다 심층적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바. 조사과정

1) 표본설계

가) 모집단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의 모집단(population)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43,100개소로 정의한다. 전국보육실태 조사 모집단을 구성하는 전체 어린이집을 유형과 지역 규모에 따라 정리해 보면 <표 I-2-1>과 같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43,100개소 중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어린이집 정원규모를 고려하여 모집단의 약 10%에 해당하는 4,300개소의 어린이집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 I-2-1> 모집단 현황

단위: 개소(%)

지역규모	유형						총합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대도시	1,261	378	277	5,692	7,882	356	15,846
중소도시	688	284	202	5,749	11,775	249	18,947
농어촌	597	756	362	3,291	3,164	137	8,307
계 (비중)	2,546 (5.9)	1,418 (3.3)	841 (2.0)	14,732 (34.2)	22,821 (52.9)	742 (1.7)	43,100 (100.0)

나) 표본추출방법 및 배분

본 표본설계에서는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규모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현황 및 속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어린이집의 유형과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층을 나누고, 각 층 내에서는 내재적 층화(implicit stratification)을 통한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규모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추출하였다. 어린이집 규모는 20명 이하, 21~39명, 40~79명, 80명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정렬하였으며, 각 범주내에서 다시 어린이집을 시도에 따라 정렬한 후 계통추출함으로써 지역별로 골고루 표본이 추출되도록 하였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고 모집단에서 유형별 구성비율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유형별로 제곱근 비례배분 방식으로 어린이집 유형별 표본크기를 정한 후, 각 유형 내에서 지역규모별 모집단 구성비율에 따라 층별로 표본을 배분하였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제곱근 비례배분을 통해 층별로 전체 4,300개 표본을 배분한 결과 <표 I-2-2>와 같이 국공립 521개소, 사회복지법인 388개소, 법인·단체 등 299개소, 민간 1,252개소, 가정 1,559개소, 직장 281개소로 배분되었다. 유형 및 지역 규모 층별로 배분된 표본크기를 기준으로 각 층에서 추출된 최종 표본을 시설유형, 지역규모 및 어린이집 정원규모 범주에 따라 정리한 최종 원표본 현황은 <표 I-2-3>과 같다. 한편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모두 20명 이하 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정어린이집 모집단의 경우 지역규모에 따라 3개 층으로 나누어 표본을 비례 배분한 후, 각 층 내에서 어린이집 소재지에 따라 시도별로 정렬을 한 후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최종 지역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 현황은 <표 I-2-4>와 같다.

<표 I-2-2> 시설유형별 제곱근 비례 배분 결과

구분	단위: 개소,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계
표본규모	521	388	299	1,252	1,559	281	4,300
구성비율(%)	12.1	9.0	7.0	29.1	36.3	6.5	100.0

〈표 1-2-3〉 시설유형별 지역 및 정원 규모에 따른 총별 표본

구분	모집단				표본				단위: 개소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국공립									
20명 이하	31	3	36	70	9	0	5	14	
21~39명	119	141	106	366	21	29	24	74	
40~79명	618	267	306	1,191	127	55	63	245	
80명 이상	493	277	149	919	101	57	30	188	
소계	1,261	688	597	2,546	258	141	122	521	
사회복지법인									
20명 이하	8	0	0	8	3	0	0	3	
21~39명	13	12	34	59	2	3	9	14	
40~79명	118	101	235	454	32	28	64	124	
80명 이상	239	171	487	897	66	48	133	247	
소계	378	284	756	1,418	103	79	206	388	
법인·단체									
20명 이하	26	0	2	28	10	0	1	11	
21~39명	33	24	57	114	11	9	20	40	
40~79명	162	89	174	425	57	31	62	150	
80명 이상	56	89	129	274	20	32	46	98	
소계	277	202	362	841	98	72	129	299	
민간									
20명 이하	12	8	7	27	1	0	1	2	
21~39명	2,169	2,475	1,192	5,836	183	210	101	494	
40~79명	2,170	1,857	890	4,917	185	158	75	418	
80명 이상	1,341	1,409	1,202	3,952	114	121	103	338	
소계	5,692	5,749	3,291	14,732	483	489	280	1,252	
가정									
20명 이하	7,882	11,775	3,164	22,821	539	804	216	1,559	
소계	7,882	11,775	3,164	22,821	539	804	216	1,559	
직장									
20명 이하	22	20	18	60	8	9	7	24	
21~39명	64	30	28	122	24	10	10	44	
40~79명	170	112	47	329	65	43	18	126	
80명 이상	100	87	44	231	38	32	17	87	
소계	356	249	137	742	135	94	52	281	
계	15,846	18,947	8,307	43,100	1,616	1,679	1,005	4,300	

〈표 Ⅰ-2-4〉 가정 어린이집 20인 이하 표본배분

지역규모	모집단	표본	
		단위: 개소	
대도시	7,882	539	
중소도시	11,775	804	
읍·면	3,164	216	
계	22,821	1,559	

다) 조사완료 표본규모

2015년 조사는 메르스 확산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휴원 등으로 조사 진행이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늘어났고, 강력 거절 등의 사유로 일부 표본이 대체되었다. 원표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표본을 대체하는 경우 가급적 인접한 지역의 동일 속성을 갖는 어린이집으로 표본을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어린이집 조사 결과, 전체 표본 4,300개소의 94.1%가 조사완료 되었고,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은 각각 506개소, 377개소, 283개소, 1,134개소, 1,480개소, 266개소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라 대부분 90% 넘는 어린이집이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9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공립(97.1%), 가정(94.9%), 직장(94.7%), 법인·단체 등(94.6%), 민간 어린이집(9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Ⅰ-2-5〉 최종 표본할당 결과 및 조사완료 현황(어린이집)

구분	표본				조사완료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국공립								
20명 이하	9	0	5	14	9	0	5	14
21~39명	21	29	24	74	20	32	26	78
40~79명	127	55	63	245	125	53	61	239
80명 이상	101	57	30	188	92	54	29	175
소계	258	141	122	521	246	139	121	506
사회복지법인								
20명 이하	3	0	0	3	0	0	0	0
21~39명	2	3	9	14	3	4	9	16
40~79명	32	28	64	124	29	28	60	117
80명 이상	66	48	133	247	63	48	133	244
소계	103	79	206	388	95	80	202	377

(표 I-2-5 계속)

구분	표본				조사완료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법인·단체								
20명 이하	10	0	1	11	0	0	2	2
21~39명	11	9	20	40	17	9	18	44
40~79명	57	31	62	150	53	29	61	143
80명 이상	20	32	46	98	19	30	45	94
소계	98	72	129	299	89	68	126	283
민간								
20명 이하	1	0	1	2	2	1	1	4
21~39명	183	210	101	494	150	201	92	443
40~79명	185	158	75	418	158	151	66	375
80명 이상	114	121	103	338	106	115	91	312
소계	483	489	280	1,252	416	468	250	1,134
가정								
20명 이하	539	804	216	1,559	491	782	207	1,480
직장								
20명 이하	8	9	7	24	8	7	5	20
21~39명	24	10	10	44	24	11	9	44
40~79명	65	43	18	126	57	45	16	118
80명 이상	38	32	17	87	38	31	15	84
소계	135	94	52	281	127	94	45	266
계	1,616	1,679	1,005	4,300	1,464	1,631	951	4,046

전체 4,300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4,300개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4,063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어린이집 원장 대상의 조사보다 완료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라, 모든 유형에서 90% 넘는 응답률을 보였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9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97.9%), 직장(96.4%), 법인·단체(94.6%), 가정(94.5%), 민간(9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2-6〉 최종 표본할당 결과 및 조사완료 현황(보육교사)

구분	표본				조사완료				단위: 개소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국공립									
20명 이하	9	0	5	14	8	0	5	13	
21~39명	21	29	24	74	18	32	25	75	
40~79명	127	55	63	245	124	55	61	240	
80명 이상	101	57	30	188	98	55	30	183	
소계	258	141	122	521	248	142	121	511	

(표 I-2-6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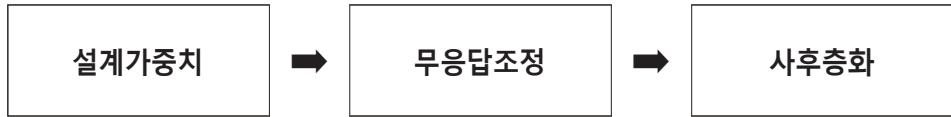
구분	표본				조사완료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사회복지법인								
20명 이하	3	0	0	3	0	0	0	0
21~39명	2	3	9	14	4	4	10	18
40~79명	32	28	64	124	31	28	56	115
80명 이상	66	48	133	247	65	47	135	247
소계	103	79	206	388	100	79	201	380
법인·단체								
20명 이하	10	0	1	11	1	0	2	3
21~39명	11	9	20	40	16	9	18	43
40~79명	57	31	62	150	56	30	61	147
80명 이상	20	32	46	98	19	30	41	90
소계	98	72	129	299	92	69	122	283
민간								
20명 이하	1	0	1	2	2	1	1	4
21~39명	183	210	101	494	153	200	90	443
40~79명	185	158	75	418	166	154	67	387
80명 이상	114	121	103	338	101	120	89	310
소계	483	489	280	1,252	422	475	247	1,144
가정								
20명 이하	539	804	216	1,559	500	772	202	1,474
직장								
20명 이하	8	9	7	24	8	7	5	20
21~39명	24	10	10	44	26	11	8	45
40~79명	65	43	18	126	60	44	18	122
80명 이상	38	32	17	87	37	31	16	84
소계	135	94	52	281	131	93	47	271
계	1,616	1,679	1,005	4,300	1,493	1,630	940	4,063

2) 가중치 작성 및 추정¹⁾

어린이집 조사와 보육교사 조사에 대한 조사완료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는 별도로 작성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어린이집 조사와 보육교사 조사의 가중치 작성 과정은 다음 [그림 I-2-1]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표본추출과정에서 생기는 설계가중치를 산출하고 두 번째는 조사과정에서 무응답을 보정하는 무응답 조정 가중치와 세 번째는 가중된 표본분포와 모집단의 분포를 일치시키는 사후충화가중치를

1) 본 보고서의 평균과 비율은 가중치가 적용된 추정치임. 단, 빈도는 조사한 표본수로 결과표에서 비율과 표본수를 곱하여 빈도와 비교할 경우 차이가 있음.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3가지 가중치를 종합하여 최종가중치를 산출한다.



[그림 1-2-1] 가중치 작성 단계

가) 어린이집 가중치

어린이집 조사 가중치는 본 표본설계에서 충화변수로 사용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 규모 충에 따라 추출확률의 역수로 설계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무응답조정은 응답자가 조사 자체에 불응한 단위무응답일 경우 가중 셀 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지역 별 응답률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시도에 따라 무응답 조정을 달리 하기 위해 모집단의 시도 분포와 조사완료 표본의 시도 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 시도 분포에 차이가 없어 충에 따라 조사완료 표본으로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정량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집단의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어린이집 정원규모 분포에 맞게 사후총을 구성하고 사후총화 보정계수를 산출해 가중치에 반영하였다.

- 설계가중치

$$w_{1hi} = \frac{N_h}{n_h}$$

여기서 충은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규모로 구성되고, N_h 는 h 충의 모집단 어린이집 수이고, n_h 는 h 충의 표본 어린이집 수이다.

- 무응답 보정계수

$$w_{2hi} = \frac{n_h}{r_h}$$

여기서, n_h 는 h 충의 표본 어린이집 수이고, r_h 는 h 충의 응답한 어린이집 수이다.

- 사후총화 보정계수

$$w^{pos} = \frac{M_k}{m_k}$$

최종적으로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구성비율을 모집단과 일치시키기 위해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및 어린이집 정원규모를 기준으로 사후총화를 수행해 최종 가중치를 산출했다. 여기서 M_k 는 k 번째 사후총의 모집단 어린이집 수이고, m_k 는 k 번째 사후총의 표본 어린이집 수이다.

나) 보육교사 가중치

보육교사 조사는 표본추출 단계에서 1단계로 어린이집을 추출하고 2단계로 어린이집에서 중간경력자의 보육교사 한명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설계가중치에서 어린이집 추출확률의 역수와 표본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사 추출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표본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교사의 추출확률은 2015년 4월 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육교사 수를 활용하여 추출확률의 역수를 계산해 적용하였다. 무응답 조정은 어린이집 조사 가중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고, 마지막으로 사후총화가 중치는 모집단의 보육교사 분포에 맞게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와 어린이집 정원 규모에 따라 사후총을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 설계가중치

$$w_{1hi} = \frac{N_h}{n_h} \times \frac{1}{p_{hi}}$$

여기서 층은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규모로 구성되고, N_h 는 h 층의 모집단 어린이집 수, n_h 는 h 층의 표본 어린이집 수이고, p_{hi} 는 h 층 i 번째 어린이집 교사의 추출확률이다.

- 무응답 보정계수

$$w_{2hi} = \frac{s_h}{r_h}$$

여기서, n_h 는 h 층의 표본 교사 수이고, r_h 는 h 층의 응답한 교사 수이다.

- 사후층화 보정계수

$$w^{pos} = \frac{M_k}{m_k}$$

사후층은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와 어린이집 정원규모로 구성되고, M_k 는 k 층의 모집단 교사 수이고, m_k 는 k 층의 표본 교사 수이다.

□) 추정

- 평균 추정

$$\hat{\mu} = \bar{y} = \frac{\sum_{h=1}^L \sum_{i=1}^{n_h} w_{hi} y_{hi}}{\sum_{h=1}^L \sum_{i=1}^{n_h} w_{hi}}$$

L : 층의 수

w_{hi} : h 층 i 어린이집의 최종 가중값

$w_{hi} = w_{1hi} \times w_{2hi} \times w^{pos}$

w_{1hi} : 설계가중값

w_{2hi} : 무응답 보정계수

w^{pos} : 사후층화 보정계수

y_{hi} : y 층 i 어린이집의 관측값

○ 분산 추정 (테일러 선형화 방법)

$$\hat{V}(\bar{y}) = \frac{1}{\left(\sum_{h=1}^L \sum_{i=1}^{n_h} w_{hi} \right)^2} \sum_{h=1}^L \frac{n_h(1-f_h)}{n_h - 1} \sum_{i=1}^{n_h} \{w_{hi}(y_{hi} - \bar{y}_h)\}^2$$

$$\bar{y}_h = \sum_{i=1}^{n_h} \frac{y_{hi}}{n_h}$$

- 상대표준오차

$$\widehat{CV}(\bar{y}) = \frac{\sqrt{\hat{V}(\bar{y})}}{\bar{y}} \times 100 (\%)$$

3) 조사표 개발

조사표는 2012년도 어린이집 조사 시 이용하였던 조사표를 기초로 하여 2012년 조사 이후 2015년까지 어린이집 운영 및 정책에서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였다. 2012년도 보육실태조사 실시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변경된 법령의 내용, 부처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실무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연구진이 마련한 조사표(안)은 복지부 관계자와의 협의, 학계·현장 전문가의 서면 검토 등을 거쳐 수정·보완되었으며, 수정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에 다시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조사표는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실태, 보육종사자 운영실태, 보육 영유아 현황, 보육프로그램 운영실태, 운영 평가 및 관리 영역에 대한 내용을 기본 틀로 유지하면서, 최근 보육 환경에서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안전관리 및 위생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고, 교사 급여 및 자격조건 등 실태 문항을 추가하였다.

어린이집 조사와 보육교사 조사의 주요 조사항목은 <표 I-2-7>과 <표 I-2-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2-7〉 어린이집 조사항목

구분	비고
I. 어린이집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유형, 운영 형태 및 방식,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여부 및 인식, 원장(대표자)의 공동 대표 여부, 원장과 대표자의 동일 여부, 가족 및 친인척 참여 여부 -건물형태, 구비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소유(자가, 임대) 형태 및 자본금, 놀이터, 관리 및 중개축 공사, 장애아설비
II. 어린이집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운영 형태, 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연간 운영일수, 토요일 운영 여부, 자율 보육기간 운영 형태, 시간제 일시보육, 운영 애로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여부, 교직원 채용 애로사항 -민간보험 가입 여부,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교사 대상 안전교육, 유형별 안전사고 및 장소 파악, 어린이집 안전 사고 횟수 및 원인, 사고 관련 대책, CCTV 설치 여부, 아동학대 관련법 -등하원차량 운행형태, 통학버스 등록여부, 이용자 파악 소요시간, 차량일지, 차량운영비 형태, 차량 운행 관련 준수사항 -환자 대처 방법, 건강 검진, 예방접종, 전염성 질환 대처방법 -급식재료 공동구매, 식단 작성방법, 조리 담당자, 식사장소, 위생관리, 실내공기 질 측정 및 관련법, 석면검사 및 관련법, 보건복지부 발행 매뉴얼 활용 상태
III. 보육 영유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연령별, 계층별, 가구유형별 형태, 정원관리 및 입소우선 순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 자격기준 및 유형, 장애아 통합 및 전문 어린이집 운영 여부, 향후 장애 보육 어린이집 운영 의향, 특수교사 법적 지원기준 미만 실태 및 소요 파악 -다문화가족 영유아 실태,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실태 파악, 일반 아동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여부,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여부,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면담 -시간연장보육 원인, 시간연장보육에 따른 저녁급식비 수납액, 시간연장보육료 적정 비용, 상향조정시 비용, 개선 요구사항, 시간연장보육 이용시 확인서명 여부 -24시간 보육 영유아 부모 인계 빈도, 24시간 보육 이용 가정별 형태 및 원인 -시간제보육 지정 여부, 시간제보육 업무 담당 보육교사 자격 소지 여부, 인원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관련 애로 및 지원 요구
IV. 보육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과정 운영 형태, 교재교구 비치 및 활용 실태, 보육프로그램 작성 참고자료, 연령별 프로그램 보유 및 활용 여부, 정부제공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활용 및 민족도 실태, 어린이집의 중점 보육내용 -누리과정 반 편성 형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자료,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활용 실태, 누리과정 운영비 사용처, 누리과정 도입 전반에 관한 의견,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업무 내용 및 비중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및 참여 영유아 수, 특별활동 상한액 준수여부, 특별활동 운영 업체수, 특별활동 외부 강사수, 특별활동 최상액, 특별활동 시간대 등

(표 I-2-7 계속)

구분	비고
V. 보육교직원 운영실태 및 요구	-보육교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퇴직 급제도, 2014년 퇴직 보육교사 현황 및 원인 파악, 보육과정 운영 내용,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대상자 교육 수료 여부 및 미수료 원인 파악, 보육교사 지원 및 별도 교육
VI. 운영평가 및 관리	-자체 운영평가 실시 빈도 및 평가 내용, 평가인증 상태, 평가인증제도 미 참여 이유, 평가인증 컨설팅 여부 및 받지 않은 이유, 평가인증 참여시 어려웠던 점, 평가인증 개선사항 -어린이집 수입·지출 관리, 재무관리 담당자, 클린카드 사용 여부, 재정적 여유시 사용처, 연령별 보육료 수납액, 필요경비 수납액, 보육료 상한액 준수 여부, 특별활동 운영비 관리 여부
VII. 원장 인적 사항	-지도점검 여부 및 횟수, 부모모니터링단 컨설팅 및 현장개선지도의 어린이집 질 개선에 도움 정도 및 이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운영위원회 상반기 운영 횟수, 회의록 공개 여부, 활성화 정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부모와 의사소통 방법, 부모교육, 부모참여 프로그램, 부모상담, 2014년 지역내 기관이용 -보육 관련 의견, 보육 수준 향상 정도, 보육 정책 만족도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최종 학교 전공, 소유자격증, 최초 보육교사 자격 취득기관, 총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경력, 호봉, 급여

〈표 I-2-8〉 보육교사 조사 항목

구분	비고
I. 보육교사의 근무조건과 처우	-담당 반 및 인원 현황, 하루 및 주당 근무시간, 주말 근무 횟수 및 시간, 편의공간 및 시설, 보육교사 휴식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 방법, 휴가, 산전후 및 육아휴직, 복무규정 내용 안내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법 규정 적용 여부, 전액 부담 보험, 보수교육 종류 및 횟수
II. 근무만족도	-근무 만족도 및 어려움, 보육효능감, 스트레스 및 심리적 건강, 어린이집 사이적 계획 및 이유
III. 보육정책 관련 의견	-보육 관련 의견, 보육 수준 향상 정도, 보육 정책 만족도
IV. 누리과정 관련 의견	-누리과정 연수 경험 여부, 누리과정 연수 형태 및 대체인력 지원 여부, 누리과정 도입으로 보육 서비스 질 도움 여부, 누리과정이 업무량에 미친 영향, 누리과정이 보육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V. 보육교사 인적사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자녀 명수, 미취학 자녀 보육 주체, 최종학력, 최종학력의 전공, 자격증, 최초 자격 취득기관, 어린이집 근무년도, 총 어린이집 및 현 어린이집 경력, 호봉, 현 급여(기본급 및 각종 수당), 희망급여

4) 어린이집 방문조사 실시

가) 조사준비 및 조사원 교육

본격적인 조사 실시 이전에 조사표 확정, 조사지침서 개발 및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조사 협조 공문 발송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어린이집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 게시 요청 등이 추진되었다.

무엇보다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협조와 통계청의 통계승인을 얻기 위해 수차례 실무담당 공무원과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와는 조사표 내용과 더불어 표본 추출을 위한 자료, 어린이집 단체와 어린이집의 협조 등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통계청의 통계승인은 2012년 조사에 이은 변경 승인으로 조사표의 변경 사항을 모두 보고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또한 대규모의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업체를 선정하고 조사원을 선발하여 연구진이 직접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다. 조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에 3개의 조사업체가 응찰하였으며, 기술평가회를 개최하여 1개의 업체를 선정한 후, 조사업체와 연구진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조사계획을 작성하였다.

조사업체의 조사원 교육은 조사권역을 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북·충남·세종, 광주·전북·전남, 강원, 제주권의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 별로 연구진이 방문하여 직접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시간은 5시간으로 조사 내용의 숙지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조사원은 예비 조사원을 포함하여 총 155명이었다(표 I-2-9 참조).

〈표 I-2-9〉 지역별 조사기관 및 투입 조사원수

조사지역	조사기관 수	투입조사원 수		
		산출	예비	총
전체	4,046	135	20	155
서울·인천·경기	1,882	70	9	79
부산·울산·경남	586	17	3	20
대구·경북	390	12	2	14
대전·충북·충남·세종	476	14	2	16
광주·전북·전남	503	12	2	14
강원	144	6	1	7
제주	65	4	1	5

나) 조사 실시

2015년도 보육실태조사 중 보육교사 조사를 포함한 어린이집 조사는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와 보육교사 온라인 조사의 2단계로 실시하였다. 조사원 방문 전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조사 협조 공문과 함께 조사표를 업로드하였고, 각 어린이집 원장은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조사표에 대한 응답을 작성하였다. 조사 업체의 조사원은 조사원 방문 전 전화로 각 어린이집에 연락하여 사전 방문면접일시를 협의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어린이집 조사는 조사표의 문항이 매우 많고, 서류 확인을 통해 작성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즉각적인 응답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미리 통합시스템에 업로드한 조사표에 응답대상이 미리 조사표를 완성해 두고, 조사원은 조사표 회수 시 응답을 하지 않은 문항이나 질문이 있는 문항에 대해 조사자침서와 조사원 교육 시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하여 완성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보육교사 조사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로 별도 실시되었다. 조사원은 어린이집 사전 연락 시 보육교사 조사에 응답하게 될 각 어린이집의 중간 경력자 1인을 원장을 추천받고, 온라인 조사에 필요한 교사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였다. 조사에 응답하는 보육교사는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 조사에 응하여 각 문항에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조사와 보육교사 조사는 2015년 9월 7일~12월 30일까지 약 4달 가까이 이루어졌다. 당초 1달 반 정도로 계획된 어린이집 조사 기간이 3달 가까이 늘어난 것은 조사에 대한 거부 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었으며, 이에 따라 표본 대체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조사 실시 시 9월 18일, 24일, 10월 30일에 연구진이 서울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함께 실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상의 애로 등을 청취하고 지도·점검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표본 대체 등 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5) 조사 자료처리 및 분석

조사 완료 후 분석에 적합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코딩지침서와 에디팅 가이드를 연구진이 작성하고, 조사업체에 전달하여 데이터 점검 및 오류 수정 과정에 활용하도록 하였고, 조사가 실시 중에 연구진이 각 지역에서 수거된 조사표에 대해 불시적 인 에디팅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데이터 수집에 완벽을 기하기 위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다.

조사표는 일차적으로 현지에서 조사원 및 현지 조사업체 수퍼바이저에 의해 에디팅 가이드 및 코딩지침서를 활용한 오류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부호화에 대한 확인 작업도 동시에 실시되었다.

조사 완료 후 자료 입력을 실시하였으며,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오류 검색 작업이 이루어졌다. 자료 점검 및 오류 수정 과정에서는 문항 간 논리적 모순 여부와 최솟값, 최댓값이 범주 안에 있는지 여부를 주로 점검하였고, 조사, 부호화와 전산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다. 오류 수정 작업 이후에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한 어린이집 추가 정보를 수합하고 가중치 부여를 완료한 후 분석 작업이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0.0으로 통계 처리되고, 주로 빈도분석 및 평균, 교차분석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모든 실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빈도분석 및 평균을 산출하였고, 시설유형별, 지역별, 어린이집의 규모별로 집단간 비교 분석이 실시되고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경우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수록되었다. 또한 기존의 실태조사의 결과들과 비교 가능한 부분들은 경향성 파악을 위하여 2009, 2012년도 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II. 어린이집의 설치

1. 어린이집 유형 및 설치 특성

가. 인가년도

2015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연도별 인가년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1-1>과 같다. 어린이집의 인가년도 정보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를 바탕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이번 조사 대상의 어린이집은 절반 이상이 2005년 이후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2년 3년 사이에 설립된 어린이집이 18.7%였지만, 2013년에서 2015년의 최근 3년 사이에는 7.8%로 주춤한 추세를 나타냈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 이후 설립된 비율이 10%로 비교적 높았고, 볍인·단체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2010년 이후 설립된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표 II-1-1> 어린이집 인가년도

구분	1990년 대 이전	1990~ 1994년	1995~ 1999년	2000~ 2004년	2005~ 2009년	2010~ 2012년	2013~ 2015년	계(수)	$\chi^2(df)$
	9.0	4.4	15.0	19.9	33.2	18.7	7.8		
전체	0.9	4.4	15.0	19.9	33.2	18.7	7.8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1.0	4.8	14.1	18.3	31.9	19.8	10.3	100.0(506)	
사회복지법인	1.4	4.5	15.3	20.5	36.4	15.6	6.3	100.0(377)	
법인·단체	1.1	5.1	15.0	22.3	26.7	22.3	7.3	100.0(283)	31.4(30)
민간	1.1	5.1	15.7	19.6	33.7	16.9	8.0	100.0(1,134)	
가정	0.7	4.0	15.2	19.5	33.6	19.6	7.4	100.0(1,480)	
직장	0.4	2.2	13.1	23.7	33.9	20.1	6.6	100.0(266)	
소재지									
대도시	0.7	4.3	14.7	17.2	35.2	20.0	7.9	100.0(1,464)	
중소도시	1.1	4.5	15.5	21.2	31.5	18.4	7.7	100.0(1,631)	16.9(12)
읍·면	0.9	4.4	14.6	22.2	32.9	17.3	7.6	100.0(951)	
규모									
20명 이하	0.7	3.9	15.0	19.8	33.6	19.6	7.4	100.0(1,520)	
21~39명	0.8	4.7	15.8	20.2	34.0	19.0	5.5	100.0(625)	19.3(18)
40~79명	0.9	5.0	13.7	19.5	32.0	19.7	9.3	100.0(992)	
80명 이상	1.3	4.4	16.1	20.4	33.4	16.1	8.3	100.0(909)	

(표 II-1-1 계속)

구분	1990년 대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	계(수)	$\chi^2(df)$
2012년 조사	2.9	7.8	18.8	18.3	30.5	21.7	-	100.0(4,000)	

주: 2015년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 분석 결과임.

나. 어린이집 소재 지역

2015년 보육실태조사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소재 지역을 살펴보면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37.4%, 중소도시 39.6%, 읍·면 지역 23%로 나타났다(표 II-1-2 참조). 2012년 조사의 경우 도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80.1%로 도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비율이 2012년에 비해 줄어들었고,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2012년 조사보다 약 3% 가량 늘어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50% 정도가 대도시에 위치해 있고,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경우 읍·면에 위치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규모별로는 정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중소도시에, 정원 80명 이상의 대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읍·면 지역에 위치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시설유형 및 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표 II-1-2〉 어린이집 소재 지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37.4	39.6	23.0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50.2	27.1	22.7	100.0(506)	
사회복지법인	27.6	19.0	53.4	100.0(377)	
법인·단체	32.6	24.9	42.5	100.0(283)	411.0(10)***
민간	37.1	41.1	21.9	100.0(1,134)	
가정	34.3	51.1	14.6	100.0(1,480)	
직장	48.4	36.3	15.4	100.0(266)	
규모					
20명 이하	34.7	50.3	15.0	100.0(1,520)	
21~39명	35.6	41.9	22.5	100.0(625)	188.3(6)***
40~79명	43.4	30.3	26.2	100.0(992)	
80명 이상	36.5	30.2	33.3	100.0(909)	
2012년 조사	36.3	43.8	19.9	100.0(4,000)	

*** $p < .001$

주: 2015년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 분석 결과임.

다. 어린이집 유형별 특성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이 된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은 가정어린이집이 36.7%로 가장 많았고, 민간어린이집 28.1%, 국공립어린이집 13.0%,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8.7%, 법인·단체어린이집 6.8%, 직장어린이집 6.7% 순이었다(표 II-1-3 참조).

2012년과 비교했을 때,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법인·단체의 표집이 근소하게 줄어들었고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의 표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높았고, 중소도시에는 가정어린이집 비율이 높았다. 읍·면 지역에는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어린이집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어린이집 외에는 소수이고, 21~39인 규모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이 70% 이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0~79인 규모와 80인 이상의 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이 차지한 비율이 높았으나,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비율도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1-3〉 어린이집 설립유형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계(수)	$\chi^2(df)$
전체	13.0	8.7	6.8	28.1	36.7	6.7	100.0(4,046)	
소재지								
대도시	17.4	6.4	5.9	27.9	33.7	8.7	100.0(1,464)	
중소도시	8.9	4.2	4.3	29.2	47.4	6.2	100.0(1,631)	411.0(10)***
읍·면	12.8	20.2	12.5	26.8	23.2	4.6	100.0(951)	
규모								
20명 이하	0.9	-	0.2	0.2	97.1	1.6	100.0(1,520)	
21~39명	11.9	2.3	7.5	71.1	-	7.2	100.0(625)	4,416.5(15)***
40~79명	25.5	10.9	14.3	37.5	-	11.8	100.0(992)	
80명 이상	20.3	25.6	9.1	35.5	-	9.5	100.0(909)	
2012년 조사	11.1	7.2	8.1	30.1	38.0	5.5	100.0(4,000)	
2009년 조사	10.0	9.5	-	37.5	36.2	6.9	100.0(3,204)	

*** $p < .001$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유형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유형을 살펴보면 개인 위탁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19.0%, 종교법인 14.5% 순이었다(표 II-1-4 참조).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비율이 감소하였고, 개인 위탁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읍·면지역의 경우 개인 위탁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대도시의 경우 종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위탁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20인 규모의 어린이집의 경우 직영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80명 이상의 대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종교법인과 학교법인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1-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유형

구분	개인 위탁	사회복지 법인 위탁	종교법인 위탁	학교법인 위탁	직영	단체 위탁	기타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50.2	19.0	14.5	5.5	5.2	3.9	1.7	100.0(506)	
소재지									
대도시	27.9	30.0	23.2	5.1	5.0	5.7	3.0	100.0(246)	
중소도시	68.0	11.3	2.9	11.0	4.4	2.4	-	100.0(139)	147.0(12)***
읍면	78.1	3.8	9.1	-	6.6	1.7	0.7	100.0(121)	
규모									
20명 이하	68.3	10.1	10.1	-	11.6	-	-	100.0(14)	
21~39명	70.8	7.0	5.9	5.9	6.0	4.0	0.5	100.0(78)	48.3(18)***
40~79명	51.4	20.6	12.8	2.9	5.2	5.4	1.6	100.0(239)	
80명 이상	38.6	22.2	20.7	9.6	4.4	2.2	2.4	100.0(175)	
2012년 조사	47.6	19.1	14.8	3.9	6.6	4.6	3.4	100.0(457)	
2009년 조사	7.1		71.1(법인)		16.6	4.3	-	100.0(211)	

*** $p < .001$

2) 법인·단체어린이집 위탁유형

법인·단체어린이집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1-5〉와 같다. 법인·단체어린이집의 위탁유형은 종교법인인 경우가 80%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읍·면 지역에 종교법인 어린이집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종교법인어린이집 비율이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종교법인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았으며, 대도시의 경우 기타 단체의 법인체 유형이 비교적 높았다.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모든 경우가 종교 법인이었고, 8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기타 법인인 경우가 비교적 많았지만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1-5〉 법인·단체어린이집 법인체 유형

구분	종교법인	기타 법인	기타 단체	학교법인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80.2	12.9	5.2	1.7	100.0(283)	
소재지						
대도시	69.5	17.6	11.2	1.7	100.0(89)	
중소도시	72.5	21.2	6.2	-	100.0(68)	29.9(6)***
읍·면지역	92.8	4.5	-	2.7	100.0(126)	
규모						
20명 이하	100.0	-	-	-	100.0(2)	
21~39명	80.4	10.3	9.2	-	100.0(44)	
40~79명	82.5	10.5	4.9	2.2	100.0(143)	7.2(9)
80명 이상	75.4	19.1	3.6	1.8	100.0(94)	
2012년 조사	92.7	-	4.4	2.9	100.0(227)	

*** $p < .001$

3) 직장어린이집 위탁유형

조사된 직장어린이집 266개소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전문운영기관에서 위탁하는 비중이 41%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탁이 21.1%, 학교법인 위탁 16.3% 순으로 나타났다(표 II-1-6 참조). 2012년에 비해 전문운영기관에 위탁한다는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직영 비중이 줄어들었다.

어린이집별로 살펴보면 소재지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었다. 40~79인 시설은 전문운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표 II-1-6〉 직장어린이집의 운영형태

구분	전문운영기관 위탁	개인 위탁	직영	학교법인 위탁	사회복지법인 위탁	기타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41.0	21.1	19.2	16.3	2.3	0.2	100.0(266)	
소재지								
대도시	37.9	21.2	23.4	15.5	1.6	0.4	100.0(127)	
중소도시	44.0	18.6	16.0	19.8	1.6	-	100.0(94)	10.0(10)
읍·면	43.7	26.5	13.4	10.4	6.0	-	100.0(45)	
규모								
20명 이하	32.2	19.2	42.8	5.8	-	-	100.0(20)	
21~39명	30.1	25.0	33.2	8.4	3.2	-	100.0(44)	
40~79명	54.3	19.2	11.4	11.0	3.8	0.4	100.0(118)	45.2(15)***

(표 II-1-6 계속)

구분	전문운영기관 위탁	개인 위탁	직영	학교법인 위탁	사회복지법인 위탁	기타	계(수)	$\chi^2(df)$
80명 이상	30.7	22.1	16.0	30.7	0.5	-	100.0(84)	
2012년 조사	28.3	17.4	29.2	17.8	5.9	1.4	100.0(220)	
2009년 조사	28.7	21.8	29.6	19.9	-	-	100.0(216)	

*** $p < .001$

4)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정 여부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정 여부를 살펴보았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이 20.5%로 가장 높았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는 2.1%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가 1.3%, 24시간 어린이집의 경우 0.7%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정 여부에 차이를 나타냈는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비율이 27.2%로 비교적 높았다. 직장어린이집 역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비율이 약 22%로 타 어린이집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비율도 1.5%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의 경우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고, 도시 지역의 경우 장애아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80인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휴일어린이집 지정 비율이 높았고,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24시간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표 II-1-7〉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정 여부

구분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영아 전담	시간 연장형	방과후 전담	방과후 통합	24시간	단위: %(개소)	
								휴일 보육	(수)
전체	0.5	2.1	1.3	20.5	-	0.6	0.7	0.5	(4,046)
시설유형									
국공립	0.4	2.1	1.0	17.7	-	0.6	0.2	0.2	(506)
사회복지법인	0.3	1.4	1.7	27.2	-	0.9	0.3	1.7	(377)
법인·단체	0.7	1.8	1.5	19.4	-	0.7	0.7	0.4	(283)
민간	0.4	1.8	1.2	19.2	0.1	0.7	0.6	0.4	(1,134)

(표 II-1-7 계속)

구분	장애인 전담	장애인 통합	영아 전담	시간 연장형	방과후 전담	방과후 통합	24시간	휴일 보육	(수)
가정	0.7	2.4	1.4	20.7	-	0.6	0.8	0.7	(1,480)
직장	-	2.2	0.7	22.3	-	0.4	1.5	-	(266)
소재지									
대도시	0.4	2.2	1.6	18.3	-	0.7	0.8	0.5	(1,464)
중소도시	0.6	2.1	1.0	21.1	0.1	0.6	0.7	0.5	(1,631)
읍면	0.4	1.9	1.4	22.9	-	0.8	0.4	0.8	(951)
규모									
20명 이하	0.7	2.4	1.6	20.7	-	0.6	0.9	0.7	(1,520)
21~39명	0.3	1.9	1.8	17.7	-	0.6	0.5	0.3	(625)
40~79명	0.4	1.7	0.6	19.9	0.1	0.7	0.5	0.3	(992)
80명 이상	0.4	2.0	1.3	22.6	-	0.7	0.7	0.8	(909)
2012년 조사	1.1	4.2	8.9	22.2	0.4	1.5	-	-	(4,000)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2) 2015년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 분석 결과임.

3) 2012년 조사의 경우 기타 1.8%가 별도로 조사됨.

5)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 결과 이번 조사 대상 4,046개소 중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인 경우는 6%였다(표 II-1-8 참조).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9%가 이에 해당하였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어린이집 규모별로는 21~39인 어린이집이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인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12년 조사의 경우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비율이 20% 정도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5년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확인으로 비율이 파악된 반면, 2012년 조사의 경우 응답 대상자의 직접 조사를 통해 파악된 결과로 조사 방법의 차이로 인한 바이어스로 보인다. 실제로 2012년 조사의 경우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개소수가 549개소에 달하였다.

〈표 II-1-8〉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여부

구분	의무 어린이집	아님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6.0	94.0	100.0(4,046)	

(표 II-1-8 계속)

구분	의무 어린이집	아님	계(수)	$\chi^2(df)$
시설유형				
국공립	9.0	91.0	100.0(506)	
사회복지법인	4.2	95.8	100.0(377)	
법인·단체	5.5	94.5	100.0(283)	12.95)*
민간	5.4	94.6	100.0(1,134)	
가정	6.2	93.8	100.0(1,480)	
직장	4.0	96.0	100.0(266)	
소재지				
대도시	4.4	95.6	100.0(1,464)	12.6(2)**
중소도시	7.4	92.6	100.0(1,631)	
읍면	6.3	93.7	100.0(951)	
규모				
20명 이하	6.2	93.8	100.0(1,520)	
21~39명	6.9	93.1	100.0(625)	4.4(3)
40~79명	6.3	93.7	100.0(992)	
80명 이상	4.6	95.4	100.0(909)	
2012년 조사	20.2	65.5	100.0(3,451)	

* $p < .05$, ** $p < .01$

주: 1) 2015년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 분석 결과임.

2) 2012년 조사의 경우 '모름', '무응답'값 제거함.

라.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우수한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조사 대상 어린이집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인 어린이집 제도인 '서울형 어린이집'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다.

1)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여부

조사 대상 중 공공형 및 서울형 어린이집 등 공인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비율은 총 6.8%로 공공형이 4%, 서울형이 2.8%였다(표 II-1-9 참조).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서 지정 비율이 높았고,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법인·단체어린이집에서 지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과는 달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인 경우가 일부 존재하였

다.

한편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조사 대상 중 공공형 비율은 증가하였고, 서울형 비율은 감소하였다. 2012년 조사 시점에는 부산형 어린이집과 기타 지역에 공인어린이집이 일부 존재하였다.

〈표 II-1-9〉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여부

구분	공공형	서울형	해당 안됨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4.0	2.8	93.2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	-	100.0	100.0(506)	
사회복지법인	-	0.1	99.9	100.0(377)	
법인·단체	0.6	9.5	89.9	100.0(283)	264.0(15)***
민간	9.7	4.1	86.3	100.0(1,134)	
가정	3.3	2.8	93.9	100.0(1,480)	
직장	-	-	100.0	100.0(266)	
소재지					
대도시	2.4	7.5	90.1	100.0(1,464)	
중소도시	4.2	-	95.8	100.0(1,631)	223.4(6)***
읍면	6.3	-	93.7	100.0(951)	
규모					
20명 이하	3.2	2.7	94.0	100.0(1,520)	
21~39명	2.9	4.2	93.0	100.0(625)	
40~79명	4.3	3.3	92.4	100.0(992)	29.2(9)***
80명 이상	5.8	1.4	92.8	100.0(909)	
2012년 조사	2.6	7.0	87.3	100.0(4,000)	

*** $p < .001$

주: 2012년 '해당 안됨'에 부산형 0.4%, 기타지역 공인 2.8%이 포함

2)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선정 이후 변화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공인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후 달라진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미지와 자부심이 향상되었다는 점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사 근무 만족도 향상으로 25% 정도였다. 이러한 응답 경향성은 2012년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의 이미지가 향상되고 자부심이 향상됐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으며, 법인·단체어린이집의 경우 재정운영에 있어 안정성이 생겼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선정 이후 이미지와 자부심이 향상되었다는 응답과 교사 채용이 용이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교사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8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의 경우 어린이집의 이미지와 자부심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1-10〉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선정 후 달라진 점

구분	단위: %(개소)							
	이미지· 자부심 향상	교사 만족도 향상	교사채용 용이	재정운영 안정	서비스 질 향상	보육환경 개선	원아 모집 용이	기타
전체	31.5	25.0	21.4	11.1	7.1	0.7	1.7	1.5
100.0(265)								
시설유형								
사회복지법인	-	-	100.0	-	-	-	-	100.0(1)
법인·단체	16.9	15.5	27.0	32.3	1.8	1.0	-	5.5 100.0(23)
민간	36.7	19.8	20.8	9.3	9.4	0.2	3.0	0.8 100.0(151)
가정	26.8	36.8	20.7	8.1	4.6	1.6	-	1.6 100.0(90)
$\chi^2(df)$				35.3(21)*				
소재지								
대도시	30.8	24.4	20.3	15.5	6.0	-	1.2	1.8 100.0(148)
중소도시	34.0	25.7	29.7	-	10.6	-	-	- 100.0(64)
읍·면	30.4	25.8	14.9	12.5	5.8	3.4	4.9	2.4 100.0(53)
$\chi^2(df)$				29.0(14)*				
규모								
20명 이하	26.7	36.6	20.6	8.1	4.9	1.6	-	1.6 100.0(91)
21~39명	24.7	31.3	22.1	9.6	12.3	-	-	- 100.0(42)
40~79명	31.5	11.1	22.9	17.6	9.5	-	3.8	3.6 100.0(70)
80명 이상	43.0	20.4	20.4	8.7	3.8	0.9	2.8	- 100.0(62)
$\chi^2(df)$				36.6(21)*				
2012년 조사	37.3	20.9	-	5.4	17.1	4.2	7.4	7.6 100.0(484)

* $p < .05$

3)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인지

〈표 II-1-11〉은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닌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또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93%로 공인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공공형 및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6.1%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서 공공형 및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1-11〉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인지 여부

구분	있음	없음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93.0	7.0	100.0(3,779)	
시설유형				
국공립	89.2	10.8	100.0(506)	
사회복지법인	89.3	10.7	100.0(376)	
법인단체	87.1	12.9	100.0(258)	50.0(5)***
민간	96.1	3.9	100.0(983)	
가정	94.2	5.8	100.0(1,390)	
직장	93.2	6.8	100.0(266)	
소재지				
대도시	92.6	7.4	100.0(1,315)	
중소도시	94.3	5.7	100.0(1,567)	8.1(2)*
읍·면	91.3	8.7	100.0(897)	
규모				
20명 이하	93.7	6.3	100.0(1,429)	
21~39명	94.7	5.3	100.0(583)	
40~79명	91.3	8.7	100.0(921)	8.3(3)*
80명 이상	92.4	7.6	100.0(846)	

* $p < .05$, *** $p < .001$

4)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의사 및 이유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40% 정도가 향후 운영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I-1-12 참조).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향후에 공공형 또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응답이 약 60% 정도로 높게 나타나, 해당 어린이집의 향후 운영계획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에서 공공형 및 서울형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일수록 향후에 공공형 또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1-12〉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의사

구분	있음	없음	해당없음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40.4	26.9	32.6	100.0(3,520)	
시설유형					
국공립	-	-	100.0	100.0(454)	
사회복지법인	-	-	100.0	100.0(338)	
법인·단체	15.8	34.1	50.1	100.0(225)	3,294.2(10)***
민간	59.7	40.3	-	100.0(940)	
가정	62.6	37.4	-	100.0(1,315)	
직장	-	-	100.0	100.0(248)	
소재지					
대도시	37.1	25.9	37.1	100.0(1,217)	
중소도시	48.0	29.9	22.1	100.0(1,480)	139.8(4)***
읍·면	32.1	23.2	44.7	100.0(823)	
규모					
20명 이하	60.9	36.9	2.2	100.0(1,347)	
21~39명	43.7	29.7	26.5	100.0(553)	1,144.1(6)***
40~79명	23.9	18.7	57.4	100.0(841)	
80명 이상	20.4	16.4	63.1	100.0(779)	

*** $p < .001$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을 알고 있으며 향후 공인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규모에서만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냈는데, 8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서는 우수 보육인력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규모가 4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II-1-13〉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의사 있는 이유

구분	재정 지원	공보육 기관으로서의 자부심	원활한 원아 모집	우수 보육인력 확보	체계적인 품질관리	기타	단위: %(개소)
							계(수)
전체	57.1	14.2	11.9	12.9	3.6	0.3	100.0(1,431)
시설유형							
법인·단체	61.2	10.5	10.0	10.4	7.8	-	100.0(34)
민간	56.1	11.2	13.4	15.4	3.7	0.2	100.0(566)

(표 II-1-13 계속)

구분	재정 지원	공보육 기관으로서의 자부심	원활한 원아 모집	우수 보육인력 확보	체계적인 품질관리	기타	계(수)
가정	57.6	16.5	11.0	11.3	3.3	0.4	100.0(831)
$\chi^2(df)$			16.6(10)				
소재지							
대도시	57.9	12.3	14.2	14.2	1.2	0.2	100.0(459)
중소도시	57.7	15.0	11.3	10.8	5.0	0.2	100.0(712)
읍면	53.9	15.8	9.3	16.1	4.1	0.8	100.0(260)
$\chi^2(df)$			24.5(10)				
규모							
20명 이하	57.6	16.5	11.0	11.3	3.3	0.4	100.0(831)
21~39명	64.4	9.6	12.0	10.3	3.6	-	100.0(243)
40~79명	49.1	14.4	15.2	17.5	3.3	0.6	100.0(202)
80명 이상	53.5	9.4	12.4	19.3	5.4	-	100.0(155)
$\chi^2(df)$			30.0(15)*				

* $p < .05$

한편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니지만,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을 알고 있으면서 향후에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는 920개소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강화된 관리·감독이 부담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 이유의 경우 어린이집 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냈는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형·서울형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비율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강화된 관리·감독에 대하여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80인 이상의 대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강화된 관리·감독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운영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1-14>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의사 없는 이유

구분	운영비 부족	강화된 관리·감독에 대한 부담	기타	단위: %(개소)	$\chi^2(df)$
				계(수)	
전체	47.9	42.4	9.7	100.0(920)	
시설유형					

(표 II-1-14 계속)

구분	운영비 부족	강화된 관리·감독에 대한 부담	기타	계(수)	$\chi^2(df)$
법인·단체	37.5	44.6	18.0	100.0(73)	21.4(4)***
민간	41.4	48.1	10.5	100.0(367)	
가정	54.3	37.8	7.9	100.0(480)	
소재지					
대도시	44.6	44.0	11.4	100.0(305)	
중소도시	49.8	42.3	7.9	100.0(436)	4.2(4)
읍·면	49.2	40.1	10.7	100.0(179)	
규모					
20명 이하	54.2	38.0	7.8	100.0(485)	
21~39명	49.3	41.5	9.2	100.0(156)	32.8(6)***
40~79명	43.4	44.1	12.5	100.0(153)	
80명 이상	26.3	59.3	14.4	100.0(126)	

*** $p < .001$

마. 어린이집 대표자 및 참여 친인척

1) 대표자 단독 및 공동 여부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대표자 상호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의견대립이나 재산권 문제 등 보육환경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내재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대표자는 1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보장, 헌법 상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원칙의 취지 상 어린이집의 토지·건물을 공동 소유(부부 포함)한 경우 공동대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단독 대표인지, 공동 대표인지 질문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의 99%가 단독(1인) 대표라고 응답하였고, 2명 이상의 공동 대표라고 응답한 경우는 1%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 및 어린이집 소재지, 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II-1-15〉 어린이집 대표자 단독 대표 여부

구분	단독(1인)	2명 이상 공동대표	계(수)	단위: %(개소)
전체	99.0	1.0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100.0	-	100.0(506)	

(표 II-1-15 계속)

구분	단독(1인)	2명 이상 공동대표	계(수)	$\chi^2(df)$
사회복지법인	98.3	1.7	100.0(377)	
법인단체	98.9	1.1	100.0(283)	7.9(5)
민간	98.8	1.2	100.0(1,134)	
가정	99.1	0.9	100.0(1,480)	
직장	98.8	1.2	100.0(266)	
소재지				
대도시	99.3	0.7	100.0(1,464)	
중소도시	98.7	1.3	100.0(1,631)	2.9(2)
읍·면	99.2	0.8	100.0(951)	
규모				
20명 이하	99.1	0.9	100.0(1,520)	
21~39명	99.4	0.6	100.0(625)	4.2(3)
40~79명	99.2	0.8	100.0(992)	
80명 이상	98.4	1.6	100.0(909)	

이어서 어린이집 대표가 공동대표라고 응답한 35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대표자들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부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8%로 가장 많았고, 직계존비속 27.4%, 친인척 14.6% 순이었다. 이 역시 어린이집 유형별 및 어린이집 소재지, 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II-1-16〉 (공동대표일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들 간 관계

구분	부부	직계존비속	친인척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58.0	27.4	14.6	100.0(35)	
시설유형					
사회복지법인	52.8	21.8	25.4	100.0(5)	
법인단체	11.8	48.6	39.6	100.0(3)	
민간	65.6	23.4	11.0	100.0(13)	6.2(8)
가정	55.9	32.7	11.4	100.0(11)	
직장	84.9	15.1	-	100.0(3)	
소재지					
대도시	75.8	24.2	-	100.0(11)	
중소도시	48.3	30.5	21.2	100.0(17)	3.9(4)
읍·면	56.7	24.2	19.1	100.0(7)	
규모					
20명 이하	55.9	32.7	11.4	100.0(11)	
21~39명	49.5	7.8	42.7	100.0(4)	6.8(6)
40~79명	63.5	36.5	-	100.0(8)	
80명 이상	59.0	22.4	18.6	100.0(12)	

2) 원장과 대표자 동일 여부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한지 질문한 결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66.3%로 나타났으며, 다르다는 응답은 33.7%로 나타났다(표 II-1-17 참조). 이는 2012년 조사 결과인 동일하다는 비율 66.5%, 다른 33.5%와 유사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이었으며, 법인·단체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과 대표자가 다르다는 응답이 80% 이상이었다. 어린이집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동일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이었으나 40~79인 어린이집과 80인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1-17〉 원장과 대표자 동일 여부(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제외)

구분	동일함	다름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66.3	33.7	100.0(3,274)	
시설유형				
사회복지법인	43.9	56.1	100.0(377)	
법인·단체	15.8	84.2	100.0(283)	561.1(3)***
민간	64.7	35.3	100.0(1,134)	
가정	82.2	17.8	100.0(1,480)	
소재지				
대도시	66.3	33.7	100.0(1,091)	
중소도시	70.9	29.1	100.0(1,398)	35.3(2)***
읍면	58.2	41.8	100.0(785)	
규모				
20명 이하	82.0	18.0	100.0(1,486)	
21~39명	61.2	38.8	100.0(503)	323.7(3)***
40~79명	49.2	50.8	100.0(635)	
80명 이상	50.3	49.7	100.0(650)	
2012년 조사	66.5	33.5	100.0(3,313)	
2009년 조사	55.9	43.7	100.0(1,566)	

*** p < .001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 대표자가 조사 대상 어린이집 이외 다른 어린이집을 1개소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는 평균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평균 1.82개소, 2009년 1.38개소보다 1개소 이상 증가한 결과이나, 조사대상 중 1개소의 어린이집 대표자가 동시 운영한다는 어린이집이 90

개소라고 응답한 결과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법인·단체 유형에 속하는 특정 종교법인 어린이집에서 여러 개소(90개소)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과로 추측된다.

법인·단체어린이집과 중소도시, 40~79인의 경우 대표자가 동시 운영한다는 어린이집 수가 다른 시설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특정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개소수의 최댓값(90개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도시보다는 지역규모가 더 적은 어린이집에서, 정원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동시에 운영한다는 어린이집 수가 더 많았다.

〈표 II-1-18〉 대표자의 동시 운영 어린이집 수

단위: 개(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3.00	9.08	1	90	(163)
시설유형					
사회복지법인	1.48	1.31	1	10	(26)
법인·단체	19.06	25.12	1	90	(17)
민간	1.30	0.52	1	3	(72)
가정	1.37	0.62	1	4	(48)
<i>F</i>	26.4***				
소재지					
대도시	1.40	1.06	1	12	(60)
중소도시	4.42	12.78	1	90	(77)
읍·면	2.34	2.79	1	10	(26)
<i>F</i>	21				
규모					
20명 이하	1.39	0.62	1	4	(49)
21~39명	1.26	0.46	1	3	(38)
40~79명	5.46	16.55	1	90	(38)
80명 이상	4.32	8.24	1	50	(38)
<i>F</i>	2.3				
2012년 조사	1.82	3.23	1	36	(313)
2009년 조사	1.38	1.11	1	11	(502)

*** $p < .001$

〈표 II-1-19〉 대표자가 동시 운영 어린이집 수(급간)

단위: %(개소)

구분	1개	2~3개	4~5개	6~7개	8~10개	11~50개	51개~90개	계(수)
전체	64.9	27.9	1.1	-	2.0	3.2	0.8	100.0(163)
시설유형								
사회복지법인	69.4	27.4	1.4	-	1.8	-	-	100.0(26)
법인·단체	12.1	24.1	2.2	-	18.2	34.8	8.5	100.0(17)
민간	72.3	27.7	-	-	-	-	-	100.0(72)
가정	67.8	29.8	2.4	-	-	-	-	100.0(48)
소재지								
대도시	71.8	26.8	0.6	-	0.4	0.4	-	100.0(60)
중소도시	61.6	28.0	1.9	-	0.6	6.3	1.6	100.0(77)
읍·면	58.5	30.7	-	-	10.8	-	-	100.0(26)
규모								
20명 이하	66.1	31.6	2.3	-	-	-	-	100.0(49)
21~39명	74.9	25.1	-	-	-	-	-	100.0(38)
40~79명	56.0	33.4	0.9	-	1.9	4.4	3.4	100.0(38)
80명 이상	62.7	20.4	0.9	-	6.5	9.4	-	100.0(38)

다음은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에 대표자가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개소 수가 몇 개인지 질문하였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50케이스로, 평균 2.32개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대 30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시설유형별로는 법인·단체어린이집, 지역 규모의 경우에는 중소도시, 규모에 따라서는 8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동시 운영한다는 유치원 수가 비교적 많았다. 이 역시 특정 종교 단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개소수의 최댓값(30개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II-1-20〉 대표자의 동시 운영 유치원 수

단위: 개(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2.32	4.22	1	30	(50)
시설유형					
사회복지법인	1.55	2.19	1	9	(9)
법인·단체	7.80	8.14	1	30	(7)
민간	1.05	0.23	1	2	(30)
가정	1.00	-	1	1	(4)
F	8.3***				

(표 II-1-20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소재지					
대도시	1.00	-	1	1	(20)
중소도시	3.30	6.09	1	30	(18)
읍면	3.29	4.86	1	16	(12)
<i>F</i>	1.7				
규모					
20명 이하	1.00	-	1	1	(4)
21~39명	1.00	-	1	1	(6)
40~79명	2.34	3.02	1	10	(17)
80명 이상	3.01	5.72	1	30	(23)
<i>F</i>	0.5				

*** $p < .001$

<표 II-1-21> 대표자의 동시 운영 유치원 수(급간)

단위: %(개소)

구분	1개	2~3개	4~5개	6~7개	8~10개	11개 이상	계(수)
전체	83.9	5.6	-	-	7.0	3.6	100.0(50)
시설유형							
사회복지법인	93.1	-	-	-	6.9	-	100.0(9)
법인·단체	31.9	14.4	-	-	33.6	20.1	100.0(7)
민간	94.8	5.2	-	-	-	-	100.0(30)
가정	100.0	-	-	-	-	-	100.0(4)
소재지							
대도시	100.0	-	-	-	-	-	100.0(20)
중소도시	72.3	10.5	-	-	13.6	3.5	100.0(18)
읍면	71.4	9.0	-	-	10.7	9.0	100.0(12)
규모							
20명 이하	100.0	-	-	-	-	-	100.0(4)
21~39명	100.0	-	-	-	-	-	100.0(6)
40~79명	68.0	18.8	-	-	13.2	-	100.0(17)
80명 이상	85.6	-	-	-	6.7	7.8	100.0(23)

3) 어린이집 운영의 가족 및 친인척 참여

해당 조사 대상 어린이집 운영 시 가족 및 친인척이 참여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운영에 가족 및 친인척이 참여한다는 응답은 20%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조사의 25.9%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과 민간어린이집에서 30% 이상으로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에서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가족 및 친인척이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 평균 1.55명이라고 응답되었으며, 가족 및 친인척이 최대 17명까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는 어린이집도 조사되었다. 이는 2012년 평균 1.32명보다 근소하게 증가한 수치다.

참여 인원 수를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모두 1.5명 수준으로 나타났고 직장어린이집에서만 평균 6.41명으로 나타났으나, 어린이집 운영에 가족 및 친인척이 참여한다는 케이스는 6개소로 이를 전체 직장어린이집 실태라고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표 II-1-22〉 어린이집 운영에 가족 및 친인척 참여 여부 및 인원 수

단위: %, 명(개소)

구분	참여 여부		참여 인원수				
	참여함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20.1	(3,540)	1.55	1.41	1	17	(814)
시설유형							
사회복지법인	37.6	(377)	1.57	0.86	1	10	(147)
법인·단체	15.5	(283)	1.59	1.78	1	9	(41)
민간	31.7	(1,134)	1.54	1.52	1	17	(359)
가정	18.4	(1,480)	1.44	1.06	1	7	(261)
직장	1.9	(266)	6.41	5.41	1	13	(6)
$\chi^2(df)/F$	375.4(5)***		2.8*				
소재지							
대도시	17.4	(1,218)	1.56	1.18	1	9	(254)
중소도시	19.7	(1,492)	1.61	1.86	1	17	(314)
읍·면	25.4	(830)	1.45	0.82	1	10	(246)
$\chi^2(df)/F$	23.3(2)***		3.5*				
2012년 조사	25.9	(4,000)	1.32	0.68	1	11	(1,062)
2009년 조사	28.1	(3,204)	1.34	0.73	1	10	(901)

* $p < .05$, *** $p < .001$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이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 시 참여 업무와 그 인원을 응답받은 결과이다. 가족 및 친인척이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 보육교사로 참여하는 비율은 약 63%로 그 평균은 시설당 1.39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운전기사로 종사하는 경우가 27.5%로 많았으며 시설당 평균은 1.02명이었다.

2012년과 비교해 보면 보육교사와 기타 직종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는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운전기사와 조리원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교사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직장어린이집에서 100%로 나타났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6개소의 결과로 일반화하기 힘들다. 직장어린이집에서 조리원과 사무원으로 참여한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결과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표 II-1-23〉 가족 및 친인척 참여 시 참여업무와 참여 인원

단위: %, 명(개소)

구분	보육교사		운전기사		조리원		사무원		기타	
	참여율	평균 (수)	참여율	평균 (수)	참여율	평균 (수)	참여율	평균 (수)	참여율	평균 (수)
전체	62.9	1.39 (517)	27.5	1.02 (235)	22.6	1.02 (179)	7.0	1.00 (58)	6.4	1.39 (47)
시설유형										
사회복지법인	75.5	1.14 (114)	21.1	1.01 (31)	18.6	1.01 (26)	17.8	1.00 (25)	11.6	1.09 (16)
법인·단체	65.2	1.54 (26)	31.9	1.00 (15)	15.3	1.00 (7)	7.6	1.00 (3)	4.2	1.00 (2)
민간	52.2	1.40 (188)	44.0	1.03 (159)	16.7	1.03 (59)	7.5	1.00 (26)	6.2	1.85 (19)
가정	69.9	1.39 (183)	8.6	1.00 (29)	32.6	1.00 (82)	0.8	1.00 (3)	4.1	1.00 (9)
직장	100.0	4.74 (6)	5.0	1.00 (1)	73.1	1.49 (5)	26.9	1.00 (1)	26.9	1.00 (1)
소재지										
대도시	68.3	1.44 (172)	26.2	1.02 (69)	22.7	1.00 (54)	3.5	1.00 (9)	3.7	1.15 (8)
중소도시	59.1	1.47 (187)	25.1	1.02 (86)	27.2	1.05 (80)	7.1	1.00 (23)	6.4	1.94 (18)
읍면	62.0	1.22 (158)	32.1	1.02 (80)	16.5	1.00 (45)	10.9	1.00 (26)	9.5	1.00 (21)
정원규모										
20명 이하	70.1	1.41 (184)	8.5	1.00 (29)	32.9	1.00 (83)	0.8	1.00 (3)	4.1	1.00 (9)
21~39명 이하	57.1	1.39 (70)	35.7	1.00 (47)	22.9	1.05 (27)	4.6	1.00 (5)	5.6	1.00 (7)
40~79명 이하	62.4	1.47 (109)	34.7	1.00 (64)	17.5	1.06 (32)	7.4	1.00 (12)	4.2	1.20 (5)
80명 이상	58.2	1.30 (154)	39.5	1.05 (95)	14.8	1.02 (37)	14.8	1.00 (38)	10.9	1.70 (26)
2012년 조사	63.6	1.14	23.4	1.02	21.2	1.00	6.4	1.00	7.5	1.09
2009년 조사	60.8		30.4		20.1		10.5		7.9	

2. 어린이집 건물 및 설비

가. 어린이집 건물 특성

1) 건물 형태

어린이집이 있는 건물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독건물인 경우가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32.8%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단독건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6.3%로 대다수였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아파트라고 응답한 경우가 86.4%로

대다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60%가 단독건물이라고 응답하였고, 공공시설복합건물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약 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건물 형태가 다르다는 응답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대도시의 경우 공공시설 복합건물과 종교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8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의 경우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2년과 비교해보면 단독건물의 비중이 비교적 높아졌고, 관리동의 비율도 근소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 어린이집 건물 형태

구분	단독 건물	아파트	관리동	상가 건물	종교 시설	공공시설 복합건물	직장 사옥	기타	단위: %(개소) 계(수)
전체	40.8	32.8	8.3	5.5	5.0	4.0	2.6	1.0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60.1	4.9	10.1	1.0	1.6	21.8	0.2	0.2	100.0(506)
사회복지법인	96.3	-	0.5	-	0.9	1.9	0.4	-	100.0(377)
법인·단체	42.0	0.4	5.4	1.4	48.6	2.2	-	-	100.0(283)
민간	56.5	0.8	22.3	13.9	4.9	1.0	-	0.7	100.0(1,134)
가정	8.4	86.4	0.3	2.7	0.1	0.1	-	2.1	100.0(1,480)
직장	41.7	3.4	3.7	5.1	0.4	8.8	36.8	-	100.0(266)
$\chi^2(df)$	6,500.6(35)***								
소재지									
대도시	40.0	29.8	8.3	5.9	5.4	5.7	3.9	1.0	100.0(1,464)
중소도시	30.9	42.6	10.0	5.9	3.4	3.6	2.5	1.1	100.0(1,631)
읍·면	59.2	20.8	5.5	4.1	7.1	2.0	0.5	0.9	100.0(951)
$\chi^2(df)$	290.9(14)***								
규모									
20명 이하	9.0	84.8	0.4	2.7	0.2	0.5	0.4	2.1	100.0(1,520)
21~39명	26.7	3.3	32.0	20.7	8.2	5.0	3.0	1.1	100.0(625)
40~79명	58.5	0.8	11.6	4.5	10.5	8.3	5.7	0.2	100.0(992)
80명 이상	85.1	0.3	1.8	0.7	5.0	4.7	2.5	-	100.0(909)
$\chi^2(df)$	4,194.6(21)***								
2012년 조사	39.2	34.1	7.6	5.9	5.6	5.1	-	2.5	100.0(4,000)
2009년 조사	38.5	33.3	-	7.1	3.1	9.9	-	2.9	(3,191)

*** $p < .001$

2) 사용 건물 층수

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층수를 모두 살펴본 결과, 1층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9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층이 23.7%로 가장 많았다. 3층의 경우 10.8%로 나타났다. 4층 이상 사용 비율은 2.3%로 지하 1층 이하인 4% 보다도 적게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지하 층 수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3층 이상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표 II-2-2〉 어린이집 사용 층

구분	지하	2층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이상	단위: % (개소)	
											(수)	
전체		0.1		3.9		93.9		23.7		10.8		2.1
시설유형											(4,046)	
국공립		-		3.1		93.5		22.5		10.5		1.7
사회복지법인		0.3		3.7		94.6		28.7		15.6		3.7
법인·단체		-		3.7		94.5		26.7		11.7		2.9
민간		0.1		4.8		93.8		24.3		9.6		2.0
가정		-		3.7		93.7		23.0		11.0		2.0
직장		0.4		3.7		94.1		17.6		8.1		0.4
소재지												
대도시		0.1		2.8		94.5		22.1		9.7		1.9
중소도시		0.1		5.0		92.8		25.5		11.6		2.2
읍·면		-		4.1		94.6		23.4		11.1		2.4
규모												
20명 이하		0.1		3.7		93.9		23.0		10.9		2.0
21~39명		0.2		4.7		92.4		25.7		10.8		2.6
40~79명		0.1		4.9		94.4		24.3		11.3		1.5
80명 이상		-		2.9		94.3		23.0		10.1		2.7
2012년 조사				4.7		80.7		27.9		13.4		3.3
											(4,000)	

주: 1) 종복응답 결과임.

2) 2015년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 분석 결과임.

3) 어린이집의 면적

2015년 조사 대상인 4,046개소 어린이집의 영유아 1인당 면적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II-2-3〉과 같다. 보육실 면적은 아동 1인당 평균 $4.9m^2$, 실내놀이터 $2m^2$, 실외놀이터 평균 $6.8m^2$, 옥상놀이터 $3.9m^2$, 인근놀이터 $24.3m^2$, 대지 $19.8m^2$ 평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보육실의 아동

1인당 면적 평균은 $0.87m^2$ 증가했으며, 대지의 경우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실은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8.3m^2$ 으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아동 1인당 $3.2m^2$ 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놀이터 및 대지의 경우에도 가정어린이집이 아동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다른 어린이집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은 정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보육실의 경우 중소도시가, 인근놀이터의 경우 읍·면지역에서, 옥상놀이터와 실내놀이터의 경우 대도시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2-3〉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면적

단위: m^2 (개소)

구분	보육실	실내놀이터	실외놀이터	옥상놀이터	인근놀이터	대지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9 7.3 (4,046)	2.0 3.0 (460)	6.8 10.4 (1,315)	3.9 4.0 (183)	24.3 223.2 (495)	19.8 28.9 (1,145)
시설유형						
국공립	2.7 3.1 (506)	2.5 4.3 (54)	4.6 9.8 (168)	2.3 1.9 (32)	10.5 20.9 (62)	11.1 14.7 (144)
사회복지법인	2.0 2.4 (377)	0.6 0.6 (42)	3.0 3.1 (136)	1.7 2.0 (16)	6.9 10.4 (40)	8.0 10.4 (129)
법인·단체	2.9 7.1 (283)	0.7 1.0 (40)	2.9 2.4 (106)	2.1 1.6 (15)	9.5 10.4 (28)	11.4 17.6 (90)
민간	3.2 3.9 (1,134)	1.1 1.0 (120)	4.4 6.8 (365)	2.9 2.2 (51)	14.3 26.4 (149)	14.6 19.9 (320)
가정	8.3 9.9 (1,480)	3.2 3.8 (166)	11.8 13.6 (74)	7.1 5.1 (64)	40.7 352.5 (184)	33.8 38.5 (396)
직장	2.7 3.3 (266)	1.0 1.3 (38)	4.4 4.8 (466)	1.6 1.8 (5)	39.4 240.1 (32)	14.6 28.5 (66)
<i>F</i>	124.1***	10.7***	24.7***	11.9***	0.4	22.2***
소재지						
대도시	4.7 7.4 (1,464)	2.2 3.6 (155)	6.3 9.9 (472)	4.5 4.9 (62)	18.0 31.0 (167)	19.5 27.2 (390)
중소도시	5.7 8.2 (1,631)	2.1 2.8 (180)	8.0 12.0 (549)	4.4 3.8 (81)	18.9 38.0 (210)	21.8 31.0 (478)
읍·면	3.7 5.0 (951)	1.3 2.2 (125)	5.2 6.6 (294)	2.4 1.9 (40)	43.0 455.5 (118)	16.5 27.3 (277)
<i>F</i>	24.2***	2.7	4.7**	3.2*	0.5	1.9
규모						
20명 이하	8.3 9.8 (1,520)	3.2 3.8 (174)	11.6 13.4 (479)	7.1 5.1 (65)	40.4 348.0 (188)	34.1 38.9 (406)
21~39명	4.9 4.7 (625)	1.9 2.9 (88)	7.0 11.1 (209)	4.4 2.5 (35)	23.1 33.8 (83)	20.4 23.9 (181)
40~79명	2.8 4.4 (992)	1.1 1.9 (109)	3.7 4.1 (319)	1.9 1.1 (44)	17.7 125.1 (118)	12.0 14.6 (283)
80명 이상	1.3 1.3 (909)	0.5 0.6 (89)	2.1 2.9 (308)	1.3 0.9 (39)	4.1 4.6 (106)	5.6 8.0 (275)
<i>F</i>	248.6***	17.9**	47.6***	26.0***	0.6	48.9***
2012년 조사	4.03					10.48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영유아 1인당 면적 계산 시 어린이집 정원 기준 적용함.

2) 2015년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 분석 결과임.

나. 어린이집 시설 설치

1) 기본 설치 구비

조사 대상 어린이집에서 구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질문한 결과, 조리실과 비상재해대비시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재해대비시설의 경우 2012년의 65.5%에 비해 9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근 어린이집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승하였고, 관련 법 및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급배수 시설의 경우에도 2012년 41.9%에서 2015년 72.1%로 구비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급배수 시설 구비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실의 구비 비율이 높았다. 강당의 경우 법인시설에서 구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도서관, 별도 식사공간, 양호실 등을 직장어린이집에서 구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의 경우 옥외 놀이터 설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별도 식사공간, 직원 휴게시설, 도서관, 상담실, 양호실, 강당, 교사실, 원장실 등의 공간을 비교적 많이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시설의 경우 목욕실을 제외하고 구비하고 있는 시설이 많았다.

〈표 II-2-4〉 어린이집 구비 시설

단위: % (개소)

구분	비상 재해 대비 시설	조리 실	영유 아용 변기 변기	성인 용 변기 변기	급배 수 시설	원장 설 시설	목욕 설 시설	교사 실 시설	옥외 놀이 터 터	실내 놀이 터 터	직원 휴게 시설	상담 설 시설	강당 설 시설	도서 관 시설	별도 식사 공간	양호 실 시설	중간 拭 터	옥내 拭 터	(수)
전체	99.4	98.5	92.9	88.3	72.1	61.1	54.1	36.7	35.5	33.2	21.6	21.5	15.9	12.7	9.6	9.2	7.1	3.9	(4,046)
시설유형																			
국공립	99.4	99.6	98.3	93.5	77.6	86.8	34.0	57.8	55.0	22.8	28.6	19.3	21.0	17.8	12.8	12.8	8.7	3.7	(506)
사회복지법인	100.0	98.8	98.9	98.2	81.8	82.6	39.6	63.5	79.5	38.4	39.8	33.8	34.8	21.4	14.7	14.3	17.0	6.4	(377)
법인단체	99.9	98.5	98.5	89.2	74.0	82.5	31.6	48.2	64.1	26.3	28.6	24.8	33.5	21.0	16.3	16.7	10.8	7.7	(283)
민간	99.2	98.8	98.8	85.2	74.9	77.4	40.2	38.9	40.0	28.5	24.3	34.3	21.7	14.0	4.8	9.4	6.0	5.1	(1,134)
가정	99.1	98.0	83.0	85.5	64.4	26.8	81.4	12.0	5.5	37.2	9.4	9.0	1.0	2.3	6.3	4.0	1.0	1.0	(1,480)
직장	100.0	98.1	98.8	93.0	76.7	80.9	43.7	76.1	56.6	51.7	32.3	21.8	20.3	33.8	28.1	15.9	25.6	8.2	(266)
소재지																			
대도시	99.0	98.2	94.4	88.1	74.4	62.0	52.1	38.8	31.2	31.9	21.6	20.2	16.3	13.0	7.6	9.3	7.0	4.3	(1,464)
중소도시	99.5	98.6	90.4	86.4	70.4	56.3	58.8	31.6	27.5	34.8	18.8	20.4	12.3	10.5	9.8	7.9	6.4	3.3	(1,631)
읍면	99.7	99.0	94.9	92.0	71.3	67.8	49.3	42.3	56.2	32.8	26.3	25.7	21.2	15.9	12.5	11.3	8.6	4.3	(951)
규모																			
20명 이하	99.1	98.0	83.4	85.6	64.8	27.6	80.5	12.9	5.9	37.1	9.4	8.9	1.1	2.4	6.3	4.2	1.0	0.9	(1,520)
21~39명	98.8	98.0	98.6	75.3	69.4	72.2	40.7	24.3	22.1	22.2	11.1	20.5	5.3	4.5	3.3	8.0	3.1	3.1	(625)

(표 II-2-4 계속)

구분	비상 재해 대비 시설	조리 설	영유아 용변기	성인 변기	급배 시설	원장 실	목욕 실	교사 실	육외 놀이 터	실내 놀이 터	직원 휴게 시설	상담 실	강당	도서 관	별도 식사 공간	옥내 기타 설	양호 설	중간 놀이 터	(수)
40~79명	99.5	99.1	98.3	93.2	75.5	82.4	35.5	52.2	50.7	29.4	29.2	24.1	17.5	15.6	10.5	12.3	7.0	4.1	(992)
80명 이상	100.0	99.3	99.4	96.6	82.5	86.7	39.1	68.8	78.2	38.6	41.0	40.9	46.5	32.6	18.6	15.2	20.6	9.3	(909)
2012년 조사	65.5	98.2	98.6	41.9	-	47.9	-	35.0	-	-	-	-	10.2	9.3	15.7	-	-	(4,000)	
2009년 조사	-	98.1	98.9	-	-	54.6	-	42.2	-	-	-	-	-	-	-	-	-	(3,149)	

주: 중복응답 결과임.

2) 놀이터 이용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놀이터의 종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의 99.2%가 어떤 형태로든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근놀이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의 51.4%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34.1%가 옥외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율은 약 30% 정도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인근놀이터와 실내놀이터, 옥상놀이터 사용 비율이 비교적 적어졌지만, 옥내 중간놀이터 사용 비율은 비교적 많아졌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인근놀이터 이용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경우 옥외놀이터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도시 지역은 인근놀이터 사용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읍·면 지역의 경우 옥외놀이터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의 경우 인근놀이터 사용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80인 이상의 대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옥외놀이터 사용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5>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놀이터

구분	인근놀이터	옥외놀이터	실내놀이터	옥내 중간놀이터		옥상놀이터	이용안함	(수)
				51.4	34.1			
전체 시설유형	51.4	34.1	29.8	2.8	2.5	0.8	(4,046)	
국공립	40.5	53.2	19.2	2.3	5.9	0.1	(506)	
사회복지법인	11.7	78.0	30.0	2.9	2.4	1.4	(377)	
법인·단체	25.2	63.1	23.5	5.8	2.5	1.2	(283)	
민간	49.8	38.2	25.2	4.3	3.5	0.9	(1,134)	
가정	75.3	4.5	35.7	0.5	-	0.7	(1,480)	
직장	25.7	54.7	43.0	6.1	5.0	1.0	(266)	

(표 II-2-5 계속)

구분	인근놀이터	옥외놀이터	실내놀이터	온내 중간놀이터	옥상놀이터	이용안함	(수)
소재지							
대도시	57.2	29.5	28.4	2.8	3.6	1.2	(1,464)
중소도시	57.8	25.9	31.5	2.5	2.0	0.6	(1,631)
읍·면	30.8	55.5	28.9	3.1	1.6	0.6	(951)
규모							
20명 이하	75.1	5.0	35.6	0.5	-	0.8	(1,520)
21~39명	62.5	21.4	21.0	3.0	0.5	1.6	(625)
40~79명	38.8	48.2	26.3	3.1	4.2	1.0	(992)
80명 이상	17.1	76.7	29.7	6.1	6.2	0.1	(909)
2012년 조사	58.9	34.7	31.3	0.9	4.8	0.4	(4,000)
2009년 조사	52.2	34.0	26.7	-	8.1	9.4	(3,000)

주: 중복응답 결과임.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옥외놀이터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놀이기구 설치검사 여부 및 놀이기구 설치 검사를 받았는지, 결과에 따라 놀이기구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한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설치 검사를 받은 비율은 전체의 91.2%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조사의 74.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이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설치검사를 받았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다.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80인 이상의 대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놀이기구의 설치 검사를 받았다는 비율이 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놀이기구의 교체 및 추가 설치 여부를 살펴보면 교체 및 추가 설치했다는 응답은 약 28%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에서 교체 및 추가 설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놀이기구의 교체 및 추가 설치 비율은 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6〉 놀이터 놀이기구의 설치 검사 여부 및 교체, 추가설치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설치검사 여부			교체 및 추가 설치 여부		
	검사받았음	검사받지 않았음	계(수)	교체·추가 설치했음	설치하지 않았음	계(수)
전체	91.2	8.8	100.0(1,420)	28.1	71.9	100.0(1,292)
시설유형						

(표 II-2-6 계속)

구분	설치검사 여부			교체 및 추가 설치 여부		
	검사받았음	검사받지 않았음	계(수)	교체·추가 설치했음	설치하지 않았음	계(수)
국공립	94.4	5.6	100.0(265)	26.6	73.4	100.0(251)
사회복지법인	95.1	4.9	100.0(298)	30.4	69.6	100.0(280)
법인·단체	92.5	7.5	100.0(186)	34.8	65.2	100.0(173)
민간	86.7	13.3	100.0(444)	24.2	75.8	100.0(386)
가정	79.5	20.5	100.0(78)	40.1	59.9	100.0(60)
직장	95.4	4.6	100.0(149)	25.3	74.7	100.0(142)
$\chi^2(df)$	35.4(5)***			11.2(5)*		
소재지						
대도시	91.8	8.2	100.0(444)	26.1	73.9	100.0(402)
중소도시	88.7	11.3	100.0(429)	29.5	70.5	100.0(383)
읍·면	92.8	7.2	100.0(547)	28.8	71.2	100.0(507)
$\chi^2(df)$	5.2(2)			1.4(2)		
규모						
20명 이하	80.3	19.7	100.0(86)	35.3	64.7	100.0(67)
21~39명	76.0	24.0	100.0(134)	30.2	69.8	100.0(102)
40~79명	89.8	10.2	100.0(486)	26.5	73.5	100.0(434)
80명 이상	96.4	3.6	100.0(714)	28.3	71.7	100.0(689)
$\chi^2(df)$	74.0(3)***			2.2(3)		
2012년 조사	74.1	25.9	100.0(1,438)	37.2	62.8	100.0(1,048)
2009년 조사	33.0	67.0	100.0(696)	-	-	-

* $p < .05$, *** $p < .001$

주: 2009년 조사에서는 '검사 받지 않았음'에 '잘 모르겠음' 12.1%도 포함

3)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

다음으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양방향 대피 비상구 및 출구를 설치했다고 전체 어린이집의 91%가 응답하였다. 비상계단의 경우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37%가 확보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스프링클러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의 33%가 이를 확보했다고 응답하였다. 내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확보했다는 응답도 6.7%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과 직장어린이집에서 양방향 대피 비상구 및 출구를 확보해 놓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미끄럼대와 내부 직통계단을 구비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비율은 2012년 조사에 비해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이다. 양방향 대피 비상구 및 출구 확보 비율의 경우 2012년 대비 2015년

에 36%가 상승하였고, 스프링클러 역시 약 19% 상승하였다.

〈표 II-2-7〉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및 확보 여부

구분	양방향 대피 비상구, 출구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 계단	스프링 클러	미끄 럼대	내부 직통계단 2개이상			파난총 파난교	(수)
						내부 직통계단 2개이상	파난총 파난교	기타		
전체	91.1	39.7	37.0	33.0	13.8	6.7	2.8	1.0	2.4	(4,023)
시설유형										
국공립	90.9	52.4	40.7	38.0	21.8	7.8	1.5	1.2	2.6	(503)
사회복지법인	85.3	39.8	58.7	18.6	36.9	15.3	5.7	1.3	2.7	(377)
법인·단체	91.1	43.9	33.4	22.0	21.1	11.0	6.1	1.4	-	(282)
민간	86.8	35.2	41.4	28.2	15.1	9.3	3.0	1.2	2.9	(1,127)
가정	95.3	33.0	28.6	34.9	2.5	0.5	1.8	0.6	1.6	(1,468)
직장	94.8	65.0	32.4	62.8	16.4	11.9	2.3	1.4	5.8	(266)
소재지										
대도시	91.8	42.5	38.7	34.5	12.4	8.1	3.3	1.1	2.3	(1,452)
중소도시	91.0	36.3	35.3	33.1	11.3	4.7	1.6	0.8	1.8	(1,623)
읍면	90.3	40.9	37.2	30.4	20.4	8.0	3.9	1.3	3.4	(948)
규모										
20명 이하	95.2	33.0	28.3	34.5	2.8	0.6	1.8	0.6	1.6	(1,508)
21~39명	91.6	32.7	22.5	22.7	7.5	3.4	1.0	0.1	2.6	(619)
40~79명	88.8	40.4	38.1	28.9	20.7	8.6	2.8	0.7	2.4	(987)
80명 이상	86.4	54.8	60.4	42.1	29.0	17.1	5.7	2.7	3.4	(909)
2012년 조사	55.1	-	27.6	14.1	12.5	5.3	1.5	0.6	1.0	(4,000)

주: 중복응답 결과임.

4) 장애아동을 위한 설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애아를 위한 설비를 마련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을 질문한 결과, 이 질문에 응답한 전체 3,865개소 중 바닥 안전설비와 안전봉의 응답 비율이 21.6%로 가장 높았고 근소한 정도로 훨체어 여유 공간에 대한 확보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바닥 안전설비와 안전봉 설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훨체어 여유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어린이집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바닥 안전설비 및 안전봉에 대한 필요성이, 대도시의 경우 훨체어 여유 공간에 대한 확보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바닥 안전설비 및 안전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아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와 교통편의 설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경우 학습참여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표 II-2-8〉 가장 필요한 장애아동을 위한 설비

단위: %(개소)

구분	비단 인천설비 인천봉 여유 공간 확보	휠체어 이동용 보장구	학습참 여 보조기 구	화장실 편의 시설	엘리 베이터 및 리프트	교통편 의 시설	장애인 의사소 통도구	경사로 경사로	보조견 배치	기타 없음	계(수)
전체	21.6	19.6	13.7	12.0	7.7	7.6	5.3	4.6	2.2	0.2	1.2 4.2 100.0(3,865)
시설유형											
국공립	19.6	24.0	7.1	12.3	7.4	10.0	7.9	3.1	3.2	0.2	2.3 2.7 100.0(490)
사회복지법인	18.3	19.0	12.5	11.3	5.3	15.2	7.8	2.9	2.8	-	1.8 3.2 100.0(365)
법인·단체	19.7	20.7	13.1	11.5	7.8	10.1	4.4	1.9	3.4	-	2.3 5.1 100.0(271)
민간	17.2	21.9	13.5	11.5	6.7	11.3	5.4	4.3	3.1	0.1	0.9 4.0 100.0(1,086)
가정	26.6	15.7	17.2	12.5	8.7	1.0	4.4	6.7	1.0	0.5	0.9 4.8 100.0(1,403)
직장	22.1	22.9	10.5	11.9	9.4	10.8	2.6	2.2	1.6	-	1.2 4.8 100.0(250)
$\chi^2(df)$								323.0(50)***			
소재지											
대도시	20.9	20.5	13.2	11.8	7.3	9.4	4.6	4.2	2.4	0.1	1.2 4.5 100.0(1,394)
중소도시	22.7	19.1	13.7	12.7	8.8	6.2	4.9	5.0	1.9	0.3	0.8 3.9 100.0(1,559)
읍면	20.8	19.2	14.6	11.1	6.4	6.9	7.2	4.6	2.7	0.2	2.2 4.2 100.0(912)
$\chi^2(df)$								44.1(20)**			
규모											
20명 이하	26.4	15.9	17.2	12.3	8.6	1.0	4.5	6.6	1.1	0.5	0.9 4.9 100.0(1,440)
21~39명	18.3	26.7	12.7	13.1	7.7	5.6	4.5	3.9	1.9	-	0.8 4.7 100.0(593)
40~79명	21.0	21.1	11.6	9.4	8.2	11.5	6.1	3.1	3.1	-	1.2 4.0 100.0(952)
80명 이상	16.2	19.4	10.9	13.6	5.4	15.7	6.5	3.5	3.6	0.2	2.2 2.8 100.0(880)
$\chi^2(df)$								351.2(30)***			
장애아시설											
장애아전문	3.1	0.6	16.1	19.4	13.0	15.8	19.2	9.3	-	-	3.5 7.4 100.0(40)
장애아통합	13.4	11.0	10.5	26.6	10.1	9.5	9.3	4.2	3.0	-	2.2 4.9 100.0(139)
일반	23.1	21.1	14.5	11.9	7.9	7.8	5.3	4.8	2.3	0.2	1.1 4.1 100.0(3,686)
$\chi^2(df)$								85.7(20)***			
2012년 조사	23.8	18.8	17.0	15.3	-	7.3	6.8	6.0	-	0.2	- 4.9 100.0(4,000)

** $p < .01$, *** $p < .001$

다. 건물 소유·임차

1) 소유 및 임대

다음으로 어린이집 소유 임대 형태를 질문한 결과, 자가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59.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전월세가 20%, 무상 12.2%, 월세 4.6%, 전세 1.8%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자가의 비율이 93.8%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법인·단체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자가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무상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소유 및 임대 형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의 경우에 자가 비율이, 중소도시의 경우에 전월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규모별로 살펴보면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과 8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의 경우 자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12년과 비교해보면 자가의 비율은 조금 상승하였고, 전월세의 비율이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표 II-2-9 참조).

〈표 II-2-9〉 어린이집의 소유 임대 형태

구분	자가	전월세	월세	전세	무상	기타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59.1	20.0	4.6	1.8	12.2	2.3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30.4	-	0.6	0.3	60.1	8.6	100.0(506)	
사회복지법인	93.8	-	-	-	5.5	0.7	100.0(377)	
법인·단체	69.2	1.4	1.6	-	25.0	2.8	100.0(283)	2,357.7(25)***
민간	52.5	36.2	8.6	1.4	1.0	0.3	100.0(1,134)	
가정	66.5	25.3	4.4	3.5	0.1	0.1	100.0(1,480)	
직장	47.6	5.5	5.2	1.5	28.9	11.3	100.0(266)	
소재지								
대도시	56.0	20.3	4.1	1.0	16.0	2.6	100.0(1,464)	
중소도시	56.2	24.3	5.7	2.3	9.1	2.3	100.0(1,631)	117.7(10)***
읍·면	69.3	11.9	3.3	2.3	11.5	1.6	100.0(951)	
규모								
20명 이하	65.8	24.8	4.4	3.6	1.0	0.4	100.0(1,520)	
21~39명	27.8	42.0	11.2	1.7	15.7	1.6	100.0(625)	911.0(15)***
40~79명	55.4	13.5	3.7	0.5	22.6	4.3	100.0(992)	

(표 II-2-9 계속)

구분	자가	전월세	월세	전세	무상	기타	계(수)	$\chi^2(df)$
80명 이상	73.7	3.6	1.3	0.4	17.5	3.6	100.0(909)	
2012년 조사	54.4	8.6	16.9	3.3	14.6	2.2	100.0(4,000)	
2009년 조사	67.7	-	22.5	9.9	-	-	100.0(3,073)	

*** $p < .001$

2) 임대시 전·월세

어린이집의 임대 형태가 전세인 경우 전세 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세라고 응답한 70개소의 평균 전세 금액은 1억 4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세 계약기간은 28.8개월, 즉 2년 5개월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의 전세 비용이 비교적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의 전세 비용이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 차이는 어린이집 규모에서만 나타났는데, 8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의 경우 평균 전세 금액은 5억 7천만원으로 다른 시설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12년 조사 결과에 비해 전세 금액인 1천만원 정도 줄어들었으며, 전세 계약기간도 3개월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10 참조).

〈표 II-2-10〉 어린이집 전세 보증금 및 계약기간

구분	전세금액				전세계약기간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040.2	13,710.5	1,000	70,000	28.83	14.49	(70)
시설유형							
국공립	10,466.0	1,397.1	10,000	12,000	24.00	-	(2)
민간	16,337.6	21,579.1	1,000	70,000	38.23	21.78	(14)
가정	13,176.9	10,235.6	1,340	39,000	26.83	9.71	(50)
직장	17,886.8	17,194.4	3,000	30,000	16.49	11.98	(4)
F	0.3				4.2**		
소재지							
대도시	19,596.1	15,489.0	6,500	50,000	23.89	8.45	(16)
중소도시	12,908.1	9,981.1	1,000	33,000	28.84	15.85	(35)
읍·면	12,576.3	17,319.6	1,340	70,000	32.84	15.10	(19)
F	1.3				1.7		
규모							
20명 이하	13,414.6	10,423.3	1,340	39,000	26.39	10.42	(52)
21~39명	6,008.8	3,201.5	1,000	10,000	27.61	8.67	(9)
40~79명	9,586.8	7,008.3	3,000	20,000	42.43	34.91	(5)

(표 II-2-10 계속)

구분	전세금액				전세계약기간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80명 이상	57,627.6	16,803.5	30,000	70,000	48.49	16.12	(4)
F	22.1***				4.8**		
2012년 조사	15,567.17	22,233.18	50	200,000.	31.76	22.75	(122)
2009년 조사	9,216.00	9,044.00	-	-	29.81	18.84	(281)

** $p < .01$, *** $p < .001$

전월세를 포함하여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어린이집 912개소를 대상으로 월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질문한 결과, 평균 3,33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의 월세 보증금이 비교적 높았으며,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월세 보증금이 높았다. 이러한 어린이집 유형 및 소재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월세 보증금은 300여만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조사 결과와도 비교해보면 60여만원이 낮아진 결과이다.

<표 II-2-11> 어린이집 월세 보증금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단위: 만원(개소)	
						F	
전체	3,338.93	4,966.71	0	100,000	(912)		
시설유형							
국공립	-	-	-	-	(2)		
법인·단체	881.04	1,330.17	0	3,000	(6)		
민간	2,553.21	3,097.09	0	27,500	(470)	9.9***	
가정	4,067.16	5,641.32	0	100,000	(415)		
직장	7,525.69	13,901.61	0	70,000	(19)		
소재지							
대도시	4,294.48	5,991.35	0	70,000	(326)		
중소도시	2,923.65	4,430.85	0	100,000	(460)	10.8***	
읍·면	2,293.54	3,028.44	0	20,000	(126)		
규모							
20명 이하	4,036.79	5,622.39	0	100,000	(419)		
21~39명	2,121.98	2,864.49	0	30,000	(301)	14.1***	
40~79명	3,046.81	4,287.06	0	30,000	(157)		
80명 이상	6,280.19	8,814.89	0	70,000	(35)		
2012년 조사	3,641.82	5,689.37	0	70,000	(980)		
2009년 조사	3,406.00	4,269.00	0	40,000	(147)		

*** $p < .001$

3) 융자금

어린이집의 최초 융자금과 잔여 융자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최초 융자금의 평균 금액은 2억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의 최초 융자금의 평균 금액은 3억 6,857만원, 가정어린이집의 최초 융자금의 평균 금액은 1억 2,332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의 경우에도 최초 융자금이 4억원 이상, 잔여융자금이 3억 정도로 나타났으나, 이는 3케이스의 평균으로 기부채납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잔여 융자금의 경우 평균 1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모두 잔여 융자금이 비교적 큰 금액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최초 융자금과 잔여 융자금 모두 2,000~3,000 만원 정도 늘어났다.

〈표 II-2-12〉 어린이집 융자금

단위: 백만원(개소)

구분	최초융자금		잔여융자금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4.62	241.13	182.13	270.55	(1,104)
시설유형					
국공립	446.03	74.68	312.27	237.64	(3)
사회복지법인	161.82	206.49	54.04	111.79	(28)
법인·단체	115.40	105.57	72.39	290.62	(15)
민간	368.57	315.74	346.03	395.05	(356)
가정	123.32	133.82	104.60	110.18	(699)
직장	57.65	75.40	-	-	(3)
소재지					
대도시	213.77	240.80	190.06	242.82	(398)
중소도시	196.18	232.40	177.61	297.77	(489)
읍면	206.36	260.87	177.10	256.53	(217)
규모					
20명 이하	123.38	133.68	104.37	110.17	(700)
21~39명	192.54	168.29	183.62	166.94	(60)
40~79명	260.87	249.07	251.01	451.65	(132)
80명 이상	439.51	343.70	390.30	367.90	(212)
2012년 조사	176.65	193.17	155.81	188.69	(1,125)
2009년 조사	150.86	184.50	128.00	165.80	(876)

4) 권리금

자가, 전세, 전월세 등 모든 경우에 어린이집 설치 시 권리금을 지불했는지 질문하였다. 국공립과 법인, 직장어린이집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그 결과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는 전체 28.5%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32.5%로 민간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권리금 지불여부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권리금을 지불하였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권리금을 지불했다고 응답한 개소를 대상으로 권리금을 얼마나 지불했는지 질문한 결과 약 5,6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의 평균 지불 권리금 금액은 8,958만원이었고, 가정어린이집의 평균 지불 권리금 금액은 3,773만원이었다. 이러한 비용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소재의 어린이집인 경우 권리금 지불 액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권리금 지불 비율은 32.7%에서 28.5%로 감소하였고, 권리금 지불 액수는 4,766만원에서 5,599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3〉 어린이집 설치 시 권리금 지불 금액(국공립, 법인, 직장 어린이집 제외)

단위: %, 만원(개소)

구분	권리금 지불여부			권리금 지불 액수		
	지불함 (수)	$\chi^2(df)$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28.5 (2,623)		5,599.15	5,649.87 (686)		
시설유형						
민간	23.2 (1,139)		8,957.53	7,610.01 (244)		
가정	32.5 (1,484)	525.0(5) ^{***}	3,773.31	2,898.76 (442)	41.9 ^{***}	
소재지						
대도시	27.7 (931)		6,164.76	6,228.13 (223)		
중소도시	29.4 (1,227)	33.6(2) ^{***}	5,039.00	4,699.59 (348)		3.3 [*]
읍면	27.6 (465)		6,045.28	6,679.61 (115)		
규모						
20명 이하	32.5 (1,488)		3,774.30	2,897.80 (443)		
21~39명	34.1 (442)		6,569.35	4,811.32 (139)		
40~79명	18.2 (376)	379.7(3) ^{***}	9,004.36	6,360.42 (60)		114.8 ^{***}
80명 이상	14.2 (318)		16,407.11	11,058.92 (44)		
2012년 조사	32.7 (1,937)	-	4,766.11	4,095.01 (630)		-

* $p < .05$, *** $p < .001$

라. 어린이집 시설 관리: 개보수 및 증개축

1) 개보수·증개축 횟수 및 이유

한편 지난 3년간(2012~2014) 개보수 및 증개축 공사를 실시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 시설의 52.1%가 개보수를 1회 이상 한 것으로 나타났고, 증개축의 경우는 9.9%만이 1회 이상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개보수 횟수는 2.28회로 2012년 2.06회보다 조금 늘어났고, 평균 증개축 횟수는 1.52회로 2012년 조사의 1.42회보다 조금 늘어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에서 개보수를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 개보수 공사 실시 횟수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공사 횟수가 3회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다. 증개축 공사의 경우 다른 시설보다 직장어린이집에서 실시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증개축 공사 평균 횟수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2회 이상으로 다른 시설보다 공사 실시 횟수가 많았다.

2012년 조사의 경우 개보수 공사의 비율은 약 57%였는데 2015년에 비해 5% 정도 높았고, 증개축 공사의 비율 역시 2012년 조사에 비해 1%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4〉 지난 3년간 개보수·증개축 공사 여부 및 횟수

구분	개보수 공사				증개축 공사				단위: %(개소), 회
	실시	미실시	계(수)	평균	실시	미실시	계(수)	평균	
전체	52.1	47.9	100.0(4,046)	2.28	9.9	90.1	100.0(4,046)	1.52	
시설유형									
국공립	59.9	40.1	100.0(506)	3.06	9.7	90.3	100.0(506)	2.05	
사회복지법인	59.5	40.5	100.0(377)	1.71	12.4	87.6	100.0(377)	1.16	
법인·단체	57.9	42.1	100.0(283)	2.23	7.1	92.9	100.0(283)	1.21	
민간	58.7	41.3	100.0(1,134)	2.49	12.7	87.3	100.0(1,134)	1.64	
가정	43.3	56.7	100.0(1,480)	1.62	7.1	92.9	100.0(1,480)	1.39	
직장	41.5	58.5	100.0(266)	3.81	13.0	87.0	100.0(266)	1.24	
$\chi^2(df)/F$	102.6(5) ^{***}			10.6 ^{**}	30.9(5) ^{***}			2.4 [*]	
소재지									
대도시	53.5	46.5	100.0(1,464)	2.47	10.4	89.6	100.0(1,464)	1.69	
중소도시	51.2	48.8	100.0(1,631)	2.19	8.9	91.1	100.0(1,631)	1.51	
읍·면	51.2	48.8	100.0(951)	2.12	10.8	89.2	100.0(951)	1.25	
$\chi^2(df)/F$	2.1(2)			1.5	3.2(2)			2.5	

(표 II-2-14 계속)

구분	개보수 공사				증개축 공사			
	실시	미실시	계(수)	평균	실시	미실시	계(수)	평균
규모								
20명 이하	42.9	57.1	100.0(1,520)	1.63	7.1	92.9	100.0(1,520)	1.38
21~39명	52.6	47.4	100.0(625)	2.08	10.7	89.3	100.0(625)	1.19
40~79명	55.3	44.7	100.0(992)	2.45	12.1	87.9	100.0(992)	1.62
80명 이상	63.7	36.3	100.0(909)	2.98	11.6	88.4	100.0(909)	1.75
$\chi^2(df)/F$	104.6(3)***			12.4***	22.0(3)***			2.2
2012년 조사	56.9	43.1	100.0(3,783)	2.06	11.2	88.8	100.0(3,774)	1.42

* $p < .05$, *** $p < .001$

개보수 공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개보수를 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 때문에 실시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설 안전의 강화와 평가인증 대비를 위해서 시설을 개보수했다는 비율도 4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자 개보수를 실시했다는 응답도 8.3%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약 77%가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 때문에 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수치가 높았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을 대비하고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실시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개보수를 실시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재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고, 중소도시의 경우 평가인증을 대비하기 위해서 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윱면 지역의 경우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 때문에 개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규모가 커질수록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 때문에 개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은 2012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표 II-2-15〉 개보수 공사 이유

구분	전반적인 노후화	시설 안전 강화	평가인증 대비	보육공간 확보	법적기준 준수	단위: %(개소)	
						기타	(수)
전체	56.5	47.7	42.7	15.9	8.3	7.1	(2,095)
시설유형							

(표 II-2-15 계속)

구분	전반적인 노후화	시설 양전 강화	평가인증 대비	보육 공간 확보	법적기준 준수	기타	(수)
국공립	62.8	52.0	32.5	12.4	7.6	8.6	(308)
사회복지법인	76.9	46.1	27.1	7.8	6.5	7.2	(224)
법인단체	59.4	41.0	44.4	17.2	10.5	5.7	(170)
민간	57.2	55.6	52.3	18.2	11.2	5.6	(669)
가정	47.6	38.7	46.6	16.0	5.1	6.9	(618)
직장	43.7	52.4	19.4	24.8	10.6	14.0	(106)
소재지							
대도시	55.9	52.0	43.3	16.9	10.3	7.1	(783)
중소도시	56.2	45.7	45.7	16.4	7.3	6.5	(819)
읍면	58.0	43.9	36.6	13.4	6.6	8.1	(493)
규모							
20명 이하	47.6	39.0	46.2	15.8	5.4	7.0	(630)
21~39명	51.4	45.5	49.3	20.1	5.6	5.5	(327)
40~79명	60.8	48.4	39.1	14.2	8.5	8.1	(562)
80명 이상	65.4	58.3	38.6	15.3	12.9	7.1	(576)
2012년 조사	59.4	49.8	44.2	17.8	10.6	2.5	(2,146)

주: 중복응답 결과임.

증개축을 실시한 409개소를 대상으로 증개축 공사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설의 노후화가 40.6%로 가장 많았다. 면적확대를 위해서와 정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개축 공사를 실시했다는 응답도 비교적 많았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 공간 확보를 위하여,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경우 다목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 증개축 공사를 실시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증개축 시설을 설치하고 싶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으며, 읍면 지역의 경우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증개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증개축 공사 비율은 낮아진 반면, 장애아 및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증개축 공사를 실시했다는 응답이 제시됨으로써 그 분포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2-16> 증개축 공사 이유

구분	노후화	면적 확대	정원 증가	부대시설 확보	유희공간 확보	다목적 공간 확보	휴식공간 확보	장애인 공간 확보	단위: %(개소)	
									기타	(수)
전체	40.6	23.1	17.3	16.1	13.6	9.4	7.4	2.5	11.0	(409)

(표 II-2-16 계속)

구분	노후화 증가	면적 확대	정원 확보	부대시설 확보	유희공간 확보	다목적 공간 확보	휴식공간 확보	장애인 공간 확보	기타	(수)
시설유형										
국공립	47.7	14.8	8.3	6.8	5.6	10.5	2.8	4.5	30.5	(50)
사회복지법인	42.7	23.6	1.5	21.7	18.4	6.3	2.8	7.6	3.4	(45)
법인·단체	27.5	30.1	1.4	29.1	10.4	20.8	2.4	-	6.0	(26)
민간	46.8	24.3	17.6	16.8	14.5	10.9	10.7	2.1	11.1	(146)
가정	39.2	24.1	15.3	16.2	15.4	7.9	10.4	1.4	9.0	(107)
직장	13.3	22.9	63.1	11.6	12.1	4.3	-	-	-	(35)
소재지										
대도시	41.8	20.5	17.1	12.7	12.7	5.2	8.7	4.1	12.2	(153)
중소도시	40.8	24.9	15.8	19.0	13.7	9.2	7.9	0.2	9.2	(152)
읍·면	38.3	24.7	19.8	17.2	15.0	16.5	4.8	3.3	11.5	(104)
규모										
20명 이하	39.4	23.4	16.2	17.1	15.0	9.0	10.2	1.4	8.8	(109)
21~39명	41.3	29.2	11.5	25.6	14.1	13.9	6.8	0.5	4.5	(72)
40~79명	40.0	20.7	19.8	12.8	10.6	9.9	7.1	2.5	15.3	(114)
80명 이상	41.9	21.6	19.2	12.7	15.4	6.6	5.3	5.1	12.3	(114)
2012년 조사	51.1	23.3	17.9	20.8	16.8	-	12.3	-	5.3	(445)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2) 2012년 조사에서는 '치료 공간' 2.3% 있었음.

2) 개보수·증개축 시 지원 및 비용

다음은 어린이집의 개보수와 증개축 시 정부의 지원을 받았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개보수 시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개보수 어린이집의 28.1%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과 법인 시설에서 정부 지원 수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에서 개보수 시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어린이집 규모별로는 대규모 시설의 경우 개보수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소규모 시설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 지역, 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2012년의 경우 개보수 정부지원 비율이 32.9%로 나타나 2015년은 3년 전에 비해 정부 지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개축시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증개축 409개소 중 25.9%로 나타났다. 이 역시 개보수와 마찬가지로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에서 증개축 지원 비율이 높았다. 증개축의 경우에도 읍·면지역에서 증개축 시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규모가 클수록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II-2-17 참조).

〈표 II-2-17〉 개보수·증개축 정부지원 여부

단위: %(개소)

구분	개보수			증개축		
	지원	미지원	계(수)	지원	미지원	계(수)
전체	28.1	71.9	100.0(2,096)	25.9	74.1	100.0(409)
시설유형						
국공립	59.4	40.6	100.0(308)	73.3	26.7	100.0(50)
사회복지법인	57.6	42.4	100.0(224)	56.8	43.2	100.0(45)
법인·단체	29.8	70.2	100.0(170)	13.2	86.8	100.0(26)
민간	16.0	84.0	100.0(669)	6.9	93.1	100.0(146)
가정	16.5	83.5	100.0(619)	16.0	84.0	100.0(107)
직장	21.1	78.9	100.0(106)	34.5	65.5	100.0(35)
$\chi^2(df)$	335.6(5)***			114.8(5)***		
소재지						
대도시	28.3	71.7	100.0(783)	26.4	73.6	100.0(153)
중소도시	21.2	78.8	100.0(820)	18.2	81.8	100.0(152)
읍·면	39.5	60.5	100.0(493)	36.2	63.8	100.0(104)
$\chi^2(df)$	49.9(2)***			9.6(2)**		
규모						
20명 이하	16.9	83.1	100.0(631)	16.9	83.1	100.0(109)
21~39명	27.1	72.9	100.0(327)	19.8	80.2	100.0(72)
40~79명	32.5	67.5	100.0(562)	31.0	69.0	100.0(114)
80명 이상	37.1	62.9	100.0(576)	33.4	66.6	100.0(114)
$\chi^2(df)$	68.8(3)***			11.1(3)*		
2012년 조사	32.9	67.1	100.0(2,088)	24.1	75.9	100.0(425)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어린이집을 개보수했다고 응답한 시설에서 정부 지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정부 보증융자는 어느 정도 받았는지 응답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지난 3년간 개보수를 실시한 2,096개소 어린이집 중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559 개소로, 이들 시설의 평균 정부지원금은 2,343만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9,000만원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규모 시설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부 보증융자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7개소에 불과했는데, 평균 보증융자 금액은 3,624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부 보증융자 금액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2-18〉 개보수시 정부지원금 및 정부 보증용자 비용

단위: 만원(개소)

구분	정부지원금					정부 보증용자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2,342.6	5,834.6	10	98,000	(559)	3,623.8	6,475.6	200	30,000	(37)
시설유형										
국공립	2,613.7	3,686.7	50	43,000	(168)	3,624.5	1,314.8	3,200	5,000	(2)
사회복지법인	3,324.3	4,063.9	15	37,572	(125)	15,619.9	13,796.8	899	30,000	(4)
법인·단체	2,809.8	2,507.6	500	30,000	(47)	1,636.9	1,035.7	200	3,000	(7)
민간	1,026.6	1,736.3	10	15,000	(103)	2,854.1	4,319.8	600	20,000	(17)
가정	501.1	1,152.1	10	20,000	(99)	965.3	652.0	200	2,000	(6)
직장	9,264.4	26,085.3	100	98,000	(17)	1,200.0	-	1,200	1,200	(1)
<i>F</i>	9.8***					4.8**				
소재지										
대도시	2,400.0	4,454.9	50	43,000	(194)	1,726.0	851.0	700	3,200	(10)
중소도시	2,477.9	9,267.2	10	98,000	(174)	3,132.9	5,586.6	600	20,000	(10)
읍·면	2,160.0	2,144.5	10	30,000	(191)	5,531.2	9,016.5	200	30,000	(17)
<i>F</i>	0.1					1.2				
규모										
20명 이하	496.2	1,136.3	10	20,000	(103)	965.3	652.0	200	2,000	(6)
21~39명	1,487.7	3,175.8	50	23,992	(77)	24,106.2	18,252.4	5,000	30,000	(2)
40~79명	2,294.8	2,329.0	10	30,000	(181)	4,034.6	6,442.6	600	20,000	(17)
80명 이상	3,738.3	9,076.9	100	98,000	(198)	2,031.5	674.3	200	3,000	(12)
<i>F</i>	8.1***					9.2***				
2012년 조사	1,698.3	2,128.9	10	25,000	(704)				-	

** $p < .01$, *** $p < .001$

어린이집 개보수 시 비용을 자부담에 대하여는 1,279개소가 응답했는데, 3년간 개보수에 평균 2,536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조사의 1,421만원보다 1천만원 가량 높아진 결과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자부담금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읍·면지역의 자부담 금액이 비교적 많았으며, 8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의 경우에 자부담 금액이 많았다.

한편 어린이집에서 지난 3년간 개보수에 들어간 전체 비용은 평균 2,905만원이었다. 개보수 총 비용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높았으며, 직장어린이집도 비슷한 금액을 나타냈다. 대규모 시설일수록 개보수 총 비용이 높았다.

〈표 II-2-19〉 개보수시 자부담금액 및 총비용

단위: 만원(개소)

구분	자부담금액					총 비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2,535.6	10,654.4	10	260,000	(1,279)	2,905.3	10,310.5	10	260,000	(2,096)
시설유형										
국공립	2,451.1	7,980.9	50	75,000	(134)	3,376.0	6,979.8	50	75,000	(308)
사회복지법인	2,009.5	2,325.5	30	15,000	(134)	3,808.6	4,674.7	15	37,872	(224)
법인·단체	2,476.8	4,173.3	50	22,121	(103)	3,091.4	4,109.6	50	30,000	(170)
민간	4,371.0	16,934.4	10	260,000	(461)	4,130.3	16,196.3	50	260,000	(669)
가정	747.7	1,423.5	30	20,000	(394)	758.3	1,421.3	10	20,000	(619)
직장	2,053.4	2,480.3	30	10,000	(53)	4,008.4	13,528.1	30	98,000	(106)
<i>F</i>	5.2***					6.2***				
소재지										
대도시	2,274.6	6,058.9	30	100,000	(479)	2,662.9	6,117.7	30	100,000	(783)
중소도시	2,514.6	8,833.8	10	120,000	(502)	2,794.4	9,751.4	10	120,000	(820)
읍면	3,013.8	17,475.6	30	260,000	(298)	3,453.8	15,199.5	15	260,000	(493)
<i>F</i>	0.4					0.8				
규모										
20명 이하	752.4	1,419.2	30	20,000	(403)	760.9	1,414.5	10	20,000	(631)
21~39명	1,279.5	1,858.4	10	21,000	(200)	1,605.9	3,167.7	40	30,000	(327)
40~79명	3,972.0	17,850.6	30	260,000	(336)	4,201.7	16,311.4	15	260,000	(562)
80명 이상	4,018.9	9,995.5	50	120,000	(340)	4,762.8	10,543.3	50	120,000	(576)
<i>F</i>	9.2***					15.8***				
2012년 조사	1,420.8	2,455.8	0	34,000	(2,110)				-	

*** $p < .001$

증개축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소수는 전체 증개축 개소수 409개소 중 88개소였다. 평균 정부지원금은 5,155만원이었으며, 이는 2012년 조사의 4,131만원보다 1천만원 정도 높아진 결과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 정부지원금이 제일 많았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비교적 많았다.

증개축시 정부 보증용자를 받은 개소수는 8개소로 나타났으며, 평균 4,326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2-20〉 증개축시 정부지원금 및 정부 보증용자 비용

단위: 만원(개소)

구분	정부지원금					정부 보증용자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5,154.7	12,896.4	80	98,000	(88)	4,326.1	4,409.1	200	15,000	(8)

(표 II-2-20 계속)

구분	정부지원금					정부 보증금자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시설유형										
국공립	4,071.3	4,840.6	300	22,000	(29)	200.0	-	200	200	(1)
사회복지법인	5,129.6	3,720.1	99	10,000	(26)	10,079.3	4,302.1	9,000	15,000	(2)
법인·단체	2,318.3	1,169.7	700	3,000	(5)	-	-	-	-	-
민간	4,028.4	5,032.3	150	12,000	(6)	3,826.8	3,633.6	600	9,000	(4)
가정	403.9	425.7	80	2,000	(16)	2,000.0	-	2,000	2,000	(1)
직장	25,374.7	43,930.2	200	98,000	(6)	-	-	-	-	-
<i>F</i>	4.1**					1.3				
소재지										
대도시	3,404.5	4,925.2	80	22,000	(30)	200.0	-	200	200	(1)
중소도시	9,589.7	24,559.0	92	98,000	(23)	1,228.3	-	600	2,000	(2)
읍·면	3,917.3	3,350.1	100	10,000	(35)	5,578.9	4,391.5	2,000	15,000	(5)
<i>F</i>	1.7					0.8				
규모										
20명 이하	395.0	406.9	80	2,000	(17)	2,000.0	-	2,000	2,000	(1)
21~39명	3,604.2	3,278.4	300	9,916	(12)	600.0	-	600	600	(1)
40~79명	4,805.3	3,899.4	99	12,000	(30)	5,891.4	4,936.5	200	9,000	(3)
80명 이상	9,061.1	21,511.5	400	98,000	(29)	3,033.7	4,250.0	2,000	15,000	(3)
<i>F</i>	1.7					0.2				
2012년 조사	4,131.2	5,601.1	80	34,000	(107)	-				

** $p < .01$

증개축 시 어린이집에서 자부담 비용을 들였다는 개소 수는 전체 증개축 개소 수 409개소 중 255개소로 나타났다. 평균 자부담액은 약 5,990만원이었으며, 이는 2012년 조사의 3,168만원보다 2천 7백만원 정도가 높아진 결과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증개축 총 비용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증개축에 소요된 총 비용은 평균 6,785만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역시 가장 높았으며, 민간어린이집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에서 증개축 총 비용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규모 어린이집일수록 증개축 비용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1〉 증개축시 자부담금액 및 총비용

단위: 만원(개소)

구분	자부담금액					총 비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5,989.5	32,825.2	50	600,000	(255)	6,784.6	31,323.4	50	600,000	(409)
시설유형										
국공립	1,392.6	1,397.2	100	5,000	(20)	3,973.6	4,871.3	300	22,000	(50)
사회복지법인	2,754.2	2,707.9	100	14,500	(30)	6,187.5	4,826.2	99	25,000	(45)
법인·단체	2,750.2	6,603.5	200	36,000	(20)	3,048.0	6,511.2	200	36,000	(26)
민간	8,441.1	31,094.5	100	260,000	(106)	8,565.1	30,792.1	100	260,000	(146)
가정	1,542.0	3,063.2	50	20,000	(66)	1,426.2	2,881.2	50	20,000	(107)
직장	28,519.0	115,571.6	500	600,000	(13)	34,700.8	10,847.9	500	600,000	(35)
<i>F</i>										
소재지										
대도시	7,807.3	44,744.6	50	600,000	(92)	7,622.1	41,250.4	50	600,000	(153)
중소도시	2,856.3	5,594.1	92	50,000	(99)	4,462.6	12,346.4	99	98,000	(152)
읍면	8,126.7	36,783.0	110	260,000	(64)	8,882.2	33,892.7	100	260,000	(104)
<i>F</i>										
규모										
20명 이하	1,511.9	3,036.3	50	20,000	(67)	1,407.8	2,856.7	50	20,000	(109)
21~39명	1,249.2	1,761.8	100	15,000	(48)	1,841.7	2,572.0	100	16,700	(72)
40~79명	9,773.6	34,631.8	100	260,000	(73)	10,700.1	33,208.9	99	260,000	(114)
80명 이상	9,873.5	56,127.4	100	600,000	(67)	11,416.1	50,936.8	100	600,000	(114)
<i>F</i>										
2012년 조사	3,168.1	6,662.1	0	60,000	(430)				-	

** *p* < .01

3) 시급한 개보수 공사

다음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재 시급한 개보수 공사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응답한 3,700여개소의 경우 기본설비가 26.8%로 비교적 높았다. 근소하게 도배, 도색도 25.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냈는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기본설비 개보수에 대한 시급성을 높게 진단하였고, 가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도배도색에 대한 필요성을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소재 지역별로도 차이를 나타했는데, 읍·면지역 소재의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 설비에 대한 개보수의 필요성을 높게 진단하였다. 어린이집 규모별로는 규모가 커질수록 기본설비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을,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도배도색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언급하였다.

〈표 II-2-22〉 시급한 개보수 공사

구분	기본 설비	도배 도색	보육공간 확보	안전 시설	편의 시설	방염 공사	석면 공사	제거 공사	놀이터 개보수	비상재해 대비시설	단위: %(개소)	
											기타	계(수)
전체	26.8	25.5	12.2	8.6	6.3	5.8	4.9	3.7	3.1	3.3	100.0(3,748)	
시설유형												
국공립	32.5	17.1	11.8	8.2	6.9	2.9	5.3	6.2	3.5	5.6	100.0(479)	
사회복지법인	40.9	13.0	10.5	8.8	5.3	3.6	6.6	5.6	3.4	2.3	100.0(368)	
법인·단체	31.1	16.7	12.0	7.7	3.2	3.2	13.3	5.5	3.0	4.4	100.0(263)	
민간	30.9	22.5	12.3	8.5	5.1	5.9	5.9	3.7	3.1	2.0	100.0(1,057)	
가정	18.4	34.9	12.5	8.9	7.8	8.0	2.5	1.1	2.7	3.3	100.0(1,348)	
직장	18.9	30.4	14.0	8.8	6.0	4.0	2.2	8.1	3.7	3.9	100.0(233)	
$\chi^2(df)$							346.4(45) ^{***}					
소재지												
대도시	27.7	25.4	10.6	7.8	6.1	5.7	4.9	3.9	3.8	4.4	100.0(1,346)	
중소도시	22.7	28.7	13.7	9.7	6.9	5.7	5.0	2.8	2.4	2.5	100.0(1,505)	
읍면	32.4	20.2	12.3	8.1	5.4	5.9	4.8	4.9	3.1	2.9	100.0(897)	
$\chi^2(df)$							66.9(18) ^{***}					
규모												
20명 이하	18.6	34.7	12.5	8.8	7.9	7.9	2.4	1.2	2.7	3.5	100.0(1,387)	
21~39명	25.9	25.2	15.4	8.6	6.5	5.6	5.7	2.1	3.3	1.6	100.0(580)	
40~79명	30.4	18.5	13.6	9.1	4.9	3.8	6.8	5.3	4.0	3.7	100.0(931)	
80명 이상	37.0	18.3	8.0	7.6	4.8	4.6	6.4	7.1	2.5	3.7	100.0(850)	
$\chi^2(df)$							305.9(27) ^{***}					
2012년 조사	26.9	16.2	10.8	6.9	6.1	3.0	7.2	5.9	4.5	12.6	100.0(4,000)	

*** $p < .001$

3. 시사점

본 장에서는 조사 표본 4,046개소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설치 관련 특성과 건물, 설비 등 물리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설치 및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2015년 조사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가족 및 친인척이 참여한다는 응답이 20%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12년 조사의 25.9%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에 이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력 구인이 읍면지역의 경우 더 어렵다고 해석된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보육 인력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및 조리원을 1명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2015년 조사 결과로 살펴보았을 때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은 3년 전보다 비교적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의 사용 비율이 작게나마 감소되었고, 안전에 대한 요구 및 사회적 인식 제고로 인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 비율이 2012년 65% 대에서 99.4%로 늘어남으로써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었다. 또한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및 대지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놀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터 놀이기구의 교체·설치 비율 역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서 놀이터 놀이기구의 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어린이집의 소유 임대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의 비율이 아직 6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세 비중이 20%를 차지했다. 최초융자금과 잔여융자금 역시 2억여 만원으로 2012년 대비 3천만원 정도 증가한 결과이다.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보육 아동에 대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어린이집의 매매 및 소유권 이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운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III. 어린이집 운영 일반

1. 어린이집 반 운영

가. 반 운영

운영 반의 수는 어린이집의 규모를 보여준다.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의 수를 살펴본 결과, 평균 운영 반수는 5.48개였다. 이는 2012년 조사 시 평균 5.27개, 2009년 4.54개와 비교해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현재 운영 중인 반의 수를 기관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7.91개로 상대적으로 많은 반을 운영하였고, 이에 반해 가정어린이집은 평균 3.6개의 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재지에 따라 차이를 보여 대도시가 평균 5.78개, 읍면지역 평균 5.71개로 중소도시 평균 5.06개 보다 다소 많은 반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I-1-1〉 어린이집 반 운영 개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단위: 개(개소) F
전체	5.48	3.04	1	30	(4,046)	
시설유형						
국공립	6.63	2.87	2	25	(506)	
사회복지법인	7.91	3.47	1	30	(377)	
법인단체	5.90	2.48	2	25	(283)	206.8***
민간	6.28	3.02	1	22	(1,134)	
가정	3.60	0.88	1	10	(1,480)	
직장	6.56	4.91	1	27	(266)	
소재지						
대도시	5.78	3.20	1	27	(1,464)	
중소도시	5.06	2.86	1	30	(1,631)	25.9***
읍면	5.71	3.01	1	22	(951)	
규모						
20명 이하	3.59	0.88	1	10	(1,520)	
21~39명	4.37	1.40	1	13	(625)	1311.3***
40~79명	5.75	1.93	1	17	(992)	
80명 이상	9.17	3.79	2	30	(909)	
2012년 조사	5.27	2.74	1	28	(3,998)	-
2009년 조사	4.54	2.38	1	30	(3,112)	-

*** p < .001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반당 평균 영유아 수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전체 반당 평균 영유아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과 유사하거나 더 낮게 반당 평균 영유아수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반별 정원(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만0세반 3명, 만1세반 5명, 만2세반 7명, 만3세반 15명, 만4세 이상 20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보육환경, 보육수요,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어린이집의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초과보육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I-1-2〉 운영하는 반당 평균 영유아 수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혼합	혼합	혼합	혼합	4·5세	방과	장애	장애	누리
							(0·1 세)	(1·2 세)	(2·3 세)	(3·4세 이상)	이상	후	아종	아방	장애
전체	2.20	4.15	6.18	12.31	15.59	15.30	2.08	3.97	6.52	10.94	15.31	11.42	2.57	2.71	2.74
시설유형															
국공립	2.84	4.79	6.79	13.66	17.51	16.89	2.87	4.75	9.00	12.13	16.94	19.25	2.34	2.43	2.73
사회복지법인	2.42	4.61	6.56	13.45	16.10	16.12	2.49	4.76	7.33	12.35	15.69	12.17	2.70	2.81	2.85
법인·단체	2.51	4.77	6.70	12.96	16.69	15.47	2.45	4.73	-	11.59	15.71	11.10	2.25	3.07	2.91
민간	2.25	4.22	6.22	11.56	15.97	15.47	2.17	4.10	7.06	10.64	14.55	9.08	2.71	2.81	2.35
가정	1.99	3.64	5.70	5.08	4.00	11.00	1.94	3.65	5.82	6.00	11.00	-	-	2.00	-
직장	2.46	3.96	5.61	10.15	11.35	10.48	2.34	3.71	-	8.42	11.77	11.67	-	-	-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 분석 결과임.

혼합연령반을 한 반이라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전체 표본 어린이집 중 56.6%인 2,303개소에서 평균 1.56개의 혼합연령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2012년 결과와 유사하다.

혼합연령반 운영여부를 시설유형별, 소재지별, 정원규모별로 살펴보면,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61.9%로 가장 운영 비율이 높았고 국공립의 경우는 46.4%로 가장 낮았다. 기관이 위치한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59%)에서, 규모별로는 중간 규모인 40~79명 재원 어린이집(64.5%)에서 혼합연령반의 운영 비율이 높았다.

〈표 III-1-3〉 혼합연령반 운영 여부 및 운영 개수

구분	운영비율 (수)	혼합연령반 운영 개수				단위: %, 개(개소)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56.6 (4,046)	1.56	1.15	1	30	(2,303)
시설유형						

(표 III-1-3 계속)

구분	운영비율	(수)	혼합연령반 운영 개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국공립	46.4	(506)	1.65	1.61	1	15	(233)
사회복지법인	59.7	(377)	2.13	2.18	1	30	(213)
법인·단체	61.9	(283)	1.74	1.18	1	9	(175)
민간	57.6	(1,134)	1.55	0.98	1	10	(658)
가정	59.0	(1,480)	1.41	0.63	1	4	(891)
직장	50.7	(266)	1.30	0.77	1	6	(133)
$\chi^2(df)/F$	34.6(5)***		13.3***				
소재지							
대도시	54.5	(1,464)	1.54	1.19	1	14	(813)
중소도시	57.3	(1,631)	1.51	1.07	1	30	(929)
읍·면	59.0	(951)	1.67	1.22	1	15	(561)
$\chi^2(df)/F$	5.5(2)		5.1**				
규모							
20명 이하	59.2	(1,520)	1.43	0.69	1	7	(918)
21~39명	61.4	(625)	1.74	1.48	1	13	(384)
40~79명	64.5	(992)	1.59	1.35	1	15	(640)
80명 이상	40.2	(909)	1.65	1.25	1	30	(361)
$\chi^2(df)/F$	133.3(3)***		21.9***				
2012년 조사	57.3	(3,917)	1.58	1.06		16	(2,261)
2009년 조사	-		1.40	1.10		17	(2,121)

** $p < .01$, *** $p < .001$

나. 상위반 및 하위반 편성 현황

반 편성의 기준은 연령별 편성을 원칙으로 하나 1, 2월생과 만 0세아의 경우는 상위반 편성이 가능하고, 취학유예아동, 장애아, 하위반 희망 아동의 경우에는 하위반 편성이 가능하다.²⁾ 현재 상위반과 하위반 편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위반 편성을 한 명이라도 운영하는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중 6.1%이며 하위반의 경우는 4.9%였다. 상위반 편성의 경우는 1,2월생이 허용된 경우가 4.9%, 만0세아 1.7%로, 하위반의 경우는 하위반을 희망하는 경우가 2.3%, 장애아인 경우가 2.1%, 취학유예의 경우가 0.9%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반 또는 하위반 등 예외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높지 않아 연령별 반편성이 기준으로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보건복지부, 2015: 56~57

〈표 III-1-4〉 상위반 또는 하위반 편성 어린이집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상위반 편성			(수)	하위반 편성			(수)
	운영비율	1, 2월생	만0세아		운영비율	취학유예	장애아	
전체	6.1	4.9	1.7	(4,046)	4.9	0.9	2.1	2.3
시설유형								
국공립	6.3	6.1	0.4	(506)	9.9	2.3	7.1	2.3
사회복지법인	11.0	7.4	4.0	(377)	8.8	3.1	4.5	3.1
법인·단체	8.4	8.1	0.7	(283)	4.0	-	2.6	1.5
민간	7.0	5.4	2.1	(1,134)	5.3	1.0	1.4	3.2
가정	2.6	2.0	1.3	(1,480)	2.4	0.1	0.3	2.0
직장	11.4	9.5	2.2	(266)	2.9	1.1	1.1	1.1
소재지								
대도시	6.5	5.5	1.6	(1,464)	5.4	0.9	3.3	1.8
중소도시	4.9	3.7	1.7	(1,631)	4.5	0.7	1.5	2.4
읍·면	6.1	5.8	1.7	(951)	4.8	1.3	1.1	3.1
규모								
20명 이하	2.9	2.0	1.6	(1,520)	2.4	0.1	0.5	1.9
21~39명	6.1	4.5	1.8	(625)	4.0	0.3	1.1	2.6
40~79명	7.8	7.0	1.2	(992)	6.2	1.8	3.7	1.3
80명 이상	9.5	7.6	2.2	(909)	8.2	1.9	3.7	4.1

〈표 III-1-5〉 상위반 또는 하위반 편성 해당 영유아 평균 수

단위: 명(개소)

구분	상위반 편성			(수)	하위반 편성			(수)
	평균	1, 2월생	만0세아		평균	취학유예	장애아	
전체	1.86	1.57	2.17	(243)	2.82	1.69	4.52	1.20
시설유형								
국공립	1.53	1.46	3.00	(30)	2.45	1.66	2.48	1.12
사회복지법인	2.26	1.65	3.16	(36)	6.71	1.91	11.11	1.17
법인·단체	1.48	1.40	1.00	(25)	2.19	20.00	2.02	1.36
민간	1.74	1.47	2.10	(78)	2.44	1.28	5.58	1.23
가정	2.31	1.93	1.68	(44)	1.18	1.98	1.00	1.19
직장	1.72	1.61	2.05	(30)	1.06	1.00	1.00	1.00
소재지								
대도시	1.91	1.60	2.25	(91)	3.50	1.66	4.59	1.11
중소도시	1.85	1.67	1.72	(82)	2.74	2.03	5.14	1.26
읍·면	1.78	1.41	2.80	(70)	1.71	1.39	2.61	1.19
규모								
20명 이하	2.30	1.88	1.82	(48)	1.90	1.98	5.01	1.19
21~39명	1.24	1.14	1.37	(33)	4.33	1.25	12.44	1.28

(표 III-1-5 계속)

구분	상위반 편성			(수)	하위반 편성				(수)
	평균	1, 2월생	만0세아		평균	취학유예	장애아	하위반 희망	
40~79명	1.84	1.69	2.09	(81)	3.63	2.12	4.65	1.33	(73)
80명 이상	1.92	1.48	3.06	(81)	2.07	1.28	2.63	1.12	(66)

다. 반별 정원 초과 운영 현황

다음으로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 초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반별 정원(교사 대 아동 비율)은 원칙적으로 만0세반 3명, 만1세반 5명, 만2세반 7명, 만3세반 15명, 만4세 이상 20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보육환경, 보육수요,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어린이집의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초과보육 인정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만0세반의 경우 반정원을 초과한 보육을 인정하지 않으나, 만1세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 1:7명 이내, 만2세반은 1:9명 이내, 만3세반은 1:18명 이내, 만4세 이상 반은 1:23명 이내로 초과보육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³⁾조에 의해 별도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먼저 한 연령반이라도 반별 정원 초과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어린이집 중 22.5%가 이에 해당하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반별 정원 초과반이 한 연령반이라도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가장 많아 39.1%이며, 이밖에 민간어린이집 38.4%, 법인·단체어린이집 35.0%, 직장어린이집 13.3%, 국공립어린이집 7.4%, 가정어린이집 1.5%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농어촌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읍·면지역이 34.7%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는 19.1%, 대도시 18.7%로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2. 행정구역상 면 지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도시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 초과반 운영 어린이집 비율은 유사하였다.

규모별로는 정원 규모가 클수록 반별 정원 초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비율이 높아서 정원 규모 80명 이상 어린이집의 34.2%, 40~79명 규모 어린이집 26.7%, 21~39명 규모 어린이집 22.5%, 20명 이하 어린이집 13.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반별 정원 초과반 운영 비율을 연령반별로 살펴보면,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조사 시점 현재 만2세반 15.3%, 만1세반 11.4%, 만3세반 4.2%의 순으로 정원을 초과한 반이 있다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2012년 만1세반 23.3%, 만2세반 21.7%, 만3세반의 8.5%가 정원 초과반으로 운영되었던 결과와 비교 시 상당히 개선된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이 만1세반(19.9%), 만2세반(27.4%) 반별 정원 초과반 운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 밖에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어린이집에서도 만 1세와 만2세반의 정원이 초과된 경우가 많았다. 규모별로는 정원 80명 이상 어린이집에서의 반별 정원 초과반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령반별 초과 아동 수는 만0세반 평균 0.07명, 만1세반 평균 0.88명, 만2세반 평균 1.48명, 만3세반 평균 0.52명, 만4세반 평균 0.16명, 만5세반 평균 0.14명으로 만2세반의 초과보육 아동 수가 가장 많고, 만1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만0세반 순으로 초과보육 아동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반별 정원 초과반 운영 어린이집 비율 및 영유아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정원초과반 운영 어린이집 비율	정원 초과 반 비율						정원 초과 영유아 반 평균 초과 영유아 수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수)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22.5	1.3	11.4	15.3	4.2	1.7	1.5	(4,046)	0.07	0.88	1.48	0.52	0.16	0.14
시설유형														
국공립	7.4	1.6	5.2	4.3	1.4	0.8	0.8	(506)	0.26	1.30	1.30	0.68	0.14	0.17
사회복지법인	39.1	2.3	18.7	25.8	15.0	4.3	4.4	(377)	0.06	0.94	1.73	1.05	0.23	0.25
법인·단체	35.0	2.8	14.4	25.6	9.4	3.7	2.6	(283)	0.10	0.71	1.43	0.65	0.18	0.12
민간	38.4	1.4	19.9	27.4	7.1	3.6	3.1	(1,134)	0.05	0.97	1.69	0.55	0.20	0.16
가정	1.5	0.8	6.7	8.1	0.2	-	-	(1,480)	0.07	0.63	0.87	0.02	-	-
직장	13.3	-	1.3	1.3	0.6	-	-	(266)	-	0.93	2.27	0.55	-	-
소재지														
대도시	18.7	-	8.7	12.6	3.3	1.3	0.9	(1,464)	-	0.75	1.40	0.37	0.12	0.08
중소도시	19.1	0.1	8.3	13.5	2.9	1.1	0.9	(1,631)	0.02	0.70	1.37	0.39	0.11	0.08
읍면	34.7	5.4	21.2	22.7	8.1	3.5	3.6	(951)	0.18	1.16	1.63	0.79	0.23	0.24

(표 III-1-6 계속)

구분	정원초과반 운영 어린이집 비율	정원 초과 반 비율						정원 초과 영유아 반 평균 초과 영유아 수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수)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규모														
20명 이하	13.0	0.8	6.5	7.9	0.2	-	-	(1,520)	0.07	0.63	0.87	0.02	-	-
21~39명	22.5	1.0	13.0	15.1	0.9	0.1	0.1	(625)	0.05	0.97	1.09	0.06	-	-
40~79명	26.7	2.1	14.1	18.5	5.5	1.3	1.1	(992)	0.10	0.91	1.41	0.42	0.11	0.08
80명 이상	34.2	1.5	15.7	24.4	12.1	6.4	5.7	(909)	0.05	0.98	2.11	1.16	0.37	0.33
2012년 조사	-	1.9	23.3	21.7	8.5	3.6	2.9	(4,000)	0.10	1.12	1.21	0.59	0.25	0.17

주: 각 반별 초과보육 비율 및 영유아 수는 중복응답임.

2.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현황

가. 입소 시 제출 서류 관리

어린이집의 입소 아동 관리 현황과 관련해, 먼저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 시 부모로부터 제출 받는 서류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생활기록부, 반 편성 신청서, 귀가 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특별활동 동의서, 재직 증명서와 같은 부모의 취업 증빙 서류, 예방접종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차량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보기로 제시된 서류 중 신규 입소 시 영유아 부모로부터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응급처치동의서로 나타났다(99.2%). 다음으로 귀가 동의서도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제출받고 있으며(99.1%), 생활기록부 92.4%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예방접종확인서 89.7%, 특별활동 동의서 88.2%,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82.6%, 주민등록등본 81.4%, 부모 취업 증빙 서류 63.1%의 순으로 많이 제출받고 있었다. 입소우선 순위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 부모의 취업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취업 모 가정의 영유아를 1명 이상 보육하고 있다는 결과와 비추어 볼 때, 취업 증빙서류 제출받는 비율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단,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이 100%되지 않을 경우 입소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입소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모 취업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시설유형별로 보면, 모든 유형에서 응급처치 동의서와 귀가동의서를 제출 받는 비율은 98.0% 이상으로 높고, 반편성 신청서는 모든 유형에서 20% 이내로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나나, 이 외 부분에서는 몇 가지 시설별 특징이 나타난다.

부모 취업증빙서류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91.4%), 직장어린이집(76.9%)이 전체 평균(63.1%) 이상 받고 있었다. 타 시설 유형에 비해 부모 취업 증빙 서류를 제출받는 비율이 91.4%로 현저히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맞벌이 가정 증빙 서류 관리를 가장 철저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밖에 국공립어린이집은 특별활동동의서(96.6%), 예방접종확인서(92.4%), 개인정보활용동의서(89.2%)를 제출받는 비율도 타 시설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재지 별로는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생활기록부(94.4%), 부모 취업 증빙 서류(71.6%), 예방접종확인서(90.3%)을 제출받는 비율이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나머지 서류의 경우는 읍면지역 소재 어린이집이 제출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의 정원 규모에 따라 제출 받는 비율에 눈에 띄는 차이가 있는 서류는 반편성신청서, 특별활동동의서, 부모 취업증빙서류 정도로 규모가 클수록 해당 서류를 제출받는 비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대부분의 서류를 제출받는 비율이 높아졌으나 생활기록부 제출받는 비율은 2012년 94.8%에서 2015년 92.4%로 소폭 하락하였고, 제출받는 비율이 증가한 서류 중에서는 특히 ‘부모 취업 증빙서류’의 증가폭이 컸다. 2012년 17.5%에 불과하였던 제출받는 비율이 63.1%로 급증하였다. 한편 2012년에 조사되지 않았던 항목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82.6%의 어린이집에서 제출받는다고 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아진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한편 해당 보기 이외 ‘기타’의 응답 비율이 19.2%로 다소 높았는데, 응답된 기타 서류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검진 서류’, ‘영상기기 활용동의서(CCTV)’, ‘가정양육조사서’, ‘알레르기 확인서’, ‘필요경비동의서’, ‘실종아동 등 사전등록신청서’ 등이 해당된다.

〈표 III-2-1〉 신규 입소 시 제출서류

구분	생활기록부	반편성신청서	귀가동의서	응급처치동의서	특별활동동의서	부모증빙서류	취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주민등록증	차량이용동의서	단위: % (개소)	
											증명서	등본
전체	92.4	15.0	99.1	99.2	88.2	63.1	89.7	81.4	47.1	82.6	19.2	(4,046)
시설유형												
국공립	88.1	16.4	99.5	99.2	96.6	91.4	92.4	90.7	32.0	89.2	21.6	(506)
사회복지법인	88.0	20.8	99.5	99.2	93.5	54.3	84.1	76.5	73.7	85.5	13.7	(377)
법인·단체	88.7	17.2	100.0	100.0	92.4	62.1	85.5	83.9	63.6	80.4	18.0	(283)

(표 III-2-1 계속)

구분	생활 기록부	반 편성 신청서	귀가 동의서	온/급 처치 동의서	특별 활동 동의서	부모 증빙	취업 서류	예방 접종 확인서	주민 등록 등본	차량 이용 동의서	개인 정보 동의서	활용 기타 (수)
민간	91.2	17.3	98.8	99.3	94.3	58.0	90.8	81.9	69.6	82.7	14.3	(1,134)
법인·단체	88.7	17.2	100.0	100.0	92.4	62.1	85.5	83.9	63.6	80.4	18.0	(283)
민간	91.2	17.3	98.8	99.3	94.3	58.0	90.8	81.9	69.6	82.7	14.3	(1,134)
가정	96.6	11.2	98.8	98.8	77.6	56.9	89.7	76.3	32.1	79.1	21.1	(1,480)
직장	93.0	14.7	99.5	100.0	93.0	76.9	90.9	92.9	12.4	87.8	34.1	(266)
소재지												
대도시	94.4	14.6	99.2	99.1	86.4	71.6	90.3	82.5	38.2	78.1	22.3	(1,464)
중소도시	92.4	14.2	98.7	99.2	89.0	59.4	89.4	79.3	44.4	85.0	18.2	(1,631)
읍면	89.3	17.2	99.4	99.4	89.7	55.8	89.1	83.2	65.9	86.1	16.2	(951)
규모												
20명 이하	96.4	11.1	98.8	98.9	77.1	57.0	89.8	76.6	31.7	78.9	21.3	(1,520)
21~39명	90.6	12.2	98.7	99.1	89.4	57.5	90.1	84.2	53.2	83.0	13.4	(625)
40~79명	91.0	18.6	99.2	99.4	95.7	70.6	89.8	85.5	52.6	85.1	20.6	(992)
80명 이상	88.7	19.8	99.6	99.6	98.0	69.2	89.1	83.2	62.8	85.9	18.3	(909)
2012년 조사	94.8	12.7	96.6	98.4	73.4	17.5	77.4	82.1	38.1	-	14.4	-

주: 중복응답 결과임.

나. 입소우선 순위 관련 의견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우선순위 1·2순위 해당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입소대기가정의 우선순위 해당 항목의 접수를 합산하여 입소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어린이집 원장은 대기자의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어린이집에서 현재 입소우선순위 자격 부여 항목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 <표 III-2-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된 입소우선순위 자격 부여 항목은 부모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로 38.2%의 응답률을 차지하였고,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25.8%), 어린이집 재원아의 형제·자매(13.8%),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11.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설유형 및 소재지, 정원규모에 따른 응답 경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모든 시설유형에서 부모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의 입소우선순위 자격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점은 공통적인 경향이었으며,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기타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소자격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며, 민간어린이집은 재원아의 형제·자매의 입소자격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 재원아의 형제·자매가 입소우선순위 자격 부여의 중요성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 소재지별, 규모별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즉 소재지의 규모가 작을수록, 시설 규모가 클수록 이 항목을 입소우선순위 자격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I-2-2〉 우선 입소순위 자격 부여 시 기준 관련 의견

구분	단위: %(개소)												
	부모 모두 취업중 영유아	기초 생활 수급자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 형제·자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장애 부모 자녀	차상위 계층 자녀	다자녀 가구	조손 가족 영유아	다문화 가족 영유아	이동 복지 시설 영유아	입양 영유아	기타	계(수)
전체	38.2	25.8	13.8	11.0	3.4	1.9	1.9	1.5	0.8	0.6	-	1.2	100.0(4,037)
시설유형													
국공립	37.7	30.4	10.4	10.6	3.6	1.7	1.7	1.5	0.4	1.5	-	0.5	100.0(506)
사회복지법인	33.9	28.4	17.6	8.0	5.5	0.4	1.2	0.6	1.5	1.0	-	1.9	100.0(374)
법인·단체	34.1	33.0	13.7	7.4	2.3	1.8	1.5	3.9	1.1	0.2	-	1.0	100.0(282)
민간	35.1	27.2	19.6	8.4	2.5	1.5	1.7	1.4	0.8	0.9	-	1.0	100.0(1,134)
가정	40.7	23.2	11.0	14.1	3.3	2.4	2.5	1.5	0.8	0.2	-	0.2	100.0(1,477)
직장	47.9	13.7	7.1	13.6	5.1	2.9	0.7	0.8	-	0.1	-	8.1	100.0(264)
$\chi^2(df)$					308.5(55) ^{***}								
소재지													
대도시	39.8	25.3	12.1	11.5	3.5	1.9	1.6	1.9	0.3	0.9	-	1.1	100.0(1,461)
중소도시	39.7	25.4	13.7	10.9	2.7	2.0	2.1	1.2	0.9	0.2	-	1.2	100.0(1,627)
읍면	32.9	27.0	16.8	10.4	4.3	1.7	1.9	1.4	1.2	0.9	-	1.4	100.0(949)
$\chi^2(df)$					3.0(2) ^{**}								
규모													
20명 이하	40.5	23.3	11.0	13.9	3.5	2.4	2.4	1.6	0.8	0.2	-	0.3	100.0(1,516)
21~39명	39.0	26.3	12.3	11.6	3.1	1.2	1.1	2.5	1.0	0.6	-	1.2	100.0(625)
40~79명	36.1	28.7	14.2	9.1	3.3	1.8	1.6	1.7	0.6	0.8	-	2.2	100.0(989)
80명 이상	35.9	26.3	19.2	7.9	3.4	1.5	1.7	0.5	0.8	1.1	-	1.7	100.0(907)
$\chi^2(df)$					111.7(33) ^{***}								

** $p < .01$, *** $p < .001$

다. 입소대기아 관리 경험

다음으로 입소대기 영유아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65.0%에서 입소대기 영유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입소대기아가 있는 어린이집의 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 중 93.4%로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이외 법인·단체어린이집의 67.1%, 민간어린이집 64.5%, 사회복지법인 59.7%, 직장 57.9%, 가정 57.4% 순으로 대기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 중 입소대기 영유아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

아 74.1%가 해당하였고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 중 61.0%, 읍·면지역 소재 어린이집 57.1%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정원규모가 클수록 입소대기아가 있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20명 이하 어린이집 중 57.1%인 반면, 80명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73.2%가 해당하였다.

한편, 입소대기 영유아를 일반영유아와 장애영유아로 구분하여 대기아 수를 살펴보았을 때, 일반영유아인 입소대기아가 있는 어린이집에는 일반영유아인 대기아 수가 평균 62.07명이며, 장애영유아 대기가 있는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인 대기아 수는 평균 19.21명으로 나타났다. 입소대기 영유아 수는 시설유형, 소재지, 규모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 영유아 수가 일반영유아 223.19명으로 가장 많고, 장애영유아의 경우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아수가 27.73명으로 기타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일반영유아 대기자 수는 국공립어린이집 223.19명, 직장어린이집 53.15명, 법인·단체어린이집 49.45명,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4.03명, 민간어린이집 28.49명, 가정어린이집 10.6명 순으로 나타났고, 장애영유아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27.73명, 법인·단체어린이집 6.02명, 직장어린이집 5.26명,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4.62명, 민간어린이집 3.12명, 가정어린이집 1.18명 순으로 대기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에 일반 영유아와 장애영유아 모두 대기자 수가 가장 많아서, 일반영유아 대기자 수는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 평균 112.26명이며, 중소도시 28.45명, 읍·면지역 19.44명 순이었고, 장애영유아는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에 평균 28.23명, 중소도시 9.05명, 읍·면지역 3.57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시설 정원 규모별로는 시설규모가 클수록 일반영유아, 장애영유아 모두 대기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장애영유아의 경우는 80명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에 대기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80명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에는 일반영유아가 대기자가 있을 경우 평균 120.62명이 대기하며, 장애영유아가 있는 경우는 31.51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40~79명 규모의 어린이집에는 일반영유아 대기가 있는 경우 평균 88.05명이며, 장애영유아 대기가 있는 경우는 평균 장애영유아 대기자가 8.89명이었다. 21~39명 이하 어린이집에 일반영유아 대기자가 있는 경우 평균 31.61명, 장애영유아가 있는 경우는 평균 4.56명이 대기하며, 20명 이하 시설에서는 일반영유아 10.67명, 장애영유아 3.50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표 III-2-3〉 입소대기 영유아 유무 및 입소대기 영유아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입소대기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비율	(수)	입소 대기 영유아 수		
			전체	일반영유아	장애영유아
전체	65.0	(4,046)	62.99	62.07	19.21
시설유형					
국공립	93.4	(506)	227.93	223.19	27.73
사회복지법인	59.7	(377)	32.52	34.03	4.62
법인·단체	67.1	(283)	49.48	49.45	6.02
민간	64.5	(1,134)	28.46	28.49	3.12
가정	57.4	(1,480)	10.60	10.60	1.18
직장	57.9	(266)	52.78	53.15	5.26
$\chi^2(df)/F$	233.8(5)***		73.6***	74.0***	0.9
소재지					
대도시	74.1	(1,464)	113.61	112.26	28.23
중소도시	61.0	(1,631)	28.89	28.45	9.05
읍면	57.1	(951)	19.42	19.44	3.57
$\chi^2(df)/F$	233.8(5)***		113.2***	111.1***	0.4
규모					
20명 이하	57.1	(1,520)	10.65	10.67	3.50
21~39명	62.6	(625)	31.19	31.61	4.56
40~79명	71.0	(992)	87.52	88.05	8.89
80명 이상	73.2	(909)	125.35	120.62	31.51
$\chi^2(df)/F$	233.8(5)***		56.9***	55.1***	0.80
2012년 조사	64.2	(4,000)		60.5	74.1
2009년 조사	35.6	(3,110)	-	-	-

*** $p < .001$

한편, 입소대기아가 있는 어린이집 2,629개소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최대로 관리해 본 대기자 수를 질문한 결과, 최대로 관리해 본 대기자는 ‘10명 이내’가 37.8%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그밖에 11~29명 이하 20.4%, 30~49명 9.0% 정도로 최대 대기자 수가 비교적 많지 않게 나타났으나 200명 이상의 대기자를 관리해 보았다는 어린이집도 11.1%로 적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 어린이집이 관리해 본 대기자 수는 어린이집의 유형, 소재지, 규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40.7%가 200명 이상의 대기자를 관리해 보았다는 응답을 비롯해 다른 유형에 비해 대기자 수가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직장어린이집 등 기타 유형의 어린이집은 최대 대기자가 30명 미만이었던 비율이 50% 정도를 차지하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최대

대기자가 10명 이하였던 경우가 60.6%, 11~29명 이하였던 경우가 23.6%로 대기자 수가 가장 적은 유형으로 볼 수 있었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 50명 이상의 대기자가 있었던 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특히 200명 이상 대기자 관리 경험 비율은 19.7%로 중소도시 6.2%, 읍·면지역 2.0%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시설 규모는 클수록 특히 70명 이상 대기자를 관리해 본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명 이상 대기자를 관리해 본 어린이집의 비율이 20명 이하에서는 0.8%에 불과한 반면 21~39명 이하 4.4%, 40~79명 이하 17.3%, 80명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22.1%에 달하고 있다.

〈표 III-2-4〉 입소대기 있는 경우 최대 대기자 수

구분	단위: %(개소)								
	10명 이내	11~29명	30~49명	50~69명	70~99명	100~149명	150~199명	200명 이상	계(수)
전체	37.8	20.4	9.0	6.1	5.8	6.9	3.0	11.1	100.0(2,629)
시설유형									
국공립	8.7	10.3	7.3	5.4	8.8	10.3	8.6	40.7	100.0(471)
사회복지법인	34.1	24.2	11.1	8.9	8.9	5.9	1.6	5.4	100.0(222)
법인·단체	34.1	15.6	11.9	10.8	5.3	7.7	3.7	10.9	100.0(191)
민간	36.0	23.0	11.7	6.2	6.4	8.4	2.9	5.4	100.0(736)
가정	60.6	23.6	6.1	3.6	2.1	3.3	-	0.7	100.0(849)
직장	22.9	22.5	10.9	11.5	10.6	8.9	3.3	9.3	100.0(160)
$\chi^2(df)$					983.1(40)***				
소재지									
대도시	26.8	18.4	8.9	7.0	6.3	8.3	4.6	19.7	100.0(1,086)
중소도시	45.8	21.9	7.2	4.7	5.6	6.2	2.4	6.2	100.0(996)
읍·면	46.4	21.8	12.2	6.5	5.1	5.1	0.9	2.0	100.0(547)
$\chi^2(df)$					245.4(16)***				
규모									
20명 이하	60.6	23.7	5.9	3.5	2.0	3.2	0.2	0.8	100.0(869)
21~39명	40.7	27.5	8.6	4.8	5.5	5.9	2.6	4.4	100.0(392)
40~79명	27.2	17.0	10.6	8.5	8.1	6.6	4.8	17.3	100.0(704)
80명 이상	17.3	15.4	11.4	7.6	8.6	12.6	5.0	22.1	100.0(664)
$\chi^2(df)$					598.9(24)***				

*** $p < .001$

한편 입소대기 영유아가 있다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입소대기 영유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해당 시설의 프로그램 및 운영이 선호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고, 국공립/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 때문

이라는 응답도 22.6%로 주요 응답으로 집계되었다. 이밖에 (해당시설에) 우수한 교사 있음이 12.5%, 기타 7.9%, (물리적)시설 우수 7.6%,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이 없음 6.2%, 저렴한 보육료 5.8%, 통학차량 운행 0.6% 순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기타’로는 중복지원으로 인해 대기 발생(입소대기 여러 곳 신청, 복수대기로 의미 없음), 학부모의 입소문(원장 경험 신뢰, 부모 선호, 부모와 신뢰관계 형성), 대중교통 접근성, 단지 내 있어 안전함 등이 응답되었다.

프로그램 및 운영을 선호하기 때문에 입소대기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으나, 2009년(63.7%) 및 2012년(41.2%) 결과와 비교하면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렴한 보육료의 응답 비율도 2012년 19.6% 대비 크게 감소한 5.8%로 나타났다.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로 인한 특정 어린이집의 대기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지속적인 어린이집의 질 개선 노력과 특히 2012년 이후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커리큘럼인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어린이집 간에도 서비스 질의 차이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보육료 지원 또한 2012년 이후 소득계층에 관계없는 무상보육이 연령별로 확대되기 시작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육료 부담이 낮아진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공립/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로 대기아가 발생한다는 응답은 2012년 조사 결과에 비해 8.8%p나 상승하여 프로그램, 교사 수준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선호 보다도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라는 응답이 77.5%, 직장어린이집은 54.2%가 이에 응답하여 해당 유형의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발생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서는 프로그램 및 운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 입소대기 영유아가 발생하는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인근 타 어린이집 없음	프로그램 .운영선호	우수교사 있음	저렴한 보육료	국공립/ 직장시설 선호	통학차량 운행	시설이 우수함	기타	계(수)
전체	6.2	36.8	12.5	5.8	22.6	0.6	7.6	7.9	100.0(2,625)
시설유형									
국공립	2.0	11.8	2.5	1.4	77.5	-	1.9	2.8	100.0(471)
사회복지법인	3.8	52.2	15.5	5.4	5.3	0.9	10.4	6.5	100.0(222)
법인단체	8.1	40.4	13.0	4.4	15.7	1.3	9.4	7.7	100.0(190)
민간	5.7	48.3	13.8	7.8	6.1	0.5	8.6	9.2	100.0(735)
가정	9.5	39.8	16.8	8.0	4.9	0.9	8.8	11.3	100.0(847)

(표 III-2-5 계속)

구분	인근 타 어린이집 ·없음	프로그램 운영선호	우수교사 있음	저렴한 보육료	국공립/ 직장시설 선호	통학차량 운행	시설이 우수함	기타	계(수)
직장	4.6	20.8	9.7	-	54.2	0.2	8.6	1.9	100.0(160)
$\chi^2(df)$					1298.6(35) ***				
소재지									
대도시	5.2	33.7	11.2	6.3	26.2	0.5	7.2	9.7	100.0(1,085)
중소도시	6.5	39.0	13.2	5.7	20.3	0.7	7.9	6.7	100.0(993)
읍·면	7.6	39.4	14.1	4.8	18.8	0.7	8.1	6.5	100.0(547)
$\chi^2(df)$					35.0(14) **				
규모									
20명 이하	9.3	39.3	16.4	7.9	6.6	0.9	8.6	11.0	100.0(867)
21~39명	9.1	35.7	13.3	5.5	24.0	0.1	4.3	8.0	100.0(392)
40~79명	5.2	29.8	10.1	5.0	34.6	0.9	7.4	6.9	100.0(702)
80명 이상	1.3	41.8	9.4	4.0	29.8	0.3	8.6	4.9	100.0(664)
$\chi^2(df)$					280.7(21) ***				
2012년 조사	6.4	41.2	10.4	19.6	13.8	1.0	-	7.6	100.0(2,544)
2009년 조사	1.4	63.7	7.2	2.9	17.3	-	-	7.5	100.0(416)

** $p < .01$, *** $p < .001$

라.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만족도

어린이집의 입소대기는 자체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온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는 대기자의 방문과 전화 등으로 입소 신청을 받아 어린이집에서 서류를 개별적으로 보관·관리하며 대기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수기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 2013년 11월 시범 실시 이후 2014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실시되고 있다(2013. 10. 17; 2014. 4.2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정원·이혜민, 2014: 84에서 재인용).

이에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새로이 전국적으로 도입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고,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의 5점 척도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III-2-6>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어린이집 원장들은 새로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해 매우 만족 2.9%, 만족 24.8%, 보통 36.4%, 불만족 28.9%, 매우 불만족 6.9%로 응답하여,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만족한다는 응답(27.7%: 매우 만족+만족) 보다는 불만족한다는 응답(35.8%: 매우 불만족+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점 만점 대비 평균 2.88점의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설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3.11점), 국공립어린이집(3.05점), 법인·단체어린이집(

2.98점), 가정어린이집(2.87점), 사회복지법인(2.80점), 민간어린이집(2.73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재지별·규모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III-2-6〉 입소대기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단위: %(개소), 점	
						계(수)	5점 평균
전체	2.9	24.8	36.4	28.9	6.9	100.0(2,629)	2.88
시설유형							
국공립	2.6	34.5	34.1	22.5	6.3	100.0(471)	3.05
사회복지법인	3.0	23.0	34.1	31.0	8.9	100.0(222)	2.80
법인·단체	6.4	22.8	37.9	28.5	4.4	100.0(191)	2.98
민간	1.8	22.0	32.2	35.0	9.0	100.0(736)	2.73
가정	3.2	23.5	36.9	30.1	6.3	100.0(849)	2.87
직장	3.9	19.8	62.5	11.4	2.4	100.0(160)	3.11
$\chi^2(df)/F$				117.6(20)***			9.5***
소재지							
대도시	2.2	27.4	34.9	28.4	7.1	100.0(1,086)	2.89
중소도시	3.3	23.1	38.0	29.7	5.9	100.0(996)	2.88
읍·면	3.7	22.7	36.9	28.4	8.3	100.0(547)	2.85
$\chi^2(df)/F$				13.7(8)			0.4
규모							
20명 이하	3.4	23.4	37.4	29.7	6.2	100.0(869)	2.88
21~39명	3.7	22.1	35.8	32.4	6.0	100.0(392)	2.85
40~79명	2.5	27.4	37.4	25.5	7.2	100.0(704)	2.93
80명 이상	2.4	25.6	34.6	29.4	8.1	100.0(664)	2.85
$\chi^2(df)/F$				14.3(12)			0.9

*** $p < .001$

주: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만족하거나 보통이라는 의견을 보인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을 질문한 결과, 결원 충원의 용이성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29.5%), 시스템 상에서 대기 순위가 결정되어 어린이집에서 관리할 부분이 없어 편하다는 응답도 25.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서류관리·보관 등 수기방식에서 대기자 관리에서 나타나는 번거로운 업무가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15.3%, 부모의 대기 순위 공정성 논란 등 민원이 줄었다는 점이 6.4%로 나타났으나, 특별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다라는 응답도 21.8%에 해당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만족하는 부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관리할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새로운 관리시스템의 가장 만족스러운 부

분으로 응답되었고(46.8%),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결원 충원시 편리하다’는 응답이 30% 이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부분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특별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다’는 응답은 직장어린이집에서 37.5%로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대기 가능 영유아의 범위가 제한되는 특성으로 기준의 입소 대기 관리 방식과 새로운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차별성이나 장점이 부각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소재지별로는 ‘결원 충원시 편리하다’는 응답이 소재지에 관계 없이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점은 공통적이나, ‘어린이집에서 관리할 부분이 없음’은 대도시에서(30.4%), ‘번거로운 업무 감소(19.8%)’는 읍·면지역에서 특히 높은 응답을 보였다.

시설의 정원 규모별로는 ‘결원 충원시 편리함’은 규모가 작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아서 20명 이하 규모에서 35.2%, 21~39명 이하 어린이집에서 30.6%, 40~79명 이하에서 27.0%, 80명 이상에서 23.8%로 나타났다.

〈표 III-2-7〉 새로운 입소대기 시스템에서 만족스러운 부분

구분	번거로운 업무 감소	어린이집에서 관리할 부분이 없음	부모 민원 감소	결원 충원시 편리	특별히 만족스러운 부분 없음	기타	단위: %(개소)	
							계(수)	$\chi^2(df)$
전체	15.3	25.7	6.4	29.5	21.8	1.2	100.0(1,625)	
시설유형								
국공립	11.9	46.8	9.4	20.9	10.7	0.4	100.0(328)	
사회복지법인	17.0	25.4	8.8	29.0	18.9	1.0	100.0(127)	
법인·단체	23.6	23.3	2.5	24.3	26.3	-	100.0(121)	273.6
민간	15.0	18.1	5.1	34.4	26.2	1.2	100.0(407)	(25) ^{***}
가정	16.0	19.1	5.9	36.2	22.5	0.2	100.0(537)	
직장	12.5	23.1	5.2	10.3	37.5	11.4	100.0(105)	
소재지								
대도시	11.7	30.4	6.1	32.8	17.9	1.2	100.0(676)	
중소도시	17.1	23.5	6.0	26.5	25.4	1.6	100.0(616)	39.3 ^{**}
읍·면	19.8	19.8	7.8	28.1	23.7	0.8	100.0(333)	(10) ^{**}
규모								
20명 이하	16.9	19.7	5.7	35.2	22.3	0.2	100.0(554)	
21~39명	14.4	21.3	6.0	30.6	26.9	0.8	100.0(231)	49.1
40~79명	14.3	32.2	6.1	27.0	18.6	1.7	100.0(439)	(15) ^{***}
80명 이상	14.7	29.3	7.9	23.8	22.0	2.4	100.0(401)	

*** $p < .001$

반대로, 새로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질문한 결과, 59.3%의 어린이집에서 '입소아동 결정에 대한 어린이집 재량권이 없어짐'을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답변하였다.

이밖에 '온라인 시스템의 이용이 어려운 대기자 관리 업무가 증가함'이 11.0%, 새 입소대기시스템에서 순위가 밀리는 경우 발생 등으로 오히려 부모의 민원이 증가한다는 점을 불만족 사항으로 꼽은 비율이 9.9%, 수요자들이 지나치게 빨리 입소대기 를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8.8%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 또한 11.2%로 적지 않았는데, 입소대기자의 중복지원으로 인한 번거로움이 기타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입소대기자가 많아도 중복지원으로 실제 입소아동을 확정하기까지 전화 연락을 많이 해야 한다는 부분이 불만족 사항으로 많이 지적되었고, 입소대기 시 희망시기까지 지정하지 않는 부분, 타원에 입소하여도 대기가 삭제되지 않는 부분 등 시스템 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기타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68.5%, 민간어린이집이 63.2%로 어린이집의 재량권이 없어진다는 부분을 불만족 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유형이었으며, 법인·단체어린이집에서는 '부모 민원 증가'를 불만족 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18.0%).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에서 어린이집의 재량권이 없어졌다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62.0%), 대도시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비율이 가장 낮았다(56.5%). 대도시에서는 '수요자들이 지나치게 빨리 입소대기를 하게 됨'에 대한 불만 비율이 11.1%로 중소도시(7.2%), 읍·면지역(6.7%)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대기자 관리 업무 증가는 중소도시에서(12.4%)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불만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80명 이상 어린이집에서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대기자 관리 업무 증가'가 불만 사항으로 현저히 높게 지적되며(16.2%), 반대로 20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수요자들이 지나치게 빨리 입소대기를 함'을 불만 사항으로 지적하는 비율이(13.5%) 높았다.

〈표 III-2-8〉 새로운 입소대기 시스템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

구분	어린이집의 재량권이 없어짐	부모 민원 증가	온라인 시스템 이용 어려운 대기자관리 업무 증가	지나치게 빨리 입소대기를 하게 됨	단위: %(개소)	
					기타	계(수) $\chi^2(df)$
전체	59.3	9.9	11.0	8.8	11.2	100.0(963)

(표 III-2-8 계속)

구분	어린이집의 재량권이 없어짐	부모 민원 증가	온라인 시스템 이용 어려운 대기자관리 업무 증가	지나치게 빨리 입소대기를 하게 됨	기타	계(수)	X ² (df)
시설유형							
국공립	54.5	14.8	11.6	3.6	15.5	100.0(143)	
사회복지법인	68.5	3.2	11.8	2.4	14.1	100.0(95)	
법인단체	51.2	18.0	14.7	1.9	14.2	100.0(66)	51.2(20)**
민간	63.2	8.1	11.2	9.0	8.5	100.0(327)	
가정	57.4	10.2	9.2	13.6	9.6	100.0(310)	
직장	46.5	1.2	15.4	13.2	23.7	100.0(22)	
소재지							
대도시	56.5	8.8	10.1	11.1	13.5	100.0(390)	
중소도시	60.9	11.0	12.4	7.2	8.5	100.0(368)	11.1(8)
읍·면	62.0	10.0	10.1	6.7	11.1	100.0(205)	
규모							
20명 이하	57.2	10.5	9.1	13.5	9.6	100.0(313)	
21~39명	59.3	11.8	8.6	5.9	14.3	100.0(153)	
40~79명	63.8	10.5	9.4	6.2	10.1	100.0(251)	26.6(12)**
80명 이상	57.5	7.2	16.2	6.9	12.2	100.0(246)	

** p < .01

한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입소대기자들의 입소대기 가능 어린이집의 수를 3개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입소 대기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때에 비해 수요자들의 중복 대기 및 허수 대기를 줄임으로써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결원 시 충원의 용이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III-2-9>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수요자의 입소대기 가능 어린이집의 제한으로 인해 기관 입장에서 충원이 용이해 졌는지에 대해 ‘매우 용이해졌다’는 응답이 19.2%, ‘용이해졌다’ 31.9%로 용이해졌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51.1%로 집계되었고, 용이해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11.2%에 불과하였다.

별 차이 없다는 응답은 직장어린이집에서 57.3%로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용이해졌다는 응답(매우 그려함+그려함)은 국공립어린이집(59.9%), 가정어린이집(53.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 용이해졌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53.1%), 중소도시(51.1%), 읍·면지역(48.9%)의 순으로 나타나며, 시설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입소대기 어린이집 수 제한으로 충원이 용이해졌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2-9〉 입소대기 어린이집 수 제한으로 인한 충원 용이성 인지

단위: %(개소)

구분	매우 그러함	그러함	별 차이 없음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19.2	31.9	37.7	6.1	5.1	100.0(2,122)	
시설유형							
국공립	26.2	33.7	30.7	4.5	5.0	100.0(308)	
사회복지법인	13.6	33.3	42.7	4.3	6.2	100.0(215)	
법인·단체	13.3	30.0	45.5	6.4	4.7	100.0(161)	
민간	19.9	30.0	35.5	9.5	5.1	100.0(630)	62.4(20)***
가정	19.6	33.8	36.4	4.9	5.3	100.0(691)	
직장	12.1	25.9	57.3	2.8	1.8	100.0(117)	
소재지							
대도시	19.1	34.0	37.0	5.4	4.6	100.0(579)	
중소도시	20.7	30.4	36.9	6.3	5.7	100.0(996)	7.4(8)
읍·면	16.7	32.2	39.9	6.7	4.5	100.0(547)	
규모							
20명 이하	20.0	34.0	35.9	4.7	5.4	100.0(709)	
21~39명	20.5	28.1	40.6	7.3	3.5	100.0(323)	
40~79명	17.8	32.4	38.3	6.4	5.1	100.0(537)	10.7(12)
80명 이상	18.9	30.8	37.7	7.0	5.5	100.0(553)	

*** $p < .001$

한편, 현재 서울시와 같이 입소대기 가능한 어린이집 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자체 소재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향후 입소대기자들의 입소대기 가능 어린이집 수를 다른 자자체처럼 제한한다면 충원이 현재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측되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III-2-10〉에 제시된 응답 결과에 따르면, 응답대상 어린이집 중 63.3%(매우 그러함+그러함)가 대기 가능 어린이집 수를 제한한다면 지금보다 결원 충원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0〉 (입소대기 제한 없는 경우) 입소대기 어린이집 수 제한으로 인한 충원 용이성 예측

단위: %(개소)

구분	매우 그러함	그러함	별 차이 없음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26.0	37.3	28.0	6.1	2.6	100.0(507)	
시설유형							
국공립	32.5	33.8	22.2	9.1	2.4	100.0(163)	
사회복지법인	24.6	50.5	5.7	19.1	-	100.0(7)	36.2(20)*

(표 III-2-10 계속)

구분	매우 그러함	그러함	별 차이 없음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계(수)	$\chi^2(df)$
법인·단체	19.4	36.1	32.8	7.5	4.1	100.0(30)	
민간	20.3	44.1	28.3	4.5	2.9	100.0(106)	
가정	27.0	40.2	26.3	4.4	2.0	100.0(158)	
직장	16.2	21.1	57.5	1.8	3.4	100.0(43)	
소재지							
대도시	26.0	37.3	28.0	6.1	2.6	100.0(507)	-
규모							
20명 이하	26.9	40.3	26.4	4.4	2.0	100.0(160)	
21~39명	20.3	44.6	30.8	1.9	2.4	100.0(69)	
40~79명	26.1	31.6	28.4	9.9	4.0	100.0(167)	15.5(12)
80명 이상	28.2	36.9	28.1	5.6	1.2	100.0(111)	

* $p < .05$

이들 어린이집은 모두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으로 시설유형별로는 사례수가 7개소에 불과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면, 가정어린이집에서 대기가능 어린이집 수 제한으로 충원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67.2%), 국공립어린이집(66.3%), 민간어린이집(64.4%)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운영시간 및 운영일수

가. 운영시간

어린이집의 평일 운영시간을 어린이집의 문 여는 시간과 문 닫는 시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응답한 어린이집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은 아침 7시 39분에 문을 열어 저녁 7시 34분경에 닫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 11시간 55분 동안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2년 조사의 결과(11시간 56분)와 매우 유사하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평일 평균 12시간 34분, 직장어린이집이 12시간 27분으로 운영시간이 길다. 지역별로는 대도시(12시간 05분)에서, 규모별로는 80명 이상 대규모의 어린이집(12시간 13분)에서 상대적으로 운영시간이 길었다.

〈표 III-3-1〉 평일 운영시간

단위: 시간/분(개소)

구분	문 여는 시각		문 닫는 시각		평일 운영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시 39분	33.6분	19시 34분	73.2분	11시간 55분	91.2분	(4,046)
시설유형							
국공립	7시 33분	27.6분	20시 7분	78.6분	12시간 34분	90.0분	(506)
사회복지법인	7시 34분	42.0분	19시 31분	73.2분	11시간 57분	96.6분	(377)
법인·단체	7시 39분	22.8분	19시 26분	67.8분	11시간 47분	79.8분	(283)
민간	7시 41분	29.4분	19시 26분	67.2분	11시간 45분	82.8분	(1,134)
가정	7시 42분	38.4분	19시 26분	71.4분	11시간 44분	95.4분	(1,480)
직장	7시 34분	28.2분	20시 1분	75.6분	12시간 27분	82.2분	(266)
F	9.7**		37.4**		34.8**		
소재지							
대도시	7시 36분	42.0분	19시 41분	73.8분	12시간 05분	98.4분	(1,464)
중소도시	7시 41분	27.6분	19시 33분	73.2분	11시간 51분	87.6분	(1,631)
읍면	7시 40분	27.0분	19시 25분	69.6분	11시간 44분	83.4분	(951)
F	11.4***		15.5***		17.5***		
규모							
20명 이하	7시 42분	38.4분	19시 26분	71.4분	11시간 44분	94.8분	(1,520)
21~39명	7시 43분	29.4분	19시 24분	71.4분	11시간 41분	87.6분	(625)
40~79명	7시 36분	33.6분	19시 41분	72.0분	12시간 05분	88.8분	(992)
80명 이상	7시 34분	27.0분	19시 47분	75.6분	12시간 13분	86.4분	(909)
F	15.5***		24.3***		29.3***		
2012년 조사	7시 43분	24.7분	19시 39분	76.1분	11시간 56분	87.3분	(4,000)

*** p < .001

나. 토요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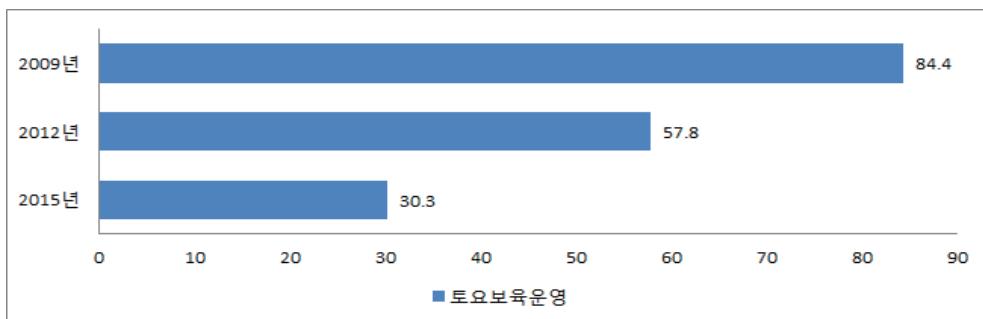
2015년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토요일에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30.3%로 나타났다. 그 운영 비율은 2012년 57.8%, 2009년 84.4%와 비교하여 볼 때, 토요일 보육 제공 어린이집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토요휴무제가 보편화되는 등 부모의 근로여건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토요보육 운영 비율은 시설유형 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59.7%로 가장 높았고,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13.6%로 가장 낮았다. 규모가 클수록 그 운영 비율이 높아 시설 규모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많을수록 그 수요가 높음을 짐작케 한다.

토요일 보육을 운영하는 1,240개 어린이집에서는 평균 월 3.51회의 토요일 보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월 3.44회에 비해 조금 증가했다.

〈표 III-3-2〉 토요일 운영 여부 및 횟수

구분	운영비율 (%)	(수)	운영 시 월 평균 운영 횟수			단위: %(개소), 회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0.3	(4,046)	3.51	0.99	(1,240)	
시설유형						
국공립	59.7	(506)	3.49	1.03	(294)	
사회복지법인	44.0	(377)	3.72	0.81	(169)	
법인·단체	41.2	(283)	3.59	0.90	(120)	
민간	31.3	(1,134)	3.53	0.93	(360)	
가정	16.8	(1,480)	3.33	1.11	(259)	
직장	13.6	(266)	3.57	0.99	(38)	
$\chi^2(df)/F$	425.4(5)***		3.7**			
소재지						
대도시	33.6	(1,464)	3.56	0.97	(491)	
중소도시	26.1	(1,631)	3.39	1.06	(422)	
읍·면	32.0	(951)	3.61	0.89	(327)	
$\chi^2(df)/F$	22.1(2)**		4.7**			
규모						
20명 이하	17.1	(1,520)	3.36	1.09	(269)	
21~39명	28.5	(625)	3.51	0.96	(183)	
40~79명	36.7	(992)	3.45	1.03	(364)	
80명 이상	46.7	(909)	3.66	0.86	(424)	
$\chi^2(df)/F$	261.4(3)***		5.5***			
2012년 조사	57.8	(3,985)	3.44	1.07	(2,349)	
2009년 조사	84.4	-	-	-	-	

** $p < .01$, *** $p < .001$



[그림 III-3-1] 조사 연도별 토요일 운영 비교

토요일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에 참여하는 보육교직원의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1.39명의 보육교사와 0.32명의 기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 1.89명,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1.72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 근무 교사의 수가 많았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에서 평균 1.5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대도시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토요일 근무 교사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보육교직원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보육교사에 없음의 비율이 잡힘은 교사가 아닌 원장이 담당하는 경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III-3-3〉 토요일 근무 보육교직원

단위: %, 명(개소)

구분	보육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계(수)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평균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평균	
전체	3.2	75.5	15.4	6.0	1.39	74.1	23.4	1.8	0.7	0.32	100.0(1,263)
시설유형											
국공립	1.1	82.5	13.8	2.7	1.26	68.6	29.6	0.9	0.9	0.37	100.0(303)
사회복지법인	2.1	56.5	33.0	8.5	1.72	66.3	28.4	4.4	0.9	0.41	100.0(172)
법인·단체	0.4	78.0	13.8	7.9	1.47	72.9	23.1	3.6	0.3	0.33	100.0(122)
민간	3.9	76.0	13.5	6.7	1.33	78.9	19.4	1.2	0.4	0.23	100.0(363)
가정	7.2	80.1	7.3	5.4	1.36	83.6	15.3	-	1.1	0.26	100.0(265)
직장	-	52.1	33.1	14.8	1.89	46.9	44.0	9.1	-	0.62	100.0(38)
$\chi^2(df)/F$		103.7(15)***			1.9	60.6(15)***			3.0*		
소재지											
대도시	2.4	78.9	13.6	5.1	1.29	77.2	21.8	0.5	0.6	0.26	100.0(499)
중소도시	3.7	74.4	15.8	6.1	1.43	71.8	25.0	2.1	1.0	0.37	100.0(431)
읍면	3.7	71.2	17.8	7.3	1.52	72.1	23.9	3.5	0.6	0.34	100.0(333)
$\chi^2(df)/F$		6.9(6)			1.5	12.8(6)*			2.2		
규모											
20명 이하	7.1	79.3	8.0	5.7	1.36	82.1	16.4	0.5	1.1	0.28	100.0(276)
21~39명	2.1	80.5	9.9	7.5	1.34	76.2	22.2	1.6	-	0.25	100.0(184)
40~79명	1.7	79.2	14.8	4.3	1.37	79.7	19.2	0.8	0.4	0.24	100.0(371)
80명 이상	2.5	67.7	22.8	7.0	1.46	63.3	32.1	3.5	1.1	0.44	100.0(432)
$\chi^2(df)/F$		50.8(9)***			0.3	47.9(9)***			5.2**		
2012년 조사	4.4	64.9	21.7	9.0	1.47	71.7	25.6	2.2	0.5	0.32	100.0(2,353)

* $p < .05$, ** $p < .01$, *** $p < .001$

다. 어린이집 휴원

2014년을 기준으로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어린이집 휴원 일수를 조사한 결과, 휴원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79.9%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서 미휴원 비율이 8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순이었다.

휴원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830개소)의 경우, 평균 휴원 일수는 8일~14일 정도가 36.4%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간 휴원 일수는 9.65일로, 2012년 10.2일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법인·단체어린이집이 평균 17.67일로 가장 많았으며, 미휴원율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평균 5.64일로 가장 낮았다.

〈표 III-3-4〉 연간 휴원 일수: 2014년

단위: %, 일(개소)

구분	미휴원율 (수)	휴원시 휴원 일수					계(수)	평균
		3일 이내	4~7일	8~14일	15일 이상			
전체	79.9 (4,046)	24.6	28.7	36.4	10.3	100.0(830)	9.65	
시설유형								
국공립	89.8 (506)	49.6	19.0	26.8	4.6	100.0(50)	5.64	
사회복지법인	87.0 (377)	38.6	25.8	26.2	9.5	100.0(50)	8.15	
법인·단체	83.4 (283)	12.4	20.1	42.4	25.1	100.0(44)	17.67	
민간	81.2 (1,134)	26.7	19.3	37.7	16.3	100.0(215)	11.65	
가정	74.8 (1,480)	16.3	35.1	42.1	6.5	100.0(393)	8.84	
직장	70.0 (266)	39.8	36.9	15.7	7.5	100.0(78)	7.17	
$\chi^2(df)/F$	88.0(5)***							8.3***
소재지								
대도시	79.4 (1,464)	24.6	32.2	31.2	12.0	100.0(313)	10.07	
중소도시	78.3 (1,631)	24.0	29.0	39.6	7.4	100.0(355)	9.01	
읍면	83.3 (951)	25.8	21.4	39.5	13.3	100.0(162)	10.25	
$\chi^2(df)/F$	9.3(2)***							0.9
규모								
20명 이하	74.8 (1,520)	16.7	34.6	42.1	6.7	100.0(405)	8.90	
21~39명	81.1 (625)	28.3	16.9	39.7	15.1	100.0(121)	11.58	
40~79명	79.6 (992)	31.4	26.3	28.4	13.8	100.0(197)	10.46	
80명 이상	88.0 (909)	36.1	25.3	27.6	11.0	100.0(107)	8.68	
$\chi^2(df)/F$	62.8(3)***							7.6***
2012년 조사	79.1 (3,777)	27.8	32.3	27.5	12.3	100.0(787)	10.2	

*** $p < .001$

라. 자율 보육기간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 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하다. 그러나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을 보육사업안내(2015. p.65)에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자율 보육기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지난 2014년 1년간 자율 보육기간을 전혀 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30.6%이며, 1회 이상 운영하였다 는 비율이 전체 응답 대상의 69.4%를 차지하였다. 자율 보육기간을 운영한 경우 2회 정도 운영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자율 보육기간을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60% 내외로,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지역 별로는 대도시에서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자율보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줄고 2회 정도 실시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4년 기준 자율 보육기간 평균 횟수는 평균 1.31회로, 2012년에 조사된 결과인 2011년 기준 평균 방학 횟수 1.12회보다 0.19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자율 보육기간 운영 횟수: 2014년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계(수)	단위: %, 회(개소)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6	11.1	56.8	1.6	100.0(4,041)	1.31	1.08
시설유형							
국공립	60.5	4.9	33.6	1.1	100.0(505)	0.76	1.01
사회복지법인	29.3	6.3	61.5	2.9	100.0(377)	1.48	1.61
법인단체	27.3	8.0	62.8	1.9	100.0(282)	1.39	0.91
민간	21.2	7.1	69.4	2.4	100.0(1,134)	1.54	0.90
가정	22.3	19.0	57.7	1.0	100.0(1,477)	1.39	1.03
직장	62.7	5.7	31.1	0.5	100.0(266)	0.69	0.93
$\chi^2(df)/F$	577.7(15)***				63.0***		
소재지							
대도시	36.4	12.2	50.1	1.3	100.0(1,462)	1.17	0.96
중소도시	29.6	12.6	56.2	1.6	100.0(1,629)	1.32	1.10
읍·면	22.8	6.5	68.6	2.1	100.0(950)	1.54	1.21
$\chi^2(df)/F$	95.7(6)***				35.0***		
규모							
20명 이하	22.8	18.8	57.3	1.0	100.0(1,517)	1.38	1.03
21~39명	32.0	7.9	58.8	1.3	100.0(625)	1.30	0.96
40~79명	39.2	6.5	52.8	1.4	100.0(991)	1.19	1.10
80명 이상	33.1	5.1	58.7	3.0	100.0(908)	1.34	1.22
$\chi^2(df)/F$	212.7(9)***				6.9***		
2012년 조사	35.2	18.1	46.1	0.6	100.0(3,787)	1.12	0.92
2009년 조사		-			(1,608)	1.6	-

*** $p < .001$

자율보육 운영 일수를 살펴보면, 2014년 1년간 평균 5.96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자율보육 운영 일수 4.95일에 비하여 1일 정도 증가한 것이다. 시설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이 평균 2.8일로 가장 짧고,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평균 7.31일로 가장 길었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의 어린이집의 자율보육 운영일수가 평균적으로 길었다. 전반적으로 자율 보육 운영 일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혀 없었던 경우가 31.7%, 8~14일이 42.8%, 4~7일 19.8%, 3일 이내가 3.4%, 15일 이상이 2.3%로 나타났다.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갈수록 자율 보육 일수가 긴 특징을 보인다.

〈표 III-3-6〉 자율 보육 일수: 2014년

구분	없음/ 무응답	3일 이내	4~7일	8~14일	15일 이상	계(수)	단위: %, 일(개소)		
							평균	표준 편차	최대
전체	31.7	3.4	19.8	42.8	2.3	100.0(4,041)	5.96	4.88	40
시설유형									
국공립	62.1	0.9	6.3	27.1	3.6	100.0(505)	3.82	5.37	28
사회복지법인	30.2	1.4	12.2	51.4	4.9	100.0(377)	6.93	5.41	25
법인·단체	30.0	1.0	12.4	51.0	5.6	100.0(282)	7.31	5.97	40
민간	22.0	2.9	18.6	53.8	2.7	100.0(1,134)	7.04	4.52	20
가정	23.1	5.8	29.3	41.6	0.3	100.0(1,477)	6.00	4.17	27
직장	64.3	2.1	16.8	14.7	2.1	100.0(266)	2.80	4.32	25
$\chi^2(df)/F$	668.4(20)***					65.9***			
소재지									
대도시	37.8	3.6	19.3	37.9	1.5	100.0(1,462)	5.28	4.88	40
중소도시	30.6	4.3	22.5	40.9	1.7	100.0(1,629)	5.81	4.69	28
읍·면	23.6	1.5	16.2	54.0	4.6	100.0(950)	7.34	4.95	25
$\chi^2(df)/F$	129.7(8)***					53.7***			
규모									
20명 이하	23.6	5.7	28.8	41.5	0.4	100.0(1,517)	5.98	4.21	27
21~39명	33.3	3.6	18.5	42.8	1.9	100.0(625)	5.77	4.80	25
40~79명	40.7	1.8	13.3	40.9	3.4	100.0(991)	5.61	5.28	28
80명 이상	34.3	1.1	12.7	47.3	4.5	100.0(908)	6.46	5.48	40
$\chi^2(df)/F$	267.2(12)***					5.2**			
2012년 조사	35.2	7.5	27.7	27.8	1.8	100.0(3,785)	4.95	4.75	33
2009년 조사	-					- (1,611)	7.1	4.43	57

** $p < .01$, *** $p < .001$

4. 보험 및 안전 관리

가. 보험가입

현행 법규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원 및 공제회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재보험에도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통계분석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회원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중 98.2%가 가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2년 조사 시 88.5%에 비해 9.7%p 증가한 수치이다. 시설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에서 100.0%로 가장 가입비율이 높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가 98.5%로 낮은 가입비율을 보인다.

〈표 III-4-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원 가입 비율

단위: %(개소)								
구분	가입비율	(수)	구분	가입비율	(수)	구분	가입비율	(수)
전체	98.2	(4,046)						
시설유형			소재지			규모		
국공립	99.6	(506)	대도시	97.7	(1,464)	20명 이하	98.5	(1,520)
사회복지법인	98.3	(377)	중소도시	98.4	(1,631)	21~39명	97.4	(625)
법인·단체	97.8	(283)	읍·면	98.5	(951)	40~79명	98.5	(992)
민간	96.8	(1,134)				80명 이상	97.9	(909)
가정	98.5	(1,480)						
직장	100.0	(266)						
$\chi^2(df)$	24.88(5)***		3.18(2)			3.90(3)		
2012년 조사	88.5	(4,000)						

*** $p < .001$

주: 2015년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 분석 결과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 종류별 가입비율을 보면 영유아 및 방과후 관련 가입 비율이 98.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영아 돌연사증후군특약(97.0%), 화재 내부집기(84.2%), 화재건물(83.1%), 제3자 치료비 특약(81.8%)

등의 순서로 그 가입비율도 높았다.

〈표 III-4-2〉 안전공제회 공제 종류별 가입여부: 종류1

구분	영유아 및 방과후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증공제	보육교직원	돌연사증후 군특약	놀이시설 배상책임	단위: %(개소)
							(수)
전체	98.6	58.0	2.4	39.5	97.0	30.8	(4,046)
시설유형							
국공립	97.9	58.3	10.9	36.6	96.6	33.5	(506)
사회복지법인	97.7	55.7	-	45.0	94.3	33.0	(377)
법인·단체	98.9	59.9	1.5	43.2	97.8	36.3	(283)
민간	98.9	59.3	1.4	39.9	97.7	29.8	(1,134)
가정	98.6	57.5	1.1	38.9	96.8	29.3	(1,480)
직장	98.9	57.1	1.8	35.5	97.8	29.7	(266)
소재지							
대도시	99.0	56.0	2.5	35.1	97.9	29.9	(1,464)
중소도시	98.3	58.9	2.2	40.4	96.3	32.6	(1,631)
읍면	98.5	59.7	2.8	45.1	96.5	29.0	(951)
규모							
20명 이하	98.6	56.8	1.2	38.9	96.9	29.2	(1,520)
21~39명	98.7	61.4	2.9	40.9	97.3	33.2	(625)
40~79명	98.7	58.2	3.5	39.5	96.7	30.9	(992)
80명 이상	98.4	57.4	3.1	39.6	97.2	31.6	(909)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 분석 결과임.

〈표 III-4-3〉 안전공제회 공제 종류별 가입여부: 종류2

구분	제3자 치료비 특약	화재건물	화재배상 책임특약	화재 내부집기	풍수해 특약	일시보육 특약	단위: %(개소)
							(수)
전체	81.8	83.1	81.8	84.2	10.5	0.3	(4,046)
시설유형							
국공립	80.7	82.3	81.1	82.6	9.0	-	(506)
사회복지법인	81.3	80.1	79.5	81.8	12.8	-	(377)
법인·단체	79.9	81.0	78.0	82.8	12.1	1.1	(283)
민간	84.0	85.3	84.0	86.4	10.5	0.5	(1,134)
가정	80.7	82.3	81.3	83.4	9.8	0.1	(1,480)
직장	82.4	85.7	83.2	86.8	12.8	-	(266)
소재지							
대도시	82.6	83.9	83.2	84.5	9.5	0.1	(1,464)
중소도시	80.5	82.7	80.7	84.0	11.0	0.2	(1,631)
읍면	82.5	82.6	81.4	84.0	11.5	0.5	(951)
규모							
20명 이하	81.0	82.4	81.2	83.5	9.8	0.1	(1,520)
21~39명	82.0	82.6	80.0	83.4	10.5	0.6	(625)

(표 III-4-3 계속)

구분	제3자 치료비 특약	화재건물 책임특약	화재배상 책임특약	화재 내부집기	풍수해 특약	일시보육 특약	(수)
40~79명	80.8	83.6	82.6	84.6	11.6	0.2	(992)
80명 이상	83.9	83.9	82.9	85.5	10.6	0.4	(909)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 분석 결과임.

2) 민간보험가입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 31조의2 시행일(2012. 2. 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을 지닌 보험 상품 등을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이 만료되었을 시에는 공제회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의무가입하고도 추가로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현황을 영유아관련 종합보험, 상해보험, 사고배상책임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화재보험 가입이 77.6%로 가장 높았고, 상해보험 가입률이 76.5%, 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이 74.4%, 영유아 관련 종합보험 가입률 74.2% 등으로 어린이 집 네 곳 중 세 곳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더불어 이러한 민간보험에도 가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스사고보험 68.9%, 자동차보험도 55.2%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 별로는 민간어린이집에서의 민간보험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이러한 민간보험 가입율은 2012년 조사 당시보다 월등히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표 III-4-4〉 민간보험 가입 여부

구분	영유아 관련 종합보험	상해보험	사고배상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놀이터 보험	가스 사고 보험	단위: %(개소)	
								기타	없다
전체	74.2	76.5	74.4	55.2	77.6	33.9	68.9	3.9	10.1
시설유형									
국공립	71.5	75.2	74.7	34.8	75.7	49.1	73.0	8.5	16.1
사회복지법인	80.6	82.8	80.7	92.5	86.0	69.7	81.0	4.2	2.7
법인·단체	79.1	81.3	80.3	81.1	82.0	56.6	77.8	5.8	3.4
민간	80.3	82.2	79.6	81.1	83.2	37.3	76.3	3.0	3.7
가정	68.2	71.1	68.6	37.4	71.4	9.6	57.7	2.4	14.7
직장	74.0	72.8	70.1	9.3	76.1	54.1	66.6	4.6	16.8
소재지									
대도시	72.4	74.8	72.1	42.0	75.7	30.1	66.7	5.8	13.0
중소도시	73.8	76.5	74.8	52.2	76.9	27.6	66.9	2.4	10.3

(표 III-4-4 계속)

구분	영유아 관련 종합보험	상해보험	사고배상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놀이터 보험	가스 사고 보험	기타	없다
읍면	78.0	79.5	77.5	81.8	81.8	51.0	75.8	3.3	5.1
규모									
20명 이하	68.6	71.5	68.9	37.2	71.7	10.1	58.2	2.7	14.7
21~39명	75.1	76.3	72.1	61.9	73.7	18.1	66.5	3.0	8.2
40~79명	78.6	81.1	79.4	63.2	82.2	48.2	76.2	5.6	7.7
80명 이상	78.5	80.3	79.8	72.4	85.1	69.7	80.7	4.6	6.4
(수)	(4,046)	(4,046)	(4,046)	(4,046)	(4,046)	(4,046)	(4,046)	(4,046)	(4,046)
2012년 조사	37.9	43.6	44.2	57.8	62.8	-	-	-	-

주: 중복응답 결과임.

나. 안전교육

현행 법규는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실시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각 시설들이 지난 2014년도 1년 동안 영유아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 몇 회를 실시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1)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횟수

영유아 안전교육의 목적은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 예방, 실종 및 유괴예방에 대한 교육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시비율은 최저 96.4%~최고 97.8%로 높게 나타났다. 연간교육 횟수는 교통안전이 8.94회로 가장 높았으며, 실종·유괴 예방, 성폭력 예방,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순이다. 이는 2012년 조사 시 보다 그 실시비율이나 횟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5〉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 비율 및 횟수

단위: %, 회(개소)

(표 III-4-5 계속)

구분	교통안전		재난대비		성폭력 예방		실종·유괴 예방		약물오남용		(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국공립	98.0	9.84	97.7	7.03	97.7	7.79	97.4	8.09	97.4	8.03	(506)
사회복지법인	98.2	9.09	97.5	6.86	97.8	7.09	97.1	7.25	95.9	7.32	(377)
법인·단체	99.9	9.08	97.5	6.85	98.0	7.54	97.0	7.37	97.5	7.22	(283)
민간	97.7	8.68	97.5	6.94	97.2	7.38	96.9	7.3	96.2	7.17	(1,134)
가정	97.0	8.74	96.2	6.96	96.3	7.49	95.9	7.39	95.8	7.21	(1,480)
직장	99.3	9.09	99.3	7.09	98.2	7.26	98.6	7.62	98.2	7.82	(266)
<i>F</i>		3.9**		0.1		0.9		1.9		2.6*	
소재지											
대도시	98.0	8.92	97.4	6.73	97.1	7.27	96.6	7.4	96.3	7.28	(1,464)
중소도시	97.3	8.94	96.5	7.23	96.7	7.64	96.2	7.55	96.3	7.47	(1,631)
읍·면	98.4	8.99	98.0	6.84	97.9	7.41	97.9	7.4	96.8	7.29	(951)
<i>F</i>		0.1		3.6*		1.9		0.4		0.6	
규모											
20명 이하	97.1	8.75	96.3	6.96	96.4	7.51	96.0	7.42	95.9	7.24	(1,520)
21~39명	97.0	8.85	96.9	6.89	96.6	7.45	96.3	7.33	95.3	7.24	(625)
40~79명	98.7	8.91	97.9	6.92	97.6	7.34	97.2	7.37	97.3	7.41	(992)
80명 이상	98.5	9.37	98.1	7.03	98.3	7.48	97.7	7.72	97.1	7.57	(909)
<i>F</i>		2.5		0.1		0.2		1.0		0.8	
2012년 조사	93.7	7.46	92.2	5.52	92.2	4.91	91.3	5.22	90.9	5.50	(3,668)
2009년 조사		6.40		5.20		3.72		3.78		4.52	-

* $p < .05$, ** $p < .01$

2)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횟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해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 관련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한다. 2014년 1년간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받았던 안전교육 횟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98.1%의 어린이집에서 참여하였고, 그 평균횟수는 3.51회이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96.8%의 어린이집에서 참여하였으며, 그 평균횟수는 4.03회로 조사되었다.

〈표 III-4-6〉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비율 및 횟수

단위: %, 회(개소)

구분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전체	98.1	3.51	96.8	4.03	(4,046)
시설유형					

(표 III-4-6 계속)

구분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국공립	98.1	4.14	97.2	4.85	(506)
사회복지법인	97.9	3.71	97.1	4.15	(377)
법인·단체	97.3	3.26	96.8	4.23	(283)
민간	98.2	3.52	97.2	3.98	(1,134)
가정	97.9	3.28	96.0	3.77	(1,480)
직장	99.3	3.50	97.6	3.70	(266)
<i>F</i>		2.4*		2.4*	
소재지					
대도시	97.9	3.32	96.7	3.90	(1,464)
중소도시	98.2	3.83	97.0	4.36	(1,631)
읍·면	98.1	3.29	96.5	3.67	(951)
<i>F</i>		4.9**		3.9*	
규모					
20명 이하	98.0	3.31	96.0	3.77	(1,520)
21~39명	98.4	3.47	97.0	3.61	(625)
40~79명	97.8	3.73	96.7	4.31	(992)
80명 이상	98.3	3.64	97.9	4.44	(909)
<i>F</i>		1.6		3.6*	
2012년 조사	81.3	1.86(2.69)	-	-	
2009년 조사	-	-	-	-	

* $p < .05$, ** $p < .01$

주: 1) 2012년 조사에서는 위 안전관리 항목이 세분화하여 조사 실시. 교통안전 79.5%/2.52회, 약물오남용 69.8%/1.95회, 재난대비 68.7%/1.98회, 성폭력예방 84.1%/2.03회, 실종유괴예방 73.2%/1.94회
 2) 2009년 조사에서는 연 평균 교통안전 5.08회, 약물오남용 3.73회, 재난대비 4.28회, 성폭력 예방 2.99회, 실종유괴예방 3.15회 실시

다. 안전사고 및 관리

지난 1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횟수와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안전사고

본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부딪힘 또는 넘어짐, 끼임, 떨어짐,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및 급식, 통학버스 사고, 원인 미상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유형별 안전사고 사고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35.2%로 가장 많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지만 끼임, 떨어짐, 이물질 삽입 등 다른 유형의 사고의 발생은 5% 미만의 어린이집에서 보고되었다.

그 발생 빈도 평균을 살펴보면, 그 빈도 또한 넘어짐 또는 부딪힘 등은 3회 이상이나 다른 사고 유형의 빈도는 1회 정도로 매우 미미하였다.

〈표 III-4-7〉 2014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1 발생비율 및 건수

단위: %, 회(개소)

구분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이물질삽입		(수)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평균	35.2	3.49	35.2	3.76	4.5	1.47	1.8	1.20	1.8	1.15	(4,046)
시설유형											
국공립	45.6	2.23	44.1	2.23	7.1	1.24	3.3	1.08	3.6	1.28	(506)
사회복지법인	30.5	2.28	36.0	2.14	2.9	1.16	1.3	1.00	0.8	1.00	(377)
법인·단체	39.8	2.26	39.7	2.20	3.4	1.25	3.3	1.00	2.3	1.04	(283)
민간	35.9	3.47	39.0	3.73	4.2	1.47	1.2	1.66	2.2	1.09	(1,134)
가정	28.2	5.13	26.8	5.72	4.1	1.64	1.0	1.19	0.3	1.00	(1,480)
직장	51.3	2.74	43.4	3.47	6.2	1.71	5.2	1.08	4.9	1.22	(266)
<i>F</i>		6.9***		8.9***		1.6		4.0**		0.8	
소재지											
대도시	37.6	3.63	36.1	3.94	4.1	1.51	2.1	1.23	1.9	1.10	(1,464)
중소도시	35.0	3.58	34.8	3.87	4.9	1.46	1.9	1.20	1.7	1.10	(1,631)
읍·면	31.6	3.06	34.6	3.26	4.5	1.43	1.3	1.11	1.6	1.34	(951)
<i>F</i>		0.6		0.9		0.1		0.2		1.9	
규모											
20명 이하	27.9	5.12	26.9	5.66	4.1	1.61	1.0	1.19	0.4	1.00	(1,520)
21~39명	30.3	3.13	31.0	3.63	4.2	1.29	1.5	1.20	0.3	1.00	(625)
40~79명	38.9	2.58	39.7	2.73	4.5	1.53	2.7	1.21	3.0	1.25	(992)
80명 이상	46.9	2.87	47.5	2.95	5.4	1.32	2.5	1.19	3.7	1.10	(909)
<i>F</i>		9.8***		12.0***		1.4		0.0		1.0	

** $p < .01$, *** $p < .001$

주: 중복응답 결과임.

〈표 III-4-8〉 2014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2 발생비율 및 건수

단위: %, 회(개소)

구분	화상		식중독급식		통학버스		원인미상		기타		(수)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평균	1.1	1.02	0.3	1.13	0.3	1.00	0.6	1.38	3.7	3.64	(4,046)
시설유형											
국공립	1.0	1.00	0.3	1.00	0.5	1.00	0.3	1.00	6.0	1.89	(506)
사회복지법인	0.2	1.00	-	-	0.8	1.00	1.0	1.56	1.9	1.59	(377)
법인·단체	2.2	1.00	0.5	1.00	0.5	1.00	1.1	1.67	6.4	1.95	(283)
민간	1.5	1.06	0.4	1.00	0.4	1.00	0.4	1.00	2.5	3.90	(1,134)
가정	0.3	1.00	-	-	0.1	1.00	0.7	1.51	1.6	9.82	(1,480)
직장	3.5	1.00	1.4	1.38	-	-	0.8	1.23	14.9	2.37	(266)

(표 III-4-8 계속)

구분	화상		식중독급식		통학버스		원인미상		기타		(수)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i>F</i>		0.1		1.0		-		0.2		2.8*	
소재지											
대도시	1.1	1.00	0.4	1.00	0.4	1.00	0.5	1.41	5.2	4.16	(1,464)
중소도시	1.0	1.06	0.3	1.33	0.2	1.00	0.6	1.29	3.0	3.50	(1,631)
읍·면	1.2	1.00	0.2	1.00	0.4	1.00	0.9	1.45	2.2	1.99	(951)
<i>F</i>		0.4		1.2		-		0.0		0.4	
규모											
20명 이하	0.3	1.00	-	-	0.1	1.00	0.7	1.51	1.5	9.69	(1,520)
21~39명	0.8	1.00	-	-	-	-	0.3	1.00	2.5	2.89	(625)
40~79명	1.6	1.00	0.6	1.26	0.7	1.00	0.8	1.26	5.7	1.90	(992)
80명 이상	2.0	1.05	0.6	1.00	0.5	1.00	0.7	1.43	5.8	3.04	(909)
<i>F</i>		0.2		1.6		-		0.1		4.4**	

* $p < .05$, ** $p < .01$

주: 중복응답 결과임.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평균 1.74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 간 다툼 0.84회, 종사자 부주의 0.14회 순이다.

〈표 III-4-9〉 안전사고 발생원인별 건수

구분	유아	부주의	아동간 다툼	종사자	부주의	시설물	하자	단위: 회(개소)	
								평균	(수)
평균	1.74		0.84		0.14		0.02	0.01	(4,046)
시설유형									
국공립	1.76		0.41		0.08		0.02	0.03	(506)
사회복지법인	1.18		0.32		0.03		0.02	0.02	(377)
법인단체	1.52		0.45		0.05		0.01	0.01	(283)
민간	1.80		0.93		0.15		0.04	-	(1,134)
가정	1.71		1.12		0.20		0.01	-	(1,480)
직장	2.56		0.74		0.15		0.04	0.06	(266)
소재지									
대도시	1.86		0.89		0.20		0.02	0.02	(1,464)
중소도시	1.78		0.90		0.11		0.02	0.01	(1,631)
읍면	1.48		0.64		0.10		0.03	0.01	(951)
규모									
20명 이하	1.69		1.11		0.20		0.01	-	(1,520)
21~39명	1.43		0.66		0.11		0.03	-	(625)
40~79명	1.60		0.64		0.09		0.02	0.02	(992)
80명 이상	2.20		0.70		0.13		0.04	0.03	(909)

주: 중복응답 결과임.

이러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조사한 결과, 보육실이 6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유희실이 13.4%, 실외놀이터가 13.1%, 원외 공간 5.0% 순이었다. 이는 아동의 활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아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사고의 위험 또한 더 높음을 보여준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실 다음으로 실외놀이터에서의 사고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과 달리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 다음으로 유희실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이 높았다. 규모별로는 대규모 어린이집일수록 실외놀이터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이 높고, 유희실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표 III-4-10〉 안전사고 발생장소

구분	보육실	유희실	실외 놀이터	원외 공간	이동 통로	화장실 욕실	현관	등하원 차량 내				식당	기타	없다	계(수)
								등하원 차량 내	식당	기타	없다				
전체	60.3	13.4	13.1	5.0	3.2	0.9	0.4	0.3	0.1	0.3	3.0	100.0(4,041)			
시설유형															
국공립	63.0	6.2	20.2	5.0	3.2	0.6	-	0.2	-	0.5	1.1	100.0(506)			
사회복지법인	64.8	3.6	13.2	6.6	6.6	1.0	0.4	-	-	0.6	3.2	100.0(377)			
법인단체	68.7	4.9	16.2	4.3	3.0	0.4	-	-	-	-	2.5	100.0(283)			
민간	68.9	4.2	12.9	6.5	3.5	0.7	0.6	0.5	0.1	0.1	2.0	100.0(1,134)			
가정	49.1	28.1	9.4	3.4	2.2	1.4	0.6	0.2	0.3	0.3	5.0	100.0(1,475)			
직장	65.4	6.6	16.5	6.4	2.9	0.6	-	-	-	1.0	0.6	100.0(266)			
$\chi^2(df)$							536.6(45)***								
소재지															
대도시	64.0	11.7	11.4	5.2	3.0	0.9	0.4	0.2	0.1	0.3	2.8	100.0(1,463)			
중소도시	56.2	17.1	13.0	4.4	3.1	1.1	0.5	0.3	0.3	0.4	3.7	100.0(1,628)			
읍·면	61.3	9.7	15.8	5.8	3.6	0.7	0.5	0.4	-	0.2	2.1	100.0(950)			
$\chi^2(df)$							55.6(18)***								
규모															
20명 이하	49.4	27.4	9.7	3.4	2.4	1.4	0.6	0.2	0.3	0.3	4.8	100.0(1,515)			
21~39명	66.5	6.3	13.1	5.9	3.4	1.1	0.5	0.3	-	0.2	2.7	100.0(625)			
40~79명	67.5	4.9	13.7	6.5	4.1	0.6	0.4	-	-	0.4	1.9	100.0(992)			
80명 이상	66.4	3.7	18.1	5.5	3.2	0.4	0.2	0.6	0.2	0.3	1.4	100.0(909)			
$\chi^2(df)$							484.2(27)***								
2012년 조사	63.0	14.9	10.2	5.2	4.2	1.4	-	0.3	-	0.8		100.0(3,993)			
2009년 조사	58.6	11.5	19.3	-	5.9	-	-	0.5	-	3.8		100.0(3,993)			

*** p < .001

2) 안전 관리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보육사업안내에 준하여 안전사고예방 대책으로 어린이집에서의 안전관리 사항 준수와 비상연락망 구축 기관을 조사하였다.

가) 안전관리 사항

안전사고예방 대책으로 준수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응급처치 동의서를 비치하고(97.2%),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97.1%)하고, 어린이집 대피도를 마련(96.6%)하는 부분에서 95%를 넘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 관리감독 및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관 지정은 72.4%의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III-4-11> 안전 관련 마련 또는 실행하고 있는 사항

구분	응급처치 동의서 비치	부모와의 비상연락망 확보	어린이집 비상대피도 마련	비상대응 훈련계획 수립	안전관리 책임관 지정	단위: %(개소)
						(수)
전체	97.2	97.1	96.6	91.1	72.4	(4,046)
시설유형						
국공립	98.2	97.4	98.4	94.7	78.5	(506)
사회복지법인	97.7	98.4	98.6	92.9	76.2	(377)
법인·단체	95.7	95.4	94.2	87.3	70.6	(283)
민간	96.4	96.7	95.6	90.4	72.3	(1,134)
가정	97.1	96.9	96.4	90.2	69.3	(1,480)
직장	99.4	99.4	98.1	93.2	75.5	(266)
소재지						
대도시	97.2	98.0	96.9	89.9	75.3	(1,464)
중소도시	97.3	96.5	96.5	91.6	69.6	(1,631)
읍·면	96.8	96.7	96.1	92.0	72.7	(951)
규모						
20명 이하	97.0	97.0	96.3	90.2	69.5	(1,520)
21~39명	98.0	97.0	96.6	91.3	70.8	(625)
40~79명	96.6	96.8	96.5	91.1	76.4	(992)
80명 이상	97.5	97.7	97.1	92.3	74.1	(909)

주: 중복응답 결과임.

나)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

어린이집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 기관은 소방서 88.7%, 병원 87.5%, 경찰서

84.2%, 시청 또는 군청 6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인근 어린이집(15.9%)과 가스유류 점검기관(29%)과의 연계는 미미하였다. 그러나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인근 어린이집과의 연계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지역규모별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시청 또는 군청과의 연계 비율이 대도시 지역보다 높다.

〈표 III-4-12〉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상 기관

구분	소방서	병원	경찰서	시청 또는 군청	가스유류 점검기관	인근 어린이집	단위: %(개소)	
							기타	(수)
전체	88.7	87.5	84.2	66.7	29.0	15.9	4.5	(4,046)
시설유형								
국공립	91.8	88.7	89.8	77.5	35.5	16.9	5.9	(506)
사회복지법인	93.2	90.0	90.5	73.4	36.6	11.4	3.6	(377)
법인·단체	89.4	88.6	87.7	65.9	30.1	12.1	5.5	(283)
민간	87.8	87.9	83.3	63.4	27.4	15.9	2.9	(1,134)
가정	86.8	86.4	81.3	64.5	26.7	18.5	3.2	(1,480)
직장	90.8	85.6	81.6	63.8	24.0	10.1	16.3	(266)
소재지								
대도시	87.3	87.6	83.7	57.4	26.7	16.2	5.7	(1,464)
중소도시	88.6	87.4	83.6	71.4	29.8	16.0	4.1	(1,631)
읍·면	91.5	87.8	86.2	73.8	31.2	15.3	3.4	(951)
규모								
20명 이하	86.8	86.3	81.2	64.3	26.8	18.1	3.4	(1,520)
21~39명	88.2	87.7	83.8	67.4	23.6	15.3	3.8	(625)
40~79명	89.4	88.1	85.7	66.9	31.3	13.6	4.9	(992)
80명 이상	91.7	88.8	88.0	70.1	33.8	15.3	6.5	(909)

주: 중복응답 결과임.

다) 등·퇴원 일지

다음은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원 시 영유아 인계과정에 대한 정해진 규칙을 문서화 한 등·퇴원 일지를 비치하고 작성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일지를 비치하고 작성하는 경우는 73%, 비치는 하나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8.4%, 비치하거나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18.6%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 시에는 등·퇴원 일지 작성한다는 비율이 53.3%로 2015년 조사에서 그 비율이 월등히 증가하였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91.9%)과 법인·단체어린이집(90.8%)의 경우 비치하고 작성하는 비율이 90%이상인데 반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54.6%로 낮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비치 및 작성 비율이 높았고, 어린이집 규모가 커질수

록 등·퇴원일지의 비치와 작성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III-4-13〉 등·퇴원 일지 비치 및 작성 여부

구분	비치 및 작성	비치하나 작성안함	비치, 작성안함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73.0	8.4	18.6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78.8	4.6	16.6	100.0(506)	
사회복지법인	91.9	2.5	5.6	100.0(377)	
법인·단체	90.8	4.8	4.4	100.0(283)	$448.3(10)^{***}$
민간	83.2	7.0	9.8	100.0(1,134)	
가정	54.6	13.6	31.8	100.0(1,480)	
직장	76.6	4.5	18.9	100.0(266)	
소재지					
대도시	71.8	8.2	20.1	100.0(1,464)	
중소도시	67.8	10.2	22.0	100.0(1,631)	$80.8(4)^{***}$
읍·면	83.9	5.7	10.4	100.0(951)	
규모					
20명 이하	55.5	13.4	31.2	100.0(1,520)	
21~39명	77.0	7.0	16.0	100.0(625)	$413.0(6)^{***}$
40~79명	83.0	6.7	10.3	100.0(992)	
80명 이상	88.9	2.8	8.3	100.0(909)	
2012년 조사	53.3	13.9	32.8	100.0(3,995)	

*** $p < .001$

라. CCTV 설치

2015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주요활동 공간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보호자의 요청 시 CCTV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CCTV는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성능과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어야한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2015년 9월 시행되었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적용되고 있다. 2015년 본 보육실태조사가 이러한 법 적용 이전 상태인 7월~9월에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설치 현황과는 차이를 보인다.

2016년 1월 기준으로 설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전체 설치대상 어린이집 38,607개 전체 100% CCTV를 설치하였다.⁴⁾

4) CCTV 설치 현황(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6년 1월 18일 기준).

〈표 III-4-14〉 CCTV 설치 현황: 2016년 1월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어린이집	설치예외*(A)				설치대상 개소수 (A)	설치완료	
		계	기요건 충족	미설치 동의	네트워크 카메라		개소수 (B)	비율 (B/A)
합계	42,324	3,717	2,668	759	290	38,607	38,607	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6. 1. 18)

조사 시점인 2015년 7월, 실내 CCTV 설치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조사 대상 중 48.6%의 어린이집에서 CCTV를 설치하였고, 그 중 보육실에 설치한 비율이 33.7%로 가장 높았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72.7%)과 직장 어린이집(69.6%)에서의 설치 비율이 높은 편이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그 설치율이 27.9%로 가장 저조하였다. 본 결과는 현재 의무설치가 이루어지는 법 적용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에의 설치율 증가 효과가 가장 큼을 보여준다.

〈표 III-4-15〉 실내 CCTV 설치 현황: 2015년 7월 기준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실	유희실			식당	주출입 현관	복도	조리실	화장실	사무실	양호실	전체 (수)
		공동 놀이실	실내 놀이터	강당								
평균	33.7	4.3	1.5	0.8	0.3	4.0	3.5	0.5	0.2	0.7	0.1	48.6 (4,046)
시설유형												
국공립	47.2	4.4	1.4	1.4	0.4	8.8	8.4	1.3	0.8	0.8	0.1	72.7 (506)
사회복지법인	42.6	3.0	1.5	1.6	0.7	5.0	4.8	0.8	0.3	1.4	0.1	58.4 (377)
법인·단체	36.9	3.0	1.3	1.2	0.7	6.4	4.2	0.6	0.2	0.9	0.1	54.2 (283)
민간	40.4	3.5	1.3	1.0	0.2	4.3	3.9	0.5	0.2	1.1	0.1	55.0 (1,134)
가정	20.5	5.3	1.1	-	0.1	0.7	0.1	0.2	-	-	-	27.9 (1,480)
직장	39.4	5.4	4.9	0.8	1.0	8.4	8.8	0.8	0.4	0.9	0.2	69.6 (266)
소재지												
대도시	34.7	4.3	1.7	0.9	0.2	5.1	3.9	0.7	0.3	0.7	0.1	51.1 (1,464)
중소도시	31.4	4.5	1.5	0.5	0.3	3.0	3.1	0.4	0.2	0.5	-	44.9 (1,631)
읍·면	36.4	4.0	1.3	0.9	0.5	4.0	3.6	0.6	0.2	0.9	0.1	50.7 (951)
규모												
20명 이하	20.9	5.4	1.2	0.1	0.1	0.9	0.3	0.2	-	-	-	28.8 (1,520)
21~39명	35.0	3.7	1.2	0.3	0.1	3.9	3.5	0.3	0.5	0.4	-	48.0 (625)
40~79명	42.0	4.0	2.0	0.8	0.4	6.3	5.1	0.8	0.3	1.1	0.1	60.8 (992)
80명 이상	46.1	3.3	1.8	2.3	0.9	6.9	7.4	1.1	0.2	1.4	0.1	69.1 (909)

주: 중복응답 결과임.

마. 아동학대 신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대상 어린이집 원장 중 85.2%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도 13.9%에 달하여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월등히 그 인지 정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표 III-4-16〉 아동학대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인지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전혀 모르고 있음	잘 모르고 있음	대략적으 로 알고 있음	정확하게 알고 있음	계(수)	$\chi^2(df)$
전체	0.1	0.8	13.9	85.2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0.2	0.5	9.1	90.1	100.0(506)	
사회복지법인	-	0.5	11.7	87.7	100.0(377)	
법인·단체	-	1.0	13.6	85.4	100.0(283)	
민간	0.1	0.9	13.6	85.3	100.0(1,134)	38.1(15)***
가정	0.1	0.9	17.4	81.7	100.0(1,480)	
직장	-	-	8.8	91.2	100.0(266)	
소재지						
대도시	0.1	0.7	13.7	85.5	100.0(1,464)	
중소도시	0.1	0.6	14.4	84.8	100.0(1,631)	3.9(6)
읍·면	-	1.1	13.4	85.5	100.0(951)	
규모						
20명 이하	0.1	0.9	17.0	82.1	100.0(1,520)	
21~39명	-	0.2	14.0	85.8	100.0(625)	
40~79명	0.2	1.2	12.0	86.6	100.0(992)	31.2(9)***
80명 이상	-	0.5	10.8	88.8	100.0(909)	
2012년 조사	1.7	10.7	40.5	47.1	100.0(3,994)	

*** $p < .001$

5. 어린이집 차량운행

차량운행과 관련된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등·하원 차량의 운행 여부,

소유형태, 차량운영 방법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는 가장 주가 되는 차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 차량 운행여부 및 소유형태

조사 결과 전체 어린이집의 57.6%에서 등·하원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2012년 62.3%와 비교하면 등하원 차량 운행 어린이집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96.8%로 차량 운행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법인·단체어린이집이 83.8%, 민간어린이집이 83.6% 순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38.6%, 가정어린이집은 38.8%로 낮은 편이었으며,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10.7%로 차량 운행비율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44.3%, 중소도시의 경우 54.3%의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84.7%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읍면지역이 인구밀도가 낮고 장거리 이용 영유아가 많아 차량 운행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차량을 운행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의 소유형태는 어린이집에서 구입하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차량인 경우가 87.1%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 차량이 11.3%, 기타 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임대차량 비율이 69.1%로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표 III-5-1〉 등·하원 차량 운행 여부 및 소유형태

단위: %(개소)(대수)

구분	운행비율 (수)	운행차량 소유형태			계(수)
		소유	임대	기타	
전체	57.6 (4,046)	87.1	11.3	1.6	100.0(3,097)
시설유형					
국공립	38.6 (506)	76.1	18.2	5.7	100.0(232)
사회복지법인	96.8 (377)	86.2	12.5	1.3	100.0(616)
법인·단체	83.8 (283)	91.4	7.7	0.8	100.0(335)
민간	83.6 (1,134)	85.7	12.9	1.4	100.0(1,275)
가정	38.8 (1,480)	98.3	1.0	0.7	100.0(595)
직장	10.7 (266)	27.5	69.1	3.4	100.0(44)
$\chi^2(df)$	1154.6(5)***		278.8(10)***		
소재지					
대도시	44.3 (1,464)	85.2	12.5	2.2	100.0(855)
중소도시	54.3 (1,631)	86.5	11.8	1.7	100.0(1,120)
읍·면	84.7 (951)	89.1	10.0	0.9	100.0(1,122)

(표 III-5-1 계속)

구분	운행비율 (수)	운행차량 소유형태			
		소유	임대	기타	계(수)
$\chi^2(df)$	395.5(2) ^{***}	9.6(4) ^{**}			
규모					
20명 이하	38.5 (1,520)	98.2	0.9	0.9	100.0(607)
21~39명	65.1 (625)	95.3	3.1	1.5	100.0(430)
40~79명	64.8 (992)	89.9	8.9	1.3	100.0(813)
80명 이상	76.7 (909)	77.1	20.8	2.1	100.0(1,247)
$\chi^2(df)$	398.7(3) ^{***}	216.1(6) ^{***}			
2012년 조사	62.3 (4,000)	89.6	1.8	0.5	100.0(2,508)
2009년 조사	61.0 (3,204)	74.9	2.8	1.4	100.0(1,248)

^{**} $p < .01$, ^{***} $p < .001$

주: 2009년, 2012년 조사에서는 '지입' 항목이 추가되어 각각 20.9%, 8.2%로 나타남.

나. 통학차량 운영 방법

다음으로 어린이집 차량 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학차량 운행 시 운전자 및 동승자, 평균 운행거리, 이용아동 규모, 차량운영비 지원여부, 차량이용비 수납액 등을 조사하였다.

1)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운전기사를 고용한 경우가 5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원장이 운전한다는 응답은 36.8%이었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89.7%)과 법인·단체어린이집(77.5%),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73%)에서 운전기사가 운전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가정어린이집(85.4%)에서는 원장이 한다는 응답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았다. 시설규모에 따른 차이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원장이 운전하는 비율이 줄고 전문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5-2〉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구분	운전기사	원장	기타인력	보육교사	기타	단위: %(대수)
						계(수)
전체	56.4	36.8	2.9	2.0	2.0	100.0(3,097)
시설유형						
국공립	89.7	4.4	2.3	-	3.6	100.0(232)
사회복지법인	73.0	17.4	4.1	3.7	1.8	100.0(616)

(표 III-5-2 계속)

구분	운전기사	원장	기타인력	보육교사	기타	계(수)
법인단체	77.5	18.3	3.0	0.2	1.1	100.0(335)
민간	57.3	35.4	3.4	1.6	2.3	100.0(1,275)
가정	9.7	85.4	0.5	3.0	1.4	100.0(595)
직장	87.5	5.5	7.1	-	-	100.0(44)
$\chi^2(df)$				915.6(20)***		
소재지						
대도시	59.9	33.5	2.6	2.3	1.7	100.0(855)
중소도시	49.0	44.7	2.4	1.9	1.9	100.0(1,120)
읍·면	60.8	31.7	3.5	1.8	2.2	100.0(1,122)
$\chi^2(df)$				48.7(8)***		
규모						
20명 이하	10.5	84.5	0.7	2.9	1.3	100.0(607)
21~39명	36.5	57.2	1.9	3.4	1.0	100.0(430)
40~79명	66.2	26.3	3.8	1.7	1.9	100.0(813)
80명 이상	78.9	13.6	3.7	1.1	2.7	100.0(1,247)
$\chi^2(df)$				1021.7(12)***		
2012년 조사	50.6	40.6	2.0	3.5	3.3	100.0(2,504)

*** $p < .001$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에서는 2004년부터 차량동승자 관련 문항을 포함시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행 시 운전자를 제외한 차량 동승자로는 보육교사가 98.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2004년 및 2009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보육교사 동승 비율은 2004년 83.5%에서 2009년 93.7%, 2012년 95.8%, 98.3%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시설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보육교사가 차량동승자인 비율이 97% 이상이었다. 기타 동승자는 이사장, 원감, 사무원, 관리인 등으로 파악된다.

〈표 III-5-3〉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

구분	보육교사	원장	기타	단위: %(대수)
전체	98.3	1.6	1.3	(3,097)
시설유형				
국공립	98.3	0.1	2.4	(232)
사회복지법인	99.0	1.2	0.8	(616)
법인·단체	98.7	0.6	1.2	(335)
민간	98.7	1.3	1.3	(1,275)
가정	97.5	3.5	0.4	(595)

(표 III-5-3 계속)

구분	보육교사	원장	기타	(수)
직장	87.0	3.0	10.0	(44)
소재지				
대도시	97.5	1.4	1.8	(855)
중소도시	98.5	2.5	0.8	(1,120)
읍·면	98.7	0.8	1.2	(1,122)
규모				
20명 이하	97.1	3.7	0.6	(607)
21~39명	98.7	2.1	1.1	(430)
40~79명	98.9	1.2	1.0	(813)
80명 이상	98.4	0.6	1.8	(1,247)
2012년 조사	95.8	2.2	2.8	(2,508)
2009년 조사	93.7	3.1	2.1	(1,946)

주: 1) 2009년, 2012년 조사에서는 '동승안함'이 추가되어 1.6%, 0.2%로 각각 나타남.

2) 2015년 조사에서는 해당차량을 탑승하는 동승자 모두를 묻는 복수 응답 결과임.

2) 통학차량 월 평균 운행거리

등·하원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운용하는 차량의 월평균 운행거리를 조사하였다. 등·하원을 위한 차량의 월평균 운행거리는 한 달 평균 1,000km 이하가 54.3%, 1,000~2,000km 이하가 27.9%, 2,000~3,000km 이하가 10.3%, 3,000~4,000km 이하가 4.5%, 4,000~5,000km 이하가 1.9%, 5,000km 이상이 1.2%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월 평균 운행거리가 1,000km 미만 비율이 72.8%로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1,000km 미만 비율이 감소하고 2,000km 이상 비율이 증가하여, 대중교통이 덜 발달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읍·면지역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장거리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통학차량의 월평균 운행거리는 2012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표 III-5-4〉 어린이집 주 차량 월 평균 운행거리

단위: %(대수)

구분	1,000km 미만	1,000~ 2,000km 미만	2,000~ 3,000km 미만	3,000~ 4,000km 미만	4,000~ 5,000km 미만	5,000km 이상	계(수)	$\chi^2(df)$
전체	54.3	27.9	10.3	4.5	1.9	1.2	100.0(2,990)	
시설유형								
국공립	48.3	33.4	9.8	6.5	1.3	0.8	100.0(222)	178.4(25)***
사회복지법인	41.4	31.0	13.3	7.0	4.7	2.5	100.0(584)	

(표 III-5-4 계속)

구분	1,000km 미만	1,000~ 2,000km 미만	2,000~ 3,000km 미만	3,000~ 4,000km 미만	4,000~ 5,000km 미만	5,000km 이상	계(수)	$\chi^2(df)$
법인·단체	44.5	31.1	12.8	7.2	3.1	1.2	100.0(317)	
민간	54.8	28.4	10.6	3.8	1.4	1.1	100.0(1,236)	
가정	72.8	19.6	5.2	1.6	0.1	0.6	100.0(587)	
직장	54.1	31.5	14.4	-	-	-	100.0(44)	
소재지								
대도시	60.1	26.8	7.9	2.9	1.3	1.0	100.0(826)	
중소도시	58.9	28.6	8.2	2.1	1.3	0.9	100.0(1,087)	109.8(10)***
읍면	45.1	28.1	14.2	8.0	2.9	1.7	100.0(1,077)	
규모								
20명 이하	72.1	20.4	5.2	1.6	0.1	0.6	100.0(599)	
21~39명	60.1	27.5	7.0	3.0	1.2	1.2	100.0(421)	
40~79명	50.8	29.5	11.8	4.6	2.0	1.3	100.0(778)	141.9(15)***
80명 이상	45.7	30.8	12.9	6.3	2.9	1.5	100.0(1,192)	
2012년 조사	53.7	28.9	10.7	3.7	1.4	1.6	-	
2009년 조사	20.4	36.1	21.3	10.9	4.0	7.2	-	

*** $p < .001$

주: 본 문항에는 임대차량의 경우 순수 어린이집통합운행거리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도 무응답이 있었음.

3) 차량 이용아 수 및 비용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 아동 수 및 이용 아동의 최대 차량 탑승시간을 조사하였다.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25.96명의 영유아가 차량을 이용하며,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평균 41.9명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5.98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평균 31.83명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역보다 많았다. 예상했던 것처럼 어린이집의 규모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도 증가하였다.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최대 탑승시간은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28.29분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34분을 상회하였고, 가정어린이집은 가장 짧아 평균 24.11분 정도였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평균 30.85분, 중소도시 평균 27.5분, 대도시 평균 26.29분으로 읍면지역에서의 최대 탑승시간이 가장 길었다. 규모별로는 20명 이하 시설 평균 24.55분에서 80명 이상 시설 평균 31.48분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탑승 시간도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표 III-5-5〉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수와 탑승 시간

단위: 명, 분(개소)

구분	차량 이용 영유아 수		차량 탑승 최대 시간(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5.96	25.95	28.29	14.04	(2,379)
시설유형					
국공립	36.31	22.10	28.62	15.41	(197)
사회복지법인	41.90	26.95	34.21	17.29	(364)
법인·단체	31.75	26.02	31.17	12.99	(244)
민간	28.39	26.49	27.72	12.88	(950)
가정	5.98	3.35	24.11	12.00	(595)
직장	37.46	37.23	34.67	13.56	(29)
<i>F</i>	136.0***		27.2***		
소재지					
대도시	24.81	26.10	26.29	14.64	(669)
중소도시	21.54	22.62	27.50	12.67	(906)
읍·면	31.83	28.11	30.85	14.59	(804)
<i>F</i>	34.4***		21.6***		
규모					
20명 이하	6.05	3.39	24.55	13.30	(607)
21~39명	12.45	7.60	27.78	13.46	(410)
40~79명	24.74	13.34	28.59	14.03	(655)
80명 이상	52.13	30.65	31.48	14.24	(707)
<i>F</i>	763.6***		26.8***		
2012년 조사	30.5	30.89	26.7	12.15	(2,506)

*** $p < .001$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이용비를 영유아 부모로부터 별도로 수납하는지 여부 및 수납 시 금액을 조사하였다. 부모로부터 차량이용비를 별도로 수납한다고 답한 어린이집은 전체 응답 대상 어린이집 중 54.3%로 나타나 2012년 42.2%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에서 69.1%로 가장 높은 수납률을 보였고, 직장어린이집 29.3%, 가정어린이집에서는 30.6%로 낮았다. 읍·면지역에서는 43.3%가 부모로부터 차량이용비를 수납한다고 응답한 반면, 대도시에서는 62.7%, 중소도시에서는 57.7%가 수납한다고 하였다.

차량이용비를 수납하는 경우 월 평균 수납액은 평균 25,000원으로, 2012년 평균 20,600원에 비해 평균 4,400원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29,200원, 민간어린이집 25,900원, 가정어린이집 25,100원의 순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17,200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받았다.

〈표 III-5-6〉 통학차량비 수납 여부 및 금액

단위: %(개소), 만원

구분	수납 비율 (수)	차량이용비 수납시 금액				
		1만원	2만원	3만원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54.3 (2,379)	21.4	59.7	18.9	100.0(1,271)	2.50(4.46)
시설유형						
국공립	51.5 (197)	36.7	57.1	6.2	100.0(101)	1.72(0.66)
사회복지법인	53.8 (364)	21.0	58.4	20.6	100.0(198)	2.92(8.73)
법인·단체	58.7 (244)	19.8	63.7	16.5	100.0(141)	2.15(1.85)
민간	69.1 (950)	19.2	58.2	22.6	100.0(638)	2.59(3.54)
가정	30.6 (595)	22.3	65.0	12.7	100.0(186)	2.51(3.68)
직장	29.3 (29)	16.6	66.9	16.6	100.0(7)	2.00(0.61)
$\chi^2(df)/F$	223.7(5)***					1.2
소재지						
대도시	62.7 (669)	21.6	44.5	34.0	100.0(410)	2.63(3.29)
중소도시	57.7 (906)	19.9	69.8	10.3	100.0(505)	2.45(5.69)
읍·면	43.3 (804)	23.4	63.6	13.0	100.0(356)	2.42(3.54)
$\chi^2(df)/F$	61.8(2)***					0.2
규모						
20명 이하	30.4 (607)	22.7	64.9	12.4	100.0(189)	2.49(3.65)
21~39명	56.5 (410)	20.0	65.1	14.8	100.0(219)	2.35(2.93)
40~79명	59.4 (655)	19.9	59.2	20.8	100.0(390)	2.75(6.54)
80명 이상	68.6 (707)	22.8	55.5	21.7	100.0(473)	2.39(3.03)
$\chi^2(df)/F$	198.7(3)***					0.6
2012년 조사	42.2 (2,508)	27.1	62.5	10.4	100.0(1,037)	2.06(2.08)
2009년 조사	15.6 (1,899)	-	-	-	100.0(286)	1.57(0.68)

*** $p < .001$

4) 차량 안전 관련

보육사업 안내에 준하여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켜야하는 차량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 부착, 차량용 소화기 비치, 차량 내 구급 상자 비치 등의 내용은 99% 이상,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97.3%, 36개월 미만 영아용 보호 장구 착용 94.7%, 금연상징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91.7%, 영유아 등퇴원 일지 작성 84.4%가 준수한다고 응답하여 거의 대부분의 차량 안전관리 내용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7〉 차량 운행 시 준수하는 내용

단위: %(개소)

구분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 부착	차량용 소화기 비치	차량 내 구급상자	차량안전점 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36개월 미만 영아용 보호장구	금연상징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영유아 등퇴원 일지 작성	(수)
전체	99.5	99.2	99.2	97.3	94.7	91.7	84.4	(2,377)
시설유형								
국공립	100.0	100.0	99.4	99.4	94.0	89.0	87.7	(197)
사회복지법인	99.6	99.6	100.0	98.5	96.9	92.3	83.9	(364)
법인·단체	99.8	100.0	99.5	98.3	91.9	91.1	87.4	(244)
민간	99.5	99.0	99.2	97.2	93.7	92.1	83.2	(950)
가정	99.2	98.7	98.7	95.7	96.8	91.9	84.3	(593)
직장	100.0	100.0	100.0	95.2	88.3	92.4	83.5	(29)
소재지								
대도시	99.4	99.5	99.4	98.1	94.1	93.4	87.2	(668)
중소도시	99.6	98.9	98.5	96.9	94.8	90.4	82.9	(906)
읍면	99.6	99.2	99.9	97.1	95.1	91.7	83.6	(803)
규모								
20명 이하	99.2	98.7	98.8	95.8	96.8	92.1	84.4	(605)
21~39명	99.6	99.0	99.1	98.0	95.9	90.9	83.7	(410)
40~79명	99.8	99.5	99.5	97.0	93.3	91.3	85.6	(655)
80명 이상	99.5	99.4	99.5	98.4	93.5	92.3	83.5	(707)

주: 중복응답 결과임.

신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확인하는 내용을 조사한 결과 성범죄 경력 조회 89.4%,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88.5%, 아동학대 이력 조회 85.9%,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83.2%의 어린이집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확인한다는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III-5-8〉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확인 내용

단위: %(개소)

구분	성범죄 경력 조회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아동학대 이력 조회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기타	(수)
전체	89.4	88.5	85.9	83.2	23.0	(2,347)
시설유형						
국공립	99.9	99.2	95.1	83.7	17.7	(196)
사회복지법인	97.6	97.5	93.4	87.1	20.2	(364)
법인·단체	99.0	97.8	94.7	83.2	17.0	(244)
민간	91.6	90.7	88.4	88.7	22.1	(941)
가정	72.6	71.2	70.4	71.1	30.3	(573)
직장	95.9	95.9	86.2	91.0	28.5	(29)

(표 III-5-8 계속)

구분	성별 조회	경력 제출	채용신체검사서 이력 조회	아동학대 이수여부	교통안전교육 확인	기타 (수)
소재지						
대도시	89.6	88.2	87.8	85.7	26.1	(664)
중소도시	86.2	85.1	82.2	82.2	22.8	(884)
읍·면	92.7	92.4	88.4	82.3	20.6	(799)
규모						
20명 이하	73.1	71.6	70.6	71.3	29.8	(585)
21~39명	87.1	86.1	82.2	80.6	22.7	(401)
40~79명	95.8	95.3	92.1	87.0	19.7	(654)
80명 이상	98.3	97.4	95.1	91.2	20.6	(707)

주: 중복응답 결과임.

5) 차량운영비 지원

정부에서는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과 시·도지사가 지정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소당 연 240만원(월 20만원)을 차량운영비로 지원한다. 본 실태조사에서 정부로부터 차량운영비 지원 수혜 여부 및 지원받는 경우 얼마를 받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한 어린이집 2,379개소 중 38.1%가 정부로부터 차량운영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36.6%에 비교해볼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비율이 다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차량운영비를 지원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71.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60.8%, 법인·단체어린이집 49.6%의 순으로 높은 편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인 읍·면지역에서 82.5%로 지원 받는 비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규모별로는 보육영유아 수가 큰 시설일수록 정부로부터 차량 운영비를 지원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로부터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액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지원액은 283,200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5-9〉 차량운영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구분	지원받은 비율 (%)	(수)	지원 시 월평균 금액		
			평균 (수)	표준편차 (수)	단위: %(개소), 만원
전체	38.1	(2,379)	28.32	48.25	(905)
시설유형					
국공립	71.2	(197)	22.09	31.35	(143)

(표 III-5-9 계속)

구분	지원받은 비율 (수)	지원 시 월평균 금액		
		평균	표준편차	(수)
사회복지법인	60.8 (364)	31.45	48.79	(228)
법인단체	49.6 (244)	39.17	82.78	(122)
민간	27.5 (950)	26.45	42.01	(261)
가정	26.8 (595)	25.51	33.89	(146)
직장	18.7 (29)	17.88	4.52	(5)
$\chi^2(df)/F$	262.9(5)***	2.0		
소재지				
대도시	14.6 (669)	13.73	23.91	(93)
중소도시	15.9 (906)	33.20	70.72	(148)
읍면	82.5 (804)	29.50	44.68	(664)
$\chi^2(df)/F$	996.0(2)***	5.4*		
규모				
20명 이하	28.4 (607)	25.21	32.94	(158)
21~39명	33.7 (410)	26.53	41.95	(146)
40~79명	42.9 (655)	29.07	58.28	(282)
80명 이상	44.3 (707)	30.16	47.94	(319)
$\chi^2(df)/F$	44.3(3)***	0.5		
2012년 조사	36.6 (2,508)	19.54	27.44	(961)
2009년 조사	27.2 (1,876)		-	

* $p < .05$, *** $p < .001$

6. 영유아 건강관리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건강관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아픈 영유아 발생 시 간호하는 장소 및 담당자,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등을 조사하였다.

가. 영유아 간호

1) 영유아 간호 장소

어린이집에서 아픈 영유아가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 돌보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대상 어린이집 중 61.6%가 보육실에서 돌본다고 답하였다. 이는 영유아가 아플 때 다른 영유아와 분리하여 돌보기보다 같은 공간 내에서 돌봄을 받고 있음을 의미 한다. 보육실이 아닌 공간에서 아픈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원장실 26.1%, 교사실

5.7%, 양호실 4% 순이었다.

시설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실에서 돌보는 비율이 82.8%로 다른 유형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결과에 시설유형별, 규모별 차이를 보임은 보육교사의 인력 수급 및 보육공간의 구성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으로 아픈 경우 다른 영유아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III-6-1〉 영유아 간호 장소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실	원장실	교사실 (회의실)	양호실	기타	계(수)	$\chi^2(df)$
전체	61.6	26.1	5.7	4.0	2.6	100.0(4,044)	
시설유형							
국공립	46.7	38.2	7.0	6.4	1.8	100.0(506)	
사회복지법인	47.9	30.7	11.7	6.5	3.2	100.0(377)	
법인·단체	51.3	33.5	5.3	7.1	2.8	100.0(283)	
민간	55.3	34.1	6.1	2.6	2.0	100.0(1,134)	713.9(20)***
가정	82.8	10.6	3.0	0.2	3.4	100.0(1,478)	
직장	29.9	40.1	8.8	19.4	1.8	100.0(266)	
소재지							
대도시	62.1	25.9	5.6	3.9	2.5	100.0(1,463)	
중소도시	63.7	24.5	5.3	4.1	2.4	100.0(1,631)	12.1(8)
읍·면	57.2	29.1	6.5	4.0	3.2	100.0(950)	
규모							
20명 이하	82.1	10.9	3.2	0.2	3.5	100.0(1,518)	
21~39명	57.8	33.5	5.4	1.2	2.2	100.0(625)	693.5(12)***
40~79명	48.2	39.3	6.8	3.6	2.1	100.0(992)	
80명 이상	44.3	32.0	8.9	12.8	2.0	100.0(909)	
2012년 조사	59.1	28.8	6.4	3.2	2.4	100.0(3,998)	

*** $p < .001$

2) 영유아 간호 담당자

어린이집에서 아픈 영유아가 발생할 경우 누가 돌보는지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라는 응답이 47.8%, 원장이 45.8%로 나타나 이 두 경우가 전체 응답의 93.6%를 차지하였다. 현행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서는 어린이집 현원 기준 영유아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간호사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차이가 시설유형에서 직장어린이집, 시설규모별로는 8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간호사의 돌봄 비율 증가로 나타났다.

〈표 III-6-2〉 영유아 간호 담당자

구분	보육교사	원장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기타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47.8	45.8	4.1	0.6	1.6	100.0(4,040)	
시설유형							
국공립	45.1	43.7	7.1	1.1	3.0	100.0(506)	
사회복지법인	51.8	38.4	7.5	1.1	1.2	100.0(375)	
법인·단체	43.9	44.6	6.0	2.2	3.2	100.0(283)	247.3(20)***
민간	47.7	45.9	3.8	0.5	2.0	100.0(1,131)	
가정	51.4	47.8	-	-	0.8	100.0(1,479)	
직장	32.9	49.5	15.6	1.4	0.6	100.0(266)	
소재지							
대도시	48.5	44.1	4.6	0.9	1.9	100.0(1,462)	
중소도시	46.6	48.3	3.7	0.4	1.0	100.0(1,627)	14.1(8)*
읍·면	48.9	44.4	4.0	0.6	2.1	100.0(951)	
규모							
20명 이하	51.3	47.9	-	-	0.8	100.0(1,519)	
21~39명	50.5	47.6	0.2	0.7	1.0	100.0(624)	612.9(12)***
40~79명	46.4	49.9	0.5	0.5	2.6	100.0(990)	
80명 이상	41.6	36.4	17.9	1.8	2.3	100.0(907)	
2012년 조사	51.4	42.7	4.5	-	1.4	100.0(3,997)	

* $p < .05$, *** $p < .001$

나. 영유아 건강 검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경우, 검사결과 통보서로 같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사전안내하고 건강검진 확인서를 접검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전체 어린이집의 99%에서 건강검진 사전안내를 하고 있었다. 보육영유아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별도로 실시했다고 하는 경우 검사결과 확인서를 확인하는지 조사한 결과, 철저하게 접검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 대상 어린이집의 91.6%로 높게 나타났다. 접검하지 않는다는 어린이집은 0.4%에 불과하였다. 이는 2012년 결과에 비해 철저히 접검함의 비율이 증가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강화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III-6-3〉 영유아 건강 검진 사전 안내 여부 및 점검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사전안내 비율	(수)	확인서 점검 여부			
			철저히 점검함	대략 점검함	점검하지 않음	계(수)
전체	99.0	(4,046)	91.6	8.0	0.4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99.6	(506)	96.8	2.7	0.5	100.0(506)
사회복지법인	99.0	(377)	90.3	9.2	0.5	100.0(377)
법인·단체	99.7	(283)	90.2	7.8	2.0	100.0(283)
민간	99.2	(1,134)	92.5	7.3	0.1	100.0(1,134)
가정	98.4	(1,480)	89.2	10.6	0.2	100.0(1,480)
직장	99.3	(266)	94.3	5.0	0.7	100.0(266)
$\chi^2(df)$	8.9(5)			58.6(10)***		
소재지						
대도시	99.4	(1,464)	93.6	6.0	0.3	100.0(1,464)
중소도시	98.6	(1,631)	90.7	8.9	0.4	100.0(1,631)
읍·면	98.9	(951)	90.0	9.6	0.4	100.0(951)
$\chi^2(df)$	5.4(2)			13.2(4)**		
규모						
20명 이하	98.3	(1,520)	89.3	10.5	0.2	100.0(1,520)
21~39명	100.0	(625)	91.8	8.2	-	100.0(625)
40~79명	98.8	(992)	94.3	5.1	0.6	100.0(992)
80명 이상	99.6	(909)	92.5	6.7	0.8	100.0(909)
$\chi^2(df)$	16.3(3)***			34.2(6)***		
2012년 조사	98.9	(4,000)	80.0	18.7	1.3	100.0(3,990)

** $p < .01$, *** $p < .001$

다. 예방접종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률 제 27조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 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해야하며,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접종을 반드시 보호자를 지도하여, 영유아의 예방 접종 여부확인 및 관리를 위해 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1) 예방접종 유무 확인 및 조치

2014년 1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예방접종관련 사항의 준수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

해 영유아 연령에 따라 입소 후에 정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확인한다는 경우가 46.5%,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해 매달 확인하는 경우 42.7%, 입소 시에만 확인한다가 9.7%로 조사되었다.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1%로 나타났다.

예방접종내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에서 연계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2012년 결과와 비교해볼 때, 입소 시에만 확인한다는 비율이 41.9%에서 9.7%로 감소하는 궁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6-4〉 예방접종 유무 확인 여부: 2014년

단위: %(개소)

구분	영유아 연령에 따라 입소 후에 정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확인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통해 매달 확인	입소 시에 보호자에게 확인	특별히 확인하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46.5	42.7	9.7	1.0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45.4	48.0	6.2	0.3	100.0(506)	
사회복지법인	42.6	45.1	11.2	1.1	100.0(377)	
법인단체	42.9	47.8	8.2	1.1	100.0(283)	38.4(15)**
민간	46.5	41.2	11.2	1.1	100.0(1,134)	
가정	50.0	39.4	9.2	1.3	100.0(1,480)	
직장	38.5	48.7	12.2	0.7	100.0(266)	
소재지						
대도시	46.7	43.4	9.1	0.8	100.0(1,464)	
중소도시	49.1	39.6	10.1	1.2	100.0(1,631)	16.7(6)*
읍·면	41.7	47.0	10.1	1.2	100.0(951)	
규모						
20명 이하	50.2	39.4	9.1	1.3	100.0(1,520)	
21~39명	42.6	46.0	10.7	0.6	100.0(625)	27.8(9)**
40~79명	42.3	47.7	9.2	0.8	100.0(992)	
80명 이상	47.6	40.7	10.6	1.2	100.0(909)	
2012년 조사	52.3	-	41.9	5.7	100.0(3,795)	
2009년 조사	42.6	-	57.4	-	100.0(2,737)	

* $p < .05$, ** $p < .01$

주: 2012년 조사의 경우, '기타'는 0.2%였음.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비가 강조됨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에서의 조치 수준을 조사하였다. 보호자에게 알린 후 추후 접종 사실을 재확인한다는 적극적 대처가 6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접종하도록 안내하는 수준까지 대응한다는 경우가 37.3%,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1.6%로 나타났다.

〈표 III-6-5〉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에 대한 조치

단위: %(개소)

구분	보호자에게 안내 후 추후 접종 사실 제회인	접종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별도 조치하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61.2	37.3	1.6	100.0(4,004)	
시설유형					
국공립	51.2	47.1	1.8	100.0(503)	
사회복지법인	60.7	37.1	2.2	100.0(373)	
법인·단체	64.7	33.7	1.6	100.0(280)	
민간	62.6	35.7	1.7	100.0(1,124)	32.2(10)***
가정	63.6	35.3	1.1	100.0(1,460)	
직장	58.9	38.9	2.2	100.0(264)	
소재지					
대도시	57.9	40.1	2.0	100.0(1,451)	
중소도시	63.1	35.6	1.3	100.0(1,613)	13.0(4)*
읍·면	63.1	35.6	1.3	100.0(940)	
규모					
20명 이하	63.5	35.4	1.2	100.0(1,500)	
21~39명	56.9	41.1	2.0	100.0(621)	
40~79명	59.8	38.7	1.5	100.0(985)	11.4(6)
80명 이상	61.8	36.2	2.1	100.0(898)	

* $p < .05$, *** $p < .001$

2) 계절별 예방접종 확인

어린이집의 감염·전염성 질환 위험성이 높음에 주목하여 뇌염, 유행성 독감 등 계절별 예방접종 관련 문항을 2012년 조사부터 추가하였다. 2015년 조사에서 대체로 확인하고 관리한다는 응답이 48.8%,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한다는 비율은 40.5%로 전체 응답 대상 중 89.3%의 시설에서 계절별 영유아 예방접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및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10.7%이었다. 이는 2012년 조사 시 보다 월등히 향상된 결과로 메르스 등 감염·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 노력과 예방접종의 확인 관리 등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III-6-6〉 계절별 예방접종 확인 및 관리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철저히 확인, 관리함	대체로 확인, 관리함	확인, 관리하지 못함	계(수)	$X^2(df)$
전체	40.5	48.8	10.7	100.0(4,046)	

(표 III-6-6 계속)

구분	철저히 확인, 관리함	대체로 확인, 관리함	확인, 관리하지 못함	계(수)	$\chi^2(df)$
시설유형					
국공립	37.3	52.3	10.4	100.0(506)	
사회복지법인	43.2	44.3	12.5	100.0(377)	
법인·단체	39.9	49.9	10.2	100.0(283)	
민간	40.5	47.9	11.6	100.0(1,134)	33.9(10)***
가정	42.5	49.1	8.5	100.0(1,480)	
직장	32.4	49.3	18.3	100.0(266)	
소재지					
대도시	40.2	48.8	10.9	100.0(1,464)	
중소도시	40.0	49.3	10.7	100.0(1,631)	0.9(4)
읍면	41.7	47.9	10.4	100.0(951)	
규모					
20명 이하	42.3	49.1	8.5	100.0(1,520)	
21~39명	38.5	49.2	12.3	100.0(625)	
40~79명	38.5	49.1	12.4	100.0(992)	14.5(6)*
80명 이상	40.8	47.8	11.4	100.0(909)	
2012년 조사	18.5	56.9	24.6	100.0(3,999)	

* $p < .05$, *** $p < .001$

라. 전염성 질환에의 대처

2015년 메르스의 확산에 따른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서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처에 관심이 모아졌고, 이에 따라 전염성질환에 대한 대응준비와 의심 시 대처에 대해 조사문항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표 III-6-7> 전염성 질환에 대한 준비

구분	영유아의 전염성 질환 의심 시 등원시키지 않도록 부모에게 안내	증상 결과 이상 없음이 경우 출근할 수 있도록 사전 교사교육	시 병원진단 확인될 때 대상으로 교육	단위: %(개소)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체크	(수)
전체	88.3	79.0	76.6	62.6	(4,046)
시설유형					
국공립	89.9	82.3	77.1	63.3	(506)
사회복지법인	92.3	78.2	82.4	61.7	(377)
법인·단체	90.8	80.5	75.1	58.1	(283)
민간	87.3	78.2	76.2	58.8	(1,134)
가정	87.2	77.3	74.9	65.6	(1,480)
직장	87.1	84.2	80.4	65.6	(266)

(표 III-6-7 계속)

구분	영유아의 전염성 질환 의심 시 등원시키지 않도록 부모에게 안내	증상 의심 시 병원진단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경우 출근할 수 있도록 사전 교사교육	평소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체열 체크	(수)
소재지					
대도시	88.4	81.1	78.5	63.5	(1,464)
중소도시	87.5	76.8	75.2	62.2	(1,631)
읍면	89.4	79.3	75.9	61.7	(951)
규모					
20명 이하	87.5	77.4	75.1	65.7	(1,520)
21~39명	89.9	78.7	73.0	59.3	(625)
40~79명	87.9	81.0	77.0	57.9	(992)
80명 이상	88.9	79.6	81.2	64.6	(909)

주: 중복응답 결과임.

어린이집에서 전염성 질환에 대해 평소 어떤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영유아의 전염성 질환 의심 시 등원시키지 않도록 부모에게 안내한다는 경우가 8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증상 의심 시 병원진단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등원 또는 출근하도록 사전교육을 하는 경우는 79%, 평소 전염성 질환의 증상에 대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는 76.6%,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체열을 체크하는 경우는 62.6%로 조사되었다.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이나 아동을 즉시 귀가 조치함에 91.3%, 병원진단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경우 출근 또는 등원하도록 함 81.9%, 해당 시·군·구청에 의심 사례를 보고함 34.2%의 조사대상이 답하였다. 즉시 귀가 조치하고 병원의 확인 시 등원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비율은 높은 편이기는 하나, 시·군·구청에 알려 적극적 대응하는 비율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6-8〉 전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 조치사항

구분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이나 아동을 즉시 귀가 조치함	병원진단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경우 출근 또는 등원하도록 함	해당 시군구청에 의심 사례를 보고함	단위: %(개소)	
				기타	(수)
전체	91.3	81.9	34.2	1.8	(4,046)
시설유형					
국공립	91.2	86.1	46.1	2.8	(506)
사회복지법인	91.9	81.9	36.7	1.3	(377)

(표 III-6-8 계속)

구분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이나 아동을 즉시 귀가 조치함	병원진단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경우 출근 또는 등원하도록 함	해당 시군구청에 의심 사례를 보고함	기타	(수)
법인·단체	89.6	84.2	35.3	1.6	(283)
민간	92.1	79.8	30.6	1.5	(1,134)
가정	91.3	80.5	32.3	1.2	(1,480)
직장	88.4	87.7	32.3	4.5	(266)
소재지					
대도시	91.9	83.1	42.4	2.0	(1,464)
중소도시	90.7	81.3	27.6	1.6	(1,631)
읍면	91.1	81.0	32.3	1.7	(951)
규모					
20명 이하	91.2	80.7	32.8	1.2	(1,520)
21~39명	92.3	80.5	29.1	0.9	(625)
40~79명	90.2	83.8	37.4	2.7	(992)
80명 이상	91.9	82.8	36.5	2.3	(909)

주: 중복응답 결과임.

마.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건강검진 결과 감염성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자는 완치 시까지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년 1년 동안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대상 어린이집 중 대다수인 98.7%의 어린이집에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었다. 모든 교직원의 건강검진 여부는 2012년 결과인 94.9%보다도 향상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잘 준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9〉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여부

단위: %(개소)

구분	모든 교직원이 받음	일부 교직원만 받음	아무도 받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98.7	1.2	0.1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99.8	0.2	-	100.0(506)	
사회복지법인	99.7	0.3	-	100.0(377)	12.0(10)
법인·단체	98.5	1.5	-	100.0(283)	

(표 III-6-9 계속)

구분	모든 교직원이 받음	일부 교직원만 받음	아무도 받지 않음	계(수)	$\chi^2(df)$
민간	98.4	1.4	0.2	100.0(1,134)	
가정	98.2	1.6	0.2	100.0(1,480)	
직장	99.0	1.0	-	100.0(266)	
소재지					
대도시	98.7	1.2	0.1	100.0(1,464)	
중소도시	98.5	1.3	0.2	100.0(1,631)	2.1(4)
읍면	99.0	1.0	-	100.0(951)	
규모					
20명 이하	98.3	1.5	0.2	100.0(1,520)	
21~39명	98.0	1.8	0.3	100.0(625)	11.5(6)
40~79명	99.2	0.8	-	100.0(992)	
80명 이상	99.3	0.7	-	100.0(909)	
2012년 조사	94.9	4.4	0.7	100.0(3,798)	

7.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실내공기 질, 석면

가. 급식

어린이집의 급식관련 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급식재료의 공동구매 참여여부와 그 장·단점, 식단의 작성, 음식의 조리, 보육교사의 식사 장소와 식단에 대해 조사하였다.

1)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 여부

급식재료 공동구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 어린이집연합회,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복수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급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내용이다. 급식재료의 공동구매는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정부지원시설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급식재료의 공동구매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21.8%로 그 참여가 2012년 조사 시 보다 6.1% 증가함을 보여준다. 제도가 제시한 원칙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의 참여가 가장 높아 51.2%에 이르나,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21.4%, 법인·단체어린이집 21.3%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어린이집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1〉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 여부

구분	예	아니오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21.8	78.2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51.2	48.8	100.0(506)	
사회복지법인	12.1	87.9	100.0(377)	
법인·단체	21.3	78.7	100.0(283)	
민간	17.6	82.4	100.0(1,134)	315.9(5)***
가정	17.0	83.0	100.0(1,480)	
직장	21.4	78.6	100.0(266)	
소재지				
대도시	40.1	59.9	100.0(1,464)	
중소도시	11.8	88.2	100.0(1,631)	
읍·면	9.2	90.8	100.0(951)	477.2(2)***
규모				
20명 이하	17.4	82.6	100.0(1,520)	
21~39명	18.5	81.5	100.0(625)	
40~79명	29.9	70.1	100.0(992)	59.(8)***
80명 이상	22.5	77.5	100.0(909)	
2012년 조사	15.7	84.3	100.0(4,000)	

*** $p < .001$

2) 식재료 공동구매의 장점과 단점

급식재료의 공동구매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 장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공동구매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식재료의 안정된 수급(37.9%)을 들었다. 그 다음은 식재료 관리의 편리성(29.1%)과 식품의 신선도가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점(18.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비용절감은 7.2%의 응답을 보여 공동구매로 인한 비용의 감소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II-7-2〉 식재료 공동구매의 장점

구분	안정된 수급	관리 편리성	신선도 유지	비용 절감	표준 레시피 제공	식단과 제공	소량구매 가능	기타	없음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37.9	29.1	18.4	7.2	2.5	1.3	1.3	2.3	100.0(834)		
시설유형											
국공립	40.7	28.6	19.0	6.6	1.1	1.6	0.7	1.7	100.0(245)		
사회복지법인	33.1	37.2	8.0	11.3	6.9	-	3.5	-	100.0(51)		
법인·단체	51.8	23.3	12.2	8.1	-	-	-	4.5	100.0(51)	60.3(30)***	
민간	35.1	31.1	17.7	10.1	2.5	0.7	0.2	2.6	100.0(197)		

(표 III-7-2 계속)

구분	안정된 수급	관리 편리성	신선도 유지	비용 절감	표준 레시피 제공	식단과 제공	소량구매 가능	기타	없음	계(수)	$\chi^2(df)$
가정	33.8	28.6	23.5	3.4	3.9	1.2	3.1	2.6	100.0(237)		
직장	41.9	26.5	9.9	12.0	2.1	5.0	-	2.6	100.0(53)		
소재지											
대도시	38.6	30.8	18.2	5.2	1.7	1.2	1.5	2.8	100.0(558)		
중소도시	34.4	25.8	19.6	11.5	4.4	2.2	0.9	1.1	100.0(188)		
읍면	40.1	24.8	17.2	11.9	4.0	-	0.6	1.4	100.0(88)	22.0(12)*	
규모											
20명 이하	33.6	28.4	23.8	3.4	3.7	1.1	3.4	2.4	100.0(250)		
21~39명	34.0	28.6	19.8	11.1	1.5	2.5	-	2.5	100.0(108)	43.5(18)***	
40~79명	41.7	28.9	15.9	7.5	2.5	1.9	0.2	1.4	100.0(272)		
80명 이상	39.9	30.6	14.1	9.5	1.5	-	1.0	3.3	100.0(204)		
2012년 조사	35.0	26.7	19.4	9.1	2.1	1.3	-	6.4	100.0(654)		

* $p < .05$, *** $p < .001$

급식재료의 공동구매에 참여한 경우 그 단점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개별구매보다 비용이 높음(50.8%)이 가장 큰 단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식재료의 구매가 공동으로 진행되면서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할 수 없는 부분(15.8%), 식단의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응답(13%)이 많았다. 또한, 공동구매를 하면서 식재료의 구매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업무가 증가함(6.3%)도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표 III-7-3〉 식재료 공동구매의 단점

구분	개별구매보 다 비용이 높음	개별적 욕구 반영 어려움	식단 선택 제한	식재료 구매·관리 업무 증가	신선도 떨어짐	기타	없음	단위: %(개소)	
								계(수)	$\chi^2(df)$
전체	50.8	15.8	13.0	6.3	3.8	1.4	8.9	100.0(770)	
시설유형									
국공립	47.9	17.6	11.8	5.6	3.0	1.6	12.6	100.0(216)	
사회복지법인	38.0	21.2	14.2	12.3	-	0.8	13.5	100.0(44)	
법인·단체	45.7	27.5	10.5	8.3	3.2	2.1	2.6	100.0(51)	34.3(25)
민간	55.5	15.1	12.7	5.2	4.6	0.7	6.2	100.0(190)	
가정	57.3	11.8	15.5	5.1	3.8	1.9	4.6	100.0(227)	
직장	34.7	11.9	10.4	11.7	8.5	-	22.8	100.0(42)	
소재지									
대도시	52.8	15.6	10.5	5.7	4.2	1.7	9.5	100.0(516)	
중소도시	49.1	15.0	15.5	8.4	2.1	0.8	9.0	100.0(171)	21.6(10)*
읍면	40.3	19.4	25.1	5.6	4.7	-	4.8	100.0(83)	

(표 III-7-3 계속)

구분	개별구매보다 비용이 높음	개별적 육구 반영 어려움	식단 선택 제한	식재료 구매·관리 업무 증가	신선도 떨어짐	기타	없음	계(수)	X ² (df)
규모									
20명 이하	57.7	11.8	14.8	4.8	4.7	1.8	4.4	100.0(240)	
21~39명	55.5	12.3	14.7	5.0	4.5	2.7	5.3	100.0(102)	20.7(15)
40~79명	45.2	19.5	10.7	6.7	3.4	1.4	13.1	100.0(241)	
80명 이상	47.4	17.6	12.9	8.2	3.0	-	10.8	100.0(187)	
2012년 조사	-	30.6	19.7	13.4	7.5	10.0	18.8	100.0(654)	

* $p < .05$

3) 식단 작성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가 100인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 급식 제공을 위한 식단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는지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고, 육아종합지원 센터 등의 자료를 원장 및 교사가 수정하여 사용이 27%로 이 두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영양사 작성은 7.4%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자료를 영양사가 수정하여 사용이 3.6%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2009년,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식단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인 식단의 개발과 공유가 효과적으로 어린이집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II-7-4〉 어린이집 식단 작성

구분	육아종합지원 센터등 자료 그대로이용	육아종합지원 센터등자료 원장교사수정	영양사 작성	육아종합지원 센터등자료 조교사수정	육아종합지원 센터등자료 영양사 수정	기타	단위: %(개소)
							계(수)
전체	52.7	27.0	7.4	6.7	3.6	2.6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57.7	18.3	9.3	7.9	3.3	3.5	100.0(506)
사회복지법인	36.4	28.4	15.4	10.9	6.7	2.1	100.0(377)

(표 III-7-4 계속)

구분	유아종합지원 센터등 자료 그대로이용	유아종합지원 센터등자료 원장교사수정	영양사 작성	유아종합지원 센터등자료 조리사수정	유아종합지원 센터등자료 영양사 수정	기타	계(수)
법인·단체	47.4	26.3	7.9	11.5	2.7	4.1	100.0(283)
민간	50.2	27.3	6.7	8.6	5.6	1.5	100.0(1,134)
가정	63.6	30.2	0.5	3.2	1.4	1.0	100.0(1,480)
직장	19.6	24.3	33.6	5.5	4.7	12.4	100.0(266)
X ² (df)				741.7(25)***			
소재지							
대도시	60.1	19.5	8.3	5.6	4.1	2.5	100.0(1,464)
중소도시	51.0	31.0	6.4	5.9	3.3	2.4	100.0(1,631)
읍·면	43.5	32.4	7.9	10.0	3.3	2.9	100.0(951)
X ² (df)				109.2(10)***			
규모							
20명 이하	63.1	30.2	0.9	3.3	1.3	1.2	100.0(1,520)
21~39명	53.5	33.6	2.2	6.3	2.5	1.7	100.0(625)
40~79명	55.9	25.0	3.9	9.0	1.8	4.3	100.0(992)
80명 이상	30.6	19.3	26.1	10.3	10.2	3.6	100.0(909)
X ² (df)				917.2(15)***			
2012년 조사	32.6	41.2	7.6	9.2	3.8	5.8	100.0(3,989)
2009년 조사	18.8	62.7	9.8	-	-	8.8	100.0(3,196)

*** p < .001

4) 조리 담당자

음식을 자체적으로 조리한다고 응답한 경우 조리사 자격이 있는 조리원이 조리하는 시설이 5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원장이 조리하는 시설이 26.5%, 조리사 자격이 없는 조리원이 조리하는 시설이 20% 순이었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하면, 조리사 자격이 있는 조리원이 조리하는 경우가 다소 증가하였고 조리사 무자격 조리원이 조리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변화를 보이나 2012년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및 직장어린이집에서 조리사 자격이 있는 조리원 비율이 높았다. 반면, 가정어린이집의 57.8%, 민간어린이집의 17.1%는 원장이 직접 조리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유형의 시설과 차이를 보였다. 규모별로는 시설규모가 작아질수록 조리사 자격을 갖춘 조리원이 조리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표 III-7-5〉 급식 조리 담당자

단위: %(개소)

구분	조리사 자격 조리원	원장	조리사 무자격 조리원	교사	영양사	기타	계(수)
전체	52.1	26.5	20.0	0.6	0.2	0.7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96.2	0.2	3.6	-	-	-	100.0(506)
사회복지법인	92.1	0.4	6.6	-	0.8	0.1	100.0(377)
법인·단체	89.9	3.2	6.3	-	-	0.6	100.0(283)
민간	59.6	17.1	22.6	0.5	-	0.1	100.0(1,134)
가정	7.3	57.8	32.4	1.2	-	1.4	100.0(1,480)
직장	90.6	2.6	4.1	-	1.5	1.2	100.0(266)
$\chi^2(df)$			2333.3(25)***				
소재지							
대도시	56.2	25.6	17.4	0.2	0.2	0.5	100.0(1,464)
중소도시	42.0	33.5	23.0	0.5	0.1	0.8	100.0(1,631)
읍면	62.8	15.8	19.0	1.4	0.3	0.7	100.0(951)
$\chi^2(df)$			158.7(10)***				
규모							
20명 이하	8.7	56.7	32.2	1.2	-	1.3	100.0(1,520)
21~39명	36.6	25.0	36.8	0.8	0.2	0.5	100.0(625)
40~79명	87.5	4.4	7.8	-	0.1	0.3	100.0(992)
80명 이상	97.6	0.7	1.1	-	0.5	0.1	100.0(909)
$\chi^2(df)$			2598.4(15)***				
2012년 조사	47.7	26.0	24.9	0.5	0.2	0.8	100.0(3,894)

*** $p < .001$

5) 보육교사 식사

보육교사의 식사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식사장소와 식단을 조사하였다. 보육교사의 식사 장소는 영유아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식사한다는 응답이 94.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을수록 영유아와 다른 장소에서 식사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보육교사의 식단에 대한 조사 결과, 영유아와 함께 동일한 식단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96.3%이고, 영유아와 별도로 다른 식단으로 식사하는 경우는 3.7%에 그쳐 대부분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동일한 식단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6〉 보육교사 식사 장소 및 식단

단위: %(개소)

구분	장소				식단			
	다른 장소	동일 장소	계(수)	$\chi^2(df)$	다른 식단	동일 식단	계(수)	$\chi^2(df)$
전체	5.6	94.4	100.0(4,046)		3.7	96.3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2.2	97.8	100.0(506)		1.2	98.8	100.0(506)	
사회복지법인	4.3	95.7	100.0(377)		5.5	94.5	100.0(377)	
법인·단체	2.6	97.4	100.0(283)	79.3(5)***	4.3	95.7	100.0(283)	13.6(5)*
민간	2.8	97.2	100.0(1,134)		3.6	96.4	100.0(1,134)	
가정	9.5	90.5	100.0(1,480)		4.1	95.9	100.0(1,480)	
직장	7.2	92.8	100.0(266)		3.7	96.3	100.0(266)	
소재지								
대도시	4.1	95.9	100.0(1,464)		2.9	97.1	100.0(1,464)	
중소도시	6.8	93.2	100.0(1,631)	9.3(2)**	4.0	96.0	100.0(1,631)	4.7(2)
읍·면	6.0	94.0	100.0(951)		4.5	95.5	100.0(951)	
규모								
20명 이하	9.5	90.5	100.0(1,520)		4.1	95.9	100.0(1,520)	
21~39명	5.6	94.4	100.0(625)	81.2(3)***	3.9	96.1	100.0(625)	4.5(3)
40~79명	2.6	97.4	100.0(992)		2.6	97.4	100.0(992)	
80명 이상	2.2	97.8	100.0(909)		4.1	95.9	100.0(909)	
2012년 조사	6.0	94.0	100.0(3,993)		5.9	94.1	100.0(3,887)	
2009년 조사	15.1	84.9	100.0(3,191)		11.5	88.5	100.0(3,191)	

* $p < .05$, ** $p < .01$, *** $p < .001$

나. 실내공기질 관리

1)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 대상 인지와 실시 비율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 및 위생관리를 위해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하여 실내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며 환경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공기 질 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면적 $430m^2$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 관리교육 이수, 측정 및 결과 기록 보존, 개선명령이행, 관리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어린이집에 배포하기도 했다.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의무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70.3%,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22.8%, 잘 모르고 있는

경우는 6.5%, 전혀 모르는 경우도 0.3%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정확한 인지 비율이 높은 반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48.1%만이 정확히 알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는 2012년 조사 결과에 비해 그 인지 정도가 월등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7〉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대상 인지 여부

구분	전혀 모르고 있음	잘 모르고 있음	대략적으 로 알고 있음	정확하게 알고 있음	계(수)	$\chi^2(df)$
	단위: %(개소)					
전체	0.3	6.5	22.8	70.3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	0.3	4.5	95.2	100.0(506)	
사회복지법인	0.3	1.5	6.5	91.6	100.0(377)	
법인·단체	0.5	2.4	16.8	80.3	100.0(283)	686.3(15)***
민간	-	5.7	21.0	73.3	100.0(1,134)	
가정	0.7	12.4	38.8	48.1	100.0(1,480)	
직장	-	0.4	5.8	93.8	100.0(266)	
소재지						
대도시	0.4	5.0	20.2	74.4	100.0(1,464)	
중소도시	0.1	8.4	27.9	63.5	100.0(1,631)	66.7(6)***
읍·면	0.4	5.8	18.3	75.5	100.0(951)	
규모						
20명 이하	0.6	12.1	38.3	49.0	100.0(1,520)	
21~39명	-	6.3	26.9	66.7	100.0(625)	678.9(9)***
40~79명	0.1	3.6	12.4	83.9	100.0(992)	
80명 이상	0.1	0.5	5.3	94.1	100.0(909)	
2012년 조사	2.1	15.7	39.3	42.9	100.0(3,998)	

*** $p < .001$

2) 실내 공기질 측정 검사 횟수

실제로 실내공기 질 측정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45.4%로 나타났다. 실내공기 질 측정 검사는 연면적 430m²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형별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68.5%), 직장어린이집(67%), 국공립어린이집(64.5%)의 경우에 다른 유형에 비해 검사 실시비율이 높았다. 이는 또한 어린이집의 규모와 관련되어 규모가 클수록 정기검사 참여비율도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검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측정의 횟수를 조사

하였다. 2013년에는 평균 0.89회, 2014년에는 1.02회, 2015년에는 0.87회로 조사되었 다. 본 조사 시점이 7월임을 감안할 때 2015년 결과는 하반기에 실시되는 경우가 포 함되지 않아 다소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략적으로 연간 평균 1회 정도를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7-8〉 실내공기질 측정 검사 횟수

단위: %(개소), 회

구분	실시 비율 (수)	실시시 검사 횟수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5.4 (4,046)	0.89	1.02	1.02	1.09	0.87	0.86
시설유형							
국공립	64.5 (506)	0.98	0.92	1.09	0.89	0.95	0.87
사회복지법인	68.5 (377)	1.08	1.21	1.17	1.44	0.94	0.96
법인·단체	54.2 (283)	1.04	1.29	1.13	1.30	0.87	1.09
민간	44.8 (1,134)	0.82	0.85	0.95	0.82	0.85	0.83
가정	28.0 (1,480)	0.75	1.12	0.88	1.31	0.76	0.80
직장	67.0 (266)	0.90	0.81	1.10	0.70	0.98	0.61
$\chi^2(df)/F$	393.6(5)***	5.0***		3.4**		3.0*	
소재지							
대도시	51.6 (1,464)	0.88	0.66	0.97	0.81	0.86	0.77
중소도시	38.4 (1,631)	0.83	0.98	0.97	0.96	0.88	0.89
읍·면	47.3 (951)	1.01	1.49	1.16	1.57	0.89	0.94
$\chi^2(df)/F$	56.1(2)***	3.9*		5.3**		0.2	
규모							
20명 이하	28.4 (1,520)	0.75	1.11	0.89	1.29	0.77	0.79
21~39명	30.7 (625)	0.74	0.64	0.85	0.63	0.80	0.80
40~79명	44.0 (992)	0.87	1.14	1.06	1.11	0.88	1.00
80명 이상	86.1 (909)	1.02	0.97	1.11	1.03	0.95	0.81
$\chi^2(df)/F$	832.4(3)***	8.6***		5.7***		4.7*	
2012년 조사	35.5 (3,998)	0.79	1.08	1.04	1.38	1.37	1.79

* $p < .05$, ** $p < .01$, *** $p < .001$

주: 2012년 조사의 경우 2010년, 2011년, 2012년의 검사 횟수 결과임.

다. 석면 안전 관리

어린이집의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영유 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연면적 $430m^2$ 이상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2012년 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보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이수, 유지관리기준 준수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의무 이행해야 한다.

1) 석면안전관리법 인지 여부

어린이집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의무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경우가 70.6%로 가장 많았고, 대략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다는 비율이 25.5%로 이 두 경우를 합쳐 인지하는 비율을 보면 96.1%에 달하여, 2012년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어린이집 현장에서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에의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립유형별 비교 결과도 실내공기 질 관련 인지 여부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에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반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51.2%,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74.6%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석면안전관리법 규정이 시설규모에 따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7-9〉 석면안전관리법 인지 여부

구분	단위: %(개소)				
	전혀 모르고 있음	잘 모르고 있음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	정확하게 알고 있음	계(수)
전체	0.4	3.5	25.5	70.6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	0.7	9.6	89.7	100.0(506)
사회복지법인	-	0.7	10.1	89.2	100.0(377)
법인·단체	-	0.9	17.7	81.4	100.0(283)
민간	0.3	2.8	22.2	74.6	100.0(1,134)
가정	0.8	6.7	41.3	51.2	100.0(1,480)
직장	0.4	0.3	11.4	87.8	100.0(266)
소재지					
대도시	0.4	2.4	22.8	74.4	100.0(1,464)
중소도시	0.3	4.6	31.6	63.5	100.0(1,631)
읍·면	0.5	3.3	19.4	76.8	100.0(951)
규모					
20명 이하	0.8	6.5	40.7	52.0	100.0(1,520)
21~39명	0.3	3.5	27.6	68.6	100.0(625)
40~79명	0.2	1.4	15.5	82.9	100.0(992)
80명 이상	-	0.6	9.2	90.1	100.0(909)
2012년 조사	2.2	15.7	42.7	39.4	100.0(4,000)

*** $p < .001$

2) 석면 안전 관리 실시 계획(2015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15년 석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이미 실시했다는 응답은 54.5%로 가장 많았고, 실시 계획 없다는 비율이 30.6%, 내년 이후 실시하려고 한다는 경우가 9.1%, 올해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경우가 5.8%로 나타났다.

〈표 III-7-10〉 석면 안전검사 실시 계획(2015년)

구분	이미 했음	할 계획임	내년 이후	계획 없음	대상 아님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54.5	5.8	9.1	30.6	-	100.0(4,035)	
시설유형							
국공립	68.2	3.2	2.5	26.1	-	100.0(503)	
사회복지법인	79.4	4.4	2.4	13.8	-	100.0(377)	
법인·단체	72.4	3.1	6.8	17.7	-	100.0(282)	330.5(20)***
민간	55.4	6.7	9.0	28.9	-	100.0(1,129)	
가정	40.2	7.3	14.2	38.2	0.1	100.0(1,479)	
직장	52.7	3.5	5.1	38.7	-	100.0(265)	
소재지							
대도시	60.7	4.9	6.6	27.8	-	100.0(1,460)	
중소도시	46.9	6.3	12.1	34.5	0.1	100.0(1,626)	76.0(8)***
읍면	57.4	6.4	7.9	28.2	-	100.0(949)	
규모							
20명 이하	40.3	7.2	14.2	38.2	0.1	100.0(1,519)	
21~39명	49.2	6.2	10.1	34.4	-	100.0(621)	342.0(12)***
40~79명	59.8	4.9	6.0	29.4	-	100.0(988)	
80명 이상	76.6	4.2	3.1	16.1	-	100.0(907)	
2012년 조사	19.6	29.3	15.0	36.1		100.0(3,998)	

*** $p < .001$

라. 운영지원 매뉴얼 활용

어린이집의 운영관리를 돋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운영 지원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그 매뉴얼들에 대한 인지 정도와 활용 정도를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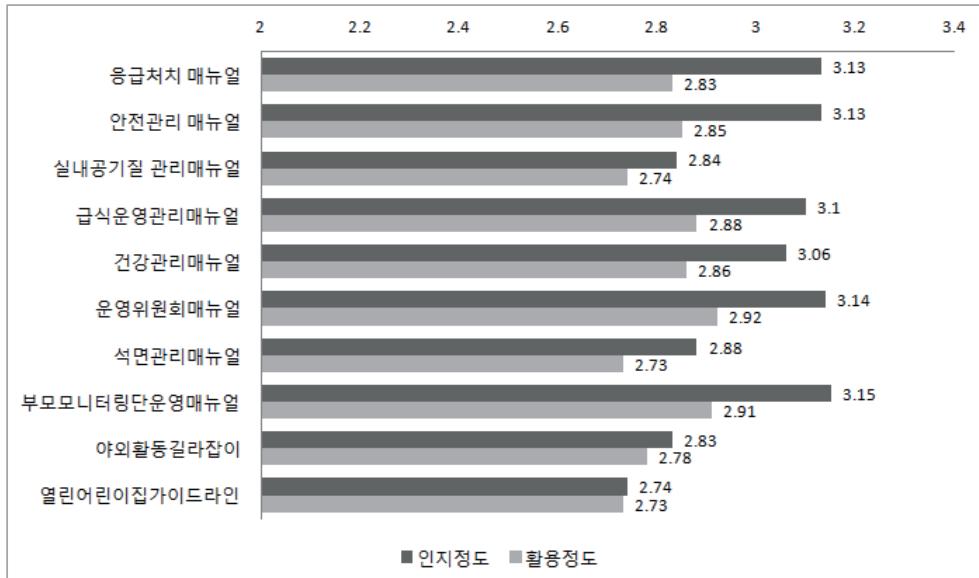
보건복지부가 개발 보급한 10종의 매뉴얼에 대한 보유비율을 살펴보면, 안전관리 매뉴얼(2009)이 84.2%로 가장 높았고, 실내공기질관리매뉴얼(2009)이 67.5%로 가장 낮았다. 인지도를 살펴보면, 부모모니터링단운영매뉴얼(2014), 운영위원회매뉴얼(2012), 응급처치매뉴얼(2009), 안전관리매뉴얼(2009), 급식운영관리매뉴얼(2010), 건강

관리매뉴얼(2011) 등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는 정도로 인지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매뉴얼의 활용 정도도 인지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인지도가 높은 매뉴얼의 활용도 또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III-7-11〉 보건복지부 개발 매뉴얼 보유 비율 및 인지·활용 정도

구분	보유 비율	인지 정도					활용 정도					단위: %(점)
		잘 모름	일부 인지	대체로 인지	잘 알고 있음	평균	전혀 활용 않음	일부 활용 함	대체로 활용	잘 활용	평균	
응급처치 매뉴얼(2009)	82.9	8.0	9.9	42.8	39.3 (3.13)		1.5	36.5	39.8	22.2 (2.83)		
안전관리 매뉴얼(2009)	84.2	8.0	10.8	41.4	39.9 (3.13)		1.7	35.0	39.7	23.7 (2.85)		
실내공기질관리매뉴얼(2009)	67.5	14.4	16.3	40.2	29.1 (2.84)		4.1	38.4	37.2	20.3 (2.74)		
급식운영관리매뉴얼(2010)	78.5	9.9	10.2	40.1	39.8 (3.10)		1.7	34.6	38.0	25.8 (2.88)		
건강관리매뉴얼(2011)	77.5	10.6	10.8	40.1	38.4 (3.06)		1.9	35.0	38.5	24.6 (2.86)		
운영위원회매뉴얼(2012)	81.2	8.8	10.3	38.3	42.5 (3.14)		1.8	32.6	37.8	27.9 (2.92)		
석면관리매뉴얼(2013)	67.8	13.9	15.4	39.4	31.3 (2.88)		5.7	37.0	35.4	21.9 (2.73)		
부모모니터링단운영매뉴얼(2014)	78.2	8.3	11.2	37.4	43.0 (3.15)		1.9	33.2	36.9	28.0 (2.91)		
야외활동길라잡이(2014)	71.4	15.2	16.7	38.5	29.6 (2.83)		2.8	37.5	38.8	20.9 (2.78)		
열린어린이집가이드라인(2015)	70.9	17.3	18.8	36.7	27.1 (2.74)		3.9	38.7	37.5	19.9 (2.73)		

주: 평균 접수가 높을수록 잘 인지하거나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III-7-1] 보건복지부 개발 매뉴얼 인지 및 활용 정도

8. 애로사항 및 요구

가. 운영 애로

1) 운영 어려움 정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원아모집과 안전, 급간식, 보육 프로그램, 시설설비, 재정, 행정, 보육교직원, 보호자 등 관련 문제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원장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어렵지 않다(1점)에서 매우 어렵다(4점)의 4 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운영 어려움을 중심으로 한 전체 9개 항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9개 항목 중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재정문제이었으며(평균 3.07점), 원아모집(평균 2.92점), 행정관련 문제(평균 2.60 점)의 순서로 어려움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보육프로그램관련 문제(평균 1.76점), 급간식(평균 1.77점) 등은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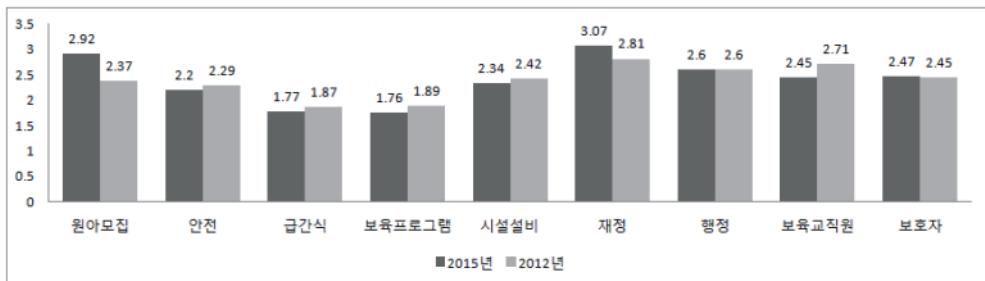
〈표 III-8-1〉 어린이집의 운영 어려움 정도 개요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다소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단위: %(개소), 점	
						2015년 평균	2012년 평균
원아모집	8.5	21.0	40.1	30.4	100.0(4,044)	2.92	2.37
안전	16.4	51.4	28.0	4.2	100.0(4,043)	2.20	2.29
급간식	38.6	47.2	12.7	1.5	100.0(4,044)	1.77	1.87
보육프로그램	34.8	54.9	9.9	0.4	100.0(4,044)	1.76	1.89
시설설비	16.0	41.5	35.0	7.5	100.0(4,043)	2.34	2.42
재정	5.2	18.6	40.1	36.1	100.0(4,046)	3.07	2.81
행정	8.7	37.0	40.0	14.4	100.0(4,045)	2.60	2.60
보육교직원	12.0	41.5	36.1	10.5	100.0(4,046)	2.45	2.71
보호자	8.4	45.7	36.0	9.9	100.0(4,046)	2.47	2.45

주: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함.

이를 중심으로 2015년과 2012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그림 III-8-1]과 같다. 2012년에 비해 2015년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이 증가한 부분은 원아모집과 재정적 관련부분임이 두드러진다. 영유아 인구수의 감소와 누리과정의 시행에 따른 보육 환경의 변화가 어린이집 원아모집 어려움으로 체감되고, 재정적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

으로 유추된다. 보육교직원 관련 부분은 2012년에 비해 어려움이 감소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관련 부분의 어려움이 감소함은 0-2세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포함하는 표준보육과정 운용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의 보급과 연수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이 어린이집 현장의 부담을 완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III-8-1]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정도 연도별 비교

보육실태 조사 시 가장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재정 관련 어려움임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재정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교사인건비가 43.5%로 가장 그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은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19.3%, 교사외 직원인건비 14.1%의 순서로 높았다. 2012년 조사 시에도 교사인건비 항목은 32.1%로 가장 높은 부분이었다.

〈표 III-8-2〉 어린이집 운영 시 재정적 어려움 요인

구분	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환경 개선	교사 외 직원 인건비	기타 경비 부담	사회 보험료, 공과금 등	급간식비 등 운영비용	교구·기자 재 구입 비	교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없음	단위: %(개소)
											계(수)
전체	43.5	19.3	14.1	5.5	5.1	4.2	2.6	1.0	0.4	4.3	100.0(4,043)
시설유형											
국공립	19.2	48.3	7.6	0.1	2.3	6.0	2.8	2.2	0.2	11.2	100.0(505)
사회복지법인	16.6	43.6	13.7	0.3	6.7	9.3	4.4	1.9	0.6	2.9	100.0(376)
법인단체	24.4	35.8	12.2	1.8	6.4	6.4	5.1	1.8	-	6.1	100.0(283)
민간	49.2	11.7	15.1	10.6	6.4	3.5	1.2	0.6	0.7	1.0	100.0(1,133)
가정	60.5	5.5	16.5	6.3	5.4	2.8	1.8	0.3	0.2	0.7	100.0(1,480)
직장	27.1	22.6	11.5	1.4	0.2	2.2	7.1	2.7	0.4	24.6	100.0(266)
$\chi^2(df)$					1124.8(40)	***					
소재지											
대도시	42.5	21.1	13.0	6.5	3.6	3.0	2.6	1.0	0.6	6.1	100.0(1,461)
중소도시	48.5	14.9	15.4	6.0	5.4	3.5	1.9	0.9	0.2	3.4	100.0(1,631)

(표 III-8-2 계속)

구분	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환경 개선	교사 외 직원 인건비	기타 경비 부담	사회 보현료 공과금 등	급간식비 등 운영비용	교재 교구·기자 재 구입 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없음	계(수)
읍면	36.3	24.1	13.6	3.3	7.1	7.2	3.7	1.3	0.3	3.1	100.0(951)
$\chi^2(df)$					116.4(16) ***						
규모											
20명 이하	59.6	6.1	16.2	6.1	5.3	3.0	2.1	0.4	0.2	0.9	100.0(1,520)
21~39명	46.8	16.2	12.5	9.5	4.0	3.7	2.1	1.2	0.5	3.7	100.0(625)
40~79명	29.0	30.8	11.7	5.3	4.6	5.1	3.2	1.7	0.7	7.9	100.0(990)
80명 이상	29.6	31.1	14.2	2.2	6.2	5.3	3.1	1.3	0.2	6.7	100.0(908)
$\chi^2(df)$					532.9(24) ***						
2012년 조사	32.1	25.7	14.4	8.5	-	5.2	8.0	1.2	-	4.8	100.0(4,000)
2009년 조사					20.2	9.8	-	8.9	2.1	-	1.9 100.0(3,196)

*** $p < .001$

2) 보육교직원 채용 어려움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의 채용 어려움의 정도와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보육교직원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보육교사의 경우 다소 경험하든 매우 어렵게 경험하든 채용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는 희망인건비가 높음(21.2%), 전문성과 자질부족(18.9%), 구직자 없음(10.5%)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리원의 경우는 채용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0.5%이며, 채용 시 어렵다는 비율은 37.8%로, 어렵지 않다는 41.7%보다 높지 않았다. 조리원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희망인건비가 높음(14.8%), 자격소지자 구인 어려움(8.5%)의 순서로 나타났다.

시간연장형 보육교사의 경우는 채용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73.3%에 달했다. 채용 시 어렵다는 비율도 12% 정도로 높지 않았다.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직자 없음(3.8%), 희망인건비가 높음(3.3%)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높지 않다.

영양사의 경우는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채용하도록 되어있어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이 88.8%로 조사되었다. 채용의 어려움정도도 어렵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럼에도 채용 시 어려움 요인은 자격소지자 구인 어려움(1.1%), 희망인건비가 높음(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채용하도록 되어있어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이 90.9%로 조사되었다. 채용의 어려움 정도도 어렵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간호(조무)사 채용 시 어려움 요인은 희망인건비가 높음(1.1%), 자격소지자 구인 어려움(0.8%)의 순이다.

장애전담(특수)교사의 경우는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이 92.2%로 높았다. 채용

이 어렵다는 비율(4.5%)이 어렵지 않다는 응답 비율(3.3%)보다 약간 더 높았다. 장애 전담(특수)교사 채용 시 어려움은 자격소지자 구인 어려움(2.9%)이 두드러지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경우는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은 65%정도이다.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채용이 어렵다는 비율이 15.3%, 어렵지 않다는 응답 비율 19.7%보다 약간 더 낮았다.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시 어려움은 구직자가 없음(4.2%), 자격소지자 구인 어려움(3.1%), 희망인건비 높음(3.0%) 등이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 채용 관련 어려움을 종합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교직원 채용의 어려움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희망인건비가 높음으로 수렴되는 결과를 보인다.

〈표 III-8-3〉 보육교직원 채용 어려움 정도

구분	단위: %(개소), 점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다소 어려움	매우 어려움	채용할 필요 없음	계(수)	평균
보육교사	7.3	32.7	43.3	16.7	-	100.0(4,046)	2.69
조리원	6.9	34.8	26.1	11.7	20.5	100.0(4,046)	2.54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2.7	12.0	7.8	4.2	73.3	100.0(4,046)	2.51
영양사	1.8	6.3	2.1	1.0	88.8	100.0(4,046)	2.21
간호(조무)사	1.7	4.3	1.9	1.1	90.9	100.0(4,046)	2.27
장애전담(특수)교사	0.9	2.4	1.8	2.7	92.2	100.0(4,046)	2.80
누리과정 보조교사	3.0	16.7	11.2	4.1	65.0	100.0(4,046)	2.41
2012년 조사							
보육교사	3.2	11.5	44.8	39.1	1.4	100.0(4,000)	3.22
조리원	8.7	28.7	31.3	10.0	21.4	100.0(4,000)	2.54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2.5	6.3	11.5	15.0	64.8	100.0(3,997)	3.11
영양사	2.1	4.2	4.4	3.9	85.4	100.0(3,999)	2.70
간호(조무)사	1.6	3.0	3.4	3.5	88.5	100.0(3,998)	2.79
장애전담(특수)교사	1.0	1.9	2.7	4.5	89.9	100.0(3,996)	3.08

주: '채용할 필요 없음'으로 답한 사례는 제외한 수치임.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함.

〈표 III-8-4〉 보육교직원 채용이 어려운 이유

구분	단위: %(개소)							
	희망 인건비 높음	전문성· 자격 부족	구직자 없음	경험· 경력 부족	자격 소지자 구인	기타	어려움 없음	계(수)
보육교사	21.2	18.9	10.5	4.6	4.1	0.5	40.1	100.0(4,046)

(표 III-8-4 계속)

구분	희망 인건비 높음	전문성· 자질 부족	구직자 없음	경험· 경력 부족	자격 소지자 구인	기타	어려움 없음	계(수)
조리원	14.8	3.1	7.2	3.4	8.5	0.4	62.4	100.0(4,046)
시간연장형보육교사	3.3	1.7	3.8	1.6	1.2	0.2	88.2	100.0(4,046)
영양사	1.0	0.2	0.8	0.1	1.1	-	96.9	100.0(4,046)
간호(조무)사	1.1	0.1	0.7	0.3	0.8	-	97.0	100.0(4,046)
장애전담(특수)교사	0.4	0.3	0.5	0.2	2.9	-	95.5	100.0(4,046)
누리과정 보조교사	3.0	2.4	4.2	2.0	3.1	0.4	84.9	100.0(4,046)
2012년 조사								
보육교사	27.4	21.3	18.9	4.5	10.0	1.9	16.1	100.0(3,997)
조리원	17.4	3.7	7.0	4.5	7.7	0.9	58.7	100.0(3,998)
시간연장형보육교사	7.0	3.1	8.2	1.9	4.9	1.5	73.5	100.0(3,997)
영양사	3.3	0.4	1.6	0.2	2.7	0.1	91.7	100.0(3,999)
간호(조무)사	2.8	0.4	1.3	0.1	2.1	0.2	93.1	100.0(3,998)
장애전담(특수)교사	1.8	0.7	1.2	0.4	3.1	0.1	92.7	100.0(3,996)

3) 시급개선사항

현재 어린이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하는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의 쳐우개선이 2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시설설비의 개선 23.6%, 교사 대 영유아 비율 10.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그 순위가 대체로 유사하나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 체감이 줄어든 경향을 보인다.

〈표 III-8-5〉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

구분	보육교사 치우개선 개선	시설· 설비 개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교직원 전문성 향상	교직원 채용	기타 활성화	부모 참여 활성화	교재 구입	교사, 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 개선	단위: %(개소)	
											기타 없음	계(수)
전체	29.5	23.6	10.2	9.9	6.3	5.4	4.9	1.9	0.9	3.1	4.4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19.7	38.8	5.1	12.8	6.1	6.0	1.2	2.1	0.9	1.8	5.3	100.0(506)
사회복지법인	17.1	37.2	15.8	5.5	5.9	5.5	3.9	1.4	1.1	2.7	4.1	100.0(377)
법인·단체	20.0	35.1	8.1	14.6	3.9	4.9	3.7	2.5	0.2	1.9	5.1	100.0(283)
민간	34.6	21.1	9.9	12.1	5.4	3.6	4.5	1.5	1.0	3.3	3.0	100.0(1,134)
가정	36.0	13.8	12.0	7.4	7.1	5.6	7.1	2.1	0.9	4.0	4.0	100.0(1,480)
직장	17.9	28.4	5.6	9.4	8.7	11.2	3.6	2.1	0.6	2.7	9.8	100.0(266)
$\chi^2(df)$							396.0(45)***					

(표 III-8-5 계속)

구분	보육교사 처우개선 개선	시설· 설비 비율	교사 영유아 향상	대 교직원 전문성	교직원 채용	기타 활성화	부모 참여	교재 구입	교사, 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 개선	기타 없음	계(수)
소재지												
대도시	27.9	23.1	11.2	10.8	5.3	5.8	5.5	1.6	1.1	2.9	4.8	100.0(1,464)
중소도시	32.0	21.1	10.2	9.1	5.8	5.6	5.1	2.3	0.6	3.2	4.9	100.0(1,631)
읍면	27.9	28.6	8.3	9.7	8.7	4.4	3.4	1.8	1.0	3.4	2.7	100.0(951)
$\chi^2(df)$						51.4(18)***						
규모												
20명 이하	35.6	14.6	11.9	7.2	7.1	5.5	7.1	2.1	0.8	3.9	4.2	100.0(1,520)
21~39명	30.7	27.4	10.3	9.5	3.3	4.6	5.4	0.8	0.6	3.1	4.4	100.0(625)
40~79명	24.4	28.8	8.4	12.3	7.4	5.7	3.0	1.7	1.1	2.7	4.2	100.0(992)
80명 이상	24.0	30.5	9.1	12.0	5.7	5.4	2.7	2.7	0.8	2.3	4.8	100.0(909)
$\chi^2(df)$						212.3(27)***						
2012년 조사	31.6	23.1	3.9	11.9	8.6	5.2	6.7	2.5	1.6	0.8	3.9	100.0(4,000)
2009년 조사	28.7	27.7	4.4	3.0	8.4	6.3	10.5	-	6.8	4.2	-	100.0(3,180)

*** p < .001

나. 지원 요구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떤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우선 순위를 두어 두 가지로 답하도록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보조인력의 지원으로 과반이 넘는 55.1%가 답하였고, 다음은 보육 교직원 재교육 기회 확대 16.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8-6〉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단위: %(개소)

구분	보조인력 지원	보육 교직원 기회 확대	정보 및 자료	재무회계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상담 관련 지원	지역사회 연계	기타 없음	계(수)
전체	55.1	16.6	6.9	6.2	4.3	1.5	8.3	1.1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65.0	15.7	3.6	5.2	5.5	1.4	2.5	1.0 100.0(506)
사회복지법인	59.0	17.5	6.6	2.3	4.8	1.7	6.9	1.1 100.0(377)
법안단체	53.5	18.4	6.5	7.5	6.8	1.4	3.6	2.4 100.0(283)
민간	42.0	21.3	9.3	10.4	3.4	1.7	10.8	1.1 100.0(1,134)
가정	61.3	12.6	6.3	4.3	3.6	0.8	10.6	0.6 100.0(1,480)
직장	53.5	17.2	8.3	5.0	6.2	3.9	3.5	2.5 100.0(266)
$\chi^2(df)$				244.0(30)***				

(표 III-8-6 계속)

구분	보조인력 지원	보육 교직원 기회 확대	정보 및 자료	재무회계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상담 관련 지원	지역사회 연계	기타	없음	계(수)
소재지									
대도시	55.5	16.0	6.7	7.4	3.9	1.6	7.6	1.3	100.0(1,464)
중소도시	56.4	15.0	7.5	5.3	4.1	1.3	9.4	1.0	100.0(1,631)
읍면	52.2	20.1	6.5	5.9	5.2	1.5	7.6	1.0	100.0(951)
$\chi^2(df)$	25.1(12)***								
규모									
20명 이하	60.9	12.6	6.3	4.5	3.7	0.9	10.5	0.6	100.0(1,520)
21~39명	44.8	18.9	9.1	9.0	3.6	3.2	9.8	1.8	100.0(625)
40~79명	53.7	16.9	9.0	6.9	5.3	1.6	5.7	0.9	100.0(992)
80명 이상	53.9	21.4	4.2	6.5	4.7	1.0	6.6	1.7	100.0(909)
$\chi^2(df)$	131.6(18)***								
2012년 조사	58.4	16.1	11.8	6.5	-	1.3	4.9	1.0	100.0(4,000)

*** $p < .001$

다. 지원 체계 이용 내용

어린이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표 III-8-7〉 어린이집 지원체계로부터 받는 지원내용

구분	표준보육 과정교육	안전 및 학대예방 교육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보육 정보의 제공	급간식 식단의 제공	부모교육 지원	의견 수렴 및 공동대응	단위: %(개소)	
									기타	(수)
육아종합지원센터	75.0	65.2	55.1	63.4	54.6	66.0	50.3	12.7	49.3	1.8 (3,418)
어린이집연합회	10.1	67.6	10.1	2.1	37.9	3.9	30.5	58.4	29.9	1.9 (2,383)
한국보육진흥원	37.0	18.1	21.8	4.1	40.6	3.8	9.7	8.2	51.0	4.7 (1,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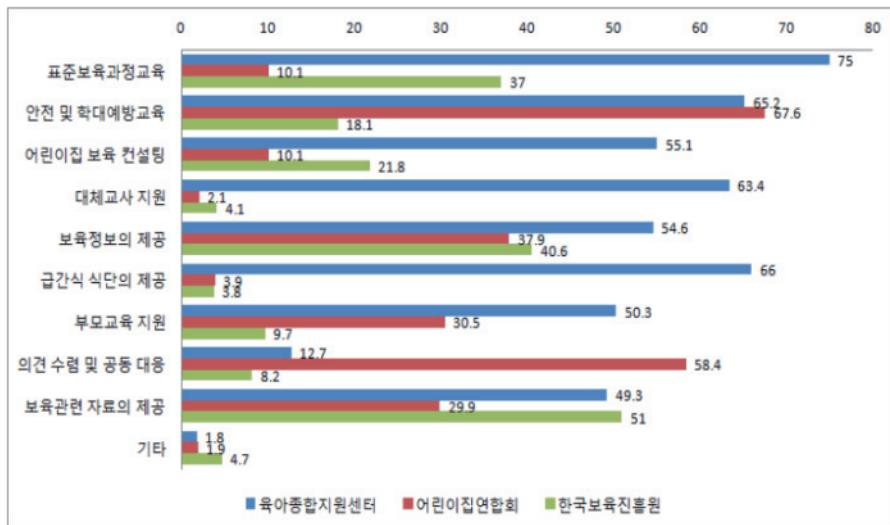
주: 중복응답 결과임.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표준보육과정의 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이 75%로 가장 높았고, 급간식 식단의 제공 66%, 안전 및 학대예방교육 65.2%, 대체교사지원 63.4%, 어린이집보육컨설팅 55.1%, 보육 정보의 제공 54.6%, 부모교육 50.3%, 보육 관련 자료의 제공 49.3% 등의 순으로 그 응답 비율이 높았다.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의 지원내용은 안전 및 학대예방교육 67.6%, 의견수렴과 공동대응이라는 부분에서 58.4%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어린이집연합회 중심의 교육제공 기회가 다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관련 현안에 공동 대응

을 하는 어린이집연합회의 기능을 어린이집에서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의 경우는 보육관련 자료의 제공 51%, 보육정보의 제공 40.6%, 표준보육과정 교육 37%의 순서로 지원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그림 III-8-2] 어린이집 지원체계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

〈표 III-8-8〉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지원

(표 III-8-8 계속)

구분	표준 보육 과정 교육	급간식 식단의 제공	안전 및 학대예방 교육	대체교 사 지원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보육 정보의 제공	부모교육 지원	보육관련 자료의 제공	의견 수렴 및 공동 대응	기타	(수)
20명 이하	72.3	75.1	64.3	61.1	49.7	51.9	48.7	48.0	13.6	1.5	(1,262)
21~39명	76.4	68.9	62.2	59.0	50.9	51.0	46.6	47.5	11.5	1.8	(504)
40~79명	74.9	59.3	67.7	65.4	61.2	56.4	52.0	51.2	12.0	2.7	(871)
80명 이상	78.8	56.5	65.7	67.8	59.8	59.3	53.3	50.5	12.9	1.4	(781)

주: 중복응답 결과임.

<표 III-8-9>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받는 지원

구분	안전 및 학대예방 교육	의견 수렴 및 공동 대응	보육 정보의 제공	부모교육 지원	보육관련 자료의 제공	표준 보육 과정 교육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급간식 식단의 제공	대체교사 지원	기타	단위: %(개소)
전체	67.6	58.4	37.9	30.5	29.9	10.1	10.1	3.9	2.1	1.9	(2,383)
시설유형											
국공립	62.1	62.2	39.3	28.4	36.6	17.0	10.2	5.0	2.4	2.3	(359)
사회복지법인	66.1	47.5	40.1	28.9	19.6	5.5	4.3	2.4	2.6	2.1	(215)
법인단체	65.2	60.9	33.3	29.1	22.0	5.6	7.6	3.3	1.7	2.2	(171)
민간	72.9	57.4	37.3	31.1	26.7	8.0	9.5	4.3	0.8	1.9	(662)
가정	68.5	59.2	37.3	32.6	33.0	10.3	13.2	4.0	3.1	1.5	(857)
직장	53.1	60.4	43.7	23.2	31.7	12.4	3.9	0.2	0.2	3.1	(119)
소재지											
대도시	64.0	66.0	45.8	28.8	35.0	13.0	12.3	5.6	2.0	1.6	(901)
중소도시	70.0	57.1	34.2	30.3	29.1	8.2	9.2	2.9	2.2	2.4	(929)
읍면	69.6	47.1	30.4	33.8	22.2	8.2	7.7	2.5	1.9	1.8	(553)
규모											
20명 이하	68.3	59.0	37.1	32.3	33.0	10.4	13.1	3.8	3.0	1.5	(878)
21~39명	73.4	56.0	35.0	31.1	27.7	7.8	10.3	3.9	0.9	2.1	(352)
40~79명	64.8	58.5	40.5	27.2	30.4	12.7	8.5	3.7	1.9	2.8	(619)
80명 이상	65.7	58.8	38.1	30.9	25.4	8.1	6.7	4.1	1.4	1.6	(534)

주: 중복응답 결과임.

<표 III-8-10>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는 지원

구분	보육관련 자료의 제공	보육 정보의 제공	표준 보육 과정 교육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안전 및 학대예방 교육	부모교육 지원	의견 수렴 및 공동 대응	대체교사 지원	급간식 식단의 제공	기타	단위: %(개소)
전체	51.0	40.6	37.0	21.8	18.1	9.7	8.2	4.1	3.8	4.7	(1,649)
시설유형											
국공립	62.3	56.5	38.4	21.8	17.1	9.3	8.7	3.3	1.8	5.4	(278)
사회복지법인	49.6	39.4	34.9	15.0	14.0	12.9	9.7	3.6	3.8	6.1	(152)

(표 III-8-10 계속)

구분	보육관련 자료의 제공	보육 정보의 제공	표준 보육 과정 교육	어린이집 컨설팅	인천 및 학대예방 교육	부모교육 지원	의견 수렴 및 공동 대응	대체교사 지원	급간식 식단의 제공	기타	(수)
법안단체	58.0	39.0	37.2	8.9	14.1	2.8	4.9	1.3	1.4	2.8	(118)
민간	50.1	35.0	35.8	30.7	20.9	9.0	8.6	4.7	4.4	5.3	(443)
가정	42.7	37.2	40.5	22.2	18.6	11.4	8.6	5.4	5.0	2.7	(536)
직장	58.5	41.7	25.2	8.1	16.0	7.9	4.8	1.3	3.3	9.3	(122)
소재지											
대도시	50.6	41.3	37.5	23.9	18.2	10.8	7.6	4.5	4.0	5.4	(633)
중소도시	48.2	40.5	37.9	20.6	19.0	9.7	9.4	4.1	3.4	5.0	(631)
읍면	56.2	39.6	34.6	20.2	16.3	7.5	7.2	3.4	4.1	2.8	(385)
규모											
20명 이하	43.1	38.1	40.1	21.9	18.5	11.2	8.7	5.4	4.8	2.6	(552)
21~39명	54.0	40.9	34.6	23.6	14.2	8.1	5.4	2.7	1.1	3.4	(242)
40~79명	57.2	41.5	35.6	19.5	19.7	8.5	9.5	4.0	3.5	7.2	(456)
80명 이상	52.9	43.0	35.6	23.4	17.8	9.8	7.5	3.2	4.4	5.4	(399)

주: 중복응답 결과임.

9. 시사점

어린이집 운영 현황 분석을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얻는다.

첫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반은 평균 5.48개 정도로 2012년 5.27개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고, 전체 어린이집 중 56.6%에서 혼합연령반을 운영 중이다. 반편성의 기준은 연령별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예외로 편성된 비율은 높지 않았다.

둘째, 주 5일제 근무가 보편화됨에 따라 토요일 보육에 대한 수요 감소세가 뚜렷하다. 토요일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은 2009년 84.4%, 2012년 57.8%, 2015년 30.3%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토요일 보육 제공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입소대기 관리와 관련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영유아의 신규 입소시 제출받는 서류 중 부모 취업증빙 서류를 제출받는 비율은 2012년 대비 현저히 증가하여(17.5%→63.1%), 입소우선순위자격으로 그 중요도가 가장 높이 평가된 부모 맞벌이 여부의 증빙이 철저해 졌음을 엿볼 수 있다. 단,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취업모가정의 영유아가 1명이라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중 63.1%에서 부모 취업증빙서류를 제출받았다는 결과가 반드시 높다고 볼 수 없어 취

업증빙 서류 관리에 있어 여전히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입소 우선순위 자격 부여 항목 중 중요도가 큰 항목으로 ‘부모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를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38.2%로 맞벌이 가정의 보육서비스 우선 필요도가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부모취업 증빙 서류는 더욱 더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2014년 4월 새로이 도입된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2.88점으로 만족도가 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입소대기시스템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가장 만족스러운 사항은 결원 충원 시에 용이성이 증가하였다는 부분이며(29.5%), 불만족하는 경우 가장 불만족하는 사항은 ‘어린이집의 재량권이 없어졌다’라는 점이었다(59.3%).

입소대기자가 많지 않아 입소 경쟁이 높지 않거나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이용의 형평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시설 유형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의 재량권을 합리적인 선에서 일정 부분 인정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된다. 단, 어떤 조건의 시설에 어떠한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의무가입과 병행하여 민간보험을 가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보장비용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의견임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장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현장에서 개선된 결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사항을 준수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교육의 실시비율이 증가하는 등 다면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비상연락체계 연계를 살펴보면 인근어린이집과의 연계비율이 저조한 결과를 보인다. 인근 어린이집이 지역사회 자원으로 상호지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간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본 조사결과를 통해 CCTV설치 의무화가 가정어린이집에서의 CCTV설치 활성화에 가장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12월을 기점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본 조사 시점인 7월~9월 당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그 설치율은 27.9%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는 현재 의무설치가 이루어지는 법 적용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에의 설치율 증가 효과가 가장 큼을 보여준다.

일곱째, 영유아 급식제공을 위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 본 조사의 결과를 2009년,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제공 식단을 그대로 활용하는 비율에서 변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인 식단의 개발과 공유가 효과적으로 어린이집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여덟째, 어린이집에서 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처가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취하는 조치는 의심 보육교직원이나 아동을 즉시 귀가 조치하고, 병원진단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경우 출근 또는 등원하도록 함 하며, 해당 시군구청에 의심 사례를 보고하는 등이다. 즉시 귀가 조치하고 병원의 확인 시 등원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이행 비율은 높은 편이나, 시군구청에 알려 적극적 대응하는 비율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V. 보육 교직원 운영실태 및 요구

1. 보육 교직원 특성 전반

1) 보육교사

기관 조사에 참여한 전국 4,046개 어린이집의 '원장'을 통해 총 26,047명의 교사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전반의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자격증, 경력, 근무시간, 급여 등을 조사하였다.

〈표 IV-1-1〉 어린이집 근무 전체 보육교사 최종 학력

구분	고졸	2-3년제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단위: %(명)
		재학	졸업	재학	졸업	재학	졸업	
전체	18.5	2.6	48.6	1.5	26.0	1.0	1.6	100.0(26,047)
시설유형								
국공립	7.1	2.5	52.9	2.6	29.1	2.1	3.5	100.0(4,411)
사회복지법인	6.5	1.1	61.7	1.1	26.7	0.8	2.1	100.0(3,490)
법인·단체	12.6	2.7	53.0	0.9	26.7	2.0	2.0	100.0(2,024)
민간	20.6	2.8	52.8	1.7	20.6	0.6	1.1	100.0(8,209)
가정	27.7	3.2	42.7	1.2	23.7	0.5	0.7	100.0(5,078)
직장	3.6	0.9	32.9	1.8	54.0	3.2	3.7	100.0(2,835)
소재지								
대도시	17.5	2.7	46.2	1.3	28.9	1.2	2.2	100.0(10,440)
중소도시	20.8	2.7	47.9	1.7	24.8	0.9	1.2	100.0(9,437)
읍·면	16.4	2.2	53.7	1.5	23.5	1.0	1.3	100.0(6,170)
규모								
20명 이하	27.3	3.1	43.1	1.2	23.9	0.5	0.7	100.0(5,233)
21~39명	20.6	2.6	47.9	2.2	24.8	0.7	1.4	100.0(3,151)
40~79명	12.2	2.8	49.5	1.7	29.9	1.7	2.4	100.0(7,181)
80명 이상	9.3	1.6	57.4	1.5	26.3	1.4	2.3	100.0(10,482)
2012년 조사	15.7	3.0	51.6	2.3	23.9	1.3	2.2	100.0(23,441)
2009년 조사	17.4		50.7	3.8	25.4	1.2	1.4	100.0(13,419)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우선 전체 보육교사의 최종 학력을 조사한 결과, 고졸 18.5%, 2-3년제 대재/대출 51.2%, 4년제 대재/대출 27.5%, 대학원 이상 2.6%로 나타나, 2012년 대비 학력분포에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고졸 학력 교사의 비율이 2.8%p 늘고, 2-3년제 대학은

3.4%p 줄었으며, 4년제 대학은 1.3%p 늘어났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고졸 학력 비율이 20.6%, 27.7%로 높고, 4년제 대졸 교사의 비율이 직장 어린이집에서 가장 높다.

보육교사교육원 졸업자를 제외한 전체 보육교사의 최종 학교 전공을 조사한 결과, 단일 전공으로 '유아교육'이 2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학 전공(14.7%), 기타 비 관련학과(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 관련 학과 전공(아동, 사회복지, 보육, 가정) 36.0%, 교육 관련 학과 전공(유아교육, 교육, 특수교육) 30.0%로 분포하는 가운데, 2012년 대비 유아교육 전공자의 비율이 줄고, 기타학과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IV-1-2〉 어린이집 근무 전체 보육교사 학교 전공

구분	아동	유아 교육	사회 복지	보육	가정	간호	영양	교육	특수 교육	기타	단위: %(명)
											계(수)
전체	14.7	28.0	10.2	9.3	1.8	0.4	0.5	1.3	0.7	14.3	100.0(22,079)
시설유형											
국공립	18.4	36.7	10.0	14.7	1.8	0.1	0.3	1.2	2.0	7.1	100.0(4,067)
사회복지법인	15.4	45.8	14.6	8.1	1.1	0.3	0.2	0.8	1.8	5.5	100.0(3,287)
법인·단체	14.6	36.7	14.9	9.2	1.4	0.2	0.2	1.0	1.1	7.8	100.0(1,795)
민간	14.1	25.8	11.1	8.8	1.4	0.3	0.4	1.4	0.4	15.6	100.0(6,549)
가정	10.0	19.1	8.8	7.5	2.3	0.7	0.9	1.5	0.2	20.9	100.0(3,652)
직장	34.3	37.8	4.6	12.5	1.1	0.1	0.3	0.5	0.3	4.9	100.0(2,729)
소재지											
대도시	16.3	27.2	9.0	10.4	1.7	0.4	0.5	1.2	1.0	14.8	100.0(8,987)
중소도시	13.6	25.5	9.6	9.1	1.9	0.5	0.6	1.5	0.5	16.3	100.0(7,752)
읍면	13.9	33.9	13.3	7.8	1.6	0.3	0.5	1.1	0.5	10.2	100.0(5,340)
규모											
20명 이하	10.3	19.4	8.7	7.9	2.2	0.7	0.9	1.5	0.3	20.7	100.0(3,784)
21~39명	14.6	24.9	11.3	8.7	2.1	0.4	0.3	1.7	1.3	14.2	100.0(2,521)
40~79명	19.2	33.2	11.3	10.3	1.3	0.1	0.2	1.1	1.0	10.1	100.0(6,299)
80명 이상	17.2	39.3	11.0	11.0	1.2	0.2	0.4	0.8	0.8	8.4	100.0(9,475)
2012년 조사	16.5	42.0	12.9	13.5	1.8	0.5	0.5	1.3	1.1	10.0	100.0(20,307)
2009년 조사	11.2	39.9	9.3	8.7	2.0	0.4	0.5	1.5	0.3	26.2	100.0(13,384)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전체 보육교사의 현재 소지 자격증을 조사한 결과, 중복 응답을 기준으로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가 4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급 보육교사 자격(34.7%), 원장 자격(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3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는 4.6%이며, 중복으로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10.7%로 2009

년, 2012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원장 자격을 소지한 보육교사의 비율은 2009년, 2012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표 IV-1-3〉 어린이집 근무 전체 보육교사 자격증

구분	원장	보육교사				(수)	중복자격증			단위: %(명)
		1급	2급	3급	기타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수)	
전체	20.5	48.6	34.7	4.6	0.4	(26,047)	10.7	0.2	(26,047)	
시설유형										
국공립	19.3	54.1	27.7	2.4	0.4	(4,411)	18.2	0.5	(4,411)	
사회복지법인	21.0	56.1	29.0	2.1	0.7	(3,490)	18.2	0.5	(3,490)	
법인·단체	23.0	56.1	25.9	2.2	0.2	(2,024)	16.7	0.2	(2,024)	
민간	17.4	49.0	34.2	5.8	0.4	(8,209)	8.8	0.2	(8,209)	
가정	23.5	44.0	39.0	6.0	0.3	(5,078)	5.3	-	(5,078)	
직장	16.1	44.6	43.4	1.3	0.4	(2,835)	17.5	-	(2,835)	
소재지										
대도시	20.2	47.6	34.4	5.2	0.3	(10,440)	10.6	0.2	(10,440)	
중소도시	20.3	47.7	36.5	4.8	0.4	(9,437)	9.3	0.2	(9,437)	
읍·면	21.2	51.8	32.2	3.2	0.4	(6,170)	13.2	0.1	(6,170)	
규모										
20명 이하	23.6	44.1	38.7	6.0	0.3	(5,233)	5.4	0.1	(5,233)	
21~39명	19.1	49.7	32.8	5.3	0.3	(3,151)	9.1	0.3	(3,151)	
40~79명	19.4	51.3	31.8	3.4	0.1	(7,181)	13.5	0.3	(7,181)	
80명 이상	17.4	52.5	32.6	3.0	0.9	(10,482)	17.8	0.2	(10,482)	
2012년 조사	16.5	44.4	34.3	4.4	0.4	(23,247)	17.9	1.2	(23,247)	
2009년 조사	17.7	60.1	27.2	8.0	0.6	-	23.1	0.4	(13,408)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2) 2009, 2012년 조사에서는 '기타'는 간호사 등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보육교사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최초 교육기관을 원장에게 질문한 결과, 2-3년제 대학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3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이는 2012년 대비 약 8.0%p 감소한 결과이다. 4년제 대학에서 취득한 경우도 2012년 대비 다소 줄었다. 2-3년제 대학에 이어,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32.7%)가 두 번째로 많았는데, 2012년 대비 약 4.2%p 증가한 비율이다.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비율은 전체 12.3%로 2012년 대비 증가하였다⁵⁾. 가정/민간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보육교사교육원과 학점은행제/사이버

5) 2014년 데이터 기준으로,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비율이 전체 보육교사의 약 20%로 자격발급건수 기준으로는 50% 수준으로, 원장의 응답과 실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대학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이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 지원과 무상보육의 확대로 늘어난 교사의 수요에 대한 현장의 대응임과 동시에, 2014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교사 취득자격 기준의 강화(12과목 35학점→17과목 51학점)를 전후하여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을 통한 자격취득의 비율이 늘어나, 이러한 점들이 실제 교사근무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질문의 응답은, 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교사 자격 취득 경로로, 실제 취득기관 비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V-1-4〉 어린이집 근무 전체 보육교사 최초 자격취득 기관

구분	보육교사 교육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기타	단위: %(명)
							계(수)
전체	32.7	37.1	16.1	0.5	12.3	1.1	100.0(26,047)
시설유형							
국공립	16.4	55.3	22.8	0.5	3.6	1.1	100.0(4,411)
사회복지법인	13.7	60.0	20.5	0.4	4.5	1.0	100.0(3,490)
법인·단체	23.0	48.3	18.8	0.4	8.4	1.0	100.0(2,024)
민간	36.4	38.5	11.1	0.4	12.4	1.0	100.0(8,209)
가정	46.5	22.5	9.6	0.5	19.5	1.4	100.0(5,078)
직장	7.9	35.5	52.0	1.0	3.0	0.4	100.0(2,835)
소재지							
대도시	33.1	36.3	19.1	0.5	9.6	1.4	100.0(10,440)
중소도시	36.0	33.9	14.2	0.5	14.2	1.1	100.0(9,437)
읍면	26.4	44.1	14.8	0.3	13.4	0.9	100.0(6,170)
규모							
20명 이하	45.8	23.1	10.0	0.4	19.1	1.4	100.0(5,233)
21~39명	34.6	35.2	15.7	0.3	13.2	1.1	100.0(3,151)
40~79명	24.4	44.5	21.6	0.6	7.8	1.0	100.0(7,181)
80명 이상	18.3	54.1	20.8	0.5	5.2	0.9	100.0(10,482)
2012년 조사	28.5	45.1	19.3	0.7	5.8	0.6	100.0(23,404)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2)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조사에 참여한 4,046개 어린이집의 원장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장 성별의 경우, 여성 96.3%, 남성 3.7%로, 2012년에 비해 남성 원장의 비율이 1.2%p 감소하였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남성 원장의 비율(18.6%)로 많았으며, 직장어린이집의 여성 원장의 비율이 99.4%로 가장 많았다.

평균 연령의 경우 2009, 2012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로, 2015년 원장 평균 연령

46.6세로 조사되었다. 가정/직장 어린이집 원장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다소 적다.

〈표 IV-1-5〉 원장의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세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3.7	96.3	100.0(4,046)	46.6	7.68	27	86
시설유형							
국공립	1.3	98.7	100.0(506)	48.3	6.85	31	68
사회복지법인	18.6	81.4	100.0(377)	51.8	9.78	31	86
법인·단체	4.9	95.1	100.0(283)	48.7	8.40	32	73
민간	3.9	96.1	100.0(1,134)	46.8	7.31	29	77
가정	1.3	98.7	100.0(1,480)	44.9	6.94	27	68
직장	0.6	99.4	100.0(266)	43.4	6.03	28	61
$\chi^2(df)/F$	254.3(5)***			70.8***			
소재지							
대도시	3.0	97.0	100.0(1,464)	47.2	7.62	27	77
중소도시	2.8	97.2	100.0(1,631)	45.8	7.32	28	86
읍·면	6.5	93.5	100.0(951)	47.1	8.25	27	84
$\chi^2(df)/F$	26.8(2)***			14.8***			
규모							
20명이하	1.3	98.7	100.0(1,520)	44.8	6.95	27	68
21~39명	2.4	97.6	100.0(625)	45.9	7.22	29	68
40~79명	5.2	94.8	100.0(992)	47.5	7.71	30	82
80명 이상	7.3	92.7	100.0(909)	49.2	8.27	29	86
$\chi^2(df)/F$	66.3(3)***			71.2**			
2012년 조사	4.9	95.1	100.0(4,000)	45.0	8.19	23	88
2009년 조사	5.9	94.1	100.0(3,204)	43.2	8.1	-	-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본 조사에 참여한 원장의 최종 학력은, 고졸 5.2%로 2009년 이후 고졸 최종학력의 원장 비율은 계속 감소세이다. 2-3년제 대학 재학/졸업 27.9%, 4년제 대학 재학/졸업 37.5%, 대학원 재학 이상 29.3%로 나타나, 2012년에 비해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이상의 원장 비율이 증가하였다.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대학원 이상 고학력 비율이 높았으며,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학력 분포에서 4년제 대졸 학력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6〉 원장 최종 학력

구분	고졸	2-3년제 대학 재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재학 졸업		대학원 이상 대학원 재학 석사 졸업 박사 졸업		계(수)	$\chi^2(df)$	단위: %(명)
		재학	졸업	재학	졸업	석사	박사			
전체	5.2	21	25.8	3.0	34.5	5.0	21.2	3.1	100.0(4,035)	
시설유형										
국공립	1.5	0.5	9.8	0.5	26.2	6.8	50.0	4.7	100.0(504)	
사회복지법인	4.4	2.6	17.8	2.7	38.5	2.3	25.9	5.9	100.0(376)	1088.2
법인·단체	3.5	0.6	25.3	1.4	36.0	2.7	26.1	4.5	100.0(282)	(35)***
민간	3.6	2.3	28.6	3.2	35.1	5.9	19.2	2.1	100.0(1,132)	
가정	9.1	2.9	35.3	4.6	39.0	4.1	5.0	-	100.0(1,476)	
직장	-	0.1	5.1	0.5	17.5	8.7	51.5	16.5	100.0(265)	
소재지										
대도시	4.2	1.8	21.9	2.8	35.7	5.1	24.7	3.8	100.0(1,462)	51.5** (14)
중소도시	5.8	1.9	28.9	3.4	32.8	5.9	18.7	2.5	100.0(1,625)	
읍면	5.7	2.7	27.0	2.6	35.7	3.4	19.9	3.0	100.0(948)	
규모										
20명 이하	8.9	2.9	34.8	4.5	39.1	4.2	5.3	0.3	100.0(1,516)	
21~39명	5.1	2.2	29.1	2.4	34.4	4.5	21.2	1.0	100.0(624)	680.9** (21)
40~79명	2.1	1.6	19.3	2.1	32.1	4.8	33.6	4.3	100.0(988)	
80명 이상	2.3	1.2	15.6	1.8	29.5	7.0	34.4	8.1	100.0(907)	
2012년 조사	8.3	1.8	32.2	3.0	29.4	4.4	20.8	-	100.0(4,000)	
2009년 조사	10.2	-	33.6	5.1	29.3	6.1	15.6	-	100.0(3,147)	

*** $p < .001$

주: 2009, 2012년 조사에서는 '대학 재학'과 '대학졸'이 각각 '3년제 대학 재학', '3년제 대학졸'로 조사되었으며, '대학원 석사 졸'과 '대학원 박사 졸'이 '대학원 졸'로 조사되었음.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학력이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 원장의 최종 학교 전공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유아교육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학과 특수교육학을 합친 교육관련 전공은 54.4%로 과반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보육관련 전공(아동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가정학)이 35.7%로 나타났으며, 기타 비 관련학과 전공은 8.6%로 조사되었다.

직장어린이집 원장에서 유아교육 전공자의 비율(67.3%)이 가장 많았으며, 가정어린이집과 법인·단체 어린이집 원장의 기타 비 관련학과 전공 비율이 1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 사회복지 전공 원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다.

〈표 IV-1-7〉 원장 최종 학교 전공

구분	아동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가정학	간호학	영양학	교육학	특수교육학	기타	단위: %(명)	$\chi^2(df)$
											계(수)	
전체	12.4	49.3	16.9	4.0	2.4	0.3	0.9	4.1	1.0	8.6	100.0(3,810)	
시설유형												
국공립	8.9	57.2	21.8	2.4	1.3	-	0.5	3.5	2.6	1.8	100.0(495)	
사회복지법인	10.9	44.8	28.0	2.4	0.2	0.1	0.5	3.8	3.1	6.2	100.0(358)	
법인·단체	10.5	48.8	19.5	1.7	2.1	0.1	-	4.2	2.1	10.8	100.0(271)	504.0** (270)
민간	9.1	54.3	16.6	4.5	2.4	0.4	0.8	4.6	0.6	6.6	100.0(1,087)	
가정	16.1	39.7	14.1	5.5	3.9	0.6	1.4	4.0	0.1	14.6	100.0(1,334)	
직장	17.8	67.3	6.3	1.6	0.2	-	0.6	4.7	0.9	0.6	100.0(265)	
소재지												
대도시	12.4	47.6	15.7	4.6	2.2	0.4	0.7	5.0	1.0	10.5	100.0(1,400)	103.5
중소도시	12.9	50.7	16.7	3.8	2.7	0.4	0.9	3.3	0.8	7.7	100.0(1,521)	(108)
읍·면	11.5	49.6	19.3	3.3	2.3	-	1.2	4.3	1.5	7.0	100.0(889)	
규모												
20명 이하	15.9	40.0	14.2	5.5	3.8	0.6	1.6	4.0	0.2	14.1	100.0(1,373)	
21~39명	10.7	51.5	17.5	3.8	1.8	0.7	0.7	3.6	2.1	7.5	100.0(594)	326.3** (162)
40~79명	10.4	57.1	18.7	2.8	1.7	-	-	4.0	1.1	4.1	100.0(962)	
80명 이상	10.1	53.8	18.6	3.0	1.4	0.1	0.8	5.0	1.6	5.6	100.0(881)	
2012년 조사	8.6	49.1	19.4	4.5	2.5	0.8	0.8	4.5	1.0	9.0	100.0(3,652)	
2009년 조사	7.2	43.8	14.3	5.0	2.6	1.0	0.7	3.9	0.6	18.9	100.0(3,139)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원장이 (원장 자격 외에) 중복으로 소지한 자격증을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중복으로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84.1%)였으며, 유치원교사(42.2%) 자격, 사회복지사(31.4%) 자격 소지 비율도 높은 편이다. 한편 기타 자격증 소지 비율은 14.8%로 응답되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1급 중복 소지가 가장 많았고, 유치원교사/사회복지사 자격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IV-1-8〉 원장 소유 자격증

구분	보육교사			간호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초등학교교사	기타	(수)	단위: %(명)
	1급	2급	3급								
전체	84.1	8.5	1.2	4.6	42.2	31.4	1.9	0.5	14.8	(4,043)	
시설유형											
국공립	83.7	9.4	0.9	4.9	64.6	44.3	2.5	0.9	15.1	(505)	
사회복지법인	68.5	8.4	0.8	10.3	42.9	47.8	6.2	0.7	17.4	(377)	
법인·단체	76.5	7.1	0.5	6.4	43.2	38.0	4.4	2.7	16.1	(283)	
민간	80.9	8.0	1.1	6.1	44.7	30.9	1.6	0.4	16.0	(1,133)	

(표 IV-1-8 계속)

구분	보육교사			간호사	유치원 교사	사회 복지사	특수 교사	초등학 교 교사	기타	(수)
	1급	2급	3급							
가정	91.2	9.3	1.9	2.2	27.5	23.7	0.6	0.2	13.1	(1,479)
직장	86.7	6.0	-	2.4	66.2	23.1	1.4	-	13.2	(266)
소재지										
대도시	82.8	7.8	1.2	5.1	41.9	30.2	2.2	0.7	16.1	(1,464)
중소도시	85.9	9.8	1.4	3.8	41.7	30.2	1.3	0.4	13.5	(1,628)
읍·면	82.9	7.5	1.1	5.3	43.4	35.6	2.5	0.5	14.7	(951)
규모										
20명 이하	91.3	9.4	1.9	2.2	28.0	24.3	0.8	0.2	13.3	(1,519)
21~39명	81.7	8.6	1.3	2.8	42.7	32.6	3.1	0.5	10.5	(625)
40~79명	81.2	7.6	0.5	3.1	51.9	35.3	2.7	0.7	17.1	(991)
80명 이상	76.5	7.9	1.0	11.9	55.0	38.6	2.2	1.0	17.7	(908)
2012년 조사	83.2	13.8	3.0	3.8	36.2	29.2	2.0	1.2	10.5	(4,000)
2009년 조사	65.1	9.7	0.4	3.2	28.6	-	0.9	-	7.9	(3,155)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어린이집 원장의 최초 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관을 질문한 결과, 해당없음(86사례, 2.2%)을 제외하고, 2-3년제 대학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교육원이 33.0%로 높은 수준이다. 4년제 대학 이상 23.0%,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 4.0%로 조사되었다.

직장어린이집 원장의 4년제 대학 이상 비율(57.8%)이 가장 많았으며,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교육원 및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에서 취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표 IV-1-9> 원장이 최초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관

구분	보육교사 교육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학점 은행제	사이버 대학	기타	계(수)	단위: %(명)
									$\chi^2(df)$
전체	33.0	39.0	21.6	1.4	2.1	1.9	1.0	100.0(3,959)	
시설유형									
국공립	15.8	56.1	25.2	0.5	0.6	-	1.8	100.0(490)	
사회복지법인	20.1	42.0	28.0	3.6	0.4	2.7	3.2	100.0(342)	585.0(30)
법인단체	31.4	38.6	24.9	1.4	1.0	1.1	1.6	100.0(270)	***
민간	33.1	43.4	18.6	1.3	1.5	1.3	0.9	100.0(1,117)	
가정	46.6	30.4	15.2	0.4	3.8	3.3	0.4	100.0(1,476)	
직장	7.9	32.2	52.3	5.5	1.1	0.5	0.5	100.0(264)	

(표 IV-1-9 계속)

구분	보육교사 교육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학점 은행제	사이버 대학	기타	계(수)	$\chi^2(df)$
소재지									
대도시	35.1	34.9	24.5	1.6	1.9	0.7	1.3	100.0(1,441)	63.2(12)
중소도시	33.9	40.4	19.5	1.0	2.5	2.2	0.4	100.0(1,598)	
읍·면	28.2	43.1	20.6	1.5	1.6	3.3	1.7	100.0(920)	
규모									
20명 이하	46.4	30.5	15.2	0.4	3.8	3.2	0.5	100.0(1,516)	378.9(18)
21~39명	34.7	43.1	17.4	1.1	1.5	1.3	0.9	100.0(619)	***
40~79명	23.7	43.0	29.1	1.7	0.6	0.6	1.3	100.0(959)	
80명 이상	18.6	46.5	27.7	2.8	1.0	1.6	1.7	100.0(865)	
2012년 조사	36.2	39.6	17.6	2.0	1.0	1.4	2.2	100.0(3,982)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 경력을 조사한 결과, 교사 경력 평균 6년 2개월, 원장 경력 평균 8년 4개월(현재 어린이집 원장 경력 6년 5개월 포함)로, 어린이집 총 경력이 평균 14년 6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조사의 원장 경력 14년 1개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IV-1-10> 원장의 어린이집 경력

단위: 개월

구분	총 어린이집 교사 경력		총 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보육경력		현 어린이집 원장 경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평균	표준편차	
전체	6년 2개월	5년 4개월	8년 4개월	6년 3개월	14년 6개월	6년 5개월	5년 8개월	
시설유형								
국공립	8년 4개월	6년 7개월	10년 9개월	6년 9개월	19년 3개월	7년 5개월	6년 4개월	
사회복지법인	6년 1개월	6년 7개월	12년 9개월	8년 9개월	19년	11년 3개월	8년 4개월	
법인·단체	6년 7개월	5년 5개월	9년 4개월	6년 5개월	16년	7년 7개월	6년 5개월	
민간	5년 1개월	4년 9개월	9년	6년	14년 1개월	6년 8개월	5년 6개월	
가정	6년 2개월	4년 5개월	6년	4년 4개월	12년 1개월	5년	3년 9개월	
직장	7년 1개월	5년 6개월	7년	5년 3개월	14년	4년 2개월	3년 7개월	
<i>F</i>	29.8**		114.6***		116.1***	92.7***		
소재지								
대도시	6년 3개월	5년 4개월	8년 6개월	6년 4개월	14년 9개월	6년 6개월	5년 7개월	
중소도시	6년 1개월	5년 1개월	7년 7개월	5년 6개월	13년 8개월	5년 8개월	5년	
읍·면	6년 5개월	5년 8개월	9년 1개월	7년 3개월	15년 6개월	7년 4개월	6년 9개월	
<i>F</i>	1.9		16.0***		19.6***	22.9***		
규모								
20명 이하	6년 2개월	4년 5개월	6년	4년 4개월	12년 2개월	4년 9개월	3년 9개월	

(표 IV-1-10 계속)

구분	총 어린이집 교사 경력		총 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보육경력		현 어린이집 원장 경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1~39명	5년 8개월	5년 4개월	7년 9개월	5년 4개월	13년 6개월		6년	5년
40~79명	6년 7개월	5년 7개월	9년 7개월	6년 6개월	16년 4개월		7년 2개월	6년 1개월
80명 이상	6년 1개월	6년 2개월	11년 3개월	7년 7개월	17년 4개월		8년 7개월	7년 3개월
F	4.5**		171.1***		132.7***		93.7***	
2012년 조사	6년 11개월	6년	7년 2개월	6년 3개월	14년 1개월		5년 6개월	5년 7개월
2009년 조사	-	-	9년 10개월	-	-		5년 1개월	-

** $p < .01$,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어린이집 원장의 급여 호봉을 조사한 결과, 평균 14.9호봉으로, 앞서 살펴본 원장의 평균 보육 경력 14년 6개월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는 2012년의 11.3호봉(원장 평균경력 14년 1개월)에 비해 3.6호봉 가량 크게 상승한 결과이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7.5호봉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표 IV-1-11〉 원장의 호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단위: 호봉(명)	
					F	(수)
전체	14.88	7.07	1	30		(1,516)
시설유형						
국공립	15.99	6.70	1	30		(480)
사회복지법인	17.09	6.28	2	30		(345)
법인·단체	14.21	5.71	1	30	40.5***	(236)
민간	12.31	8.66	1	30		(150)
가정	7.49	7.37	1	25		(109)
직장	14.99	5.92	1	30		(196)
소재지						
대도시	14.73	6.66	1	30		(595)
중소도시	13.94	7.72	1	30	8.3***	(413)
읍·면	15.86	6.90	1	30		(508)
규모						
20명 이하	8.22	7.29	1	27		(138)
21~39명	13.07	6.41	1	30	63.5***	(213)
40~79명	15.56	6.54	1	30		(602)
80명 이상	16.49	6.73	1	30		(563)
2012년 조사	11.34	7.67	1	40	-	(1,981)
2009년 조사	10.10	-	-	-	-	(1,196)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어린이집 원장의 월 평균 급여를 조사한 결과(무응답, 0원 표기 제외), 기본급 220만 7천원, 제 수당 45만 6천원으로 월 급여 총액이 266만 3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2년 대비 기본급 평균 28만 8천원(15% 인상), 수당 22만 9천원(101% 인상, 약 2배)으로, 2012년 대비 원장 급여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기관유형별로 원장 급여에 차이가 있어, 국공립/직장/법인 어린이집 원장의 급여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가정/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급여 수준이 낮다. 기본급과 수당에서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이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어린이집 원장의 급여가 가장 낮고, 읍·면지역 원장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았으며, 기관규모가 클수록 원장의 급여가 높았다.

〈표 IV-1-12〉 원장의 월 급여

단위: 만원(명)

구분	월 기본급(세전)		수당		총액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20.73	77.31	45.60	45.54	266.33 (3,624)
시설유형					
국공립	278.09	50.40	71.53	49.13	349.62 (472)
사회복지법인	273.76	58.31	61.96	61.31	335.72 (356)
법인단체	254.14	48.84	54.89	44.57	309.03 (262)
민간	218.47	87.77	36.42	40.57	254.89 (979)
가정	170.29	50.11	32.05	33.83	202.34 (1,316)
직장	277.63	57.23	65.27	51.57	342.90 (239)
<i>F</i>	343.6***		104.2***		
소재지					
대도시	227.75	74.13	54.31	51.66	282.06 (1,325)
중소도시	202.78	74.98	37.64	37.70	240.42 (1,424)
읍·면	238.94	80.04	47.26	46.56	286.20 (875)
<i>F</i>	69.6***		11.3***		
규모					
20명 이하	172.19	51.93	32.39	33.78	204.58 (1,352)
21~39명	204.78	67.40	38.92	36.31	243.70 (540)
40~79명	253.38	65.11	59.03	47.12	312.41 (905)
80명 이상	275.14	78.06	66.26	59.20	341.40 (827)
<i>F</i>	541.2***		78.4***		
2012년 조사	191.97	66.31	22.66	25.49	214.62 (3,943)
2009년 조사	171.9	61.3	137.8	134.0	-

*** $p < .001$

주: 2009년 조사 시 수당을 1년 기준으로 응답받음.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2. 보육 교직원 근로시간 및 급여

1) 보육교사

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비롯하여, 1일 근로시간, 급여 등 처우와 근로환경/복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보육교사의 평균 경력 연한은 4.6년으로, 기관유형별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경력이 1년 이상 더 많다. 원장이 응답한 전체 보육교사(26,047명)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42분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어린이집 근무 전체 보육교사 근무경력 및 근무시간

구분	평균 총 근무경력 (수)	평균 근무시간 (수)	단위: 연수(명), 시간
전체	4년 7개월 (26,047)	8시간 42분 (26,047)	
시설유형			
국공립	5년 4개월 (4,411)	8시간 36분 (4,411)	
사회복지법인	5년 7개월 (3,490)	9시간 6분 (3,490)	
법인·단체	5년 7개월 (2,024)	8시간 48분 (2,024)	
민간	4년 5개월 (8,209)	8시간 42분 (8,209)	
가정	4년 1개월 (5,078)	8시간 30분 (5,078)	
직장	4년 1개월 (2,835)	8시간 54분 (2,835)	
<i>F</i>	87.1***	34.3***	
소재지			
대도시	4년 7개월 (10,440)	8시간 36분 (10,440)	
중소도시	4년 5개월 (9,437)	8시간 42분 (9,437)	
읍면	5년 (6,170)	8시간 48분 (6,170)	
<i>F</i>	36.9***	18.3***	
규모			
20명 이하	4년 2개월 (5,233)	8시간 30분 (5,233)	
21~39명	4년 7개월 (3,151)	8시간 42분 (3,151)	
40~79명	4년 11개월 (7,181)	8시간 42분 (7,181)	
80명 이상	5년 (10,482)	8시간 54분 (10,482)	
<i>F</i>	56.8***	33.1***	
2012년 조사	4년 5개월 (27,768)	-	-
2009년 조사	4년 (12,627)	-	-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한편, 반 담임을 맡고 있지 않는 단시간 보조교사⁶⁾까지 모두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전체 교사의 근로시간을 산출한 결과, 1일 평균 8시간 26분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어린이집 근무 전체 보육교사 근무시간(보조교사 포함)

구분	평균 근무시간	단위: 시간(명)
		(수)
전체-원장응답	8시간 26분	(28,171)
시설유형		
국공립	8시간 13분	(4,912)
사회복지법인	8시간 52분	(3,716)
법인·단체	8시간 26분	(2,207)
민간	8시간 29분	(8,774)
가정	8시간 11분	(5,524)
직장	8시간 38분	(3,038)
소재지		
대도시	8시간 21분	(11,388)
중소도시	8시간 27분	(10,160)
읍면	8시간 35분	(6,623)
규모		
20명 이하	8시간 12분	(5,687)
21~39명	8시간 32분	(3,274)
40~79명	8시간 27분	(7,728)
80명 이상	8시간 31분	(11,482)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전체 보육교사의 평균 호봉과 월 급여를 원장에게 질문한 결과, 평균 4.8호봉에 월 평균 급여 184만 3천원으로 조사되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호봉 평균이 1~2호봉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국공립/법인/직장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호봉은 5~6호봉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급여는 기본급 평균 147만 8천원, 수당 평균 36만 5천원을 합친 184만 3천원으로, 2012년 대비 전체 29만 3천원, 기본급 평균 16만 4천원, 수당 평균 12만 9천원이 오른 금액이다. 기관유형별로 교사의 호봉과 월 평균 급여에 차이가 있어, 국공립/법인/직장 어린이집 교사는 평균 2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민간 어린이집은 평균 150~160만원대로 조사되었다. 기관 현원 규모가 클수록 교사의 급여 수준이 높다.

6) <표 IV-2-6> 보조교사(비담당교사) 유무 및 근무시간 참조 - 보조교사 근무시간 평균 5.28시간

〈표 IV-2-3〉 어린이집 근무 전체 보육교사의 급여

구분	평균 호봉 (수)	월평균 급여	월평균 수당	단위: 호봉, 만원(명)	
				월평균 총액	(수)
전체-원장응답	4.82	(15,502)	147.78	36.52	184.30 (26,047)
시설유형					
국공립	6.37	(4,152)	173.58	36.79	210.37 (4,411)
사회복지법인	6.67	(3,327)	175.52	33.36	208.88 (3,490)
법인-단체	6.95	(1,765)	169.23	37.90	207.13 (2,024)
민간	2.81	(2,724)	128.42	34.97	163.39 (8,209)
가정	1.71	(1,288)	118.39	32.08	150.47 (5,078)
직장	5.16	(2,246)	169.10	49.08	218.18 (2,835)
F	375.7***				
소재지					
대도시	4.80	(6,560)	150.42	35.07	185.49 (10,440)
중소도시	4.05	(4,747)	139.96	35.20	175.16 (9,437)
읍·면	5.74	(4,195)	155.10	40.98	196.08 (6,170)
F	53.0***				
규모					
20명 이하	2.04	(1,421)	119.70	32.22	151.92 (5,233)
21~39명	4.47	(1,596)	137.75	34.65	172.40 (3,151)
40~79명	5.73	(5,120)	156.88	37.54	194.42 (7,181)
80명 이상	5.87	(7,365)	158.85	38.24	197.09 (10,482)
F	233.6***				
2012년 조사	4.99	(13,524)	131.36	23.65	155.01 (22,607)
2009년 조사	4.20	(6,783)	126.10	12.30	138.40 -

*** p < .001

주: 2015년도의 경우 월평균 급여, 수당, 총액의 응답 빈도 차이로 각각의 평균을 산출함.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한편, 2015년 해당 어린이집이 첫 근무지인 '초임교사'의 급여를 조사한 결과, 2015년 초임교사 채용이 있었다고 응답한 기관은 48.8%였다. 초임교사 급여는 기본 급 평균 132만 8천원, 제 수당 평균 25만 6천원으로, 월 평균 158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 전체(26,047명)의 평균 4.8호봉, 월 평균 급여 184만 3천원보다 약 25만 9천원 적은 금액이다.

초임교사 급여에도 기관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직장어린이집 초임교사 급여가 약 19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초임교사가 약 175~178만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초임교사가 약 139~14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4〉 2015년 초임교사 기본급, 제수당, 총액

단위: 만원(개소)

구분	초임교사 있음		기본급		제수당		총액
	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수)	
전체	48.8 (3,056)	132.81	20.45 (1,496)	25.57	20.84 (1,496)	158.38 (1,496)	
시설유형							
국공립	53.5 (385)	149.08	11.47 (201)	28.68	19.61 (201)	177.76 (201)	
사회복지법인	60.7 (305)	150.31	9.71 (190)	26.26	17.43 (190)	176.57 (190)	
법인단체	49.7 (200)	146.04	21.10 (96)	29.20	17.97 (96)	175.24 (96)	
민간	50.1 (919)	122.65	15.19 (467)	21.05	19.74 (467)	143.70 (467)	
가정	37.9 (1,031)	117.74	14.17 (393)	21.27	19.30 (393)	139.01 (393)	
직장	69.2 (216)	150.59	16.41 (149)	42.48	24.50 (149)	193.07 (149)	
$\chi^2(df)/F$	107.5(5)***	278.6**		30.9***			
소재지							
대도시	49.8 (1,150)	134.39	19.73 (583)	24.09	20.82 (583)	158.48 (583)	
중소도시	48.9 (1,226)	128.89	20.41 (591)	23.67	20.21 (591)	152.56 (591)	
읍·면	46.9 (680)	137.06	20.67 (322)	31.86	20.89 (322)	168.92 (322)	
$\chi^2(df)/F$	1.4(2)	18.5***		17.4***			
규모							
20명 이하	37.6 (1,058)	118.27	14.76 (400)	21.64	19.41 (400)	139.91 (400)	
21~39명	42.8 (466)	130.14	20.87 (203)	24.46	20.73 (203)	154.60 (203)	
40~79명	53.9 (766)	138.99	19.17 (412)	28.55	21.94 (412)	167.54 (412)	
80명 이상	62.8 (766)	140.45	18.80 (481)	26.66	20.58 (481)	167.11 (481)	
$\chi^2(df)/F$	127.8(3)***	120.4***		7.7***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2014년 작년 한 해 동안 교사에게 지급되는 제 수당 중, 정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급여성 수당(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제외한 ‘기타 수당’을 조사한 결과, ‘명절수당’을 지급한다는 기관이 2,70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 2회 연간 평균 약 12만 6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차는 큰 편이다.

그 다음으로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어린이집이 1,254개소로, 연 평균 1.6회, 평균 10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책수당’의 경우 278개소에서 연 평균 11.7회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연 평균 총 10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관이 78.1%,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관 20.3%로, 연 평균 10.1회, 연간 평균 총 14만 4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정부/지자체 급여성 수당을 제외한) 기타 수당

단위: %, 회, 만원(개소)

구분	지급주기			횟수		총 금액		(수)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부정기적	평균	표준편차	평균	
명절수당	0.1	0.6	32.6	66.7	2.05	0.61	12.57	27.46 (2,700)
휴가수당	0.4	1.0	15.6	83.0	1.56	4.03	10.40	9.76 (1,254)
직책수당	96.4	0.5	0.7	2.4	11.66	1.71	10.51	12.40 (278)
시간외수당	78.1	1.5	0.1	20.3	10.09	3.58	14.40	19.17 (235)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2) 보조교사 및 기타 인력

보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으나 담임을 맡고있지 않은 보조교사의 근무시간, 급여, 담당업무 등을 조사한 결과, 비담임 보조교사를 고용한 기관이 전체 38.6%로 나타났다. 2015년 비담임 보조교사 1일 평균 근무시간은 5시간 17분, 월 평균 급여는 93만 6천원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부터 3-5세 누리과정 운영 지원금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지출에 우선 적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지자체별로 보조교사 지원이 이루어져, 보조교사 근무의 저변이 확대된 결과로 보인다.

보조교사 담당업무는 주로 누리과정 일반이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영아반 근무가 25%로 나타났다. 누리 장애아를 담당하는 경우는 2.2%이다. 기타 업무 수행이 18.2%로, 누리/영아 등 특정 반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담임 보조교사가 일정 비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기타 업무 수행 응답(29.1%)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보조교사의 급여에서도 (담임교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장어린이집에서 가장 많고, 가정/민간 어린이집에서 상대적으로 적다.

〈표 IV-2-6〉 보조교사(비담임교사) 유무 및 근무시간

단위: %(개소), 시간

구분	비담임 보조교사가 있는 비율	(수)	비담임 보조교사 근무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6	(4,046)	5.28	1.68	(2,124)
시설유형					
국공립	66.7	(506)	5.59	1.42	(501)
사회복지법인	43.1	(377)	5.23	1.45	(226)
법인·단체	43.3	(283)	5.47	1.54	(183)
민간	34.6	(1,134)	5.13	1.87	(565)
가정	28.3	(1,480)	4.80	1.51	(446)

(표 IV-2-6 계속)

구분	비담임 보조교사가 있는 비율	(수)	비담임 보조교사 근무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직장	47.4	(266)	5.76	2.10	(203)
$\chi^2(df)/F$	263.1(5)***		16.1***		
소재지					
대도시	46.9	(1,464)	5.42	1.62	(948)
중소도시	33.5	(1,631)	5.10	1.75	(723)
읍면	34.1	(951)	5.23	1.70	(453)
$\chi^2(df)/F$	69.6(2)***		7.3***		
규모					
20명 이하	27.9	(1,520)	4.82	1.52	(454)
21~39명	16.8	(625)	5.10	1.45	(123)
40~79명	42.6	(992)	5.59	1.87	(547)
80명 이상	67.8	(909)	5.33	1.63	(1,000)
$\chi^2(df)/F$	526.1(3)***		18.7***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표 IV-2-7> 보조교사(비담임교사) 월 급여 및 담당업무

구분	월 급여				담당업무				단위: 만원, %(개소)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누리 일반	누리 장애아	영아반	기타	
전체	93.55	33.59	15	290	55.4	2.2	25.0	18.2	(2,124)
시설유형									
국공립	99.78	32.69	15	250	67.7	4.9	9.2	18.9	(501)
사회복지법인	93.05	33.63	40	261	79.5	4.3	3.8	12.3	(226)
법인·단체	99.29	45.36	15	270	71.9	2.3	10.9	17.2	(183)
민간	87.82	27.06	15	259	67.3	1.3	20.0	12.2	(565)
가정	83.95	21.16	16	180	0.5	-	70.7	29.1	(446)
직장	108.35	47.96	40	290	71.1	-	14.9	15.3	(203)
F	6.6***								
소재지									
대도시	97.07	31.81	15	290	51.9	2.9	24.5	22.2	(948)
중소도시	85.83	27.38	15	270	54.7	1.9	27.9	15.7	(723)
읍면	97.75	43.00	16	270	64.8	1.0	21.7	12.9	(453)
F	11.1***								
규모									
20명이하	84.13	21.64	16	180	0.5	0.3	70.4	29.1	(454)
21~39명	88.15	27.61	15	200	21.1	9.8	39.3	30.7	(123)
40~79명	100.48	39.17	18	290	63.8	3.3	15.7	19.3	(547)

(표 IV-2-7 계속)

구분	월급여				담당업무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누리 일반	누리 장애아	영아반	기타	(수)
80명 이상	94.53	34.22	15	280	79.3	1.5	8.2	11.2	(1,000)
F		2.8*							

* $p < .05$, *** $p < .001$

주: 2012년에는 '누리일반'이 '5세 누리반'으로, '누리장애인'이 '장애인반'으로 조사됨. 담당업무 중복응답 가능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기타 보육교직원이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을 둔 경우가 72.0%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현원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법적 기준인 정원 100인 이상에 해당할수록 조리원 채용 비율이 높다. 그 다음으로 운전기사(30.1%), 누리과정 도우미(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양사가 있는 비율은 약 7.7%, 간호/간호조무사가 약 5.4%로 나타났다.

〈표 IV-2-8〉 기타 보육교직원 보유 어린이집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조리원	영양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특수 교사	치료사	운전 기사	사무원, 관리인	누리운영 도우미	기타	(수)
전체	72.0	7.7	2.1	3.3	1.7	1.1	30.1	6.6	15.6	8.4	(3,086)
시설유형											
국공립	98.9	8.8	1.5	5.9	8.6	3.9	30.4	7.8	40.8	18.5	(506)
사회복지법인	99.1	16.7	2.8	9.2	4.2	5.5	75.8	17.1	22.4	6.9	(376)
법인·단체	95.3	8.6	3.3	4.7	1.3	1.1	71.4	14.5	26.8	11.1	(277)
민간	81.3	10.0	2.1	4.2	0.3	0.3	46.1	5.5	16.9	5.4	(975)
가정	40.4	0.1	-	-	0.2	-	3.7	0.4	0.6	4.9	(694)
직장	94.8	25.4	12.8	3.8	-	-	5.6	20.3	23.2	19.1	(258)
소재지											
대도시	73.9	8.9	2.3	3.7	2.5	1.8	25.0	5.0	20.0	11.7	(1,144)
중소도시	65.1	6.4	2.1	2.6	1.5	0.5	22.6	6.0	11.8	6.0	(1,129)
읍면	80.6	8.1	1.9	3.9	0.9	1.2	51.2	9.9	15.1	6.9	(813)
규모											
20명 이하	41.6	0.2	-	-	0.3	0.2	4.1	0.6	0.7	4.9	(728)
21~39명	72.3	1.3	-	0.2	1.3	1.5	23.4	1.5	2.8	3.9	(488)
40~79명	94.5	2.1	0.5	0.2	2.5	2.1	45.0	7.5	23.7	10.8	(964)
80~99명	97.6	3.5	0.3	0.2	2.2	0.6	58.2	12.3	38.9	15.6	(459)
100명 이상	99.3	59.0	17.9	29.1	4.9	2.2	66.4	26.1	42.9	13.9	(447)
2012년 조사	71.3	5.4	1.6	3.2	1.6	1.2	31.6	7.8	-	5.9	(4,000)

주: 각 항목(열)별 유효 N을 의미함.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조리사, 영양사, 누리운영 도우미 등 기타 직원의 기관당 평균 직원수는 대체로 1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당 각 3.4명, 2.7명의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와 치료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기관유형별로 기타 직원 평균 직원수에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조리원의 경우 기관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일수록, 기관규모가 클수록 기타 직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기타 보육교직원 평균 직원수

구분	조리원	영양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특수 교사	치료사	운전 기사	사무원/ 관리인	누리운영 도우미	단위: 명(개소)	
										기타	(수)
전체	1.24	1.01	1.04	1.00	3.35	2.69	1.21	1.13	1.33	1.08	(3,087)
시설유형											
국공립	1.28	1.05	1.00	1.00	2.94	1.81	1.10	1.09	1.27	1.06	(506)
사회복지법인	1.32	1.00	1.00	1.00	5.35	3.39	1.30	1.00	1.26	1.03	(376)
법인·단체	1.22	1.00	1.00	1.00	1.66	4.56	1.16	1.02	1.32	1.16	(277)
민간	1.22	1.02	1.00	1.00	3.00	2.35	1.24	1.00	1.35	1.05	(975)
가정	1.00	-	-	-	1.92	-	1.00	1.18	1.00	1.01	(694)
직장	1.68	1.00	1.10	1.00	-	-	1.00	1.49	1.59	1.22	(259)
F	64.4***	1.0	1.4	-	3.1*	4.4**	7.5***	3.2**	2.8*	3.5**	
소재지											
대도시	1.27	1.02	1.04	1.00	2.97	2.30	1.17	1.28	1.35	1.07	(1,145)
중소도시	1.21	1.00	1.02	1.00	3.45	3.10	1.23	1.09	1.37	1.13	(1,129)
읍·면	1.22	1.03	1.08	1.00	4.84	3.38	1.22	1.03	1.22	1.01	(813)
F	3.3*	1.0	0.5	-	1.6	1.6	1.5	2.2	2.3	2.6	
규모											
20명 이하	1.00	1.00	-	-	1.95	1.50	1.00	1.13	1.00	1.01	(728)
21~39명	1.01	1.00	-	1.00	2.87	2.25	1.01	1.00	1.08	1.08	(489)
40~79명	1.06	1.00	1.00	1.00	4.61	3.45	1.08	1.02	1.09	1.04	(964)
80~99명	1.43	1.25	1.00	1.00	1.95	1.91	1.22	1.01	1.17	1.00	(459)
100명 이상	1.99	1.00	1.04	1.00	2.97	2.03	1.53	1.26	1.80	1.32	(447)
F	475.8***	0.1	0.2	-	3.2*	2.6	60.1***	0.8	21.4***	3.7*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기타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각 196만원, 189만원 가량으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사무원/관리원(164만원), 간호사(154만원), 운전기사(122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양사와 누리과정 도우미가 평균 80만원대로 나타났다.

〈표 IV-2-10〉 기타 보육교직원 월 평균 급여

구분	조리원	영양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특수 교사	치료사	운전 기사	사무원, 관리인	단위: 만원	
									누리과 정보유 도우미	기타
전체	105.71	85.05	153.87	109.36	195.85	189.34	121.82	164.04	86.28	86.98
시설유형										
국공립	144.16	78.84	157.23	146.48	200.75	196.81	117.19	141.71	88.68	95.11
사회복지법인	137.49	60.86	133.68	101.35	202.38	176.93	131.43	180.61	86.59	85.01
법인·단체	139.27	85.06	123.84	99.60	202.93	210.82	121.20	144.78	84.10	104.03
민간	85.98	52.88	104.26	87.07	214.79	196.79	123.50	173.12	83.01	72.64
가정	54.65	-	-	-	66.95	-	62.53	79.58	80.54	74.30
직장	144.54	182.09	199.96	165.78	-	-	160.84	173.25	91.14	99.84
소재지										
대도시	108.4	79.73	156.97	111.24	195.86	192.96	123.51	149.48	89.29	89.71
중소도시	93.64	99.89	173.54	123.42	189.69	173.79	116.47	164.77	83.21	77.95
읍·면	118.3	74.81	116.91	90.31	215.12	192.21	124.44	174.81	83.93	92.49
규모										
20명 이하	58.78	-	-	-	106.53	204.00	65.31	68.67	79.94	74.40
21~39명	94.09	20.00	-	-	203.39	188.04	97.09	128.25	80.69	93.72
40~79명	124.38	125.62	181.75	166.00	198.35	190.83	112.76	150.15	88.09	90.28
80~99명	127.59	108.92	60.00	142.31	203.85	249.47	135.00	175.75	83.90	83.65
100명 이상	124.94	82.69	154.43	109.03	207.77	168.73	147.52	177.29	87.02	99.01
2012년 조사	94.25	114.88	124.65	107.44	157.34	156.30	118.36	126.18	-	116.64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2014년 정부지원에 의해 또는 기관 자체적으로 대체교사(임시교사)를 쓴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39.4%의 어린이집(1,579개소)에서 대체교사를 사용했다고 응답하였다. 대체교사를 사용한 어린이집당 연간 평균 1.9명의 대체교사를 약 5.6주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11〉 대체교사 평균 수 및 평균 채용기간

구분	대체교사를 사용한 어린이집 비율	(수)	대체교사 평균 수	대체교사 평균 채용 기간	단위: %, 명, 주(개소)	
					대체교사를 사용한 어린이집 수	
전체	39.4	(4,046)	1.91	5.59	(1,579)	
시설유형						
국공립	53.2	(506)	1.97	8.17	(271)	
사회복지법인	36.5	(377)	1.59	4.67	(136)	
법인·단체	37.0	(283)	2.13	6.80	(112)	
민간	35.8	(1,134)	1.87	6.16	(393)	
가정	35.9	(1,480)	1.67	2.58	(522)	
직장	52.7	(266)	2.88	10.08	(145)	

(표 IV-2-11 계속)

구분	대체교사를 사용한 어린이집 비율	(수)	대체교사 평균 수	대체교사 평균 채용 기간	대체교사를 사용한 어린이집 수
$\chi^2(df)/F$	77.7(5)***		17.9***	1.3	
소재지					
대도시	50.9	(1,464)	2.12	6.46	(751)
중소도시	34.0	(1,631)	1.72	4.76	(548)
읍·면	29.7	(951)	1.69	4.81	(280)
$\chi^2(df)/F$	139.6(2)***		15.3***	0.4	
규모					
20명 이하	35.9	(1,520)	1.68	2.58	(537)
21~39명	34.4	(625)	2.00	3.14	(212)
40~79명	43.8	(992)	2.10	10.02	(433)
80명 이상	43.8	(909)	1.95	6.19	(397)
$\chi^2(df)/F$	29.6(3)***		7.4***	3.3*	

* $p < .05$,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3) 근로복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채용 시 근로계약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2년에 이어 거의 100% 가까이 모든 어린이집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의 경우 임금/근로시간/근로조건 등을 요건을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하 시설은 근로계약서 적용 예외조항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모든 어린이집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2-12〉 보육교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구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계(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기재 여부		계(수)	단위: %(개소)
	작성 안함	작성함		기재 안함	기재 함		
전체	0.4	99.6	100.0(4,046)	0.1	99.9	100.0(4,032)	
시설유형							
국공립	-	100.0	100.0(506)	-	100.0	100.0(506)	
사회복지법인	0.4	99.6	100.0(377)	-	100.0	100.0(375)	
법인·단체	-	100.0	100.0(283)	-	100.0	100.0(283)	
민간	0.6	99.4	100.0(1,134)	-	100.0	100.0(1,129)	
가정	0.5	99.5	100.0(1,480)	0.2	99.8	100.0(1,474)	
직장	0.5	99.5	100.0(266)	-	100.0	100.0(265)	
$\chi^2(df)$	3.2(5)			28.5(15)*			
소재지							

(표 IV-2-12 계속)

구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계(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기재 여부		계(수)
	작성 안함	작성함		기재 안함	기재함	
대도시	-	100.0	100.0(1,464)	0.1	99.9	100.0(1,464)
중소도시	0.5	99.5	100.0(1,631)	0.1	99.9	100.0(1,624)
읍면	1.0	99.0	100.0(951)	-	100.0	100.0(944)
$\chi^2(df)$	17.8(2)***			5.4(6)		
규모						
20명 이하	0.5	99.5	100.0(1,520)	0.2	99.8	100.0(1,514)
21~39명	0.2	99.8	100.0(625)	-	100.0	100.0(624)
40~79명	0.3	99.7	100.0(992)	-	100.0	100.0(989)
80명 이상	0.5	99.5	100.0(909)	-	100.0	100.0(905)
$\chi^2(df)$	2.7(3)			20.7(9)*		
2012년 조사	0.4	99.6	100.0(4,000)	1.1	98.9	100.0(4,000)

* $p < .05$,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보육교직원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지 어린이집 원장에게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가 '있다'는 기관이 전체 70.8%(2,864개소), 시간외 근무가 '없다' 29.2%로, 시간외 근무가 있는 기관 중 64.7%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중 시간외 수당을 초과근무시간만큼 지급하는 경우가 61.2%로 나타났으며, 상한선 있음 19.0%, 초과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교사에게 일괄지급 18.4%로 나타났다.

〈표 IV-2-13〉 보육교직원 초과근무 여부 및 지급 비율 관련 실태

구분	초과근무		초과근무 수당 지급 비율 (수)	초과근무 시 수당 지불				계(수)	단위: %(개소)
	있다	없다		초과근무 시간만큼 수당 있음	상한선 있음	일괄 지급	기타		
비율	70.8	29.2	(4,046)	64.7	(2,864)	61.2	19.0	18.4	1.3 100.0(1,851)
2012년 조사	66.8	33.2	(4,000)	74.0	(2,682)	49.1	18.2	31.1	1.6 100.0(1,973)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비율은 직장/국공립어린이집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법인/가정/민간어린이집에서 시간외수당 지급률이 50%내외로 낮았다. 대도시지역일수록, 기관규모가 클수록 시간외수당 지급률이 높다.

한편, 지급 방식에서 초과시간만큼 지급하는 비율이 가정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기관유형별로 50% 내외의 초과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장어린이집에서는 상한선 있음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는 일괄지급 방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표 IV-2-14〉 보육교직원 시간외 수당 지급률 및 지급방식

단위: %(개소)

구분	지급 비율	(수)	지급 방식				
			초과근무 시간만큼	상한선 있음	일괄 지급	기타	계(수)
전체	64.7	(2,864)	61.2	19.0	18.4	1.3	100.0(1,851)
시설유형							
국공립	84.6	(452)	56.7	22.3	19.4	1.6	100.0(398)
사회복지법인	47.0	(301)	44.7	19.0	35.8	0.6	100.0(133)
법인·단체	64.3	(215)	47.1	26.8	23.7	2.4	100.0(133)
민간	58.7	(775)	55.3	19.4	23.8	1.5	100.0(454)
가정	56.9	(870)	80.9	8.3	9.9	0.9	100.0(494)
직장	92.0	(251)	56.6	30.5	11.5	1.3	100.0(239)
$\chi^2(df)$	588.5(10)***		159.0(15)***				
소재지							
대도시	70.3	(1,026)	64.3	17.6	17.2	0.9	100.0(742)
중소도시	63.5	(1,119)	61.5	20.1	16.8	1.6	100.0(704)
읍·면	58.2	(719)	55.1	19.6	23.6	1.8	100.0(405)
$\chi^2(df)$	39.1(4)***		14.0(6)*				
규모							
20명 이하	57.9	(901)	79.8	9.7	9.6	0.9	100.0(523)
21~39명	57.9	(425)	63.8	15.5	18.9	1.8	100.0(242)
40~79명	70.9	(782)	53.7	23.8	21.4	1.0	100.0(557)
80명 이상	70.2	(756)	49.6	24.7	23.8	1.9	100.0(529)
$\chi^2(df)$	260.5(6)***		122.6(9)***				
2012년 조사	74.0	(4,000)	49.1	18.2	31.1	1.6	100.0(1,973)

* $p < .05$,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보육교직원을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질문에 응답한 기관이 전체 95.4%인 가운데 개인퇴직계좌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비율이 46.1%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23~24%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기타 10.0%로 응답되었다.

〈표 IV-2-15〉 운영 중인 퇴직급여제도

단위: %(개소)

구분	개인퇴직계좌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기타	(수)
전체	46.1	23.3	24.7	10.0	(3,859)
시설유형					
국공립	27.6	29.8	48.0	2.2	(496)
사회복지법인	36.2	25.4	41.0	4.9	(362)
법인·단체	38.0	25.3	37.6	4.5	(276)
민간	51.9	22.6	15.5	13.3	(1,078)
가정	53.9	19.9	14.4	13.9	(1,393)
직장	37.1	27.8	38.8	2.8	(254)
소재지					
대도시	42.7	23.9	29.8	8.8	(1,404)
중소도시	49.2	22.6	19.1	12.0	(1,550)
읍·면	46.3	23.7	26.1	8.5	(905)
규모					
20명 이하	53.7	20.0	14.8	13.6	(1,430)
21~39명	50.1	20.2	20.0	12.3	(589)
40~79명	39.4	26.7	32.0	7.3	(957)
80명 이상	38.2	27.2	36.3	5.4	(883)
2012년 조사	43.3	28.1	17.6	13.4	(3,893)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3. 보육 교직원 신규채용 및 이직률

한편, 2015년 신규 채용한 보육교사의 수를 질문한 결과, 7,097명으로 전체 재직교사의 27.4%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2015년에 교사를 신규로 채용했다고 응답한 기관은 75.5%로, 24.5%의 어린이집에서는 신규교사 채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신규교사 수가 전체 교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015년 신규교사를 채용했다고 응답한 기관은 사회복지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에서 8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1〉 2015년 신규 채용 보육교사 여부

단위: 명, %(명, 개소)

구분	보육교사			어린이집	
	신규 교사수	전체교사 대비 비율	(수)	신규교사 채용 어린이집 비율	(수)
전체	7,097	27.4	(26,047)	75.5	(4,046)
시설유형					
국공립	913	20.0	(4,411)	75.2	(506)
사회복지법인	770	23.8	(3,490)	82.1	(377)
법인·단체	388	19.9	(2,024)	69.3	(283)
민간	2,540	30.9	(8,209)	81.2	(1,134)
가정	1,840	36.4	(5,078)	69.6	(1,480)
직장	645	22.6	(2,835)	81.4	(266)
소재지					
대도시	3,009	28.2	(10,440)	78.9	(1,464)
중소도시	2,659	28.8	(9,437)	75.1	(1,631)
읍면	1,429	23.9	(6,170)	70.6	(951)
규모					
20명 이하	1,892	36.2	(5,233)	69.4	(1,520)
21~39명	903	28.8	(3,151)	73.7	(625)
40~79명	1,784	24.9	(7,181)	77.2	(992)
80명 이상	2,518	24.3	(10,482)	85.0	(909)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2014년 한 해 동안 그만둔 보육교사가 몇 명인지 질문한 결과, 전체 68.9%의 어린이집에서 지난 한 해 사직한 교사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2014년 사직교사 수는 6,077명으로, 조사대상 전체 교사 대비 24.1%가 그만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유형별로 가정/민간어린이집의 교사 사직률(가정 31.7%, 민간 27.5%)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IV-3-2〉 사직한 보육교사가 있는 기관 및 교사 수(2014년)

단위: 명, %, 개소(명, 개소)

구분	보육교사			어린이집	
	사직 교사수	전체교사 대비 비율	(수)	사직교사 있는 어린이집 수	사직교사 있는 비율
전체	6,077	24.1	(25,346)	2,788	68.9
시설유형					
국공립	751	17.2	(4,209)	350	66.6
사회복지법인	698	21.8	(3,488)	269	76.3
법인·단체	377	19.9	(1,977)	184	67.4
민간	2,178	27.5	(7,921)	847	74.4
가정	1,614	31.7	(5,091)	944	63.6

(표 IV-3-2 계속)

구분	보육교사			어린이집		
	사직 교사수	전체교사 대비 비율	(수)	사직교사 있는 어린이집 수	사직교사 있는 비율	(수)
직장 $\chi^2(df)$	459	17.1 46.5(5) ^{***}	(2,660)	194	70.9 32.3(5) ^{***}	(266)
소재지						
대도시	2,542	24.9	(10,004)	1,086	71.8	(1,464)
중소도시	2,167	24.1	(9,220)	1,058	66.0	(1,631)
읍·면	1,369	23.0	(6,122)	644	69.2	(951)
$\chi^2(df)$		12.2(2) ^{**}			3.1(2) [*]	
근로						
20명 이하	1,653	31.5	(5,235)	976	63.9	(1,520)
21~39명	714	23.7	(3,015)	394	63.5	(625)
40~79명	1,582	23.2	(6,824)	705	70.4	(992)
80명 이상	2,128	21.1	(10,272)	712	79.6	(909)
$\chi^2(df)$		75.1(3) ^{***}			36.4(3) ^{***}	
2012년 조사	6,482	27.6	(23,462)	2,882	77.1	(4,000)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2014년 그만둔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에 교사가 사직한 가장 큰 이유를 질문한 결과, (원장 응답에 의하면) '출퇴근시간 때문에'가 2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계약만료로 인해 그만둔 경우로, 즉 근로 지속이 안 된 경우(18.6%), 건강상의 이유(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족이 12.3%로, 출퇴근시간 문제와 함께 고려할 경우 근로여건에 대한 불만족이 약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사직 이유가 11.3%로, 보육교사의 임신과 출산이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여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일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표 IV-3-3〉 어린이집 사직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출퇴근 시간문제	계약 만료	건강상 이유	급여·근무 조건 불만족	임신, 출산	관계간 갈등 및 부적응	기타	계(수)
전체	23.1	18.6	17.5	12.3	11.3	7.7	9.4	100.0(2,774)
시설유형								
국공립	28.9	6.0	14.8	6.9	15.1	12.4	15.9	100.0(336)
사회복지법인	26.8	15.2	14.4	9.4	17.1	6.3	10.8	100.0(286)
법인단체	29.1	16.6	18.4	4.5	15.7	4.9	10.8	100.0(190)
민간	21.7	19.9	17.4	16.8	9.5	7.2	7.5	100.0(840)
가정	17.6	25.8	19.8	14.1	8.0	8.1	6.6	100.0(934)

(표 IV-3-3 계속)

구분	출퇴근 시간문제	계약 만료	건강상 이유	급여·근무 조건 불만족	임신, 출산	관계간 갈등 및 부적응	기타	계(수)
직장	34.2	7.1	15.7	5.7	16.9	3.9	16.5	100.0(188)
$\chi^2(df)$	241.3(30)***							
소재지								
대도시	20.6	17.5	17.1	13.3	11.4	8.7	11.5	100.0(1,046)
중소도시	22.5	19.7	19.1	12.3	10.0	7.2	9.1	100.0(1,076)
읍면	28.2	18.7	15.8	10.8	13.5	6.8	6.3	100.0(652)
$\chi^2(df)$	34.3(12)***							
규모								
20명 이하	17.7	25.7	19.6	13.9	8.2	8.0	6.9	100.0(961)
21~39명	21.5	21.4	15.6	14.5	11.0	7.7	8.3	100.0(396)
40~79명	25.9	14.5	18.3	11.1	12.5	6.9	10.8	100.0(703)
80명 이상	28.4	11.5	15.1	10.3	14.7	7.9	12.1	100.0(714)
$\chi^2(df)$	119.5(18)***							
2012년 조사	25.8	12.9	18.8	14.4	10.0	6.4	11.7	100.0(2,897)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2014년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을 그만둔 경우, 이후 사직 교사의 취업경로에 대해 원장에게 질문한 결과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약 10%인 가운데, 일을 그만두고 쉬는 경우가 약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더 좋은 여건의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 38.2%, 보육교사가 아닌 다른 직종으로 바꾸거나 전직을 위해 그만둔 경우가 약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어린이집을 그만 둔 이후 직업경로

구분	이직 (다른 기관으로 옮김)	전직 (직종을 바꿈)	일을 그만둠	모름	계(수)
전체	38.2	12.0	39.7	10.1	(2,781)
시설유형					
국공립	34.9	15.4	40.6	9.1	(337)
사회복지법인	32.8	13.8	45.6	7.7	(286)
법인·단체	43.1	8.5	41.3	7.1	(190)
민간	39.5	12.9	37.7	9.9	(841)
가정	39.6	10.4	37.8	12.2	(939)
직장	34.3	10.9	45.8	9.1	(188)
소재지					
대도시	39.1	11.9	38.7	10.3	(1,048)
중소도시	38.0	11.4	39.0	11.5	(1,081)

(표 IV-3-4 계속)

구분	이직 (다른 기관으로 옮김)	전직 (직종을 바꿈)	일을 그만둠	모름	(수)
읍·면	37.0	13.2	42.2	7.6	(652)
규모					
20명 이하	39.8	10.2	37.6	12.4	(966)
21~39명	38.2	11.1	41.0	9.8	(396)
40~79명	35.7	16.4	39.6	8.3	(704)
80명 이상	38.5	10.7	41.7	9.1	(715)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4. 보수교육

2014년 지난 한 해 동안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전체 교사에 대해 일반직무, 특별직무, 보육교사 승급교육 현황을 질문하였다. 일반직무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자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 보육교사 대상 40.2%, 원장 대상 35.3% 였으며, 이 중 실제 일반직무 보수교육 이수율은 전체 대상자 중에서 보육교사 91.3%, 원장 91.8%로 나타났다. 2012년과 비교하여 유사한 이수율을 보이는 가운데, 원장의 일반직무 보수교육 이수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직장/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일반직무 보수교육 이수율이 높다.

〈표 IV-4-1〉 일반직무 보수교육 현황(2014년): 전체 교사

단위: %(개소, 명)

구분	보육교사		원장	
	대상 시설 (수)	교육대상자 이수율 (수)	대상 시설 (수)	교육대상자 이수율 (수)
전체	40.2 (4,046)	91.3 (4,015)	35.3 (4,046)	91.8 (1,416)
시설유형				
국공립	45.2 (506)	96.2 (636)	30.9 (506)	99.0 (154)
사회복지법인	43.7 (377)	90.8 (574)	34.0 (377)	95.9 (126)
법인·단체	51.2 (283)	96.5 (339)	42.1 (283)	97.1 (114)
민간	42.5 (1,134)	89.4 (1,306)	34.7 (1,134)	88.2 (380)
가정	34.1 (1,480)	88.9 (871)	36.6 (1,480)	89.6 (551)
직장	38.0 (266)	98.2 (289)	33.8 (266)	96.7 (91)
$\chi^2(df)/F$	47.0(5) ^{***}	11.9 ^{***}	12.0(5) [*]	2.3 [*]
소재지				
대도시	40.2 (1,464)	91.0 (1,577)	34.6 (1,464)	91.0 (504)
중소도시	39.2 (1,631)	92.9 (1,415)	34.5 (1,631)	91.0 (556)

(표 IV-4-1 계속)

구분	보육교사		원장	
	대상 시설 (수)	교육대상자 이수율 (수)	대상 시설 (수)	교육대상자 이수율 (수)
읍·면 $\chi^2(df)/F$	41.7 (951) 1.5(2)	89.9 (1,023) 0.1	37.7 (951) 3.2(2)	94.7 (356) 2.9
규모				
20명 이하	33.7 (1,520)	89.0 (882)	36.5 (1,520)	89.6 (562)
21~39명	40.7 (625)	88.5 (489)	33.6 (625)	89.0 (209)
40~79명	43.1 (992)	94.7 (1,154)	33.3 (992)	93.7 (318)
80명 이상	47.5 (909)	93.2 (1,490)	36.5 (909)	95.6 (327)
$\chi^2(df)/F$	50.1(3)***	20.1***	3.9(3)	1.7
2012년 조사	42.2 (4,000)	91.1 (1,690)	32.8 (4,000)	90.4 (1,324)

* $p < .05$,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전체 보육교사의 승급교육 이수율을 살펴본 결과, 원장 응답을 기준으로 2급 승급 교육 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이 7.1%, 1급 승급교육 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이 34.7%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대상자의 이수율은 2급 승급교육 81.7%, 1급 승급교육 91.1%로 1급 교육의 이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2년과 비교하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교육 대상자가 있는 기관 비율과 실제 이수율이 감소하였다.

〈표 IV-4-2〉 보육교사 1·2급 승급 및 보수교육 현황(201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2급 승급 보수교육		1급 승급 보수교육	
	대상 시설 (수)	대상자 이수율 (수)	대상 시설 (수)	대상자 이수율 (수)
전체	7.1 (4,046)	81.7 (349)	34.7 (4,046)	91.1 (2,040)
시설유형				
국공립	2.9 (506)	89.7 (17)	41.1 (506)	94.6 (334)
사회복지법인	4.3 (377)	60.5 (22)	38.6 (377)	93.3 (219)
법인·단체	5.0 (283)	92.0 (16)	37.1 (283)	91.9 (155)
민간	10.8 (1,134)	79.6 (158)	36.8 (1,134)	88.3 (629)
가정	7.6 (1,480)	82.9 (125)	26.7 (1,480)	89.9 (468)
직장	2.6 (266)	100.0 (11)	49.2 (266)	97.4 (235)
$\chi^2(df)/F$	52.2(5)***	8.1***	81.5(5)***	18.6***
소재지				
대도시	7.7 (1,464)	76.6 (142)	36.4 (1,464)	91.8 (798)
중소도시	6.8 (1,631)	82.4 (130)	33.1 (1,631)	91.8 (761)
읍·면	6.5 (951)	89.2 (77)	34.5 (951)	89.9 (481)
$\chi^2(df)/F$	1.8(2)	0.1	3.8(2)	1.8

(표 IV-4-2 계속)

구분	2급 승급 보수교육			1급 승급 보수교육				
	대상 시설	(수)	대상자 이수율	(수)	대상 시설	(수)	대상자 이수율	(수)
규모								
20명 이하	7.5	(1,520)	82.7	(127)	26.5	(1,520)	89.8	(478)
21~39명	6.4	(625)	81.3	(57)	34.2	(625)	91.2	(286)
40~79명	5.3	(992)	79.2	(60)	37.0	(992)	90.5	(523)
80명 이상	8.8	(909)	81.8	(105)	46.3	(909)	93.5	(753)
$\chi^2(df)/F$	10.0(3)*		3.0*		100.6(3)***		34.6***	
2012년 조사	17.5	(4,000)	85.7	(702)	35.1	(4,000)	90.0	(1,421)

* $p < .05$,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각 어린이집에 특별직무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영아보육 28.7%, 장애아보육 5.9%, 방과후보육 3.8%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기관규모가 클수록 특별직무교육 실시율이 다소 높다. 2012년 대비 특별직무 보수교육 실시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IV-4-3> 특별직무 보수교육 실시 비율(2014년)

구분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단위: %(개소)	
				(수)	(수)
전체	28.7	5.9	3.8	(4,046)	
시설유형					
국공립	38.6	17.2	6.0	(506)	
사회복지법인	40.2	13.0	10.3	(377)	
법인·단체	32.5	8.7	4.8	(283)	
민간	30.1	4.0	3.9	(1,134)	
가정	20.5	1.5	1.3	(1,480)	
직장	30.9	3.8	3.6	(266)	
소재지					
대도시	27.4	7.2	4.3	(1,464)	
중소도시	26.8	3.8	2.3	(1,631)	
읍·면	34.4	7.4	5.5	(951)	
규모					
20명 이하	20.6	1.6	1.2	(1,520)	
21~39명	27.6	4.5	2.0	(625)	
40~79명	33.6	9.3	5.0	(992)	
80명 이상	37.9	10.3	8.0	(909)	
2012년 조사	32.2	11.0	5.0	(4,000)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한편 원장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개인사정(29.7%)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체교사 없음(20.1%)이 많았고, 어린이집 일정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IV-4-4〉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

구분	대체교사 없음	어린이집 일정상	개인 사정	보호자 싫어함	정보를 몰라서	교육 장소 멀어	기회가 없어서	단위: %(개소)	
								기타	계(수)
전체	20.1	19.5	29.7	0.4	4.1	5.7	17.3	3.2	100.0(509)
시설유형									
국공립	15.8	24.2	49.9	-	-	-	10.1	-	100.0(34)
사회복지법인	29.8	11.4	18.2	-	-	7.3	28.0	5.3	100.0(50)
법인·단체	26.4	21.7	20.9	-	-	2.9	23.3	4.7	100.0(27)
민간	21.5	19.0	24.4	-	5.7	8.8	17.7	3.0	100.0(179)
가정	15.9	21.4	34.9	0.9	5.3	4.5	14.3	2.8	100.0(199)
직장	29.4	10.5	26.7	-	-	-	24.9	8.5	100.0(20)
소재지									
대도시	15.2	21.7	24.0	0.9	4.8	3.0	25.3	5.1	100.0(184)
중소도시	16.3	21.3	35.5	0.1	5.5	6.3	12.8	2.3	100.0(195)
읍·면	33.3	13.4	29.0	-	1.1	8.7	12.6	1.8	100.0(130)
규모									
20명 이하	16.3	21.1	35.0	0.9	5.3	4.4	14.2	2.8	100.0(203)
21~39명	25.6	15.6	25.9	-	6.6	7.6	15.7	3.0	100.0(91)
40~79명	23.0	18.6	31.1	-	2.5	5.7	16.5	2.6	100.0(102)
80명 이상	20.1	20.5	21.5	-	1.6	6.6	25.0	4.7	100.0(113)
2012년 조사	18.9	10.1	17.9	0.4	2.3	2.9	13.7	33.8	100.0(1,299)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교육이 '있었다'고 응답한 기관은 전체 75.1%이며, 재교육 유형은 '자체 별도교육'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동료간 멘토링'과 '컨설팅'이 응답되었다.

자체 보수교육의 실시는 국공립/직장/법인어린이집에서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가정/민간 어린이집에서 실시가 적었다. 기관유형이 클수록 더 많이 이루어졌다. 동료간 멘토링의 경우 직장/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4-5〉 기관 자체 재교육 유무 및 내용

구분	자체 실시 교육		지원 또는 교육					단위: %(개소)
	있음 (수)	자체 별도 보수교육	컨설팅	동료간 멘토링	자율 공부모임	기타		
전체	75.1 (4,046)	67.8	27.3	33.8	20.7	10.4		

(표 IV-4-5 계속)

구분	자체 실시 교육		지원 또는 교육				
	있음	(수)	자체 별도 보수교육	컨설팅	동료간 멘토링	자율 공부모임	기타
시설유형							
국공립	86.4	(506)	67.4	38.3	42.5	31.6	10.2
사회복지법인	79.9	(377)	74.7	27.2	36.1	17.1	11.1
법인단체	85.6	(283)	69.7	27.2	35.7	17.1	8.9
민간	75.1	(1,134)	65.9	26.8	32.1	22.5	8.2
가정	66.3	(1,480)	69.5	21.6	27.7	12.1	8.8
직장	85.4	(266)	58.3	31.7	43.7	37.3	26.4
$\chi^2(df)$	134.5(5)***						
규모							
20명 이하	66.1	(1,520)	68.7	21.9	28.1	12.8	8.8
21~39명	76.6	(625)	64.2	26.3	32.9	17.2	9.1
40~79명	81.7	(992)	67.8	28.6	37.6	28.0	12.9
80명 이상	82.2	(909)	69.0	33.8	37.8	25.9	10.7
$\chi^2(df)$	113.9(3)***						

*** $p < .001$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기관 자체 교육 및 컨설팅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과 '보육과정 상호작용', '평가인증'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6〉 기관 자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내용

구분	아동학대 예방	평가인증	안전	보육과정 · 상호작용	누리과정	기타	단위: %(개소)
							(수)
전체	81.1	44.3	63.4	54.5	18.9	10.7	(3,041)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원장) 조사

5. 보육교사 조사 결과

가. 교사 근로시간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교사 중 각 기관별로 중간 경력에 해당하는 보육교사 4,063명을 대상으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9시간 36분으로 나타났다. 보육업

무에 쓰이는 시간이 7시간 54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준비 및 기타업무시간이 1일 평균 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시간은 1일 평균 30분, 휴식시간 18분으로 적게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의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 24분으로 가장 길고, 가정어린이집이 9시간 6분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2012년에 교사 휴식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일 평균 휴식시간 26분, 근로시간 9시간 28분으로 응답되었다.

〈표 IV-5-1〉 보육교사의 하루 총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

구분	보육시간	보육준비 및 기타업무	점심시간	휴식시간	1일 총 근로시간	단위: 시간(명)	
						주당 총 근로시간	(수)
전체	7시간 54분	1시간	30분	18분	9시간 36분	48.3시간	(4,063)
시설유형							
국공립	7시간 15분	1시간 12분	30분	12분	9시간 56분	49.3시간	(511)
사회복지법인	8시간 6분	1시간 18분	30분	12분	10시간 6분	51.1시간	(380)
법인·단체	8시간	1시간 12분	30분	18분	9시간 54분	50.1시간	(283)
민간	7시간 54분	1시간	30분	18분	9시간 42분	48.8시간	(1,145)
가정	7시간 42분	42분	24분	18분	9시간 6분	45.9시간	(1,473)
직장	8시간 6분	1시간 30분	30분	24분	10시간 24분	52.8시간	(271)
<i>F</i>	3.7**	56.8***	4.7**	5.1***	61.3***	58.0***	
소재지							
대도시	7시간 42분	1시간	30분	18분	9시간 30분	47.9시간	(1,493)
중소도시	7시간 54분	54분	30분	12분	9시간 30분	48.0시간	(1,630)
읍면	8시간	1시간 6분	30분	18분	9시간 48분	49.6시간	(940)
<i>F</i>	21.3***	12.5***	0.2	10.2***	19.0***	18.4***	
규모							
20명 이하	7시간 42분	42분	24분	18분	9시간 6분	46.0시간	(1,513)
21~39명	7시간 54분	48분	30분	18분	9시간 30분	48.1시간	(625)
40~79명	7시간 54분	1시간 6분	30분	18분	9시간 42분	48.9시간	(1,011)
80명 이상	7시간 54분	1시간 12분	30분	12분	9시간 54분	50.1시간	(914)
<i>F</i>	3.5*	105.5***	8.0***	5.3**	88.9***	85.0***	
2012년 조사	-	-	-	26분	9시간 28분	-	(4,000)

* $p < .05$, ** $p < .01$, *** $p < .001$

주: 2012년 조사에서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만 질문함.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중간 경력 보육교사의 한달 평균 토요일/휴일 근무 횟수와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토요보육은 전체 평균 한달에 0.43회, 휴일근무는 0.13회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달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토요근무와 특히 휴일근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무를 할 경우, 1회 근무시간이 토요일 5시간 35분, 휴일 5시간 56분으로

6시간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법인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한달 토요근무 횟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많았으나, 이 역시 한 달에 1일이 안 되는 기간으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휴일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주말근무횟수 0.53회에 비해 감소한 결과이다.

〈표 IV-5-2〉 보육교사 월간 주말근무 횟수

단위: 회, 시간(명)

구분	토요근무				휴일근무			
	횟수	1일 근무시간	1달 근무시간	(수)	횟수	1일 근무시간	1달 근무시간	(수)
전체	0.43	5.59	6.19	(4,063)	0.13	5.94	6.82	(4,063)
시설유형								
국공립	0.66	5.69	5.56	(511)	0.23	5.82	5.85	(511)
사회복지법인	0.75	5.48	6.53	(380)	0.13	5.92	5.92	(380)
법인·단체	0.59	5.42	6.09	(283)	0.20	5.42	6.17	(283)
민간	0.45	5.67	6.15	(1,145)	0.14	6.20	7.65	(1,145)
가정	0.22	5.45	7.22	(1,473)	0.07	5.49	6.51	(1,473)
직장	0.43	5.12	5.59	(271)	0.18	5.97	6.20	(271)
F	51.9***	2.0	4.5***		9.3***	0.8	1.7	
소재지								
대도시	0.41	5.61	5.85	(1,493)	0.13	6.07	6.58	(1,493)
중소도시	0.38	5.50	6.17	(1,630)	0.12	5.62	6.26	(1,630)
읍·면	0.54	5.69	6.71	(940)	0.16	6.23	8.10	(940)
F	18.1***	1.5	5.7**		1.5	1.6	3.5*	
규모								
20명 이하	0.22	5.46	7.22	(1,513)	0.07	5.51	6.52	(1,513)
21~39명	0.40	5.38	6.27	(625)	0.14	5.23	7.43	(625)
40~79명	0.49	5.52	6.18	(1,011)	0.17	5.90	6.70	(1,011)
80명 이상	0.58	5.72	5.90	(914)	0.16	6.32	6.83	(914)
F	69.9***	3.2*	5.7**		10.6***	2.6	0.3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나. 교사 급여

중간경력교사를 대상으로 급여 책정 시 기준 경력이 반영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반영되었다는 비율이 60.8%로 나타났다.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의 경력 반영 비율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가정/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경력 반영 비율이 약 33.4%, 63.1%로 상대적으로 낮다.

〈표 IV-5-3〉 급여 책정 시 기존 어린이집 경력 반영 및 경력에 따른 급여 상승 여부

단위: %(명)

구분	기존 어린이집 경력 반영 여부	(수)	경력에 따른 급여 상승				계(수)
			모두 반영	부분 반영	전혀 반영 안됨		
전체		60.8	(2,766)	34.9	35.8	29.4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95.8	(367)	91.7	4.3	4.0	100.0(511)	
사회복지법인	85.7	(225)	87.6	10.7	1.7	100.0(380)	
법인·단체	87.2	(182)	79.7	13.9	6.4	100.0(283)	
민간	63.1	(781)	22.7	49.1	28.2	100.0(1,145)	
가정	33.4	(1,018)	12.5	36.1	51.5	100.0(1,473)	
직장	93.9	(193)	83.8	13.4	2.8	100.0(271)	
$\chi^2(df)$	16.5(5)**			524.4(5)***			

** $p < .01$,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중간경력교사에게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조사한 결과, 시간외 수당 지급 비율은 25.1%, 13만 7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책수당 지급 비율 14.9%, 10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근속수당과 연구수당의 비율은 각 4.3%, 2.1%로 적게 나타났다.

〈표 IV-5-4〉 어린이집 지급 수당

단위: %, 만원(명)

구분	시간외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초과수당		연구수당		(수)
	지급 여부	지급 액	지급 여부	지급 액	지급 여부	지급 액	지급 여부	지급 액	지급 여부	지급 액	
전체	25.1	13.70	4.3	7.32	14.9	10.61	2.0	6.31	2.1	7.73	(4,063)
시설유형											
국공립	55.0	8.64	2.9	6.16	28.2	8.35	1.1	7.69	3.7	5.76	(511)
사회복지법인	24.7	11.91	4.3	5.28	25.0	11.33	2.1	8.11	1.8	7.26	(380)
법인·단체	29.8	10.83	5.2	4.50	24.6	11.96	1.6	8.07	2.1	13.15	(283)
민간	21.7	15.94	4.9	8.54	14.0	12.40	1.8	6.90	1.5	10.02	(1,145)
가정	12.4	8.42	3.9	6.14	7.3	7.47	2.4	4.09	1.7	2.61	(1,473)
직장	79.0	24.25	2.8	6.28	26.4	10.55	3.3	11.48	9.6	12.18	(271)
$\chi^2(df)/F$	564.1(9)***	39.5***	5.3(5)	1.0	1622.5***	9.2***	4.3(5)	5.3***	525.5***	10.2***	
소재지											
대도시	27.6	12.18	3.4	8.44	17.3	9.97	0.8	6.64	1.9	7.39	(1,493)
중소도시	23.6	15.27	4.5	7.27	12.5	10.30	2.8	6.59	2.2	7.95	(1,630)
읍면	23.0	14.14	5.4	6.08	15.0	12.43	2.6	5.59	2.4	7.85	(940)
$\chi^2(df)/F$	9.3(2)**	6.3**	5.8(2)	1.1	147.2***	5.1**	173.2***	0.5	0.7(2)	0.1	

(표 IV-5-4 계속)

구분	시간외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초과수당		연구수당		(수)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여부	지급액	
규모											
20명 이하	12.7	8.48	4.0	6.08	7.5	7.44	2.4	4.09	1.7	2.65	(1,513)
21~39명	18.2	10.32	4.0	5.91	13.0	9.14	1.8	6.04	1.7	4.96	(625)
40~79명	29.5	12.10	4.3	6.69	19.8	10.15	1.2	6.15	2.3	10.11	(1,011)
80명 이상	35.9	16.96	4.6	9.18	19.1	12.47	2.2	8.62	2.6	10.12	(914)
$\chi^2(df)/F$	207.9(3)***	25.3***	0.7(3)	1.9	899(3)***	12.6***	4.6(3)	8.5***	3.1(3)	13.2***	

** $p < .01$,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중간경력교사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조사한 결과,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 17만원 수령이 67.7%로 가장 많다. 누리과정 담임수당(30만원)은 지급비율 29.4%, 농어촌특별수당(11만원)은 21.6%로 조사되었다.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영아반근무환경개선비 지급 비율이 94.6%, 누리과정수당 2.9%로 영아 위주의 가정어린이집 특성을 드러낸다.

〈표 IV-5-5〉 정부 지급 수당

단위: %, 만원(명)

구분	누리과정 담임수당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 특별수당		(수)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여부	지급액	
전체	29.4	29.88	67.7	17.00	21.6	11.00	(4,063)
시설유형							
국공립	34.6	29.95	61.7	17.00	17.8	11.00	(511)
사회복지법인	31.3	29.96	65.0	17.00	49.6	11.00	(380)
법인·단체	40.7	30.00	57.3	17.00	39.6	11.00	(283)
민간	43.5	29.92	53.4	17.00	23.0	11.00	(1,145)
가정	2.9	28.25	94.6	17.00	13.9	11.00	(1,473)
직장	37.5	30.00	60.8	17.00	15.9	11.00	(271)
$\chi^2(df)/F$	610.6(5)***	18.3***	596.0(5)***	0.0	187.3(5)***	-	
소재지							
대도시	26.6	29.94	70.5	17.00	-	-	(1,493)
중소도시	28.5	29.78	68.5	17.00	-	-	(1,630)
읍면	36.2	29.96	60.9	17.00	100.0	11.00	(940)
$\chi^2(df)/F$	26.5(2)***	3.7*	24.9(2)***	0.0	4,063.0(2)***	-	

* $p < .05$,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중간경력교사에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조사한 결과, 시·도 처우개선비가 74.2%, 평균 12만 8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군·구 처우개선비 37.0%, 9만 2천원

으로 조사되었다.

〈표 IV-5-6〉 지자체 지급 수당

단위: %, 만원(명)

구분	시도 척우개선비		시군구 척우개선비		영아전담수당		(장기)근속수당		(수)
	지급 여부	지급액	지급 여부	지급액	지급 여부	지급액	지급 여부	지급액	
전체	74.2	12.80	37.0	9.19	3.6	4.63	5.4	4.89	(4,063)
시설유형									
국공립	71.2	12.60	37.8	7.99	3.1	5.00	3.9	4.43	(511)
사회복지법인	69.0	8.13	24.8	5.55	2.3	3.20	8.1	4.24	(380)
법인·단체	73.5	10.04	29.6	6.22	2.3	4.25	6.1	4.72	(283)
민간	76.5	12.59	37.6	8.81	2.7	4.74	6.1	5.16	(1,145)
가정	73.4	14.42	37.9	11.12	5.8	4.61	4.4	4.72	(1,473)
직장	69.8	12.37	43.5	7.84	1.7	4.63	3.8	4.79	(271)
$\chi^2(df)$	12.6(5)*	44.2***	21.9(5)***	12.3***	23.7(5)***	1.7	10.5(5)	1.2	
소재지									
대도시	70.8	13.87	37.9	10.13	0.7	5.71	2.6	4.22	(1,493)
중소도시	76.8	12.98	36.2	8.82	6.2	4.80	8.1	5.09	(1,630)
읍면	75.6	10.63	36.5	8.07	4.0	3.77	5.7	4.95	(940)
$\chi^2(df)$	15.9(2)***	70.9***	1.1(2)	9.3***	69.8(2)***	14.0***	46.5(2)***	3.2*	
규모									
20명 이하	73.3	14.41	37.7	11.11	5.8	4.59	4.4	4.71	(1,513)
21~39명	75.1	12.86	37.6	8.66	3.8	5.04	4.2	5.25	(625)
40~79명	74.2	12.36	38.4	8.78	3.0	4.53	6.4	4.25	(1,011)
80명 이상	74.6	11.66	35.0	7.87	1.9	4.52	6.1	5.37	(914)
$\chi^2(df)$	0.8(3)	39.6**	3.3(3)	16.5***	30.1(3)***	0.8	7.4(3)	4.4**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중간경력 교사에게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내역을 수령하는지 조사한 결과, 매월 받음 64.4%로 받지 못하거나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35.6%로 나타났다. 전혀 받지 못하는 비율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약 24~25%로 나타났다.

〈표 IV-5-7〉 보육교사 월 급여 내역 수령 여부

단위: %(명)

구분	매월 받음	받아본 적 있음	전혀 받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64.4	15.9	19.8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89.7	8.9	1.3	100.0(511)	331.6(10)***

(표 IV-5-7 계속)

구분	매월 받음	받아본 적 있음	전혀 받지 않음	계(수)	X ² (df)
사회복지법인	80.1	16.9	3.1	100.0(380)	
법인·단체	75.5	18.3	6.2	100.0(283)	
민간	54.7	19.7	25.6	100.0(1,145)	
가정	63.0	12.9	24.1	100.0(1,473)	
직장	89.5	9.1	1.4	100.0(271)	
소재지					
대도시	70.2	13.9	15.9	100.0(1,493)	
중소도시	60.0	16.8	23.2	100.0(1,630)	42.9(4)***
읍면	61.4	17.9	20.7	100.0(940)	
규모					
20명 이하	63.2	12.8	23.9	100.0(1,513)	
21~39명	61.0	17.4	21.7	100.0(625)	32.8(6)***
40~79명	66.2	16.9	16.8	100.0(1,011)	
80명 이상	65.4	17.3	17.2	100.0(914)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중간경력교사의 월 희망급여는 약 225만원으로 응답되었다. 2012년 184만원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희망급여 금액이다. 기관유형별로 희망급여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표 IV-5-8〉 보육교사의 월 희망 급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단위: 원(명)
전체	2,252,007.6	506,418.2	1,160,000	5,000,000	(4,034)
시설유형					
국공립	2,834,836.0	469,822.9	1,700,000	5,000,000	(509)
사회복지법인	2,716,120.6	441,315.8	1,500,000	4,000,000	(379)
법인·단체	2,661,990.9	468,008.9	1,500,000	4,000,000	(282)
민간	2,167,073.7	425,374.2	1,200,000	4,000,000	(1,133)
가정	1,971,779.1	312,834.5	1,160,000	4,000,000	(1,461)
직장	2,793,932.4	480,833.9	1,500,000	4,000,000	(270)
F	453.4***				
소재지					
대도시	2,280,077.0	515,835.6	1,200,000	4,000,000	(1,487)
중소도시	2,159,011.9	470,815.6	1,200,000	4,500,000	(1,615)
읍·면	2,367,592.2	521,075.8	1,160,000	5,000,000	(932)
F	52.7***				
규모					
20명 이하	1,975,549.3	316,367.2	1,160,000	4,000,000	(1,501)

(표 IV-5-8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21~39명	2,123,333.1	433,497.9	1,300,000	4,000,000	(623)
40~79명	2,367,683.1	526,390.8	1,200,000	4,500,000	(1,004)
80명 이상	2,473,626.4	526,734.5	1,200,000	5,000,000	(906)
F	283.3***				
2012년 조사	1,844,100.0	426,900.0	-	-	(3,910)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다. 시간외 수당

중간경력 보육교사에게 초과근무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초과근무가 있다고 응답한 중간경력 보육교사는 전체 73.1%로, 이 중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42.1%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교사들의 지급 사례를 보면, 초과근무시간만큼 지급(53.6%)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상한선이 있음 24.7%, 모든 교사에게 시간에 관계없이 일괄지급 18.9%로 나타났다.

〈표 IV-5-9〉 초과근무시 시간외 수당 지불 여부 및 방식

구분	초과근무		초과근무 수당 지급 비율 (수)	초과근무 시 수당 지불					단위: %(명)	
	있다	없다		초과근무 시간만큼 있음	상한선 있음	일괄 지급	기타	계(수)		
	(수)	(수)								
전체	73.1	26.9	(4,063)	42.1	(2,925)	53.6	24.7	18.9	2.8 100.0(1,310)	
시설유형										
국공립	94.3	5.7	(511)	73.0	(479)	51.3	29.4	14.7	4.6 100.0(338)	
사회복지법인	81.5	18.5	(380)	42.3	(306)	34.7	19.4	43.1	2.8 100.0(124)	
법인·단체	81.8	18.2	(283)	49.7	(227)	49.0	22.5	27.7	0.8 100.0(102)	
민간	74.9	25.1	(1,145)	31.7	(835)	51.5	22.0	24.1	2.4 100.0(252)	
가정	57.3	42.7	(1,473)	34.0	(830)	74.6	14.5	9.4	1.6 100.0(277)	
직장	94.3	5.7	(271)	90.6	(248)	42.3	45.8	8.9	3.0 100.0(217)	
$\chi^2(df)$	769.3(10)***			382.1(5)***			130.7(15)***			
소재지										
대도시	73.9	26.1	(1,493)	44.4	(1,088)	58.8	21.1	17.0	3.2 100.0(537)	
중소도시	70.2	29.8	(1,630)	39.6	(1,111)	51.3	30.0	16.1	2.6 100.0(456)	
읍·면	76.7	23.3	(940)	42.1	(726)	47.5	23.2	26.8	2.5 100.0(317)	
$\chi^2(df)$	18.8(4)***			5.4(2)			25.9(6)***			
규모										
20명 이하	57.5	42.5	(1,513)	34.3	(858)	73.5	15.1	9.8	1.6 100.0(294)	
21~39명	71.7	28.3	(625)	32.3	(455)	53.6	25.0	19.4	2.0 100.0(178)	

(표 IV-5-9 계속)

구분	초과근무		초과근무 수당 비율	(수)	초과근무 시 수당 지불				
	있다	없다			초과근무 시간만큼	상한선 있음	일괄 지급	기타	계(수)
40~79명	79.1	20.9	(1,011)	41.9	(831)	53.2	25.6	18.9	2.3 100.0(430)
80명 이상	83.5	16.5	(914)	50.4	(781)	45.4	28.2	22.6	3.8 100.0(408)
$\chi^2(df)$	309.6(6)***			64.4(3)***		55.3(9)***			
2012년 조사	56.7	42.3	(4,000)	-	39.9	11.6	26.6	21.9	100.0(2,493)
2009년 조사	50.1	49.9	(3,136)	-	7.9	24.0	18.7	2.5	100.0(3,136)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2012년 대비 초과근무를 한다는 비율이 16.4%p 증가한 가운데, 초과근무시간만큼 지급한다는 비율도 13.7%p 상승하였다.

직장/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기관규모가 클수록 초과근무 비율과 수당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기관규모가 클수록 상한선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많으면서도 일괄지급의 방식도 적지 않은 비중을 보인다.

기관에 기초한 어린이집 원장의 응답과 비교하여, 초과근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이집 기준 70.8%, 중간경력 교사 기준 73.1%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초과근무를 한다는 기관/교사를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받는다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64.7%, 교사 42.1%로 20%p 이상 실제 지급률에서 차이가 났다. 이 중 초과근무시간 만큼 61.2%, 53.6%, 상한선있음 19.0%, 24.7%, 일괄지급 18.4%, 18.9%로 기관의 원장 응답에 비해 중간경력 교사 응답에서 초과근무시간만큼 지급 비율은 약 8%p(7.6%p) 적고, 상한선 있음은 약 6%p(5.7%p) 많았다.

2012년 대비 초과근무를 한다는 비율이 16.4%p 증가한 가운데, 초과근무시간만큼 지급한다는 비율도 13.7%p 상승하였다.

직장/국공립어린이집 교사와 기관규모가 클수록 초과근무 비율과 수당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기관규모가 클수록 초과근무시간만큼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많으면서도 상한선/일괄지급의 방식도 적지 않은 비중을 보인다.

라. 근로환경

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편의공간 및 시설을 조사한 결과, 사물함과 성인용 화장실의 구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실 45.0%, 개인책상 34.8%, 휴게실 11.2%, 식사공간 9.7%의 순으로 구비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10〉 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편의 공간 및 시설 확보 여부

구분	교사실	식사 공간	개인 책상	사물함	성인용 화장실	휴게실	기타	없음	단위: %(명)
									(수)
전체	45.0	9.7	34.8	72.0	70.1	11.2	0.8	7.6	(4,063)
시설유형									
국공립	69.6	4.8	45.7	83.3	85.2	12.5	0.5	1.1	(511)
사회복지법인	68.2	8.2	44.1	81.7	82.6	12.9	0.3	1.1	(380)
법인·단체	61.9	8.6	47.1	81.0	80.7	13.7	2.9	2.8	(283)
민간	50.3	7.1	47.6	75.0	75.1	12.9	0.7	4.6	(1,145)
가정	16.5	15.3	7.2	59.3	50.7	5.4	1.2	17.4	(1,473)
직장	85.8	15.1	40.2	80.4	90.5	26.1	0.2	0.4	(271)
소재지									
대도시	46.2	8.6	33.7	74.6	70.1	11.6	0.6	6.8	(1,493)
중소도시	40.7	10.7	32.7	69.0	66.8	9.9	0.6	9.6	(1,630)
읍·면	50.8	9.9	40.8	72.7	76.2	12.6	1.6	5.5	(940)
규모									
20명 이하	16.7	15.2	7.3	59.4	50.8	5.5	1.2	17.3	(1,513)
21~39명	22.7	7.6	28.5	62.0	58.6	6.8	0.7	10.6	(625)
40~79명	56.9	6.1	45.7	80.3	78.3	12.4	0.6	3.3	(1,011)
80명 이상	71.3	8.1	54.7	81.7	86.4	17.2	0.7	0.7	(914)
2012년 조사	28.0	16.9	27.7	64.5	71.2	-	2.6	-	(4,000)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2012년과 항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교사실과 개인책상, 사물함의 구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마. 휴가/휴직

2014년 한 해 동안 사용한 휴가가 모두 며칠인지, 연월차휴가와 기타휴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연월차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1.6%로 연 평균 9.1일을 사용했으며, 기타 휴가를 사용했다는 비율은 10.4%로 연 평균 0.5일로 나타났다.

〈표 IV-5-11〉 휴가 사용 가능 비율 및 실제 사용 휴가 일수(2014년 기준)

구분	연월차 휴가(여름, 겨울 정기휴가 포함)				기타 휴가(생리휴가 등)				단위: %, 일(명)
	사용 가능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사용 가능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91.6	9.08	5.34	(4,063)	10.4	0.49	2.84	(4,063)	

(표 IV-5-11 계속)

구분	연월차 휴가(여름, 겨울 정기휴가 포함)				기타 휴가(생리휴가 등)			
	사용 가능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사용 가능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시설유형								
국공립	98.6	11.72	5.23	(511)	14.8	0.85	5.30	(511)
사회복지법인	95.7	10.72	6.50	(380)	9.1	0.30	1.22	(380)
법인·단체	97.3	10.37	4.74	(283)	15.1	0.82	2.98	(283)
민간	91.5	8.84	4.89	(1,145)	10.2	0.47	2.47	(1,145)
가정	86.9	7.55	5.27	(1,473)	9.1	0.37	2.24	(1,473)
직장	96.4	12.29	4.80	(271)	8.6	0.56	2.87	(271)
$\chi^2(df)/F$	74.7(5)***	61.3***			14.6(5)*	2.3*		
소재지								
대도시	93.0	9.24	4.80	(1,493)	10.2	0.54	3.08	(1,493)
중소도시	89.9	8.87	5.67	(1,630)	10.2	0.43	3.02	(1,630)
읍·면	91.7	9.18	5.67	(940)	11.2	0.49	1.94	(940)
$\chi^2(df)/F$	9.7(2)**	2.0			0.8(2)	0.6		
규모								
20명 이하	86.9	7.57	5.27	(1,513)	9.1	0.37	2.24	(1,513)
21~39명	90.6	8.69	5.23	(625)	10.3	0.31	1.19	(625)
40~79명	93.1	9.58	5.07	(1,011)	11.1	0.58	3.23	(1,011)
80명 이상	94.8	10.18	5.31	(914)	11.1	0.59	3.42	(914)
$\chi^2(df)/F$	54.3(3)***	54.8***			3.0(3)	2.1		
2012년 조사	93.4	9.18	6.15	(3,411)	9.7	7.86	14.15	(3,233)
2009년 조사	-	10.6	8.0	(2,651)	-	-	-	(2,651)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연월차휴가 사용률과 사용일수 모두 국공립/직장/법인 어린이집에서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기관규모가 클수록 많았다. 2012년 대비 연월차 휴가의 사용률/사용일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표 IV-5-12〉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이용 가능 여부

구분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계(수)
	이용가능	이용불가	잘 모름	이용가능	이용불가	잘 모름	
전체	58.0	11.0	31.0	55.4	13.3	31.3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79.7	4.0	16.3	71.6	11.9	16.5	100.0(511)
사회복지법인	74.7	8.7	16.6	59.5	17.7	22.8	100.0(380)
법인·단체	70.6	7.4	22.1	63.9	10.6	25.5	100.0(283)

(표 IV-5-12 계속)

구분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계(수)
	이용가능	이용불가	잘 모름	이용가능	이용불가	잘 모름	
민간	55.6	11.9	32.4	54.8	13.1	32.1	100.0(1,145)
가정	46.1	14.1	39.8	45.4	14.9	39.8	100.0(1,473)
직장	83.9	1.8	14.3	84.4	2.4	13.2	100.0(271)
$\chi^2(df)$	241.5(10)***			171.2(10)***			
소재지							
대도시	59.0	10.2	30.8	56.1	13.2	30.8	100.0(1,493)
중소도시	55.5	12.2	32.3	53.7	14.0	32.3	100.0(1,630)
읍면	60.7	10.5	28.8	57.4	12.3	30.3	100.0(940)
$\chi^2(df)$	8.6(4)			3.8(4)			
규모							
20명 이하	46.3	14.2	39.5	45.6	15.0	39.5	100.0(1,513)
21~39명	50.2	11.1	38.7	48.5	12.6	38.9	100.0(625)
40~79명	63.9	10.2	25.8	58.9	13.4	27.8	100.0(1,011)
80명 이상	67.6	8.7	23.7	64.8	11.9	23.2	100.0(914)
$\chi^2(df)$	151.2(6)***			122.6(6)***			
2012년 조사	64.6	6.8	28.6	58.4	8.9	32.7	100.0(4,000)
2009년 조사	32.6	4.6	11.5	-	-	-	-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이용 가능성을 질문한 결과, 산전후 휴가가 이용가능 58.0%, 육아휴직 55.4%로 나타났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약 31%, 이용불가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정/민간어린이집 교사에게서, 그리고 기관규모가 작을수록 잘 모름/이용불가 응답이 많았다. 2012년 대비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 가능하다는 교사의 응답이 다소 감소하였다.

2012년 대비 직장어린이집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이용가능 비율(2012년 각 79.2%, 70.8%)은 모두 늘어나고,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육아휴직 이용가능 응답만이 증가하였다.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이용 가능 응답(2012년: 산전후휴가 가정-60.4%, 민간-65.8%, 육아휴직 각 56.3%, 59.3%)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바. 근로계약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건과 휴가, 휴직 등의 근로복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복무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안내받음 89.1%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일부안내와 안내받지 않음, 복무규정 없음의 응답이 10.9%로 나타났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전체 안내 비율이 다소 적었다. 2012년 대비 전체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표 IV-5-13〉 어린이집 이용시 복무규정 내용 안내 여부

구분	전체 안내받음	일부만 받음	전체 안내 받지않음	복무 규정 없음	단위: %(명)	
					계(수)	$\chi^2(df)$
전체	89.1	8.2	2.1	0.6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96.7	2.8	0.5	-	100.0(511)	
사회복지법인	94.8	4.3	1.0	-	100.0(380)	
법인·단체	93.0	5.3	1.6	-	100.0(283)	62.8(15)***
민간	87.1	9.9	2.5	0.6	100.0(1,145)	
가정	87.0	9.1	2.7	1.1	100.0(1,473)	
직장	95.9	3.9	0.2	-	100.0(271)	
소재지						
대도시	90.3	7.2	1.8	0.7	100.0(1,493)	
중소도시	87.6	9.2	2.5	0.7	100.0(1,630)	6.7(6)
읍·면	89.4	8.2	2.0	0.4	100.0(940)	
규모						
20명 이하	87.1	9.1	2.7	1.1	100.0(1,513)	
21~39명	87.7	8.8	3.1	0.4	100.0(625)	18.6(9)*
40~79명	90.5	7.3	1.5	0.6	100.0(1,011)	
80명 이상	90.3	7.7	1.6	0.3	100.0(914)	
2012년 조사	84.7	12.5	2.1	0.8	100.0(3,999)	

* $p < .05$,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작성률 97.6%,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기재율 97.1%로 미작성/미기재 비율이 2%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직장/국공립 어린이집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법인·단체/가정/민간어린이집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

〈표 IV-5-14〉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구분	작성 여부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기재 여부				단위: %(명)
	작성함	작성 안함	계(수)	기재	기재안함	모르겠음	계(수)	
전체	97.6	2.4	100.0(4,063)	97.1	2.8	-	100.0(3,962)	

(표 IV-5-14 계속)

구분	작성 여부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기재 여부			
	작성함	작성 안함	계(수)	기재	기재안함	모르겠음	계(수)
시설유형							
국공립	98.3	1.7	100.0(511)	98.2	1.8	-	100.0(501)
사회복지법인	98.5	1.5	100.0(380)	98.0	1.6	0.4	100.0(375)
법인·단체	96.1	3.9	100.0(283)	97.2	2.8	-	100.0(276)
민간	97.6	2.4	100.0(1,145)	96.3	3.7	-	100.0(1,112)
가정	97.2	2.8	100.0(1,473)	97.6	2.4	-	100.0(1,430)
직장	99.0	1.0	100.0(271)	98.2	1.8	-	100.0(268)
$\chi^2(df)$	3.2(5)			28.5(15)*			
소재지							
대도시	98.6	1.4	100.0(1,493)	97.3	2.7	-	100.0(1,471)
중소도시	96.4	3.6	100.0(1,630)	97.0	3.0	-	100.0(1,571)
읍·면	98.0	2.0	100.0(940)	97.0	2.9	0.1	100.0(920)
$\chi^2(df)$	17.8(2)***			5.4(6)			
규모							
20명 이하	97.2	2.8	100.0(1,513)	97.6	2.4	-	100.0(1,468)
21~39명	97.6	2.4	100.0(625)	94.9	5.0	-	100.0(611)
40~79명	97.4	2.6	100.0(1,011)	96.7	3.3	-	100.0(988)
80명 이상	98.1	1.9	100.0(914)	97.8	2.1	0.1	100.0(895)
$\chi^2(df)$	2.7(3)			20.7(9)*			

* $p < .05$,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최저임금법 규정 적용 여부를 중간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적용되고 있음 91.0%, 모름 7.7%, 적용되지 않음 1.4%로 나타났다. 2012년에 비해 '모른다'는 응답이 2.2%p 증가하였고, 적용되지 않음 응답은 유사하다.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10.3%)이 가장 많았다.

〈표 IV-5-15〉 최저임금법 규정 적용 여부

구분	적용되고 있음	적용되지 않음	모르겠음	계(수)	단위: %(명)
					$\chi^2(df)$
전체	91.0	1.4	7.7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92.6	1.3	6.1	100.0(511)	
사회복지법인	94.2	1.3	4.5	100.0(380)	
법인·단체	93.1	0.5	6.4	100.0(283)	37.7(10)***
민간	88.4	1.3	10.3	100.0(1,145)	
가정	93.3	1.6	5.1	100.0(1,473)	
직장	93.2	0.8	6.1	100.0(271)	

(표 IV-5-15 계속)

구분	적용되고 있음	적용되지 않음	모르겠음	계(수)	$\chi^2(df)$
소재지					
대도시	90.8	1.1	8.1	100.0(1,493)	
중소도시	91.4	1.5	7.1	100.0(1,630)	3.0(4)
읍·면	90.4	1.6	8.0	100.0(940)	
규모					
20명 이하	93.3	1.6	5.1	100.0(1,513)	
21~39명	87.9	1.9	10.2	100.0(625)	32.7(6)***
40~79명	90.3	2.0	7.7	100.0(1,011)	
80명 이상	90.6	0.5	8.9	100.0(914)	
2012년 조사	93.2	1.3	5.5	100.0(4,000)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중간경력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77.8%로 다수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IV-5-16〉 보육교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

구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타	해당없음	단위: %(명) (수)
전체	21.2	20.1	15.4	18.7	0.5	77.8	(4,063)
시설유형							
국공립	22.5	22.1	15.1	20.6	0.9	76.6	(511)
사회복지법인	28.7	28.6	21.4	26.0	1.6	70.2	(380)
법인단체	24.9	23.3	16.6	22.2	1.6	73.9	(283)
민간	21.6	20.0	15.8	18.7	0.2	77.3	(1,145)
가정	17.1	16.5	13.2	15.5	0.3	82.0	(1,473)
직장	29.2	28.4	17.9	24.6	2.2	69.6	(271)
소재지							
대도시	21.0	19.9	14.1	17.8	0.4	78.0	(1,493)
중소도시	20.4	19.5	15.7	18.9	0.3	78.7	(1,630)
읍·면	22.8	21.7	17.2	20.2	1.0	75.9	(940)
규모							
20명 이하	17.2	16.5	13.2	15.6	0.3	82.0	(1,513)
21~39명	19.4	18.6	12.9	16.3	0.5	79.7	(625)
40~79명	23.1	21.7	16.8	19.8	0.2	75.9	(1,011)
80명 이상	24.1	22.9	17.3	21.8	1.0	74.6	(914)
2012년 조사	3.8	3.4	2.6	3.4	-	95.6	(4,000)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사. 사직 및 이직 의향

중간경력 보육교사에게 현재 어린이집 사직 또는 이직 계획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사직/이직 계획있음이 13.0%, 고려 중 18.3%로 합하면 약 31.3%가 옮기거나 그만둘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직/이직 계획이 없다는 궁정응답, 즉 근속 의향 비율이 68.7%로 2012년 대비 약 4.2%p 줄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의 사직/이직 계획없음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직장·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사직/이직 의향이 다소 높았다. 또한 80명이상 기관규모가 큰 기관에서 사직/이직 계획없음, 즉 계속근무 의향이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5-17〉 사직 및 이직 계획

단위: %(명)

구분	사직 또는 이직 계획 있음	사직 또는 이직 고려 중	사직 또는 이직 계획 없음	계(수)	$\chi^2(df)$
전체	13.0	18.3	68.7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11.5	14.7	73.8	100.0(511)	
사회복지법인	12.9	13.2	73.9	100.0(380)	
법인·단체	10.7	17.4	71.9	100.0(283)	39.2(20)**
민간	13.0	19.3	67.7	100.0(1,145)	
가정	13.9	18.8	67.3	100.0(1,473)	
직장	12.8	20.8	66.5	100.0(271)	
소재지					
대도시	12.1	18.9	69.0	100.0(1,493)	10.6(8)
중소도시	12.8	18.3	68.9	100.0(1,630)	
읍면	15.0	17.2	67.8	100.0(940)	
규모					
20명 이하	13.8	18.8	67.4	100.0(1,513)	
21~39명	15.0	15.3	69.7	100.0(625)	39.8(12)***
40~79명	11.9	20.6	67.5	100.0(1,011)	
80명 이상	12.3	17.5	70.2	100.0(914)	
2012년 조사	9.1	18.0	72.9	100.0(4,000)	

** $p < .01$,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현재 어린이집 사직 또는 이직을 계획하거나 고려 중이라는 약 30%의 교사에게 그 사직/이직 고려 시기를 질문한 결과, 향후 6개월이내가 약 40%로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인 시기계획 없음이 24.5%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민간·가정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의 향후 6개월이내에 곧 그만둘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2012년 대비 구체적으로 시기에 대한 계획없음에 대한 응답률은 유사하나, 향후 6개월이내에 곧 사직/이직 계획있음이 있다는 응답률이 약 23%p 증가하였다.

〈표 IV-5-18〉 사직 및 이직을 고려하거나 계획하는 시기

구분	향후 6개월 이내	6개월~ 1년 이내	1년~ 2년 이내	2년~ 5년 이내	5년 이후	구체적 시기 계획 없음	계(수)	$\chi^2(df)$
						단위: %(명)		
전체	39.9	11.5	15.3	8.2	0.6	24.5	100.0(1,258)	
시설유형								
국공립	38.5	10.7	21.5	10.3	1.5	17.4	100.0(135)	
사회복지법인	31.5	15.2	20.6	10.9	1.4	20.4	100.0(98)	
법인·단체	22.8	16.3	15.5	13.9	-	31.6	100.0(75)	41.2(25)*
민간	43.1	10.3	12.6	7.9	-	26.0	100.0(382)	
가정	39.8	11.1	16.0	7.1	1.2	24.7	100.0(487)	
직장	26.4	23.9	20.5	7.4	-	21.8	100.0(81)	
2012년 조사	17.1	24.4	22.8	9.6	1.1	25.0	100.0(1,056)	

* $p < .05$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현재 어린이집 사직 또는 이직을 계획하거나 고려중이라는 약 30%의 교사에게 그 사직/이직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항목별로 고른 응답이 나타난 가운데 근무여건이 보다 좋은 곳으로 이동(1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려고(17.8%)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 근무여건 열악(15.0%), 교사 자신의 출산/육아(12.1%), 건강상 이유(10.8%)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IV-5-19〉 사직 또는 이직 이유

구분	건강상 이유	먼 거리	근무여건 열악	제계약 안 됨	근무여건 좋은 곳 이동	출산, 육아	보육교사 일 그만두려고	업무 과중	기 타	계(수)
							단위: %(명)			
전체	10.8	9.9	15.0	1.2	18.7	12.1	17.8	9.8	4.8	100.0(1,258)
시설유형										
국공립	12.3	8.8	7.8	0.6	14.5	18.8	20.2	14.1	2.7	100.0(135)
사회복지법인	7.7	3.3	8.4	0.5	13.7	16.2	31.5	16.3	2.5	100.0(98)
법인·단체	13.3	2.6	5.3	2.1	17.5	15.4	17.7	21.1	5.0	100.0(75)
민간	8.8	11.6	16.4	1.0	17.7	10.9	17.8	10.4	5.5	100.0(382)
가정	14.1	9.3	18.5	1.9	21.8	9.2	14.7	5.7	4.7	100.0(487)

(표 IV-5-19 계속)

구분	전강상 이유	먼 거리	근무여건 열악	재계약 안 됨	근무여건 좋은 곳 이동	출산, 육아	보육교사 일 그만두려고	업무 과중	기타	계(수)
직장	8.1	7.6	2.6	-	24.2	25.3	20.0	7.7	4.5	100.0(81)
$\chi^2(df)$					85.0(40)***					
소재지										
대도시	10.1	9.9	15.3	1.3	22.0	13.9	15.6	8.3	3.7	100.0(473)
중소도시	12.5	8.5	14.9	1.7	19.0	10.8	18.5	9.7	4.5	100.0(505)
읍·면	9.1	12.2	14.7	0.1	12.5	11.0	20.7	12.6	7.2	100.0(280)
$\chi^2(df)$					31.2(16)*					
규모										
20명 이하	14.0	9.4	18.4	2.0	21.8	9.3	14.7	5.8	4.6	100.0(497)
21~39명	13.6	7.9	19.6	2.4	23.3	7.2	12.8	8.8	4.5	100.0(184)
40~79명	10.8	13.1	15.6	0.7	17.8	10.5	17.2	10.3	4.0	100.0(306)
80명 이상	6.4	8.7	9.4	0.2	14.5	18.0	23.5	13.7	5.6	100.0(271)
$\chi^2(df)$					90.4(24)***					
2012년 조사	14.2	16.3	13.8	0.9	26.3	13.7	-	-	14.8	100.0(1,029)

* $p < .05$,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더 나은 어린이집으로 이동 의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어느 기관유형으로 옮기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약 3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민간, 서울형/공공형,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이직 의향도 일정비율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대체로 국공립·법인·직장 어린이집에서 동종 기관유형의 어린이집 중에서 옮기고자 하는 비율이 많았으며, 가정어린이집 재직 교사는 가정어린이집으로, 민간어린이집 재직 교사는 국공립·법인·직장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 기관 현원규모가 클수록 국공립·법인·직장 어린이집으로 옮기고자 하는 교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20명 이하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향이 가장 많았다.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가운데, 현재 재직중인 동일한 기관 유형내에서 이직하려는 의향 또한 발견된다.

〈표 IV-5-20〉 이직하고 싶은 어린이집 유형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서울형 또는 공공형	민간	가정	기타	계(수)	단위: %(명)
							$\chi^2(df)$
전체	39.0	17.7	22.0	16.6	4.7	100.0(468)	
시설유형							
국공립	93.7	-	0.6	4.9	0.9	100.0(40)	
사회복지법인	81.2	7.1	-	6.9	4.8	100.0(20)	
법인·단체	80.1	3.6	2.6	-	13.7	100.0(22)	165.0(20)**
민간	36.4	20.6	31.3	6.0	5.6	100.0(156)	
가정	22.5	19.5	17.2	37.0	3.8	100.0(210)	
직장	96.5	3.5	-	-	-	100.0(20)	
소재지							
대도시	41.2	23.2	18.5	12.8	4.4	100.0(186)	
중소도시	35.4	10.8	25.1	24.6	4.1	100.0(189)	23.0(8)**
읍·면	41.3	18.9	23.8	9.7	6.3	100.0(93)	
규모							
20명 이하	22.5	19.4	17.6	36.8	3.8	100.0(213)	
21~39명	37.5	11.4	34.4	11.1	5.7	100.0(76)	96.0(12)**
40~79명	51.1	18.0	23.4	3.4	4.1	100.0(108)	
80명 이상	51.6	18.6	19.6	4.4	5.9	100.0(71)	

** $p < .01$,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아. 보수교육

2014년 지난 한 해 동안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중간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일반직무, 특별직무, 보육교사 승급교육에 대해 질문하였다.

한편, 중간경력교사를 대상으로 직무 보수교육 이수율을 조사한 결과, 일반직무 보수교육 46.9%, 기타직무 보수교육 17.1%로 나타났으며, 이수자의 평균 교육횟수는 연간 각 1.6회, 7.9회로 기타직무 보수교육의 이수율은 낮은 편이나 연간 평균 교육 횟수는 많았다.

〈표 IV-5-21〉 일반직무 보수교육 현황(2014년)

구분	일반직무			기타 직무			단위: %(명), 회
	이수비율 (수)	평균 횟수 (수)	이수비율 (수)	평균 횟수 (수)			
전체	46.9 (1,209)	1.64 (1,209)	17.1 (427)	7.89 (427)			

(표 IV-5-21 계속)

구분	일반직무		기타 직무		평균 횟수 (수)
	이수비율 (%)	평균 횟수 (수)	이수비율 (%)	평균 횟수 (수)	
시설유형					
국공립	50.8 (186)	2.26 (186)	16.1 (57)	8.96 (57)	
사회복지법인	47.3 (131)	2.23 (131)	10.9 (33)	6.35 (33)	
법인·단체	48.0 (97)	1.85 (97)	13.0 (24)	7.67 (24)	
민간	48.2 (337)	1.46 (337)	18.8 (141)	8.65 (141)	
가정	41.4 (351)	1.40 (351)	17.5 (149)	6.50 (149)	
직장	56.3 (107)	1.83 (107)	11.6 (23)	6.13 (23)	
$\chi^2(df)/F$	47.0(5)***	11.9***	12.0(5)*	2.3*	
소재지					
대도시	49.4 (469)	1.66 (469)	21.1 (194)	8.71 (194)	
중소도시	45.0 (438)	1.57 (438)	15.6 (159)	7.23 (159)	
읍면	45.7 (302)	1.70 (302)	12.6 (74)	6.82 (74)	
$\chi^2(df)/F$	1.5(2)	0.1	3.2(2)	2.9	
규모					
20명 이하	41.5 (364)	1.42 (364)	17.5 (154)	6.56 (154)	
21~39명	42.8 (181)	1.67 (181)	17.9 (70)	6.53 (70)	
40~79명	48.7 (338)	1.86 (338)	18.0 (112)	8.26 (112)	
80명 이상	51.6 (326)	1.62 (326)	15.8 (91)	9.35 (91)	
$\chi^2(df)/F$	50.1(3)***	20.1***	3.9(3)	1.7	

* $p < .05$,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중간경력교사의 2급/1급 승급교육 이수율은 각 9.4%, 32.1%로 나타났으며, 연간 평균 횟수는 약 1회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표 IV-5-22〉 보육교사 1·2급 승급 및 보수교육 현황(2014년)

단위: %(명), 회

구분	2급 승급 보수교육		1급 승급 보수교육		
	이수비율 (%)	평균 횟수 (수)	이수비율 (%)	평균 횟수 (수)	
전체	9.4 (232)	1.07 (232)	32.1 (823)	1.28 (823)	
시설유형					
국공립	3.8 (13)	1.00 (13)	25.1 (93)	1.03 (93)	
사회복지법인	4.1 (14)	1.00 (14)	27.4 (75)	1.12 (75)	
법인·단체	6.9 (13)	1.00 (13)	33.2 (67)	1.03 (67)	
민간	11.0 (83)	1.12 (83)	34.0 (252)	1.38 (252)	
가정	11.6 (102)	1.01 (102)	33.5 (282)	1.17 (282)	
직장	3.6 (7)	1.25 (7)	29.0 (54)	1.76 (54)	
$\chi^2(df)/F$	30.2(5)***	0.3	11.7(5)*	0.9	
소재지					

(표 IV-5-22 계속)

구분	2급 승급 보수교육			1급 승급 보수교육		
	이수비율	(수)	평균 횟수	(수)	이수비율	(수)
대도시	9.2	(75)	1.18	(75)	29.6	(292)
중소도시	10.4	(103)	1.00	(103)	33.2	(315)
읍·면	8.4	(54)	1.02	(54)	34.6	(216)
$\chi^2(df)/F$	1.9(2)		1.6		5.1(2)	
규모						
20명 이하	11.7	(104)	1.01	(104)	33.4	(288)
21~39명	13.2	(44)	1.00	(44)	36.8	(142)
40~79명	7.3	(41)	1.36	(41)	30.3	(203)
80명 이상	7.6	(43)	1.01	(43)	30.4	(190)
$\chi^2(df)/F$	17.6(3)***		2.9*		6.3(3)	

* $p < .05$,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에게 보수교육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집합교육이 가장 많은 가운데 온·오프라인 교육의 병행, 온라인교육의 이수율도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IV-5-23〉 보수교육 형태

구분	집합교육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함께	인터넷 등 온라인 교육	단위: %(명)	
				(수)	(수)
전체	49.4	32.0	38.5		(2,602)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중간경력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시 대체인력 지원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지원된 적 없음(23.2%)과 항상 지원됨(24.9%)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그리고 대도시 지역일수록 대체인력이 지원된 적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V-5-24〉 보수교육 시 대체인력 지원 여부

구분	지원된 적 없음	지원된 적 있음	항상 지원됨	온라인 지원 필요 없음	받아	기타	단위: %(명)	
							계(수)	$\chi^2(df)$
전체	23.2	16.0	24.9	24.1	11.8	100.0(2,602)		
시설유형								
국공립	21.4	21.1	19.2	30.9	7.4	100.0(363)	63.9(20)***	
사회복지법인	14.5	18.3	22.5	32.3	12.4	100.0(278)		

(표 IV-5-24 계속)

구분	지원된 적 없음	지원된 적 있음	항상 지원됨	온라인 지원 필요 없음	교育만 받아	기타	계(수)	$\chi^2(df)$
법인·단체	21.1	14.1	21.1	29.2	14.5	100.0(193)		
민간	23.9	16.3	27.1	21.0	11.6	100.0(726)		
가정	24.2	12.8	26.8	22.7	13.4	100.0(847)		
직장	27.7	17.2	10.9	32.1	12.1	100.0(195)		
소재지								
대도시	27.4	16.7	21.7	23.0	11.3	100.0(982)		
중소도시	22.2	13.3	28.0	24.1	12.5	100.0(976)	36.9(8)***	
읍면	17.4	19.4	25.6	26.3	11.4	100.0(644)		
규모								
20명 이하	24.2	13.1	26.7	22.6	13.4	100.0(877)		
21~39명	23.0	10.0	28.8	23.6	14.6	100.0(407)	40.7(12)***	
40~79명	20.6	17.7	26.6	24.7	10.4	100.0(687)		
80명 이상	24.1	19.6	20.9	25.2	10.3	100.0(631)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현행 보수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66.7%로 4점 평균 2.7점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 등 하위특성에 의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5-25〉 보수교육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단위: %(명), 점	
						4점 평균	
전체	5.4	28.0	56.5	10.2	100.0(2,602)	2.72	
시설유형							
국공립	2.1	27.3	59.4	11.2	100.0(363)	2.80	
사회복지법인	8.7	29.3	54.0	8.0	100.0(278)	2.61	
법인·단체	6.4	27.0	54.8	11.7	100.0(193)	2.72	
민간	5.4	29.0	56.3	9.3	100.0(726)	2.69	
가정	5.5	26.6	56.3	11.7	100.0(847)	2.74	
직장	6.6	26.6	56.5	10.3	100.0(195)	2.71	
$\chi^2(df)/F$	15.7(15)					2.0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현행 보수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자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온·오프라인 등 '교육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과정(커리큘럼, 강사, 교재 등)', '보수교육 기회가 주어지는 것'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현행 보수교육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자에게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

은, '교육운영(기관, 시간대, 신청 및 이수 관리 등)'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과정(커리큘럼, 강사, 교재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5-26〉 보수교육 만족/불만족 요인

단위: %(명)

구분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운영	교육비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기타	계(수)
만족 요소	24.8	38.7	11.3	2.3	22.4	0.4	100.0(1,736)
불만족 요소	19.0	12.4	53.9	3.3	10.0	1.3	100.0(866)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자. 보육교사 인적사항

2015년 보육교사 조사에 참여한 4,063명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평균연령 38.4세로 20대부터 40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기혼자 72.5%, 유자녀 92.5%로 2012년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보육교사의 미취학자녀의 경우 현재 근무중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이 6.6%로 나타났다.

〈표 IV-5-27〉 보육교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세

구분	2015년	2012년	구분	2015년	2012년
성별			연령		
남	1.7	1.1	29세 이하	14.9	22.4
여	98.3	98.9	30~34세	16.9	21.7
결혼상태			35~39세	20.7	22.3
미혼	25.9	32.6	40~44세	23.8	20.1
기혼	72.5	66.6	45~49세	17.2	9.5
이혼	0.9	0.9	50세 이상	6.5	3.9
사별	0.7	0.4	평균	38.40	36.10
자녀 수(미혼 제외)			최대	67	20
없음	7.5	10.4	최소	20	71
1명	19.0	20.3	미취학자녀 보육형태		
2명	61.5	58.3	인근 어린이집 다님	8.5	17.8
3명 이상	11.9	11.1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다님	6.6	11.6
계(수)	100.0(4,063)	100.0(4,000)	조부모나 친인척 돌봄	1.7	3.0
			기타	1.8	2.8
			미취학자녀 없음	81.4	64.7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남성 교사의 경우 근소한 차이이나 사회복지법인과 직장어린이집에서 좀 더 많았으며, 직장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연령이 31.6세로 가장 젊다. 가정/민간/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5-28〉 보육교사의 성별 및 연령

구분	성별			연령				단위: %(명), 세
	여자	남자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98.3	1.7	100.0(4,063)	38.40	7.63	20	67	(4,063)
시설유형								
국공립	98.2	1.8	100.0(511)	34.63	6.91	21	57	(511)
사회복지법인	97.3	2.7	100.0(380)	37.03	6.85	22	56	(380)
법인·단체	98.5	1.5	100.0(283)	35.48	6.93	20	54	(283)
민간	98.4	1.6	100.0(1,145)	38.44	7.73	20	60	(1,145)
가정	98.7	1.3	100.0(1,473)	41.12	6.84	22	67	(1,473)
직장	97.4	2.6	100.0(271)	31.62	5.75	22	56	(271)
$\chi^2(df)/F$	3.8(5)			89.9***				
소재지								
대도시	98.9	1.1	100.0(1,493)	38.28	7.89	21	64	(1,493)
중소도시	97.1	2.9	100.0(1,630)	38.67	7.58	20	67	(1,630)
읍면	99.5	0.5	100.0(940)	38.13	7.23	21	59	(940)
$\chi^2(df)/F$	24.6(2)***			1.7				
규모								
20명 이하	98.7	1.3	100.0(1,513)	41.09	6.87	22	67	(1,513)
21~39명	98.3	1.7	100.0(625)	38.60	7.48	21	60	(625)
40~79명	98.6	1.4	100.0(1,011)	37.53	7.87	20	58	(1,011)
80명 이상	97.9	2.1	100.0(914)	36.51	7.49	20	59	(914)
$\chi^2(df)/F$	2.9(3)			87.7***				
2012년 조사	98.9	1.1	100.0(4,000)	36.10	7.44	20	71	(3,998)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중간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최종 학력을 조사한 결과, 고졸 15.4%, 2-3년제 대재/대졸 49.6%, 4년제 대재/대졸 30.3%, 대학원 이상 4.7%로 나타나, 2012년 대비 고졸 학력의 교사 비율이 비슷하고, 2-3년제 대재/대졸 비율은 다소 줄고, 4년제 대재/대졸 비율은 (28.9%→30.3%) 다소 늘어났다.

가정/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고졸 학력 교사 비율이 25.3%, 14.8%로 높고, 4년제 대졸 이상의 교사 비율이 직장어린이집에서 가장 높다.

〈표 IV-5-29〉 보육교사 최종학력

단위: %(명)

구분	고졸	2·3년제 대학 재학	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재학	대학원 졸업	계(수)	$\chi^2(df)$
전체	15.4	1.4	48.2	5.3	25.0	2.3	2.4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3.5	0.2	40.7	8.0	34.8	5.1	7.8	100.0(511)	
사회복지법인	3.5	3.5	49.1	4.2	32.6	3.4	3.7	100.0(380)	
법인·단체	7.8	-	48.1	5.3	29.8	3.5	5.5	100.0(283)	554.1(30) ***
민간	14.8	1.4	53.8	5.1	21.9	1.7	1.3	100.0(1,145)	
가정	25.3	1.7	45.6	4.2	21.8	0.2	1.2	100.0(1,473)	
직장	1.9	0.5	19.4	11.5	45.2	15.4	6.2	100.0(271)	
소재지									
대도시	15.0	0.9	45.1	5.5	27.3	2.9	3.4	100.0(1,493)	44.0(12) ***
중소도시	15.7	1.8	48.2	5.7	24.2	2.4	2.0	100.0(1,630)	
읍·면	15.3	1.7	53.9	4.3	22.5	0.8	1.4	100.0(940)	
규모									
20명 이하	25.1	1.7	45.7	4.2	22.0	0.2	1.2	100.0(1,513)	
21~39명	16.2	1.7	50.0	4.4	25.1	1.0	1.7	100.0(625)	228.4(18) ***
40~79명	12.4	2.1	48.9	6.3	23.6	3.0	3.7	100.0(1,011)	
80명 이상	8.3	0.6	49.2	6.0	28.8	4.2	2.9	100.0(914)	
2012년 조사	17.6	2.5	47.6	2.4	26.5	1.7	1.9	100.0(4,000)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각 원의 중간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최종학력에서의 전공을 조사한 결과, 유아교육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특수교육과 합칠 경우 교육관련 전공 42.1%로 나타났다. 보육관련 전공(아동, 사회복지, 보육, 가정 등)의 비율은 40.0%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타 비 관련학과 전공의 비율이 16.3%로 2012년 대비 유아교육과 보육/사회복지 전공한 교사의 비율은 줄고, 아동학과 기타 비 관련학과를 전공한 교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표 IV-5-30〉 보육교사 최종학력 전공

단위: %(명)

구분	아동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육	가정	간호	영양	교육	특수교육	기타	계(수)
전체	16.4	38.4	12.9	7.1	3.6	0.5	1.2	3.1	0.6	16.3	100.0(3,432)
시설유형											
국공립	20.0	50.0	7.4	9.6	2.8	-	0.8	3.3	1.6	4.5	100.0(490)
사회복지법인	12.6	53.2	13.9	5.6	3.0	-	0.8	2.4	1.2	7.3	100.0(365)
법인·단체	18.8	49.3	14.4	5.3	2.6	-	0.3	3.4	1.5	4.4	100.0(258)
민간	15.3	38.3	13.3	7.5	3.6	0.4	1.2	2.9	0.3	17.3	100.0(963)

(표 IV-5-30 계속)

구분	아동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육	가정	간호	영양	교육	특수교육	기타	계(수)
가정	14.6	26.4	15.5	5.3	4.9	1.1	1.9	3.9	0.4	25.9	100.0(1,093)
직장	32.7	48.6	5.3	9.7	0.6	-	0.3	-	-	2.9	100.0(263)
$\chi^2(df)$						316.7(45)***					
소재지											
대도시	16.9	39.0	12.1	8.8	2.9	0.2	1.2	3.3	0.3	15.2	100.0(1,271)
중소도시	16.9	35.3	13.0	6.8	4.6	0.7	1.0	3.6	0.7	17.5	100.0(1,354)
읍면	14.5	43.1	14.0	4.5	3.4	0.5	1.7	1.7	0.8	15.9	100.0(807)
$\chi^2(df)$						45.6(18)***					
규모											
20명 이하	14.6	26.7	15.6	5.3	4.9	1.1	1.9	3.9	0.4	25.6	100.0(1,131)
21-39명	13.6	35.4	14.1	6.5	3.6	0.9	1.6	3.0	0.4	21.0	100.0(536)
40-79명	16.7	40.2	14.3	7.9	3.2	0.2	0.8	2.0	0.6	14.2	100.0(906)
80명 이상	18.5	47.0	9.5	8.1	3.0	-	0.9	3.1	0.7	9.0	100.0(859)
$\chi^2(df)$						224.5(27)***					
2012년 조사	12.3	41.4	13.9	8.3	3.2	0.5	1.4	3.5	0.5	14.8	100.0(4,000)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교사가 취득한 자격증을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1급 보육교사 자격이 7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원장(42.0%), 2급 보육교사(36.8%), 유치원교사(26.9%), 사회복지사(19.3%), 보육교사 3급(7.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자격증 소지 및 중복소지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특히 원장/보육교사 1급을 소지한 교사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3급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율도 함께 상승하였다. 한편, 유치원교사 자격 소지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IV-5-31〉 보육교사 자격증

구분	원장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보육교사	간호사	유치원 교사	사회 복지사	특수 교사	초등 교사	기타	단위: %(명)
											(수)
전체	42.0	76.7	36.8	7.7	1.0	26.9	19.3	1.3	0.1	5.9	(4,062)
시설유형											
국공립	58.0	92.6	21.9	2.1	0.9	45.1	20.1	3.1	0.3	7.0	(511)
사회복지법인	54.2	90.8	22.6	2.0	1.5	45.7	27.2	2.0	-	5.5	(380)
법인단체	49.2	88.5	31.2	4.6	0.4	38.4	27.8	3.1	-	5.6	(283)
민간	41.7	78.9	35.1	6.9	0.7	26.6	19.0	1.3	-	5.3	(1,145)
가정	32.6	62.1	48.9	13.1	1.5	14.0	16.5	0.6	0.2	6.5	(1,472)
직장	49.1	87.9	30.0	1.5	1.4	41.1	22.7	0.4	-	5.4	(271)
소재지											
대도시	46.5	76.2	36.3	7.6	1.1	27.3	19.2	1.3	-	5.4	(1,493)
중소도시	38.6	74.5	39.3	7.5	1.1	23.5	19.6	1.2	0.2	7.0	(1,629)
읍면	39.7	81.5	33.1	8.0	0.7	32.3	18.9	1.4	-	4.8	(940)

(표 IV-5-31 계속)

구분	원장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보육교사	간호사	유치원 교사	사회 복지사	특수 교사	초등 교사	기타	(수)
규모											
20명 이하	32.9	62.3	48.7	13.0	1.4	14.3	16.6	0.6	0.2	6.5	(1,512)
21~39명	38.4	76.5	39.4	8.3	1.0	27.1	17.7	1.6	0.2	6.2	(625)
40~79명	45.2	82.5	35.0	6.3	1.2	29.7	22.4	1.6	-	6.6	(1,011)
80명 이상	49.4	85.7	26.1	3.5	0.5	36.2	20.1	1.6	-	4.7	(914)
2012년 조사	29.6	69.8	37.3	7.5	0.9	29.3	18.4	0.8	0.3	(4,000)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2) 2012년 조사의 경우, '기타'에 간호사 등을 포함하였음.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최초 교육기관은, 2-3년제 대학 37.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교육원이 33.0%로 많았다. 4년제 대졸 이상 13.7%,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 15.6%로 일정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교사의 보육교사교육원 및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을 통한 최초 자격취득이 가장 많았으며, 직장어린이집 교사의 4년제 대졸이상 교육기관에서의 최초 자격이 가장 많았다.

〈표 IV-5-32〉 보육교사 최초 자격 취득 기관

구분	보육교사 교육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계(수)	단위: %(명)
전체	33.0	37.7	13.6	0.1	15.6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15.2	53.5	27.2	0.2	3.8	100.0(511)	
사회복지법인	20.7	58.5	16.4	0.3	4.1	100.0(380)	
법인·단체	21.1	48.1	23.8	-	7.8	100.0(283)	
민간	35.1	40.1	9.7	0.1	15.1	100.0(1,145)	
가정	42.9	23.8	7.7	-	25.6	100.0(1,473)	
직장	7.0	31.8	59.7	-	1.6	100.0(271)	
$\chi^2(df)$			791.8(25)	***			
소재지							
대도시	35.9	37.3	14.4	-	12.4	100.0(1,493)	
중소도시	31.6	35.0	14.4	0.1	18.9	100.0(1,630)	
읍·면	30.2	43.2	11.0	0.1	15.5	100.0(940)	
$\chi^2(df)$			46.2(10)	***			
규모							
20명 이하	42.8	24.0	7.7	-	25.5	100.0(1,513)	
21~39명	34.3	36.9	12.1	-	16.7	100.0(625)	

(표 IV-5-32 계속)

구분	보육교사 교육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계(수)
40~79명	30.4	42.1	15.2	0.2	12.1	100.0(1,011)
80명 이상	25.4	47.4	18.5	-	8.7	100.0(914)
$\chi^2(df)$			357.3(15)***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각 원의 중간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최초 자격 취득시 전공을 조사한 결과, 유아교육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특수교육과 합침 경우 교육관련 전공 41.4%로 나타났다. 보육관련 전공(아동, 사회복지, 보육, 가정 등)의 비율은 51.0%로 유아교육 관련 전공보다 좀 더 많다. 기타 비 관련학과 전공의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표 IV-5-33〉 보육교사 최초 자격 취득시 전공

구분	단위: %(명)										
	아동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육	가정	간호	영양	교육	특수교육	기타	계(수)
전체	21.1	39.2	10.6	15.5	3.8	0.2	0.5	1.8	0.4	6.9	100.0(3,188)
시설유형											
국공립	22.0	46.8	4.8	17.6	2.7	-	0.8	1.5	1.1	2.6	100.0(465)
사회복지법인	14.4	55.9	10.7	10.2	4.9	-	0.4	0.9	0.1	2.5	100.0(334)
법인·단체	23.8	48.3	11.7	10.8	1.2	-	-	1.8	1.1	1.4	100.0(247)
민간	18.6	39.3	11.6	15.8	4.0	0.2	0.5	1.6	0.2	8.3	100.0(886)
가정	22.8	30.1	12.8	16.5	4.3	0.4	0.6	3.1	0.4	9.0	100.0(1,002)
직장	41.7	38.7	3.6	12.6	1.2	0.1	-	-	-	2.1	100.0(254)
$\chi^2(df)$						189.9(45)***					
소재지											
대도시	20.8	39.6	9.7	17.6	3.2	0.1	0.5	2.2	0.2	5.9	100.0(1,196)
중소도시	23.0	35.5	10.8	15.1	4.5	0.2	0.4	2.3	0.4	7.8	100.0(1,248)
읍면	18.1	45.3	12.1	12.3	3.4	0.4	0.7	0.3	0.4	7.0	100.0(744)
$\chi^2(df)$						45.9(18)***					
규모											
20명 이하	22.7	30.2	12.9	16.6	4.3	0.5	0.6	3.0	0.4	8.9	100.0(1,039)
21~39명	17.5	39.6	10.5	16.6	4.3	0.3	0.7	1.2	0.6	8.8	100.0(494)
40~79명	21.7	40.2	11.4	14.5	3.5	0.2	0.5	1.0	0.2	6.8	100.0(849)
80명 이상	20.7	45.0	8.5	15.1	3.4	-	0.4	1.7	0.4	4.7	100.0(806)
$\chi^2(df)$						76.6(27)***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수강방법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교육 : 온·오프라인병행 : 오프라인 교육의 비율이 대략 6:3:1로 나타났다. 기관유형 별로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수치상 가장 많았다.

〈표 IV-5-34〉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 취득시 수강 방법

구분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둘 다 병행	기타	계(수)	단위: %(명)
						$\chi^2(df)$
전체	62.3	10.0	27.2	0.5	100.0(371)	
시설유형						
국공립	69.3	18.9	11.8	-	100.0(11)	
사회복지법인	67.8	16.5	15.6	-	100.0(10)	
법인·단체	60.3	12.8	9.2	17.7	100.0(14)	
민간	67.3	7.0	25.7	-	100.0(104)	45.7(15)***
가정	57.6	11.7	30.3	0.5	100.0(228)	
직장	87.8	12.2	-	-	100.0(4)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중간경력교사의 보육 경력을 조사한 결과, 평균 7년 3개월(현재 어린이집에서의 경력 4년 2개월을 포함)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중간경력교사 조사의 경력 5년 11개월에 비해 늘어난 연한이다.

가정/직장/민간어린이집의 교사 경력이 5년 6개월~7년 6개월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교사 경력은 8년 6개월~10년 2개월로 좀 더 길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특성에 유의하여 교사조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IV-5-35〉 교사의 어린이집 경력

구분	총 어린이집 경력			현재 어린이집 경력			단위: 개월(명)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86.63	53.42	(4,059)	50.03	41.09	(4,054)	
시설유형							
국공립	107.57	52.20	(511)	66.99	46.70	(511)	
사회복지법인	122.49	59.82	(380)	91.73	60.58	(380)	
법인·단체	102.39	53.78	(283)	75.19	49.27	(283)	
민간	89.74	54.16	(1,143)	49.19	37.56	(1,140)	
가정	65.74	43.14	(1,471)	34.20	27.19	(1,469)	
직장	84.08	43.43	(271)	51.12	38.28	(271)	

(표 IV-5-35 계속)

구분	총 어린이집 경력			현재 어린이집 경력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i>F</i>	83.6***			127.4***		
소재지						
대도시	88.27	52.30	(1,492)	50.53	40.62	(1,490)
중소도시	80.90	51.14	(1,628)	46.15	38.77	(1,627)
읍면	93.95	58.20	(939)	56.11	45.09	(937)
<i>F</i>	18.2***			16.8***		
규모						
20명 이하	65.99	43.31	(1,511)	34.29	27.27	(1,509)
21~39명	79.68	48.47	(624)	42.98	33.43	(621)
40~79명	92.57	52.24	(1,011)	53.14	41.53	(1,011)
80명 이상	103.88	57.46	(913)	64.82	47.69	(913)
<i>F</i>	125.3***			138.0***		
2012년 조사	71.24	50.52	(3,991)	40.30	38.10	(3,998)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기관유형을 조사한 결과, 민간어린이집 48.8%, 가정어린이집 27.3%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에서 민간으로 옮긴 비율이 65.6%, 가정에서 가정으로 옮긴 비율이 55.5%로 높다. 국공립에서 국공립으로 38.6%, 직장에어 직장 어린이집으로 기관을 옮긴 경우는 32.7%로 집계되었다.

〈표 IV-5-36〉 (교사가 바로 직전에 다른 시설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 시설 유형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직장	가정	유치원	기타	단위: %(명)	
									계(수)	전체
시설유형										
국공립	38.6	8.0	4.5	31.5	3.3	8.6	5.5	-	100.0(367)	
사회복지법인	6.8	31.4	6.1	39.6	0.3	7.0	7.1	1.8	100.0(225)	
법인·단체	15.4	10.9	17.9	33.2	1.1	11.9	9.0	0.6	100.0(182)	
민간	5.0	2.9	2.4	65.6	0.4	18.9	4.2	0.6	100.0(781)	
가정	2.9	1.9	1.3	35.4	0.4	55.5	1.9	0.6	100.0(1,018)	
직장	17.8	8.1	6.9	22.0	32.7	2.1	8.0	2.4	100.0(193)	
<i>x²(df)</i>	1,776.5(35)***									

*** p < .00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각 어린이집의 중간경력 교사 4,063명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반을 조사한 결과, 2

세, 1세의 영아 반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2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3~5세, 0 세반을 맡고 있는 경우는 약 10% 미만으로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다. 시간연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2.3%로 나타났다.

〈표 IV-5-37〉 조사대상 교사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반 분포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혼합	단위: %(명)				
								장애인 아반	누리 장애아반	시간제 보육	시간 연장	기타
전체	9.4	21.9	28.3	9.6	8.4	9.2	14.5	0.5	1.0	0.1	2.3	0.4 (4,063)
시설유형												
국공립	8.9	22.9	26.8	8.6	10.1	13.9	7.2	2.3	5.0	-	4.6	0.3 (511)
사회복지법인	5.6	24.5	30.4	9.0	9.8	10.8	11.2	1.7	2.2	0.4	4.6	0.9 (380)
법인단체	3.3	16.7	30.9	13.6	10.2	13.8	3.9	2.5	1.6	-	1.1	1.3 (283)
민간	5.0	16.0	27.3	14.8	11.5	13.3	14.2	0.1	0.6	0.2	1.4	0.4 (1,145)
가정	18.2	29.9	30.4	1.2	2.3	0.3	12.7	-	-	-	1.7	0.1 (1,473)
직장	6.1	29.1	21.4	13.5	10.3	9.3	11.4	-	-	0.1	6.2	0.7 (271)
소재지												
대도시	8.3	24.2	30.2	8.5	7.8	7.4	13.3	0.5	1.4	0.1	2.5	0.4 (1,493)
중소도시	11.0	21.5	27.1	9.8	6.6	10.2	15.9	0.4	0.9	0.2	1.4	0.4 (1,630)
읍면	8.6	18.5	26.8	11.3	12.9	10.6	13.9	0.6	0.4	0.1	3.2	0.3 (940)
규모												
20명 이하	18.1	29.9	30.4	1.2	2.3	0.2	18.7	-	-	-	1.8	0.1 (1,513)
21~39명	8.6	22.4	28.9	10.5	4.9	2.9	23.6	0.4	0.6	-	0.9	0.6 (625)
40~79명	5.4	20.1	30.1	12.6	8.9	9.3	14.7	1.1	0.9	0.2	1.6	0.6 (1,011)
80명 이상	4.7	15.8	24.7	14.8	15.0	19.7	6.7	0.5	2.0	0.2	3.6	0.4 (914)
2012년 조사	15.0	21.8	23.0	6.0	3.1	7.1	24.1	-	-	-	-	(3,995)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6. 보육교사 의견 및 만족도

각 어린이집의 중간경력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근로만족도, 보육업무의 어려움,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하였다.

가. 교사 근로만족도

7개 항목에 대한 교사의 근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인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족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적 환경'과 '일에 대한 보람'이 가장 컸으며,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급여수준'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IV-6-1〉 교사의 근로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4점 평균	
						2015년	2012년
일에 대한 보람	1.3	7.8	58.8	32.2	100.0(4,063)	3.22	3.10
급여 수준	11.7	33.1	42.2	13.1	100.0(4,063)	2.57	2.61
근무 환경 전반	2.3	14.8	58.3	24.6	100.0(4,063)	3.05	2.99
-물리적 환경	3.1	18.4	56.5	22.0	100.0(4,063)	2.97	-
-인적 환경	1.2	8.0	54.0	36.8	100.0(4,063)	3.26	-
근로시간	8.1	26.3	48.1	17.5	100.0(4,063)	2.75	-
사회적 인식	26.1	43.6	24.3	6.0	100.0(4,063)	2.10	2.30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나. 교사 어려움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평소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 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우세한 가운데, '업무처리'와 '개인적 문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응답률이 각 29.4%, 26.3%, 2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직원과의 관계(어렵다 8.7%), 프로그램 운영(10.7%)에서의 어려움 응답은 낮았다.

〈표 IV-6-2〉 교사의 어려움

구분	매우 어려움	다소 어려움	별로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계(수)	4점 평균	
						2015년	2012년
영유아와 상호작용	0.6	13.2	59.1	27.1	100.0(4,063)	1.87	2.00
부모와의 관계	2.0	20.5	57.1	20.5	100.0(4,063)	2.04	2.14
프로그램 운영	0.3	10.4	64.7	24.6	100.0(4,063)	1.86	2.02
업무 처리	4.7	24.7	52.8	17.8	100.0(4,063)	2.16	2.22
보육교직원과의 관계	0.7	8.0	56.8	34.5	100.0(4,063)	1.75	1.74
개인적 문제	3.2	23.1	50.2	23.5	100.0(4,063)	2.06	1.99

주: 접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나타냄.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다. 교사의 직무효능감

교사의 직무효능감을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응답이 85% 이상으로 양호한 가운데, '보호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부분에 대한 효능감이 가장 컸으며(긍정 응답 98.2%), 그 다음으로 '한명 한명의 영유아에게 적절한 놀이지도나 도움을 줄 수

있다'(95.7%), '영유아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육환경(인적, 물적)을 준비할 수 있다'(9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6-3〉 교사의 직무효능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단위: %(명), 점	
						4점 평균	2015년
보육 프로그램 변화에의 대응	0.4	9.5	58.4	31.6	100.0(4,063)	3.21	3.04
다양한 연령의 아동 보육	0.7	13.0	53.0	33.3	100.0(4,063)	3.19	3.07
보호자 신뢰를 얻음	0.1	1.8	54.9	43.3	100.0(4,063)	3.41	3.29
적절한 놀이지도 및 도움 제공	0.1	4.2	58.4	37.3	100.0(4,063)	3.33	3.24
적절한 보육환경 준비	0.1	4.2	58.6	37.1	100.0(4,063)	3.33	3.22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라. 교사의 심리적 건강 -스트레스, 피로, 우울 등

교사의 심리적 건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루 일과에 지쳐 신체적으로 힘들다는 '신체적 피로'에 대한 응답이 59.8%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피로'(56.4%), '직무 스트레스'(49.4%)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IV-6-4〉 교사의 심리적 건강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단위: %(명), 점	
						4점 평균	2015년
직무 스트레스	6.5	44.1	40.2	9.2	100.0(4,063)	2.52	
업무 피로도	5.4	38.1	42.2	14.2	100.0(4,063)	2.65	
신체적 피로	5.9	34.3	43.2	16.6	100.0(4,063)	2.71	
우울감	23.2	50.3	23.3	3.2	100.0(4,063)	2.07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마. 보육 정책에 대한 의견 및 평가

가)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다음의 보육정책에 대한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매우 우세하였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동의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이 갖는 지역사회에의 책무성'으로 나타났다.

〈표 IV-6-5〉 교사의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단위: %(명), 점	
						4점	평균
						2015년	2012년
보육은 공공서비스다	2.5	8.5	42.1	46.9	100.0(4,063)	3.33	3.33
지역사회에 책무성 가짐	1.4	7.0	41.0	50.5	100.0(4,063)	3.41	3.42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0.9	3.0	21.6	74.5	100.0(4,063)	3.70	3.59
관할청의 철저한 지도감독	1.8	9.4	40.0	48.8	100.0(4,063)	3.36	3.27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나) 보육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

주어진 다음 4개 측면에서 지난 3년간 보육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긍정응답이 우세하다. '보육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향상도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보육사업의 공공성', '보육교사 전문성의 신장'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IV-6-6〉 교사의 보육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향상되지 않았음	별로 향상되지 않았음	대체로 향상됨	매우 향상됨	계(수)	단위: %(명), 점	
						4점	평균
						2015년	2012년
보육사업의 공공성	3.2	31.4	54.9	10.5	100.0(4,063)	2.73	
보육내용의 충실성	2.5	21.9	63.4	12.2	100.0(4,063)	2.85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안정	11.1	39.3	40.7	8.9	100.0(4,063)	2.47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4.8	31.3	55.0	8.9	100.0(4,063)	2.68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다) 보육정책 만족도

현재 시행중인 보육정책 10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아이행복 카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커으며, 그 다음으로 '3-5세 누리과정', '전자행정시스템', '정보공시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교사의 불만족도가 가장 커으며, 양육수당과 시간제보육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큰 편이다.

〈표 IV-6-7〉 교사의 보육정책 만족도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단위: %(명), 점	
						4점	평균
						2015년	2012년
평가인증	20.3	42.4	30.6	6.7	100.0(4,062)	2.24	2.60

(표 IV-6-7 계속)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2015년	2012년
전자행정시스템	3.8	21.3	57.6	17.3	100.0(4,057)	2.88	-
아이행복카드	2.7	11.8	57.3	28.2	100.0(4,061)	3.11	-
3-5세 누리과정	4.0	20.5	56.4	19.2	100.0(4,041)	2.91	2.82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23.4	28.4	28.7	19.6	100.0(4,060)	2.44	2.58
양육수당	21.5	30.4	34.8	13.3	100.0(4,061)	2.40	-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9.8	32.5	45.9	11.8	100.0(4,051)	2.60	2.68
시간제보육사업	18.6	32.5	36.6	12.3	100.0(4,060)	2.43	-
정보공시제	6.5	24.0	53.0	16.5	100.0(4,056)	2.80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9.9	23.5	46.7	19.8	100.0(4,060)	2.76	-

주: 2012년의 경우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라) 교사 지원에 대한 의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교사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응답이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보육교사로서 직무상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로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배치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IV-6-8〉 교사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4점 평균	
						2015년	2012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8.1	30.5	43.5	17.9	100.0(4,063)	2.71	-
직무상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과 지원	6.4	24.0	46.3	23.3	100.0(4,063)	2.86	-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	17.6	26.9	35.1	20.4	100.0(4,063)	2.58	-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바. 누리과정 관련

누리과정 관련하여 연수와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보육 운영과 업무 등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만 3-5세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반을 담당하는 교사⁷⁾는 전체 4,063명 중 1,125명으로, 이들 담당 교사 중 누리과정 연수를 받은 비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90.1%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사의 약 1/4에 해당한다. 영아교사로 재직하는 경우, 누리과정 연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연수 형태는 직접 면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병행된 형태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직접 면대면 교육이 38.0%로 이루어졌다.

〈표 IV-6-9〉 누리과정 연수 여부 및 형태

단위: %(명)

구분	연수 받은 비율 (%)	연수시 연수 형태			
		직접 교육	직접·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
전체	90.1 (1,125)	38.0	66.2	7.2	(1,020)
시설유형					
국공립	96.4 (170)	36.8	70.2	6.3	(163)
사회복지법인	95.5 (124)	48.6	50.8	6.6	(120)
법인·단체	94.9 (126)	36.7	66.8	6.4	(121)
민간	92.3 (515)	36.4	67.4	7.4	(477)
가정	38.5 (80)	44.3	58.3	14.2	(31)
직장	99.5 (110)	47.8	61.9	5.2	(108)
$\chi^2(df)$	219.6(5)***	-	-	-	-
소재지					
대도시	89.9 (393)	36.4	67.3	8.1	(357)
중소도시	90.8 (414)	39.5	67.0	7.4	(366)
읍·면	92.2 (318)	38.1	63.5	5.7	(297)
$\chi^2(df)$	1.2(2)	-	-	-	-
규모					
20명 이하	40.1 (90)	42.8	60.9	13.3	(40)
21~39명	88.3 (210)	44.9	60.2	3.4	(189)
40~79명	94.2 (393)	35.3	64.1	9.2	(378)
80명 이상	94.4 (432)	37.6	68.8	6.8	(413)
$\chi^2(df)$	215.5(3)***	-	-	-	-
2012년 조사	26.7 (4,000)	53.9	44.2	1.9	(1,556)

*** $p < .001$

주: 연수시 연수 형태는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7) 3세, 2~3세 혼합반, 4세, 5세, 3~5세 혼합반, 누리장애아반 중 하나라도 담당한다고 응답한 교사(1,125명)에 해당

누리과정 연수 시, 대체인력 지원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대체인력 지원이 필요 없었다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항상 지원되었다는 응답은 22.0%였다. 지원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9.2%로 나타났다.

〈표 IV-6-10〉 누리과정 연수 시 대체인력 지원 여부

단위: %(명)

구분	항상 지원됨	지원됨 있음	적 전혀 없음	지원이 필요 없었음	기타	계(수)	$\chi^2(df)$
전체	22.0	15.9	19.2	38.4	4.5	100.0(1,020)	
시설유형							
국공립	23.6	19.9	18.2	34.5	3.8	100.0(163)	
사회복지법인	27.4	18.1	17.0	33.4	4.1	100.0(120)	
법인·단체	20.0	11.9	23.3	36.2	8.7	100.0(121)	20.6(20)
민간	21.1	15.2	20.5	39.2	4.0	100.0(477)	
가정	17.0	10.4	11.6	50.7	10.3	100.0(31)	
직장	27.2	19.2	5.8	40.3	7.5	100.0(108)	
소재지							
대도시	24.9	17.1	14.9	40.0	3.2	100.0(357)	
중소도시	21.0	13.6	22.0	38.5	4.9	100.0(366)	15.3(8)
읍면	19.5	17.7	21.1	36.2	5.5	100.0(297)	
규모							
20명 이하	18.0	9.7	12.9	49.7	9.6	100.0(40)	
21~39명	17.6	12.0	24.3	43.8	2.2	100.0(189)	15.6(12)
40~79명	20.1	17.2	18.7	40.0	4.0	100.0(378)	
80명 이상	24.1	16.4	18.5	35.9	5.0	100.0(413)	
2012년 조사	16.5	28.0	41.0	2.9	11.6	100.0(1,028)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누리과정 도입으로 보육의 질과 교사의 업무량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과 비슷한 가운데, 좋아졌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교사의 업무량은 증가했다는 응답이 87.7%로 우세하여 변화가 없다는 응답 22.2%에 비해 많다.

2012년에 비해 누리과정 도입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2년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6-11〉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 및 보육교사의 업무량 변화

구분	보육서비스의 질 변화			보육교사의 업무량 변화			단위: %(명) 계(수)
	낮아짐	별 차이 없음	높아짐	변화 없음	다소 증가	매우 증가	
전체	0.5	48.3	51.2	22.2	67.4	10.3	100.0(1,020)
시설유형							
국공립	0.8	46.1	53.1	31.9	59.3	8.8	100.0(163)
사회복지법인	-	40.9	59.1	20.9	70.0	9.1	100.0(120)
법인·단체	1.1	48.3	50.7	28.5	62.1	9.3	100.0(121)
민간	0.5	48.8	50.7	19.6	69.5	10.9	100.0(477)
가정	-	74.1	25.9	35.2	52.0	12.9	100.0(31)
직장	-	46.3	53.7	26.8	65.5	7.7	100.0(108)
$\chi^2(df)$		12.3(10)			16.8(10)		
소재지							
대도시	-	41.5	58.5	21.1	69.0	9.9	100.0(357)
중소도시	0.4	51.5	48.1	23.9	65.3	10.8	100.0(366)
읍면	1.3	52.8	45.9	21.3	68.4	10.4	100.0(297)
$\chi^2(df)$		19.1(4)***			1.7(4)		
규모							
20명 이하	-	71.6	28.4	35.1	51.6	13.3	100.0(40)
21~39명	-	50.5	49.5	13.5	75.4	11.1	100.0(189)
40~79명	0.1	45.1	54.7	15.6	70.7	13.7	100.0(378)
80명 이상	0.8	48.6	50.6	27.2	64.5	8.3	100.0(413)
$\chi^2(df)$		9.4(6)			32.1(6)***		
2012년 조사	0.4	71.8	27.8	20.2	68.9	10.9	-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보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달라졌다'는 응답이 90.8%로 높았다. 그러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법인·단체/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이' 달라졌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2012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는 긍정응답이 증가한 결과이다. 3-5세로 누리과정 적용과 지원을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

〈표 IV-6-12〉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변화 여부

구분	달라진 점이 없음	조금 달라짐	많이 달라짐	단위: %(명)	
				계(수)	
전체	9.2	70.1	20.7	100.0(1,020)	
시설유형					
국공립	14.0	68.4	17.6	100.0(163)	
사회복지법인	7.1	74.1	18.8	100.0(120)	

(표 IV-6-12 계속)

구분	달라진 점이 없음	조금 달라짐	많이 달라짐	계(수)
법인·단체	12.1	65.9	22.0	100.0(121)
민간	7.7	69.9	22.3	100.0(477)
가정	20.8	70.1	9.1	100.0(31)
직장	14.0	75.5	10.6	100.0(108)
$\chi^2(df)/F$		18.3(10)*		
소재지				
대도시	7.5	69.3	23.2	100.0(357)
중소도시	11.2	69.2	19.7	100.0(366)
읍면	8.6	72.6	18.8	100.0(297)
$\chi^2(df)/F$		5.4(4)		
규모				
20명 이하	19.4	70.9	9.7	100.0(40)
21~39명	9.0	67.2	23.7	100.0(189)
40~79명	11.7	67.8	20.5	100.0(378)
80명 이상	7.5	72.0	20.5	100.0(413)
$\chi^2(df)/F$		11.1(6)		
2012년 조사	12.0	78.5	9.5	100.0(686)

* $p < .05$

주: 2012년 조사의 경우 5세 누리과정이었음.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7. 시사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및 요구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에서 여성교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음에 따라, 향후 남성교사의 배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둘째, 보육교사의 자격은 현재 재직을 기준으로 3급 교사가 4.6%, 최종학력 고졸 18.5%로 크게 높은 않은 수준이나, 최초 자격취득 기관의 경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 교육원 32.7%(원장 33.0%),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 12.3%(원장 4.0%)로 고졸학력 및 온라인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적지않다. 2012년 대비 고졸학력과 온라인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보육교사 양성 및 자격취득의 진입단계를 관리하고 최초자격 취득 경로에서 고졸학력과 온라인교육 이수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2012년 대비 유아교육 전공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셋째, 교사 처우 관련하여 전체 보육교사의 월 평균급여가 176만 6천원으로, 2012

년 대비 전체 21만 6천원, 기본급 평균 16만 4천원, 수당 평균 12만 9천원이 올랐다. 2004년 96만원, 2009년 138만원, 2012년 155만원, 2015년 184만원으로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장의 급여가 평균 경력 14년 6개월에 255만 4천원으로, 2012년 266만원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정부 및 지자체의 급여성 수당(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증가 등이 반영된 처우 개선의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아, 기관설립유형간 교사 급여 및 근로여건, 전문성 신장 등의 격차가 심증하게 고려되고 완화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전체 교사의 1일 근로시간은 평균 8시간 42분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간경력 교사의 1일 근로시간은 9시간 36분으로 2012년 9시간 28분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교사 근로시간의 구성이 보육 7시간 54분, 보육준비 및 기타업무 약 1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18분으로, 전반적인 근로여건 개선 내에서도 여전히 보육 외 준비 및 기타업무시간의 확보가 어렵고 휴게/점심시간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보조교사 및 비담임 인력의 추가배치를 통해 교사의 총 근로시간 외, 업무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근로시간 내 설계와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초과근무가 있다는 어린이집은 전체 70.8%(2,864개소)로, 이 중 64.7%의 기관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시간만큼 지급 61.2%, 상한선 있음 19.0%, 초과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교사에게 일괄지급 18.4%로 나타나, 2012년에 비해 초과근무 비율은 다소 늘고, 시간외수당 시간을 고려한 지급률은 증가하였다.

연월차 휴가 사용률은 91.6%(2012년 93.4%)로 높으나, 연간 평균 약 9.1일이며, 산전후휴가 가능 58.0%(2012년 64.6%), 육아휴직 가능 55.4%(2012년 58.4%)로 2012년 대비 운용률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사를 위한 시설설비에 있어서는 교사실, 개인책상, 사물함 등에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반적인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의 환경 속에서도, 시설간 격차와 근로여건이 떨어지는 일부 기관 및 교사의 근로환경에 대한 맞춤형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겠다.

다섯째, 보육교사들의 근무만족도가 대체로 높으나,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55.3%)와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분 만족도(30.3%)는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겠다. 특히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만족도에서 2012년(40.4%) 대비 떨어졌다. 근무상 애로사항은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0% 이상, 교사로서의 직무효능감에 대한 긍정 응답이 85% 이상으로 양호한 가운데, 교사의 신체적 피로도가 59.8%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피로(56.4%), 직무 스트레스(49.4%)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75.5%의 어린이집에서 2015년 교사를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전체 교사의 27.4%가 신규교사, 68.9%의 어린이집에서 2014년 한 해 사직한 교사가 있었으며, 전체 교사의 24.1%로 약 1/4 수준에서 사직 및 이직률과 신규채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비담임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38.6%였고, 비담임교사 1일 평균 근로시간은 5시간 17분, 월 급여는 월 93만 6천원으로 나타나, 보조교사, 단시간/시간제 교사 지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여덟째, 보수교육 대상자의 이수율과 어린이집 자체적인 재교육과 컨설팅 실시율이 양호하고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육교사 지원 및 전문성 신장에서 양적 측면의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내용과 질적으로도 양질의 보수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질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V. 보육 영유아 특성과 다양한 보육

1. 보육 영유아 일반현황

가. 일반 현황

2015년 현재, 어린이집의 연령별 운영 비율을 살펴 본 결과는 <표 V-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조사대상 어린이집 4,046개소 중 58.3%가 만0세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1세반은 91.6%, 만2세반 95.3%, 만3세반 54.7%, 만4세반 44.4%, 만5세반은 39.2%가 운영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만2세반 운영 비율이 가장 높고(95.3%), 만1세반도 90% 이상 운영하여 운영 비율이 높으나, 만3세반은 54.7%, 만4세반 44.4%, 만5세반 39.2%로 유아반의 운영 비율은 영아반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단, 시설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경우 3~5세 유아반 운영 비율도 70~90% 정도로 영아반 운영 비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반면, 가정어린이집의 유아반 운영 비율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의 4세반, 5세반 운영 비율은 1% 이하로 나타나며, 이처럼 현저히 낮은 가정어린이집의 유아반 운영비율이 어린이집의 유아반 운영비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요인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규모별로는 40명 미만 정원 규모의 어린이집의 유아반 운영 비율은 영아반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나, 40명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유아반 운영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특히 80명 이상 정원 규모의 어린이집은 영아반, 유아반 운영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2년 조사 결과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즉,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연령반은 2012년(92.8%), 2015년(95.3%) 공히 2세반이며, 1세반, 0세반의 순으로 운영 비율이 높으며, 반대로 유아반 운영 비율은 3,4,5세반의 순으로 점차 낮아져 5세반 운영 비율은 4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 대비 2015년에는 어린이집의 0~2세 영아반 운영비율은 다소 증가하였고, 3~5세 유아반 운영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어린이집의 연령별 현재 재원하고 있는 아동 수는 0세반 평균 4.11명, 1세반 평균 8.32명, 2세반 평균 12.07명, 3세반 평균 15.7명, 4세반 평균 15.06명, 5세반

평균 14.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표 V-1-1〉 연령별 반 운영 비율 및 연령반별 아동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반 운영 비율						평균 원아 수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수)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전체	58.3	91.6	95.3	54.7	44.4	39.2	(4,046)	4.11	8.32	12.07	15.70	15.06	14.40
시설유형													
국공립	30.3	92.6	99.4	90.5	79.4	73.1	(506)	4.79	9.24	14.63	16.05	16.68	16.08
사회복지법인	42.3	84.7	97.9	90.6	81.4	76.0	(377)	4.13	10.28	17.24	18.05	16.26	15.36
법인단체	32.1	87.4	98.9	93.7	83.7	78.2	(283)	3.73	7.75	13.06	14.58	13.84	12.89
민간	46.8	85.3	96.4	76.8	56.5	49.0	(1,134)	4.48	9.45	15.68	15.51	14.28	13.60
가정	89.7	98.6	91.9	28	0.6	0.5	(1,480)	3.80	6.36	6.08	3.81	3.64	5.45
직장	35.6	90.4	94.4	90.8	78.1	56.2	(266)	5.44	11.82	15.21	15.81	14.44	13.98
소재지													
대도시	57.6	91.8	97.1	56.3	44.8	39.2	(1,464)	4.16	8.93	12.91	16.17	15.43	15.02
중소도시	61.9	92.1	93.3	45.1	35.4	30.2	(1,631)	4.04	7.75	10.86	15.27	15.29	14.53
읍면	53.0	90.3	95.9	68.8	59.4	54.4	(951)	4.15	8.29	12.70	15.55	14.38	13.55
규모													
20명 이하	88.9	98.2	91.4	4.0	1.6	1.3	(1,520)	3.80	6.32	6.06	3.73	3.41	4.08
21~39명	52.8	91.5	96.7	58.4	33.5	22.6	(625)	4.09	7.41	10.04	7.63	4.76	4.89
40~79명	35.4	89.0	98.3	90.9	73.0	62.5	(992)	4.44	8.76	13.45	12.03	10.37	9.67
80명 이상	35.3	83.1	97.7	98.3	93.2	89.3	(909)	5.06	12.50	21.49	23.62	22.06	19.99
2012년 조사	60.7	90.8	92.8	58.1	47.0	39.4	(3,994)	-	-	-	-	-	-

〈표 V-1-2〉는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보육 아동 중 모 취업별/영유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조사대상 어린이집 보육 아동 172,307명의 영·유아별 구성을 보면, 68.9%는 영아이며(미취업모 가정 영아 32.8%+취업모 가정 영아 36.1%), 31.1%가 유아로(미취업모 가정 유아 14.0%+취업모 가정 유아 17.1%) 어린이집 재원아동 중에는 영아의 비율이 유아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 보육 아동의 모 취업에 따른 비율을 살펴 보면, 미취업모 가정 영아는 32.8%, 취업모 가정의 영아는 36.1%, 미취업모 가정의 유아는 14.0%, 취업모 가정의 유아는 17.1%로,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가 전체 보육아동 중 53.2%(취업모 가정 영아 36.1%+취업모 가정 유아 17.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가 전체 보육아동 중 49.9%에 해당하였던 2012년 조사 결과에 비해(이미화 외, 2012: 180) 어린이집의 취업모 가정 영유아 보육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8) 0~2세반의 평균 아동 수는 어린이집 교사 1인 대 아동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나, 이는 2명 이상의 교사가 2개 집단의 아동을 한 반으로 돌보는 경우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시설유형별로 취업모 가정 영아 보육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으로 취업모 가정의 영아가 해당 시설유형 보육 영유아 중 각각 51.6%, 40.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 역시 직장어린이집이 취업모 가정 유아 보육 비율이 높아서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아동 중 36.2%에 해당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에도 보육 아동 중 34.0%가 취업모 가정의 유아였다.

〈표 V-1-2〉 모 취업별 보육 영유아 비율

구분	영아		유아		계(수)
	미취업모 가정	취업모 가정	미취업모 가정	취업모 가정	
전체	32.8	36.1	14.0	17.1	100.0(172,307)
시설유형					
국공립	17.8	26.5	21.5	34.0	100.0(32,258)
사회복지법인	22.0	21.8	30.3	25.9	100.0(26,436)
법인·단체	22.0	20.6	28.0	29.5	100.0(16,162)
민간	31.9	27.3	20.3	20.6	100.0(58,230)
가정	47.4	51.6	0.5	0.5	100.0(23,004)
직장	10.7	40.7	12.4	36.2	100.0(16,217)
소재지					
대도시	30.1	38.9	12.8	18.3	100.0(66,367)
중소도시	36.0	38.3	11.3	14.4	100.0(59,267)
읍면	31.8	27.7	20.8	19.6	100.0(46,673)
규모					
20명 이하	46.8	51.6	0.8	0.8	100.0(23,591)
21~39명	37.0	35.7	13.1	14.2	100.0(16,133)
40~79명	22.6	27.5	22.0	27.9	100.0(47,083)
80명 이상	17.5	19.6	28.3	34.7	100.0(85,500)

나. 특성별 영유아 보육 현황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다문화 가정의 영아 또는 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53.4%로 나타났다. 영유아별로는 다문화 가정 영아가 1명이라도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42.2%, 다문화 가정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2.6%에 해당하였다. 아동을 기준으로는 조사대상 어린이집 보육 영아 중 다문화 가정의 영아는 3.0%, 다문화 가정 유아는 1.9%에 해당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어린이집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50% 이상을 차지하며, 다문화 가정 영아

의 경우 직장어린이집(14.7%), 유아의 경우 가정어린이집(0.5%)의 보육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조사와는 다문화 가족 영유아 보육 시설과 다문화가족 영유아 비율이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V-1-3〉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비율

구분	시설				영유아			단위: %(개소), %(명)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전체	42.2	32.6	53.4	(4,046)	3.0	1.9	(172,307)	
시설유형								
국공립	63.6	67.9	85.4	(506)	3.0	34	(32,258)	
사회복지법인	63.7	68.5	82.2	(377)	3.6	47	(26,436)	
법인·단체	53.4	63.6	74.9	(283)	4.4	49	(16,162)	
민간	48.0	43.9	65.0	(1,134)	2.8	25	(58,230)	
가정	28.1	0.5	28.3	(1,480)	3.1	0.1	(23,004)	
직장	14.7	14.9	20.8	(266)	0.6	0.5	(16,217)	
소재지								
대도시	40.7	32.3	51.5	(1,464)	2.3	1.6	(66,367)	
중소도시	35.6	23.7	45.7	(1,631)	2.7	1.2	(59,267)	
읍면	56.2	48.5	69.4	(951)	4.7	3.8	(46,673)	
규모								
20명 이하	28.3	1.0	28.5	(1,520)	3.2	0.2	(23,591)	
21~39명	45.0	25.8	55.1	(625)	4.1	2.3	(16,133)	
40~79명	48.3	52.7	68.5	(992)	2.7	3.5	(47,083)	
80명 이상	57.3	68.8	77.7	(909)	2.0	3.0	(85,500)	
2012년 조사	42.3	30.5	53.3	(4,000)	2.2	2.1	(175,873)	

4,046개소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 수를 답하도록 한 결과를 토대로 한 장애아 보육 현황은 〈표 V-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조사 시점 현재 장애 영아 또는 장애 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어린이집 8.6%에 해당하며, 장애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2.6%, 장애 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7.4%였다.

아동 수를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전체 보육 아동 172,307명 중 장애 영아는 0.2%, 장애 유아는 1.1%로 나타나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장애영유아는 전체 보육아동 중 1.3%에 해당하였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중 장애영유아 보육 어린이집의 비율이 29.2%

로 가장 높으며, 사회복지법인(13.7%), 법인·단체(13.4%) 순으로 장애영유아 보육시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 영아유아를 구분하였을 때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7.2%로 장애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 유아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27.6%로 장애 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다른 시설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표 V-1-4〉 장애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및 장애 영유아 비율

구분	시설				영유아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전체	26	7.4	8.6	(4,046)	0.2	1.1	(172,307)
시설유형							
국공립	49	27.6	29.2	(506)	0.2	3.0	(32,258)
사회복지법인	7.2	12.7	13.7	(377)	1.1	5.1	(26,436)
법인·단체	21	13.1	13.4	(283)	0.2	1.6	(16,162)
민간	26	5.6	7.2	(1,134)	0.1	0.5	(58,230)
가정	1.2	0.1	1.2	(1,480)	0.1	-	(23,004)
직장	0.8	3.1	3.8	(266)	-	0.1	(16,217)
소재지							
대도시	3.1	9.8	11.2	(1,464)	0.3	1.5	(66,367)
중소도시	1.8	5.3	6.4	(1,631)	0.1	0.8	(59,267)
읍면	3.2	7.0	8.3	(951)	0.3	1.0	(46,673)
규모							
20명 이하	1.1	0.3	1.4	(1,520)	0.1	0.2	(23,591)
21~39명	2.8	4.4	5.5	(625)	0.3	2.0	(16,133)
40~79명	4.5	11.2	12.5	(992)	0.4	2.1	(47,083)
80명 이상	2.9	17.4	18.9	(909)	0.1	0.9	(85,500)
시설특성							
장애인전문	64.5	100.0	100.0	(43)	11.2	71.2	(1,373)
장애인통합	17.0	98.1	100.0	(147)	0.7	7.1	(12,302)
일반	1.4	2.8	4.0	(3,856)	0.1	0.1	(158,632)
2012년 조사	4.5	8.7	11.4	(4,000)	0.2	0.8	(175,873)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가장 높고(11.2%), 읍·면지역(8.3%), 중소도시(6.4%) 순으로 나타났다. 단, 영유아별 차이가 있다. 장애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대도시 3.1%, 읍·면지역 3.2%로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유사하며, 장애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대도시(9.8%), 읍·면지역(7.0%), 중소도시(5.3%)로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원 규모는 클수록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시설특성을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일반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장애영유아 보육시설의 비율과 보육 아동 중 장애영유아의 비율을 살펴 본 결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100%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 어린이집 중에서는 4.0%가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보육 아동 중 장애영유아의 비율은 82.4%(영아 11.2%+유아 71.2%)이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보육 아동 중 7.8%, 그 외 일반어린이집은 보육 아동 중 0.2%가 장애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장애영유아 보육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2012년 조사 결과 대비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11.4%에서 8.6%로 하락하였고, 영유아별로 구분하였을 때도 모두 하락하였다. 그러나, 전체 보육 영유아 중 장애 영유아의 비율은 2012년 1.0%에서 1.3%로 0.3%p 증가하였다.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취약계층 가정의 영아 및 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비율과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취약계층 영아나 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전체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의 26.7%에 해당하며, 취약계층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15.1%, 취약계층 유아 보육 어린이집은 18.6%에 해당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비율은 법인·단체어린이집이 49.6%, 국공립어린이집 46.7%,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43.4%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취약계층 영아 보육 어린이집 비율은 역시 법인·단체어린이집이 25.7%로 가장 높고, 취약계층 유아 보육 어린이집도 법인·단체어린이집이 4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취약계층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동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 대상 어린이집 전체 영유아 중에서 취약계층 영아, 유아 모두 각 0.9%에 해당된다.

2012년 결과와 대비시 2015년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 시설 비율과 취약계층 영유아의 비율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1-5〉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취약계층 영유아 비율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				영유아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전체	15.1	18.6	26.7	(4,046)	0.9	0.9	(172,307)
시설유형							
국공립	19.3	40.8	46.7	(506)	0.8	1.7	(32,258)
사회복지법인	23.6	36.3	43.4	(377)	0.8	1.9	(26,436)
법인·단체	25.7	41.9	49.6	(283)	1.1	2.1	(16,162)
민간	17.4	24.1	32.3	(1,134)	0.8	1.1	(58,230)
가정	10.1	0.2	10.2	(1,480)	1.1	-	(23,004)
직장	2.6	7.2	9.3	(266)	-	0.2	(16,217)
소재지							
대도시	13.2	18.5	25.1	(1,464)	0.7	0.8	(66,367)
중소도시	14.0	15.8	24.7	(1,631)	1.0	0.7	(59,267)
읍면	19.9	23.6	32.4	(951)	0.9	1.2	(46,673)
규모							
20명 이하	10.0	0.3	10.1	(1,520)	1.1	-	(23,591)
21~39명	15.7	13.9	23.7	(625)	0.9	1.1	(16,133)
40~79명	18.1	31.9	38.2	(992)	0.8	1.6	(47,083)
80명 이상	20.1	38.5	44.0	(909)	0.6	1.3	(85,500)
2012년 조사	14.7	19.0	26.5	(4,000)	0.8	1.4	(175,873)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간연장 보육'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이 18.4%, 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이 12.9%이며, 시간연장 영아 유아 중 1명이라도 있는 어린이집이 21.5%에 해당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39.0%)과 직장어린이집이(31.0%) 30% 이상으로 높으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이용 유아의 비율이 0.9%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아동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간연장 보육 이용 영아 수는 전체 조사 대상 아동 중에서 3.0%, 유아 수는 전체 조사 대상 아동의 1.3%에 해당하여,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영아가 유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설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 중 시간연장보육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7.7%: 영아 4.0% + 유아 3.7%), 가정어린이집(5.6%), 국공립어린이집(4.0%) 순으로 보육아동 중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9) '시간연장형 보육'의 개념에는 24시간 보육, 시간연장보육(19:30~24:00), 야간보육(시간연장보육 + 새벽보육), 휴일보육이 포함되어, 시간연장보육은 '시간연장형 보육'의 한 형태임(보건복지부, 2015 보육사업안내) : p.308).

이용 영유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V-1-6〉 시간연장보육 이용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영유아 비율

구분	시설				영유아			단위: %(개소), %(명)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전체	18.4	12.9	21.5	(4,046)	3.0	1.3	(172,307)	
시설유형								
국공립	28.2	35.3	39.0	(506)	1.6	2.4	(32,258)	
사회복지법인	13.2	14.7	17.3	(377)	0.8	2.0	(26,436)	
법인·단체	11.5	14.6	15.3	(283)	0.9	1.7	(16,162)	
민간	15.1	14.1	18.4	(1,134)	1.5	1.4	(58,230)	
가정	18.2	0.9	18.2	(1,480)	5.4	0.2	(23,004)	
직장	28.2	26.7	31.0	(266)	4.0	3.7	(16,217)	
소재지								
대도시	18.8	15.3	22.2	(1,464)	2.5	1.4	(66,367)	
중소도시	20.1	12.1	23.1	(1,631)	4.0	1.4	(59,267)	
읍·면	14.8	10.6	17.7	(951)	2.2	1.1	(46,673)	
규모								
20명 이하	18.2	0.9	18.2	(1,520)	5.4	0.2	(23,591)	
21~39명	16.5	11.3	18.8	(625)	2.3	1.7	(16,133)	
40~79명	18.5	22.2	24.5	(992)	1.8	2.5	(47,083)	
80명 이상	20.0	24.2	25.9	(909)	0.9	1.7	(85,500)	
2012년 조사	21.0	13.5	24.6	(4,000)	2.1	1.7	(175,873)	
취업모								
전체	17.4	12.1	20.5	(4,046)	2.7	1.2	(172,307)	
시설유형								
국공립	27.6	34.2	38.0	(506)	1.5	2.3	(32,258)	
사회복지법인	12.3	13.8	16.3	(377)	0.8	1.9	(26,436)	
법인·단체	9.7	12.7	13.4	(283)	0.8	1.5	(16,162)	
민간	14.1	13.0	17.5	(1,134)	1.4	1.3	(58,230)	
가정	17.4	0.8	17.4	(1,480)	4.8	0.1	(23,004)	
직장	26.7	25.2	29.4	(266)	3.8	3.3	(16,217)	
소재지								
대도시	18.1	14.5	21.3	(1,464)	2.3	1.3	(66,367)	
중소도시	19.0	11.6	22.0	(1,631)	3.5	1.3	(59,267)	
읍·면	13.7	9.3	16.6	(951)	2.0	0.9	(46,673)	
규모								
20명 이하	17.3	0.8	17.3	(1,520)	4.8	0.2	(23,591)	
21~39명	16.0	10.8	18.3	(625)	2.2	1.6	(16,133)	
40~79명	17.6	20.9	23.3	(992)	1.6	2.3	(47,083)	
80명 이상	18.5	22.6	24.4	(909)	0.8	1.5	(85,500)	
2012년 조사	18.3	11.5	21.4	(4,000)	1.7	1.3	(175,873)	

2012년 조사 결과와 대비하면 시간연장보육 이용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은 24.6%에서 21.5%로 감소하였으나, 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유아 비율은 1.7%에서 1.3%로 감소하였으나, 이용 영아의 비율은 2.1%에서 3.0%로 증가하였다.

한편, 취업모 가정 영아가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전체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17.4%이며, 취업모 가정 유아가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12.1%로 나타나며, 아동 기준으로는 전체 아동 중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취업모 가정 영아는 2.7%, 유아는 1.2%로 시간연장보육 이용영아와 유아의 각 90% 이상을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가 차지하고 있다.

다음 <표 V-1-7>에서는 조사대상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야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받는 영아 및 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는 어린이집 비율과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야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받는 아동 비율을 제시하였다.

먼저, 야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0.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별로는 야간 및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이 0.4%, 야간 및 24시간 보육 이용 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이 0.2%이다.

아동을 기준으로 야간 및 24시간 보육 영아는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 중 0.1%에 해당하였고 유아는 대상 아동의 0.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야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비율은 2012년 대비 감소하였고(1.0%→0.4%)과 이용 영유아비율은 2012년 조사 결과와 거의 유사하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취업모만을 선별하여 살펴 보면 야간-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취업모 가정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야간-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0.4%이며, 취업모 가정의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이 0.3%이고 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이 0.2%이며, 취업모 가정의 야간 및 24시간 보육 이용 영아는 전체 조사 대상 아동 중에서 0.1%에 해당한다.

〈표 V-1-7〉 야간·24시간보육 이용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영유아 비율

구분	시설				영유아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전체	0.4	0.2	0.4	(4,046)	0.1	-	(172,307)
시설유형							단위: %(개소), %(명)
국공립	0.8	0.8	0.8	(506)	-	-	(32,258)
사회복지법인	0.7	0.3	0.7	(377)	0.1	-	(26,436)
법인·단체	-	-	-	(283)	-	-	(16,162)
민간	-	0.2	0.2	(1,134)	-	-	(58,230)
가정	0.5	0.1	0.5	(1,480)	0.2	-	(23,004)
직장	0.3	0.3	0.3	(266)	0.1	0.1	(16,217)
소재지							
대도시	0.5	0.4	0.5	(1,464)	0.1	-	(66,367)
중소도시	0.5	0.2	0.5	(1,631)	0.1	-	(59,267)
읍면	-	0.1	0.1	(951)	-	-	(46,673)
규모							
20명 이하	0.5	0.1	0.5	(1,520)	0.1	-	(23,591)
21~39명	-	-	-	(625)	-	-	(16,133)
40~79명	0.3	0.3	0.4	(992)	-	-	(47,083)
80명 이상	0.5	0.6	0.6	(909)	-	-	(85,500)
2012년 조사	0.8	0.7	1.0	(4,000)	0.1	0.1	(175,873)
취업모							
전체	0.3	0.2	0.4	(4,046)	0.1	-	(172,307)
시설유형							
국공립	0.5	0.5	0.5	(506)	-	-	(32,258)
사회복지법인	0.7	0.3	0.7	(377)	0.1	-	(26,436)
법인·단체	-	-	-	(283)	-	-	(16,162)
민간	-	0.2	0.2	(1,134)	-	-	(58,230)
가정	0.5	0.1	0.5	(1,480)	0.1	-	(23,004)
직장	0.3	0.3	0.3	(266)	0.1	0.1	(16,217)
소재지							
대도시	0.4	0.3	0.5	(1,464)	0.1	-	(66,367)
중소도시	0.5	0.2	0.5	(1,631)	0.1	-	(59,267)
읍면	-	0.1	0.1	(951)	0.0	-	(46,673)
규모							
20명 이하	0.5	0.1	0.5	(1,520)	0.1	-	(23,591)
21~39명	-	-	-	(625)	-	-	(16,133)
40~79명	0.3	0.3	0.4	(992)	-	-	(47,083)
80명 이상	0.3	0.5	0.5	(909)	-	-	(85,500)
2012년 조사	0.4	0.3	0.5	(4,000)	0.1	-	(175,873)

조사대상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휴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 또는 유아를 1

명이라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비율과 조사대상 어린이집 보육 아동 중 휴일 보육 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을 살펴 보았다.

먼저, 휴일 보육 서비스 이용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전체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에서 3.2%에 해당하였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휴일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5.2%)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고, 국공립어린이집 4.3%, 민간어린이집 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별로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수를 기준으로 보면, 휴일 보육 이용 영아와 유아는 조사 대상 아동의 각각 0.4%, 0.2%로 총 0.6%에 해당한다. 시설유형별로는 영아와 유아 모두, 직장어린이집의 휴일보육 이용아 비율이 각 0.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시 휴일보육 어린이집의 비율과(2.5%→3.2%) 이용 영유아 비율(0.4%→0.6%)이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취업모 가정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취업모 가정 영유아가 이용하는 휴일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비율은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2.7%이며, 휴일보육 서비스 이용 취업모 가정 영유아의 비율이 0.5%로 전체 휴일보육서비스 이용 영유아 중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V-1-8〉 휴일보육 이용 영유아 재원 시설 및 영유아 비율

구분	시설				영유아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전체	29	1.9	3.2	(4,046)	0.4	0.2	(172,307)
시설유형							
국공립	3.8	3.2	4.3	(506)	0.2	0.3	(32,258)
사회복지법인	24	24	28	(377)	0.1	0.2	(26,436)
법인·단체	23	1.9	24	(283)	0.2	0.3	(16,162)
민간	3.1	2.5	3.5	(1,134)	0.4	0.3	(58,230)
가정	2.3	0.4	2.3	(1,480)	0.4	0.1	(23,004)
직장	4.7	4.1	5.2	(266)	0.9	0.9	(16,217)
소재지							
대도시	3.2	2.3	3.4	(1,464)	0.3	0.3	(66,367)
중소도시	2.8	1.2	3.0	(1,631)	0.4	0.1	(59,267)
읍면	2.6	2.4	3.0	(951)	0.4	0.3	(46,673)
규모							
20명 이하	2.2	0.4	2.3	(1,520)	0.4	0.1	(23,591)
21~39명	2.4	0.9	2.4	(625)	0.4	0.1	(16,133)
40~79명	2.8	2.6	3.5	(992)	0.4	0.4	(47,083)

(표 V-1-8 계속)

구분	시설				영유아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80명 이상	44	4.4	49	(909)	0.3	0.4	(85,500)
2012년 조사	22	1.0	25	(4,000)	0.2	0.2	(175,873)
취업모							
전체	2.4	1.6	2.7	(4,046)	0.3	0.2	(172,307)
시설유형							
국공립	3.3	2.9	3.8	(506)	0.1	0.2	(32,258)
사회복지법인	2.1	2.1	2.4	(377)	0.1	0.1	(26,436)
법인·단체	1.4	1.3	1.4	(283)	-	0.2	(16,162)
민간	2.6	2.2	3.0	(1,134)	0.3	0.2	(58,230)
가정	1.7	0.3	1.8	(1,480)	0.3	-	(23,004)
직장	4.7	3.6	5.2	(266)	0.8	0.8	(16,217)
소재지							
대도시	2.8	2.0	3.0	(1,464)	0.3	0.3	(66,367)
중소도시	2.2	1.1	2.4	(1,631)	0.3	0.1	(59,267)
읍면	2.1	1.9	2.5	(951)	0.2	0.2	(46,673)
규모							
20명 이하	1.7	0.3	1.8	(1,520)	0.3	-	(23,591)
21~39명	2.2	0.9	2.2	(625)	0.3	0.1	(16,133)
40~79명	2.5	2.3	3.1	(992)	0.2	0.3	(47,083)
80명 이상	3.7	3.7	4.1	(909)	0.2	0.3	(85,500)
2012년 조사	1.8	0.7	2.0	(4,000)	0.1(207)	0.1(145)	(175,873)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15.9%에 영유아가 토요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살펴 보면 토요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이 12.9%이고, 토요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이 10.5%, 토요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 또는 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 15.9%에 해당한다.

아동 수를 기준으로 토요보육 이용 영아와 유아는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전체 보육 영유아 중 각 1.2%, 0.7%에 해당하였다.

2012년 조사 결과에서 토요보육 제공 어린이집 비율은 36.8%이며, 이용 영유아수 비율은 총 4.5%(영아 2.4%, 유아 2.1%)로 2015년 토요보육 제공 어린이집과 이용 영유아 비율은 모두 2012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토요일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은 약 30.3%로 나타나나¹⁰⁾ 여기서는 실제 토요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로 토요일 운영을 하여도 이용 영유아가 없는

10) <표 III-3-2> 참조(토요일 운영 여부)

경우가 존재함을 짐작케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1-9〉 토요보육 이용 영유아 재원 시설 및 영유아 비율

구분	시설				영유아			단위: %(개소), %(명)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전체	129	10.5	15.9	(4,046)	1.2	0.7	(172,307)	
시설유형								
국공립	21.2	24.8	29.7	(506)	1.0	1.2	(32,258)	
사회복지법인	21.4	21.1	25.3	(377)	1.2	1.2	(26,436)	
법인·단체	17.2	18.8	22.3	(283)	0.8	1.5	(16,162)	
민간	13.7	12.3	17.5	(1,134)	0.9	0.9	(58,230)	
가정	7.3	0.6	7.4	(1,480)	1.5	0.1	(23,004)	
직장	9.0	6.8	10.0	(266)	1.9	0.6	(16,217)	
소재지								
대도시	13.1	11.0	16.1	(1,464)	1.2	0.6	(66,367)	
중소도시	11.1	8.5	14.3	(1,631)	1.4	0.6	(59,267)	
읍·면	15.8	13.0	18.3	(951)	1.1	0.8	(46,673)	
규모								
20명 이하	7.4	0.6	7.5	(1,520)	1.7	0.1	(23,591)	
21~39명	11.5	6.4	13.6	(625)	1.3	0.7	(16,133)	
40~79명	14.1	14.7	18.7	(992)	0.9	1.2	(47,083)	
80명 이상	22.0	25.3	28.6	(909)	0.8	1.1	(85,500)	
2012년 조사	30.9	20.3	36.8	(4,000)	24(4,181)	21(3,713)	(175,873)	

2. 시간연장형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은 24시간 보육하는 ‘24시간 보육’, 기준 12시간보육(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연장보육(19:30~24:00)과 새벽보육(24:00~익일 07:30)을 포함하는 ‘야간보육’,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일보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조사대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재 이러한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 본 결과, 4,046 개소 중 971개소(23.9%)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시간연장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의 한 종류인 ‘시간연장 보육’은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21.5%가 운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여기서는 시간연장 보육 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어린

이집만을 대상으로 관련 현황과 정책 지원 관련 의견을 살펴보았다.

1) 시간연장 보육 이유

우선 영유아가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맞벌이 가구로 부모의 퇴근이 늦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83.6%가 이에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야간근로 등으로 저녁시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11.6%로 두 가지 이유가 주된 이유였으며, 그밖에는 1% 전후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V-2-1〉 영유아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

단위: %(개소)

구분	맞벌이로 부모 퇴근 늦음	이동 않고 보육서비스 받음	부모 보육 힘들어함	저녁에 돌볼 사람 없음	돌봄 제공 위함	기타	계(수)
전체	83.6	1.4	1.3	11.6	1.4	0.7	100.0(869)
시설유형							
국공립	80.4	1.6	2.0	12.3	3.7	-	100.0(199)
사회복지법인	84.8	-	3.0	10.0	2.2	-	100.0(64)
법인·단체	82.8	-	-	14.3	-	3.0	100.0(46)
민간	84.2	2.1	0.6	11.7	0.7	0.7	100.0(215)
가정	86.6	1.7	1.6	9.0	0.1	1.0	100.0(269)
직장	80.1	-	-	17.6	1.7	0.6	100.0(76)
소재지							
대도시	83.0	1.3	0.8	11.9	2.2	0.8	100.0(325)
중소도시	87.0	1.8	1.1	9.2	0.6	0.4	100.0(368)
읍면	77.4	0.8	2.9	16.2	1.5	1.2	100.0(176)
규모							
20명 이하	86.4	1.6	1.5	9.3	0.1	1.0	100.0(275)
21~39명	80.3	4.4	-	14.6	0.6	-	100.0(118)
40~79명	82.0	0.2	1.7	12.9	2.1	1.1	100.0(241)
80명 이상	83.7	0.8	1.3	11.4	2.5	0.2	100.0(235)
2012년 조사	83.1	0.3	1.4	13.5	1.6	0.1	100.0(988)

시설유형, 소재지, 규모 모든 항목에서 맞벌이 가구로 부모의 퇴근이 늦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8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으나, 소재지별로 읍·면지역에서는 77.4%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대신 '저녁에 돌볼 사람이 없음'이 16.2%,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함이 2.9%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읍·면지역의 부모 근로 특성이 기타 지역에 비해 야간근로의 필요가 높은 특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표 V-2-1 참조).

2012년 조사 결과 대비 가장 주된 이유로 꼽힌 '맞벌이로 부모 퇴근이 늦음'의 응

답 비율은 2012년 83.1%, 2015년 83.6%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이동하지 않고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라는 편리성의 이유는 0.3%에서 1.4%로 증가폭이 크며, ‘저녁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이용한다는 응답은 13.5%에서 11.6%로 다소 감소하였다.

2) 시간연장 보육 현황 및 관련 의견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단가는 일반아동의 경우 2,800원이며, 월 60시간 한도로 168,000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5: 281).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하면서, 해당 아동에 저녁급식비를 별도 수납하는지와 별도 수납할 경우 금액을 살펴본 결과는 <표 V-2-2>와 같이 나타났다. 저녁급식비를 별도로 수납하는 경우는 전체 시간연장 보육 어린이집 중 28.1%에 해당하였으며, 수납 시 금액은 월 평균 20,480원 수준이었다. 저녁급식비를 받는 비율은 2012년 대비 7.2%p 증가하였고, 평균 월 수납액도 12,567원에서 20,480원으로 약 63% 증가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중 54.3%가 저녁급식비를 별도 수납한다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가정어린이집은 13.9% 만이 저녁 급식비를 수납한다고 응답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저녁급식비 별도 수납률이 35.2%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24.7%, 읍면지역 21.1%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저녁급식비 별도 수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20인 이하 규모 시설 14.7%, 21~39명 이하 19.4%, 40~79명 이하 36.6%, 80명 이상 어린이집의 39.5%가 별도로 저녁급식비를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급식비를 별도 수납하고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한 수납금액은 월 평균 20,480원으로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최대 수납액은 75,000원이며 시설유형별 최대수납액은 28,000원~75,000원까지 편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의 저녁급식비 수납액이 최대 75,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읍면지역 60,000원, 중소도시 50,000원까지 최대 수납액이 나타나는 등 최대로 수납하고 있는 금액의 소재지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저녁급식비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수납한도액 및 수납주기를 공고해야하는 필요 경비이므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월평균 수납액이 가장 낮은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14,778원이며 반대로

가장 수납액이 높은 시설 유형은 가정어린이집으로 25,863원에 달하여 격차가 10,000원 이상 나고 있다. 소재지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고 규모별로도 비슷하나 20인 이하 시설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수납액 수준을 보였는 바, 이는 가정어린이집의 저녁급식 수납액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표 V-2-2 참조).

〈표 V-2-2〉 시간연장보육 시 저녁급식비 별도 수납 여부 및 금액

구분	수납 여부			수납 금액			단위: %(개소), 원
	받음	안 받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	
전체	28.1	71.9	100.0(869)	20,480.03	14,261.71	75,000	(236)
시설유형							
국공립	54.3	45.7	100.0(199)	17,988.27	14,104.09	70,000	(106)
사회복지법인	25.7	74.3	100.0(64)	14,778.13	7,741.93	28,000	(14)
법인·단체	29.3	70.7	100.0(46)	18,551.05	12,838.84	40,000	(13)
민간	19.4	80.6	100.0(215)	22,308.33	10,516.19	40,000	(36)
가정	13.9	86.1	100.0(269)	25,862.57	13,907.40	60,000	(41)
직장	32.6	67.4	100.0(76)	24,616.73	19,921.79	75,000	(26)
$\chi^2(df)/F$	105.1(5)***			3*			
소재지							
대도시	35.2	64.8	100.0(325)	20,259.31	15,042.52	75,000	(110)
중소도시	24.7	75.3	100.0(368)	20,952.52	14,120.28	50,000	(92)
읍·면	21.1	78.9	100.0(176)	19,983.43	12,080.49	60,000	(34)
$\chi^2(df)/F$	14.3(20)**			0.9			
규모							
20명 이하	14.7	85.3	100.0(275)	26,169.17	13,643.59	60,000	(44)
21~39명	19.4	80.6	100.0(118)	19,184.36	9,112.54	40,000	(21)
40~79명	36.6	63.4	100.0(241)	19,330.86	14,225.49	52,000	(85)
80명 이상	39.5	60.5	100.0(235)	19,390.34	15,166.55	75,000	(86)
$\chi^2(df)/F$	52.9(3)***			2.6			
2012년 조사	20.9	78.5	100.0(991)	12,567	12,631	50,000	(204)

* $p < .05$, ** $p < .01$, *** $p < .001$

주. 2012년의 경우 수납여부에 '모르겠음' 0.6% 포함

시간연장 보육료의 시간당 비용 적정 금액 및 상향시 적정 금액 수준에 관해 질문한 결과 〈표 V-2-3〉과 같이 응답되었다. 시간연장 보육료 금액이 현재 수준인 시간당 2,800원이 적정하다라는 응답은 15.0%이며, 이보다 상향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5.0%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 결과 대비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6.4%p 감소한 결과이다. 즉 시간연장 보육료 상향 조정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졌다 하겠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시간연장 보육료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

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90.2%에 달하여 가장 높았고, 법인·단체어린이집이 72.0%로 가장 낮았다. 소재지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읍·면지역에서 상향조정 요구 비율이 86.0%로 가장 높았다. 한편, 규모별로는 21~39명 규모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료 단가의 상향 조정 요구 비율이 91.2%로 가장 높고, 80명 이상 어린이집 87.3%, 20명 이하 어린이집 85.0%, 40~79명 이하 7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3〉 시간연장 보육료 시간당 비용 적정 금액 및 상향시 적정 금액

단위: %(개소), 원(개소)

구분	적정 금액				상향시 적정 금액				
	현재	동일	상향	조정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15.0	85.0	100.0(869)		4,563.21	1,390.85	2,850	10,000	(742)
시설유형									
국공립	15.8	84.2	100.0(199)		4,666.87	1,361.31	3,000	10,000	(167)
사회복지법인	9.8	90.2	100.0(64)		4,296.43	1,294.86	2,850	10,000	(57)
법인·단체	28.0	72.0	100.0(46)		3,919.50	921.69	3,000	10,000	(35)
민간	10.5	89.5	100.0(215)		4,420.69	1,091.44	3,000	10,000	(191)
가정	14.8	85.2	100.0(269)		4,606.29	1,376.32	3,000	10,000	(233)
직장	21.9	78.1	100.0(76)		5,061.38	2,161.12	3,000	10,000	(59)
$\chi^2(df)/F$		14.3(5) [*]			4.1 ^{**}				
소재지									
대도시	15.6	84.4	100.0(325)		4,568.86	1,411.40	3,000	10,000	(277)
중소도시	14.9	85.1	100.0(368)		4,545.44	1,327.10	2,850	10,000	(311)
읍·면	14.0	86.0	100.0(176)		4,591.40	1,493.84	3,000	10,000	(154)
$\chi^2(df)/F$		0.2(2)			0.6				
규모									
20명 이하	15.0	85.0	100.0(275)		4,599.09	1,369.08	3,000	10,000	(238)
21~39명	8.8	91.2	100.0(118)		4,665.15	1,418.06	2,850	10,000	(107)
40~79명	20.3	79.7	100.0(241)		4,542.46	1,450.45	3,000	10,000	(193)
80명 이상	12.7	87.3	100.0(235)		4,487.57	1,347.90	3,000	10,000	(204)
$\chi^2(df)/F$		10.5(3) [*]			0.5				
2012년 조사	21.4	78.6	100.0(991)		4,176	1,886	3,000	40,000	(195)

* $p < .05$, ** $p < .01$

시간 당 시간연장 보육료가 상향된다면 얼마 정도의 수준이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4,563원으로 조사되었다. 상향 조정시 적정하다고 보는 시간연장 보육료 수준은 시설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적정 단가로 가장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형은 직장어린이집으로 시간당 평균 5,061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공립 4,667원, 가정 4,606원, 민간 4,421원, 사회복지법인 4,296원으로 대부분 시설에서 4,000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인·단체어린이집이

가장 낮아서 3,920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 결과 적정하다고 보는 시간연장보육료 수준은 4,176원이었는데, 평균 387원 더 높은 단가를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2012년 시간연장 보육 단가였던 시간당 2,700원에서 2015년 2,800원으로 100원의 인상이 있었으나 시간연장 보육료의 상향요구 비율이 더 높아졌으며, 적정금액으로 제시되는 금액 수준도 2012년 대비 더욱 높아져 실제와 이상적 수준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적절한 산정 방법을 통해 시간연장 보육료의 적정 단가 산출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 달 60시간의 시간연장 보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표 V-2-4>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74.0%가 현재의 60시간의 시간연장 보육 지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15.9%가 적음, 10.0%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시설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 바,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법인·단체어린이집에서 79.8%로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 78.5%, 국공립어린이집 77.6%,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73.0%, 가정어린이집이 71.6%, 민간어린이집 7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다는 의견은 민간어린이집이 21.0%로 가장 높고, 많다는 의견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14.1%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소재지별, 정원 규모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편, 현재 정부의 한 달 60시간의 시간연장 보육 지원시간이 필요보다 적다고 응답한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연장 보육 지원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 월 평균 82.90시간으로 현재 보다 22.9시간 상향되어야 한다고 응답되었으며, 반대로 현재의 지원시간이 적정 수준보다 많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향되어야 할 적정 시간은, 월 평균 38.05시간으로 현재 보다 지원 시간이 약 22시간 가량 하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하향 조정해야 할 경우 22시간 적은 38시간 정도를 적당하다고 보며,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약 23시간 정도를 더 지원해야 한다는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원시간을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시설유형, 소재지, 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지원시간을 하향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보다 22시간 가량 적은 평균 38시간 정도를 적정한 시간연장 보육 지원 시간으로 보나, 최저 29.68시간(직장어린이집)에서 최고 43.44시간(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적정시간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결과와 대비 시 현재의 지원 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유사한 수준이나

(2012년 74.8%, 2015년 74.0%), 적다는 의견은 2012년 대비 2015년에 4%p 하락하고, 많다는 의견은 4.7%p 증가하였다.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할 경우에도 필요로 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단축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단, 지원시간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 원하는 시간은 2012년 78.67시간에서 82.90시간으로 더 연장되었고, 지원시간 하향을 원하는 경우는 2012년 39.15시간에서 38.05시간으로 더 단축되어서,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V-2-4〉 60시간의 시간연장보육 지원에 대한 의견

구분	의견				시간연장보육 적정 지원 시간				단위: %, 시간(개소)	
					지원시간 상향		지원시간 하향			
	적음	적당함	많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5.9	74.0	10.0	100.0(869)	82.90	18.88 (134)	38.05	9.08 (93)		
시설유형										
국공립	8.4	77.6	14.1	100.0(199)	92.07	36.13 (17)	35.33	9.07 (33)		
사회복지법인	16.1	73.0	10.8	100.0(64)	77.16	11.06 (8)	43.44	4.46 (6)		
법인·단체	9.2	79.8	11.0	100.0(46)	75.68	5.75 (5)	33.75	10.48 (4)		
민간	21.0	71.1	7.9	100.0(215)	81.89	17.53 (49)	38.95	7.12 (18)		
가정	19.6	71.6	8.8	100.0(269)	81.12	13.75 (47)	42.49	7.35 (25)		
직장	13.3	78.5	8.2	100.0(76)	88.74	11.09 (8)	29.68	11.84 (7)		
$\chi^2(df)/F$	20.8(10) [*]				1.5		4.2 ^{**}			
소재지										
대도시	15.4	72.7	12.0	100.0(325)	82.91	22.49 (45)	36.92	7.51 (42)		
중소도시	17.4	73.6	9.0	100.0(368)	82.11	12.67 (62)	37.79	11.02 (36)		
읍·면	13.8	77.9	8.3	100.0(176)	85.11	24.65 (27)	42.01	7.39 (15)		
$\chi^2(df)/F$	3.6(4)				0.2		1.7			
규모										
20명 이하	19.1	71.8	9.1	100.0(275)	81.12	13.75 (47)	41.79	7.71 (26)		
21~39명	20.0	72.9	7.2	100.0(118)	84.73	20.43 (26)	39.47	11.32 (9)		
40~79명	12.3	77.7	10.0	100.0(241)	86.15	28.10 (29)	35.32	9.38 (27)		
80명 이상	14.0	73.4	12.6	100.0(235)	81.49	14.27 (32)	36.69	8.52 (31)		
$\chi^2(df)/F$	8.8(6)				0.6		2.6			
2012년 조사	19.9	74.8	5.3	100.0(185)	78.67	10.56 (184)	39.15	9.44 (51)		

* $p < .05$, ** $p < .01$

다음으로 시간연장 보육 이용 부모에게 출석부에 확인서명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V-2-5〉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전체의 88.6%가 시간연장 보육 이용 확인서명을 매번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끔 받음 5.2%, 원에서 대신 함 3.7%,

받은 적 없음 2.4%로 나타났다.

시설유형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는 확인서명을 매번 받는다는 응답이 96.4%로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이 83.9%로 가장 낮았다.

소재지별로는 시간연장 보육 이용 확인서명을 매번 받는다는 응답이 읍·면지역 91.1%, 대도시 90.9%, 중소도시 85.5%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규모별로는 40명이상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 확인서명을 받는다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고, 40명 미만 어린이집은 85% 전후로 차이가 나타난다.

2012년 조사 결과 대비 시간연장보육 이용 확인서명을 매번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81.7%에서 88.6%로 6.9%p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간연장보육 이용 확인이 철저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보여진다.

〈표 V-2-5〉 시간연장보육 이용 확인서명 여부

구분	받은 적 없음	가끔 받음	매번 받음	원에서 대신 함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2.4	5.2	88.6	3.7	100.0(869)	
시설유형						
국공립	1.9	1.5	94.6	2.0	100.0(199)	
사회복지법인	-	0.4	96.4	3.1	100.0(64)	
법인단체	-	7.6	88.2	4.3	100.0(46)	31.0(15)**
민간	3.6	5.5	86.7	4.2	100.0(215)	
가정	1.7	9.1	85.4	3.8	100.0(269)	
직장	6.1	3.6	83.9	6.4	100.0(76)	
소재지						
대도시	2.7	3.2	90.9	3.2	100.0(325)	
중소도시	2.8	7.4	85.5	4.3	100.0(368)	7.8(6)
읍·면	1.0	4.6	91.1	3.4	100.0(176)	
규모						
20명 이하	1.7	8.8	85.8	3.7	100.0(275)	
21~39명	3.1	8.1	84.4	4.5	100.0(118)	21.3(9)*
40~79명	2.3	3.8	90.1	3.8	100.0(241)	
80명 이상	3.1	1.0	92.7	3.2	100.0(235)	
2012년 조사	3.3	11.6	81.7	3.4	100.0(990)	

* $p < .05$, ** $p < .01$

다음으로 시간연장보육 제도와 관련해 개선 요구 사항을 질문하였다. 〈표 V-2-6〉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시간연장보육 제도의 최우선적 개선 요구 사항은 '인건비 지원 단가'의 상향으로 41.8%가 이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시스템상 5명 아동 등록에 대한 제한 완화가 19.5%, 취업모 또는 야간보육 필요 가정으로 이용 자격을 제한

해야 한다는 요구가 10.2%, 대체 인력풀 구축에 대한 요구가 9.6%, 기타 8.3%,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7.4%, 혼합반 연령기준 마련이 3.2% 순이었다. 기타 응답이 8.3%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에는 시간연장 보육의 적용 시작 시점의 조정, 시간연장보육료를 수익자 부담(부모 부담)으로 하자는 의견 등이 해당되었다.

〈표 V-2-6〉 시간연장보육 제도의 최우선적인 개선 요구사항

구분	단위: %(개소)								
	인건비 지원 단가상향	반당 5명 등록 제한 완화	이용 자격 제한	대체 인력풀 구축	프로 그램 개발	혼합반 연령기준 마련	기타	계(수)	$\chi^2(df)$
전체	41.8	19.5	10.2	9.6	7.4	3.2	8.3	100.0(866)	
시설유형									
국공립	35.8	19.1	16.1	13.0	7.1	3.6	5.4	100.0(199)	
사회복지법인	38.1	22.4	9.0	2.8	17.9	4.3	5.5	100.0(63)	
법인·단체	26.4	21.8	11.6	10.5	12.6	6.1	11.1	100.0(46)	100.3
민간	42.6	27.7	5.6	5.9	7.2	3.5	7.5	100.0(214)	(30)***
가정	51.2	11.7	4.9	11.1	5.7	2.4	13.0	100.0(268)	
직장	34.4	21.7	23.9	10.1	4.7	2.1	3.0	100.0(76)	
소재지									
대도시	44.8	18.7	11.2	9.1	6.8	3.5	5.8	100.0(324)	
중소도시	41.2	18.2	10.8	10.7	5.6	3.3	10.2	100.0(367)	20.1(12)
읍·면	36.9	23.7	6.6	8.1	13.0	2.3	9.3	100.0(175)	
규모									
20명 이하	51.3	11.9	4.8	11.3	5.6	2.3	12.8	100.0(274)	
21~39명	45.3	23.6	4.1	3.9	11.0	4.0	8.1	100.0(118)	74.5
40~79명	35.5	20.7	12.3	12.6	9.3	3.1	6.5	100.0(240)	(18)***
80명 이상	35.2	25.2	17.4	7.2	6.0	4.0	5.0	100.0(234)	
2012년 조사	39.4	16.2	12.3	13.1	9.2	3.9	5.9	100.0(987)	

*** $p < .001$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인건비 지원 단가 상향’에 대한 개선 요구는 가정어린이집에서 51.2%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반면 법인·단체어린이집은 26.4%가 응답하여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시간연장보육 실시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월급여의 80% 수준 지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인당 120만원 지원이라는 월급여 지원 기준에 차이가 있어 시설 유형별 개선 요구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이용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는 직장어린이집이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4.9%에 불과하며, 대체인력풀 구축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는 13.0%가 요구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은 2.8%로 요구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설유형과 함께 정원 규모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었다.

인건비 지원단가 상향에 대한 요구는 정원 규모가 작을수록 요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시간보육 이용 아동의 자격 기준을 제한하자는 요구는 반대로 어린이집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요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결과와 비교 시 인건비 지원 상향 요구는 39.4%에서 41.8%로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고, 시스템상 반당 5명 아동 등록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완화하여 달라는 요구도 2012년 대비 상승하였다(2012년 16.2%→2015년 19.5%). 반면 이용아동 자격 제한, 대체인력풀 구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는 감소하였다.

나. 24시간 보육

다음으로 24시간 보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모 인계 빈도, 가정 유형별 숫자,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현재 24시간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총 19개소이며, 24시간 보육 영유아의 부모가 얼마나 자주 테려가는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1주에 한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6.8%로 대부분 1주에 한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V-2-7 참조).

〈표 V-2-7〉 24시간 보육 영유아의 부모인계 빈도

구분	2주에 한번	1주에 한번 이상	기타	단위: %(개소)
				계(수)
전체	1.3	96.8	1.9	100.0(19)
2012년 조사	7.7	89.5	2.8	100.0(23)

24시간 보육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수를 살펴 본 결과는 〈표 V-2-8〉에 제시된 바와 같다. 24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1개소 당 양부모가 모두 있는 아동은 평균 2.41명, 한부모 가정의 아동 3.61명, 조손가정의 아동이 평균 1명으로 나타난다. 즉 한부모 가정 아동이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양부모 가정 아동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2012년 조사 결과에 비해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양부모 가정의 아동 수는 2.70명에서 2.41명으로 다소 감소한 결과이다. 24시간 보육 이용 한부모 가정 아동과 조

손가정 아동의 수는 2012년 결과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V-2-8〉 가정유형별 24시간 보육 아동 수

구분	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단위: 명(개소)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41	1.18	(11)	3.61	1.66	(14)	1.00	-	(4)	
시설유형										
국공립	2.00	-	(1)	3.61	0.79	(3)	1.00	-	(1)	
사회복지법인	1.54	0.64	(2)	8.00	-	(1)	1.00	-	(1)	
민간	1.00	-	(1)	4.00	-	(2)	-	-	(0)	
가정	3.25	0.92	(6)	2.78	0.95	(7)	1.00	-	(1)	
직장	1.00	-	(1)	2.00	-	(1)	1.00	-	(1)	
소재지										
대도시	2.32	0.91	(4)	3.65	2.29	(5)	1.00	-	(2)	
중소도시	2.83	1.39	(6)	3.49	0.92	(8)	1.00	-	(2)	
읍면	1.00	-	(1)	4.00	-	(1)	-	-	(0)	
규모										
20명 이하	3.25	0.92	(6)	2.78	0.95	(7)	1.00	-	(1)	
40~79명	1.84	0.45	(3)	3.49	1.27	(2)	1.00	-	(1)	
80명 이상	1.00	-	(2)	4.66	2.05	(5)	1.00	-	(2)	
2012년 조사	2.70	2.01	(17)	3.61	2.67	(18)	1.00	-	(4)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전체의 83.2%가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한부모·조손가정으로 주간·야간보육 필요하다는 응답이 16.8%에 해당하였다. 2012년 대비 ‘부모 야간 경제활동’을 이유로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급증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V-2-9〉 24시간 보육 이용 이유

구분	부모 야간 경제활동	부모 건강 문제	한부모·조손가정 주간야간보육 필요		계(수)	단위: %(개소)
			주간야간보육 필요	계(수)		
전체	83.2	-	16.8	100.0(19)		
2012년 조사	44.8	-	55.2	100.0(23)		

다. 시간제 보육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현재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 38개

소 중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26개소만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V-2-10>에 따르면 시간제 보육 아동 수가 유동적으로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크며(25.2%), 시간제 보육료가 낮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24.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밖에 낮선 상황에서의 영유아 적응의 어려움 17.3%, 전담 인력 구인 어려움 16.0%, 시간제 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어려움 11.4%, 일반 영유아 보육에 방해됨 5.7% 등 일반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유동적인 수요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이 다양하게 응답되었다.

<표 V-2-10>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어려움

구분	단위: %(개소)						
	낮은 시간제 보육료	전담 인력 구인 어려움	일반 영유아 보육에 방해	안정적 운영 어려움	프로그램 구성 어려움	낮선 상황에서의 영유아 적응	계(수)
전체	24.4	16.0	5.7	25.2	11.4	17.3	100.0(26)

현재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8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표 V-2-11>에 따르면 시간제 보육료 단가 인상 21.8%,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조건 완화 20.9%, 담당인력 파견 등 인력 지원 18.2%, 시간제 보육료 정부지원 비율 인상 15.9%, 기타 9.7%, 운영 컨설팅 제공 8.9%, 리모델링 지원액 확대 4.6% 등 다양한 지원 요구가 비교적 고르게 응답되었다. 9.7%를 차지한 기타 응답에는 시간제 보육 이용 부모에 사전 교육 실시, 독립된 건물에서 교사 아동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V-2-11>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구분	단위: %(개소)							
	시간제 보육료 단가 인상	시간제 보육료 정부지원 비율 인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조건 완화	담당 인력 파견 등 인력 지원	컨설팅 제공	리모델링비 지원액 확대	기타	계(수)
전체	21.8	15.9	20.9	18.2	8.9	4.6	9.7	100.0(38)

라. 향후 운영 계획

현재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3,075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향

후 시간연장형 보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28.1%가 의향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국공립(43.6%), 가정(32.3%), 민간(27.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유형의 어린이집은 15% 전후의 의향을 나타내었다.

〈표 V-2-12〉 시간연장형 보육 참여 의향

구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28.1	71.9	100.0(3,075)	
시설유형				
국공립	43.6	56.4	100.0(291)	
사회복지법인	14.2	85.8	100.0(302)	
법인·단체	15.1	84.9	100.0(228)	
민간	27.5	72.5	100.0(885)	108.2(5)***
가정	32.3	67.7	100.0(1,189)	
직장	14.6	85.4	100.0(180)	
소재지				
대도시	27.7	72.3	100.0(1,095)	
중소도시	29.6	70.4	100.0(1,224)	2.9(2)
읍면	26.2	73.8	100.0(756)	
규모				
20명 이하	32.2	67.8	100.0(1,222)	
21~39명	29.3	70.7	100.0(498)	
40~79명	24.9	75.1	100.0(725)	23.0(3)***
80명 이상	22.7	77.3	100.0(630)	

*** $p < .001$

한편, 향후 시간연장형 보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 881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가능한 취약보육의 종류를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이 운영 가능하다고 응답된 취약보육은 '시간연장보육'으로 91.1%가 응답하였으며, 야간보육 21.6%, 휴일보육 15.2%, 24시간 보육 8.0% 순으로 응답되었다.

시간연장보육은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운영 가능한 취약 보육 형태로 응답되어 최소 85% 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야간보육의 경우 사회복지법인(28.3%), 민간(26.4%), 가정(24.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5.5%만이 운영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휴일보육은 사회복지법인이 29.4%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나 역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3.5%만이 운영 가능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24시간 보육은 사회복지법인 12.0%, 가정어린이집 10.1%, 민간 9.2%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재지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중소도시에서 거의 모든 유형의 취

약 보육에 대한 운영 가능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2-13〉 운영 가능 취약 보육

구분	24시간 보육	야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기타	단위: %(개소) (수)
전체	8.0	21.6	91.1	15.2	1.0	(881)
시설유형						
국공립	-	5.5	94.7	3.5	2.8	(127)
사회복지법인	12.0	28.3	94.4	29.4	-	(45)
법인단체	6.9	14.0	92.1	12.2	-	(39)
민간	9.2	26.4	85.8	14.9	0.4	(249)
가정	10.1	24.5	92.6	17.7	0.7	(393)
직장	-	16.1	94.5	20.1	5.5	(28)
소재지						
대도시	6.5	21.5	90.8	12.5	2.0	(314)
중소도시	10.0	24.2	91.4	16.7	0.1	(363)
읍·면	6.5	17.1	91.0	16.7	1.1	(204)
규모						
20명 이하	9.8	23.9	92.5	18.0	0.9	(402)
21~39명	10.8	23.8	85.5	11.0	1.1	(148)
40~79명	5.4	18.3	91.0	16.5	1.1	(187)
80명 이상	3.0	17.4	93.3	9.7	1.0	(144)

주: 중복응답 결과임.

3. 장애 영유아 보육

가. 보육 장애 영유아 특성

조사대상 어린이집 4,046개소에서 보육하는 장애영유아는 총 2,203명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장애영유아에 대해서는 장애아보육료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의사의 장애진단서 중 1가지 이상의 증빙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 2015: 273).

이에 조사대상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다고 응답된 전체 장애 영유아를 장애 영유아 자격기준별로 분류하였다. <표 V-3-1>에 따르면,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장애영유아 중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63.5%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 영유아는 전체 장애 영

유아의 6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를 가지고 있는 장애 영유아는 10.3%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영유아 자격기준 증명 서류별 보유 여부로(어린이집 제출 기준) 중복 응답 결과이다.

어린이집의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의사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장애영유아 보육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 보유 장애영유아가 가장 많았다(12.4%).

〈표 V-3-1〉 장애 영유아 자격기준별 분류

구분	장애인등록증	의사의 장애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	단위: %(명)
				(수)
<u>전체</u>				
	62.0	63.5	10.3	(2,203)
<u>시설유형</u>				
국공립	66.9	71.2	8.5	(882)
사회복지법인	76.8	66.8	16.0	(864)
법인·단체	63.9	51.3	16.3	(206)
민간	49.2	58.5	9.1	(216)
가정	32.5	57.9	9.7	(24)
직장	71.0	29.0	-	(11)
<u>소재지</u>				
대도시	62.4	68.2	8.5	(1,055)
중소도시	63.1	60.3	11.8	(732)
읍면	59.9	57.2	12.4	(416)
<u>규모</u>				
20명 이하	41.5	50.1	8.4	(54)
21~39명	65.9	62.3	7.8	(350)
40~79명	59.8	68.9	11.4	(1,005)
80명 이상	65.6	61.4	10.3	(794)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2) 2012년의 경우 해당 문항의 보기 중 1가지만 응답하게 함. 2015년 조사에서는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하게 하여 중복 집계됨.

〈표 V-3-2〉에서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전체 장애 영유아 중에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2,121명이며, 증빙서류에 따라 분류되는 장애 유형을 모두 확인한 결과, 지적 장애가 4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폐성장애 40.2%, 언어장애가 34.7%, 뇌병변 장애 25.9%, 지체 장애 14.0%, 청각 장애 11.5%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보육하는 장애영유아는 지적

장애 83.7%, 뇌병변 장애 76.5%, 자폐성 장애 76.0%, 언어 장애 58.8%, 지체장애 35.7% 등으로 주요 장애유형 비율이 매우 높아, 주요 장애유형의 중복 장애를 가진 장애영유아가 특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반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장애영유아는 가장 많이 분류되는 지적장애가 24.3%이며, 그 외 자폐성 장애 17.8%, 뇌병변 장애 12.4%, 언어장애 12.1% 순으로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영유아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V-3-2〉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진단서 소지 시 장애 영유아 장애유형별 분류
(전체 장애 영유아 대비)

구분	지적	언어	뇌	병변	자폐	지체	청각	정신	시각	간질	간	신장	장루 요루	안면	심장	호흡 기	단위: %(명)	
전체	45.4	34.7	25.9	40.2	14.0	11.5	1.2	3.2	2.5	1.4	1.1	0.2	-	0.8	-	20.2	(2,121)	
시설유형																		
국공립	50.8	39.9	27.7	50.7	14.1	10.4	1.5	1.9	1.8	1.9	-	-	-	0.8	-	24.3	(835)	
사회복지법인	49.1	48.9	42.4	45.0	24.3	29.6	-	12.5	6.3	-	-	0.6	-	-	-	29.2	(855)	
법인·단체	44.6	42.4	29.6	30.7	14.9	6.7	4.4	5.7	8.0	-	3.6	-	-	4.7	-	28.2	(199)	
민간	38.7	20.0	13.4	31.1	8.1	6.9	-	-	-	2.0	2.0	0.4	-	-	-	8.5	(199)	
가정	30.0	12.6	6.0	16.3	18.5	3.8	2.8	-	-	1.4	6.9	-	-	-	-	-	(22)	
직장	27.1	13.5	38.4	-	-	7.1	-	-	-	-	-	-	-	-	-	13.9	(11)	
소재지																		
대도시	45.3	42.3	28.1	46.7	12.3	10.5	2.0	3.0	2.4	-	2.3	-	-	-	-	25.7	(1,034)	
중소도시	46.5	24.6	25.2	38.3	16.8	14.1	0.9	4.3	1.7	1.7	-	0.6	-	2.7	-	17.5	(685)	
읍면	44.2	31.1	21.9	28.1	13.8	10.2	-	2.1	3.6	4.1	-	-	-	-	-	11.4	(402)	
규모																		
20명 이하	40.4	18.1	19.7	21.2	15.8	3.2	2.4	-	-	1.2	5.9	-	-	-	-	7.3	(52)	
21~39명	54.1	30.4	35.5	50.2	14.9	13.4	4.4	9.1	-	-	0.9	-	-	-	-	21.7	(325)	
40~79명	46.3	36.0	30.7	44.7	19.7	8.7	0.5	4.1	4.5	-	-	-	-	-	-	25.0	(984)	
80명 이상	43.6	36.5	21.2	37.2	9.4	14.1	1.0	1.7	1.8	2.7	1.6	0.2	-	1.6	-	17.9	(760)	
시설 특성																		
장애아전문	83.7	58.8	76.5	76.0	35.7	19.0	3.3	17.8	5.5	-	-	0.6	-	-	-	37.5	(1,110)	
장애아통합	54.2	49.0	24.0	50.9	12.0	9.0	1.5	0.9	2.1	0.9	-	-	-	0.8	-	27.0	(834)	
일반	24.3	12.1	12.4	17.8	9.4	11.7	0.3	1.1	1.8	2.2	2.7	0.2	-	1.1	-	7.6	(177)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2) 2012년의 경우 해당 문항의 보기 중 1가지만 응답하게 함. 2015년 조사에서는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하게 하여 중복 집계됨.

한편, 〈표 V-3-3〉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를 제출한 장애영유아의 장애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전체 장애 영유아 중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는 총 352명이었고, 증빙서류에 따라 분류되는 장애 유형은 모두 확인한 결과, 발달지체가 43.4%로 가장 많고, 그 밖에 의사소통장애

28.0%, 자폐성 장애 23.4%, 정서·행동 장애 18.2%, 지체장애 10.5%, 정신지체 8.9%, 청각장애 5.0% 순으로 집계되었다.

시설 특성별 보육 장애영유아의 장애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장애아중 특수교육대상자 결과서를 제출한 장애영유아의 경우 자폐성장애로 진단받은 비중이 현저히 높아 64.8%에 이르고 있으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는 발달지체로 진단받은 장애영유아가 55.4%, 일반 어린이집에는 의사소통장애(41.0%), 발달지체(39.4%), 정서·행동장애(31.4%) 아동이 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표 V-3-2>의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진단서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결과와 함께 이러한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장애영유아들이 1가지 장애가 아닌 중복 장애를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3-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시 장애 영유아 장애유형별 분류(전체 장애 영유아 대비)

구분	시각	청각	정신 지체	지체	정서, 행동	자폐성	의사 소통	단위: % (명)			
								학습	건강	발달 지체	기타 수
전체	-	5.0	8.9	10.5	18.2	23.4	28.0	-	-	43.4	4.1 (352)
시설유형											
국공립	-	10.9	12.7	9.2	7.5	31.7	19.0	-	-	61.7	- (144)
사회복지법인	-	-	4.0	14.2	20.7	21.5	10.6	-	-	21.9	19.9 (55)
법인·단체	-	-	20.3	25.9	20.3	20.3	45.6	-	-	24.1	- (39)
민간	-	3.7	-	-	35.8	16.5	37.4	-	-	54.5	- (80)
가정	-	-	-	-	15.2	-	84.8	-	-	-	(24)
직장	-	-	-	-	-	-	-	-	-	-	(10)
소재지											
대도시	-	1.9	20.0	-	17.3	27.2	38.4	-	-	42.8	8.9 (164)
중소도시	-	12.8	2.0	20.2	12.8	23.9	15.4	-	-	70.1	- (118)
읍·면	-	-	2.9	12.6	25.9	17.8	29.6	-	-	12.9	2.9 (70)
규모											
20명 이하	-	-	-	-	15.2	-	84.8	-	-	-	(26)
21~39명	-	-	22.4	-	48.6	79.8	12.3	-	-	87.7	12.3 (36)
40~79명	-	-	8.5	-	8.5	41.1	29.7	-	-	49.8	9.1 (129)
80명 이상	-	9.7	8.2	20.2	21.3	5.7	23.9	-	-	37.0	- (161)
시설 특성											
장애인전문	-	-	20.0	15.0	15.7	64.8	43.1	-	-	26.1	21.0 (43)
장애인통합	-	12.2	12.0	8.7	7.1	17.6	8.7	-	-	55.4	- (147)
일반	-	-	-	10.2	31.4	8.5	41.0	-	-	39.4	- (162)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2) 2012년의 경우 해당 문항의 보기 중 1가지만 응답하게 함. 2015년 조사에서는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하게 하여 중복 집계됨.

한편, 장애인 등록증 소지 영유아의 장애 등급을 살펴본 결과 2등급이 32.1%로 가장 많고, 1등급(26.4%), 3등급(20.0%), 6등급(10.2%), 5등급(6.3%), 4등급(4.9%) 순이었다(표 V-3-4 참조).

〈표 V-3-4〉 장애인등록증 소지 시 장애 영유아 장애등급별 분류(전체 장애 영유아 대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단위: % (명)
							계(명)
전체	26.4	32.1	20.0	4.9	6.3	10.2	100.0(1,173)
시설유형							
국공립	26.3	37.9	20.5	3.9	4.8	6.6	100.0(415)
사회복지법인	40.2	29.9	23.8	0.7	0.3	5.2	100.0(511)
법인·단체	21.3	27.2	21.7	3.7	9.3	16.9	100.0(123)
민간	14.3	28.4	20.4	10.7	10.0	16.1	100.0(108)
가정	29.4	25.7	-	-	-	44.9	100.0(8)
직장	21.8	-	3.7	20.3	35.1	19.1	100.0(8)
소재지							
대도시	28.5	32.6	19.1	4.0	5.4	10.4	100.0(564)
중소도시	22.5	40.7	19.9	6.1	4.3	6.4	100.0(363)
읍·면	26.9	18.2	22.4	5.4	11.6	15.5	100.0(246)
규모							
20명 이하	33.6	19.7	1.3	1.3	4.0	40.2	100.0(38)
21~39명	44.2	31.6	22.0	1.5	-	0.6	100.0(239)
40~79명	33.6	28.2	23.0	7.9	6.6	0.8	100.0(537)
80명 이상	17.5	36.1	19.0	3.7	7.4	16.3	100.0(359)
시설 특성							
장애아전문	51.6	28.7	14.1	1.3	1.5	2.9	100.0(771)
장애아통합	26.8	38.8	20.1	5.7	2.9	5.6	100.0(324)
일반	9.9	23.4	23.5	5.9	14.8	22.5	100.0(78)
2012년 조사	38.5	27.6	24.6	5.1	1.2	3.0	100.0(771)

시설유형별로는 장애등급별 아동 분포에 차이가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1등급 장애아동의 비율이 40.2%에 달하며 2등급, 3등급까지의 아동이 93.9%에 달하며,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경우도 1~3등급 장애영유아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6등급 장애영유아가 44.9%이며, 직장어린이집도 4~6등급 장애영유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설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는 1등급 장애영유아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51.6%), 2등급 28.7%, 3등급 14.1%로 중한 등급의 장애 영유아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비해 일반어린이집은 1등급 장애영유아의 비중은 9.9%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2~6등급 장애영유아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장애등급별 비중은 2012년 대비 2등급 비중이 증가하고(‘12년 27.6%→‘15년 32.1%), 1등급은 비중이 감소하였다(‘12년 38.5%→‘15년 26.4%).

나. 장애영유아 보육 어린이집의 특성

현재 장애 영유아를 1명 이상 보육하고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4,046 개소 어린이집 중 352개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¹¹⁾.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구분하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43.3%,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12.4%이며, 그 외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가 44.3%에 해당하였다.

〈표 V-3-5〉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분류

구분	장애인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인아통합 어린이집	장애인 전문/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음	단위: %(개소)	
				계(수)	$\chi^2(df)$
전체	12.4	43.3	44.3	100.0(352)	
시설유형					
국공립	8.8	73.5	17.8	100.0(144)	
사회복지법인	45.2	24.1	30.8	100.0(55)	
법인·단체	8.5	42.4	49.2	100.0(39)	
민간	6.0	13.9	80.1	100.0(80)	187.1(10)***
가정	-	-	100.0	100.0(24)	
직장	-	-	100.0	100.0(10)	
소재지					
대도시	13.1	49.8	37.2	100.0(164)	
중소도시	11.9	43.6	44.5	100.0(118)	11.8(4)*
읍·면	11.5	28.6	59.9	100.0(70)	
규모					
20명 이하	13.3	-	86.7	100.0(26)	
21~39명	40.6	14.4	45.0	100.0(36)	69.1(6)***
40~79명	17.7	42.7	39.6	100.0(129)	
80명 이상	2.6	55.0	42.4	100.0(161)	

* $p < .05$, *** $p < .001$

시설 유형별로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 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다. 한편, 장애아를 보육하는 사회

11) 장애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고 있다고 답한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8.6%에 해당하였음(표 V-1-4 참조). 8.6%의 비율은 가중치가 적용된 비율로 실제 해당 사례수는 352개소에 해당함.

복지법인어린이집은 45.2%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비율이 시설 유형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도 24.1%가 지정받아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법인·단체어린이집 중에서는 현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지만(49.2%),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비율도 4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에서 가정 및 직장어린이집은 모두 장애아전문 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장애아 전문 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규모별로는 정원 21~39명 이하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비율이 가장 높고(40.6%), 대체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일수록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고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장애아전문/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고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등 장애아 보육에 따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아전문 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았다.

<표 V-3-6>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지정 신청 기준 미충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53.8%), 지정 신청 기준은 갖추었으나 지정 시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신청하지 않음 18.7%, 지정이 취소됨 1.0%, 기타가 26.5%로 응답되었다. 기타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반아동으로 입소한 아동이나 재원 도중 장애아로 진단을 받게 된 경우, 재원한 장애아의 장애 정도가 미약하거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등이 많았고, 교실의 여유가 없음, 교사 채용이 어려움 등이 해당된다.

<표 V-3-6>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이유

단위: %(개소)

구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기준은 갖추었으나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정 취소되었음	기타	계(수)	$\chi^2(df)$
전체	53.8	18.7	1.0	26.5	100.0(160)	
시설유형						
국공립	47.4	15.9	-	36.7	100.0(24)	17.2(15)
사회복지법인	62.7	33.3	-	4.1	100.0(18)	

(표 V-3-6 계속)

구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기준은 갖추었으나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정 취소되었음	기타	계(수)	$\chi^2(df)$
법인·단체	69.5	1.6	-	28.9	100.0(20)	
민간	53.2	20.0	2.3	24.5	100.0(64)	
가정	59.1	9.3	-	31.6	100.0(24)	
직장	27.2	40.9	-	31.9	100.0(10)	
소재지						
대도시	46.3	18.6	2.4	32.6	100.0(58)	
중소도시	54.7	18.3	-	27.0	100.0(59)	6.5(6)
읍·면	63.2	19.0	-	17.8	100.0(43)	
규모						
20명 이하	59.1	9.3	-	31.6	100.0(24)	
21~39명	55.3	18.5	-	26.2	100.0(16)	7.5(9)
40~79명	60.9	11.5	-	27.6	100.0(55)	
80명 이상	47.4	26.0	2.1	24.5	100.0(65)	

시설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설유형에서 '지정 신청 기준 미충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직장어린이집에서는 기준은 갖추었으나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신청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40.9%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장애영유아의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배치해야 함¹²⁾을 알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73.9%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법령 내용에 대한 인지율은 시설유형, 시설특성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설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91.6%, 사회복지법인이 82.6%로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직장어린이집은 29.6%만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는 90% 이상 인지하는 반면 일반어린이집은 48.4%만이 이 법령에 따른 보육교사 배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취학하지 아니한 만5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대해 2016년 3월1일부터, 만4세 장애영유아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1일부터, 만 3세 장애영유아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1일부터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해야 함 (보건복지부, 2015: 141)

〈표 V-3-7〉 장애영유아 연령별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배치 법령 인지 여부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73.9	26.1	100.0(352)	
시설유형				
국공립	91.6	8.4	100.0(144)	
사회복지법인	82.6	17.4	100.0(55)	
법인·단체	67.8	32.2	100.0(39)	69.1(5)***
민간	50.6	49.4	100.0(80)	
가정	43.9	56.1	100.0(24)	
직장	29.6	70.4	100.0(10)	
소재지				
대도시	78.2	21.8	100.0(164)	
중소도시	73.4	26.6	100.0(118)	4.9(2)
읍·면	65.0	35.0	100.0(70)	
규모				
20명 이하	51.4	48.6	100.0(26)	
21~39명	82.1	17.9	100.0(36)	
40~79명	76.7	23.3	100.0(129)	6.9(3)
80명 이상	72.9	27.1	100.0(161)	
시설 특성				
장애아전문	97.1	2.9	100.0(43)	
장애아통합	93.3	6.7	100.0(147)	94.7(2)***
일반	48.4	51.6	100.0(162)	

*** $p < .001$

다음으로 현재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와 보육교사 중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교사 수를 살펴 본 결과는 〈표 V-3-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당 자격기준을 충족한 특수교사는 평균 2.76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2.71명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자격기준을 갖춘 특수교사(5.15명)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가(5.68명)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 및 직장어린이집에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특수교사는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만 평균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자격기준을 갖춘 특수교사(4.58명)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3.65명)가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으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특수교사 평균 4.34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평균 5.89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반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 1.14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40명으로 시설 특성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3-8〉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중 자격요건 종족 교사 수(평균)

구분	특수교사	장애인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단위: 명(개소)
전체	2.76	2.71	(352)
시설유형			
국공립	1.87	1.88	(144)
사회복지법인	5.15	5.68	(55)
법인·단체	2.92	2.78	(39)
민간	3.05	2.11	(80)
가정	-	1.00	(24)
직장	-	1.00	(10)
<i>F</i>	9.6***	12.5***	
소재지			
대도시	2.69	2.44	(164)
중소도시	2.25	2.69	(118)
읍·면	4.58	3.65	(70)
<i>F</i>	4.9**	3.1*	
규모			
20명 이하	3.50	2.60	(26)
21~39명	2.67	4.03	(36)
40~79명	3.40	3.05	(129)
80명 이상	2.14	2.10	(161)
<i>F</i>	1.4	2.6*	
시설 특성			
장애아전문	4.34	5.89	(43)
장애아통합	1.84	1.83	(147)
일반	1.14	1.40	(162)
<i>F</i>	17.7***	60.3***	

* $p < .05$, ** $p < .01$, *** $p < .001$

다. 장애 영유아 보육 관련 근거법령 인지 및 의견

장애아동보육지원과 관련한 근거법인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조사대상 어린이집 원장 중 58.0%가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지도가 2012년 결과와 비교시 약 6.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인지율이 가장 높아 82.3%에 달하였고,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어린이집은 69.8%, 68.0%로 70%에

가까운 인지율을 보였으나 가정어린이집(46.0%), 직장어린이집(55.6%), 민간어린이집(56.8%)의 인지율은 6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의 소재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의 인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설규모가 클수록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V-3-9〉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인지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전환 의향

단위: %(개소)

구분	법 인지 여부		통합어린이집 전환 의향				
	인지 여부	계(수)	있음	없음	모르겠음	장애전문/장애통합 어린이집임	계(수)
전체	58.0	100.0(4,046)	15.3	54.9	20.3	9.5	100.0(2,360)
시설유형							
국공립	82.3	100.0(506)	18.0	36.9	11.6	33.5	100.0(412)
사회복지법인	69.8	100.0(377)	15.1	53.9	16.4	14.5	100.0(267)
법인·단체	68.0	100.0(283)	12.5	54.9	19.6	13.0	100.0(190)
민간	56.8	100.0(1,134)	16.6	60.0	20.3	3.0	100.0(648)
가정	46.0	100.0(1,480)	14.6	61.4	24.0	-	100.0(689)
직장	55.6	100.0(266)	8.7	56.4	34.9	-	100.0(154)
$\chi^2(df)$	247.7(5)***			26.3(6)***			
소재지							
대도시	60.8	100.0(1,464)	14.4	53.9	18.6	13.1	100.0(901)
중소도시	53.7	100.0(1,631)	15.1	57.5	20.7	6.7	100.0(875)
읍·면	60.6	100.0(951)	17.1	52.5	22.3	8.1	100.0(584)
$\chi^2(df)$	460.5(15)***			160.0(3)***			
규모							
20명 이하	46.5	100.0(1,520)	14.2	61.7	23.7	0.4	100.0(712)
21~39명	56.0	100.0(625)	17.0	54.7	22.9	5.5	100.0(363)
40~79명	67.5	100.0(992)	15.2	53.7	17.1	14.0	100.0(661)
80명 이상	68.2	100.0(909)	15.7	48.4	18.3	17.6	100.0(624)
$\chi^2(df)$	19.5(2)***			144.9(9)***			
시설 특성							
장애인전문	96.0	100.0(43)	-	-	-	100.0	100.0(41)
장애인통합	98.0	100.0(147)	-	-	-	100.0	100.0(144)
일반	56.0	100.0(3,856)	16.6	59.7	22.0	1.6	100.0(2,175)
$\chi^2(df)$	130.5(2)***			1,955.3(6)***			
2012년 조사	51.5	100.0(4,000)	16.5	55.0	20.2	8.3	100.0(2,053)

*** $p < .001$

또한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그 외 일반어린이집으로 구분한 시설특성별로 법 인지 여부를 살펴 본 결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98.0%,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96.0%, 일반 어린이집의 56.0%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 및 시행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미 장애아전담 혹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였으며, 그 외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15.3%, 전환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54.9%, 모르겠다는 응답이 20.3%로 2012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통합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의향은 이미 장애전문/장애통합어린이집인 비율이 33.5%에 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가장 높은 18.0%로 응답되었고, 그 외 민간어린이집 16.6%, 사회복지법인 15.1%, 가정 14.6%, 법인·단체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제외한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16.6%만이 향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전환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V-3-10>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전환 의향은 없다고 응답한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 결과이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아 및 일반 영유아 안전 관리의 어려움'으로 31.0%가 이에 응답하였다. 이밖에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의 어려움'(28.4%), '장애아 담당 교사 확보의 어려움'(17.8%), '장애아통합 보육 지식 및 정보 부족으로 양질의 지원 어려움'(11.4%), '원아 모집의 어려움'(5.9%) 순으로 응답되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즉, 국공립어린이집의 48.4%,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39.2%, 직장어린이집의 24.9%에서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의 어려움을 통합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답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29.5%), 민간어린이집(36.6%)과 가정어린이집(36.5%)의 경우 '장애아 및 일반 영유아 안전 관리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의 어려움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환을 꺼리는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35.5%), 중소도시, 읍면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 및 일반 영유아 안전 관리의 어려움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12년의 결과와 비교 시 주요한 이유는 변화가 없으나 2012년에 비해 '안전관리의 어려움'의 응답비중이 '장애아편의시설 제공 어려움'에 비해 높아졌다.

〈표 V-3-10〉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전환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안전 관리 어려움	교사 확보 어려움	장애아 편의시설 제공 어려움	양질의 지원 어려움	과외일 부담	원아 모집 어려움	관심과 지원 미흡	기타	계(수)
전체	31.0	17.8	28.4	11.4	1.1	5.9	3.0	1.4	100.0(1,314)
시설유형									
국공립	14.2	19.7	48.4	6.2	0.9	6.4	2.3	2.0	100.0(153)
사회복지법인	29.5	16.5	25.4	14.0	0.9	10.9	2.0	0.9	100.0(151)
법인·단체	22.6	13.2	39.2	13.7	-	5.2	2.7	3.3	100.0(104)
민간	36.6	18.3	22.8	12.9	1.9	4.3	3.2	-	100.0(399)
가정	36.5	17.9	25.1	9.9	1.0	5.9	3.7	-	100.0(423)
직장	22.3	18.4	24.9	15.3	-	5.1	1.8	12.2	100.0(84)
$\chi^2(df)$				164.4(35)***					
소재지									
대도시	28.7	16.1	35.5	9.4	1.4	5.0	2.2	1.5	100.0(486)
중소도시	35.6	15.3	25.3	12.1	1.1	6.5	3.0	1.1	100.0(501)
읍·면	27.1	24.8	21.9	13.6	0.5	6.2	4.3	1.7	100.0(327)
$\chi^2(df)$				40.3(14)***					
규모									
20명 이하	35.3	18.4	26.2	9.5	0.9	5.6	3.5	0.4	100.0(439)
21~39명	32.0	17.3	33.4	6.8	2.4	5.1	1.1	1.9	100.0(204)
40~79명	25.8	13.1	33.2	15.0	1.2	6.2	3.1	2.3	100.0(355)
80명 이상	30.3	22.8	22.6	12.9	0.4	6.4	3.2	1.4	100.0(316)
$\chi^2(df)$				46.8(21)**					
2012년 조사	28.0	22.5	29.8	9.9	1.0	4.3	2.2	2.3	100.0(1,105)

** $p < .01$, *** $p < .001$

라.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정책 지원 요구

〈표 V-3-11〉은 장애아 보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로,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가 46.4%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이 19.1%, 특수교사 외 장애영유아 담당 수당 지급 13.0%, 장애아 시설설비 설치 9.6%, 특수교사 수당 인상 4.0%, 교사 교육 3.3%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73.6%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보육료 단가 인상에 대한 요구가 미미하게 나마 더 많이 응답되었다(28.8%).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조인력지원 다음으로는 장애영유아 담당 수당 지급에 대한 요구가 15.8%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보육료 단가 인상이 28.8%로 가장 많이 요구되

었고 보조인력 지원은 27.8%로 그 다음으로 많이 요구되었다. 나머지 시설유형에서 는 장애아를 위한 시설 및 설비 설치가 두 번째로 가장 높았다. 규모별로도 20명 이하 어린이집과 40명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모두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1~39명 이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단가 인상'에 대한 요구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규모별 차이를 보였다.

〈표 V-3-11〉 장애아 보육에 필요한 지원

구분	보육료 단가 인상	교재교 구비 지원	특수교사 수당 인상	장애 담당 지급	영유아 수당 지급	보조 인력 지원	장애인 시설설비 설치	교사 교육	기타	단위: %(개소)
	전체	19.1	1.4	4.0	13.0	46.4	9.6	3.3	3.2	100.0(352)
시설유형										
국공립	11.5	-	3.6	15.8	52.4	10.5	3.6	2.5	100.0(144)	
사회복지법인	28.8	2.9	11.5	10.2	27.8	12.4	2.6	3.7	100.0(55)	
법인·단체	18.1	4.0	3.9	13.1	51.5	-	2.7	6.7	100.0(39)	
민간	26.9	2.3	1.9	12.2	36.7	12.3	4.1	3.5	100.0(80)	
가정	26.7	-	-	-	62.6	6.3	2.6	1.8	100.0(24)	
직장	12.9	-	-	13.5	73.6	-	-	-	100.0(10)	
$\chi^2(df)$				48.3(35)						
소재지										
대도시	18.7	1.5	3.9	13.2	45.5	10.7	2.9	3.6	100.0(164)	
중소도시	18.1	0.3	5.9	11.9	51.9	6.2	2.1	3.6	100.0(118)	
읍·면	21.1	2.6	1.9	14.0	41.3	11.5	5.8	1.8	100.0(70)	
$\chi^2(df)$				11.1(14)						
규모										
20명 이하	29.8	-	-	-	60.9	5.4	2.2	1.6	100.0(26)	
21~39명	40.4	0.8	8.3	12.1	28.9	9.5	-	-	100.0(36)	
40~79명	17.5	2.0	2.4	13.9	46.2	9.3	1.8	7.0	100.0(129)	
80명 이상	14.6	1.2	4.9	14.2	48.3	10.3	5.2	1.3	100.0(161)	
$\chi^2(df)$				38.8(21)*						
장애아시설										
장애아전문	47.5	2.8	16.2	14.8	9.0	6.2	-	3.5	100.0(43)	
장애아통합	11.0	0.4	4.4	13.4	54.9	5.9	4.9	5.1	100.0(147)	
일반	19.1	1.9	0.2	12.1	48.6	14.1	2.7	1.4	100.0(162)	
$\chi^2(df)$				74.5(14)***						
2012년 조사	12.7	4.5	-	17.7	49.1	13.6	-	2.4	100.0(455)	

* $p < .05$, *** $p < .001$

시설 특성에 따라서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각 54.9%,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보육료단가 인상에 대한 요구가 47.5%로 보조인력 지원 9.0%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다문화 영유아 보육

가. 다문화 가족 영유아의 어려움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장이 파악한 다문화 가족 영유아가 직면한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V-4-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4-1>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어려움

단위: %(개소)

구분	자신감, 자아 정체감 부족	또래 관계 형성	언어 발달 지연	학습 발달 지연	기본생 활습관 문제	위생, 건강 문제	기타	없음	계(수)	$\chi^2(df)$
전체	9.7	8.6	47.3	8.4	9.7	4.7	1.5	10.1	100.0(1,957)	
시설유형										
국공립	12.5	8.0	44.7	11.3	7.8	4.3	1.2	10.2	100.0(389)	
사회복지법인	7.2	7.7	53.7	8.8	7.9	5.8	1.0	7.8	100.0(281)	
법인·단체	5.5	6.5	49.3	9.0	14.0	6.6	1.4	7.9	100.0(199)	80.7
민간	10.5	8.8	47.9	10.0	9.4	3.1	2.1	8.2	100.0(672)	(30)***
가정	9.4	9.3	45.9	1.6	10.9	6.9	0.7	15.2	100.0(372)	
직장	8.9	16.6	29.8	10.6	14.2	-	4.2	15.8	100.0(44)	
소재지										
대도시	10.3	8.8	48.9	7.4	7.1	3.4	2.1	12.2	100.0(663)	
중소도시	11.5	9.1	44.7	8.8	9.3	4.0	1.2	11.4	100.0(672)	37.5 (12)***
읍면	7.1	7.7	48.4	9.2	13.3	7.1	1.1	6.1	100.0(622)	
규모										
20명 이하	9.1	9.0	45.8	2.4	11.4	6.7	0.7	14.9	100.0(385)	
21~39명	7.5	8.0	50.4	5.4	11.5	7.0	1.6	8.5	100.0(314)	59.8
40~79명	9.5	7.9	46.1	10.9	9.9	4.2	2.0	9.4	100.0(610)	(18)***
80명 이상	11.4	9.2	47.9	11.1	7.6	2.9	1.4	8.6	100.0(648)	
2012년 조사	13.4	7.9	40.2	9.8	12.7	4.7	4.8	6.5	100.0(2,151)	

*** $p < .001$

응답된 결과를 보면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 중에서도 언어발달 지연의 문제가 47.3%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는 자신감, 자아

정체감 부족, 기본생활습관 문제가 각 9.7%, 또래관계 형성 문제 8.6%, 학습발달지연 8.4%로 조사되었다.

언어발달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경향은 시설유형, 소재지, 규모에 관계 없이 유사한 현상이나 상대적으로 시설유형 중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나며, 기본생활습관의 문제는 읍·면지역에서 높게 지적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2012년에 비해 언어발달 지연 문제는 더 심각하게 지적되는 것으로 나타나 ('12년 40.2%→'15년 47.3%) 다문화 가족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는 언어발달지연의 문제가 학습발달 지연이나 그에 따른 자신감의 부족이나 또래관계 형성 문제 등을 파생시킬 수 있어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족에서 적절하게 지도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기본생활습관 미형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족지원의 필요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필요성

1) 개요

다문화가족 아동과 부모 지원을 위한 총 7종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실태와 필요성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운영비율은 부모대상 프로그램 중 '부모상담'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55.3%로 가장 운영 비율이 높았고, 아동대상 프로그램 중에서는 한글지도가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 대상 프로그램 중 알림장 번역 서비스는 9.8%로 가장 낮다.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림장 번역 서비스 프로그램 65.7%(매우 필요 11.8%+어느 정도 필요 53.9%) 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현재도 운영 비율이 높은 부모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아 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어느 정도 필요 59.6%+매우 필요 28.4%).

운영 비율에 대한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아동 대상 프로그램 4종은 모두 운영 비율이 하락하였고, 부모 대상 알림장·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만이 소폭 증가하였다. 다만 2012년에 조사되지 않았던 부모대상 상담 프로그램은 55.3%로 비교적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4-2〉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종합

단위: %(개소)

대상	구분	운영 비율		필요 정도				
		2015	2012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아동	사회·정서지원	28.4	36.2	3.5	16.3	60.8	19.4	100.0(2,189)
	이중언어	12.9	13.4	4.1	22.6	58.6	14.7	100.0(2,189)
	인지발달	26.3	37.9	3.5	17.8	60.7	18.0	100.0(2,189)
	한글지도	31.2	43.4	3.5	17.1	58.6	20.8	100.0(2,189)
부모	알림장 등 번역서비스	9.8	8.6	6.5	27.9	53.9	11.8	100.0(2,189)
	부모교육 프로그램	29.1	32.5	3.2	14.9	59.8	22.0	100.0(2,189)
	부모상담	55.3	-	2.2	9.8	59.6	28.4	100.0(2,189)

2) 프로그램별 운영 비율 및 필요성 인지 정도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 및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V-4-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V-4-3〉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

단위: %(개소)

구분	운영비율	필요성 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전체	28.4	3.5	16.3	60.8	19.4	100.0(2,189)
시설유형						
국공립	35.3	3.2	13.4	60.3	23.1	100.0(432)
사회복지법인	29.6	2.8	14.0	57.9	25.3	100.0(310)
법안단체	31.8	6.1	22.1	51.9	19.9	100.0(214)
민간	28.3	2.9	16.2	63.9	17.0	100.0(739)
직장	19.4	4.7	17.3	63.5	14.6	100.0(439)
가정	22.3	-	24.1	50.6	25.3	100.0(55)
$\chi^2(df)$	29.6(5) ^{***}		40.2(15) ^{***}			
소재지						
대도시	31.2	3.8	14.4	62.1	19.7	100.0(756)
중소도시	24.5	3.7	17.8	61.3	17.2	100.0(762)
읍·면	29.4	3.0	16.8	58.5	21.6	100.0(671)
$\chi^2(df)$	9.0(2) [*]		8.2(6)			
규모						
20명 이하	19.7	4.5	18.4	62.6	14.5	100.0(455)
21~39명	27.4	3.2	15.4	62.3	19.1	100.0(345)
40~79명	32.5	3.2	19.0	54.3	23.5	100.0(682)

(표 V-4-3 계속)

구분	운영비율	필요성 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80명 이상	30.3	3.3	12.8	65.3	18.6	100.0(707)
$\chi^2(df)$	22.9(3) ^{***}			30.8(9) ^{***}		
2012년 조사	36.2	10.4	22.2	46.8	20.6	100.0(2,143)

* $p < .05$, *** $p < .001$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고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 중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사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28.4%로 응답되었다. 시설유형과 정원 규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율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35.3%가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운영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비율이 19.4%로 가장 낮았다. 규모별로는 대체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 사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낮았다. 특히 규모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는 19.7%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의 사회·정서 지원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V-4-3 참조).

사회·정서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19.4%이고 60.8%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8%에 해당하였다(전혀 필요하지 않음 3.5%+필요하지 않음 16.3%). 시설유형과 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소재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2012년 조사 결과와 대비 시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36.2%에서 28.4%로 7.8%p 감소하였다. 반대로, 필요하다는 인식은 67.4%에서 80.2%로 증가하였다.

<표 V-4-4>는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이중언어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 및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12.9%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직장어린이집이 6.0%로 운영 비율이 가장 낮고, 나머지 유형의 경우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20%이하에 불과하여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중 운영 비율이 가장 낮은 프로그램이었다.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일수록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아, 20명 이하 정원 규모의 어린이집은 전체의 5.9%만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표 V-4-4〉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이중언어 프로그램

단위: %(개소)

구분	운영비율	필요성 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전체	12.9	4.1	22.6	58.6	14.7	100.0(2,189)
시설유형						
국공립	16.1	3.7	20.2	60.8	15.2	100.0(432)
사회복지법인	14.4	4.6	20.9	54.5	19.9	100.0(310)
법인·단체	17.1	6.6	28.0	48.4	16.9	100.0(214)
민간	13.6	3.6	21.7	61.2	13.4	100.0(739)
직장	6.0	4.5	24.3	60.1	11.1	100.0(439)
가정	9.2	-	29.1	51.7	19.1	100.0(55)
$\chi^2(df)$	26.8(5)***		30.7(15)*			
소재지						
대도시	14.5	4.2	20.0	60.6	15.1	100.0(756)
중소도시	11.9	4.1	23.9	59.1	12.8	100.0(762)
읍·면	12.3	4.1	24.1	55.4	16.4	100.0(671)
$\chi^2(df)$	2.6(2)		8.5(6)			
규모						
20명 이하	5.9	4.4	25.1	59.4	11.2	100.0(455)
21~39명	11.4	4.9	21.7	58.9	14.5	100.0(345)
40~79명	15.4	4.1	24.9	54.3	16.8	100.0(682)
80명 이상	15.7	3.8	19.1	62.1	15.0	100.0(707)
$\chi^2(df)$	27.6(3)***		16.8(9)			
2012년 조사	13.4	13.4	33.9	41.1	11.6	100.0(2,135)

* $p < .05$, *** $p < .001$

한편, 이중언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전체의 58.6%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2.6%,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1%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73.3%(어느 정도 필요+매우 필요)로 높게 나타났다.

2012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이중언어 프로그램의 운영 비율은 13.4%에서 12.9%로 미미하게나마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52.7%에서 73.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추후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에도 낮은 운영비율을 보이는 이유, 운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다음 〈표 V-4-5〉는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인지발달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 및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로, 인지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26.3%로 조사되었다.

〈표 V-4-5〉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인지발달 프로그램

단위: %(개소)

구분	운영비율	필요성 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전체	26.3	3.5	17.8	60.7	18.0	100.0(2,189)
시설유형						
국공립	28.5	3.5	16.1	59.9	20.5	100.0(432)
사회복지법인	31.6	2.3	12.6	61.6	23.4	100.0(310)
법인·단체	30.2	5.7	21.9	52.2	20.2	100.0(214)
민간	27.9	2.7	18.1	63.1	16.1	100.0(739)
직장	17.5	4.8	20.2	61.2	13.8	100.0(439)
가정	11.1	-	23.5	57.3	19.2	100.0(55)
$\chi^2(df)$	31.8(5)***		34.5(15)**			
소재지						
대도시	27.8	3.4	15.8	62.7	18.1	100.0(756)
중소도시	23.0	3.8	19.9	60.6	15.7	100.0(762)
읍·면	28.2	3.2	18.0	58.3	20.5	100.0(671)
$\chi^2(df)$	6.4(2)*		8.5(6)			
규모						
20명 이하	17.7	4.7	21.2	60.4	13.8	100.0(455)
21~39명	24.5	3.6	17.6	63.3	15.5	100.0(345)
40~79명	29.2	3.2	19.1	56.7	21.1	100.0(682)
80명 이상	29.7	2.9	14.6	63.5	18.9	100.0(707)
$\chi^2(df)$	24.0(3)***		22.3(9)**			
2012년 조사	37.9	10.8	23.9	44.7	20.6	100.0(2,140)

* $p < .05$, ** $p < .01$, *** $p < .001$

인지발달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시설유형, 소재지, 규모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법인·단체어린이집의 운영비율이 높은 편으로 각각 31.6%, 30.2% 비율로 인지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가장 운영 비율이 낮은 유형은 가정어린이집으로 11.1%만이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에서의 운영비율이 가장 높아 28.2%이고, 중소도시 지역이 운영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23.0%). 한편, 규모별로는 규모가 20명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의 17.7%가, 21~39명인 경우 24.5%, 40~79명인 경우 29.2%, 80명 이상은 29.7%에서 인지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규모가 클수록 운영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문화가족 자녀 인지발달 프로그램 필요성 또한 전체의 60.7%가 어느 정도 필요, 매우 필요 18.0%로 80% 가까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필요성 인지 정도는 시설유형별,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인지발달 프로그램도 운영비율이 감소한 반면(2012년 37.9%→2015년 26.3%),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65.3%에서 78.7%로 대폭 증가하였다.

다음 <표 V-4-6>은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한글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 및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중 4번째로 한글지도 프로그램 운영 비율을 살펴 본 결과, 전체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의 31.2%로 조사되었다. 시설 유형별, 소재지별, 규모별 운영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각각 41.6%, 36.7%로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뒤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단체어린이집이 각각 34.2%, 34.5%로 유사한 수준이며, 가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한글지도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각각 16.2%, 11.8%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에서 운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35.9%)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운영비율이 낮아서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11.8%의 운영비율을 보였다.

한글지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0.8%이고 58.6%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필요성을 인지하는 비율이 79.4%에 달하였다. 시설유형 및 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2012년 조사 결과 대비 한글지도 프로그램 운영 비율도 43.4%에서 31.2%로 10%p 이상 감소하였고, 반면 필요성 인식 정도는 66.0%에서 79.4%로 대폭 상승하였다.

<표 V-4-6>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한글지도 프로그램

단위: %(개소)

구분	운영비율	필요성 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전체	31.2	3.5	17.1	58.6	20.8	100.0(2,189)
시설유형						
국공립	34.2	3.1	13.1	64.2	19.6	100.0(432)
사회복지법인	41.6	2.3	13.5	54.2	30.0	100.0(310)
법인·단체	34.5	5.4	21.2	53.5	19.8	100.0(214)
민간	36.7	2.7	17.6	58.0	21.7	100.0(739)

(표 V-4-6 계속)

구분	운영비율	필요성 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직장	11.8	5.6	20.3	59.3	14.8	100.0(439)
가정	16.2	-	21.0	59.1	19.9	100.0(55)
$\chi^2(df)$	108.3(5)***		46.7(15)***			
소재지						
대도시	30.9	3.7	15.6	60.6	20.1	100.0(756)
중소도시	27.5	4.0	18.4	59.2	18.4	100.0(762)
읍면	35.9	2.6	17.3	55.7	24.4	100.0(671)
$\chi^2(df)$	11.6(2)**		11.4(6)			
규모						
20명 이하	11.8	5.4	20.9	58.9	14.8	100.0(455)
21~39명	29.9	4.1	17.8	59.3	18.8	100.0(345)
40~79명	36.1	2.8	18.3	54.6	24.3	100.0(682)
80명 이상	39.3	2.7	13.1	62.1	22.1	100.0(707)
$\chi^2(df)$	104.6(3)***		34.0(9)***			
2012년 조사	43.4	10.6	23.4	43.2	22.8	100.0(2,144)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영유아 대상이 아닌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비율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알림장가정통신문 외국어 작성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 및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V-4-7>과 같다.

알림장·가정통신문 등 부모가 확인하여야 하는 배부물을 외국어로 작성하여 배부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8%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재지와 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가장 높아 11.9%였으며, 읍면지역 9.1%, 중소도시 8.0%의 운영비율을 나타냈다. 규모별로는 20명을 초과한 규모의 어린이집에서는 대체로 10% 정도의 운영 비율을 보임에 반해 20명 이하 규모의 어린이집에서는 약 6% 수준의 운영비율로 현저히 낮았다.

다문화가족의 알림장·가정통신문 외국어로 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3.9%, 매우 필요하다는 11.8%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65.7%).

2012년 대비 운영비율은 다소 증가하였고(2012년 8.6%→2015년 9.8%),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폭 증가하였다(2012년 43.5%→65.7%)

〈표 V-4-7〉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알림장 등 외국어로 작성

단위: %(개소)

구분	운영비율	필요성 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전체	9.8	6.5	27.9	53.9	11.8	100.0(2,189)
시설유형						
국공립	10.4	6.4	27.6	53.0	13.0	100.0(432)
사회복지법인	10.0	5.9	24.3	52.9	16.9	100.0(310)
법인·단체	9.4	9.7	32.0	46.8	11.6	100.0(214)
민간	11.3	5.9	28.2	56.0	9.9	100.0(739)
직장	6.2	7.2	27.9	55.2	9.7	100.0(439)
가정	11.2	2.0	28.4	54.1	15.5	100.0(55)
$\chi^2(df)$	8.5(5)		23.1(15)			
소재지						
대도시	11.9	7.1	26.5	53.8	12.6	100.0(756)
중소도시	8.0	6.1	27.9	55.8	10.2	100.0(762)
읍·면	9.1	6.2	29.5	51.8	12.5	100.0(671)
$\chi^2(df)$	6.9(2) [*]		9.7(6)			
규모						
20명 이하	6.0	6.9	28.7	54.6	9.8	100.0(455)
21~39명	10.8	6.5	24.9	56.9	11.7	100.0(345)
40~79명	11.1	7.1	32.1	47.2	13.6	100.0(682)
80명 이상	10.3	5.7	24.6	58.4	11.3	100.0(707)
$\chi^2(df)$	9.2(3) [*]		22.0(9) ^{**}			
2012년 조사	8.6	17.0	39.5	34.6	8.9	100.0(2,131)

* $p < .05$, ** $p < .01$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는 〈표 V-4-8〉에 제시되었다.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29.1%로 나타났으며, 시설유형 및 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시설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34.2%로 가장 높았고, 그에 반해 가정어린이집은 17.0%로 나타나 어린이집 시설 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40~79명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33.6%의 운영 비율을 보여 가장 높았고, 20명 이하 규모 어린이집은 23.3%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59.8%, 매우 필요하다 22.0%로 81.8%의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필요성 인식이 매우 높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에 비해서는 역시 32.5%에서 29.1%로 운영 비율은 낮아졌고, 필요하다

는 인식은 69.7%에서 81.8%로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4-8〉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부모교육 프로그램

단위: %(개소)

구분	운영비율	필요성 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전체	29.1	3.2	14.9	59.8	22.0	100.0(2,189)
시설유형						
국공립	34.2	3.3	10.2	62.0	24.6	100.0(432)
사회복지법인	33.9	2.3	14.0	53.5	30.2	100.0(310)
법인·단체	27.6	3.6	21.0	55.5	19.9	100.0(214)
민간	29.0	3.0	15.5	63.1	18.4	100.0(739)
직장	22.9	4.6	16.5	58.8	20.1	100.0(439)
가정	17.0	-	17.1	55.2	27.7	100.0(55)
$\chi^2(df)$	20.4(5)**		39.8(15)***			
소재지						
대도시	29.6	3.5	13.0	60.1	23.5	100.0(756)
중소도시	26.4	3.6	16.1	62.7	17.7	100.0(762)
읍·면	31.5	2.6	15.9	56.3	25.2	100.0(671)
$\chi^2(df)$	4.4(2)		16.9(6)*			
규모						
20명 이하	23.3	4.4	17.2	58.5	19.9	100.0(455)
21~39명	27.2	3.2	14.1	61.8	21.0	100.0(345)
40~79명	33.6	3.1	16.0	55.5	25.4	100.0(682)
80명 이상	29.2	2.7	12.9	63.9	20.4	100.0(707)
$\chi^2(df)$	14.4(3)**		16.2(9)			
2012년 조사	32.5	9.1	21.2	48.1	21.6	100.0(2,141)

* $p < .05$, ** $p < .01$, *** $p < .001$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중 마지막으로 부모 대상 프로그램인 부모상담의 운영 여부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표 V-4-9〉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부모상담 운영 비율은 55.3%로 다문화 가정 대상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이 59.8%의 운영비율을 보여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밖에 국공립어린이집 58.1%, 민간 어린이집 56.3%, 법인·단체어린이집 55.7%로 50%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며, 직장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비율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재지별로는 중소도시의 운영비율이 50.0%로 대도시 58.9%, 읍면지역 57.0%에 비해 다소 낮은 운영비율을 보였다. 규모별로는 40~79명 이하 어린이집에서 가장 운영비율이 높아 60.8%에 달한 반면 20명 이하 규모 어린이집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 비율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47.4%).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8%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어느 정도 필요 59.6%+매우 필요 28.4%)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표 V-4-9〉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비율 및 필요성: 부모상담

구분	운영비율	필요성 정도						단위: %(개소)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전체	55.3	2.2	9.8	59.6	28.4	100.0(2,189)		
시설유형								
국공립	58.1	2.5	7.6	58.9	30.9	100.0(432)		
사회복지법인	59.8	1.9	7.8	54.9	35.4	100.0(310)		
법인·단체	55.7	2.2	11.3	56.4	30.0	100.0(214)		
민간	56.3	1.8	10.3	62.0	26.0	100.0(739)		
직장	48.0	3.0	12.3	61.4	23.3	100.0(439)		
가정	49.8	-	9.5	56.2	34.3	100.0(55)		
$\chi^2(df)$	14.1(5)*		24.4(15)					
소재지								
대도시	58.9	2.0	8.5	60.9	28.6	100.0(756)		
중소도시	50.0	2.7	11.1	60.7	25.5	100.0(762)		
읍면	57.0	1.9	10.1	56.7	31.3	100.0(671)		
$\chi^2(df)$	13.4(2)**		9.7(6)					
규모								
20명 이하	47.4	2.9	13.1	60.9	23.0	100.0(455)		
21~39명	54.1	2.2	9.5	60.3	28.0	100.0(345)		
40~79명	60.8	1.8	10.4	54.1	33.7	100.0(682)		
80명 이상	55.3	2.1	7.5	63.8	26.6	100.0(707)		
$\chi^2(df)$	19.7(3)***		28.6(9)**					

* $p < .05$, ** $p < .01$, *** $p < .001$

다. 다문화 이해 교육 운영 현황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제공 현황 및 교육 제공 방법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V-4-10〉과 같다.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전체의 49.6%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비율을 시설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64.9%로 가장 실시 비율이 높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54.0%, 법인·단체 어린이집 52.5% 순으로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직장, 가정어린이집

은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행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29.0%, 31.9%에 불과했다. 소재지별로는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행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대도시 지역 51.1%로 가장 높고, 읍·면지역 50.4%, 중소도시 47.2% 순으로 나타났다. 정원규모별로는 규모가 큰 어린이집 일수록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행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기회 제공 방법은 보수교육 시 제공한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높고, 이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에 참여기회 제공이 38.2%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10.5%, 기타 6.4%, 외부강사 초빙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방법으로는 원내 자체에서 자료나 도서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사 회의나 토론 등의 방법이 해당되었으며, 자자체나 다문화센터상담사의 방문 교육도 응답되었다.

〈표 V-4-10〉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기회 제공 비율 및 방법

단위: %(개소)

구분	제공 비율	교육 기회 제공 방법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교육	보수 교육시	외부 강사 초빙	인터넷	기타	계(수)
전체	49.6	38.2	39.8	5.1	10.5	6.4	100.0(1,070)
시설유형							
국공립	64.9	42.6	35.1	8.5	6.6	7.3	100.0(278)
사회복지법인	54.0	39.1	43.8	2.6	6.7	7.8	100.0(161)
법인·단체	52.5	33.2	45.3	1.7	12.5	7.3	100.0(107)
민간	49.4	39.6	36.6	4.3	13.8	5.6	100.0(364)
가정	31.9	27.4	48.9	5.8	13.1	4.8	100.0(143)
직장	29.0	42.7	48.7	-	8.6	-	100.0(17)
$\chi^2(df)$	106.7(5)***		14.3(8)				
소재지							
대도시	51.1	39.9	38.9	4.4	9.5	7.3	100.0(384)
중소도시	47.2	31.1	43.7	5.9	12.9	6.4	100.0(350)
읍·면	50.4	43.7	36.9	5.0	9.2	5.2	100.0(336)
$\chi^2(df)$	41.4(20)**		79.7(3)***				
규모							
20명 이하	32.3	28.2	46.9	5.5	14.8	4.6	100.0(151)
21~39명	44.9	32.3	43.8	2.3	16.4	5.1	100.0(149)
40~79명	55.5	42.6	38.2	3.8	9.9	5.6	100.0(370)
80명 이상	56.9	39.8	37.4	7.2	7.3	8.2	100.0(400)
$\chi^2(df)$	2.6(2)		32.9(12)**				
2012년 조사	45.6	40.9	35.8	5.4	6.3	11.6	100.0(989)

** $p < .01$, *** $p < .001$

시설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 교육 참여 기회 제공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가정, 직장어린이집에서는 보수교육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 교육 참여 기회 제공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에서는 보수교육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일수록 보수교육시에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제공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제공 비율은 2012년 조사 시점 대비 4.0%p 상승하였고, 2012년에 비해 보수교육시 제공한다는 비율과 인터넷을 통한 교육 기회 제공 비율이 높아졌다.

다음은 일반아동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 결과는 <표 V-4-11>과 같다.

일반아동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4.5%이며,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1년에 1회 33.5%, 학기당 1회 29.1%, 분기당 1회 20.5%, 월 1회 이상 16.9%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유형은 국공립어린이집이며(71.5%), 반대로 실시율이 가장 낮은 시설유형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실시율은 31.5%였다.

다른 시설 유형에 비해 일반 아동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비율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는 비율이 29.7%, 학기당 1회 25.9%, 분기당 1회 22.7%, 월 1회 이상 21.7%이었다. 소재지별로는 일반아동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 59.9%로 가장 높고, 읍·면지역 54.6%, 중소도시 48.7%순이었다. 또한 시설 정원규모가 클수록 일반아동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중이 높았다. 규모가 큰 8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서는 전체의 34.2%만이 일반아동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데 반해, 20명 이하의 어린이집 가운데에서는 68.1%에 달하는 곳에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단, 2012년 조사 결과 대비 일반아동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비율은 상승하였고(실시 비율이 '12년 47.0%에서 '15년 54.5%로 증가함) 교육 실시 주기도 빨라져서, 월 1회 이상 실시한다는 비율이 16.6%에서 16.9%로 높아지고 1년 1회 실시 비율은 반대로 감소되었다('12년 34.3% → '15년 33.5%)

〈표 V-4-11〉 일반아동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실시함	교육 주기				
		1년 1회	학기당 1회	분기당 1회	월 1회 이상	계(수)
전체	54.5	33.5	29.1	20.5	16.9	100.0(1,200)
시설유형						
국공립	71.5	29.7	25.9	22.7	21.7	100.0(313)
사회복지법인	55.1	36.5	32.6	18.5	12.4	100.0(178)
법인·단체	64.2	36.0	31.7	15.8	16.5	100.0(139)
민간	53.5	33.8	30.1	20.6	15.5	100.0(399)
가정	31.5	30.6	26.1	23.9	19.4	100.0(134)
직장	66.6	48.6	29.7	16.2	5.4	100.0(37)
$\chi^2(df)$	153.5(5)***			20.4(15)		
소재지						
대도시	59.9	30.2	23.0	21.6	25.2	100.0(453)
중소도시	48.7	35.0	32.3	19.7	12.9	100.0(371)
읍·면	54.6	35.9	33.2	19.9	10.9	100.0(376)
$\chi^2(df)$	19.3(2)***			46.7(6)***		
규모						
20명 이하	31.9	31.2	26.2	24.1	18.4	100.0(141)
21~39명	41.8	32.0	29.3	23.8	15.0	100.0(147)
40~79명	63.8	34.2	25.7	21.1	19.0	100.0(436)
80명 이상	65.8	34.0	33.0	17.9	15.1	100.0(476)
$\chi^2(df)$	170.9(3)***			9.0(9)		
2012년 조사	47.0	34.3	32.1	17.0	16.6	100.0(1,142)

*** $p < .001$

한편, 다문화가족 부모에게 일반 아동부모와 다르게 추가적인 부모면담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는 〈표 V-4-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 1~2회 추가로 면담을 더 실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서 43.3%에 달하였고, 일반 아동과 비슷하게 실시가 39.7%, 연 3~4회 더 실시 11.0%, 연 7회 이상 더 많이 실시 3.2%, 연 5~6회 더 실시 2.8%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에 따르면 2012년 대비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면담 실시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일반 아동과 비슷하게 실시한다는 비율이 73.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추가적으로 1~2회 면담을 더 실시한다는 응답이 43.3%에 달해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 부모를 위한 면담 운영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일반 아동보다 연 1~2회 더 추가면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47.2%로 가장 높았고, 민간어린이집 46.8%, 국공립어린이집이 45.9% 순으로 높은 편이며,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낮아서 35.2% 수준으로 나

타난다. 가정어린이집은 일반아동과 비슷하게 실시한다는 비율이 46.8%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48.2%로 일반 아동 보다 1~2회 추가 면담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41.9%), 대도시 (40.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규모별로는 일반 아동보다 연 1~2회 추가면담을 더 실시한다는 비율이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V-4-12〉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추가 부모면담 실시 여부

구분	일반 비슷	연 더 실시	연 더 실시	연 더 실시	연 더 실시	단위: %(개소)	
						계(수)	$\chi^2(df)$
전체	39.7	43.3	11.0	2.8	3.2	100.0(1,014)	
시설유형							
국공립	37.0	45.9	11.8	2.3	3.0	100.0(191)	
사회복지법인	37.7	47.2	9.7	1.7	3.6	100.0(146)	
법인·단체	47.0	35.4	8.7	5.4	3.4	100.0(88)	20.2(20)
민간	35.8	46.8	12.0	2.8	2.5	100.0(366)	
가정	46.8	35.2	10.2	3.5	4.4	100.0(202)	
직장	44.6	41.3	14.1	-	-	100.0(21)	
소재지							
대도시	43.9	40.8	10.9	2.4	2.0	100.0(360)	
중소도시	39.0	41.9	13.3	1.9	3.9	100.0(360)	15.6(8)*
읍·면	35.1	48.2	8.4	4.5	3.8	100.0(294)	
규모							
20명 이하	47.5	34.9	9.9	3.4	4.2	100.0(206)	
21~39명	38.7	35.7	16.6	3.3	5.7	100.0(154)	35.7(12)***
40~79명	34.1	47.5	10.8	4.3	3.2	100.0(325)	
80명 이상	40.8	47.9	9.4	0.7	1.2	100.0(329)	
2012년 조사	73.0	18.7	5.4	1.1	1.8	100.0(2,148)	

* $p < .05$, *** $p < .001$

5. 시사점

이 장에서는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결과 어린이집에서는 현재 만2세반 운영 비율이 가장 높고(95.3%), 만1세반 91.6%, 만0세반 58.3% 순으로 영아반 운영 비율이 나타나며 3~5세 유아반의 운

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특히 만5세반의 운영 비율은 39.2%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 어린이집이 영아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단, 이는 영아를 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어린이집 중에서도 시설 규모나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며, 특히 80인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반의 운영 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의 시설 유형과 규모별 차이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어린이집의 취업모 가정 아동의 보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 아동 중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53.2%로 반수를 다소 넘는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취업모 가정의 유아보다 취업모 가정의 영아의 보육 비율이 높고, 가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특히 취업모 가정 영아 보육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 유형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가정의 유아 보육 비율이 높은 시설 유형은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장애아,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유형의 영유아가 전체 보육 아동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살펴 본 결과,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전체 보육 아동 중 다문화 가정 영유아는 4.9%, 장애 영유아는 1.3%, 조손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영유아 비율은 1.8%로 2012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은 2012년 대비 증가하여 4.3%의 영유아가 이용하며, 이 중 이용 영아가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며, 시간연장 보육은 주로 취업모 가정 영유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연장보육 외 야간24시간 보육, 토요보육 등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는 2012년 대비 유사한 수준이나 감소 경향을 보이며, 특히 토요보육 이용 아동 수는 크게 감소하여서 향후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2012년 대비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 초과 반 운영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다.

한 연령반이라도 반별 정원 초과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 중 22.5%였으며, 반별 정원 초과반 운영 비율은 만2세반 15.3%, 1세반 11.4%, 3세반 4.2%로 2012년 만1세반 23.3%, 만2세반 21.7%, 만3세반의 8.5%가 정원 초과반으로 운영되었던 결과와 비교 시 상당히 개선된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장애아 보육 시설의 운영 현황과 보육 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으나 장애아 전문 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비율이 44.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지정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장애아전문/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기준을 미충족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53.8%). 이에 신청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면이 있지 않은지 검토를 해 볼 필

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장애아보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어린이집들은 보조인력 지원(46.4%)과 장애아보육료단가 인상(19.1%)를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양질의 장애아 보육을 위해서는 보조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조교사 배치에 있어 장애아보육 시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여섯째, 다문화 가족 영유아는 언어발달지연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 지연은 이로 인한 학습발달 지연, 자신감·자아정체감 부족, 또래관계 형성 문제 등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결과, 2012년 대비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감소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다문화 가족 영유아의 언어발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중언어, 한글지도, 인지발달 지원 프로그램은 더욱 더 권장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2012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비율이 낮은 원인에 대한 심도 깊은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II. 보육 프로그램 운영

제6장은 보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이다. 제1절은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환경 구성으로 보육과정 운영 수준, 영역별 보육활동 실시 정도, 영역별 교재교구 비치, 활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제2절은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개선요구 등을 파악하였고, 제3절은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 비용, 프로그램 개수, 운영방식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2015년 보육프로그램 조사에서는 2012년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2013년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된 이후 국가수준에서는 처음으로 3-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 만족도, 어려움 등을 살펴보아 향후 누리과정 실행에 있어 개선사항을 모색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보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구성

제1절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수준과 보육환경 구성 실태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육과정 운영 수준, 영유아의 영역별 보육활동 실시 정도, 영역별 교재교구 비치정도 및 활용정도, 참고자료 활용 현황, 보육과정 운영 시 강조점을 분석하였다.

가. 보육과정 운영 수준

보육과정 운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보육계획안의 영유아 개별 특성 반영 여부, 보육내용의 연계성 고려, 통합적인 일과운영, 활동 특성 간 균형성, 정기적 평가 및 결과 반영 여부의 4개 항목에 대해 시설유형별로 4점 척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4개 항목 모두 4점을 기준으로 3.4점~3.8점의 분포를 보여 전반적인 운영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에서도 보육계획안을 '영유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성 있게 수립'하는지에 대한 점수가 전체 평균 3.73점으로 가장 높게, 보육과정의 '정기적 평가 및 결과 반영 여부'에 대한 항목이 전체 평균 3.54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과정의 정기적 평가 및 결과를 반영하는지에 대해 '별로 아님'에 응답한 비율이 8.6%로 타 시설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 보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유추된다.

2009년과 2012년 조사에서의 각 항목별 집계 점수와 대조해볼 때, 2015년 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소폭씩 상승한 것을 미루어 보아 매년마다 조사에 참여한 보육시설들의 보육과정 운영 수준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1〉 보육과정 운영 수준

구분	전혀 아님	별로 아님	그런 편임	매우 그리함	계(수)	단위: %(개소), 점 4점 평균
영유아를 고려한 보육계획안 수립						
전체	-	0.2	26.7	73.0	100.0(4,046)	3.73
국공립	-	-	13.3	86.7	100.0(506)	3.87
사회복지법인	-	0.5	19.1	80.5	100.0(377)	3.80
법인·단체	-	0.4	28.8	70.8	100.0(283)	3.70
민간	-	-	28.6	71.3	100.0(1,134)	3.71
가정	-	0.4	33.2	66.4	100.0(1,480)	3.66
직장	-	-	17.3	82.7	100.0(266)	3.83
$\chi^2(df)/F$			115.5(10)***			22.1***
통합적 일과운영						
전체	-	0.6	29.5	69.9	100.0(4,046)	3.69
국공립	-	0.2	16.2	83.6	100.0(506)	3.83
사회복지법인	0.1	0.2	19.6	80.1	100.0(377)	3.80
법인·단체	-	0.8	29.2	70.0	100.0(283)	3.69
민간	-	0.7	35.3	64.0	100.0(1,134)	3.63
가정	0.1	0.8	34.3	64.9	100.0(1,480)	3.64
직장	-	-	17.9	82.1	100.0(266)	3.82
$\chi^2(df)/F$			122.8(15)***			24.6***
다양한 활동 균형있게 계획						
전체	-	0.8	30.5	68.7	100.0(4,046)	3.68
국공립	-	-	15.2	84.8	100.0(506)	3.85
사회복지법인	-	-	19.8	80.2	100.0(377)	3.80
법인·단체	-	0.5	27.7	71.8	100.0(283)	3.71
민간	-	0.7	36.3	63.1	100.0(1,134)	3.62
가정	0.1	1.4	36.9	61.6	100.0(1,480)	3.60
직장	-	0.5	17.5	81.9	100.0(266)	3.81
$\chi^2(df)/F$			170.4(15)***			34.0***
정기적 평가 및 결과 반영						
전체	0.1	5.2	35.3	59.4	100.0(4,046)	3.54
국공립	-	0.5	20.4	79.1	100.0(506)	3.79
사회복지법인	-	3.1	21.9	75.0	100.0(377)	3.72
법인·단체	-	4.7	31.4	63.9	100.0(283)	3.59
민간	0.1	4.6	42.2	53.2	100.0(1,134)	3.48
가정	0.2	8.6	42.4	48.8	100.0(1,480)	3.40

(표 VI-1-1 계속)

구분	전혀 아님	별로 아님	그런 편임	매우 그리함	계(수)	4점 평균
직장	-	2.1	17.6	80.3	100.0(266)	3.78
X ² (df)/F			282.9(15) ^{***}			55.1 ^{***}
2012년 조사						
보육계획안 수립	0.3	0.6	34.1	65.0	100.0(3,996)	3.64
통합적 일과운영	3.1	6.2	41.8	48.9	100.0(3,999)	3.37
다양한 활동 계획	0.2	1.2	39.0	59.6	100.0(3,999)	3.58
평가 및 결과 반영	0.6	8.5	44.8	46.1	100.0(3,997)	3.36
2009년 조사						
보육계획안 수립	1.2	0.8	31.2	66.8	100.0(1,295)	3.6
통합적 일과운영	5.6	9.3	45.0	40.1	100.0(1,295)	3.2
다양한 활동 계획	1.2	3.0	38.6	57.2	100.0(1,294)	2.5
평가 및 결과 반영	1.3	6.3	43.3	49.0	100.0(1,295)	3.4

*** $p < .001$

주: 점수가 높을수록 운영수준이 높음.

나. 영역별 보육활동 실시정도

영역별 보육활동 실시 정도에 대해 영아반(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과 유아반(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을 구분하여 4점 척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총 6개 영역에 대한 영아반의 보육활동 실시 정도를 살펴보면(표 VI-1-2 참고), 기본생활 및 신체운동 영역의 경우 전체 평균 3.66점으로 실시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 영역의 경우 전체 평균 3.5점대로 약간 낮았다.

〈표 VI-1-2〉 영아반 영역별 보육활동 실시정도: 4점 평균

구분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단위: 점(개소)
							(수)
전체	3.66	3.66	3.62	3.61	3.53	3.51	(4,006)
시설유형							
국공립	3.73	3.74	3.70	3.72	3.66	3.63	(503)
사회복지법인	3.70	3.71	3.65	3.63	3.56	3.57	(373)
법인·단체	3.64	3.65	3.59	3.59	3.54	3.53	(281)
민간	3.62	3.61	3.57	3.55	3.47	3.45	(1,112)
가정	3.64	3.65	3.61	3.58	3.49	3.46	(1,479)
직장	3.74	3.73	3.74	3.73	3.67	3.63	(258)
F	5.9***	7.2***	7.5***	11.4***	12.3***	11.8***	

(표 VI-1-2 계속)

구분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수)
소재지							
대도시	3.69	3.67	3.65	3.64	3.55	3.52	(1,448)
중소도시	3.63	3.64	3.60	3.58	3.52	3.48	(1,613)
읍면	3.65	3.68	3.60	3.60	3.51	3.53	(945)
<i>F</i>	5.5**	1.7	4.3*	4.5**	1.7	1.9	
규모							
20명 이하	3.64	3.65	3.61	3.58	3.49	3.46	(1,517)
21~39명	3.64	3.60	3.59	3.57	3.47	3.44	(615)
40~79명	3.67	3.68	3.64	3.62	3.57	3.54	(980)
80명 이상	3.70	3.70	3.66	3.66	3.59	3.59	(894)
<i>F</i>	2.9*	5.8**	3.1*	5.8**	10.2***	12.3***	

* $p < .05$, ** $p < .01$, *** $p < .001$

주: 점수가 높을수록 실시정도가 높음.

총 5개 영역에 대한 유아반의 보육활동 실시 정도를 살펴보면(표 VI-1-3 참고),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경우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의 경우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 3.69 점~3.62점으로 실시 정도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이 전 영역 평균 점수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0.2점 가량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규모별로는 20명 이하 시설이 전 영역에서 평균 3.33점~3.45점으로 다른 규모 시설들에 비해 영역별 보육활동 실시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영역별 보육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VI-1-3〉 유아반 영역별 보육활동 실시정도: 4점 평균

구분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단위: 점(개소)
전체	3.70	3.69	3.68	3.64	3.62	(2,268)	
시설유형							
국공립	3.76	3.76	3.76	3.71	3.66	(460)	
사회복지법인	3.73	3.69	3.69	3.66	3.63	(353)	
법인·단체	3.67	3.63	3.63	3.58	3.58	(269)	
민간	3.66	3.66	3.64	3.60	3.59	(888)	
가정	3.46	3.47	3.47	3.38	3.41	(54)	
직장	3.73	3.76	3.75	3.72	3.71	(244)	
<i>F</i>	5.5***	6.6***	6.9***	7.5***	4.0**		
소재지							
대도시	3.70	3.71	3.70	3.66	3.63	(848)	

(표 VI-1-3 계속)

구분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수)
중소도시	3.68	3.68	3.66	3.63	3.60	3.60	(747)
읍면	3.71	3.67	3.67	3.62	3.63	3.63	(673)
F	1.0	1.1	1.4	0.9	0.6		
규모							
20명 이하	3.44	3.45	3.42	3.33	3.37	3.37	(72)
21~39명	3.63	3.62	3.58	3.56	3.50	3.50	(386)
40~79명	3.70	3.69	3.69	3.64	3.63	3.63	(910)
80명 이상	3.74	3.73	3.73	3.70	3.68	3.68	(900)
F	11.4***	9.8***	14.6***	14.8***	13.2***		

** $p < .01$, *** $p < .001$

주: 점수가 높을수록 실시정도가 높음.

다. 영역별 교재교구 비치정도 및 활용정도

영역별 교재교구 비치정도 및 활용정도를 영아반(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과 유아반(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을 구분하여 4점 척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총 6개 영역에 대한 영아반의 영역별 교재교구 비치정도를 살펴보면(표 VI-1-4 참고), 각 영역별로 평균 3.32점~3.44점의 분포를 보였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생활영역과 자연탐구영역 교재교구의 경우 법인·단체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각 영역별 비치정도가 타 시설유형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금 낮은 반면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모든 영역에서 전체 평균에 비해 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전 영역의 비치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4〉 영아반 영역별 교재교구 비치정도: 4점 평균

구분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단위: 점(개소)
전체	3.43	3.42	3.44	3.42	3.39	3.32	(4,006)
시설유형							
국공립	3.60	3.58	3.62	3.59	3.59	3.51	(503)
사회복지법인	3.52	3.52	3.53	3.47	3.45	3.45	(373)
법인·단체	3.39	3.43	3.47	3.47	3.45	3.38	(281)
민간	3.35	3.34	3.35	3.32	3.30	3.22	(1,112)
가정	3.39	3.38	3.39	3.37	3.33	3.26	(1,479)
직장	3.58	3.59	3.64	3.61	3.60	3.52	(258)

(표 VI-1-4 계속)

구분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수)
F	18.7***	17.5***	24.2***	21.9***	23.4***	22.1***	
소재지							
대도시	3.48	3.46	3.48	3.46	3.43	3.34	(1,448)
중소도시	3.39	3.38	3.41	3.39	3.36	3.29	(1,613)
읍·면	3.41	3.44	3.44	3.40	3.38	3.35	(945)
F	8.5***	5.7**	6.0**	5.9**	4.5*	3.3*	
규모							
20명 이하	3.39	3.39	3.40	3.37	3.33	3.26	(1,517)
21~39명	3.34	3.31	3.38	3.33	3.30	3.20	(615)
40~79명	3.47	3.47	3.50	3.47	3.45	3.40	(980)
80명 이상	3.50	3.53	3.52	3.49	3.49	3.44	(894)
F	11.9***	17.3***	12.7***	14.0***	18.6***	23.0***	

* $p < .05$, ** $p < .01$, *** $p < .001$

주: 점수가 높을수록 비치정도가 높음.

총 5개 영역에 대한 유아반의 영역별 교재교구 비치정도를 살펴보면(표 VI-1-5 참고), 자연탐구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평균 3.5점대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사회관계 및 예술경험 영역의 교재교구의 비치정도가 모두 3.17점으로 타 시설유형에 비해 약 0.2점~0.3점 가량 낮았다. 반면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전체 평균에 비해 전 영역에 대한 점수가 약 0.1 점 가량 높게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유아반 각 영역별 교재교구 비치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5〉 유아반 영역별 교재교구 비치정도: 4점 평균

단위: 점(개소)

구분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수)
전체	3.50	3.54	3.52	3.51	3.46		(2,268)
시설유형							
국공립	3.61	3.66	3.65	3.64	3.55		(460)
사회복지법인	3.56	3.58	3.56	3.54	3.51		(353)
법인·단체	3.50	3.51	3.48	3.51	3.42		(269)
민간	3.42	3.45	3.43	3.42	3.40		(888)
가정	3.27	3.26	3.17	3.17	3.21		(54)
직장	3.60	3.68	3.63	3.63	3.57		(244)
F	10.1***	14.4***	14.5***	14.0***	7.2***		
소재지							
대도시	3.53	3.55	3.53	3.52	3.46		(848)
중소도시	3.48	3.53	3.50	3.52	3.45		(747)

(표 VI-1-5 계속)

구분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수)
읍·면	3.49	3.53	3.51	3.50	3.48		(673)
F	1.2	0.6	0.8	0.4	0.2		
규모							
20명 이하	3.24	3.27	3.20	3.16	3.21		(72)
21~39명	3.37	3.44	3.39	3.40	3.36		(386)
40~79명	3.52	3.57	3.55	3.54	3.48		(910)
80명 이상	3.56	3.57	3.56	3.56	3.51		(900)
F	13.1***	10.8***	14.7***	14.5***	8.2***		

*** p < .001

주: 점수가 높을수록 비치정도가 높음.

반면, 영아반의 6개 영역별 교재교구 활용 정도를 살펴보면(표 VI-1-6 참고), 자연탐구영역이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균 3.28점으로 활용정도가 가장 낮았고, 신체운동 영역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VI-1-6〉 영아반 영역별 교재교구 활용정도: 4점 평균

구분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단위: 점(개소) (수)
전체	3.31	3.40	3.35	3.33	3.35	3.28	(4,006)
시설유형							
국공립	3.45	3.55	3.52	3.50	3.51	3.43	(503)
사회복지법인	3.39	3.47	3.43	3.40	3.41	3.38	(373)
법인·단체	3.23	3.33	3.30	3.27	3.30	3.24	(281)
민간	3.21	3.31	3.26	3.25	3.27	3.22	(1,112)
가정	3.29	3.38	3.31	3.29	3.31	3.23	(1,479)
직장	3.46	3.56	3.58	3.52	3.54	3.44	(258)
F	19.6***	19.6***	26.7***	22.5***	19.6***	14.9***	
소재지							
대도시	3.34	3.42	3.39	3.37	3.38	3.31	(1,448)
중소도시	3.29	3.38	3.33	3.31	3.34	3.26	(1,613)
읍·면	3.27	3.38	3.32	3.30	3.31	3.27	(945)
F	4.5*	2.5	4.6*	6.1**	4.0*	3.4*	
규모							
20명 이하	3.29	3.38	3.32	3.29	3.30	3.23	(1,517)
21~39명	3.20	3.31	3.29	3.25	3.25	3.20	(615)
40~79명	3.34	3.44	3.39	3.38	3.40	3.33	(980)
80명 이상	3.36	3.45	3.41	3.40	3.43	3.38	(894)
F	9.9***	9.9***	8.9***	13.1***	16.1***	15.1***	

* p < .05, ** p < .01, *** p < .001

주: 점수가 높을수록 활용정도가 높음.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의 교재교구 활용 정도가 전 영역에서 평균 3.23점~3.38점대로 나타나 평균보다 소폭 낮게,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활용 정도가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유아반의 5개 영역별 교재교구 활용정도를 살펴보면(표 VI-1-7 참고), 의사소통 영역의 교재교구 활용정도가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 3.51점으로 가장 높게, 자연탐구 영역이 평균 3.45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범인·단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교재교구 활용 정도가 전체 평균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금 낮았고,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활용 정도가 전체 평균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는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전 영역의 교재교구 활용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7〉 유아반 영역별 교재교구 활용정도: 4점 평균

구분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단위: 점(개소)
							(수)
전체	3.49		3.51		3.47		3.45 (2,268)
시설유형							
국공립	3.56		3.60		3.58		3.53 (460)
사회복지법인	3.53		3.54		3.52		3.50 (353)
범인·단체	3.45		3.46		3.45		3.38 (269)
민간	3.42		3.44		3.40		3.43 (888)
가정	3.31		3.33		3.30		3.36 (54)
직장	3.58		3.62		3.55		3.55 (244)
F	6.8***		9.0***		8.7***		7.4*** 6.3***
소재지							
대도시	3.52		3.54		3.50		3.52 3.47 (848)
중소도시	3.46		3.48		3.46		3.49 3.43 (747)
읍면	3.47		3.48		3.46		3.46 3.45 (673)
F	2.4		3.2*		1.0		1.9 1.3
규모							
20명 이하	3.30		3.32		3.28		3.30 3.26 (72)
21~39명	3.40		3.42		3.35		3.39 3.33 (386)
40~79명	3.50		3.53		3.50		3.51 3.46 (910)
80명 이상	3.53		3.53		3.52		3.53 3.51 (900)
F	7.1***		6.5***		10.6***		7.9*** 10.5***

* $p < .05$, *** $p < .001$

주: 점수가 높을수록 활용정도가 높음.

라. 보육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보육프로그램 작성 시 주로 많이 참고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표 VI-1-8 참고), '보건복지부 개발 보육 프로그램'을 참고하는 비율이 4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유아잡지 제공 프로그램'이 20.7%, '민간업체 제공 프로그램'이 14.3%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개발 프로그램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집을 참고하는 비율이 24.1% 이었고, 2012년에는 44.6%, 2015년에는 47.8%으로 나타나 국가수준의 자료를 참고하는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1-8〉 보육프로그램 작성을 위하여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

구분	보건 복지부 개발 보육 프로그램	교육부 개발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자체개발 프로그램	육아종합 지원센터 제공 프로그램	영유아 잡지 제공 프로그램	민간업체 제공 프로그램	기타	단위: %(개소)
전체	44.1	3.7	3.5	13.2	20.7	14.3	0.4	100.0(4,044)
시설유형								
국공립	67.2	5.4	2.6	8.6	10.6	5.3	0.3	100.0(506)
사회복지법인	43.4	6.4	4.6	10.2	21.9	13.1	0.4	100.0(377)
법인·단체	47.2	3.4	3.7	9.5	17.9	18.2	-	100.0(283)
민간	36.8	4.2	4.2	14.9	21.5	18.0	0.2	100.0(1,133)
가정	37.4	1.9	1.5	16.8	26.5	15.3	0.6	100.0(1,479)
직장	64.2	5.0	11.3	3.2	6.4	8.9	1.1	100.0(266)
$\chi^2(df)$				397.1(30)***				
소재지								
대도시	49.4	4.0	3.1	11.3	17.9	13.8	0.4	100.0(1,462)
중소도시	40.7	3.9	3.1	13.7	22.9	15.4	0.3	100.0(1,631)
읍·면	41.2	3.1	4.8	15.5	21.4	13.5	0.6	100.0(951)
$\chi^2(df)$				43.2(12)***				
규모								
20명 이하	37.9	1.9	1.6	16.7	26.3	15.1	0.5	100.0(1,519)
21~39명	37.4	2.6	3.1	15.9	23.8	16.9	0.2	100.0(625)
40~79명	53.8	4.6	4.5	8.8	15.8	12.1	0.4	100.0(991)
80명 이상	48.3	6.8	6.1	10.4	14.4	13.7	0.3	100.0(909)
$\chi^2(df)$				221.9(18)***				
2012년 조사	42.8	1.8	4.4	20.2	22.8	6.8	1.1	100.0(3,998)
2009년 조사		24.1		9.5	12.4	21.5	6.6	- -

*** $p < .001$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

집(보건복지부+교육부 제공 프로그램집)을 참고하는 비율이 약 70%대로 나타나, 타 시설유형에 비해 국가수준 프로그램 자료집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정, 민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잡지 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비율이 최소 21.5%에서 최대 26.5%로 타 시설유형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전 시설유형의 어린이집에서 '민간업체 제공 프로그램'을 참고하는 비율이 13%~18%대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민간에서 개발된 자료를 참고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참고한다는 비율이 11.3%로 타 시설유형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작아질수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개발 보육프로그램 자료집을 활용한다는 비율이 55.1%에서 39.8%로 낮아지고, 반대로 영유아 잡지를 활용하는 비율이 28.1%에서 41.4%로 점차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고 보급한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의 보유여부를 살펴보면(표 VI-1-9 참고), 전체의 86.3%가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11.2%는 '일부만 보유'하고 있었다.

〈표 VI-1-9〉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보유 여부

단위: %(개소)

구분	모두 보유함	일부만 보유함	없음	계(수)	$\chi^2(df)$
전체	86.3	11.2	2.5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96.3	3.5	0.2	100.0(506)	
사회복지법인	90.5	8.9	0.6	100.0(377)	
법인·단체	92.5	5.9	1.6	100.0(283)	127.4(10)***
민간	85.3	12.6	2.1	100.0(1,134)	
가정	80.4	15.1	4.5	100.0(1,480)	
직장	92.5	7.0	0.5	100.0(266)	
소재지					
대도시	88.8	9.6	1.6	100.0(1,464)	
중소도시	83.7	12.9	3.4	100.0(1,631)	19.9(4)**
읍면	86.9	10.7	2.4	100.0(951)	
규모					
20명 이하	80.6	15.1	4.4	100.0(1,520)	
21~39명	83.3	14.6	2.2	100.0(625)	110.8(6)***
40~79명	91.3	7.6	1.1	100.0(992)	
80명 이상	92.8	6.2	1.0	100.0(909)	
2012년 조사	74.9	18.8	6.3	100.0(3,998)	
2009년 조사		72.4	20.3	100.0(3,204)	

** $p < .01$, *** $p < .001$

주: 2009년의 경우 모름/무응답 7.3% 별도 응답

2009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의 72.4%, 2012년에는 전체의 74.9% 이었고, 2015년에는 86.3%로 매년 보유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타 시설유형의 보유 비율이 90% 이상인 반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80%대로 나타나 보유여부에 있어 소폭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시설 규모별로는 시설규모가 작을수록 보유 비율이 조금 낮고, 시설규모가 클수록 보유 비율이 조금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활용 정도를 살펴보면(표 VI-1-10 참고),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87.5%,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5%로 나타났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도 1.1%로 나타나 보건복지부 개발 프로그램 대신 민간업체 프로그램 혹은 자체 프로그램 등 만 사용하는 어린이집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VI-1-10〉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활용 정도
단위: %(개소), 점

구분	전혀 활용 안 함	별로 활용 안 함	활용하는 편	매우 적극적 활용	계(수)	4점 평균
전체	1.1	11.4	54.1	33.4	100.0(4,046)	3.20
시설유형						
국공립	-	3.3	49.6	47.1	100.0(506)	3.44
사회복지법인	0.8	8.7	56.6	34.0	100.0(377)	3.24
법인·단체	0.6	10.1	61.0	28.4	100.0(283)	3.17
민간	1.1	12.7	55.0	31.1	100.0(1,134)	3.16
가정	1.8	15.4	52.8	30.0	100.0(1,480)	3.11
직장	0.6	3.9	56.6	39.0	100.0(266)	3.34
$\chi^2(df)/F$	127.9(15)***				49.5***	
소재지						
대도시	0.8	9.9	53.3	36.0	100.0(1,464)	3.25
중소도시	1.5	12.7	54.8	31.0	100.0(1,631)	3.15
읍·면	0.8	11.7	54.4	33.1	100.0(951)	3.20
$\chi^2(df)/F$	16.6(6)*				7.3**	
규모						
20명 이하	1.7	15.4	52.6	30.3	100.0(1,520)	3.11
21~39명	1.1	12.5	53.6	32.8	100.0(625)	3.18
40~79명	0.7	6.8	54.9	37.6	100.0(992)	3.29
80명 이상	0.5	8.9	56.3	34.3	100.0(909)	3.24
$\chi^2(df)/F$	65.2(9)***				16.3***	
2012년 조사	2.6	13.0	52.7	31.8	100.0(3,999)	3.14
2009년 조사	6.6		93.4		100.0(2,319)	-

* $p < .05$, ** $p < .01$, *** $p < .001$

시설유형별로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13.8%와 17.2%로 나타나, 타 시설유형이 10% 이내로 나타난데 반해 조금 높은 수치이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활용 정도가 낮았고,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 정도가 낮았다.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표 VI-1-11 참고), 만족한다는 응답이 96.2%,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

〈표 VI-1-11〉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개소),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수)	4점 평균
전체	0.1	3.7	77.3	18.9	100.0(3,538)	3.15
시설유형						
국공립	-	3.8	73.4	22.9	100.0(487)	3.19
사회복지법인	-	5.4	73.7	20.9	100.0(341)	3.16
법인·단체	-	3.3	78.4	18.3	100.0(253)	3.15
민간	0.2	3.4	80.7	15.7	100.0(975)	3.12
가정	0.1	3.5	76.6	19.8	100.0(1,228)	3.16
직장	-	3.2	79.3	17.5	100.0(254)	3.14
$\chi^2(df)/F$	20.1(15)				1.9	
소재지						
대도시	0.2	3.7	75.1	21.0	100.0(1,301)	3.17
중소도시	-	3.8	78.5	17.7	100.0(1,412)	3.14
읍·면	-	3.3	79.1	17.6	100.0(825)	3.14
$\chi^2(df)/F$	11.4(6)				1.5	
규모						
20명 이하	0.1	3.4	76.4	20.1	100.0(1,264)	3.16
21~39명	-	4.7	80.2	15.2	100.0(542)	3.10
40~79명	0.2	3.4	76.3	20.1	100.0(907)	3.16
80명 이상	-	3.7	78.0	18.3	100.0(825)	3.15
$\chi^2(df)/F$	11.7(9)				2.5	
2012년 조사	0.3	6.4	84.9	8.4	100.0(3,360)	3.01
2009년 조사	1.8	6.3	83.7	8.3	100.0(2,156)	

2009년과 2012년 조사결과와 대조해보면,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6%대에서 3%대로 절반 가량 줄어들고, '매우만족'하는 비율이 8%대에서 10%대로 약 10%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표 VI-1-12 참고), '교재교구 준비가 어렵다'에 응답한 비율이 27.4%로 가장 높게, '쓰던 프로그램이 있어서'에 응답한 비율이 25.5%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타(2.5%)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어려워'에 응답한 비율이 5.7%로 가장 낮았다.

〈표 VI-1-12〉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미활용 이유

단위: %(개소)

구분	내용 어려워	시간적 제약 때문	쓰던 프로그램 있어서	교재교구 준비 어려워	내용 만족스럽지 않아	기타	계(수)	$\chi^2(df)$
전체	5.7	16.2	25.5	27.4	22.7	2.5	100.0(504)	
시설유형								
국공립	1.5	10.7	1.3	28.6	49.8	8.1	100.0(19)	
사회복지법인	8.0	14.4	7.6	38.9	30.1	1.0	100.0(36)	
법인·단체	4.8	13.7	16.0	44.5	20.0	0.9	100.0(30)	65.1(25)***
민간	6.4	14.8	24.4	27.8	24.5	2.1	100.0(159)	
가정	5.7	18.7	31.4	24.3	18.2	1.8	100.0(248)	
직장	-	-	24.6	12.4	38.8	24.2	100.0(12)	
소재지								
대도시	4.4	14.8	28.7	23.8	24.8	3.5	100.0(160)	
중소도시	6.6	16.6	25.6	26.3	23.3	1.6	100.0(219)	8.8(10)
읍·면	5.7	17.1	21.0	34.6	18.4	3.2	100.0(125)	
규모								
20명 이하	5.6	18.7	30.7	24.9	18.4	1.7	100.0(252)	
21~39명	3.0	21.9	19.9	30.0	25.1	-	100.0(83)	
40~79명	8.5	4.2	25.5	25.6	30.0	6.2	100.0(85)	36.0(15)**
80명 이상	6.4	13.2	15.3	34.0	26.9	4.2	100.0(84)	
2012년 조사	2.9	10.1	44.2	28.0	11.9	2.9	100.0(626)	
2009년 조사	4.8	5.5	44.5	28.1	-	17.1	100.0(146)	

** $p < .01$, *** $p < .001$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11.9%이었으나, 2015년에는 22.7%로 10.8% 증가하였다. 반면 2009년과 2012년에는 '쓰던 프로그램이 있어서'에 응답한 비율이 44.0%대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25.5%로 나타나 18% 가량 감소하였다. 또한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응답한 비율이 2009년 5.5%에서 2012년 10.1%, 2015년에는 16.2%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49.8%와 38.8%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어린이집은 '교재교구 준비가 어렵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

정어린이집은 '쓰던 프로그램이 있어서'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로 보아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이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미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어린이집은 보육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환경준비'의 어려움으로 미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미활용 이유에 있어 시설유형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보육 또는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강조하는 점을 살펴보면(표 VI-1-13 참고), 인성지도를 강조한다는 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균형있는 발달 29.3%, 안전한 보호 2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지교육과 충분한 휴식,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강조한다는 비율은 0.0%에서 0.2%대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VI-1-13〉 보육 또는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강조점

구분	균형 발달	인성 지도	안전한 보호	자유 놀이 중심 활동	급간식 등전강 판리	인지 교육	자녀 부모 관계	단위: %(개소)			
								특별 활동 프로 그램	충분한 휴식	기타	계(수)
전체	29.3	37.6	21.2	6.8	4.1	-	0.6	0.2	0.1	0.1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36.6	34.0	18.2	10.1	1.1	-	-	-	-	0.1	100.0(506)
사회복지법인	26.9	44.5	18.0	6.5	3.6	0.1	-	-	-	0.4	100.0(377)
법인·단체	27.0	48.9	15.2	5.9	2.5	-	0.6	-	-	-	100.0(283)
민간	26.6	45.2	19.3	3.8	3.6	-	1.1	0.1	0.2	0.1	100.0(1,134)
가정	28.2	31.6	26.9	5.9	6.1	-	0.8	0.4	0.1	-	100.0(1,480)
직장	37.2	25.1	14.1	19.7	3.2	-	-	-	-	0.6	100.0(266)
$\chi^2(df)$					275.0(45) ^{***}						
소재지											
대도시	31.8	35.2	20.4	8.0	3.5	-	0.8	0.2	0.1	-	100.0(1,464)
중소도시	28.9	36.9	22.4	6.2	4.3	-	0.8	0.3	0.1	0.1	100.0(1,631)
읍면	25.7	42.7	20.3	6.1	4.7	-	0.2	-	-	0.3	100.0(951)
$\chi^2(df)$					38.5(18) ^{**}						
규모											
20명 이하	28.4	31.1	26.9	6.2	6.1	-	0.8	0.4	0.1	-	100.0(1,520)
21~39명	28.3	38.0	23.0	5.6	4.2	-	1.0	-	-	-	100.0(625)
40~79명	28.9	41.7	17.8	8.0	2.6	-	0.4	0.1	0.1	0.3	100.0(992)
80명 이상	31.8	43.9	14.0	7.5	2.2	-	0.4	-	-	0.2	100.0(909)
$\chi^2(df)$					137.6(27) ^{***}						

** $p < .01$, *** $p < .001$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자유놀이 중심의 활동을 강조한다는 비율이 19.7%로 민간어린이집이 3.8%인데 반해, 약 6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

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를 강조한다는 비율이 26.9%로 타 시설유형에 비해 8%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재원아가 대부분 영아인 점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된다.

시설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안전한 보호'를 강조한다는 비율이 14.0%에서 26.9%로 점차 높아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성지도'를 강조한다는 비율이 31.1%에서 43.9%로 점차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3-5세 누리과정

제2절에서는 3-5세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반 편성 현황, 누리과정 운영시 참고자료 활용 현황, 누리과정 도입 후 만족도와 어려워진 점, 지원금 사용처,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누리과정 보조교사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누리과정 반 편성 실태

3-5세 누리과정 반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표 VI-2-1 참고), 3, 4, 5세 독립반 운영비율이 64.7%, 연령혼합반 운영 비율이 31.7%, 3-5세 장애아 독립반 운영 비율이 2.0%, 장애아 연령 혼합반 운영 비율이 1.5%로 나타났다. 그 중 연령혼합반 비율이 3, 4, 5세 독립반 운영비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타 시설유형의 3, 4, 5세 독립반 운영비율이 56.4%~68.2%인데 반해, 가정어린이집은 질문에 응답한 44개소 중 65.3%가 연령혼합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반 구성 비율은 34.7%에 불과하여 반편성 현황에 있어 타 시설유형과 차이가 컸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서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연령혼합반 운영 비율이 약 3%~5% 가량 소폭씩 증가하였다. 규모별로는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3, 4, 5세 독립반 운영비율은 28.1%에서 83.3%로 점차 증가, 연령혼합반 운영비율은 66.6%에서 13.5%로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2-1〉 3-5세 누리과정 반 편성

구분	단위: %(개소), 개							
	3,4,5세 독립반		연령혼합반		3-5세 장애아 독립반		장애아 연령혼합반	
	운영비율	평균	운영비율	평균	운영비율	평균	운영비율	평균
전체	64.7	2.03	31.7	0.51	2.0	0.11	1.5	0.08
시설유형								
국공립	68.2	2.17	22.8	0.42	5.7	0.26	3.3	0.16
사회복지법인	63.8	2.24	29.5	0.55	3.2	0.21	3.4	0.21
법인·단체	56.4	1.81	40.4	0.64	1.8	0.13	1.3	0.05
민간	66.2	1.93	33.1	0.50	0.2	0.01	0.5	0.02
가정	34.7	0.38	65.3	0.65	-	-	-	-
직장	67.0	2.31	33.0	0.46	-	-	-	-
<i>F</i>		8.1***		5.3***		12.2***		7.8***
소재지								
대도시	66.8	2.07	28.2	0.45	2.7	0.14	2.2	0.10
중소도시	65.6	1.98	31.7	0.50	1.6	0.09	1.1	0.06
읍·면	61.0	2.03	36.5	0.58	1.4	0.07	1.1	0.07
<i>F</i>		0.3		8.3***		2.5		1.1
규모								
20명 이하	28.1	0.33	66.6	0.69	2.6	0.03	2.6	0.18
21~39명	41.9	0.57	55.2	0.63	1.5	0.06	1.4	0.05
40~79명	58.3	1.28	37.6	0.63	2.0	0.11	2.0	0.11
80명 이상	83.3	3.52	13.5	0.31	2.2	0.13	1.0	0.05
<i>F</i>		459.9***		52.3***		1.1		2.4

*** $p < .001$

나. 3-5세 누리과정 운영시 활용자료

3-5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를 살펴보면(표 VI-2-2 참고),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세, 4세, 5세)」과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하는 비율이 전체의 39.8%와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2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민간업체 판매프로그램을 참고하는 비율이 5.2%였지만, 2015년 조사결과에서는 17.9%로 집계되어 10%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5세 누리과정이 도입과 함께 민간업체에서 유통되는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해진 점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된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세, 4세, 5세)」을 활용한다는 비율이 각각 48.7%와 48.0%로 가장 높은데 반해, 민간업체 판매 프로그램을 참고하는 비율이 각각 11.3%와 7.9%로 타 시설유형이 20%대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여 10% 이상 낮은 수치이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세, 4세, 5세)」과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을 참고하는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며,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프로그램과 민간업체 판매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2-2〉 3~5세 누리과정 운영 시 활용 자료

단위: %(개소)

구분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프로그램	종전 유치원 지도서	민간 업체 판매 프로그램	유아 잡지	유아교육 온라인 사이트	기타	계(수)
전체	39.8	30.6	5.2	0.1	17.9	2.0	4.1	0.4	100.0(2,239)
시설유형									
국공립	48.7	33.7	2.9	-	11.3	1.4	2.1	-	100.0(458)
사회복지법인	39.5	27.9	5.3	-	20.3	2.1	4.9	-	100.0(349)
법인·단체	35.4	29.8	4.6	0.6	22.6	1.8	5.4	-	100.0(268)
민간	34.4	28.5	7.2	-	21.8	2.7	5.2	0.2	100.0(876)
가정	36.2	19.0	9.7	-	24.6	3.2	7.3	-	100.0(44)
직장	48.0	38.1	2.4	-	7.9	-	1.0	2.6	100.0(244)
$\chi^2(df)$	149.9(35)***								
소재지									
대도시	43.3	32.1	3.3	-	14.8	1.3	4.7	0.6	100.0(840)
중소도시	38.1	29.8	6.5	0.2	19.6	1.9	3.5	0.4	100.0(737)
읍면	37.2	29.5	6.2	-	20.3	2.9	3.9	-	100.0(662)
$\chi^2(df)$	35.4(14)**								
규모									
20명 이하	42.0	19.0	8.0	-	23.9	2.1	4.9	-	100.0(61)
21~39명	36.2	27.7	7.5	-	21.1	3.1	4.3	-	100.0(377)
40~79명	41.4	30.6	5.3	-	15.9	2.0	4.1	0.7	100.0(906)
80명 이상	39.6	32.5	3.9	0.2	18.3	1.4	3.9	0.2	100.0(895)
$\chi^2(df)$	28.6(21)								
2012년 조사	39.8	48.8	5.4	0.2	5.2	-	-	0.7	100.0(1,568)

** $p < .01$, *** $p < .001$

주: 2012년 조사에서는 「5세 누리과정 운영 시 활용 자료」를 조사하였음.

다.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세, 4세, 5세)」 활용 및 만족도

보건복지부가 개발하고 보급한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세, 4세, 5세)」의 활용여부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 3.2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용한다는 응답이 90.9%,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9.1%로 집계되었다 (표 VI-2-3 참고). 그 중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0.6%로 나타나 보건복지부

프로그램 대신 민간업체 판매 프로그램이나, 유아잡지 등만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별로 활용 안 함'에 응답한 비율이 6.0%에서 8.5%로 약 2% 가량 증가하였고, '매우 적극적 활용함'에 응답한 비율이 35.0%에서 32.5%로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별로 활용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18.0%와 11.6%로 나타나 직장어린이집이 3.6%로 응답한데 반해 약 3~4배 가량 높게 나타난 수치이다.

〈표 VI-2-3〉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세, 4세, 5세)」 활용 정도

단위: %(개소), 점

구분	전혀 안 활용 합	별로 안 활용 합	활용하는 편임	매우 적극적 활용합	계(수)	4점 평균
전체	0.6	8.5	58.4	32.5	100.0(2,239)	3.23
시설유형						
국공립	-	5.2	55.3	39.5	100.0(458)	3.34
사회복지법인	0.1	7.1	57.4	35.3	100.0(349)	3.28
법인·단체	0.6	9.3	63.1	27.1	100.0(268)	3.17
민간	1.3	11.6	57.3	29.8	100.0(876)	3.16
가정	-	18.0	71.7	10.3	100.0(44)	2.92
직장	-	3.6	62.8	33.7	100.0(244)	3.30
$\chi^2(df)/F$		63.9(15) ^{***}				8.9 ^{***}
소재지						
대도시	0.1	6.8	57.6	35.5	100.0(840)	3.29
중소도시	1.3	10.1	59.1	29.5	100.0(737)	3.17
읍·면	0.6	8.9	58.6	31.9	100.0(662)	3.22
$\chi^2(df)/F$		19.1(6) ^{**}				7.3 ^{**}
규모						
20명 이하	-	14.7	73.6	11.7	100.0(61)	2.97
21~39명	1.0	11.9	61.9	25.2	100.0(377)	3.11
40~79명	0.7	7.3	57.4	34.6	100.0(906)	3.26
80명 이상	0.4	7.9	57.0	34.6	100.0(895)	3.26
$\chi^2(df)/F$		31.7(9) ^{***}				9.2 ^{***}
2012년 조사	0.1	6.0	57.9	35.0	100.0(1,569)	3.29

** $p < .01$, *** $p < .001$

주: 1) 2012년 조사에서는 「5세 누리과정 운영 시 활용 자료」를 조사하였음.

2) 점수가 높을수록 활용정도가 높음.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세, 4세, 5세)」의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표 VI-2-4 참고),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조사 결과에서 92.0%이었던데 반해 약 3%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표 VI-2-4〉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세, 4세, 5세)」 만족도

단위: %(개소),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수)	4점 평균
전체	-	4.7	78.0	17.3	100.0(2,031)	3.13
시설유형						
국공립	-	4.6	74.3	21.1	100.0(434)	3.17
사회복지법인	-	6.8	73.9	19.3	100.0(321)	3.13
법인·단체	-	5.7	78.5	15.8	100.0(243)	3.10
민간	-	3.8	79.5	16.7	100.0(760)	3.13
가정	-	4.7	84.1	11.1	100.0(37)	3.06
직장	-	4.6	84.0	11.4	100.0(236)	3.07
$\chi^2(df)/F$	18.5(10)*					1.7
소재지						
대도시	-	5.2	75.6	19.2	100.0(776)	3.14
중소도시	-	5.5	78.7	15.8	100.0(661)	3.10
읍·면	-	3.2	80.5	16.3	100.0(594)	3.13
$\chi^2(df)/F$	7.7(4)					1.3
규모						
20명 이하	-	3.1	89.8	7.2	100.0(53)	3.04
21~39명	-	7.2	83.5	9.3	100.0(332)	3.02
40~79명	-	3.4	76.2	20.4	100.0(828)	3.17
80명 이상	-	5.3	76.9	17.8	100.0(818)	3.12
$\chi^2(df)/F$	30.7(6)***					9.1***
2012년 조사	0.3	7.8	84.5	7.5	100.0(1,467)	2.99

* $p < .05$, *** $p < .001$

주: 1) 2012년 조사에서는 '5세 누리과정 운영 시 활용 자료'를 조사하였음.

2)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한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세, 4세, 5세)」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표 VI-2-5 참고), 교재교구 준비가 어렵다는 응답이 전체의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과 쓰던 프로그램이 있어서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4%와 18.4%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교재교구 준비 어려움과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13%, 7.8%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가 58.6%로 가정어린이집이 5.4%로 응답한 데 반해 53.2% 더 높은 수치이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 46.3%가 응답한 점은 타 시설유형에 비해 약 30% 이상 높은 결과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커질수록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경향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표 VI-2-5〉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3세, 4세, 5세)」 미활용 이유

단위: %(개소)

구분	내용 어려워	시간적 제약	쓰던 프로그램 있어서	교재교구 준비 어려워	내용 만족스럽지 않아	기타	계(수)
전체	4.5	11.8	18.4	38.8	26.4	-	100.0(206)
시설유형							
국공립	10.7	6.6	16.4	17.9	48.4	-	100.0(24)
사회복지법인	4.9	8.3	8.8	42.1	35.8	-	100.0(28)
법인·단체	-	14.0	26.0	34.3	25.7	-	100.0(24)
민간	4.6	12.2	17.9	46.8	18.5	-	100.0(115)
가정	-	46.3	30.7	17.6	5.4	-	100.0(7)
직장	-	-	25.4	15.9	58.6	-	100.0(8)
$\chi^2(df)$				38.0(20)**			
소재지							
대도시	2.0	17.9	10.4	30.8	39.0	-	100.0(63)
중소도시	5.0	8.0	23.3	43.6	20.1	-	100.0(75)
읍면	6.1	11.2	19.7	40.2	22.9	-	100.0(68)
$\chi^2(df)$				14.7(8)			
규모							
20명 이하	-	38.1	25.2	14.5	22.2	-	100.0(8)
21~39명	4.7	21.5	8.8	45.9	19.2	-	100.0(44)
40~79명	4.0	6.5	30.8	31.6	27.1	-	100.0(77)
80명 이상	5.3	8.2	11.5	44.1	30.9	-	100.0(77)
$\chi^2(df)$				26.8(12)**			
2012년 조사	4.1	14.4	28.9	25.8	18.6	8.2	100.0(99)

** $p < .01$

주: 2012년 조사에서는 '5세 누리과정 운영 시 활용 자료'를 조사하였음.

라.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처

누리과정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표 VI-2-6 참고), 전체의 61.3%가 교재교구 구입, 25.7%가 보조교사 채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재교구 구입에 사용하는 비율이 86.4%이었는데, 2015년에는 보조교사 채용과 교재교구 구입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비율이 분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담당교사 제수당 및 경비에 사용하는 비율이 12.4%로 타 시설유형이 1%대로 나타난 데 반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반

면 보조교사 채용에 사용하는 비율은 9.7%로 타 시설유형에 비해 10%~20% 가량 낮은 수치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위와 같은 맥락에서 20명 이하 시설의 경우 담당교사 제수당 및 경비에 사용하는 비율이 8.3%로 타 규모에 비해 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규모가 커질수록 보조교사 채용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VI-2-6〉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처

단위: %(개소)

구분	보조 교사 채용	교재 교구 구입	기자재 구입	급 간식 비	환경 관리기준 준수 개선비용	누리과 정운영 도우미	아동안 전관련 물품	담당교사 제수당 및 경비	기타	계(수)
전체	25.7	61.3	2.7	2.5	0.5	4.5	1.1	1.3	0.4	100.0(2,236)
시설유형										
국공립	38.2	51.2	1.1	1.8	0.5	6.8	-	0.3	0.1	100.0(457)
사회복지법인	23.9	66.5	1.6	1.3	0.7	2.8	1.4	1.0	0.9	100.0(349)
법인·단체	28.1	57.4	3.7	3.6	0.6	4.4	1.2	1.0	-	100.0(268)
민간	17.8	69.1	3.6	1.7	0.6	3.4	1.9	1.7	0.4	100.0(874)
가정	9.7	65.7	4.0	6.9	-	-	1.4	12.4	-	100.0(44)
직장	32.2	48.9	2.5	6.7	-	7.3	-	1.3	1.1	100.0(244)
$\chi^2(df)$						192.8(40)***				
소재지										
대도시	28.3	57.9	2.4	2.7	0.2	5.5	0.7	1.4	0.9	100.0(838)
중소도시	26.8	60.2	3.0	2.9	0.3	3.7	1.4	1.6	-	100.0(736)
읍면	20.9	67.0	2.7	1.8	1.0	4.2	1.3	1.0	0.1	100.0(662)
$\chi^2(df)$						36.4(16)**				
규모										
20명 이하	11.8	68.9	2.7	7.4	-	-	0.9	8.3	-	100.0(61)
21~39명	9.4	78.1	5.3	1.4	0.6	1.6	1.4	1.3	0.9	100.0(376)
40~79명	25.5	60.4	2.5	3.3	0.5	4.8	1.2	1.4	0.4	100.0(905)
80명 이상	33.7	54.7	1.7	1.9	0.4	5.7	1.0	0.9	0.2	100.0(894)
$\chi^2(df)$						145.8(24)***				
2012년 조사	9.8	86.4	17.7	-	-	-	-	-	4.3	(1,569)

** $p < .01$, *** $p < .001$

주: 1) 2012년 조사에서는 '5세 누리과정 운영 시 활용 자료'를 조사하였음.

2) 2012년 조사에서는 '운영비로 사용'이 30.3%였음.

3) 2012년의 경우 중복응답 결과임.

마.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좋아진 점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좋아짐 점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표 VI-2-7 참고), 프로그램의 질적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에 전체의 57.0%가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다음으로 재정운영 안정화와 교사처우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7%대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교사처우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있어 2015년 조사 결과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 운영 안정화'의 경우 9.7%에서 17.6%로 7.9% 증가하였고, '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의 경우 45.8%에서 57.0%로 11.2% 증가하였으며, '물리적 환경개선'의 경우 1.6%에서 3.6%로 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아모집이 용이해졌다는 비율이 8.6%로 나타나 타 시설유형이 1% 이하로 나타난 데 반해 꽤 높은 비율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처우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28.4%로 나타나 타 시설유형에 비해 약 10% 가량 높게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프로그램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에 응답한 비율이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졌고, 규모별로는 20명 이하 시설의 경우 원아모집이 용이해졌다는 응답이 5.7%로 타 규모의 시설이 0%대로 나타난 데 비해 높은 결과이다.

〈표 VI-2-7〉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좋아진 점

구분	단위: %(개소)								
	재정 운영 안정화	프로그램 질적수준 향상	교사 처우 개선	원아 모집 용이	어린이집 이미지 향상	물리적 환경 개선	기타	계(수)	$\chi^2(df)$
전체	17.6	57.0	17.1	0.6	3.9	3.6	0.3	100.0(2,217)	
시설유형									
국공립	22.6	56.3	13.7	0.6	2.8	3.3	0.6	100.0(458)	
사회복지법인	15.7	60.5	16.5	0.6	3.0	3.8	-	100.0(344)	
법인·단체	25.5	54.5	13.0	0.6	1.9	4.5	-	100.0(267)	119.0
민간	13.8	60.2	17.4	0.4	4.8	3.3	0.2	100.0(865)	(30)***
가정	17.0	55.7	10.5	8.6	1.0	7.3	-	100.0(42)	
직장	15.8	44.9	28.4	0.1	6.1	4.0	0.7	100.0(241)	
소재지									
대도시	18.9	53.6	17.9	0.5	4.8	4.1	0.3	100.0(833)	27.1
중소도시	17.0	55.2	18.7	0.5	4.7	3.6	0.3	100.0(725)	(12)**
읍면	16.5	63.5	14.1	0.8	1.6	3.2	0.2	100.0(659)	
규모									
20명 이하	11.8	56.3	15.3	5.7	3.8	7.1	-	100.0(59)	
21~39명	14.9	58.9	19.1	0.9	3.0	3.2	-	100.0(373)	40.3**
40~79명	19.1	56.6	15.1	0.7	4.3	3.9	0.3	100.0(898)	(18)**
80명 이상	17.6	56.5	18.4	0.1	3.7	3.4	0.3	100.0(887)	
2012년 조사	9.7	45.8	37.6	0.5	3.7	1.6	1.0	100.0(1,561)	

** $p < .01$, *** $p < .001$

바.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어려워진 점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어려워진 점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표 VI-2-8 참고), 임금 형평성 문제가 전체의 27.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지출범위 제한에 전체의 18.0%가 응답하였다. 반면 교재교구 확보의 경우 1.9%로 가장 낮았다.

〈표 VI-2-8〉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어려워진 점

구분	행정업무 증가	운영관리 감독 및 규제강화	누리과정 교육이수 어려움	보조교사 부재	임금 형평성 문제	교사 확보 어려움	3-5세 혼합반 운영	단위: %(개소)				
								새 프로그램 적용	교재교구 확보	지출 범위 제한	기타	
전체	12.0	10.1	3.8	7.4	27.2	3.9	11.8	3.0	1.9	18.0	0.8	100.0(2,209)
시설유형												
국공립	10.4	4.8	2.9	10.0	31.7	4.0	11.6	2.0	1.8	20.6	0.1	100.0(449)
사회복지법인	12.3	10.2	2.9	10.2	33.7	2.7	9.5	2.0	0.9	15.2	0.4	100.0(347)
법인단체	8.7	10.6	1.6	8.7	29.0	1.9	16.4	4.6	0.6	17.3	0.7	100.0(265)
민간	12.5	14.2	4.6	3.9	22.2	5.5	11.0	3.1	2.5	19.1	1.5	100.0(867)
가정	28.7	5.2	11.1	4.4	4.6	-	21.0	4.7	8.0	11.2	1.0	100.0(44)
직장	14.2	5.7	5.3	10.3	29.9	2.0	11.8	3.4	1.9	14.9	0.6	100.0(237)
$\chi^2(df)$							164.2(50)***					
소재지												
대도시	11.1	8.7	3.5	4.7	35.2	4.7	12.0	2.7	2.2	14.0	1.2	100.0(829)
중소도시	12.9	10.9	4.7	7.9	22.0	4.1	9.1	2.7	2.4	23.1	0.2	100.0(725)
읍면	12.3	11.2	3.3	10.3	22.5	2.5	14.6	3.6	0.9	17.6	1.1	100.0(655)
$\chi^2(df)$							97.4(20)***					
규모												
20명 이하	19.3	8.8	12.4	3.0	13.1	-	18.9	5.4	5.4	13.1	0.7	100.0(61)
21~39명	10.7	9.2	3.7	5.6	23.2	3.0	20.7	2.6	2.2	17.7	1.4	100.0(375)
40~79명	12.4	9.9	4.5	6.0	26.5	3.8	13.6	3.5	1.2	17.7	0.9	100.0(892)
80명 이상	11.8	10.9	2.6	9.8	30.6	4.6	5.7	2.4	2.3	18.8	0.6	100.0(881)
$\chi^2(df)$							116.8(30)***					
2012년 조사	8.8	6.9	8.9	-	44.1	7.4	14.3	6.1	2.8	-	0.9	100.0(1,566)

*** $p < .001$

주: 2012년 조사에서는 '3-5세 혼합반 운영'이 '5세 혼합반 운영'으로 조사되었음.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임금형평성 문제가 44.1%에서 27.2%로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이고 누리과정 교육 이수 어려움의 경우에도 8.9%에서 3.8%로 감소, 3-5세 혼합반 운영의 경우에도 11.8%에서 11.8%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항목에 대한 응답에 시설유형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업무 증가에 대한 어려움에 가정어린이집이 28.7%로 가장 높게,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8.7%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고, 운영관리 감독 및 규제강화에 대

한 어려움에 민간어린이집이 14.2%로 가장 높게, 국공립어린이집이 4.8%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누리과정 교육이수의 어려움에는 가정어린이집이 11.1%로 가장 높게, 법인·단체어린이집이 1.6%로 가장 낮게 응답한 반면, 임금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에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33.7%로 가장 높게, 가정어린이집이 4.6%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3-5세 혼합반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가정어린이집이 21.0%로 가장 높게, 사회복지법인이 9.5%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고, 지출범위 제한에 대한 어려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20.6%로 가장 높게, 가정어린이집이 11.2%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보조교사 부재와 관련된 어려움이 증가하며, 규모별로는 규모가 커질수록 보조교사 부재, 임금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3-5세 누리과정 효율적 운영 위한 개선 요구사항

누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표 VI-2-9 참고),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전체의 33.1%가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영비 사용 항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9.2%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재정지원 강화(1.4% 증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응답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20.1%, 16.8%)과 보조인력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18.5%, 18.0%)이 해당 항목에서 타 시설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교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0%으로 타 시설 유형이 약 10%대로 나타난 데 반해 낮았다. 또한 프로그램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항목에는 직장어린이집이 21.1%, 국공립 어린이집이 16.4%가 동의하였으나, 법인·단체와 민간어린이집은 10% 이하가 응답하여 차이가 존재한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로 갈수록 보조인력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9.8%에서 12.3%로 점차 증가하였고, 규모별로는 규모가 커질수록 프로그램 질 향상, 보조인력 지원강화, 운영비 사용 항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표 VI-2-9〉 3~5세 누리과정 개선 요구사항

단위: %(개소)

구분	재정지원 강화	프로그램 질 향상	교사 교육 강화	행정관리 간소화	시설설비 보완	보조인력 지원강화	운영비 사용항목 확대	기타	계(수)
전체	33.1	12.5	13.6	9.1	1.3	11.0	19.2	0.2	100.0(2,238)
시설유형									
국공립	22.5	16.4	16.8	6.3	0.9	18.0	19.1	-	100.0(458)
사회복지법인	35.9	12.2	9.5	7.3	2.9	8.6	23.2	0.5	100.0(349)
법인·단체	31.3	7.5	13.4	11.7	2.2	11.4	22.0	0.4	100.0(268)
민간	42.2	9.7	12.0	9.7	0.8	5.8	19.6	0.2	100.0(875)
가정	38.8	10.6	4.0	16.4	0.9	11.0	17.3	1.0	100.0(44)
직장	18.8	21.1	20.1	10.7	0.8	18.5	10.0	-	100.0(244)
$\chi^2(df)$						204.4(35) ^{***}			
소재지									
대도시	33.0	15.4	15.2	7.2	1.5	12.3	15.1	0.4	100.0(839)
중소도시	33.4	10.9	11.6	10.8	1.0	10.4	21.7	0.2	100.0(737)
읍면	33.0	10.5	13.8	9.7	1.3	9.8	21.8	0.1	100.0(662)
$\chi^2(df)$						37.1(14) ^{**}			
규모									
20명 이하	38.2	9.7	12.7	16.4	0.6	7.4	14.3	0.7	100.0(61)
21~39명	39.4	12.7	12.3	7.5	1.4	7.3	19.3	0.1	100.0(377)
40~79명	32.2	12.1	14.1	8.8	0.9	11.4	20.3	0.2	100.0(906)
80명 이상	31.1	13.0	13.7	9.6	1.7	12.3	18.3	0.3	100.0(894)
$\chi^2(df)$						26.2(21)			
2012년 조사	31.7	21.4	19.4	9.0	3.6	13.4	-	0.1	100.0

** $p < .01$, *** $p < .001$

주: 2012년 조사에서는 '홍보강화'가 1.4%로 나타남.

아. 누리과정 보조교사 업무 내용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내용별 수행빈도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VI-2-10 참고), 일상생활 지도와 수업 및 놀이 참여, 수업전후 준비 및 정리가 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행정업무의 경우 2.19점으로 수행빈도가 가장 낮았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교사의 행정업무 수행빈도가 1.89점으로 나타나 타 시설유형에 비해 낮았다.

〈표 VI-2-10〉 누리과정 보조교사 업무 수행빈도: 4점 평균

구분	수업 전후 준비 및 정리	수업 및 놀이 참여	행정업무	일상생활 지도	등하원 지도	행사 지원	담임교사 부재시 업무 지원	단위: 점(수)
								(수)
전체	3.15	3.29	2.19	3.46	2.78	2.96	2.89	(1,351)
시설유형								
국공립	3.19	3.40	2.08	3.56	2.66	3.03	3.02	(339)
사회복지법인	3.21	3.38	2.18	3.47	2.74	2.96	2.79	(226)
법인·단체	3.08	3.24	2.22	3.45	2.95	3.08	2.84	(165)
민간	3.05	3.16	2.37	3.34	2.99	2.97	2.86	(464)
가정	3.15	2.99	2.93	3.20	2.88	3.04	3.11	(10)
직장	3.33	3.43	1.89	3.59	2.33	2.62	2.86	(147)
<i>F</i>	4.1**	7.4***	6.6***	5.9***	10.1***	4.9***	2.3*	
소재지								
대도시	3.15	3.31	2.13	3.48	2.71	2.93	2.92	(537)
중소도시	3.20	3.30	2.18	3.47	2.85	2.96	2.91	(433)
읍·면	3.09	3.25	2.30	3.41	2.81	3.00	2.82	(381)
<i>F</i>	2.4	0.8	2.8	1.1	1.9	0.7	1.7	
규모								
20명 이하	2.88	2.78	2.53	2.96	2.53	2.81	2.86	(14)
21~39명	2.97	3.13	2.49	3.34	3.08	3.04	2.80	(121)
40~79명	3.20	3.35	2.25	3.49	2.73	3.01	2.91	(497)
80명 이상	3.15	3.29	2.10	3.46	2.78	2.91	2.90	(719)
<i>F</i>	3.6*	5.6**	5.6**	3.9**	3.4*	1.6	0.5	

* $p < .05$, ** $p < .01$, *** $p < .001$

주: 접수가 높을수록 수행빈도가 높음.

3. 특별활동

제3절에서는 특별활동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특별활동 실시 비율 및 프로그램 수, 특별활동 프로그램 당 최대 비용, 특별활동 운영기간대, 미참여 영유아 활동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 특별활동 실시비율 및 영유아별 프로그램 수

특별활동 실시 비율과 실시 프로그램 수를 살펴보면(표 VI-3-1 참고), 2012년 조사결과 79.8%에 비해 약 6% 증가한 85.9%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실시 비율을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이 94.3%로 가장 높

계, 가정어린이집이 7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영아가 주로 재원하는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반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특별활동 실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를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평균 2.6개, 유아의 경우 평균 3.13개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영아, 유아 각각 평균 2.89개, 3.12개로 2015년에 소폭 감소한 결과이다.

소재지별로는 영아와 유아 모두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특별활동 평균 개수가 소폭 감소하고, 규모별로는 규모가 커질수록 영아와 유아 모두 평균 개수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1〉 특별활동 실시비율 및 영유아별 프로그램 수

단위: %(개소), 개

구분	특별활동 실시 현황		영아		유아	
	비율	(수)	평균개수	(수)	평균개수	(수)
전체	85.9	(4,046)	2.60	(3,057)	3.13	(2,173)
시설유형						
국공립	93.9	(506)	2.32	(392)	2.97	(442)
사회복지법인	90.0	(377)	2.44	(265)	2.93	(317)
법안·단체	91.9	(283)	2.31	(207)	2.86	(250)
민간	94.3	(1,134)	3.11	(958)	3.47	(844)
가정	73.9	(1,480)	2.33	(1,069)	2.18	(95)
직장	89.8	(266)	2.74	(166)	3.09	(225)
$\chi^2(df)/F$	288.6(5)***		113.5***		113.5***	
소재지						
대도시	84.5	(1,464)	2.77	(1,098)	3.37	(824)
중소도시	87.0	(1,631)	2.55	(1,274)	3.09	(731)
읍면	86.4	(951)	2.43	(685)	2.84	(618)
$\chi^2(df)/F$	4.5(2)		10.5***		10.5**	
규모						
20명 이하	72.9	(1,520)	2.34	(1,081)	2.22	(105)
21~39명	88.1	(625)	2.72	(492)	2.88	(348)
40~79명	94.8	(992)	2.72	(772)	3.08	(853)
80명 이상	96.7	(909)	2.82	(712)	3.38	(867)
$\chi^2(df)/F$	368.0(3)***		240.4***		240.4***	
2012년 조사	79.8	(4,000)	2.89	(2,687)	3.12	(2,155)

** $p < .01$, *** $p < .001$

나.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실시 비율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실시 비율을 살펴보면(표 VI-3-2 참고), 체육이 전체의 6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어 60.5%와 음악 55.6% 순이었다.

2009년과 2012년 조사결과와 대조해보면 미술, 음악, 체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영어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시설유형에서 70%~80%에 육박하는 비율이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아질수록 영어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비율이 91.1%에서 26.3%로 크게 낮아졌고, 이 외 프로그램들도 규모가 커질수록 실시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표 VI-3-2〉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실시 비율

구분	미술	음악	체육	발레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활동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수)	단위: %(개소)
									교구 활동	한자					단위: %(개소)
전체	25.4	55.6	67.7	4.4	4.9	2.8	3.2	0.1	10.7	1.1	60.5	0.9	17.9	(4,046)	
시설유형															
국공립	15.6	63.9	69.5	3.2	10.6	3.5	2.1	-	7.3	1.9	81.4	1.0	17.6	(506)	
사회복지법인	34.4	52.7	62.1	9.7	8.2	6.3	5.8	0.1	11.2	1.5	78.0	0.8	20.4	(377)	
법인단체	21.4	57.3	73.6	3.5	7.2	4.3	6.9	-	9.0	3.0	79.0	2.9	22.9	(283)	
민간	33.5	67.5	77.7	8.9	5.0	3.8	5.8	0.1	17.2	1.9	81.4	1.3	20.4	(1,134)	
가정	21.9	40.8	57.1	0.2	0.7	0.8	0.8	-	8.5	-	26.5	0.2	15.7	(1,480)	
직장	22.2	72.2	81.7	4.1	9.8	2.1	0.6	-	3.0	-	76.9	1.5	12.4	(266)	
소재지															
대도시	26.8	56.5	66.2	4.6	7.2	2.7	2.5	0.1	11.3	1.0	61.8	1.1	19.4	(1,464)	
중소도시	23.5	58.5	71.0	3.1	3.1	2.0	2.6	-	9.8	1.0	58.1	0.8	17.6	(1,631)	
읍면	26.7	49.1	64.4	6.0	4.2	4.3	5.4	-	11.2	1.6	62.4	0.7	16.1	(951)	
규모															
20명 이하	21.4	40.4	56.5	0.2	0.7	0.8	0.8	-	8.2	-	26.3	0.2	15.3	(1,520)	
21~39명	23.8	58.5	67.6	1.8	3.0	1.4	3.4	-	12.7	1.2	62.5	0.4	13.6	(625)	
40~79명	27.0	64.3	75.5	4.7	6.6	2.9	3.3	0.2	10.2	1.4	84.0	1.0	19.8	(992)	
80명 이상	31.8	69.7	78.2	12.9	11.4	7.1	7.0	-	14.1	2.6	91.1	2.4	23.4	(909)	
2012년 조사	15.7	47.0	53.6	-	6.0	2.9	5.8	0.7	15.2	0.5	62.9	1.0	5.3	(4,000)	
2009년 조사	14.7	13.7	17.5	-		4.1	1.2		2.9		9.9		25.6	10.4	(4,531)

주: 중복응답 결과임.

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장소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를 살펴보면(표 VI-3-3 참고), 원내에서 실시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92.7%, 외부에서 실시한다는 비율이 7.3%로 나타났다.

〈표 VI-3-3〉 특별활동 프로그램 장소

단위: %(개소)

구분	원내	외부	계(수)	$\chi^2(df)$
전체	92.7	7.3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92.7	7.3	100.0(506)	
사회복지법인	93.5	6.5	100.0(377)	
법인·단체	93.7	6.3	100.0(283)	6.5(5)
민간	92.3	7.7	100.0(1,134)	
가정	92.1	7.9	100.0(1,480)	
직장	94.1	5.9	100.0(266)	
소재지				
대도시	93.0	7.0	100.0(1,464)	
중소도시	92.6	7.4	100.0(1,631)	1.6(2)
읍면	92.2	7.8	100.0(951)	
규모				
20명 이하	92.1	7.9	100.0(1,520)	
21~39명	92.9	7.1	100.0(625)	
40~79명	91.9	8.1	100.0(992)	10.4(3)*
80명 이상	93.8	6.2	100.0(909)	

* $p < .05$

라.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특별활동 프로그램당 최대 비용을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살펴보면(표 VI-3-4 참고), 영아의 경우 영어가 1만 5천원대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구활동 1만 4천원대, 컴퓨터 1만 3천원대 순이었다. 유아의 경우 컴퓨터가 1만 9천원대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어 1만 7천원대, 기타 외국어 1만 4천원대 순이었다.

〈표 VI-3-4〉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영유아 1인당 최대 비용

단위: 천원(개소)

구분	특별활동 참여 영아 1인당 최대 비용				특별활동 참여 유아 1인당 최대 비용				
	2015년 조사		2012년 조사		2015년 조사		2012년 조사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프로그램									
미술	12.50	10.98	(838)	22.04	16.51	(118)	8.75	10.43	(611)
음악	12.48	8.78	(1,886)	19.58	14.94	(391)	8.59	9.60	(1,423)
체육	11.75	9.62	(2,289)	18.75	15.43	(506)	7.24	8.92	(1,706)
발레	9.21	10.94	(105)	-	-	-	13.24	10.93	(163)
과학	5.04	7.56	(69)	14.04	5.06	(3)	11.51	8.14	(174)

(표 VI-3-4 계속)

구분	특별활동 참여 영아 1인당 최대 비용				특별활동 참여 유아 1인당 최대 비용			
	2015년 조사		2012년 조사		2015년 조사		2012년 조사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수학	3.76	6.28 (45)	13.67	2.99 (3)	9.34	10.43 (99)	17.28	6.97 (6)
한글	6.37	9.08 (69)	13.89	8.13 (28)	6.82	7.67 (100)	15.23	11.06 (18)
컴퓨터	13.22	12.01 (2)	-	-	19.59	23.29 (2)	-	-
교구활동	14.46	10.84 (352)	27.26	24.83 (104)	9.70	11.20 (231)	24.39	15.43 (58)
한자	2.60	5.32 (11)	-	-	6.81	9.84 (40)	-	-
영어	15.12	14.77 (1,684)	24.52	18.57 (1,129)	17.61	14.72 (1,894)	26.48	17.98 (1,313)
기타 외국어	9.60	10.02 (22)	-	-	14.40	10.17 (38)	-	-
기타	11.93	11.86 (515)	21.78	13.08 (30)	8.26	11.63 (413)	21.75	19.49 (17)

주: 1개월을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임.

지자체가 정한 특별활동 상한액과 비교하여 받는 정도를 살펴보면(표 VI-3-5 참고), 상한액 보다 적다는 응답이 전체의 7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한액을 수납한다는 응답이 24.7%, 상한액보다 많다는 응답이 0.9%로 나타났다.

〈표 VI-3-5〉 지자체가 정한 특별활동 상한액과 비교하여 받는 정도

구분	상한액보다 적음	상한액 수납	상한액보다 많음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74.4	24.7	0.9	100.0(3,461)		
시설유형						
국공립	88.5	11.2	0.3	100.0(473)		
사회복지법인	80.4	19.0	0.6	100.0(336)		
법인단체	82.2	17.8	-	100.0(259)	359.9(10)***	
민간	54.8	43.9	1.3	100.0(1,067)		
가정	84.6	14.9	0.5	100.0(1,089)		
직장	70.9	26.1	3.1	100.0(237)		
소재지						
대도시	66.1	32.5	1.4	100.0(1,234)		
중소도시	77.5	22.0	0.5	100.0(1,413)	82.8(4)***	
읍·면	82.4	16.9	0.8	100.0(814)		
규모						
20명 이하	84.5	14.8	0.6	100.0(1,106)		
21~39명	69.5	29.7	0.8	100.0(547)	112.0(6)***	
40~79명	74.2	24.6	1.2	100.0(929)		
80명 이상	64.8	34.3	0.8	100.0(879)		
2012년 조사	69.3	30.6	0.1	100.0(3,159)		

*** $p < .001$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2012년에 상한액보다 적다는 응답이 69.3%로 나타

난 데 반해 2015년에는 약 5%가량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상한액을 수납한다는 비율이 30.6%로 나타난 데 반해 2015년에는 약 5% 가량 감소하였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상한액 보다 많이 받는다는 비율이 3.1%로 나타나 타 시설유형이 1% 이내로 나타난 데 반해 조금 높은 수치이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상한액을 수납한다는 비율이 43.9%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타 시설유형에 비해 약 20% 이상 높게 집계되었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가장 많이 지불한 영유아의 월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표 VI-3-6 참고),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 3만 4천원대로 나타났다.

〈표 VI-3-6〉 특별활동 프로그램 참여 영유아 1인당 최대 비용

단위: 천원(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4.73	22.51	(3,454)
시설유형			
국공립	26.37	14.37	(473)
사회복지법인	43.48	24.28	(335)
법인·단체	34.44	23.83	(259)
민간	44.08	25.17	(1,063)
가정	28.14	17.03	(1,087)
직장	29.21	22.81	(237)
<i>F</i>	92.5***		
소재지			
대도시	35.94	23.02	(1,233)
중소도시	32.67	20.84	(1,408)
읍·면	36.36	24.16	(813)
<i>F</i>	9.8***		
규모			
20명 이하	28.07	17.05	(1,104)
21~39명	33.05	20.33	(544)
40~79명	35.64	23.74	(928)
80명 이상	43.36	25.46	(878)
<i>F</i>	81.6***		

*** $p < .001$

주: 2012년 조사결과 전체 평균 5만 2천원대로 나타남.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이 4만 4천원대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 4만 3천원대, 법인·단체 어린이집 3만 4천원대 순이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2만 6천원대로 가장 낮았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의 비용이 3만 6천원대로 높았고, 중소도시가 3만 2천원대

로 낮았다. 규모별로는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2만 8천원대에서 4만 3천원대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2012년 평균 금액은 5만 2천원으로 집계되어, 2015년 특별활동 최대비용이 1만 7천원 가량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마.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식

1) 특별활동 운영 업체 및 외부 강사 수

특별활동 운영 업체 수 및 외부강사 수를 살펴보면(표 VI-3-7 참고), 평균 업체 수는 2.78개, 평균 강사 수는 3.03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업체 수와 강사 수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VI-3-7〉 특별활동 운영 업체 수 및 외부 강사 수

단위: 개, 명, (개소)

구분	업체 수		강사 수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78	1.27	3.03	1.35	(3,454)
시설유형					
국공립	2.79	0.99	3.12	1.26	(473)
사회복지법인	2.99	1.24	3.43	1.62	(336)
법인단체	2.88	1.17	3.25	1.51	(259)
민간	3.22	1.60	3.51	1.33	(1,067)
가정	2.20	0.79	2.22	0.79	(1,083)
직장	3.09	1.03	3.57	1.43	(236)
<i>F</i>	87.9***		145.6***		
소재지					
대도시	2.93	1.55	3.21	1.42	(1,229)
중소도시	2.73	1.05	2.94	1.28	(1,412)
읍·면	2.64	1.10	2.90	1.33	(813)
<i>F</i>	13.9***		16.6***		
규모					
20명 이하	2.20	0.79	2.23	0.78	(1,100)
21~39명	2.63	0.91	2.74	0.95	(547)
40~79명	3.00	1.64	3.22	1.18	(929)
80명 이상	3.40	1.15	4.03	1.59	(878)
<i>F</i>	183.2***		408.4***		
2012년 조사	2.63	1.12	2.85	1.33	(3,194)

*** $p < .001$

2) 시간대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살펴보면(표 VI-3-8 참고), 오후12시~오후2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전체의 6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오후2시~오후4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35.4%, 오후4시~오후6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3.8%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오후4시~오후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비율이 37.5%로 타 시설유형이 약 1%대로 나타난 데 반해 30% 이상 높게 나타났고, 오후 12시~오후2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비율이 21.7%로 타 시설유형에 비해 약 25%~48% 가량 낮았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오후 12시~오후 2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오후 4시~오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차 감소하였다.

〈표 VI-3-8〉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

구분	오후 12시 ~오후 2시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4시 ~오후 6시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60.8	35.4	3.8	100.0(3,461)		
시설유형						
국공립	47.0	51.3	1.7	100.0(473)		
사회복지법인	66.2	33.5	0.3	100.0(336)		
법인·단체	70.2	28.6	1.2	100.0(259)	934.6(10)***	
민간	67.3	32.0	0.7	100.0(1,067)		
가정	65.6	32.5	1.9	100.0(1,089)		
직장	21.7	40.8	37.5	100.0(237)		
소재지						
대도시	58.8	35.4	5.8	100.0(1,234)		
중소도시	60.8	35.7	3.5	100.0(1,413)	31.2(4)***	
읍·면	64.0	34.8	1.2	100.0(814)		
규모						
20명 이하	65.4	32.4	2.2	100.0(1,106)		
21~39명	61.3	35.2	3.6	100.0(547)	38.2(6)***	
40~79명	54.4	39.5	6.1	100.0(929)		
80명 이상	61.7	34.9	3.4	100.0(879)		

*** $p < .001$

3) 특별활동 전원 참여비율 및 미참여 영유아 활동

특별활동에 모두 참여하는 비율을 살펴보면(표 VI-3-9 참고), 전체의 34.2%이고, 시

설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의 참여 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고, 가정어린이집이 20.6%로 가장 낮았다.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의 활동을 살펴보면(표 VI-3-9 참고), 교사와 자유선택 활동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응답이 27.5%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와 자유활동을 하는 경우가 72.0%로 타 시설유형에 비해 약 13%~25% 정도 높았고, 특별활동을 참관하는 비율이 0.6%로 가장 낮았다. 또한 일과만 참여 후 귀가하는 경우가 직장어린이집 12.5%, 국공립어린이집 10.8%로 나타나 타 시설유형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교사와 자유활동을 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일과만 참여 후 귀가하는 경우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3-9〉 특별활동 전원 참여 비율 및 미참여 영유아의 활동

단위: %(개소)

구분	모두 참여하는 비율	미참여 시 활동					계(수)
		교사와 자유활동	특별활동 참관	별도 프로그램 운영	일과만 참여 후 귀가	기타	
전체	34.2	58.0	9.7	27.5	4.0	0.8	100.0(2,246)
시설유형							
국공립	42.6	47.9	3.1	36.7	10.8	1.4	100.0(266)
사회복지법인	45.5	57.2	11.5	28.1	2.6	0.7	100.0(180)
법인단체	45.5	55.3	9.1	31.0	3.5	1.0	100.0(137)
민간	35.5	59.1	11.0	26.5	2.6	0.9	100.0(679)
가정	20.6	58.9	11.9	26.8	2.0	0.4	100.0(855)
직장	46.8	72.0	0.6	13.5	12.5	1.5	100.0(129)
$\chi^2(df)$	156.9(5)***			127.6(15)***			
소재지							
대도시	31.6	54.4	6.6	33.3	5.1	0.6	100.0(847)
중소도시	35.5	59.0	11.7	24.7	3.5	1.1	100.0(903)
읍면	36.2	62.4	11.4	22.7	2.9	0.6	100.0(496)
$\chi^2(df)$	6.2(2)*			39.3(6)***			
규모							
20명 이하	20.9	58.9	11.8	26.8	2.0	0.6	100.0(865)
21~39명	39.8	60.3	7.3	29.0	2.4	0.9	100.0(337)
40~79명	41.6	55.9	7.2	28.6	6.9	1.3	100.0(525)
80명 이상	39.8	57.3	10.2	26.7	5.3	0.5	100.0(519)
$\chi^2(df)$	130.2(3)***			35.8(9)***			

* $p < .05$, *** $p < .001$

4. 시사점

제6장 보육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육과정 운영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매년 소수점 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차후 조사에서는 보육과정 운영수준 파악을 위한 항목 구성의 세분화 또는 다양성 확보가 요구된다.

2015년 조사에서는 보육과정 운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보육계획안의 연계성, 일과의 통합적 운영, 활동특성 간 균형성, 보육과정의 정기적 평가와 반영의 4개 항목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3.4점에서 3.8점의 분포를 보여 2009년과 2012년 조사결과와 대조해볼 때 평균점수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소수점 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반복되는 것으로 차후 조사에서는 보육과정 운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항목을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거나, 항목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보육과정 운영 점검 항목을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수준 보육프로그램 참고서의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 작업이 요구된다. 2015년 조사결과에서는 보육프로그램 작성시 참고하고 있는 자료로 보건복지부 개발 보육프로그램집을 참고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영유아 잡지 제공 프로그램과 민간업체 제공 프로그램을 참고하는 비율도 2009년과 2012년 조사와 비교해 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리과정이 전면시행되면서 민간업체 등 사기업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현장에 유입된 결과로 추측된다. 또한 국가수준의 프로그램집을 미활용하는 이유로 쓰던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재교구 준비가 어려워서,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해당 사항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보편적 수준의 보육시설에서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교재교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시대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나갈 수 있도록 개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처에 있어서 시설유형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조사결과에서는 모든 유형의 시설들이 교재교구 구입에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다음 순으로는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규모 시설의 경우 담임교사 인력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타 시설은 보조교사 채용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설규모에 따른 교사 수요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

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원금과 관련하여 3~5세 누리과정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결과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운영비 사용 항목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에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처의 시설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지원금 수준을 제고하고, 사용 항목을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2012년 조사결과 대비 전체적인 특별활동 실시 비율은 증가, 영유아별 평균 프로그램 수는 유사, 특별활동 비용은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활동 실시 비율은 2012년 79.8%에서 85.9%로 6% 증가하였으나, 프로그램 수에 있어서는 영아 0.29개 감소, 유아는 0.01개 증가하여 2012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 특별활동 비용은 영유아 1인당 최대비용이 2012년 조사결과 평균 5만 2천 원이었던데 반해, 2015년에는 3만 4천원으로 집계되어 1만 7천원 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특별활동비를 규제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상한제 등을 시행함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다.

VII. 운영평가·관리 및 정책 관련 의견

어린이집 운영평가 및 관리는 어린이집 평가, 행·재정,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 의사소통과 부모 참여와 보육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어린이집 평가

가. 어린이집 자체 평가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하여 자체 평가의 내용과 주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체 운영 평가의 내용은 운영전반, 보육프로그램, 교사 업무관리, 재정운영, 부모 만족도 조사, 담당교사 평가, 기타 자체 운영 평가 등이 있다. 자체 운영 평가는 기타 자체 운영 평가만 제외하고 내용별로 시설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체 운영 평가의 내용 중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반년에 1회가 38.1%로 가장 많았고, 분기별 1회 이상이 23.3%, 분기별 1회가 16.5%였다. 한편 운영 전반에 대해 자체 운영 평가를 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22.0%나 되었다. 이러한 자체 평가주기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났다.

보육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반년에 1회가 3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분기별 1회 이상이 31.2%, 분기별 1회가 16.7%였다. 한편 보육프로그램에 대해 자체 운영 평가를 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20.7%였다. 이러한 주기는 분기별 1회 이상의 직장어린이집의 주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 업무관리에 대해 살펴보면, 반년에 1회가 3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분기별 1회 이상이 27.2%, 분기별 1회가 16.6%였다. 한편 교사 업무관리에 대해 자체 운영 평가를 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22.7%였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반년에 1회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재정운영에 대해 살펴보면, 반년에 1회가 3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분기별 1회 이상이 20.7%, 분기별 1회가 16.2%였다. 한편 재정운영에 대해 자체 운영 평

가를 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32.0%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재정운영에 관한 자체 평가 비율은 가장 낮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반년에 1회가 가장 높았다.

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 살펴보면, 반년에 1회가 4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분기별 1회가 13.1%, 분기별 1회 이상이 11.9%였다. 한편 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 자체 운영 평가를 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32.7%나 되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에서 반년에 1회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담당교사 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반년에 1회가 3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분기별 1회 이상이 15.9%, 분기별 1회가 12.7%였다. 한편 담당교사 평가에 대해 자체 운영 평가를 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32.9%였다. 담당교사 평가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I-1-1〉 어린이집 자체 운영평가 주기 및 내용

구분	실시안함	반년에 1회	분기별 1회	분기별 1회 이상	단위: %(개소)	
					계(수)	$\chi^2(df)$
<u>운영전반</u>						
전체	22.0	38.1	16.5	23.3	100.0(4,028)	
국공립	11.8	47.4	16.4	24.4	100.0(504)	
사회복지법인	12.4	37.2	15.6	34.8	100.0(374)	
법인·단체	18.7	31.8	19.9	29.7	100.0(279)	37.0(10) ***
민간	20.2	38.9	16.2	24.7	100.0(1,131)	
가정	32.0	33.8	16.2	18.0	100.0(1,476)	
직장	10.0	48.4	18.1	23.5	100.0(264)	
<u>보육프로그램</u>						
전체	20.7	31.4	16.7	31.2	100.0(4,028)	
국공립	7.9	34.1	15.5	42.4	100.0(502)	
사회복지법인	9.9	30.6	16.7	42.8	100.0(375)	
법인·단체	15.2	25.3	19.1	40.4	100.0(280)	83.6(10) ***
민간	19.5	31.9	17.4	31.1	100.0(1,130)	
가정	31.7	31.8	16.3	20.2	100.0(1,476)	
직장	9.4	28.5	16.1	46.0	100.0(265)	
<u>교사 업무관리</u>						
전체	22.7	33.5	16.6	27.2	100.0(4,029)	
국공립	12.0	44.4	14.6	29.0	100.0(504)	
사회복지법인	10.6	35.1	15.4	39.0	100.0(374)	
법인·단체	20.1	29.0	19.7	31.1	100.0(280)	34.2(10) ***
민간	21.8	31.4	18.3	28.4	100.0(1,131)	
가정	32.1	30.4	15.4	22.1	100.0(1,476)	
직장	14.0	39.9	18.8	27.3	100.0(264)	

(표 VII-1-1 계속)

구분	실시안함	반년에 1회	분기별 1회	분기별 1회 이상	계(수)	$\chi^2(df)$
재정 운영						
전체	32.0	31.1	16.2	20.7	100.0(4,029)	
국공립	21.9	39.6	18.0	20.5	100.0(502)	
사회복지법인	20.3	31.7	16.1	32.0	100.0(375)	
법인·단체	21.5	27.4	22.4	28.7	100.0(280)	42.4(10) ***
민간	31.0	31.2	17.0	20.8	100.0(1,131)	
가정	43.3	28.5	12.0	16.2	100.0(1,477)	
직장	19.8	31.9	25.5	22.7	100.0(264)	
부모 만족도 조사						
전체	32.7	42.4	13.1	11.9	100.0(4,031)	
국공립	10.4	67.1	14.0	8.5	100.0(502)	
사회복지법인	28.2	41.5	11.2	19.0	100.0(376)	
법인·단체	27.9	41.0	16.1	15.0	100.0(280)	98.1(10) ***
민간	30.1	40.9	15.9	13.1	100.0(1,133)	
가정	47.4	30.7	10.9	11.0	100.0(1,477)	
직장	16.2	67.4	11.0	5.4	100.0(263)	
담당교사 평가						
전체	32.9	38.5	12.7	15.9	100.0(4,033)	
국공립	13.8	57.2	12.0	17.0	100.0(503)	
사회복지법인	20.0	41.5	11.2	27.4	100.0(376)	
법인·단체	28.3	39.5	15.5	16.7	100.0(280)	54.1(10) ***
민간	31.2	37.0	14.7	17.1	100.0(1,132)	
가정	48.4	28.5	10.7	12.4	100.0(1,478)	
직장	13.3	58.4	16.0	12.3	100.0(264)	
기타 자체운영평가						
전체	23.3	48.7	13.8	14.1	100.0(29)	
국공립	27.6	37.2	-	35.1	100.0(5)	
사회복지법인	-	76.0	-	24.0	100.0(4)	
법인·단체	-	100.0	-	-	100.0(1)	8.4(10)
민간	13.7	46.9	25.7	13.7	100.0(8)	
가정	49.0	34.4	16.6	-	100.0(7)	
직장	-	83.1	-	16.9	100.0(4)	
2012년 조사	13.3	28.6	33.9	24.2	100.0(3,998)	
2009년 조사	31.3	37.5	11.3	19.5	100.0(3,177)	

*** $p < .001$

주: 2012년 조사에서는 '자체 운영 평가'의 주기만 질문함.

기타 자체운영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반년에 1회가 4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분기별 1회 이상이 14.1%, 분기별 1회가 13.8%였다. 기타 자체운영평가를 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23.3%나 되었다.

한편 자체 운영평가에 대해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5년은 전반적으로 2009년과 2012년에 비해 분기별 자체 운영평가 주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년에 1회 주기가 증가하였다.

나. 어린이집 평가 인증

1)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 의미로서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상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 후 전담어린이집 제외)이다. 구체적으로 신규인증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이 해당된다. 그리고 재인증은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이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15; 215~2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재인증을 받은 경우는 55.7%, 신규인증을 받은 경우는 24.6%, 신규인증 진행 중인 경우는 9.1%, 참여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0.8%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도 9.8%나 되었다. 이러한 평가인증 상태는 시설 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재인증을 받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인증을 받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은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높았다.

소재지별로 보면, 재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도시의 경우는 신규인증이나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재인증을 받은 경우는 80명 이상의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인증을 받은 경우는 20명 이하의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명 이하의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2〉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태

단위: %(개소)

구분	신규인증 진행 중	신규 인증	재인증	참여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함	참여해 본 경험 없음	계(수)	$\chi^2(df)$
전체	9.1	24.6	55.7	0.8	9.8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3.0	17.1	79.3	0.3	0.3	100.0(506)	
사회복지법인	6.3	9.9	79.5	2.0	2.4	100.0(377)	
법인·단체	6.7	9.6	74.2	0.7	8.8	100.0(283)	409.5(20) ***
민간	11.1	25.6	51.9	0.7	10.6	100.0(1,134)	
가정	11.2	32.0	43.1	0.9	12.9	100.0(1,480)	
직장	6.9	29.4	45.7	-	18.0	100.0(266)	
소재지							
대도시	9.2	21.5	60.1	1.0	8.2	100.0(1,464)	
중소도시	9.4	28.1	50.3	0.8	11.4	100.0(1,631)	40.3(8) ***
읍·면	8.3	23.8	57.9	0.5	9.6	100.0(951)	
규모							
20명 이하	11.0	32.1	43.0	0.9	13.0	100.0(1,520)	
21~39명	10.5	24.5	52.6	1.4	11.0	100.0(625)	220.1(12) ***
40~79명	7.0	21.8	63.3	0.5	7.5	100.0(992)	
80명 이상	7.3	15.3	71.1	0.6	5.8	100.0(909)	

*** $p < .001$

2) 어린이집 평가인증 미참여 이유

평가인증제도에 참여 경험이 없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원장 및 교사의 업무 과중이 26.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재정 소요의 어려움 19.5%,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2.2%, 환경개선한계 8.6%, 준비 미흡 6.8%, 참여취소발생 6.8%, 교사수급의 어려움 6.0%, 지표이해의 어려움 4.7%, 조력부족 1.6%,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 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어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미참여 이유는 복합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복합적인 응답 양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일부 사례는 매우 적어서 일반화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재정 소요를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법인·단체와 민간은 원장 및 교사의 업무 과중과 재정소요를, 가정어린이집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원장 및 교사의 업무 과중이 주된 이유로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나지 않았다.

또한 규모별로 보았을 때도 원장 및 교사의 업무과중과 재정소요에 대한 이유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2012년 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원장 및 교사의 업무과중,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준비미흡, 교사 수급의 어려움, 재정소요의 어려움의 순서 등으로 어려운 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조사 결과와 업무과중과 같은 주된 이유는 동일하나 세부적인 이유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VII-1-3〉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구분	지표 이해 어려움	교사 수급	재정 소요	업무 과중	조력 부족	환경 개선 한계	필요성 느끼지 못함	변화 거부감	준비 미흡	참여 취소 발생	단위: %(개소)	
											기타	계(수)
전체	4.7	6.0	19.5	26.8	1.6	8.6	12.2	0.2	6.8	6.8	7.0	100.0(395)
시설유형												
국공립	50.0	-	50.0	-	-	-	-	-	-	-	-	100.0(2)
사회복지법인	-	12.5	37.5	25.0	-	-	-	-	25.0	-	-	100.0(9)
법인·단체	-	9.1	27.3	31.8	-	-	-	-	13.6	13.6	4.5	100.0(21)
민간	4.2	8.3	19.2	30.0	-	11.7	8.3	-	6.7	7.5	4.2	100.0(127)
가정	2.1	-	6.3	20.8	-	6.3	27.1	-	4.2	8.3	25.0	100.0(188)
직장	6.0	5.4	21.2	26.1	3.3	8.7	13.0	-	6.0	5.4	4.9	100.0(48)
$\chi^2(df)$							85.9(50)***					
소재지												
대도시	5.0	5.8	21.7	21.7	-	11.7	16.7	-	5.0	5.8	6.7	100.0(121)
중소도시	5.1	5.6	16.4	28.2	2.8	7.3	10.7	0.6	4.5	9.0	9.6	100.0(182)
읍면	5.6	5.6	22.2	27.8	2.2	6.7	10.0	-	13.3	2.2	4.4	100.0(92)
$\chi^2(df)$							26.3(20)					
규모												
20명 이하	5.7	5.2	21.1	25.8	3.1	9.3	12.4	0.5	5.7	5.7	5.7	100.0(196)
21~39명	3.0	6.0	16.4	28.4	-	9.0	10.4	-	10.4	7.5	9.0	100.0(73)
40~79명	8.3	6.9	22.2	25.0	-	9.7	6.9	-	4.2	6.9	9.7	100.0(77)
80명 이상	-	5.9	15.7	27.5	-	2.0	21.6	-	7.8	11.8	7.8	100.0(49)
$\chi^2(df)$							28.1(30)					
2012년 조사	3.3	11.1	11.1	17.2	2.6	7.5	12.3	0.7	11.5	2.6	20.3	100.0(604)

*** $p < .001$

3)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은 2005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했던 '평가인증 조력' 사업을 기초로 하여 2012년에 평가인증 컨설팅이라는 사업명으로 변경되어

추진되었다.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신규인증, 재인증, 재참여)이 평가인증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찾아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015;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30000/dl_30003/dl_30013/dl_30030.jsp).

이러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컨설팅을 받은 경우는 70.0%, 받지 않은 경우는 3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유형, 소재지, 규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설유형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 82.6%로 컨설팅을 많이 받았고, 직장어린이집의 컨설팅 비율은 55.5%로 가장 낮았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가 72.5%로 컨설팅을 많이 받았고 읍·면지역이 68.3%로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규모별 컨설팅 여부를 살펴보면, 80명 이상 어린이집이 74.3%로 컨설팅을 많이 받았고, 20명 이하 어린이집이 낮은 비율이었다.

〈표 VII-1-4〉 평가인증 컨설팅 유무

구분	있다	없다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70.0	30.0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82.6	17.4	100.0(506)	
사회복지법인	77.4	22.6	100.0(377)	
법인·단체	73.5	26.5	100.0(283)	87.9(5) ^{***}
민간	69.3	30.7	100.0(1,134)	
가정	66.4	33.6	100.0(1,480)	
직장	55.5	44.5	100.0(266)	
소재지				
대도시	72.5	27.5	100.0(1,464)	
중소도시	68.6	31.4	100.0(1,631)	7.4(2) [*]
읍·면	68.3	31.7	100.0(951)	
규모				
20명 이하	66.2	33.8	100.0(1,520)	
21~39명	68.0	32.0	100.0(625)	24.9(3) ^{***}
40~79명	73.3	26.7	100.0(992)	
80명 이상	74.3	25.7	100.0(909)	
2012년 조사	65.4	34.6	100.0(3,998)	

* $p < .05$, *** $p < .001$

한편 컨설팅을 받지 못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4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른 경로의 컨설팅을 이용함,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랐음,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음이 각각 19.2%, 15.5%, 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시설유형과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이유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랐음이 높은 비율이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경로의 컨설팅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컨설팅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인데, 40~79명 어린이집이 가장 높았다. 한편 80명 이상 어린이집의 26.8%가 다른 경로의 컨설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5〉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랐음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음	다른 경로의 컨설팅을 이용함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음	기타	계(수)	$\chi^2(df)$
전체	15.5	7.3	19.2	48.9	9.1	100.0(1,200)	
시설유형							
국공립	1.8	4.4	29.3	56.2	8.4	100.0(90)	
사회복지법인	7.1	8.6	32.1	43.4	8.9	100.0(85)	
법인·단체	12.7	6.2	22.2	51.3	7.6	100.0(70)	60.0(20)***
민간	17.4	7.5	21.3	46.3	7.5	100.0(351)	
가정	19.5	8.8	12.6	49.3	9.9	100.0(484)	
직장	10.8	2.7	22.5	51.6	12.4	100.0(120)	
소재지							
대도시	13.8	6.5	20.5	51.0	8.1	100.0(398)	
중소도시	15.2	7.1	16.3	50.3	11.1	100.0(513)	13.5(8)
읍·면	18.3	8.7	22.2	43.6	7.2	100.0(289)	
규모							
20명 이하	19.4	8.5	12.4	49.9	9.8	100.0(498)	
21~39명	18.2	6.6	19.7	44.3	11.2	100.0(201)	47.7(12)***
40~79명	10.1	5.1	25.3	53.0	6.5	100.0(265)	
80명 이상	10.6	7.8	26.8	45.9	8.9	100.0(236)	

*** $p < .001$

4) 평가인증 참여의 어려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류 등 업무 과정이 58.1%, 비용소요가 11.1%, 지표수가 많음이 9.6%, 시설 개보수의 어려움이

6.1%, 우수교사 확보의 어려움이 5.1%, 그 외 어려움 없음, 새 절차 이해, 컨설팅 부족 등 순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시설유형, 소재지,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VII-1-6〉 평가인증 참여 시 어려움

구분	업무 과중	지표 수 많음	비용 소요	컨설팅 부족	우수 교사 확보	새 절차 이해	어려움 없음	시설 개보수 어려움	단위: %(개소)		
									기타	계(수)	$\chi^2(df)$
전체	58.1	9.6	11.1	2.6	5.1	2.9	4.0	6.1	0.5	100.0(2,840)	
시설유형											
국공립	62.9	10.0	6.0	2.4	3.5	2.1	4.9	7.5	0.7	100.0(416)	
사회복지법인	61.7	10.1	8.9	3.6	1.9	2.6	1.6	8.0	1.5	100.0(292)	
법인단체	59.0	8.1	11.3	1.7	4.8	3.1	3.0	8.0	1.0	100.0(211)	102.8(40) ***
민간	52.8	10.5	15.1	2.5	6.5	3.7	2.7	6.0	0.3	100.0(782)	
가정	58.3	9.5	12.0	2.5	5.6	2.5	5.1	4.5	-	100.0(994)	
직장	62.7	5.7	3.7	2.9	5.2	3.9	6.9	7.3	1.8	100.0(145)	
소재지											
대도시	59.9	8.8	8.9	3.0	5.7	2.5	4.4	6.1	0.6	100.0(1,064)	38.2(16) **
중소도시	53.7	11.9	12.4	2.7	5.7	3.2	3.9	6.1	0.5	100.0(1,116)	
읍면	62.5	7.0	12.8	1.6	3.0	3.0	3.4	6.3	0.4	100.0(660)	
규모											
20명 이하	58.1	9.5	11.8	2.4	5.6	2.9	5.2	4.5	-	100.0(1,019)	
21~39명	45.9	10.4	16.1	3.7	5.9	3.3	5.1	8.4	1.3	100.0(423)	81.2(24) ***
40~79명	57.7	10.6	9.6	2.7	5.2	3.7	3.5	6.6	0.4	100.0(726)	
80명 이상	66.2	8.2	8.7	1.9	3.8	1.9	1.9	6.6	0.8	100.0(672)	
2012년 조사	65.4	7.2	12.6	-	7.4	-	2.2	-		100.0(2,587)	
2009년 조사	33.2	4.0	25.4	-	7.5	-	-	-		100.0(2,075)	

** $p < .01$, *** $p < .001$

주: 2009, 2012년 조사에서는 '조력부족'이 각각 2.1%, 4.1%, '기타'가 각각 1.5%, 1.1%로 나타남.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업무과중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순이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지표수가 많음과 비용 소요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였으나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 개보수의 어려움을 들었다(표 VII-1-6 참조).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업무과중과 비용 소요의 이유가 비율이 높았고, 중소도시는 지표수가 많음을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규모별로도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업무과중이 주된 이유로 제시되었으며 중소규모의 경우는 지표수 많음과 비용 소요에 대한 어려움도 지적하였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조사 결과, 질문 항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업무 과중과 비용 소요가 주된 이유로 지적되었다. 이것은 2009년 보육실태조사와 유사한 양상이나 지표 수 많음에 대한 비율은 더 증가하고 비용 소요는 감소하고 있었다. 2015년 조사결과와 앞서 두 해와 비교하면 업무과중과 비용소요와 같은 주된 어려움은 동일하나 그 비율은 약간 감소했으며 지표 수 많음에 대한 의견이 증가한 정도였다.

5) 평가지표의 적절성

현재의 평가지표가 적절한지 여부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표 VII-1-7〉 현재의 평가지표 적절성 여부 및 부적절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적절성 여부		부적절 이유							
	적절성 비율	계(수)	지나 치게 세분화	특정 분야에 편중	지표수 너무 많음	불 필요한 항목 포함	어린 이집 특성 미반영	질 측정 부적절	기타	계(수)
전체	33.6	100.0(4,046)	24.4	1.0	23.7	14.5	27.4	8.6	0.4	100.0(2,688)
시설유형										
국공립	28.7	100.0(525)	26.6	0.9	19.7	13.0	30.2	8.9	0.7	100.0(355)
사회복지법인	27.1	100.0(352)	27.2	1.0	26.4	15.7	21.6	8.0	0.1	100.0(278)
법인·단체	33.7	100.0(273)	22.2	0.8	23.3	10.6	30.2	12.8	-	100.0(193)
민간	30.8	100.0(1,139)	24.4	0.8	27.5	16.1	25.6	5.4	0.1	100.0(794)
가정	38.5	100.0(1,484)	24.3	1.2	22.3	15.0	27.1	9.5	0.7	100.0(905)
직장	37.0	100.0(273)	18.2	1.6	18.4	10.2	36.4	14.5	0.8	100.0(163)
$\chi^2(df)$	33.3(5)***					62.4(30)***				
소재지										
대도시	33.5	100.0(1,512)	23.7	0.8	22.8	14.3	30.0	8.2	0.3	100.0(981)
중소도시	34.4	100.0(1,603)	24.5	1.0	24.3	14.9	26.8	8.2	0.3	100.0(1,065)
읍면	32.5	100.0(931)	25.4	1.3	24.2	14.2	24.0	9.9	0.9	100.0(642)
$\chi^2(df)$	0.9(2)					13.7(12)				
규모										
20명 이하	38.4	100.0(1,529)	24.4	1.1	21.9	14.7	27.6	9.6	0.7	100.0(932)
21~39명	34.7	100.0(621)	24.2	0.2	22.8	16.1	28.1	8.3	0.3	100.0(401)
40~79명	32.4	100.0(1,001)	23.8	0.9	25.1	14.1	27.8	8.1	0.2	100.0(681)
80명 이상	26.1	100.0(895)	25.1	1.4	25.3	13.7	26.1	7.9	0.4	100.0(674)
$\chi^2(df)$	39.7(3)***					12.4(18)				

*** $p < .001$

먼저 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전체의 33.6%만이 적절하다고 느끼

고 있었다. 이러한 적절성 여부는 시설유형과 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평가지표의 적절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았고 가정어린이집과 20명 이하 어린이집에서 적절성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았다.

다음으로 평가지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를 알아보았다. 먼저 부적절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특성 미반영, 지나치게 세분화, 지표수가 너무 많음,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 질 측정 부적절, 특정 분야에 편중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들은 시설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특성 미반영을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지나치게 세분화를 주된 이유로 지적하였다.

6) 평가인증의 적용 사항

다음은 향후 평가인증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평가인증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모 참여, 지자체 참여, 불시 방문, 등급화, 의무화, 유효기간 차등화, 재정지원 연계 등이며 이러한 항목들의 바람직함 정도와 평균 점수는 모두 시설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 참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정도는 43.2%였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는 56.9%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율이 좀 더 높았고 평균 점수는 2.32점이었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59.4%로 높았으며 평균 점수도 2.28점으로 낮았다.

지자체 참여에 대해서는 대체로 바람직한 정도는 37.2%였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는 62.8%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2.24점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4.8%였고, 평균 점수도 2.18점으로 낮았다.

불시 방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정도는 13.7%였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율은 86.4%로 대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평균 점수는 1.7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가 88.2%로 높았으며, 평균점수는 1.65점으로 가장 낮았다.

등급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9.2%였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70.7%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율이 꽤 높았고 평균 점수는 2.06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가 77.2%로 높았으며 평균 점수는 1.93점으로 낮았다.

의무화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정도는 53.6%였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46.5%로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좀 더 높았으며 평균 점수는 2.46점이었다. 시설유형 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바람직하다는 정도가 67.5%였으며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바람직하다는 정도가 69.1%로 높았다. 평균 점수도 각각 2.62점, 2.73점으로 높았다.

유효기간 차등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3.2%였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6.8%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평균 점수는 2.33점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5.5%로 높았으며 평균 점수는 2.17점으로 낮았다.

재정지원 연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3.1%였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46.9%로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약간 높았고 평균 점수는 2.51점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4.3%로 높았으며 평균 점수는 2.73점으로 높았다.

〈표 VII-1-8〉 평가인증 적용 사항에 대한 의견

구분						단위: %(개소), 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계(수)	4점 평균	
부모 참여							
전체	16.2	40.7	37.8	5.4	100.0(4,046)	2.32	
국공립	12.3	39.5	44.0	4.2	100.0(506)	2.40	
사회복지법인	16.9	40.5	38.7	3.9	100.0(377)	2.30	
법인·단체	14.5	44.8	34.1	6.6	100.0(283)	2.33	
민간	17.5	41.4	36.4	4.7	100.0(1,134)	2.28	
가정	17.7	41.7	35.1	5.5	100.0(1,480)	2.28	
직장	10.8	30.3	48.4	10.5	100.0(266)	2.59	
$\chi^2(df)/F$	59.0(15)***					8.2***	
지자체 참여							
전체	16.9	45.9	33.6	3.6	100.0(4,046)	2.24	
국공립	13.3	46.7	36.3	3.6	100.0(506)	2.30	
사회복지법인	17.7	43.4	35.7	3.2	100.0(377)	2.24	
법인·단체	13.6	51.9	30.5	4.0	100.0(283)	2.25	
민간	19.8	45.0	32.7	2.5	100.0(1,134)	2.18	
가정	17.9	47.9	30.2	3.9	100.0(1,480)	2.20	
직장	8.6	34.4	50.7	6.3	100.0(266)	2.55	
$\chi^2(df)/F$	75.7(15)***					11.6***	

(표 VII-1-8 계속)

구분	전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계(수)	4점 평균
불시 방문						
전체	44.4	42.0	11.3	2.4	100.0(4,046)	1.72
국공립	44.5	44.2	8.5	2.9	100.0(506)	1.70
사회복지법인	46.2	41.3	9.9	2.6	100.0(377)	1.69
법인·단체	42.4	44.1	10.2	3.3	100.0(283)	1.74
민간	47.8	40.4	10.4	1.4	100.0(1,134)	1.65
가정	44.3	41.3	12.1	2.4	100.0(1,480)	1.73
직장	29.5	46.8	19.5	4.2	100.0(266)	1.98
$\chi^2(df)/F$	53.4(15)***					8.8***
등급화						
전체	27.8	42.9	24.9	4.3	100.0(4,046)	2.06
국공립	28.7	42.7	23.5	5.1	100.0(506)	2.05
사회복지법인	28.2	43.4	21.0	7.4	100.0(377)	2.08
법인·단체	29.7	41.8	25.3	3.2	100.0(283)	2.02
민간	31.8	45.4	20.6	2.2	100.0(1,134)	1.93
가정	26.0	42.3	26.8	4.9	100.0(1,480)	2.11
직장	16.3	37.6	40.2	5.9	100.0(266)	2.36
$\chi^2(df)/F$	87.2(15)***					13.5***
의무화						
전체	18.0	28.5	43.1	10.5	100.0(4,046)	2.46
국공립	15.3	17.2	57.3	10.2	100.0(506)	2.62
사회복지법인	17.2	32.4	40.4	10.0	100.0(377)	2.43
법인·단체	15.8	32.0	45.1	7.1	100.0(283)	2.43
민간	22.4	31.7	37.7	8.3	100.0(1,134)	2.32
가정	17.0	30.4	40.8	11.8	100.0(1,480)	2.47
직장	12.6	18.3	52.3	16.8	100.0(266)	2.73
$\chi^2(df)/F$	125.5(15)***					14.3***
유효기간 차등화						
전체	18.8	38.0	35.0	8.2	100.0(4,046)	2.33
국공립	16.8	34.9	38.5	9.8	100.0(506)	2.41
사회복지법인	17.8	35.1	35.3	11.8	100.0(377)	2.41
법인·단체	17.1	38.4	37.9	6.7	100.0(283)	2.34
민간	22.7	42.8	29.2	5.4	100.0(1,134)	2.17
가정	18.4	37.2	36.4	8.1	100.0(1,480)	2.34
직장	11.9	31.5	42.1	14.5	100.0(266)	2.59
$\chi^2(df)/F$	81.1(15)***					14.2***
재정지원 연계						
전체	17.6	29.3	37.6	15.5	100.0(4,046)	2.51
국공립	15.3	26.3	40.5	18.0	100.0(505)	2.61
사회복지법인	16.0	25.5	41.0	17.5	100.0(376)	2.60
법인·단체	17.0	36.0	35.6	11.4	100.0(281)	2.41

(표 VII-1-8 계속)

구분	전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계(수)	4점 평균
민간	20.8	32.1	34.9	12.2	100.0(1,131)	2.39	
가정	17.5	28.9	37.4	16.2	100.0(1,479)	2.52	
직장	12.5	23.2	42.6	21.7	100.0(266)	2.73	
$\chi^2(df)/F$		54.5(15)***					9.4***
2012년 조사							
부모 참여	12.9	41.9	41.9	3.2	100.0(3,996)	2.36	
지자체 참여	12.1	41.9	41.4	4.6	100.0(3,991)	2.39	
등급화	17.2	45.0	31.8	6.0	100.0(3,992)	2.27	
유효기간 차등화	14.2	38.1	39.2	8.6	100.0(3,995)	2.42	
재정지원 연계	9.8	24.2	49.0	17.0	100.0(3,991)	2.73	

*** $p < .001$

2. 어린이집 행·재정

가. 재무관리

1) 재무회계 규칙 준수 여부

먼저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규칙의 세부 내용에 대해 매우 잘 준수함에서 전혀 준수하지 않음의 4수준으로 답하도록 하여 준수 정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준수정도는 별도의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 사용, 수입과 지출 행위 시 관련 서류 첨부와 회계보고 의무화는 99%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나 기타 운영비 15% 한도 준수는 약간 낮은 97.6%, 보육교직원 소득 신고 항목은 9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세부내용에 대한 응답 정도와 평균 점수는 시설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각 세부내용별 준수 정도를 살펴보면, 첫째 별도의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을 사용을 하자는 지에 대하여 응답한 어린이집의 99.8%가 준수하고 있으며 평균 점수는 3.88 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비율과 평균 점수로 볼 때 준수 정도가 높았다.

〈표 VII-2-1〉 재무회계규칙 세부내용별 준수 여부

단위: %(개소), 점

구분	매우 잘 준수함	대체로 준수함	별로 준수 안함	전혀 준수 안함	계(수)	4점 평균
별도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용						
전체	87.9	11.9	0.2	-	100.0(4,026)	3.88
국공립	95.3	4.5	0.3	-	100.0(505)	3.95
사회복지법인	94.1	5.9	-	-	100.0(373)	3.94
법인·단체	93.5	6.5	-	-	100.0(282)	3.93
민간	83.5	16.2	0.3	-	100.0(1,131)	3.83
가정	85.2	14.6	0.2	-	100.0(1,472)	3.85
직장	93.6	5.8	0.6	-	100.0(263)	3.93
$\chi^2(df)/F$	94.2(15)***				16.8***	
수입·지출 균거서류 첨부						
전체	84.0	15.7	0.3	-	100.0(4,041)	3.84
국공립	94.1	5.5	0.5	-	100.0(505)	3.94
사회복지법인	91.0	9.0	-	-	100.0(377)	3.91
법인·단체	91.2	8.8	-	-	100.0(283)	3.91
민간	77.5	22.3	0.2	-	100.0(1,133)	3.77
가정	80.7	18.9	0.4	-	100.0(1,478)	3.80
직장	94.0	5.6	0.4	-	100.0(265)	3.94
$\chi^2(df)/F$	139.3(15)***				25.4***	
보육교직원 소득 신고						
전체	80.6	15.6	2.6	1.1	100.0(3,993)	3.76
국공립	94.5	5.1	0.5	-	100.0(505)	3.94
사회복지법인	92.1	6.4	1.2	0.4	100.0(377)	3.90
법인·단체	89.7	8.8	1.5	-	100.0(281)	3.88
민간	75.1	19.6	3.5	1.8	100.0(1,123)	3.68
가정	73.3	21.2	3.8	1.7	100.0(1,447)	3.66
직장	92.1	7.8	-	0.1	100.0(260)	3.92
$\chi^2(df)/F$	206.9(15)***				38.2***	
회계보고 의무화						
전체	86.3	13.0	0.5	0.1	100.0(4,037)	3.85
국공립	94.6	5.1	0.3	-	100.0(506)	3.94
사회복지법인	94.5	5.1	0.3	-	100.0(377)	3.94
법인·단체	90.5	9.1	0.5	-	100.0(282)	3.90
민간	80.7	18.0	1.0	0.3	100.0(1,134)	3.79
가정	83.5	15.9	0.4	0.2	100.0(1,476)	3.83
직장	94.5	5.5	-	-	100.0(262)	3.95
$\chi^2(df)/F$	115.5(15)***				21.9***	
기타운영비 15%한도 준수						
전체	78.1	19.5	1.7	0.7	100.0(3,686)	3.75
국공립	87.1	12.1	0.8	-	100.0(350)	3.86

(표 VII-2-1 계속)

구분	매우 잘 준수함	대체로 준수함	별로 준수 안함	전혀 준수 안함	계(수)	4점 평균
사회복지법인	86.6	12.1	0.5	0.8	100.0(348)	3.84
법인·단체	83.6	14.2	1.8	0.3	100.0(251)	3.81
민간	71.6	24.1	2.8	1.5	100.0(1,108)	3.66
가정	76.9	21.1	1.6	0.4	100.0(1,444)	3.75
직장	88.0	11.8	0.2	-	100.0(185)	3.88
$\chi^2(df)/F$		91.3(15)***				16.2***
2012년 조사						
별도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용	85.8	13.6	0.5	0.2	100.0(3,997)	3.85
수입·지출 균거서류 첨부	79.2	20.2	0.5	0.2	100.0(3,998)	3.78
보육교직원 소득 신고	70.2	17.8	6.9	5.1	100.0(3,997)	3.53
기타운영비 15%한도 준수	69.2	24.9	3.7	2.2	100.0(3,928)	3.61

*** $p < .001$

다음은 수입과 지출 행위 시 관련 균거서류 첨부에 관한 사항도 99.7%가 준수하고 있으며 평균 점수는 3.84점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에 있어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준수 정도도 높았고 평균 점수도 3.94점으로 높았으며 민간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낮았다.

세 번째로 보육교직원 소득 신고는 어린이집의 96.2%정도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3.76점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준수 비율이 가장 높고 가정어린이집은 비율과 평균 점수 모두 낮았다.

네 번째는 회계보고 의무화로서 전체 조사대상의 99.3%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3.85점이었다. 직장어린이집의 준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어린이집의 준수 비율이나 평균 점수 모두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지막으로 기타 운영비 15% 한도 준수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97.6%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의 준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어린이집의 준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2) 재무관리 담당자와 재무교육 횟수

이번에는 어린이집 재무관리 담당자와 재무교육 횟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어린이집 재무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원장이 하는 경우가 82.0%, 대표자가 하는 경우 5.0%,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5.4%, 교사 3.8%, 사무원 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무담당자는 시설유형, 소재지,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재무관리 담당자는 시설유형에 따라서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이 86.0%로 가장 높았으며, 직장어린이집 73.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의 사무원이 담당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소재지에 따라 살펴보면, 대도시의 어린이집 원장이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이 재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고 인원이 증가하면 원장의 재무담당 관리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재무교육의 평균 횟수는 40~79명의 어린이집에서 높았다

다음은 2014년 한 해 동안 재무교육을 받는 횟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전체 평균 횟수는 1.47회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설유형, 소재지,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장어린이집과 대도시 및 40~79명의 어린이집에서의 교육 횟수가 높았다.

〈표 VII-2-2〉 재무관리 담당자의 재무교육 횟수

구분	재무관리 담당자						단위: %, 회(개소)	
	원장	대표자	사무원	교사	외부위탁	기타인력	평균	표준편차
전체	82.0	5.0	2.8	3.8	5.4	0.9	1.47	0.92
시설유형								
국공립	85.1	0.6	2.8	10.1	0.3	1.3	1.56	0.74
사회복지법인	73.9	2.3	6.0	13.6	2.4	1.9	1.47	1.79
법인·단체	82.3	1.2	8.8	4.5	1.3	1.8	1.40	0.59
민간	79.9	9.3	1.3	2.2	7.1	0.1	1.44	0.69
가정	86.0	5.4	-	0.6	7.8	0.2	1.45	0.74
직장	73.8	0.5	14.3	2.0	3.7	5.7	1.60	1.35
$\chi^2(df)/F$	677.2(15)***						11.0***	
소재지								
대도시	84.8	3.8	1.9	4.3	4.5	0.8	1.58	1.15
중소도시	80.3	6.3	3.1	2.1	7.5	0.7	1.43	0.84
읍면	80.5	4.7	3.9	5.9	3.5	1.4	1.36	0.55
$\chi^2(df)/F$	69.0(10)***						16.4***	
규모								
20명 이하	86.2	5.3	-	0.7	7.6	0.2	1.44	0.73
21~39명	84.4	7.0	0.4	2.5	4.6	1.0	1.35	0.63
40~79명	83.0	4.4	2.8	5.7	3.3	0.9	1.60	1.39
80명 이상	72.2	3.8	9.3	7.8	4.7	2.3	1.45	0.64
$\chi^2(df)/F$	344.2(15)***						19.4**	
2012년 조사	72.9	9.9	5.3	4.0	6.8	1.0	0.85	0.80

*** p < .001

3) 클린카드 사용 여부

어린이집에서 클린카드 사용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클린카드의 소지비율은 37.3%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지비율은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소지비율이 높았고, 대도시와 40~79명의 어린이집에서 소지비율이 높았다.

한편 클린카드를 소지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용 내용을 확인하였다.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항상 사용하는 경우는 87.8%,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7.1%,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5.1% 정도였다. 또한 이러한 클린카드의 사용은 소지비율과 유사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항상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와 40~79명의 어린이집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3〉 클린카드 사용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소지 비율	계(수)	사용 여부			계(수)
			항상 사용함	부분적으로 사용함	사용하지 않음	
전체	37.3	100.0(4,046)	87.8	7.1	5.1	100.0(1,505)
시설유형						
국공립	48.8	100.0(506)	95.7	2.4	2.0	100.0(45)
사회복지법인	32.1	100.0(377)	79.6	10.6	9.7	100.0(113)
법인·단체	43.8	100.0(283)	90.8	5.8	3.3	100.0(120)
민간	37.2	100.0(1,134)	84.0	10.8	5.2	100.0(432)
가정	29.3	100.0(1,480)	83.5	8.9	7.6	100.0(80)
직장	34.8	100.0(266)	89.0	5.6	5.4	100.0(515)
$\chi^2(df)$	49.81(5)***		36.11(10)***			
소재지						
대도시	47.9	100.0(1,464)	89.7	6.8	3.6	100.0(708)
중소도시	30.5	100.0(1,631)	87.3	7.0	5.7	100.0(501)
읍면	31.7	100.0(951)	84.1	8.1	7.8	100.0(296)
$\chi^2(df)$	117.3(2)***		9.08(4)			
규모						
20명 이하	34.8	100.0(1,520)	89.1	5.5	5.5	100.0(528)
21~39명	37.4	100.0(625)	84.1	10.3	5.6	100.0(239)
40~79명	41.0	100.0(992)	91.2	4.4	4.4	100.0(406)
80명 이상	37.3	100.0(909)	84.7	10.5	4.8	100.0(332)
$\chi^2(df)$	10.03(3)*		17.39(6)**			

* $p < .05$, ** $p < .01$, *** $p < .001$

4) 재정적인 여유 시 사용처

어린이집 운영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경우의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을 경우,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6.6%, 교재교구 구입(기자재 포함)에 24.3%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이월금으로 전환, 기타 운영비,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보육교직원 보수 향상 지급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용처는 시설유형과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2-4〉 재정적인 여유 발생 시 사용처

단위: %(개소)

구분	보육 교직원 보수 향상	보육 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월금 전환	기타 운영비	기타	계(수)
전체	5.8	6.0	24.3	36.6	10.9	6.1	10.3	100.0(4,015)
시설유형								
국공립	6.6	9.8	20.8	48.3	10.9	1.8	1.8	100.0(506)
사회복지법인	3.7	2.6	20.5	56.5	6.8	4.6	5.3	100.0(375)
법인·단체	7.0	6.9	19.4	41.7	14.0	7.2	3.8	100.0(280)
민간	6.2	4.6	23.4	33.9	9.8	8.4	13.7	100.0(1,120)
가정	5.9	6.4	26.1	31.2	9.6	6.4	14.3	100.0(1,471)
직장	3.8	5.0	34.4	23.0	24.9	4.7	4.2	100.0(263)
$\chi^2(df)/F$	326.9(30)***							
소재지								
대도시	5.4	6.3	25.5	37.3	10.5	5.2	9.7	100.0(1,450)
중소도시	6.1	5.8	23.3	35.1	11.2	6.6	11.8	100.0(1,620)
읍·면	6.1	5.5	23.8	37.8	11.1	6.8	8.8	100.0(945)
$\chi^2(df)/F$	14.1(12)							
규모								
20명 이하	6.1	6.4	26.0	30.9	9.9	6.6	14.1	100.0(1,511)
21~39명	6.8	5.8	23.6	32.7	11.0	8.7	11.4	100.0(618)
40~79명	6.2	6.7	22.5	38.9	12.9	5.5	7.5	100.0(980)
80명 이상	4.3	4.5	23.7	46.3	10.5	4.3	6.4	100.0(906)
$\chi^2(df)/F$	114.0(18)***							
2012년 조사	6.3	7.1	32.1	40.2	6.5	5.5	2.3	100.0(3,967)

*** $p < .001$

시설유형별 내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교재교구 구입(기자재 포함)과 이월금 전환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규모별로는 80명

이상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결과와 비교할 때 주된 사용처는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교재교구 구입(기자재 포함)에 사용하여 유사한 양상으로 보이거나 비율이 감소하고 그 외의 이유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였다.

나. 보육료

1) 추가보육료

어린이집의 연령별 추가 보육료 수납액을 조사하였다. 연령별에 따른 보육료 수납액은 0세 406,000원, 1세 357,000원 2세 295,000원이고 3~5세는 동일하게 220,000원이다. 실제 0~2세 영아는 추가보육료를 받지 않으므로 3~5세에 대한 추가보육료를 확인하였다.

〈표 VII-2-5〉 추가 보육료 수납액

구분	3세		4세		5세		단위: 천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4	38.2	9.2	31.6	9.1	29.7	
시설유형							
국공립	6.1	49.3	3.7	21.5	2.9	18.8	
사회복지법인	5.3	24.2	6.0	35.0	5.6	25.2	
법인단체	7.9	28.2	6.6	26.9	6.7	27.6	
민간	18.5	39.6	15.3	35.5	15.5	35.0	
가정	7.7	18.3	27.4	61.5	30.9	65.0	
직장	8.5	30.1	8.3	31.1	9.7	34.3	
F	10.6***		9.0***		10.6***		
소재지							
대도시	11.1	33.4	9.5	29.5	9.3	28.2	
중소도시	13.0	36.1	10.7	34.5	10.5	34.6	
읍·면	9.9	45.6	7.4	30.9	7.5	26.2	
F	1.2		1.5		1.3		
규모							
20명 이하	5.3	15.5	9.5	37.3	13.3	42.8	
21~39명	12.7	31.8	11.2	32.7	9.7	28.7	
40~79명	10.3	31.8	8.9	33.7	9.2	31.7	
80명 이상	12.4	46.7	9.0	29.2	8.8	28.0	
F	1.1		0.3		1.7		

*** $p < .001$

보육료 수납액 외에 추가로 받은 금액을 확인한 결과, 3세는 11,400원을 추가로 수납하고 있었으며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민간어린이집에서 18,500원을 수납하고 있었고 다른 시설에 비해 높았다. 한편 4세와 5세는 각각 9,200원, 9,100원으로서 유사한 수납금액인데,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만 나타났고 가정어린이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높았다.

2) 필요경비 수납액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필요경비를 월평균 어느 정도 받는지 알아보고자 가장 많이 내고 있는 필요경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입학준비금의 경우 1회 수납액을 응답 받았다. 먼저 현장학습비를 보면, 월평균 17,400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시설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높은 20,300원이었다.

〈표 VII-2-6〉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수납액 정도

구분	단위: 천원											
	현장학습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입학준비금		차량운행비		시도 특성화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7.4	17.2	13.9	15.0	16.9	14.0	41.8	41.6	19.3	18.6	23.5	18.9
시설유형												
국공립	17.9	18.8	11.5	12.5	15.0	14.8	41.6	34.1	16.5	6.3	17.3	10.6
사회복지법인	14.0	20.7	13.0	17.8	17.9	9.8	21.8	27.8	20.4	42.5	19.4	14.1
법인·단체	14.9	14.3	12.5	15.3	14.5	12.3	36.7	34.6	18.6	7.2	21.4	12.0
민간	19.6	17.6	13.7	13.4	17.3	10.9	44.8	52.9	20.0	11.0	28.6	25.8
가정	15.9	14.9	15.2	15.9	20.8	17.2	45.4	37.1	18.1	11.0	21.3	10.6
직장	20.3	16.1	17.5	19.1	17.5	14.7	41.5	32.2	18.3	5.5	18.2	10.9
F	7.4***		3.1**		1.2		13.1***		1.0		14.8***	
소재지												
대도시	17.8	16.9	16.3	17.9	15.8	14.6	42.0	34.3	20.9	9.7	21.9	15.5
중소도시	17.3	13.5	12.3	11.0	18.1	14.7	47.0	49.6	18.3	11.5	24.3	22.0
읍면	16.9	22.5	13.5	16.5	17.2	9.8	31.7	36.0	18.7	31.2	23.3	13.4
F	0.6		12.0**		0.8		24.3***		2.4		2.0	
규모												
20명 이하	16.4	15.6	15.2	15.9	20.8	17.0	45.3	37.1	18.1	10.9	21.3	10.6
21~39명	18.6	16.5	12.9	11.8	15.9	9.9	46.0	60.8	18.7	6.9	23.9	14.1
40~79명	17.4	17.8	13.4	15.3	15.6	15.1	40.3	36.0	20.6	31.6	22.9	13.3
80명 이상	17.8	18.5	13.3	15.2	16.5	11.9	35.8	37.5	19.1	7.0	26.9	30.8
F	1.7		2.2		1.7		8.2***		0.9		6.2***	
2012년 조사	19.85	25.36	17.44	23.12	16.90	12.19	-	-	-	-	-	-

** $p < .01$, *** $p < .001$

행사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월평균 13,900원을 받고 있었다. 이는 시설유형과 소재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직장어린이집이 17,500원, 대도시가 16,300원으로 높았다.

아침과 저녁 급식비의 월평균 수납금액은 16,900원으로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입학준비금은 월평균 41,800원을 수납하고 있었고 이러한 수납액은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수납비용이 높았고 중소도시와 21~39명의 어린이집의 수납액이 많았다.

한편 차량운행비의 월평균 수납금액은 19,300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시도 특성화비용은 월평균 금액은 23,500원이었다. 시도특성화비는 시설유형과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민간어린이집과 80명 이상 어린이집에서 높았다.

3) 상한액 준수 정도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기타경비에 있어서 시도지사가 정한 상한액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보육료의 상한액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대부분 80.4%가 상한액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9.6%는 상한액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재지와 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도시와 80명이상 어린이집에서 상한액대로 받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기타 필요경비에 있어서는 상한액대로 받고 있는 경우는 33.9%, 단가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경우가 66.1%로 상한액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타 필요경비 상한액은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읍면지역과 20명이하 어린이집에서 상한액보다 적게 수납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I-2-7〉 비용 상한액 준수 여부

단위: %(개소)

구분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상한액보다 적게 받음	상한액대로 받음	계(수)	상한액보다 적게 받음	상한액대로 받음	계(수)
전체	19.6	80.4	100.0(4,046)	66.1	33.9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16.8	83.2	100.0(506)	77.6	22.4	100.0(506)
사회복지법인	18.2	81.8	100.0(377)	69.9	30.1	100.0(377)
법인·단체	19.2	80.8	100.0(283)	71.7	28.3	100.0(283)

(표 VII-2-7 계속)

구분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상한액보다 적게 받음	상한액대로 받음	계(수)	상한액보다 적게 받음	상한액대로 받음	계(수)
민간	18.6	81.4	100.0(1,134)	51.9	48.1	100.0(1,134)
가정	21.8	78.2	100.0(1,480)	71.2	28.8	100.0(1,480)
직장	19.5	80.5	100.0(266)	64.5	35.5	100.0(266)
$\chi^2(df)$	8.5(5)			155.9(5)***		
소재지						
대도시	14.3	85.7	100.0(1,464)	59.0	41.0	100.0(1,464)
중소도시	22.4	77.6	100.0(1,631)	69.8	30.2	100.0(1,631)
읍면	23.5	76.5	100.0(951)	71.0	29.0	100.0(951)
$\chi^2(df)$	43.9(2)***			53.8(2)***		
규모						
20명 이하	21.4	78.6	100.0(1,520)	71.0	29.0	100.0(1,520)
21~39명	20.9	79.1	100.0(625)	64.4	35.6	100.0(625)
40~79명	19.7	80.3	100.0(992)	64.8	35.2	100.0(992)
80명 이상	15.5	84.5	100.0(909)	60.2	39.8	100.0(909)
$\chi^2(df)$	13.5(3)**			31.4(3)***		

** $p < .01$, *** $p < .001$

4) 특별활동 운영비 관리 방법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비를 일반 보육재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와 다른 운영비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에서 다른 운영비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49.9%,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33.3%, 일부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7.4%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방법이 9.3%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영비 관리 방법은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국공립어린이집이 56.3%로 다른 운영비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와 40~79명 어린이집에서 다른 운영비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2009년과 2012년의 보육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특별활동 운영비를 혼합하는 경우가 감소하여 다른 운영비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증가한 경향을 알 수 있으며 재무관리가 자리를 잡아감을 알 수 있다.

〈표 VII-2-8〉 특별활동 운영비 관리 방법

구분	혼합	일부 혼합	구분	기타	계(수)	단위: %(개소) $\chi^2(df)$
전체	33.3	7.4	49.9	9.3	100.0(3,983)	
시설유형						
국공립	35.1	4.2	56.3	4.4	100.0(501)	
사회복지법인	45.8	4.4	42.0	7.9	100.0(374)	
법인·단체	40.5	6.1	48.4	5.0	100.0(280)	208.8(15)***
민간	32.2	10.7	53.4	3.7	100.0(1,128)	
가정	31.1	7.5	46.7	14.6	100.0(1,439)	
직장	23.2	5.1	52.2	19.5	100.0(261)	
소재지						
대도시	28.9	5.8	54.5	10.8	100.0(1,441)	
중소도시	36.0	8.8	47.9	7.3	100.0(1,605)	44.8(6)***
읍면	36.0	7.7	46.1	10.2	100.0(937)	
규모						
20명 이하	30.8	7.5	46.4	15.3	100.0(1,475)	
21~39명	33.6	8.8	48.7	9.0	100.0(622)	118.8(9)***
40~79명	34.7	6.6	53.5	5.3	100.0(980)	
80명 이상	36.0	7.3	52.8	3.9	100.0(906)	
2012년 조사	40.9	8.7	36.1	4.0	100.0(3,971)	
2009년 조사	48.3	9.3	27.7	14.4	100.0(2,672)	

*** $p < .001$

주: 2009, 2012년 조사에서는 '없다'가 각각 0.3%, 10.3%로 나타남.

다. 공무원의 지도점검

지난 1년간(2014년) 보육 담당 공무원의 지도 점검이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보육 담당 공무원의 지도 점검이 있었던 경우는 81.0%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설유형, 소재지 및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설유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어린이집은 낮았다. 소재지에 의하면 읍면지역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이 많았고 규모에 따라서는 80명 이상 어린이집의 지도 점검 비율이 높았다.

다음은 방문횟수를 살펴보면, 평균 1.34회의 방문을 받았으며 적계는 1회, 많게는 11회까지의 방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문 횟수는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방문이 많았고 가정어린이집의 방문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읍면지역의 어린이집과 80명 이상의 어린이집의 방문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9년과 2012년의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를 하면, 지도점검 여부는 2009년에 비해 2012년에 방문비율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2015년에 다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문 횟수는 2009년과 2012년의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2009년의 방문횟수의 기록은 없지만, 2015년 조사에서 2012년의 방문횟수 보다 약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9〉 보육 담당 공무원 지도점검 여부 및 방문 횟수(2014년)

구분	방문 횟수						단위: % (개소), 회
	지도점검 여부	있다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81.0	(4,046)	1.34	0.75	1	11	(3,291)
시설유형							
국공립	90.7	(506)	1.65	1.21	1	10	(459)
사회복지법인	92.6	(377)	1.56	1.01	1	11	(347)
법인·단체	85.5	(283)	1.35	0.62	1	5	(246)
민간	82.5	(1,134)	1.28	0.57	1	5	(943)
가정	72.0	(1,480)	1.19	0.46	1	5	(1,064)
직장	86.5	(266)	1.34	0.64	1	5	(232)
$\chi^2(df)/F$	151.4(5)***		33.4***				
소재지							
대도시	79.4	(1,464)	1.28	0.60	1	5	(1,170)
중소도시	80.4	(1,631)	1.28	0.66	1	10	(1,312)
읍·면	84.6	(951)	1.54	1.00	1	11	(809)
$\chi^2(df)/F$	10.8(2)**		38.5***				
규모							
20명 이하	72.5	(1,520)	1.20	0.47	1	5	(1,101)
21~39명	79.5	(625)	1.29	0.56	1	4	(501)
40~79명	88.3	(992)	1.45	0.94	1	11	(882)
80명 이상	88.4	(909)	1.46	0.87	1	10	(807)
$\chi^2(df)/F$	138.7(3)***		28.5***				
2012년 조사	73.2	(3,996)	1.31	0.76	1	27	(2,771)
2009년 조사	79.8	(3,114)	-	-	-	-	-

** $p < .01$, *** $p < .001$

기타 관계 공무원의 지도 점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40.1% 정도였고 시설 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시설유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어린이집은 가장 낮았다. 소재지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의 지도점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에 따라서는 80명 이상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비율이 높았다.

또한 기타관계 공무원의 방문횟수는 평균 1.54회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대 방문횟수는 25회까지 있었으며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시설유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방문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재지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의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는 80명 이상 어린이집의 방문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방문비율은 26.2%에서 40.1%로 큰 폭으로 증가였으나 평균 방문횟수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최대 방문횟수는 크게 증가했다.

〈표 VII-2-10〉 기타 관계공무원 지도점검 여부 및 방문 횟수(2014년)

단위: %(개소), 회

구분	지도점검 여부		방문 횟수			
	있다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40.1 (4,046)	1.54	1.13	1	25	(1,617)
시설유형						
국공립	50.6 (506)	1.65	1.26	1	10	(256)
사회복지법인	60.9 (377)	1.72	1.18	1	14	(221)
법인·단체	41.7 (283)	1.47	0.86	1	6	(122)
민간	40.6 (1,134)	1.58	1.11	1	15	(451)
가정	28.2 (1,480)	1.27	0.63	1	5	(423)
직장	53.6 (266)	1.79	1.84	1	25	(144)
$\chi^2(df)/F$	196.4(5) ^{***}	8.2 ^{**}				
소재지						
대도시	41.7 (1,464)	1.52	1.17	1	25	(609)
중소도시	32.9 (1,631)	1.47	0.97	1	15	(541)
읍·면	49.8 (951)	1.65	1.25	1	20	(467)
$\chi^2(df)/F$	72.1(2) ^{***}	3.2 [*]				
규모						
20명 이하	28.3 (1,520)	1.26	0.63	1	5	(438)
21~39명	32.7 (625)	1.36	0.72	1	6	(206)
40~79명	48.5 (992)	1.66	1.38	1	25	(474)
80명 이상	55.7 (909)	1.73	1.29	1	20	(499)
$\chi^2(df)/F$	222.1(3) ^{***}	17.8 ^{**}				
2012년 조사	26.2 (3,996)	1.41	1.00	1	12	(1,031)

* $p < .05$, *** $p < .001$

라. 부모모니터링단의 방문

부모모니터링단의 방문과 방문 횟수에 대해 조사하였다. 부모모니터링단은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77.1%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은 소재지에 따른 차이만 나타

났는데, 대도시의 방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모모니터링단의 평균 방문 횟수는 1.11회로 조사되었고 최소 1회 방문에서 최대 24회 방문이 있었고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시설유형에 따라 법인·단체어린이집의 방문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과 직장어린이집의 방문횟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의 방문이 많았고 규모에 있어서는 80명 이상의 어린이집의 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부모모니터링단의 방문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방문횟수는 2012년과 비교하여 약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2-11〉 부모모니터링단 방문 여부와 횟수(2014년)

구분	방문 여부		방문 횟수				단위: %(개소), 회
	있다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77.1	(4,046)	1.11	0.59	1	24	(3,124)
시설유형							
국공립	79.2	(506)	1.17	0.87	1	12	(402)
사회복지법인	73.9	(377)	1.16	0.58	1	8	(275)
법인·단체	73.0	(283)	1.27	1.38	1	24	(205)
민간	78.0	(1,134)	1.11	0.45	1	12	(893)
가정	77.2	(1,480)	1.06	0.28	1	7	(1,149)
직장	76.5	(266)	1.06	0.26	1	4	(200)
$\chi^2(df)/F$	6.6(5)		6.1***				
소재지							
대도시	82.6	(1,464)	1.12	0.59	1	12	(1,222)
중소도시	73.5	(1,631)	1.08	0.60	1	24	(1,209)
읍·면	74.1	(951)	1.15	0.56	1	8	(693)
$\chi^2(df)/F$	42.1(2)***		3.5*				
규모							
20명 이하	77.2	(1,520)	1.06	0.28	1	7	(1,179)
21~39명	76.9	(625)	1.09	0.29	1	3	(482)
40~79명	78.4	(992)	1.14	0.53	1	12	(775)
80명 이상	75.5	(909)	1.19	1.03	1	24	(688)
$\chi^2(df)/F$	2.4(3)		7.7***				
2012년 조사	26.5	(3,995)	1.30	1.28	1	13	(1,034)

* $p < .05$, *** $p < .001$

이번에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컨설팅 및 현장개선지도가 어린이집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57.4%로 나타났으며 시설유형과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시설유형에 있어서는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규모에 있어서는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에서 도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모니터링단의 컨설팅 및 현장개선지도가 어린이집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 이유를 확인하였다. 부모모니터링단의 컨설팅 및 현장개선지도가 어린이집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건강·영양·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50.0%, 다음은 안전한 보육환경에 기여 28.3%, 보육의 공공성 높임 13.7%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읍면도시와 20명 이하 어린이집에서 건강·영양·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VII-2-12〉 어린이집 질 개선 도움 여부 및 이유

단위: %(개소)

구분	도움 정도		도움이 된 경우 이유				
	비율	계(수)	건강·영양·안전 관리에 도움	수요자의 요구 반영	보육의 공공성 높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	계(수)
전체	57.4	100.0(3,981)	50.0	8.0	13.7	28.3	100.0(2,302)
시설유형							
국공립	59.4	100.0(501)	41.2	9.2	22.2	27.4	100.0(299)
사회복지법인	50.3	100.0(370)	49.9	12.6	17.9	19.5	100.0(182)
법인·단체	55.4	100.0(275)	52.4	7.9	11.2	28.5	100.0(153)
민간	55.6	100.0(1,119)	51.0	8.4	12.1	28.5	100.0(633)
가정	60.1	100.0(1,455)	53.1	6.0	11.1	29.8	100.0(879)
직장	58.0	100.0(261)	43.9	10.6	15.3	30.1	100.0(156)
$\chi^2(df)/F$	14.2(5) [*]		50.6(15) ^{***}				
소재지							
대도시	58.5	100.0(1,446)	49.0	8.5	13.5	29.0	100.0(857)
중소도시	57.4	100.0(1,604)	49.2	6.2	14.3	30.3	100.0(922)
읍·면	55.6	100.0(931)	53.3	10.4	12.9	23.5	100.0(523)
$\chi^2(df)/F$	2.0(2)		15.0(6) [*]				
규모							
20명 이하	60.2	100.0(1,494)	52.9	6.3	11.3	29.6	100.0(904)
21~39명	54.6	100.0(612)	47.0	8.4	13.7	30.9	100.0(341)
40~79명	56.4	100.0(984)	48.0	9.7	15.1	27.2	100.0(562)
80명 이상	55.8	100.0(891)	49.2	8.9	16.5	25.4	100.0(495)
$\chi^2(df)/F$	8.0(3) [*]		19.5(9) [*]				

* $p < .05$, *** $p < .001$

부모모니터링단의 컨설팅 및 현장개선지도가 어린이집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부모모니터링단의 컨설팅 및 현장개선지도가 어

린이집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 이유를 높은 비율 순서로 제시하면 부모모니터링단 방문에 따른 업무 가중이 38.7%, 다른 평가지표와의 혼란 29.9%,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원의 비전문성 26.8% 등이 주된 이유였다.

한편 시설 유형과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설 유형에 따르면 법인·단체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업무 가중에 대한 이유를 많이 지적하였다. 또한 법인·단체어린이집은 다른 평가지표와의 혼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원의 비전문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규모에 있어서는 21~39명의 어린이집에서도 업무 가중을,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평가지표와의 혼란 등의 이유를 비교적 많이 지적하였다.

〈표 VII-2-13〉 어린이집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단위: %(개소)

구분	부모모니터링에 따른 업무 가중	다른 평가지표와의 혼란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원의 비전문성	기타	계(수)	$\chi^2(df)$
전체	38.7	29.9	26.8	4.5	100.0(1,677)	
시설유형						
국공립	28.5	29.9	36.3	5.3	100.0(202)	
사회복지법인	37.6	23.9	32.8	5.6	100.0(188)	
법인·단체	43.7	36.1	17.5	2.6	100.0(122)	50.4(15)***
민간	43.3	26.5	25.6	4.7	100.0(485)	
가정	37.9	35.1	22.4	4.5	100.0(575)	
직장	38.6	21.1	38.1	2.2	100.0(105)	
소재지						
대도시	38.5	27.0	28.9	5.6	100.0(589)	
중소도시	38.8	31.0	25.9	4.3	100.0(681)	8.9(6)
읍면	39.1	32.7	25.2	3.0	100.0(407)	
규모						
20명 이하	37.7	34.7	22.9	4.6	100.0(589)	
21~39명	46.2	24.7	26.2	3.0	100.0(271)	22.7(9)**
40~79명	36.4	30.2	28.7	4.8	100.0(422)	
80명 이상	37.7	26.0	31.2	5.1	100.0(395)	

** $p < .01$, *** $p < .001$

주: 위의 항목의 응답 중 무응답 2개를 제외한 사례수임.

3. 어린이집과 가정 연계

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횟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과 운영 횟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구성률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보육교사는 1.5명, 학부모는 3.0명, 지역사회 인사는 1.1명 참여하여 전체 5.8명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성은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시설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대표가 1.6명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장어린이집의 학부모 대표는 4.0명과 지역사회 인사는 1.5명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체 평균 구성인원수도 높았다.

소재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대도시의 보육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규모에 있어서는 80명이상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구성원 수도 높게 나타났다.

〈표 VII-3-1〉 운영위원회 구성원 인원수 및 상반기 운영 횟수

단위: 명(개소), 회

구분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횟수	계(수)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기타	전체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1.5 (3,948)	3.0 (3,947)	1.1 (2,607)	1.2 (1,905)	5.8 (3,958)	1.96	100.0(3,944)
시설유형							
국공립	1.5 (503)	3.4 (503)	1.1 (491)	1.1 (347)	6.7 (504)	2.22	100.0(504)
사회복지법인	1.5 (376)	3.1 (375)	1.1 (367)	1.1 (261)	6.4 (376)	1.99	100.0(375)
법인·단체	1.4 (282)	3.1 (280)	1.2 (274)	1.2 (189)	6.4 (282)	2.15	100.0(281)
민간	1.5 (1,098)	3.0 (1,100)	1.1 (971)	1.2 (522)	6.0 (1,104)	1.87	100.0(1,099)
가정	1.6 (1,426)	2.7 (1,425)	1.0 (270)	1.3 (401)	4.8 (1,428)	1.86	100.0(1,422)
직장	1.5 (263)	4.0 (264)	1.5 (234)	1.3 (185)	7.7 (264)	2.20	100.0(263)
F	3.8**	65.6	572.7***	50.7***	244.5***	17.6***	
소재지							
대도시	1.6 (1,443)	3.1 (1,443)	1.1 (972)	1.2 (697)	6.0 (1,446)	2.01	100.0(1,442)
중소도시	1.5 (1,584)	2.9 (1,581)	1.1 (914)	1.2 (684)	5.6 (1,588)	1.91	100.0(1,582)
읍·면	1.5 (921)	3.0 (923)	1.2 (721)	1.2 (524)	6.0 (924)	1.98	100.0(920)
F	4.3*	7.3***	38.1***	15.2***	17.9***	3.8*	

(표 VII-3-1 계속)

구분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횟수	계(수)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기타	전체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규모							
20명 이하	1.6 (1,464)	2.7 (1,463)	1.1 (301)	1.2 (427)	4.8 (1,466)	1.86	100.0(1,459)
21~39명	1.3 (598)	2.7 (601)	1.1 (503)	1.2 (289)	5.4 (602)	1.88	100.0(600)
40~79명	1.4 (984)	3.2 (980)	1.2 (934)	1.2 (618)	6.4 (985)	2.01	100.0(982)
80명 이상	1.7 (902)	3.6 (903)	1.2 (869)	1.2 (571)	7.2 (905)	2.15	100.0(903)
F	39.0***	132.8***	859.7***	68.9**	489.7***	18.4***	
2012년 조사	1.4	2.4	1.2			1.50	100.0(3,554)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운영위원회 횟수는 평균 1.96회로 나타났으며,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 2.22회, 대도시 2.01회와 80명 이상의 어린이집의 2.15회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운영위원회 구성은 2012년 보육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학부모 대표의 비율은 크게 높아졌고 보육교사 대표 비율도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지역사회 인사 비율은 조금 낮아졌다. 또한 운영 횟수는 2012년 조사에서는 1.50회에서 1.96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2)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방법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80.9%가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시설유형에 따라서는 직장어린이집의 공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와 40~79명의 어린이집에서의 공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40.3%,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가 13.1%였다. 이러한 회의록 공개 방법은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 VII-3-2〉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와 방법

단위: %(개소)

구분	공개 여부		공개 방법		
	공개 (수)	홈페이지에 공개	어린이집 게시판에 공개	부모에게 통보	(수)
전체	80.9 (3,958)	13.1	40.3	46.6	(3,180)
시설유형					
국공립	91.6 (504)	20.5	44.4	35.2	(460)
사회복지법인	88.1 (376)	9.7	48.5	41.9	(332)
법인·단체	84.7 (282)	13.8	42.4	43.7	(238)
민간	79.4 (1,104)	9.7	36.6	53.7	(867)
가정	73.3 (1,428)	6.5	39.7	53.7	(1,036)
직장	92.8 (264)	42.3	35.2	22.4	(247)
$\chi^2(df)$	131.2(5)***		310.1(10)***		
소재지					
대도시	86.4 (1,446)	17.2	41.9	40.8	(1,241)
중소도시	76.1 (1,588)	11.1	39.0	50.0	(1,204)
읍·면	79.9 (924)	9.1	39.4	51.5	(735)
$\chi^2(df)$	52.4(2)***		46.6(4)***		
규모					
20명 이하	73.4 (1,466)	7.0	40.2	52.8	(1,066)
21~39명	75.1 (602)	8.4	39.3	52.3	(454)
40~79명	88.7 (985)	18.2	40.6	41.2	(867)
80명 이상	88.4 (905)	18.5	40.6	40.9	(793)
$\chi^2(df)$	138.2(3)***		96.3(6)***		
2012년 조사	73.3 (4,000)	9.0	28.5	40.4	

*** $p < .001$

주: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중복응답으로 응답받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은 시설 유형에 따라서도 공개비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직장어린이집의 홈페이지에 공개 비율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42.3%였다. 대도시에서의 홈페이지 공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20명이하의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통보비율이 높았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5년 조사 결과에서 공개비율이 높고 공개 방법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공개방법이 다양해지고 게시판 공개 비율이 높았다.

3)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정도

또한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활성화되어 있다

고 생각하는 비율은 73.1%였으며 활성화에 대한 평균은 4점 만점에 2.86점이었다.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정도는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활성화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와 40명 이상의 어린이집의 활성화 정도가 높았다. 평균 점수도 유사한 양상이었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할 때 활성화 정도는 매우 높아졌으며 평균 점수도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의 운영위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I-3-3〉 운영위원회 활성화 정도

단위: %(개소), 점

구분	매우 미약함	다소 미약함	활성화된 편임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계(수)	4점 평균
전체	1.3	25.6	58.6	14.5	100.0(3,958)	2.86
시설유형						
국공립	0.7	8.4	62.1	28.8	100.0(504)	3.19
사회복지법인	1.2	16.2	67.6	15.0	100.0(376)	2.96
법인·단체	0.6	18.0	65.2	16.2	100.0(282)	2.97
민간	1.6	30.5	56.2	11.6	100.0(1,104)	2.78
가정	1.6	34.4	54.9	9.1	100.0(1,428)	2.71
직장	0.5	11.4	62.7	25.3	100.0(264)	3.13
$\chi^2(df)/F$			303.0(15) ^{***}			59.7 ^{**}
소재지						
대도시	1.0	20.3	61.8	16.9	100.0(1,446)	2.95
중소도시	1.4	31.0	55.6	12.0	100.0(1,588)	2.78
읍·면	1.7	25.0	58.5	14.8	100.0(924)	2.86
$\chi^2(df)/F$			53.5(6) ^{***}			23.5 ^{***}
규모						
20명 이하	1.7	33.7	55.1	9.5	100.0(1,466)	2.72
21~39명	2.3	36.0	50.7	11.1	100.0(602)	2.71
40~79명	0.8	16.0	63.4	19.8	100.0(985)	3.02
80명 이상	0.6	15.9	64.3	19.2	100.0(905)	3.02
$\chi^2(df)/F$			223.6(9) ^{***}			73.1 ^{***}
2012년 조사	14.6	57.6	25.4	2.5	100.0(3,730)	2.16

*** $p < .001$

4)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알아 본 결과, 운영위원의 일정 조정에 대한 어려움이 47.0%로 가장 높았고, 운영위원의 낮은 관심이 30.9%,

운영 경험 및 전문성 부족이 11.8% 순이었다. 이러한 운영의 어려움은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운영위원 일정 조정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고,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위원의 낮은 관심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어린이집의 경우도 운영위원 일정 조정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규모별로는 40~79명 어린이집의 경우가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조사 결과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운영 경험 및 전문성 부족과 운영위원 인선의 어려움과 관련한 경우는 2012년에 비해 약간 감소했지만, 운영위원 일정 조정 어려움과 운영위원의 낮은 관심 관련한 항목은 약간 증가하였다.

〈표 VII-3-4〉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운 점

단위: %(개소)

구분	운영위원 일정 조정 어려움	운영 경험 및 전문성 부족	운영위원 인선 어려움	운영위원의 낮은 관심	기타	계(수)	$\chi^2(df)$
전체	47.0	11.8	9.2	30.9	1.0	100.0(3,884)	
시설유형							
국공립	55.9	7.6	17.1	18.3	1.0	100.0(483)	
사회복지법인	52.9	8.7	10.1	28.2	0.2	100.0(369)	
법인·단체	54.7	13.1	10.7	20.9	0.6	100.0(277)	232.3(20)***
민간	43.2	13.9	8.9	33.3	0.7	100.0(1,093)	
가정	41.5	12.8	6.2	38.7	0.9	100.0(1,414)	
직장	61.2	7.8	9.6	16.3	5.1	100.0(248)	
소재지							
대도시	51.9	8.7	9.0	29.4	1.0	100.0(1,408)	
중소도시	43.9	12.9	9.7	32.0	1.4	100.0(1,562)	39.8(8)***
읍·면	44.3	14.8	8.9	31.4	0.5	100.0(914)	
규모							
20명 이하	41.6	12.6	6.4	38.4	0.9	100.0(1,450)	
21~39명	46.0	10.4	9.6	33.3	0.6	100.0(596)	98.5(12)***
40~79명	51.9	11.2	11.5	24.3	1.0	100.0(950)	
80명 이상	51.4	11.9	11.3	24.0	1.5	100.0(888)	
2012년 조사	40.4	17.0	10.2	29.8	1.3	100.0(3,733)	

*** $p < .001$

나. 부모와의 의사소통

어린이집이 부모(보호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중복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방법 중에서 연락장이나 대화수첩을 통해서 88.0%, 전화 83.7%, 상담, 부모회의 등의 직접 대면 77.9%, 문자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50.6%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로는 대화수첩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대도시와 21~39명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지역과 80명이상의 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와 21~39명 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VII-3-5〉 어린이집과 부모의 의사소통 방법

구분	대화수첩	전화	이메일	직접 대면	홈페이지 게시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단위: %(개소)	
							기타	(수)
전체	88.0	83.7	3.5	77.9	30.5	50.6	1.6	(4,044)
시설유형								
국공립	91.6	89.3	5.5	84.5	46.4	46.5	1.6	(506)
사회복지법인	90.8	91.2	5.2	76.5	32.2	52.7	1.0	(377)
법인단체	87.5	89.7	3.2	70.9	30.1	50.4	2.3	(283)
민간	86.5	85.2	1.6	73.6	30.2	52.9	2.1	(1,134)
가정	88.7	78.4	2.8	79.1	21.9	52.4	1.1	(1,478)
직장	80.4	80.1	10.2	85.8	45.9	36.2	1.9	(266)
소재지								
대도시	89.4	84.6	4.5	78.3	36.5	47.9	1.8	(1,464)
중소도시	87.3	82.0	3.1	79.0	26.1	51.8	1.4	(1,629)
읍면	87.1	85.3	2.8	75.4	28.3	52.7	1.5	(951)
규모								
20명 이하	88.3	78.3	2.9	79.0	22.2	52.3	1.1	(1,518)
21~39명	88.8	84.8	2.4	79.9	30.5	51.2	1.2	(625)
40~79명	88.1	85.7	4.2	79.2	37.4	46.3	1.6	(992)
80명 이상	86.8	90.0	4.7	73.2	36.8	52.0	2.6	(909)
2012년 조사	89.7	79.5	3.8	69.3	29.7	40.7	2.3	(4,000)
2009년 조사	28.1	28.6	3.5	26.8	10.8	-	2.3	(4,000)

주: 중복응답 결과임.

2009년 조사 결과에서는 전화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었고, 그 외에는 연락장, 직접 대면, 홈페이지, 이메일,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추가되었고 40.7%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홈페이지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부모교육과 참여 및 상담

1) 부모교육

2015년 상반기동안 실시한 부모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모교육의 내용은 교육 설명회와 오리엔테이션, 강연회와 워크숍, 프로그램화된 부모교육, 부모교육을 위한 자료 배부 등이 있다.

〈표 VII-3-6〉 2015년 상반기 부모교육: 교육설명회와 강연회

단위: %(개소), 회

구분	교육설명회·오리엔테이션			강연회·워크숍		
	있다 (수)	실시 횟수	표준 편차	있다 (수)	실시 횟수	표준 편차
전체	94.3 (4,046)	1.22	0.58	32.4 (4,046)	1.47	0.99
시설유형						
국공립	100.0 (506)	1.28	0.60	54.7 (506)	1.44	0.80
사회복지법인	97.2 (377)	1.25	0.62	35.4 (377)	1.49	0.85
법인·단체	98.3 (283)	1.32	0.73	36.3 (283)	1.49	1.46
민간	95.3 (1,134)	1.24	0.63	34.0 (1,134)	1.42	0.92
가정	89.6 (1,480)	1.12	0.41	17.4 (1,480)	1.49	1.06
직장	97.2 (266)	1.39	0.74	56.6 (266)	1.61	1.11
$\chi^2(df)/F$	113.0(5)***	32.3***		349.6(5)***	46.9***	
소재지						
대도시	95.8 (1,464)	1.22	0.57	35.6 (1,464)	1.47	1.08
중소도시	92.7 (1,631)	1.22	0.64	28.3 (1,631)	1.47	0.93
읍·면	94.7 (951)	1.22	0.49	34.1 (951)	1.48	0.91
$\chi^2(df)/F$	15.2(2)***	1.5		20.3(2)***	6.0**	
규모						
20명 이하	89.6 (1,520)	1.12	0.41	17.8 (1,520)	1.48	1.04
21~39명	93.4 (625)	1.15	0.46	27.0 (625)	1.46	1.28
40~79명	98.6 (992)	1.28	0.61	44.2 (992)	1.46	0.83
80명 이상	98.3 (909)	1.37	0.78	47.9 (909)	1.48	0.99
$\chi^2(df)/F$	124.1(3)***	72.9***		320.0(3)***	66.8***	
2012년 조사	89.3 (4,000)	1.19	0.49	32.2 (4,000)	1.42	0.88

** $p < .01$, *** $p < .001$

먼저 교육설명회와 오리엔테이션 실시는 94.3%가 하고 있었으며 실시 횟수 평균은 1.22회로 나타났다. 시설유형에 있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거의 100.0% 실시하고 있었고 평균 실시횟수는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많았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도시의 실시비율이 높았으며 실시횟수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규모에 따라서는 40~79명 어린이집에서 실시비율이 높았고 80명 이상 어린이집의 실시횟수가 높았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실시비율과 실시횟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부모교육 중 강연회와 워크숍 실시는 전반적으로 32.4% 정도였고 평균 실시횟수는 1.47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에 있어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실시비율이 가장 높았고, 실시횟수도 높았다. 또한 소재지에 따라서는 대도시가 높게 나타났고 실시횟수는 읍·면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에 따라서는 80명 이상 어린이집의 실시율과 실시횟수도 높았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실시비율과 실시횟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프로그램화된 부모교육의 실시 정도를 알아본 결과, 실시 비율은 46.5%이며 실시 횟수 평균은 1.91회였다. 시설유형에 따라서는 실시비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실시 횟수는 법인·단체어린이집이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낮았다. 또한 소재지에 따라서는 대도시가 실시비율과 실시횟수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규모에 따라서는 80명 이상 어린이집의 실시율이 높았으며 실시횟수는 20명이하 어린이집이 높았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프로그램화된 부모교육의 실시비율과 실시횟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7〉 2015년 상반기 부모교육: 프로그램화된 교육과 자료 배부

단위: %(개소), 회

구분	프로그램화된 부모교육				부모교육 자료 배부			
	있다 (수)	실시 횟수	표준 편차	있다 (수)	실시 횟수	표준 편차		
전체	46.5 (4,046)	1.91	2.68	86.8 (4,046)	10.24	11.49		
시설유형								
국공립	60.9 (506)	1.88	1.47	94.6 (506)	10.95	9.93		
사회복지법인	50.2 (377)	1.74	1.41	86.2 (377)	10.40	9.73		
법인·단체	56.7 (283)	2.25	4.92	82.1 (283)	9.54	9.11		
민간	49.2 (1,134)	1.80	1.78	85.4 (1,134)	10.05	10.64		
가정	35.7 (1,480)	1.99	3.49	85.8 (1,480)	9.93	12.09		
직장	51.6 (266)	1.93	1.93	88.0 (266)	11.58	17.19		
$\chi^2(df)/F$	133.1(5)	5.9***		37.3(5)***	3.5**			
소재지								
대도시	48.8 (1,464)	2.01	3.19	88.8 (1,464)	10.04	12.64		

(표 VII-3-7 계속)

구분	프로그램화된 부모교육				부모교육 자료 배부			
	있다	(수)	실시 횟수	표준 편차	있다	(수)	실시 횟수	표준 편차
중소도시	43.0	(1,631)	1.83	1.85	86.1	(1,631)	10.63	11.10
읍·면	48.7	(951)	1.85	2.85	84.5	(951)	9.90	10.01
$\chi^2(df)/F$	12.8(2)**		3.3*		10.3(2)**		1.5	
규모								
20명 이하	35.1	(1,520)	1.98	3.47	85.3	(1,520)	9.97	12.08
21~39명	45.4	(625)	1.97	1.90	85.5	(625)	10.62	10.90
40~79명	53.8	(992)	1.90	2.09	88.2	(992)	10.79	12.37
80명 이상	58.6	(909)	1.81	2.65	88.4	(909)	9.82	9.71
$\chi^2(df)/F$	153.5(3)***		8.0***		7.4(3)		1.8	
2012년 조사	40.6	(3,999)	1.68	1.52	81.8	(3,987)	8.23	8.54

* $p < .05$, ** $p < .01$, *** $p < .001$

네 번째 부모교육 자료 배부 정도를 살펴보면, 실시 비율은 전반적으로 86.8%로 실시비율이 높았고 평균 실시횟수는 10.24회로 꽤 많았다. 자료 배부 정도는 시설유형에 다른 차이가 뚜렷했고 소재지에 따라서 실시 비율만 차이가 나타났다. 시설유형에 있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실시비율이 가장 높았고, 실시횟수는 직장어린이집이 높았다. 또한 소재지에 따라서 실시비율은 대도시가 높게 나타났다.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실시비율과 실시횟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보였다.

2) 부모참여와 상담

한편 상반기에 실시한 부모참여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소풍, 견학과 발표회 등 의 아동행사 참여에 대해 알아본 결과, 상반기에 실시비율은 69.3%로 평균 3.59회가 실시되었다. 시설유형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실시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실시횟수는 민간어린이집이 높았고 가정어린이집이 낮았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의 실시비율이 높았다. 규모별로는 80명 이상 어린이집의 실시비율과 실시횟수가 높았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아동행사의 부모참여 실시비율과 실시횟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8〉 2015년 상반기 부모참여: 아동행사와 지원봉사

단위: %(개소), 회

구분	아동 행사				자원봉사			
	있다	(수)	실시 횟수	표준 편차	있다	(수)	실시 횟수	표준 편차
전체	69.3	(4,046)	3.59	5.07	30.6	(4,046)	4.26	7.37
시설유형								
국공립	70.5	(506)	4.04	5.26	53.8	(506)	4.96	4.65
사회복지법인	76.8	(377)	3.58	4.52	22.3	(377)	6.10	20.91
법인·단체	69.0	(283)	3.59	4.31	28.1	(283)	5.13	7.46
민간	73.0	(1,134)	4.10	6.62	28.2	(1,134)	3.54	3.72
가정	64.5	(1,480)	2.94	3.64	25.8	(1,480)	3.16	3.02
직장	68.7	(266)	3.79	3.95	35.7	(266)	6.81	11.80
$\chi^2(df)/F$	33.3(5)***		8.9***		167.8(5)***		17.8***	
소재지								
대도시	67.7	(1,464)	3.36	4.53	43.0	(1,464)	4.95	6.06
중소도시	67.5	(1,631)	3.85	5.88	23.9	(1,631)	3.05	3.55
읍·면	75.2	(951)	3.54	4.40	22.1	(951)	4.39	13.57
$\chi^2(df)/F$	20.1(2)***		2.8		174.6(2)***		40.6***	
규모								
20명 이하	64.3	(1,520)	2.93	3.61	25.4	(1,520)	3.15	3.02
21~39명	71.9	(625)	3.63	5.85	25.8	(625)	3.63	3.37
40~79명	71.1	(992)	3.73	5.20	39.5	(992)	5.94	11.95
80명 이상	74.1	(909)	4.41	5.99	33.0	(909)	3.83	3.68
$\chi^2(df)/F$	30.9(3)***		18.7***		65.8(3)***		26.7***	
2012년 조사	63.1	(3,997)	2.44	2.97	20.3	(3,997)	2.03	2.45

*** $p < .001$

두 번째 일일 등하원, 급식지원 및 청소 등의 자원봉사에 대해 살펴보면, 실시비율은 30.6%, 실시횟수는 평균 4.26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에 있어서는 실시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높았고, 실시횟수는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소재지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실시비율과 실시횟수가 높게 나타났고 규모에 따라서는 40~79명 어린이집의 실시비율과 실시횟수가 높았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자원봉사의 부모참여 실시비율과 실시횟수 모두 증가하였다.

세 번째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 같은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살펴보면, 상반기에 실시비율은 50.6%, 실시횟수 평균은 3.07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에 있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실시비율과 실시횟수가 가장 높았고, 소재지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실시비율과 실시횟수가 높았다. 규모에 따라서는 40~79명 어린이집의 실시비율과 실시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의사결정참

여와 같은 부모참여 실시비율은 감소했으나 실시횟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9〉 2015년 상반기 부모참여: 의사결정과 수업 참여

단위: %(개소), 회

구분	의사결정 참여				수업 진행 참여			
	있다 (수)	평균	표준편차	있다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0.6 (4,046)	3.07	3.16	52.9 (4,046)	2.13	3.12		
시설유형								
국공립	71.9 (506)	3.32	4.13	66.7 (506)	2.35	2.42		
사회복지법인	54.5 (377)	2.95	2.26	50.0 (377)	1.99	3.37		
법인·단체	55.8 (283)	3.32	2.88	50.7 (283)	1.93	2.02		
민간	48.9 (1,134)	3.13	3.59	53.9 (1,134)	1.83	1.55		
가정	38.9 (1,480)	2.85	2.23	48.5 (1,480)	2.12	1.99		
직장	70.6 (266)	2.94	3.00	52.5 (266)	3.27	9.09		
$\chi^2(df)/F$	228.1(5)***	21.1***		54.3(5)***	7.8***			
소재지								
대도시	56.3 (1,464)	3.12	2.81	57.3 (1,464)	2.56	4.36		
중소도시	46.6 (1,631)	2.98	3.31	49.6 (1,631)	1.88	1.88		
읍면	48.3 (951)	3.12	3.52	51.5 (951)	1.77	1.68		
$\chi^2(df)/F$	32.3(2)***	7.0***		19.5(2)***	21.9***			
규모								
20명 이하	39.1 (1,520)	2.83	2.20	48.2 (1,520)	2.14	2.00		
21~39명	49.6 (625)	3.24	4.14	48.2 (625)	1.85	1.67		
40~79명	60.4 (992)	3.22	3.69	59.1 (992)	2.24	4.76		
80명 이상	60.1 (909)	3.07	2.75	57.4 (909)	2.14	2.70		
$\chi^2(df)/F$	151.3(3)***	24.5***		41.5(3)***	5.0**			
2012년 조사	56.1 (3,997)	2.34	2.13	-	-	-	-	-

** $p < .01$, *** $p < .001$

네 번째 수업진행 참여와 관련해서 실시비율은 52.9%, 실시횟수 평균은 2.13회로 나타났다. 시설유형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실시비율이 높았고 실시횟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실시비율과 실시횟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에 따라서는 40~79명 어린이집의 실시비율과 실시횟수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부모참여 중 기관의 활동이 가정으로 연계된 활동참여에 대한 실시비율은 34.6%, 평균 실시횟수는 4.15회 정도였다. 이러한 가정연계 활동 참여 실시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났고 실시횟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높았다. 또한 대도시에서 실시비율과 실시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규모에 따라서는 80명 이상의 어린이집의 실시비율이 높았으며 실시횟수는 21~39명 어린이집에서 높았다.

한편, 원장이나 담임교사와의 부모상담 실시에 대해 살펴보면, 상반기에 실시비율은 89.6%, 평균 실시횟수는 2.40회였다. 부모상담은 직장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와 8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실시비율이 높았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부모상담 실시비율과 실시횟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10〉 2015년 상반기 부모참여와 상담: 가정 연계 및 상담

단위: %(개소), 회

구분	가정 연계				상담			
	있다 (수)	평균	표준편차	있다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6 (4,046)	4.15	6.08	89.6 (4,046)	2.40	5.07		
시설유형								
국공립	55.3 (506)	4.44	7.11	94.8 (506)	2.43	5.88		
사회복지법인	39.6 (377)	3.24	4.21	90.7 (377)	2.32	4.91		
법인단체	36.7 (283)	4.53	6.12	92.0 (283)	2.39	3.68		
민간	34.8 (1,134)	3.94	5.99	90.2 (1,134)	2.39	5.45		
가정	22.2 (1,480)	3.24	3.81	85.3 (1,480)	2.24	3.63		
직장	53.1 (266)	6.80	8.63	95.5 (266)	3.23	8.28		
$\chi^2(df)/F$	245.8(5) ^{***}	32.2 ^{***}		57.6(5) ^{***}	2.8 [*]			
소재지								
대도시	36.9 (1,464)	4.73	7.29	91.3 (1,464)	2.47	6.39		
중소도시	32.1 (1,631)	3.60	4.52	87.9 (1,631)	2.34	4.11		
읍면	35.2 (951)	4.02	5.93	89.5 (951)	2.37	3.99		
$\chi^2(df)/F$	8.1(2) [*]	7.9 ^{***}		9.2(2) [*]	14.8			
규모								
20명 이하	22.1 (1,520)	3.24	3.77	85.4 (1,520)	2.25	3.61		
21~39명	31.2 (625)	4.74	8.22	90.5 (625)	2.55	6.63		
40~79명	45.0 (992)	4.62	6.85	92.1 (992)	2.58	5.92		
80명 이상	46.5 (909)	4.11	5.48	93.1 (909)	2.32	4.80		
$\chi^2(df)/F$	211.6(3) ^{***}	28.3 ^{***}		46.7(3) ^{***}	2.1			
2012년 조사	-	-	-	86.4 (3,997)	2.26	3.16		

* $p < .05$, *** $p < .001$

4. 보육 정책

가. 보육정책에 대한 동의

본 절에서는 보육정책에 대한 네 가지 주제에 대해 4점 척도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어린이집 회계는 투

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책무성을 지닌 기관이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과 평균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른 주제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과 평균 점수도 낮았다.

〈표 VII-4-1〉 '보육은 공공서비스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려함	매우 그려함	단위: %(개소), 점	
					계(수)	4점 평균
전체	1.5	6.0	30.6	61.8	100.0(4,042)	3.53
시설유형						
국공립	0.6	2.0	23.0	74.4	100.0(506)	3.71
사회복지법인	0.5	4.9	25.2	69.4	100.0(376)	3.64
법인·단체	0.1	3.2	32.2	64.4	100.0(283)	3.61
민간	1.9	6.9	31.4	59.8	100.0(1,132)	3.49
가정	2.1	7.6	34.2	56.1	100.0(1,479)	3.44
직장	1.5	6.3	27.1	65.2	100.0(266)	3.56
$\chi^2(df)/F$	85.5(15)***				16.1***	
소재지						
대도시	1.6	5.4	31.0	62.0	100.0(1,463)	3.53
중소도시	1.7	6.8	32.6	58.9	100.0(1,629)	3.49
읍면	1.1	5.7	26.4	66.7	100.0(950)	3.59
$\chi^2(df)/F$	17.1(6)**				6.4**	
규모						
20명 이하	2.1	7.4	34.0	56.5	100.0(1,519)	3.45
21~39명	1.8	6.0	29.2	63.0	100.0(625)	3.53
40~79명	1.2	4.9	26.9	67.0	100.0(992)	3.60
80명 이상	0.8	5.1	29.7	64.5	100.0(906)	3.58
$\chi^2(df)/F$	39.3(9)***				12.1***	
2012년 조사	1.7	4.7	33.0	60.5	100.0(4,000)	3.52

** $p < .01$, *** $p < .001$

먼저, '보육은 공공서비스이다'는 의견에 대해 그려하다고 동의하는 비율이 92.4%로 정도이고 4점 척도 평균은 3.53점으로 나타났다. 본 의견에 대한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동의하는 비율과 평균 점수가 높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가장 낮았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가 낮게 나타났다. 규모에 따라서는 80명 이상 어린이집의 동의 비율이 높았으며 20명 이하 어린이집의 동의 정도는 낮았다.

한편 2012년 보육실태조사의 동의 비율은 93.5%임을 고려할 때 약간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4점 척도의 평균 점수는 3.53점으로 약간 올랐다.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대해 책무성을 지닌 기관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94.0%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도 3.54점으로 높았다.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동의하는 비율과 평균 점수 모두 높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낮았다. 소재지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의 동의 비율과 평균 점수 모두 높았고 규모에 따라서는 40~79명 어린이집의 동의 비율과 평균 점수가 높았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의 동의 비율과 평균 점수는 각각 95.6%, 3.55점으로서 2015년 조사에서 약간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2〉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대해 책무성을 지닌 기관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개소),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려함	매우 그려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0.8	5.1	33.5	60.5	100.0(4,045)	3.54
시설유형						
국공립	0.2	2.8	27.2	69.7	100.0(506)	3.66
사회복지법인	1.1	1.2	23.6	74.1	100.0(376)	3.71
법인단체	-	5.2	29.3	65.5	100.0(283)	3.60
민간	0.4	4.4	35.4	59.8	100.0(1,134)	3.55
가정	1.4	7.4	37.0	54.1	100.0(1,480)	3.44
직장	0.9	5.4	35.3	58.4	100.0(266)	3.51
$\chi^2(df)/F$	100.5(15)***				17.6***	
소재지						
대도시	0.7	5.2	33.9	60.2	100.0(1,464)	3.54
중소도시	1.1	5.9	36.2	56.8	100.0(1,630)	3.49
읍·면	0.5	3.8	28.2	67.6	100.0(951)	3.63
$\chi^2(df)/F$	31.6(6)***				14.8***	
규모						
20명 이하	1.4	7.2	36.9	54.5	100.0(1,520)	3.45
21~39명	0.5	4.5	34.2	60.7	100.0(625)	3.55
40~79명	0.6	3.5	29.4	66.5	100.0(992)	3.62
80명 이상	0.4	3.9	31.7	64.0	100.0(908)	3.59
$\chi^2(df)/F$	59.0(9)***				18.8***	
2012년 조사	0.6	3.8	35.2	60.4	100.0(4,000)	3.55

*** $p < .001$

'어린이집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95.9%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3.69점으로 꽤 높았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동의하는 비율과 점수가 높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낮았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평균 점수는 읍·면지역에서 높았다. 규모에 따라서는 80명 이상의

어린이집의 동의 비율이 높았고 평균 점수는 40~79명 규모에서 높았다.

2015년 조사결과에서 '어린이집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의 동의 비율과 평균 점수는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서 보다 모두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3〉 '어린이집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개소), 점

구분	전혀 않음	별로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0.5	3.5	22.5	73.4	100.0(4,044)	3.69
시설유형						
국공립	-	0.3	5.7	94.0	100.0(506)	3.94
사회복지법인	0.4	1.3	16.9	81.5	100.0(376)	3.79
법인·단체	-	0.6	14.2	85.2	100.0(283)	3.85
민간	0.7	5.4	32.4	61.6	100.0(1,133)	3.55
가정	0.8	4.9	26.8	67.6	100.0(1,480)	3.61
직장	-	0.5	6.7	92.8	100.0(266)	3.92
$\chi^2(df)/F$	311.8(15)***					60.5**
소재지						
대도시	0.6	2.6	21.3	75.5	100.0(1,463)	3.72
중소도시	0.6	4.7	26.3	68.4	100.0(1,630)	3.62
읍면지역	0.3	3.1	18.1	78.5	100.0(951)	3.75
$\chi^2(df)/F$	40.0(6)***					17.9***
규모						
20명 이하	0.8	4.8	26.5	67.8	100.0(1,520)	3.61
21~39명	0.6	3.4	26.2	69.9	100.0(625)	3.65
40~79명	0.4	2.6	16.4	80.5	100.0(991)	3.77
80명 이상	0.2	2.4	20.1	77.3	100.0(908)	3.75
$\chi^2(df)/F$	67.0(9)***					20.2**
2012년 조사	1.0	5.0	28.7	65.4	100.0(4,000)	3.58

*** $p < .001$

'관할관청의 지도와 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87.0%로 다른 주제에 비해 낮은 비율이었으며 평균 점수도 3.31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설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동의하는 비율과 점수 모두 높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매우 낮았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이 동의 비율과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중 소도시가 낮게 나타났다. 규모에 따라서는 40~79명 어린이집의 동의 비율과 점수가 높았으며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의 동의 정도는 낮았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5년 조사결과의 동의 비율과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2012년에 비해 관할관청의 지도와 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동의를 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I-4-4〉 ‘관할청의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

구분	전혀 않음	별로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단위: %(개소), 점	
					계(수)	4점 평균
전체	2.1	10.9	40.5	46.5	100.0(4,044)	3.31
시설유형						
국공립	0.3	3.0	23.3	73.5	100.0(506)	3.70
사회복지법인	0.7	5.7	35.6	58.0	100.0(376)	3.51
법인·단체	0.6	5.9	37.8	55.8	100.0(283)	3.49
민간	4.6	15.6	46.6	33.2	100.0(1,133)	3.08
가정	1.7	13.7	45.8	38.8	100.0(1,480)	3.22
직장	0.7	3.1	27.9	68.3	100.0(266)	3.64
$\chi^2(df)/F$	406.0(15) ^{***}				79.5**	
소재지						
대도시	2.1	10.5	36.7	50.7	100.0(1,463)	3.36
중소도시	2.6	12.7	45.3	39.5	100.0(1,630)	3.22
읍면	1.2	8.5	38.4	51.9	100.0(951)	3.41
$\chi^2(df)/F$	59.7(6) ^{***}				24.7**	
규모						
20명 이하	1.7	13.6	45.4	39.3	100.0(1,520)	3.22
21~39명	2.3	11.2	45.8	40.7	100.0(625)	3.25
40~79명	2.2	8.1	32.4	57.3	100.0(991)	3.45
80명 이상	2.6	9.1	37.4	50.9	100.0(908)	3.36
$\chi^2(df)/F$	106.0(9) ^{***}				21.5**	
2012년 조사	2.3	11.9	43.2	42.7	100.0(3,998)	3.26

*** $p < .001$

나. 보육수준의 향상 정도

지난 3년간 보육정책으로 보육수준 향상 정도에 대해 ‘전혀 향상되지 않았음(1점)’에서 ‘매우 향상되었음(4점)’의 4점 척도로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였다. 보육내용의 충실성이 향상 되었는지에 동의하는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보육사업의 공공성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어린이집 재정운영 안정화는 향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보육사업의 공공성 향상 정도에 관해서는 85.1%, 4점 척도의 평균은 3.10으로 나타났다. 보육사업의 공공성 향상 정도에 대해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향상되었다고 동의

하는 비율과 점수가 높았고, 가정어린이집은 낮았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에서 낮게 나타났다. 규모에 따라서는 40~79명 어린이집의 동의 비율과 점수가 높았으며 20명 이하 어린이집의 동의 정도는 낮았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5년의 향상성 정도와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2012년에 비해 더 향상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VII-4-5〉 보육사업의 공공성 향상 여부

구분	단위: %(개소), 점					
	전혀 향상되지 않았음	별로 향상되지 않았음	대체로 향상됨	매우 향상됨	계(수)	4점 평균
전체	2.0	12.9	57.9	27.2	100.0(4,043)	3.10
시설유형						
국공립	0.3	7.8	52.7	39.2	100.0(505)	3.31
사회복지법인	1.0	9.1	61.7	28.3	100.0(377)	3.17
법인단체	0.3	8.4	63.7	27.7	100.0(283)	3.19
민간	2.4	15.3	58.2	24.2	100.0(1,134)	3.04
가정	3.0	15.1	56.9	25.0	100.0(1,478)	3.04
직장	0.4	10.4	61.9	27.2	100.0(266)	3.16
$\chi^2(df)/F$	99.5(15)***				16.2***	
소재지						
대도시	1.6	11.7	56.9	29.8	100.0(1,463)	3.15
중소도시	2.6	14.6	58.5	24.3	100.0(1,629)	3.04
읍·면	1.3	12.0	58.6	28.1	100.0(951)	3.13
$\chi^2(df)/F$	22.0(6)**				10.4***	
규모						
20명 이하	2.9	15.3	57.1	24.7	100.0(1,518)	3.04
21~39명	1.8	14.1	58.8	25.2	100.0(625)	3.07
40~79명	1.6	9.9	58.3	30.2	100.0(991)	3.17
80명 이상	0.8	11.3	58.4	29.6	100.0(909)	3.17
$\chi^2(df)/F$	40.3(9)***				11.2***	
2012년 조사	1.7	14.1	66.3	17.9	100.0(3,995)	3.01

** $p < .01$, *** $p < .001$

두 번째 보육내용의 충실성의 향상에 대한 동의 비율은 90.1%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3.18점이었으며 이는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다른 차이를 나타냈다. 시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평균 점수가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이 동의 비율과 평균 점수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규모에 따라서는 40~79명 어린이집이 향상 정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5년 조사에서 향상성 정도와 평균 점수가 약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6〉 보육내용의 충실성 향상 여부

구분	전혀 향상되지 않았음	별로 향상되지 않았음	대체로 향상됨	매우 향상됨	단위: %(개소), 점	
					계(수)	4점 평균
전체	1.1	8.8	60.7	29.4	100.0(4,045)	3.18
시설유형						
국공립	0.3	6.8	55.7	37.3	100.0(525)	3.30
사회복지법인	0.8	5.8	62.9	30.5	100.0(352)	3.23
법인·단체	-	7.8	60.0	32.2	100.0(273)	3.24
민간	1.5	9.1	61.1	28.2	100.0(1,139)	3.16
가정	1.5	9.6	61.5	27.4	100.0(1,483)	3.15
직장	0.9	12.2	61.9	25.0	100.0(273)	3.11
$\chi^2(df)/F$	40.7(15)***				6.5***	
소재지						
대도시	0.8	8.7	60.8	29.6	100.0(1,464)	3.19
중소도시	1.7	10.0	60.9	27.4	100.0(1,630)	3.14
읍면	0.7	6.9	60.1	32.4	100.0(951)	3.24
$\chi^2(df)/F$	19.6(6)**				8.1***	
규모						
20명 이하	1.4	9.9	61.5	27.2	100.0(1,519)	3.14
21~39명	1.2	8.9	61.9	28.0	100.0(625)	3.17
40~79명	0.7	7.4	58.4	33.6	100.0(992)	3.25
80명 이상	1.1	8.5	61.1	29.3	100.0(909)	3.19
$\chi^2(df)/F$	17.6(9)*				5.7**	
2012년 조사	1.0	9.0	68.1	21.9	100.0(3,996)	3.11

* $p < .05$, ** $p < .01$, *** $p < .001$

세 번째 어린이집 재정운영 안정화의 향상에 관해서 조사한 결과 51.5%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평균 점수는 2.50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동의 비율과 평균 점수는 전체 비율과 4점 척도를 고려할 때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평균 점수가 모두 높았고 민간어린이집은 모두 낮았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에서 향상 비율 정도와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규모에 따라서는 40~79명 어린이집의 향상 비율과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15년 조사 결과는 어린이집 재정운영 안전화 향상 정도는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동의 비율과 평균 점수가 감소하였다.

〈표 VII-4-7〉 어린이집 재정운영 안전화 향상 여부

구분	전혀 향상되지 않았음	별로 향상되지 않았음	대체로 향상됨	매우 향상됨	단위: %(개소), 점	
					계(수)	4점 평균
전체	18.5	30.0	34.9	16.6	100.0(4,042)	2.50
시설유형						
국공립	3.3	23.7	44.7	28.3	100.0(506)	2.98
사회복지법인	9.5	34.5	39.6	16.4	100.0(377)	2.63
법인·단체	5.2	27.1	47.2	20.5	100.0(282)	2.83
민간	24.9	32.5	30.3	12.3	100.0(1,133)	2.30
가정	26.2	30.4	29.5	13.9	100.0(1,478)	2.31
직장	4.7	26.4	45.9	23.1	100.0(266)	2.87
$\chi^2(df)/F$	352.4(15)***				66.4***	
소재지						
대도시	16.2	26.2	39.1	18.5	100.0(1,462)	2.60
중소도시	22.6	31.8	31.6	14.0	100.0(1,629)	2.37
읍·면	15.3	33.1	33.6	18.0	100.0(951)	2.54
$\chi^2(df)/F$	59.8(6)***				22.8***	
규모						
20명 이하	25.8	30.5	29.8	13.8	100.0(1,518)	2.32
21~39명	20.3	30.8	34.4	14.5	100.0(624)	2.43
40~79명	12.6	27.5	37.9	22.0	100.0(992)	2.69
80명 이상	11.5	31.2	40.6	16.7	100.0(908)	2.63
$\chi^2(df)/F$	138.0(9)***				37.7***	
2012년 조사	7.1	28.8	49.1	15.0	100.0(3,995)	2.72

*** $p < .001$

네 번째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73.3%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점수는 2.89점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유형과 규모에 의한 차이가 유의했다. 시설유형별로는 법인·단체어린이집에서 향상되었다고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고 평균 점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높았다. 규모에 있어서는 40~79명 어린이집의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비율과 점수가 높았고 20명 이하 어린이집에서의 향상 정도는 낮았다. 한편 2015년의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정도는 2012년에 비해 향상 정도를 느끼는 비율과 점수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VII-4-8〉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여부

단위: %(개소), 점

구분	전혀 향상되지 않았음	별로 향상되지 않았음	대체로 향상됨	매우 향상됨	계(수)	4점 평균
전체	2.6	24.1	55.2	18.1	100.0(4,041)	2.89
시설유형						
국공립	0.5	20.9	53.7	24.9	100.0(506)	3.03
사회복지법인	2.3	23.7	54.2	19.8	100.0(377)	2.92
법인·단체	0.6	20.0	58.4	21.0	100.0(283)	3.00
민간	3.6	25.1	54.8	16.5	100.0(1,134)	2.84
가정	3.4	24.8	56.1	15.6	100.0(1,475)	2.84
직장	0.6	27.3	52.4	19.7	100.0(266)	2.91
$\chi^2(df)/F$		53.8(15)***				7.9**
소재지						
대도시	2.9	23.3	54.8	19.1	100.0(1,463)	2.90
중소도시	2.5	24.9	55.8	16.9	100.0(1,627)	2.87
읍면	2.5	24.2	54.7	18.5	100.0(951)	2.89
$\chi^2(df)/F$		3.7(6)				0.7
규모						
20명 이하	3.3	25.2	56.0	15.5	100.0(1,515)	2.84
21~39명	1.5	24.7	55.4	18.4	100.0(625)	2.91
40~79명	2.7	20.2	55.2	21.9	100.0(992)	2.96
80명 이상	2.1	26.3	53.5	18.1	100.0(909)	2.88
$\chi^2(df)/F$		29.5(5)***				6.5***
2012년 조사	3.8	24.9	57.3	14.1	100.0(3,996)	2.82

*** $p < .001$

다. 보육정책의 만족도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에 대한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열 가지 주제별로 알아보았다. 이러한 정책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세 가지 정책주제를 제외하고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육 전자행정 시스템과 아이행복 카드제, 3-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70%를 넘고 평균점수는 각각 3.06점, 3.26점, 2.93점 정도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일곱 가지 주제들의 만족도는 만족하는 비율과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시간제 보육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는 55.8%이며 평균점수는 2.5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도 결과는 시설유형

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어린이집이 만족비율과 평균 점수 모두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볍인·단체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와 규모별로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한다면, 2015년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만족도 비율과 평균 점수는 2012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VII-4-9〉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단위: %(개소), 점	
					계(수)	4점 평균
전체	10.2	34.0	47.4	8.4	100.0(4,043)	2.54
시설유형						
국공립	7.1	29.3	53.5	10.1	100.0(506)	2.67
사회복지법인	13.3	36.7	41.2	8.8	100.0(377)	2.46
법인·단체	6.3	29.2	56.6	7.9	100.0(283)	2.66
민간	12.8	37.3	43.0	6.9	100.0(1,133)	2.44
가정	10.2	34.1	46.6	9.1	100.0(1,479)	2.54
직장	4.6	29.5	57.6	8.3	100.0(265)	2.70
$\chi^2(df)/F$	69.2(15)***				10.8***	
소재지						
대도시	8.5	35.1	47.4	9.1	100.0(1,463)	2.57
중소도시	11.4	33.7	47.2	7.7	100.0(1,629)	2.51
읍면	10.8	32.8	47.9	8.5	100.0(951)	2.54
$\chi^2(df)/F$	9.8(6)				2.1	
규모						
20명 이하	10.2	34.2	46.8	8.8	100.0(1,519)	2.54
21~39명	9.7	35.4	46.4	8.5	100.0(625)	2.54
40~79명	10.8	31.8	48.0	9.4	100.0(991)	2.56
80명 이상	9.7	35.1	48.6	6.6	100.0(908)	2.52
$\chi^2(df)/F$	8.4(9)				0.4	
2012년 조사	6.8	28.9	51.5	12.8	100.0(3,998)	2.70

*** $p < .001$

보육 전자행정시스템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는 정도는 8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도 3.06점으로 높았다. 대체로 시설유형과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재지에 따라서는 평균 점수만 차이가 있었다. 시설유형별로 직장어린이집에서 만족비율과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의 평

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에서 낮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40~79명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21~39명 어린이집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5년 보육 전자행정시스템에 관한 만족도와 평균 점수는 유사하나 약간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표 VII-4-10〉 보육 전자행정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구분	단위: %(개소), 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1.9	14.2	60.1	23.7	100.0(4,030)	3.06
시설유형						
국공립	1.2	7.8	58.7	32.3	100.0(505)	3.22
사회복지법인	1.3	12.7	60.8	25.2	100.0(374)	3.10
법인·단체	0.3	11.6	59.7	28.3	100.0(283)	3.16
민간	3.2	18.1	59.9	18.8	100.0(1,126)	2.94
가정	1.9	15.6	61.4	21.1	100.0(1,476)	3.02
직장	0.5	7.6	56.4	35.5	100.0(266)	3.27
$\chi^2(df)/F$	109.9(15)***					21.2**
소재지						
대도시	1.8	13.2	60.0	25.0	100.0(1,457)	3.08
중소도시	2.2	16.2	59.9	21.8	100.0(1,625)	3.01
읍·면	1.6	12.6	60.8	25.1	100.0(948)	3.09
$\chi^2(df)/F$	12.4(6)					5.8**
규모						
20명 이하	1.8	15.5	61.3	21.4	100.0(1,516)	3.02
21~39명	3.3	15.4	61.0	20.4	100.0(621)	2.99
40~79명	1.9	12.2	58.4	27.6	100.0(989)	3.12
80명 이상	1.2	13.6	59.5	25.6	100.0(904)	3.10
$\chi^2(df)/F$	28.1(9)***					7.3***
2012년 조사	2.2	13.8	57.6	26.4	100.0(3,998)	3.08

** $p < .01$, *** $p < .001$

아이행복 카드제에 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하는 정도는 8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도 3.26점으로 높았다. 한편 아이행복 카드제에 대한 만족도는 시설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직장어린이집에서 만족도 비율과 평균 점수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2012년과 비교할 때, 카드제에 관한 만족도는 2015년에 만족도의 비율과 평균 점수 모두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II-4-11〉 아이행복 카드제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단위: %(개소), 점	
					계(수)	4점 평균
전체	1.6	9.0	51.4	38.0	100.0(4,037)	3.26
시설유형						
국공립	1.7	7.2	47.1	44.0	100.0(505)	3.33
사회복지법인	1.8	10.1	46.3	41.7	100.0(375)	3.28
법인·단체	0.2	7.9	46.9	45.0	100.0(283)	3.37
민간	2.7	11.5	52.9	32.9	100.0(1,132)	3.16
가정	1.2	8.0	54.0	36.9	100.0(1,477)	3.27
직장	-	7.4	49.8	42.9	100.0(265)	3.36
$\chi^2(df)/F$	56.8(15)***				8.6***	
소재지						
대도시	1.5	9.0	50.3	39.2	100.0(1,461)	3.27
중소도시	1.8	8.6	54.0	35.6	100.0(1,628)	3.23
읍면	1.4	9.7	48.7	40.2	100.0(948)	3.28
$\chi^2(df)/F$	9.7(6)				1.7	
규모						
20명 이하	1.2	8.0	53.4	37.4	100.0(1,517)	3.27
21~39명	1.6	11.3	51.8	35.4	100.0(623)	3.21
40~79명	2.2	8.0	49.4	40.3	100.0(989)	3.28
80명 이상	1.4	10.2	49.9	38.5	100.0(908)	3.25
$\chi^2(df)/F$	16.9(9)				1.4	
2012년 조사	3.9	14.6	48.5	33.0	100.0(3,998)	3.11

*** $p < .001$

3-5세 누리과정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는 정도는 77.0%로 나타났으며 평균 2.93점이었다. 누리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시설유형, 소재지 및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설유형별로 직장어린이집에서 만족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점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높았다.

소재지별로 읍·면지역이 만족도 비율과 점수가 높았으며, 중소도시가 만족도가 낮았다. 규모별로는 80명 이상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20명 이하 어린이집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보육조사결과에 비해 전반적인 누리과정에 관한 만족도 비율과 평균 점수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12〉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단위: %(개소), 점 4점 평균
	전체	4.7	18.4	56.1	20.9	100.0(3,840) 2.93
시설유형						
국공립	1.1	7.6	55.9	35.4	100.0(503)	3.26
사회복지법인	2.1	12.9	52.8	32.1	100.0(373)	3.15
법인·단체	1.7	10.3	58.2	29.9	100.0(281)	3.16
민간	3.4	14.8	58.9	22.8	100.0(1,111)	3.01
가정	9.4	31.0	51.9	7.6	100.0(1,308)	2.58
직장	0.5	7.6	66.9	25.0	100.0(264)	3.16
$\chi^2(df)/F$	502.6(15) ^{***}				107.7 ^{**}	
소재지						
대도시	3.8	19.2	54.8	22.1	100.0(1,399)	2.95
중소도시	7.1	18.9	57.2	16.8	100.0(1,518)	2.84
읍면	2.1	16.2	56.1	25.6	100.0(923)	3.05
$\chi^2(df)/F$	59.8(6) ^{***}				23.6 ^{**}	
규모						
20명 이하	9.3	30.3	52.5	7.9	100.0(1,347)	2.59
21~39명	4.5	20.3	57.7	17.5	100.0(606)	2.88
40~79명	1.8	9.5	59.4	29.3	100.0(981)	3.16
80명 이상	1.1	8.9	56.6	33.4	100.0(906)	3.22
$\chi^2(df)/F$	517.0(9) ^{***}				192.3 ^{**}	
2012년 조사	3.4	21.1	55.6	19.9	100.0(3,889)	2.92

*** $p < .001$

주: 2012년의 경우 5세 누리과정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에 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하는 정도는 50.5%, 평균 2.51점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에 관한 만족도는 시설유형, 소재지 및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설유형별로 법인·단체어린이집에서 만족도 비율과 평균 점수 모두 높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에서 높았고 대도시에서 낮았다. 규모별로는 80명 이상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20명 이하 어린이집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에 관한 만족도는 만족 비율 57.0%와 2.70점이었던 것을 볼 때, 만족 비율과 평균 점수에 있어서 약간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표 VII-4-13〉 0~5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단위: %(개소), 점	
					계(수)	4점 평균
전체	20.8	28.7	29.4	21.1	100.0(4,029)	2.51
시설유형						
국공립	21.8	32.7	22.4	23.1	100.0(506)	2.47
사회복지법인	16.0	25.7	29.0	29.4	100.0(377)	2.72
법인·단체	16.7	22.8	29.5	31.1	100.0(283)	2.75
민간	19.2	29.8	28.9	22.1	100.0(1,127)	2.54
가정	23.6	27.5	31.9	17.0	100.0(1,470)	2.42
직장	20.9	33.1	31.5	14.4	100.0(266)	2.39
$\chi^2(df)/F$	80.5(15)***				8.9***	
소재지						
대도시	21.8	29.9	30.0	18.3	100.0(1,454)	2.45
중소도시	21.7	29.7	28.5	20.0	100.0(1,625)	2.47
읍·면	17.6	25.1	29.9	27.4	100.0(950)	2.67
$\chi^2(df)/F$	36.3(6)***				15.1***	
규모						
20명 이하	23.6	27.5	31.6	17.3	100.0(1,510)	2.43
21~39명	18.0	31.5	29.6	20.8	100.0(624)	2.53
40~79명	21.8	27.8	26.8	23.6	100.0(988)	2.52
80명 이상	17.0	29.9	28.3	24.8	100.0(907)	2.61
$\chi^2(df)/F$	42.1(9)***				6.2***	
2012년 조사	16.8	26.2	27.1	29.9	100.0(3,992)	2.70

*** $p < .001$

주: 2012년의 경우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는 정도는 34.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2.10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의 이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어린이집에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양육수당을 받은 수혜자와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만족도는 시설유형, 소재지 및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설유형별로 직장어린이집에서 만족도의 비율과 평균 점수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어린이집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에서 낮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80명 이상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20명 이하 어린이집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42.6%에서 34.2%로, 2.34점에서 2.10점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으며 양육수당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VII-4-14〉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만족도

구분	단위: %(개소), 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31.8	34.0	26.6	7.6	100.0(4,036)	2.10
시설유형						
국공립	13.1	32.8	39.3	14.9	100.0(504)	2.56
사회복지법인	24.4	39.0	27.0	9.7	100.0(376)	2.22
법인단체	21.7	33.3	33.7	11.3	100.0(283)	2.35
민간	30.2	40.0	23.8	6.0	100.0(1,129)	2.06
가정	46.8	31.1	18.5	3.6	100.0(1,478)	1.79
직장	12.1	21.8	50.3	15.8	100.0(266)	2.70
$\chi^2(df)/F$	477.4(15)***					95.1***
소재지						
대도시	29.5	33.0	28.8	8.7	100.0(1,460)	2.17
중소도시	35.8	33.6	24.1	6.5	100.0(1,629)	2.01
읍·면	28.6	36.3	27.2	7.9	100.0(947)	2.14
$\chi^2(df)/F$	27.1(6)***					11.7***
규모						
20명 이하	45.8	31.3	19.1	3.8	100.0(1,518)	1.81
21~39명	27.1	41.8	25.0	6.0	100.0(623)	2.10
40~79명	23.4	33.8	32.7	10.1	100.0(986)	2.30
80명 이상	20.5	33.4	33.6	12.4	100.0(909)	2.38
$\chi^2(df)/F$	300.6(9)***					96.5***
2012년 조사	19.5	38.1	31.9	10.6	100.0(3,985)	2.34

*** $p < .001$

공공형(서울형 포함) 어린이집 제도에 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하는 정도는 45.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2.39점이었다. 이러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시설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평균 점수에서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직장어린이집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80명 이상 어린이집의 만족도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해당 공공형(서울형 포함)분

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산출하였으므로 공공형이나 서울형 어린이집 자체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만족도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 이러한 만족도는 공공형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만족도 정도는 79.6%이고 평균 점수는 3.2점, 서울형 어린이집의 자체 만족도는 71.1%, 평균 점수는 2.9점으로 공공형 어린이집보다 약간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형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불만족 비율이 약간 더 높은 57.1%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도 낮은 편이었다. 즉,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의 자체만족도는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2015년 조사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비율이나 평균 점수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I-4-15〉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만족도

구분	단위: %(개소), 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14.4	40.4	37.3	8.0	100.0(3,996)	2.39
시설유형						
국공립	6.9	36.1	48.7	8.4	100.0(500)	2.59
사회복지법인	18.7	45.2	31.5	4.6	100.0(373)	2.22
법인단체	10.7	35.5	46.4	7.4	100.0(279)	2.50
민간	17.6	42.0	30.9	9.5	100.0(1,123)	2.32
가정	15.7	41.8	35.2	7.4	100.0(1,456)	2.34
직장	6.6	33.2	51.2	9.0	100.0(265)	2.63
$\chi^2(df)/F$	122.6(15)***				16.9***	
소재지						
대도시	14.9	40.1	36.2	8.8	100.0(1,450)	2.39
중소도시	14.2	41.2	37.4	7.2	100.0(1,611)	2.38
읍·면	13.8	39.6	38.6	8.0	100.0(935)	2.41
$\chi^2(df)/F$	4.1(6)				0.4	
규모						
20명 이하	15.4	41.3	35.9	7.5	100.0(1,496)	2.35
21~39명	14.2	42.8	36.9	6.0	100.0(617)	2.35
40~79명	13.5	39.8	37.4	9.3	100.0(982)	2.43
80명 이상	13.8	37.9	39.6	8.7	100.0(901)	2.43
$\chi^2(df)/F$	12.9(9)				2.8*	

(표 VII-4-15 계속)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공공형·서울형 여부						
공공형	3.7	16.7	43.8	35.8	100.0(156)	3.12
서울형	7.0	21.9	43.0	28.1	100.0(111)	2.92
둘 다 아님	15.1	42.0	36.8	6.1	100.0(3,729)	2.34
$\chi^2(df)/F$		286.7(6) ^{***}				98.4 ^{***}
2012년 조사	15.6	46.0	31.4	7.0	100.0(3,957)	2.30

* $p < .05$, *** $p < .001$

시간제 보육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시간제 보육 사업에 대해서는 36.8%정도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점 만점에 평균 점수는 2.17점이었다.

〈표 VII-4-16〉 시간제 보육 사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단위: %(개소), 점 4점 평균
전체	24.7	38.5	31.7	5.1	100.0(3,998)	2.17
시설유형						
국공립	14.1	42.3	37.2	6.4	100.0(501)	2.36
사회복지법인	18.0	41.6	34.6	5.9	100.0(371)	2.28
법인·단체	16.7	38.8	39.3	5.2	100.0(279)	2.33
민간	27.5	39.7	28.5	4.3	100.0(1,117)	2.10
가정	30.9	36.0	28.3	4.8	100.0(1,465)	2.07
직장	16.4	35.5	41.4	6.7	100.0(265)	2.38
$\chi^2(df)/F$		111.0(15) ^{***}				17.4 ^{***}
소재지						
대도시	25.0	38.6	31.8	4.5	100.0(1,450)	2.16
중소도시	26.7	36.6	31.2	5.5	100.0(1,610)	2.15
읍면	20.8	41.4	32.3	5.4	100.0(938)	2.22
$\chi^2(df)/F$		13.3(6) [*]				2.1
규모						
20명 이하	30.2	35.7	29.0	5.0	100.0(1,505)	2.09
21~39명	24.4	40.9	29.7	5.1	100.0(616)	2.15
40~79명	21.3	41.3	32.8	4.6	100.0(981)	2.21
80명 이상	19.3	38.4	36.5	5.8	100.0(896)	2.29
$\chi^2(df)/F$		52.0(9) ^{***}				10.9 ^{***}

* $p < .05$, *** $p < .001$

시설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비율과 점수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은 만족 비율이 낮고 평균 점수는 가정어린이집이 낮았다. 소재지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에 있어서도 8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민족비율과 평균 점수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정보공시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 본 결과, 정보공시제에 대해서 53.6%정도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4점 만점에 평균 점수는 2.50점이었다. 이러한 만족도는 만족 비율에 있어서는 시설유형과 규모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평균 점수는 시설유형,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VII-4-17〉 정보공시제에 대한 만족도

구분	단위: %(개소), 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13.1	33.3	43.9	9.7	100.0(4,025)	2.50
시설유형						
국공립	7.9	25.4	52.5	14.2	100.0(504)	2.73
사회복지법인	12.2	34.1	42.9	10.7	100.0(376)	2.52
법인·단체	6.6	33.7	48.6	11.1	100.0(282)	2.64
민간	16.6	36.2	39.3	7.9	100.0(1,124)	2.38
가정	14.7	35.2	41.6	8.5	100.0(1,473)	2.44
직장	7.2	25.0	54.8	13.0	100.0(266)	2.74
$\chi^2(df)/F$	107.1(15)***					20.1***
소재지						
대도시	13.1	32.6	43.9	10.5	100.0(1,455)	2.52
중소도시	14.2	34.2	43.3	8.3	100.0(1,624)	2.46
읍·면	11.2	32.9	44.8	11.1	100.0(946)	2.56
$\chi^2(df)/F$	11.0(6)					4.5*
규모						
20명 이하	14.4	34.7	42.1	8.7	100.0(1,513)	2.45
21~39명	14.1	35.9	40.5	9.5	100.0(621)	2.45
40~79명	12.1	32.2	45.1	10.6	100.0(984)	2.54
80명 이상	11.2	30.4	47.8	10.7	100.0(907)	2.58
$\chi^2(df)/F$	19.9(9)*					5.8***

* $p < .05$, *** $p < .001$

시설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정보공시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어린이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도 직장어린이집이 높고 민간어린이집이 낮았다. 소재지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에 있어서도 8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만족 비율과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49.8%정도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점 만점에 평균 점수는 2.42점이었다.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점수에 따른 규모의 차이만 제외하고 시설유형, 소재지 및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설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어린이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높고 민간어린이집이 낮았다. 소재지에 따르면, 대도시의 만족도가 비율과 점수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에 있어서도 40~79명 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VII-4-18〉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구분	단위: %(개소), 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19.0	31.1	38.8	11.0	100.0(4,040)	2.42
시설유형						
국공립	10.1	22.3	45.8	21.8	100.0(506)	2.79
사회복지법인	23.3	32.3	32.7	11.6	100.0(377)	2.33
법인·단체	16.5	29.1	43.0	11.4	100.0(283)	2.49
민간	25.2	32.0	34.7	8.2	100.0(1,133)	2.26
가정	18.7	33.3	38.4	9.6	100.0(1,479)	2.39
직장	9.0	32.6	49.3	9.1	100.0(262)	2.58
$\chi^2(df)/F$	170.8(15)***					28.4***
소재지						
대도시	17.6	28.4	40.9	13.1	100.0(1,462)	2.49
중소도시	20.7	32.3	37.5	9.5	100.0(1,630)	2.36
읍·면	18.5	33.3	37.9	10.4	100.0(948)	2.40
$\chi^2(df)/F$	22.0(6)**					8.8***
규모						
20명 이하	18.2	33.3	38.8	9.8	100.0(1,519)	2.40
21~39명	19.0	35.2	36.0	9.8	100.0(624)	2.37
40~79명	18.1	28.4	40.7	12.8	100.0(990)	2.48
80명 이상	21.4	27.5	38.9	12.2	100.0(907)	2.42
$\chi^2(df)/F$	24.5(9)**					2.4

** $p < .01$, *** $p < .001$

5. 시사점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이 자체 운영 평가는 반년에 1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자체 평가를 하지 않는 비율도 2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자체 평가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으며 자체 평가를 하지 않는 비율도 꽤 있는 것을 볼 때 자체 운영 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외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태가 높은 비율이지만 재인증을 받은 경우는 55.7%, 신규인증을 받은 경우는 24.6%, 신규인증을 진행하는 경우는 9.1%,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도 9.8%나 되었다. 이는 실제로 높은 평가 인증 비율에 비해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반 정도임을 보여준다.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 평가 인증의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서류 등 업무과중이 58.1%, 비용소요가 11.1%, 지표수가 많음 9.6%, 시설 개보수의 어려움이 6.1%, 우수 교사 확보의 어려움이 5.1%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평가인증에 사용할 사항으로는 부모참여, 지자체 참여, 불시 방문, 등급화, 의무화, 유효기간 차등화, 재정지원 연계 등이 제시되었다. 앞서 논한 평가인증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 평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가중과 비용소용 등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적절한 평가 내용으로 필요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3.1%로 나타나 2012년에 비해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이나 점수로 볼 때는 그리 높지 않은 2.86점이므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으로 운영위원 일정 조정 어려움, 운영위원의 낮은 관심, 운영 경험 및 전문성 부족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연계 노력을 확대하여 열린어린이집을 실현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어린이집의 재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 사용, 보육교직원 소득 신고, 수입과 지출 행위 시 관련 근거서류 첨부, 회계보고 의무화, 기타 운영비 15% 한도 준수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집 특별 활동 운영비를 일반 보육재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재무관리를 대부분 원장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장이 행정과 재정 모두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을 구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보육정책에 대한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보육은 공공 서비스이다,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대해 책무성을 지닌 기관이다, 어린이집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등에 관한 동의는 높았으나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약간 낮았다. 한편, 지난 3년간 보육정책의 보육수준 향상정도에 대해 보육내용의 충실성, 보육의 공공성은 향상되었다고 보았으나 어린이집 재정운영 안정화와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관해서는 좀 더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과 어린이집 재정 운영 안정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진행 중인 정책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자행정시스템, 아이행복 카드제, 누리과정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0~5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은 중간 정도이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보공시제에 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는 일반어린이집의 만족도 인식은 높지 않았으나 공공형어린이집의 자체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의 만족도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보육의 질을 높이면서 현장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신중한 개선이 필요하다.

VIII. 정책 제언 및 개선 과제

조사의 표본으로 선정된 4,046개소의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프로그램, 인력 운영 등을 살펴본 결과에 의거하여 향후 정책방안을 간략하게 제언하고자 하였고, 향후 조사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1. 어린이집의 설치

가. 물리적 환경 개선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2015년 조사 결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은 2012년 조사 시보다 많은 부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의 사용 비율이 작게나마 감소되었고, 영유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부모 및 사회의 요구로 인하여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었다. 특히 비상재해대비시설의 구비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놀이터 구비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놀이터 놀이기구 설치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 9%에 해당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옥외놀이터 놀이기구 검사 후 놀이기구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한 비율도 약 30%에 달하였다. 이에 영유아 안전을 위해서 놀이터 등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에 의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해 필요한 설비에 대한 질문의 결과에서 엿볼 수 있듯이 바닥안전 설비 등 기본적인 환경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법적 기준 준수 이상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여지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경우 학습참여 보조기구,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교통편의 시설 등 보다 구체적인 시설에 대한 향상 요구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어린이집의 요구를 파악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보수 공사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어린이집 개소수가 3,700여개소인 반면 개보수 실시 비율과 개보수 시 정부 지원 비율은 2012년 조사보다 약 5%씩 감소하였는데, 개보수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개축 실시 역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및 증개축에 대한 요구가 많은 한편 실제 공사 횟수와 정부 지원 수혜 정도는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평가인증 우수 기관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보수 및 증개축 공사와 관련된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운영 안정성 제고

본 조사에서 어린이집 소유·임대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의 비율이 아직 60% 미만으로 나타났고, 전월세의 비중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의 비중도 4.6%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설립시 융자금이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은 전체 조사대상 4,046개소 중 1,104개소에 해당할 만큼 많았고, 최초 융자금 및 잔여 융자금 규모는 2012년도보다 2~3,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가 비율이 떨어지고, 융자금 비중이 높아지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이 떨어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증가할 위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보육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자가로 한정하여 설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단독 대표인지, 공동 대표인지 조사한 결과 1%는 어린이집 대표자가 공동 대표라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대표자 상호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의견대립이나 재산권 문제 등 보육환경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내재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대표자는 1인이 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에 여전히 어린이집 대표자가 공동 대표인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인가 시부터 어린이집 대표자는 가급적 단독 대표가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어린이집 운영 일반

가. 토요일 보육 운영 융통성 부여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가 필요하다. 토요일 보육 운영에 대한 조사는 보육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살펴본 부분으로 2009년 84.4%이던 토요보육 운영비율은 2015년 현재 30.3%로 감소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토요휴무제의 확산에 수반되는 변화로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토요보육에 대한 요구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토요보육을 거점형으로 운영하거나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운영 횟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 마련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운영 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2014년 4월 전국적으로 새로 도입된 어린이집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해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만족도는 '보통'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대기아관리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나면서도, 입소아 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없어졌다는 점과 입소대기를 중복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입소대기 아확정의 어려움 등 불만이 나타나고 있는 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소대기기관 수의 제한과 더불어 입소희망시기 등의 표기 등 기술적 측면에서 입소대기아 관리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장 강화

2015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종류별 가입 비율은 영유아 및 방과후, 돌연사 증후군 특약, 화재 등은 90%에 달하는 높은 가입율을 보인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는 현장에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의무가입과 병행하여 민간보험을 가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보장비용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의견임을 고려할 때 의무가입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장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라. 신규 제도에 대한 운영 안내 지침 마련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정책과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어린이집 현장에 정확한 안내와 지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2012년과 2015년 보육실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비교해보면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보육정책과 지원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안전한 보육환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에 대한 노력이 변화된 통계 수치로 보인

다.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강화, 안전관련 문서 작성 비율 증가, 차량안전 관련 기준 준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 확인 관리 등 전반적으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한 보육을 위해 마련한 기준들이 준수되고, 석면이나 실내공기 질 관리정책에 대한 인지와 실행의 정도도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관련 정책에 대한 매뉴얼 및 안내 가이드라인의 개발 보급으로 어린이집에서의 운용을 정확하게 지원한 결과이기도 하다. 2015년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참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설치 이후 관리와 균형적인 운용에 대한 안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듯 신규 제도나 정책에 대한 안내 및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 전염성 질환 및 어린이집 보건 환경 강화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여파로 어린이집에서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모아졌다.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 보면 어린이집에서 전염성 질환 의심시의 대응은 의심 시 등원시키지 않도록 부모에게 안내하는 것과 의심 시 병원의 진단을 통한 안전 확인 후 등원하는 것, 평상시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정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은 많은 영유아와 교사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전염성 질환에 특히 취약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제공,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안전한 어린이집 보건 환경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급간식 제공에 대한 지속적 관리 지원 강화

어린이집의 급간식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급간식에서 중요한 식단을 중심으로 보면 식단의 구성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제공 식단을 그대로 활용하는 비율이 2009년 실태조사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영유아를 위한 식단의 개발과 공유 노력이 효과적으로 어린이집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제공 식단의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요구된다. 급식재료 공동구매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단점으로 개별구매보다 높은 비용이 지적됨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보육교직원 운영 실태 및 요구

가.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보다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자격이 현재 재직 시점은 기준으로 3급 교사가 4.6%, 최종학력 고졸 18.5%이며, 최초 자격취득 기관의 경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교육원 32.7%(원장 33.0%),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 12.3%(원장 4.0%)로 고졸학력 및 온라인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적지 않다. 또한 2012년 대비 고졸학력과 온라인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취득의 진입 단계에서부터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최초자격 취득 경로에서 고졸 학력과 온라인교육 이수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대면교육 및 실습의 강화 등 양성 과정의 강화와 보수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질 관리가 요구된다. 이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의 노력과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교사 처우의 편차 해소 및 근로여건의 개선 지속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 및 근로여건(예: 초과근무의 감소 및 초과근무시간대로 수당 지급 증가, 보조교사 배치의 증가 등)의 점진적인 근로환경과 처우의 개선 하에서도 기관유형 및 기관규모, 지역에 따른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개선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취약기관의 특성을 가지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격차해소와 맞춤형 지원 및 모니터링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 교사의 1일 근로시간 평균은 8시간 42분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과 초과 근로수당의 적용 확대로 인해 근로시간의 준수가 반영된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한편, 중간경력교사(평균경력 7년 이상)의 근로시간은 9시간 36분으로 2012년 9시간 28분에 비해 다소 늘어났으며, 교사 근로시간의 구성이 보육 7시간 54분, 보육준비 및 기타업무 약 1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18분으로, 전반적인 근로여건의 양적 개선 내에서도 보육 외 준비 및 기타업무시간의 확보와 휴게/점심시간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된다. 보조교사 및 비담임 인력의 지속적인 추가 배치와 (교사의 근로시간 총량 외) 업무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근로시간 내 보육고유업무 및 보육준비/기타업무 시간 설계를 구분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교사의 처우 개선으로 보육교사의 급여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나, 기관규모가 작거나 가정/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평균 급여가 100~140만원대에 집중되어 분포하거나 임금상승률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급여 수준의 전반적인 제고와 함께, 개별 교사의 경력의 반영과 임금 상승,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처우 개선의 지원이 급여상승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다. 보수교육의 질적·내용적 강화 -교사의 효능감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보수교육 대상자의 이수율과 어린이집의 자체적인 재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등의 실시율에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육교사 지원 및 전문성 신장에서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내용과 질적으로도 양질의 보수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교사 현직교육을 다양화하는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55.3%)와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분 만족도(30.3%)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교사 사회적 인식 만족도에서 2012년(40.4%) 대비 떨어진 폭이 큰 편이다. 근무상 애로사항은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0% 이상, 교사로서의 직무효능감에 대한 긍정응답이 85%이상으로 양호한 가운데 교사의 신체적 피로도가 59.8%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피로(56.4%), 직무 스트레스(49.4%)로 나타났다. 교사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교사의 만족도와 직무효능감, 스트레스, 사회적 인식 등의 제반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교사 지원 및 교육의 전문화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질 관리 체계의 강화가 함께 요구된다 하겠다.

라. 남성 영유아교사의 채용

보육교사 및 원장에서 여성의 비율이 96~99%로, 남성 교직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위해 영유아 교사직의 남성의 비율이 현재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남성교사를 양성하고, 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과 전문성 신장의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보육 영유아 특성과 다양한 보육

가. 어린이집의 질적 제고를 통한 유아 보육 기능 강화

어린이집의 연령반별 운영 비율을 살펴 본 결과 2012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흐름으로 어린이집은 영아반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대비 특히 1~2세반의 운영 비율이 증가하고 3~5세 유아반 운영비율은 감소하였다. 단, 이는 최근 영아기부터의 어린이집 이용이 보편화됨으로 유아반은 운영하지 않고 영아 위주로 운영하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급증에 힘입은 바가 큰 현상이라 보여진다. 시설규모가 크거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같은 부모들의 선호 시설 유형에서는 유아반 운영비율이 영아반 운영비율에 비해 크게 낮지 않아 서비스 질의 개선을 통해 유아보육 제공 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제기된다.

2009년(63.7%), 2012년 조사(41.2%)에서 어린이집에 입소대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프로그램 및 운영 선호'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으나 2015년에는 이러한 이유로 입소대기가 발생한다는 응답은 36.8%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누리과정 시행 이후 어린이집 간 서비스 질의 차이가 많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리과정으로 어린이집간 서비스 질 차이 뿐 아니라 유치원과의 서비스 질 차이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개선 노력을 통해 영아보육 뿐 아니라 유아보육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어 영유아보육을 포괄하는 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 취업모 자녀 보육 지원 기능 강화

본 조사 결과 어린이집의 보육 아동 중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가 53.2%고 미취업모 가정 영유아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유아 구분 시 취업모 가정의 영아는 전체 재원아동 중 3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취업모 가정의 영아 보육 기능이 두드러지는 시설 유형은 가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며, 취업모 가정 유아 보육 기능은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담당하는 비율이 컸다.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영유아별로 가장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조건과 환경은 어떠한지 영유아별로 취업모자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유형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취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모를

위한 보육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시설유형별 장애아 보육 맞춤형 지원

장애아 보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영유아는 2가지 이상의 중복장애 보유 비율이 높고 장애유형도 일반어린이집 재원 장애영유아에 비해 중한 장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육 장애아의 장애유형과 장애의 경중을 고려하여 중증의 중복장애아 보육 비율이 높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보조인력 정도가 아닌 전문인력의 추가 배치 등 장애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아보육료단가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경계성 장애나 경증 장애영유아 보육으로 일반 영유아와의 원활한 통합 보육을 운영해야 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나 장애아를 보육하는 일반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와 같은 보조인력의 우선 배치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실제 본 조사 결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보육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장애아보육료 단가 인상'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일반아동과 통합보육을 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은 무엇보다 '보조인력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라. 다문화 가족 영유아 및 부모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본 조사 결과 다문화 가족 영유아 및 부모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률이 2012년 대비 감소하여 관심의 약화를 우려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 영유아는 언어발달 지연의 문제가 크게 지적되고 있었는데, 이는 언어발달 지연만 아니라 학습발달, 자신감자아정체감 형성, 또래관계 형성에서도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어 관심과 조기 개입을 통한 언어발달 촉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언어, 한글지도 등 다문화 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강사와 교재 개발 등으로 지원프로그램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통한 영유아의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와 어린이집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알림장 등의 번역서비스는 운영 비율이 극히 낮았는데, 이는 개별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전문적 서비스여서일 수 있으므로 운영비율이 미흡한 이유 파악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별 어린이집이나 보육 관련 부처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차원에서의 분절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관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다문화 가족 영유아,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수요 조사를 통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5. 보육 프로그램

가. 보육과정 평가 관련 교육기회 활성화

2015년 조사에서 보육과정 운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보육계획안의 연계성, 일과의 통합적 운영, 활동특성 간 균형성, 보육과정의 정기적 평가와 반영의 4개 항목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3.4점에서 3.8점의 분포를 보여 조사에 참여한 시설의 운영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육과정의 정기적 평가와 결과 반영 항목의 경우 타 항목에 비해 평균점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낮았고, 그 중에서도 가정, 민간,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평균점수가 더 낮았다. 즉, 해당 시설이 타 시설에 비해 보육과정 평가와 결과 반영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2년 조사와도 유사한 결과로 보육과정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육과정 평가와 관련된 교사 대상의 교육기회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보육과정 평가와 결과 활용’은 보육과정 운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육교직원 대상의 보수교육 등 재교육 과정에서 보육과정 평가 방법, 사례, 보육프로그램 작성 시 평가결과 반영 등에 대한 심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보육프로그램 참고자료 지속적인 개정 및 보완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프로그램 작성시 참고하는 자료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보육프로그램 자료집을 참고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민간업체 제공 프로그램을 참고하는 비율도 2009년과 2012년 조사와 비교해 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3-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된 이후로 민간업체 등 사기업에서 개발된 누리과정 관련 프로그램이 보육현장에 보급되어 이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한 결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보육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민간업체 개발 프로그램 자료에 대한 현황 조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지나친 사교육 확대로 누리과정의 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수준의 프로그램집을 미활용하는 이유로 '교재교구 준비가 어려워서', '쓰던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해당 사항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보육프로그램집에 제시된 활동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집에 제시된 활동자료들이 일반적인 수준의 보육시설에서 구비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리과정 프로그램집의 경우에도 교재교구 준비가 어려워 미활용한다는 비율이 38%로 타 항목에 비해 10%가량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집과 부록 활동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추가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불만족 비율도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그 사유와 개선사항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정 및 보완 과정에 반영해나감으로써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다.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 항목 조정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처에 있어서는 시설유형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유형의 시설들이 지원금을 '교재교구 구입'에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차순위부터는 사용항목에 시설유형별 차이가 있었다. 즉,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규모 시설의 경우 담임교사 인력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타 시설은 보조교사 채용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시설규모에 따른 교사 수요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전체를 기준으로 2순위 응답과 3순위 응답결과를 살펴 보면 '기자재 구입'과 '아동안전 관련 물품'에 사용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시설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교재교구와 교사인력에 사용하며,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원금과 관련하여 3-5세 누리과정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결과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운영비 사용 항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에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처의 시설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운영비 사용 항목을 적절히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라. 특별활동 관리·운영 지침 보완

2012년 조사결과 대비 전체적인 특별활동 실시 비율은 증가, 영유아별 평균 프로그램 수는 유사, 특별활동 비용은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활동 실시 비율은 2012년 79.8%에서 85.9%로 6% 증가하였으나, 프로그램 수에 있어서는 영아 0.29개 감소, 유아는 0.01개 증가하여 2012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 특별활동 비용은 영유아 1인당 최대비용이 2012년 조사결과 평균 5만 2천 원이었던데 반해, 2015년에는 3만 4천원으로 집계되어 1만 7천원 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특별활동비를 규제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상한제 등을 시행함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지자체가 정한 상한액과 비교하여 받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상한액보다 적게 받는다는 응답이 2012년 69.3%에서 7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별활동비 상한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부모의 특별활동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6. 운영평가·관리 및 정책 관련 의견

가. 자체평가에 대한 홍보와 정보 공유

어린이집이 자체 운영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2년에 비해 어린이집 자체 평가의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어린이집에서 자체 평가를 하지 않는 비율도 꽤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의 외부 평가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질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으로서 자체 평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자체평기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평가의 장점을 알리고 각 어린이집의 문제해결 과정을 공유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자체 평가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알릴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지하도록 하며 외부평가는 그러한 자체 평가의 점검이나 지침이 되는 수준으로 최소화하도록 한다.

나. 평가인증 컨설팅 강화

첫째,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태가 높은 비율이지만 재인증을 유지하는 경우와 신규 인증의 경우의 비율이 높지 않고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도 꽤 있었다. 이는 실

제로 높은 평가 인증 비율에 비해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평가 인증의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횟수나 점수에 의해 인증 유효기간을 다양화하고 점검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나 컨설팅을 요구하는 내용 중심으로 추가 점검으로 보완하는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평가인증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 양적인 점수화보다는 질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현장관찰을 강화하고 컨설팅과 연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업무과중(서류 등), 비용소요, 지표수가 많음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면서 평가인증이 어린이집 질 관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평가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핵심내용 중심으로 컨설팅을 강화시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홍보 강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의무화되었으나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높지 않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움으로 운영위원 일정 조정의 어려움, 운영위원의 낮은 관심, 운영 경험 및 능력 부족으로 조사되었는데, 운영 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열린어린이집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알리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야 한다.

라.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강화

어린이집의 재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 사용, 수입과 지출 행위 시 관련 근거서류 첨부, 회계보고 의무화, 기타 운영비 15% 한도 준수 등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보육교직원 소득 신고 등은 아직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집 재무관리의 대부분을 원장이 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비를 일반 보육재정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곳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만들어 점검하도록 한다. 재무규칙 등의 준수에 대한 적용 여부도 중요하지만, 행정과 재정에 대한 연계를 통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므로 운영위원회와 이를 통한 정보를 공유하여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강화하도록 한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행정과 재정을 원장이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정관리의 인식을 높이고 모니터링하는 체계와 정보 공개를 통해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 어린이집 컨설팅 강화

보육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대해 책무성을 지닌 기관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매우 높고 보육은 공공서비스이다에 대한 동의도 꽤 높았으나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항목에 관한 동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관할청의 지도감독보다는 자체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조력자로서 더 나은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린이집 특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바. 정책만족도 제고

지난 3년간 보육 수준 향상 정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보육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향상 정도는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보육의 공공성의 향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어린이집 재정운영 안정화 정도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리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어린이집 재정 운영 안정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추후 정책제시에는 이 두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정책 만족도는 보육 전자행정 시스템과 아이행복 카드제, 3-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만족도는 괜찮으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시간제 보육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기관양육의 지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제공한 것에 비해 가정양육에 대한 섬세한 설계와 지원이 미약함을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정책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7. 향후 조사를 위한 개선 과제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보육정책 수립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2004년 1차, 2009년 2차, 2012년 3차, 2015년 4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전국보육실태 어린이집 조사는 보육환경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승인 통계로서 2015년 조사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보육실태 어린이집 조사의 적정 표본 규모를 산출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차 조사 이후 어린이집 조사의 목표 표본은 전체 어린이집의 10%로 고정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목표 표본의 비율이 정확한 표본설계 연구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1차 조사가 진행되던 2004년과 비교하여 2015년 어린이집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4차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 표본 또한 증가하였다. 2015년 4차 조사는 전체 43,100개소의 어린이집 중 4,300개소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달 이상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표본 규모를 전체 어린이집의 10%가 아닌 공표하는 통계치를 중심으로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조사 실시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의 조사 연계를 통해 설문지 양을 조절하여 응답자의 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다. 전국보육실태 어린이집 조사는 어린이집과 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보육관련 승인 통계로서 질문지의 양이 상당하여 응답자의 피로도가 높아 응답 거절이 많았다. 따라서 조사표 설계 당시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문항을 발굴하여 일부 연계하는 작업을 이번 조사에서 진행하였으나, 많은 문항을 연계하지 못했다. 향후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문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유희정·이미화·민현주·강민정·선보영·백혜리 외(2009).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육 시설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기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립·도남희·권미경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 이집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1월 18일 기준 CCTV 설치 현황(내부자료)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3. 10. 17).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 사업 실시(<http://www.mw.go.kr>에서 인출)
- 보건복지부(2014. 4. 21).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더욱 수월해진다! -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전국 확대 실시(<http://www.mw.go.kr>에서 인출)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참고 웹사이트>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부 록

부록 1. 부록 표

부록 2. 어린이집 조사표(전체)

부록 3. 보육교사 조사표(전체)

부록 1. 부록 표

1) 교사 기타수당

가) 전체 교사

〈부록 표 1〉 교사 지급 수당: 명절수당

단위: %, 회, 만원(개소)

구분	지급주기				회수		총 금액		(수)
	매월	3개월 마다	6개월 마다	부 정기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0.6	32.6	66.7	2.05	0.61	12.57	27.46	(2,700)
시설유형									
국공립	0.3	1.7	32.5	65.5	2.01	0.48	17.74	55.42	(348)
사회복지법인	-	1.6	27.1	71.3	1.97	0.25	20.00	63.02	(179)
법인단체	0.1	-	33.7	66.2	1.97	0.36	11.12	6.73	(183)
민간	-	0.4	32.9	66.7	2.05	0.47	11.34	13.79	(752)
가정	0.1	0.3	33.6	66.0	2.05	0.43	10.24	7.38	(1,070)
직장	-	0.1	30.5	69.4	2.28	1.69	15.58	10.09	(168)
소재지									
대도시	0.2	0.5	28.9	70.4	2.09	0.83	11.62	19.00	(1,008)
중소도시	-	0.7	35.7	63.7	2.05	0.44	11.90	18.21	(1,096)
읍면	-	0.6	33.8	65.5	1.99	0.31	15.47	47.08	(596)
규모									
20명 이하	0.1	0.3	33.6	66.0	2.05	0.43	10.35	7.47	(1,102)
21~39명	-	0.4	35.1	64.6	2.04	0.44	11.97	16.22	(398)
40~79명	0.2	0.5	32.4	66.9	2.07	0.97	13.56	26.83	(645)
80명 이상	-	1.4	29.3	69.3	2.04	0.46	16.21	49.88	(555)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부록 표 2〉 교사 지급 수당: 휴가수당

단위: %, 회, 만원(개소)

구분	지급주기				회수		총 금액		(수)
	매월	3개월 마다	6개월 마다	부 정기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0.4	1.0	15.6	83.0	1.56	4.03	10.40	9.76	(1,254)
시설유형									
국공립	0.9	1.5	24.3	73.3	2.56	10.35	13.37	12.74	(161)
사회복지법인	-	-	26.2	73.8	1.51	0.51	13.92	26.81	(54)

(부록 표 2 계속)

구분	지급주기				회수		총 금액		(수)
	매월	3개월 마다	6개월 마다	부 정기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법인·단체	-	1.6	20.6	77.8	1.50	0.59	11.52	6.02	(103)
민간	0.5	0.8	15.0	83.7	1.59	2.66	9.38	7.56	(336)
가정	0.1	1.1	12.3	86.6	1.30	0.65	9.15	7.19	(564)
직장	4.1	-	10.1	85.9	1.29	1.10	18.35	12.49	(36)
소재지									
대도시	0.4	0.4	10.4	88.7	1.61	6.17	10.83	9.75	(427)
중소도시	0.3	1.7	16.7	81.4	1.46	1.38	9.71	9.88	(563)
읍면	0.7	0.7	22.1	76.4	1.70	3.11	11.11	9.45	(264)
규모									
20명 이하	-	1.1	12.0	86.8	1.29	0.65	9.23	7.26	(573)
21~39명	0.2	0.2	19.5	80.2	1.78	3.72	10.02	7.10	(168)
40~79명	1.5	1.0	16.7	80.8	2.08	7.96	11.13	11.53	(288)
80명 이상	0.1	1.7	20.3	77.9	1.45	0.55	12.75	13.58	(225)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부록 표 3〉 교사 지급 수당: 직책수당

단위: %, 회, 만원(개소)

구분	지급주기				회수		총 금액		(수)
	매월	3개월 마다	6개월 마다	부 정기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6.4	0.5	0.7	2.4	11.66	1.71	10.51	12.40	(278)
시설유형									
국공립	97.6	-	-	2.4	12.00	-	7.67	5.12	(57)
사회복지법인	100.0	-	-	-	11.88	0.82	10.72	11.72	(70)
법인·단체	95.6	-	3.6	0.9	11.55	2.13	11.87	9.89	(42)
민간	96.2	2.6	0.6	0.6	11.59	1.88	12.53	17.14	(53)
가정	88.6	-	-	11.4	10.81	3.06	10.93	18.80	(34)
직장	98.8	-	1.2	-	11.88	1.14	10.28	6.11	(22)
소재지									
대도시	96.9	-	1.6	1.6	11.77	1.34	11.17	13.95	(91)
중소도시	95.6	1.5	0.4	2.6	11.54	1.97	11.13	14.63	(88)
읍면	96.7	-	0.3	3.0	11.65	1.81	9.29	7.74	(99)
규모									
20명 이하	89.8	-	-	10.2	10.94	2.91	10.72	17.72	(37)
21~39명	96.8	2.6	0.5	-	11.68	1.66	9.67	12.14	(47)
40~79명	98.8	-	1.2	-	11.83	1.15	10.45	9.75	(97)
80명 이상	96.8	-	0.7	2.5	11.81	1.40	10.95	12.45	(97)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부록 표 4〉 교사 지급 수당: 시간외수당

단위: %, 회, 만원(개소)

구분	지급주기				횟수		총 금액		(수)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부정기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8.1	1.5	0.1	20.3	10.09	3.58	14.40	19.17	(235)
시설유형									
국공립	69.1	3.4	0.3	27.2	9.44	3.97	14.13	21.18	(73)
사회복지법인	57.6	-	-	42.4	8.36	4.75	17.76	35.40	(24)
법인·단체	90.5	2.7	-	6.7	10.89	2.47	8.00	3.36	(19)
민간	86.2	-	-	13.8	10.63	3.15	11.87	14.89	(48)
가정	75.7	0.8	-	23.5	9.90	3.64	13.59	14.28	(31)
직장	92.2	-	-	7.8	11.34	2.32	19.64	16.99	(40)
소재지									
대도시	75.4	0.5	-	24.1	9.72	3.83	16.67	21.74	(91)
중소도시	84.9	0.4	-	14.7	10.91	2.67	11.87	13.48	(67)
읍·면	75.0	3.8	0.3	20.9	9.76	3.92	13.80	20.07	(77)
규모									
20명 이하	69.7	0.7	-	29.5	9.34	3.97	13.67	13.39	(37)
21~39명	91.6	-	-	8.4	11.05	2.35	11.78	9.20	(33)
40~79명	77.7	0.5	0.3	21.6	10.11	3.51	14.28	18.04	(96)
80명 이상	76.4	4.0	-	19.6	9.98	3.91	16.37	26.29	(69)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나) 전체 교사

〈부록 표 5〉 보육교사 급여: 시간외수당 지급 주기-중간경력교사

단위: %(명)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계(수)
전체	86.7	1.5	0.6	0.5	10.8	100.0(1,033)
시설유형						
국공립	80.3	2.1	-	0.5	17.1	100.0(271)
사회복지법인	95.3	-	-	-	4.7	100.0(91)
법인·단체	89.5	2.7	-	-	7.7	100.0(79)
민간	89.5	1.3	0.8	0.2	8.2	100.0(223)
가정	76.6	2.1	2.1	1.6	17.7	100.0(170)
직장	97.1	0.5	-	-	2.4	100.0(199)
소재지						
대도시	86.8	0.9	0.6	-	11.6	100.0(444)
중소도시	85.4	0.9	0.7	0.9	12.1	100.0(376)
읍·면	88.8	3.7	0.5	0.7	6.4	100.0(213)

(부록 표 5 계속)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계(수)
규모						
20명 이하	77.0	2.1	2.0	1.6	17.3	100.0(186)
21~39명	92.7	-	-	-	7.3	100.0(145)
40~79명	89.2	0.6	1.2	-	9.0	100.0(364)
80명 이상	87.1	2.1	-	0.5	10.4	100.0(338)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6〉 보육교사 급여: 근속수당 지급 주기-중간경력교사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계(수)
전체						
시설유형	97.7	-	-	2.0	0.3	100.0(158)
국공립	100.0	-	-	-	-	100.0(13)
사회복지법인	100.0	-	-	-	-	100.0(15)
법인·단체	100.0	-	-	-	-	100.0(14)
민간	97.2	-	-	2.8	-	100.0(53)
가정	98.1	-	-	1.9	-	100.0(56)
직장	88.1	-	-	-	11.9	100.0(7)
소재지						
대도시	95.3	-	-	4.7	-	100.0(44)
중소도시	98.0	-	-	1.3	0.7	100.0(70)
읍·면	100.0	-	-	-	-	100.0(44)
규모						
20명 이하	98.1	-	-	1.9	-	100.0(58)
21~39명	100.0	-	-	-	-	100.0(20)
40~79명	100.0	-	-	-	-	100.0(37)
80명 이상	95.1	-	-	4.1	0.8	100.0(43)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7〉 보육교사 급여: 직책수당 지급 주기-중간경력교사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계(수)
전체						
시설유형	98.5	0.1	-	0.4	1.1	100.0(601)
국공립	98.6	-	-	-	1.4	100.0(145)
사회복지법인	98.7	-	-	-	1.3	100.0(87)
법인·단체	98.7	1.3	-	-	-	100.0(63)
민간	97.6	-	-	0.8	1.6	100.0(146)

(부록 표 7 계속)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계(수)
가정	100.0	-	-	-	-	100.0(96)
직장	100.0	-	-	-	-	100.0(64)
소재지						
대도시	97.9	0.1	-	-	1.9	100.0(255)
중소도시	98.5	-	-	1.1	0.4	100.0(190)
읍면	99.6	-	-	-	0.4	100.0(156)
규모						
20명 이하	100.0	-	-	-	-	100.0(103)
21~39명	100.0	-	-	-	-	100.0(77)
40~79명	98.4	0.2	-	-	1.4	100.0(222)
80명 이상	97.6	-	-	0.8	1.6	100.0(199)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8〉 보육교사 급여: 초과수당 지급 주기-중간경력교사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계(수)	단위: %(명)
전체	76.1	-	1.2	-	22.7	100.0(82)	
시설유형							
국공립	100.0	-	-	-	-	100.0(7)	
사회복지법인	38.1	-	18.8	-	43.1	100.0(9)	
법인·단체	33.7	-	-	-	66.3	100.0(4)	
민간	61.7	-	-	-	38.3	100.0(19)	
가정	97.9	-	-	-	2.1	100.0(37)	
직장	77.9	-	-	-	22.1	100.0(6)	
소재지							
대도시	76.9	-	-	-	23.1	100.0(15)	
중소도시	80.3	-	-	-	19.7	100.0(41)	
읍면	67.8	-	4.1	-	28.1	100.0(26)	
규모							
20명 이하	97.9	-	-	-	2.1	100.0(37)	
21~39명	40.0	-	-	-	60.0	100.0(11)	
40~79명	82.0	-	-	-	18.0	100.0(15)	
80명 이상	64.4	-	3.1	-	32.5	100.0(19)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9〉 보육교사 급여: 연구수당 지급 주기-중간경력교사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단위: %(명)
						계(수)
전체	75.4	1.1	0.3	-	23.2	100.0(95)
시설유형						
국공립	100.0	-	-	-	-	100.0(20)
사회복지법인	100.0	-	-	-	-	100.0(8)
법인·단체	81.6	-	-	-	18.4	100.0(4)
민간	75.1	-	-	-	24.9	100.0(14)
가정	37.6	4.4	-	-	58.0	100.0(27)
직장	94.8	-	1.8	-	3.4	100.0(22)
소재지						
대도시	78.4	3.0	-	-	18.6	100.0(29)
중소도시	73.3	-	-	-	26.7	100.0(42)
읍·면	74.7	-	1.2	-	24.0	100.0(24)
규모						
20명 이하	37.9	4.4	-	-	57.7	100.0(28)
21~39명	39.2	-	2.8	-	58.0	100.0(16)
40~79명	91.0	-	-	-	9.0	100.0(25)
80명 이상	98.7	-	-	-	1.3	100.0(26)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10〉 보육교사 급여: 누리과정 담임수당-중간경력교사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단위: %(명)
						계(수)
전체	99.8	0.2	-	-	-	100.0(1,031)
시설유형						
국공립	100.0	-	-	-	-	100.0(168)
사회복지법인	100.0	-	-	-	-	100.0(117)
법인·단체	100.0	-	-	-	-	100.0(116)
민간	99.8	-	-	-	-	100.0(470)
가정	100.0	-	-	-	-	100.0(46)
직장	99.6	0.4	-	-	-	100.0(114)
소재지						
대도시	99.5	0.5	-	-	-	100.0(362)
중소도시	100.0	-	-	-	-	100.0(378)
읍·면	99.9	0.1	-	-	-	100.0(291)
규모						
20명 이하	100.0	-	-	-	-	100.0(58)
21~39명	100.0	-	-	-	-	100.0(189)
40~79명	100.0	-	-	-	-	100.0(373)

(부록 표 10 계속)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계(수)
80명 이상	99.7	0.3	-	-	-	100.0(41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11〉 보육교사 급여: 0~2세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중간경력교사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단위: % (명) 계(수)
전체	99.7	-	-	-	0.3	100.0(2,914)
시설유형						
국공립	99.5	-	-	-	0.5	100.0(327)
사회복지법인	99.6	-	-	-	0.4	100.0(248)
법인·단체	100.0	-	-	-	-	100.0(161)
민간	99.5	-	-	-	0.5	100.0(639)
가정	99.8	-	0.1	-	0.2	100.0(1,387)
직장	100.0	-	-	-	-	100.0(152)
소재지						
대도시	99.6	-	-	-	0.4	100.0(1,088)
중소도시	99.7	-	0.1	-	0.3	100.0(1,203)
읍·면	99.9	-	-	-	0.1	100.0(623)
규모						
20명 이하	99.8	-	0.1	-	0.2	100.0(1,415)
21~39명	99.7	-	-	-	0.3	100.0(409)
40~79명	99.8	-	-	-	0.2	100.0(611)
80명 이상	99.3	-	-	-	0.7	100.0(479)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12〉 보육교사 급여: 농어촌특별수당-중간경력교사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단위: % (명) 계(수)
전체	100.0	-	-	-	-	100.0(940)
시설유형						
국공립	100.0	-	-	-	-	100.0(121)
사회복지법인	100.0	-	-	-	-	100.0(201)
법인·단체	100.0	-	-	-	-	100.0(122)
민간	100.0	-	-	-	-	100.0(247)
가정	100.0	-	-	-	-	100.0(202)
직장	100.0	-	-	-	-	100.0(47)
소재지						
읍·면	100.0	-	-	-	-	100.0(940)

(부록 표 12 계속)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계(수)
규모						
20명 이하	100.0	-	-	-	-	100.0(215)
21~39명	100.0	-	-	-	-	100.0(151)
40~79명	100.0	-	-	-	-	100.0(263)
80명 이상	100.0	-	-	-	-	100.0(31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13〉 보육교사 급여: 시도 처우개선비-중간경력교사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단위: %(명) 계(수)
전체						
시설유형	100.0	-	-	-	-	100.0(2,970)
국공립						
국공립	100.0	-	-	-	-	100.0(357)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100.0	-	-	-	-	100.0(262)
법인·단체						
법인·단체	100.0	-	-	-	-	100.0(204)
민간						
민간	100.0	-	-	-	-	100.0(872)
가정						
가정	99.9	-	-	-	-	100.0(1,089)
직장						
직장	100.0	-	-	-	-	100.0(186)
소재지						
대도시	99.9	-	-	-	-	100.0(1,037)
중소도시	100.0	-	-	-	-	100.0(1,245)
읍면	100.0	-	-	-	-	100.0(688)
규모						
20명 이하	99.9	-	-	-	-	100.0(1,113)
21~39명	100.0	-	-	-	-	100.0(465)
40~79명	100.0	-	-	-	-	100.0(724)
80명 이상	100.0	-	-	-	-	100.0(668)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14〉 보육교사 급여: 시군구 처우개선비-중간경력교사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단위: %(명) 계(수)
전체						
시설유형	99.9	0.1	-	-	-	100.0(1,454)
국공립						
국공립	100.0	-	-	-	-	100.0(188)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100.0	-	-	-	-	100.0(97)
법인·단체						
법인·단체	100.0	-	-	-	-	100.0(85)

(부록 표 14 계속)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계(수)
민간	99.8	0.2	-	-	-	100.0(435)
가정	100.0	-	-	-	-	100.0(547)
직장	100.0	-	-	-	-	100.0(102)
소재지						
대도시	99.7	0.3	-	-	-	100.0(553)
중소도시	100.0	-	-	-	-	100.0(567)
읍면	100.0	-	-	-	-	100.0(334)
규모						
20명 이하	100.0	-	-	-	-	100.0(554)
21~39명	100.0	-	-	-	-	100.0(234)
40~79명	99.6	0.4	-	-	-	100.0(368)
80명 이상	100.0	-	-	-	-	100.0(298)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15〉 보육교사 급여: 영아전담수당-중간경력교사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단위: %(명)	계(수)
전체	99.2	-	-	-	-	0.8	100.0(164)
시설유형							
국공립	100.0	-	-	-	-	-	100.0(17)
사회복지법인	100.0	-	-	-	-	-	100.0(10)
법인단체	100.0	-	-	-	-	-	100.0(9)
민간	100.0	-	-	-	-	-	100.0(34)
가정	98.2	-	-	-	1.8	-	100.0(88)
직장	100.0	-	-	-	-	-	100.0(6)
소재지							
대도시	100.0	-	-	-	-	-	100.0(10)
중소도시	98.8	-	-	-	1.2	-	100.0(112)
읍면	100.0	-	-	-	-	-	100.0(42)
규모							
20명 이하	98.3	-	-	-	1.7	-	100.0(90)
21~39명	100.0	-	-	-	-	-	100.0(22)
40~79명	100.0	-	-	-	-	-	100.0(31)
80명 이상	100.0	-	-	-	-	-	100.0(2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16〉 보육교사 급여: (장기)근속수당-중간경력교사

구분	매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에 1번마다	부정기적 으로/기타	단위: %(명)	
						계(수)	
전체	98.5	-	-	-	1.5	100.0(211)	
시설유형							
국공립	100.0	-	-	-	-	100.0(23)	
사회복지법인	100.0	-	-	-	-	100.0(26)	
법인·단체	100.0	-	-	-	-	100.0(15)	
민간	99.2	-	-	-	0.8	100.0(69)	
가정	96.0	-	-	-	4.0	100.0(65)	
직장	94.8	-	-	-	5.2	100.0(13)	
소재지							
대도시	100.0	-	-	-	-	100.0(38)	
중소도시	97.6	-	-	-	2.4	100.0(123)	
읍·면	99.4	-	-	-	0.6	100.0(50)	
규모							
20명 이하	96.0	-	-	-	4.0	100.0(66)	
21~39명	100.0	-	-	-	-	100.0(25)	
40~79명	97.9	-	-	-	2.1	100.0(68)	
80명 이상	100.0	-	-	-	-	100.0(52)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17〉 보육교사 급여: 어린이집 비정기적 수당 2 지급 횟수 및 평균
금액-중간경력교사

구분	휴가수당				생일축하금				단위: %, 회, 만원(명)
	비율	횟수	금액	(수)	비율	횟수	금액	(수)	
전체	24.7	1.28	9.94	(988)	11.2	1.00	5.79	(428)	
시설유형									
국공립	30.8	1.50	12.16	(153)	17.6	1.00	5.24	(78)	
사회복지법인	12.7	1.30	13.70	(49)	9.7	1.00	5.03	(36)	
법인·단체	27.2	1.38	12.68	(78)	11.0	1.00	4.93	(34)	
민간	23.0	1.30	9.18	(257)	10.3	1.00	6.00	(110)	
가정	29.0	1.17	8.83	(414)	9.6	1.00	6.24	(136)	
직장	12.2	1.18	21.89	(37)	18.8	1.00	5.01	(34)	
소재지									
대도시	24.6	1.26	10.05	(358)	11.6	1.00	5.19	(173)	
중소도시	26.1	1.26	9.58	(422)	10.3	1.00	6.07	(149)	
읍·면	22.5	1.37	10.48	(208)	12.0	1.00	6.43	(106)	
규모									
20명 이하	29.0	1.17	8.85	(423)	9.7	1.00	6.18	(141)	
21~39명	24.1	1.35	8.89	(146)	7.2	1.00	5.36	(49)	

(부록 표 17 계속)

구분	휴가수당				생일축하금			
	비율	횟수	금액	(수)	비율	횟수	금액	(수)
40~79명	21.3	1.29	10.32	(224)	12.7	1.00	5.31	(126)
80명 이상	23.6	1.37	11.35	(195)	13.1	1.00	5.94	(112)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18〉 보육교사 급여: 비정기적 수당 지자체 지급액-중간경력교사

단위: %, 회, 만원(명)

구분	명절수당				휴가수당				(장기)근속수당			
	비율	횟수	금액	(수)	비율	횟수	금액	(수)	비율	횟수	금액	(수)
전체	10.8	1.89	6.24	(420)	1.7	1.12	5.14	(62)	3.6	10.96	4.41	(143)
시설유형												
국공립	6.9	1.84	7.89	(37)	0.5	1.39	5.57	(4)	3.2	11.74	4.77	(16)
사회복지법인	13.9	1.98	6.45	(50)	1.2	1.25	4.25	(4)	2.5	12.00	3.21	(10)
법인·단체	8.5	1.94	5.45	(24)	2.7	1.00	4.90	(5)	4.5	8.34	4.93	(15)
민간	12.3	1.89	6.24	(140)	2.0	1.10	5.43	(21)	3.9	10.65	4.45	(43)
가정	10.0	1.85	5.73	(150)	1.9	1.13	4.78	(28)	3.6	11.28	3.89	(49)
직장	6.7	2.00	7.57	(19)	-	-	-	-	3.4	12.00	7.99	(10)
소재지												
대도시	9.8	1.88	5.04	(140)	0.2	1.00	6.03	(2)	2.4	11.18	3.77	(32)
중소도시	11.4	1.89	6.14	(178)	2.7	1.16	4.62	(42)	5.1	11.18	4.86	(77)
읍·면	11.4	1.91	8.31	(102)	2.6	1.05	6.00	(18)	3.3	10.06	4.01	(34)
규모												
20명 이하	10.1	1.86	5.71	(155)	1.9	1.13	4.78	(28)	3.6	11.28	3.89	(49)
21~39명	11.4	1.96	6.33	(62)	1.8	1.05	6.04	(10)	2.3	10.42	3.52	(17)
40~79명	10.9	1.87	8.07	(106)	1.4	1.06	5.21	(11)	3.4	11.18	3.82	(40)
80명 이상	11.1	1.90	5.40	(97)	1.7	1.18	5.07	(13)	4.4	10.73	5.29	(37)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19〉 보육교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재소득

단위: 만원(명)

구분	근무처별 소득명세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830.2	518.4	(2,277)	87.9	306.0	(2,285)	1,938.3	738.9	(2,282)
시설유형									
국공립	2,304.5	391.9	(377)	46.7	238.2	(377)	2,349.8	450.0	(377)
사회복지법인	2,328.5	464.1	(264)	68.3	280.3	(264)	2,393.4	525.5	(264)
법인·단체	2,230.8	500.3	(188)	96.3	393.3	(188)	2,324.4	664.5	(188)
민간	1,695.1	412.6	(596)	87.8	279.8	(601)	1,824.7	799.3	(598)
가정	1,483.3	309.2	(683)	107.2	316.7	(686)	1,601.8	547.4	(686)
직장	2,424.9	458.3	(169)	141.8	541.8	(169)	2,564.4	723.5	(169)

(부록 표 19 계속)

구분	근무처별 소득명세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소재지									
대도시	1,869.1	514.3	(874)	85.9	322.4	(880)	2,004.9	880.3	(878)
중소도시	1,737.9	496.9	(844)	104.9	333.2	(845)	1,843.3	639.5	(845)
읍·면	1,904.1	538.5	(559)	65.8	218.5	(560)	1,966.3	570.5	(559)
규모									
20명 이하	1,489.2	316.2	(708)	106.8	315.5	(711)	1,607.1	549.2	(711)
21~39명	1,643.0	410.3	(352)	83.7	256.5	(355)	1,742.8	636.5	(353)
40~79명	1,913.3	513.1	(624)	71.4	290.7	(625)	1,980.7	602.3	(624)
80명 이상	2,088.4	513.7	(593)	87.2	325.6	(594)	2,219.5	851.8	(594)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2) 교사 근무만족도

〈부록 표 20〉 보육교사의 근무 만족도: 일에 대한 보람과 급여 수준

단위: %(명), 점

구분	일에 대한 보람					급여 수준					계(수)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4점 평균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4점 평균	
전체	1.3	7.8	58.8	32.2	3.22	11.7	33.1	42.2	13.1	2.57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1.3	6.9	57.8	34.0	3.25	9.4	26.1	46.5	18.0	2.73	100.0(511)
사회복지법인	1.8	5.3	61.8	31.1	3.22	5.1	26.2	45.5	23.2	2.87	100.0(380)
법인·단체	0.4	10.6	57.1	32.0	3.21	4.4	26.8	48.3	20.6	2.85	100.0(283)
민간	0.8	7.6	59.7	31.8	3.23	12.3	34.2	42.5	10.9	2.52	100.0(1,145)
가정	1.8	8.0	57.0	33.1	3.21	14.1	37.5	37.1	11.3	2.46	100.0(1,473)
직장	2.3	11.7	59.9	26.2	3.10	6.6	18.5	56.5	18.4	2.87	100.0(271)
소재지											
대도시	0.7	7.7	59.0	32.6	3.24	12.9	34.6	40.8	11.6	2.51	100.0(1,493)
중소도시	1.6	8.3	59.6	30.5	3.19	11.9	33.5	41.8	12.8	2.55	100.0(1,630)
읍·면	1.9	7.0	56.9	34.3	3.24	8.8	29.4	45.4	16.4	2.69	100.0(940)
규모											
20명 이하	1.9	8.2	56.9	33.0	3.21	14.1	37.3	37.2	11.4	2.46	100.0(1,513)
21~39명	1.2	6.9	60.5	31.3	3.22	12.6	34.6	40.9	12.0	2.52	100.0(625)
40~79명	0.6	9.6	59.5	30.3	3.20	12.4	33.3	41.6	12.6	2.54	100.0(1,011)
80명 이상	1.2	6.5	59.2	33.1	3.24	8.5	28.5	47.6	15.4	2.70	100.0(914)
2012년 조사	1.4	6.8	72.3	19.6	3.10	8.9	30.8	50.2	10.0	2.61	100.0(4,000)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21〉 보육교사의 근무 만족도: 근무 환경

단위: %(명), 점

구분	근무 환경 전반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					계(수)
	매우 불만 족	다소 불만 족	만족 족	매우 만족	4점 평균	매우 불만 족	다소 불만 족	만족 족	매우 만족	4점 평균	매우 불만 족	다소 불만 족	만족 족	매우 만족	4점 평균	
전체	2.3	14.8	58.3	24.6	3.05	3.1	18.4	56.5	22.0	2.97	1.2	8.0	54.0	36.8	3.26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2.8	13.8	56.6	26.8	3.07	2.9	17.8	52.1	27.3	3.04	2.2	9.4	49.6	38.9	3.25	100.0(511)
사회복지법인	2.1	15.1	58.8	24.0	3.05	1.4	16.9	60.5	21.2	3.02	0.4	6.4	58.0	35.2	3.28	100.0(380)
법인·단체	0.4	21.7	56.1	21.9	2.99	2.3	15.0	51.9	30.7	3.11	-	12.1	53.7	34.2	3.22	100.0(283)
민간	2.1	14.4	58.9	24.7	3.06	3.0	17.3	58.9	20.8	2.97	1.0	7.9	55.1	36.0	3.26	100.0(1,145)
가정	2.7	15.5	57.6	24.2	3.03	3.7	22.0	54.1	20.2	2.91	1.5	7.8	52.5	38.3	3.28	100.0(1,473)
직장	1.9	11.4	62.1	24.5	3.09	3.9	10.8	55.2	30.0	3.11	2.7	5.6	58.5	33.1	3.22	100.0(271)
소재지																
대도시	2.2	15.7	58.1	24.0	3.04	3.3	19.5	56.3	21.0	2.95	0.9	8.5	53.6	37.0	3.27	100.0(1,493)
중소도시	2.3	14.8	57.4	25.6	3.06	2.9	18.6	56.3	22.2	2.98	1.0	6.8	53.8	38.4	3.29	100.0(1,630)
읍면	2.5	13.1	60.3	24.1	3.06	3.3	16.3	57.1	23.3	3.01	2.3	9.1	55.1	33.6	3.20	100.0(940)
규모																
20명 이하	2.7	15.5	57.5	24.2	3.03	3.8	22.0	54.0	20.2	2.91	1.6	7.7	52.4	38.3	3.27	100.0(1,513)
21~39명	3.0	15.4	59.9	21.7	3.00	4.4	22.8	56.2	16.6	2.85	0.9	6.1	54.9	38.1	3.30	100.0(625)
40~79명	3.1	16.0	56.4	24.5	3.02	3.6	19.9	56.0	20.5	2.93	1.4	10.1	53.0	35.5	3.23	100.0(1,011)
80명 이상	1.0	13.1	59.7	26.2	3.11	1.7	12.5	59.1	26.7	3.11	1.0	7.5	55.7	35.8	3.26	100.0(914)
2012년 조사	2.3	14.6	65.0	18.1	2.99	-	-	-	-	-	-	-	-	-	-	100.0(4,000)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22〉 보육교사의 근무 만족도: 근로시간 및 사회적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근로시간					사회적 인식					계(수)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만족하 는 편	매우 만족	4점 평균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만족하 는 편	매우 만족	4점 평균	
전체	8.1	26.3	48.1	17.5	2.75	26.1	43.6	24.3	6.0	2.10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7.5	33.0	43.9	15.5	2.67	27.7	45.4	22.5	4.4	2.03	100.0(511)
사회복지법인	12.4	32.2	40.6	14.8	2.58	29.1	42.6	20.8	7.6	2.07	100.0(380)
법인·단체	8.4	28.1	49.9	13.7	2.69	25.6	46.9	22.8	4.7	2.07	100.0(283)
민간	9.1	24.4	49.5	17.0	2.74	27.1	44.4	23.5	5.0	2.06	100.0(1,145)
가정	5.3	25.0	49.1	20.5	2.85	23.8	41.1	27.1	8.0	2.19	100.0(1,473)
직장	10.7	31.3	46.4	11.6	2.59	23.3	48.2	23.8	4.7	2.10	100.0(271)
소재지											
대도시	7.5	25.2	49.5	17.7	2.77	26.2	44.7	24.6	4.5	2.07	100.0(1,493)
중소도시	6.9	26.7	48.9	17.6	2.77	26.4	41.6	24.6	7.4	2.13	100.0(1,630)
읍면	11.2	27.8	44.2	16.8	2.67	25.5	45.3	23.2	5.9	2.10	100.0(940)
규모											
20명 이하	5.4	25.0	49.2	20.4	2.85	23.9	40.9	27.3	8.0	2.19	100.0(1,513)

(부록 표 22 계속)

구분	근로시간					사회적 인식					계(수)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만족하 는 편	매우 만족	4점 평균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만족하 는 편	매우 만족	4점 평균	
21~39명	6.6	23.2	50.3	19.8	2.83	25.9	42.3	24.4	7.3	2.13	100.0(625)
40~79명	11.2	28.7	44.0	16.1	2.65	27.8	46.9	20.9	4.5	2.02	100.0(1,011)
80명 이상	8.9	27.2	49.1	14.8	2.70	27.1	44.3	23.9	4.6	2.06	100.0(914)
2012년 조사	-	-	-	-	-	15.6	44.1	35.0	5.3	2.30	100.0(4,000)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3) 교사 어려움

〈부록 표 23〉 보육교사의 근무 어려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과 부모와의 관계

단위: %(명), 점

구분	영유아와 상호작용					부모와의 관계					계(수)
	매우 어려움	다소 어려움	별로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4점 평균	매우 어려움	다소 어려움	별로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4점 평균	
전체	0.6	13.2	59.1	27.1	1.87	2.0	20.5	57.1	20.5	2.04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0.4	12.8	59.7	27.0	1.87	3.1	18.5	59.8	18.6	2.06	100.0(511)
사회복지법인	0.5	12.6	61.1	25.8	1.88	3.8	23.6	53.6	19.0	2.12	100.0(380)
법인·단체	0.4	15.5	61.9	22.2	1.94	0.7	19.9	63.3	16.0	2.05	100.0(283)
민간	0.8	12.7	58.3	28.2	1.86	2.0	21.9	55.8	20.3	2.06	100.0(1,145)
가정	0.3	14.1	59.3	26.3	1.88	1.2	18.6	57.6	22.6	1.98	100.0(1,473)
직장	1.2	12.4	59.8	26.6	1.88	2.0	18.6	63.1	16.3	2.06	100.0(271)
소재지											
대도시	0.4	13.5	58.0	28.1	1.86	2.2	19.4	56.9	21.4	2.02	100.0(1,493)
중소도시	0.9	12.3	60.0	26.8	1.87	1.4	19.9	58.1	20.6	2.02	100.0(1,630)
읍면	0.4	14.2	59.4	26.0	1.89	2.5	23.3	55.7	18.5	2.10	100.0(940)
규모											
20명 이하	0.4	14.0	59.3	26.3	1.88	1.3	18.6	57.5	22.6	1.99	100.0(1,513)
21~39명	-	11.8	62.3	25.9	1.86	1.1	20.3	57.6	21.1	2.01	100.0(625)
40~79명	0.4	12.3	59.1	28.3	1.85	1.5	20.5	58.2	19.9	2.04	100.0(1,011)
80명 이상	1.3	13.6	57.6	27.5	1.89	3.2	22.2	55.8	18.7	2.10	100.0(914)
2012년 조사	0.4	17.2	65.0	17.4	2.99	1.3	23.2	63.5	11.9	2.86	-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24〉 보육교사의 근무 어려움: 보육 프로그램 운영과 업무 처리

단위: %(명), 점

구분	프로그램 운영					업무 처리					계(수)
	매우 어려움	다소 어려움	별로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4점 평균	매우 어려움	다소 어려움	별로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4점 평균	
전체	0.3	10.4	64.7	24.6	1.86	4.7	24.7	52.8	17.8	2.16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	8.7	67.4	23.9	1.85	5.2	29.2	49.6	16.0	2.24	100.0(511)
사회복지법인	0.3	11.4	63.3	25.0	1.87	6.3	31.4	46.7	15.6	2.28	100.0(380)
법인·단체	-	14.2	68.0	17.8	1.96	4.4	29.1	56.0	10.5	2.27	100.0(283)
민간	0.1	9.1	65.4	25.4	1.84	4.8	23.9	54.2	17.1	2.16	100.0(1,145)
가정	0.8	12.4	61.8	25.0	1.89	4.2	22.7	52.0	21.1	2.10	100.0(1,473)
직장	-	10.2	70.7	19.0	1.91	3.6	24.2	58.5	13.8	2.18	100.0(271)
소재지											
대도시	0.2	11.3	63.8	24.7	1.87	4.6	25.7	51.3	18.5	2.16	100.0(1,493)
중소도시	0.2	9.9	65.3	24.6	1.86	4.9	22.7	54.5	18.0	2.14	100.0(1,630)
읍·면	0.9	9.5	65.2	24.4	1.87	4.6	26.7	52.6	16.1	2.20	100.0(940)
규모											
20명 이하	0.9	12.3	61.9	24.9	1.89	4.2	22.9	52.0	21.0	2.10	100.0(1,513)
21~39명	0.4	10.3	66.0	23.4	1.88	3.5	23.9	56.3	16.3	2.15	100.0(625)
40~79명	0.1	10.7	66.0	23.2	1.88	5.1	27.1	52.2	15.7	2.22	100.0(1,011)
80명 이상	-	8.4	65.8	25.8	1.83	5.4	25.1	52.6	16.9	2.19	100.0(914)
2012년 조사	3.2	22.2	55.8	18.7	2.10	3.2	27.6	57.6	11.7	2.78	-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25〉 보육교사의 근무 어려움: 보육교직원과의 관계와 개인적 문제

단위: %(명), 점

구분	보육교직원과의 관계					개인적 문제					계(수)
	매우 어려움	다소 어려움	별로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4점 평균	매우 어려움	다소 어려움	별로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4점 평균	
전체	0.7	8.0	56.8	34.5	1.75	3.2	23.1	50.2	23.5	2.06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1.9	11.4	54.8	32.0	1.83	2.9	26.9	47.4	22.8	2.10	100.0(511)
사회복지법인	0.5	9.2	56.0	34.2	1.76	3.2	27.3	52.1	17.4	2.16	100.0(380)
법인·단체	0.2	9.9	62.7	27.2	1.83	3.4	25.2	50.1	21.2	2.11	100.0(283)
민간	0.6	8.6	58.1	32.6	1.77	3.4	23.7	51.2	21.7	2.09	100.0(1,145)
가정	0.2	5.3	54.6	39.8	1.66	2.7	19.2	49.3	28.8	1.96	100.0(1,473)
직장	2.1	9.4	60.5	27.9	1.86	5.7	26.6	49.9	17.8	2.20	100.0(271)
소재지											
대도시	0.6	9.3	57.2	32.9	1.78	3.2	23.5	51.0	22.3	2.08	100.0(1,493)
중소도시	0.6	6.2	55.9	37.3	1.70	2.6	20.9	51.2	25.3	2.01	100.0(1,630)
읍·면	0.8	9.0	57.9	32.3	1.78	4.4	26.3	46.8	22.5	2.13	100.0(940)

(부록 표 25 계속)

구분	보육교직원과의 관계					개인적 문제					계(수)
	매우 어려움	다소 어려움	별로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4점 평균	매우 어려움	다소 어려움	별로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4점 평균	
규모											
20명 이하	0.3	5.4	54.5	39.9	1.66	2.8	19.2	49.2	28.8	1.96	100.0(1,513)
21~39명	0.2	7.5	55.1	37.2	1.71	3.1	18.7	53.4	24.8	2.00	100.0(625)
40~79명	0.8	9.7	56.5	33.0	1.78	3.9	25.6	49.6	20.8	2.13	100.0(1,011)
80명 이상	1.1	9.6	59.8	29.5	1.82	3.2	26.5	50.2	20.1	2.13	100.0(914)
2012년 조사	0.3	6.9	59.1	33.8	3.26	0.3	6.9	59.1	33.7	3.01	-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4) 교사 심리적 건강 – 스트레스, 피로, 우울 등

<부록 표 26> 보육교사 심리적 건강: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피로도

단위: %(명), 점

구분	직무 스트레스					업무 피로도					계(수)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4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4점 평균	
전체	6.5	44.1	40.2	9.2	2.52	5.4	38.1	42.2	14.2	2.65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3.8	34.9	48.1	13.2	2.71	2.8	30.0	48.2	19.0	2.83	100.0(511)
사회복지법인	5.9	41.0	43.7	9.5	2.57	3.9	33.1	45.9	17.1	2.76	100.0(380)
법인·단체	4.2	44.9	40.5	10.4	2.57	3.3	40.9	42.8	13.0	2.65	100.0(283)
민간	6.5	43.4	40.9	9.2	2.53	5.4	39.1	41.4	14.1	2.64	100.0(1,145)
가정	7.9	50.5	34.5	7.2	2.41	7.2	41.8	39.5	11.5	2.55	100.0(1,473)
직장	5.0	32.3	49.8	13.0	2.71	2.9	26.4	50.4	20.2	2.88	100.0(27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27> 보육교사 심리적 건강: 신체적 피로와 우울감

단위: %(명), 점

구분	신체적 피로					우울감					계(수)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4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4점 평균	
전체	5.9	34.3	43.2	16.6	2.71	23.2	50.3	23.3	3.2	2.07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4.1	26.0	47.8	22.0	2.88	20.8	45.9	28.1	5.3	2.18	100.0(511)
사회복지법인	5.0	29.0	47.9	18.1	2.79	20.8	51.4	24.2	3.6	2.11	100.0(380)
법인·단체	5.8	31.7	46.7	15.8	2.72	20.6	50.3	25.4	3.7	2.12	100.0(283)

(부록 표 27 계속)

구분	신체적 피로					우울감					계(수)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4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4점 평균	
민간	5.9	36.0	41.7	16.4	2.69	23.9	49.5	23.4	3.2	2.06	100.0(1,145)
가정	7.1	36.8	41.8	14.3	2.63	24.9	53.0	19.6	2.5	2.00	100.0(1,473)
직장	2.3	26.6	50.9	20.2	2.89	13.6	49.3	35.1	2.0	2.26	100.0(271)
소재지											
대도시	5.1	35.7	41.7	17.5	2.72	23.1	50.7	23.9	2.3	2.06	100.0(1,493)
중소도시	6.3	34.1	43.8	15.9	2.69	23.0	50.2	23.1	3.7	2.08	100.0(1,630)
읍·면	6.4	32.1	45.0	16.5	2.72	23.9	49.5	22.6	3.9	2.06	100.0(940)
규모											
20명 이하	7.0	36.7	41.7	14.5	2.64	24.9	52.8	19.8	2.6	2.00	100.0(1,513)
21~39명	6.9	37.1	41.3	14.7	2.64	23.4	53.3	20.4	2.9	2.03	100.0(625)
40~79명	5.3	33.0	42.5	19.2	2.76	23.5	45.4	27.1	4.1	2.12	100.0(1,011)
80명 이상	4.7	31.8	45.9	17.5	2.76	21.4	50.1	25.1	3.3	2.10	100.0(914)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5) 교사 의견

가) 교사근로 관련 의견

〈부록 표 28〉 보육교사 근무 관련 의견: 프로그램 변화 대응과 다양한 연령 보육

단위: %(%명), 점

구분	보육 프로그램 변화					다양한 연령 아동 보육					계(수)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4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4점 평균	
전체	0.4	9.5	58.4	31.6	3.21	0.7	13.0	53.0	33.3	3.19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0.3	7.0	55.8	36.9	3.29	0.5	13.2	48.1	38.3	3.24	100.0(511)
사회복지법인	0.1	9.3	59.9	30.7	3.21	0.4	14.1	53.7	31.8	3.17	100.0(380)
법인·단체	0.3	10.5	61.4	27.8	3.17	0.6	11.6	58.9	28.9	3.16	100.0(283)
민간	0.3	9.4	57.9	32.3	3.22	0.5	13.9	52.8	32.8	3.18	100.0(1,145)
가정	0.8	10.6	59.2	29.4	3.17	1.1	11.8	53.8	33.4	3.19	100.0(1,473)
직장	0.1	9.2	60.4	30.3	3.21	1.6	10.0	57.9	30.6	3.17	100.0(271)
소재지											
대도시	0.4	9.2	57.7	32.7	3.23	0.7	13.1	51.8	34.4	3.20	100.0(1,493)
중소도시	0.5	9.6	60.9	29.0	3.18	0.7	13.1	55.2	31.0	3.17	100.0(1,630)
읍·면	0.3	10.0	55.3	34.4	3.24	0.8	12.7	51.1	35.3	3.21	100.0(940)
규모											
20명 이하	0.8	10.6	59.2	29.5	3.17	1.1	11.7	53.7	33.5	3.20	100.0(1,513)

(부록 표 28 계속)

구분	보육 프로그램 변화					다양한 연령 아동 보육					계(수)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4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4점 평균	
21~39명	0.9	11.5	61.1	26.5	3.13	0.4	12.6	57.2	29.9	3.16	100.0(625)
40~79명	0.2	9.6	59.9	30.2	3.20	0.9	15.5	52.2	31.4	3.14	100.0(1,011)
80명 이상	0.1	7.8	55.5	36.6	3.29	0.4	12.6	51.3	35.8	3.22	100.0(914)
2012년 조사	1.8	15.0	60.0	23.2	3.04	1.7	16.4	55.1	26.9	3.07	100.0(4,000)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29> 보육교사 근무 관련 의견: 보호자 신뢰

구분	전혀 없음	그렇지 없음	별로 그렇지 없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4점 평균	단위: %(명), 점
	전체	0.1	1.8	54.9	43.3			
시설유형								
국공립	-	0.9	56.2	42.8	100.0(511)	3.42		
사회복지법인	-	2.1	56.7	41.2	100.0(380)	3.39		
법인·단체	-	2.9	55.8	41.3	100.0(283)	3.38		
민간	0.1	1.8	54.1	44.0	100.0(1,145)	3.42		
가정	0.2	1.8	54.9	43.2	100.0(1,473)	3.41		
직장	-	2.4	56.2	41.4	100.0(271)	3.39		
소재지								
대도시	-	1.3	53.8	44.9	100.0(1,493)	3.44		
중소도시	0.2	2.3	56.3	41.2	100.0(1,630)	3.38		
읍·면	0.1	1.7	54.1	44.0	100.0(940)	3.42		
규모								
20명 이하	0.1	1.8	54.8	43.3	100.0(1,513)	3.41		
21~39명	-	2.7	53.8	43.4	100.0(625)	3.41		
40~79명	0.1	1.9	55.8	42.1	100.0(1,011)	3.40		
80명 이상	0.1	1.3	54.6	44.0	100.0(914)	3.43		
2012년 조사	0.7	2.9	62.6	33.8		3.29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30〉 보육교사 근무 관련 의견: 적절한 놀이지도·도움 제공과 보육환경 준비

단위: %(명), 점

구분	적절한 놀이지도 및 도움 제공					보육환경 준비					계(수)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4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4점 평균	
전체	0.1	4.2	58.4	37.3	3.33	0.1	4.2	58.6	37.1	3.33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	3.8	56.9	39.3	3.35	-	2.5	55.6	41.8	3.39	100.0(511)
사회복지법인	-	5.8	56.7	37.5	3.32	-	3.5	58.3	38.1	3.35	100.0(380)
법인·단체	-	4.7	59.7	35.5	3.31	-	3.9	61.0	35.2	3.31	100.0(283)
민간	0.1	4.5	59.2	36.2	3.31	0.1	4.1	58.2	37.7	3.33	100.0(1,145)
가정	0.2	3.8	58.3	37.7	3.34	0.2	5.4	60.9	33.5	3.28	100.0(1,473)
직장	-	2.4	53.8	43.8	3.41	-	2.3	52.2	45.5	3.43	100.0(271)
소재지											
대도시	0.1	3.7	56.9	39.3	3.35	-	4.0	58.7	37.3	3.33	100.0(1,493)
중소도시	0.1	4.8	59.9	35.2	3.30	0.1	4.8	60.1	34.9	3.30	100.0(1,630)
읍·면	0.1	4.1	58.2	37.6	3.33	0.1	3.5	55.6	40.8	3.37	100.0(940)
규모											
20명 이하	0.1	3.8	58.3	37.8	3.34	0.1	5.4	60.9	33.6	3.28	100.0(1,513)
21~39명	0.2	4.0	59.3	36.5	3.32	-	4.8	57.7	37.5	3.33	100.0(625)
40~79명	0.1	4.9	58.3	36.7	3.32	0.1	3.9	58.3	37.6	3.33	100.0(1,011)
80명 이상	-	4.2	58.1	37.7	3.33	-	3.2	57.0	39.8	3.37	100.0(914)
2012년 조사	0.7	5.0	64.1	30.2	3.24	0.5	5.8	64.8	28.9	3.22	100.0(4,000)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나) 교사지원 관련 의견

〈부록 표 31〉 보육교사 지원 관련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전문성 신장					조언과 지원					대체 및 보조교사					계(수)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려함	매우 그려함	4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려함	매우 그려함	4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려함	매우 그려함	4점 평균	
전체	8.1	30.5	43.5	17.9	2.71	6.4	24.0	46.3	23.3	2.86	17.6	26.9	35.1	20.4	2.58	100.0(4,063)
시설유형																
국공립	4.4	17.8	49.6	28.1	3.01	5.8	19.5	46.7	28.1	2.97	9.3	23.8	42.2	24.8	2.82	100.0(511)
사회복지법인	5.7	24.2	49.4	20.7	2.85	5.9	19.5	49.3	25.4	2.94	19.8	26.7	34.5	19.0	2.53	100.0(380)
법인·단체	4.0	25.7	50.4	19.8	2.86	5.9	23.1	50.3	20.6	2.86	18.0	27.8	38.2	16.1	2.52	100.0(283)
민간	8.4	34.0	41.7	15.9	2.65	5.7	25.5	46.9	21.9	2.85	18.8	29.4	33.8	18.1	2.51	100.0(1,145)
가정	10.6	33.0	42.2	14.1	2.60	8.6	24.8	44.3	22.3	2.80	20.0	24.8	34.1	21.1	2.56	100.0(1,473)
직장	1.3	18.0	43.6	37.1	3.16	2.0	19.3	45.7	33.0	3.10	3.0	21.2	37.6	38.2	3.11	100.0(271)

(부록 표 31 계속)

구분	전문성 신장					조언과 지원					대체 및 보조교사					계(수)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 함	매우 그러 함	4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 함	매우 그러 함	4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 함	매우 그러 함	4점 평균	
소재지																
대도시	7.4	28.7	45.3	18.7	2.75	5.7	23.0	48.5	22.8	2.88	13.8	25.2	39.0	21.9	2.69	100.0(1,493)
중소도시	8.2	31.4	43.3	17.1	2.69	7.2	24.0	44.8	24.0	2.86	18.1	28.7	32.8	20.4	2.55	100.0(1,630)
읍면	9.1	32.4	40.7	17.8	2.67	6.5	25.7	44.9	22.9	2.84	23.5	26.7	31.9	17.8	2.44	100.0(940)
규모																
20명 이하	10.6	33.1	42.2	14.1	2.60	8.5	24.9	44.4	22.2	2.80	19.9	24.8	34.3	21.0	2.56	100.0(1,513)
21~39명	7.8	33.7	41.6	17.0	2.68	6.7	25.0	46.2	22.1	2.84	22.4	29.2	31.6	16.8	2.43	100.0(625)
40~79명	8.8	29.1	45.6	16.5	2.70	6.8	25.1	47.8	20.4	2.82	21.1	28.0	34.1	16.9	2.47	100.0(1,011)
80명 이상	5.5	27.9	43.9	22.6	2.84	4.2	22.0	47.1	26.8	2.96	11.0	27.1	37.9	23.9	2.75	100.0(914)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6) 교사의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및 만족도 평가

가)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부록 표 32〉 보육 정책 의견: 보육은 공공서비스이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단위: %(명), 점	
						4점 평균	
전체	2.5	8.5	42.1	46.9	100.0(4,063)	3.33	
시설유형							
국공립	2.8	10.0	39.7	47.5	100.0(511)	3.32	
사회복지법인	2.6	6.0	43.3	48.2	100.0(380)	3.37	
법인단체	3.5	6.6	41.6	48.2	100.0(283)	3.35	
민간	2.4	8.4	42.4	46.8	100.0(1,145)	3.34	
가정	2.4	9.0	42.7	46.0	100.0(1,473)	3.32	
직장	1.3	7.9	40.1	50.8	100.0(271)	3.40	
소재지							
대도시	2.2	9.2	41.3	47.2	100.0(1,493)	3.34	
중소도시	2.4	7.4	43.7	46.5	100.0(1,630)	3.34	
읍면	3.0	9.3	40.7	47.1	100.0(940)	3.32	
규모							
20명 이하	2.4	8.9	42.5	46.2	100.0(1,513)	3.32	
21~39명	2.5	10.4	40.7	46.5	100.0(625)	3.31	
40~79명	1.7	7.5	42.5	48.4	100.0(1,011)	3.38	
80명 이상	3.0	8.1	42.1	46.7	100.0(914)	3.33	
2012년 조사	2.3	8.2	43.7	45.8	100.0(3,999)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33〉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대해 책무성을 지닌 기관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려함	매우 그려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1.4	7.0	41.0	50.5	100.0(4,063)	3.41
시설유형						
국공립	1.6	7.1	40.7	50.5	100.0(511)	3.40
사회복지법인	1.6	6.6	39.6	52.1	100.0(380)	3.42
법인·단체	0.5	3.8	40.4	55.3	100.0(283)	3.51
민간	1.7	7.8	41.0	49.5	100.0(1,145)	3.38
가정	1.0	6.1	41.9	51.0	100.0(1,473)	3.43
직장	0.7	6.9	39.0	53.4	100.0(271)	3.45
소재지						
대도시	0.9	7.6	41.7	49.8	100.0(1,493)	3.40
중소도시	1.3	6.4	40.8	51.5	100.0(1,630)	3.42
읍·면	2.5	7.1	40.3	50.1	100.0(940)	3.38
규모						
20명 이하	1.0	6.1	41.9	51.0	100.0(1,513)	3.43
21~39명	1.3	7.2	40.8	50.7	100.0(625)	3.41
40~79명	1.0	7.7	41.7	49.6	100.0(1,011)	3.40
80명 이상	2.1	7.3	40.0	50.6	100.0(914)	3.39
2012년 조사	0.6	5.6	45.1	48.7	100.0(3,999)	3.42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34〉 ‘어린이집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려함	매우 그려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0.9	3.0	21.6	74.5	100.0(4,063)	3.70
시설유형						
국공립	0.2	1.7	12.7	85.5	100.0(511)	3.83
사회복지법인	0.4	0.7	22.7	76.2	100.0(380)	3.75
법인·단체	-	5.3	19.7	75.0	100.0(283)	3.70
민간	1.3	3.9	22.9	71.9	100.0(1,145)	3.65
가정	0.8	2.7	23.8	72.7	100.0(1,473)	3.68
직장	-	0.5	12.4	87.1	100.0(271)	3.87
소재지						
대도시	0.4	2.8	21.6	75.1	100.0(1,493)	3.71
중소도시	1.1	3.3	21.3	74.4	100.0(1,630)	3.69
읍·면	1.5	2.9	22.1	73.6	100.0(940)	3.68
규모						
20명 이하	0.8	2.6	23.7	72.9	100.0(1,513)	3.69
21~39명	0.6	4.6	22.6	72.2	100.0(625)	3.66

(부록 표 34 계속)

구분	전혀 않음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4점 평균
40~79명	0.9	2.5	18.8	77.8	100.0(1,011)	3.74	
80명 이상	1.1	3.0	21.2	74.7	100.0(914)	3.70	
2012년 조사	0.4	4.8	30.0	64.8	100.0(3,999)	3.59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35〉 ‘관할청의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음	그렇지 없음	별로 그렇지 없음	조금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1.8	9.4	40.0	48.8	100.0(4,063)	3.36	
시설유형							
국공립	1.2	8.3	35.3	55.2	100.0(511)	3.44	
사회복지법인	0.4	6.8	39.0	53.8	100.0(380)	3.46	
법인·단체	1.3	9.6	47.4	41.7	100.0(283)	3.29	
민간	2.6	10.3	41.5	45.6	100.0(1,145)	3.30	
가정	1.3	9.4	39.3	50.0	100.0(1,473)	3.38	
직장	0.8	4.6	37.1	57.4	100.0(271)	3.51	
소재지							
대도시	1.9	9.0	38.9	50.3	100.0(1,493)	3.38	
중소도시	1.8	9.8	41.0	47.4	100.0(1,630)	3.34	
읍면	1.9	9.3	40.3	48.5	100.0(940)	3.35	
규모							
20명 이하	1.3	9.3	39.2	50.2	100.0(1,513)	3.38	
21~39명	0.8	11.7	42.4	45.0	100.0(625)	3.32	
40~79명	1.4	9.9	37.2	51.6	100.0(1,011)	3.39	
80명 이상	3.0	8.1	41.8	47.1	100.0(914)	3.33	
2012년 조사	1.2	11.0	47.9	39.9	100.0(3,999)	3.27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나) 보육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

〈부록 표 36〉 보육사업의 공공성 향상 여부

구분	전혀	향상되지	별로	향상되지	대체로	향상됨	매우	향상됨	단위: %(명), 점	
	않았음	않았음	않았음	않았음					계(수)	4점 평균
전체	3.2		31.4		54.9		10.5		100.0(4,063)	2.73
시설유형										
국공립	0.9		27.9		54.5		16.7		100.0(511)	2.87
사회복지법인	2.6		26.4		60.5		10.6		100.0(380)	2.79
법인·단체	3.9		27.4		60.1		8.6		100.0(283)	2.73
민간	3.1		31.3		55.8		9.8		100.0(1,145)	2.72
가정	4.3		34.7		51.9		9.1		100.0(1,473)	2.66
직장	3.6		26.9		55.6		13.9		100.0(271)	2.80
소재지										
대도시	3.3		30.1		55.6		11.0		100.0(1,493)	2.74
중소도시	3.1		32.8		53.9		10.3		100.0(1,630)	2.71
읍·면	3.4		31.3		55.5		9.9		100.0(940)	2.72
규모										
20명 이하	4.3		34.6		52.0		9.0		100.0(1,513)	2.66
21~39명	3.3		33.5		53.1		10.2		100.0(625)	2.70
40~79명	3.1		31.6		55.0		10.2		100.0(1,011)	2.72
80명 이상	2.2		27.5		58.2		12.1		100.0(914)	2.80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37〉 보육내용의 충실성 향상 여부

구분	전혀	향상되지	별로	향상되지	대체로	향상됨	매우	향상됨	단위: %(명), 점	
	않았음	않았음	않았음	않았음					계(수)	4점 평균
전체	2.5		21.9		63.4		12.2		100.0(4,063)	2.85
시설유형										
국공립	0.8		19.0		60.7		19.5		100.0(511)	2.99
사회복지법인	1.7		19.8		64.9		13.6		100.0(380)	2.90
법인·단체	2.2		18.9		69.8		9.1		100.0(283)	2.86
민간	2.5		21.6		64.5		11.4		100.0(1,145)	2.85
가정	3.3		23.9		61.9		11.0		100.0(1,473)	2.81
직장	2.2		23.3		62.2		12.4		100.0(271)	2.85
소재지										
대도시	2.5		20.4		64.7		12.4		100.0(1,493)	2.87
중소도시	2.5		23.4		62.0		12.2		100.0(1,630)	2.84
읍·면	2.5		22.1		63.5		12.0		100.0(940)	2.85
규모										
20명 이하	3.3		23.8		61.9		11.0		100.0(1,513)	2.81

(부록 표 34 계속)

구분	전혀 향상되지 않았음	별로 향상되지 않았음	대체로 향상됨	매우 향상됨	계(수)	4점 평균
21~39명	2.1	24.4	61.7	11.8	100.0(625)	2.83
40~79명	3.4	20.9	63.6	12.0	100.0(1,011)	2.84
80명 이상	1.3	19.9	65.2	13.7	100.0(914)	2.91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38〉 어린이집 재정운영 안정화 향상 여부

구분	전혀 향상되지 않았음	별로 향상되지 않았음	대체로 향상됨	매우 향상됨	계(수)	단위: %(명), 점 4점 평균
전체	11.1	39.3	40.7	8.9	100.0(4,063)	2.47
시설유형						
국공립	8.5	31.0	45.2	15.3	100.0(511)	2.67
사회복지법인	7.9	37.5	43.9	10.7	100.0(380)	2.57
법인·단체	7.5	33.1	51.3	8.1	100.0(283)	2.60
민간	11.1	40.9	39.9	8.1	100.0(1,145)	2.45
가정	13.4	41.8	38.1	6.7	100.0(1,473)	2.38
직장	9.0	31.8	44.7	14.5	100.0(271)	2.65
소재지						
대도시	10.9	37.4	43.3	8.4	100.0(1,493)	2.49
중소도시	11.5	41.2	38.1	9.1	100.0(1,630)	2.45
읍·면	10.8	39.5	40.4	9.3	100.0(940)	2.48
규모						
20명 이하	13.4	41.7	38.1	6.8	100.0(1,513)	2.38
21~39명	12.7	43.2	36.0	8.1	100.0(625)	2.40
40~79명	9.3	39.5	42.8	8.5	100.0(1,011)	2.50
80명 이상	9.7	35.6	43.4	11.3	100.0(914)	2.56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39〉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여부

구분	전혀 향상되지 않았음	별로 향상되지 않았음	대체로 향상됨	매우 향상됨	계(수)	단위: %(명), 점 4점 평균
전체	4.8	31.3	55.0	8.9	100.0(4,063)	2.68
시설유형						
국공립	3.9	29.3	54.6	12.1	100.0(511)	2.75
사회복지법인	4.2	30.2	55.3	10.4	100.0(380)	2.72
법인·단체	6.4	28.0	58.9	6.6	100.0(283)	2.66
민간	5.4	31.9	53.6	9.0	100.0(1,145)	2.66

(부록 표 39 계속)

구분	전혀 향상되지 않았음	별로 향상되지 않았음	대체로 향상됨	매우 향상됨	계(수)	4점 평균
가정	4.2	30.9	57.1	7.8	100.0(1,473)	2.69
직장	3.5	37.6	52.6	6.3	100.0(271)	2.62
소재지						
대도시	4.6	31.1	55.5	8.8	100.0(1,493)	2.69
중소도시	4.7	31.5	55.6	8.2	100.0(1,630)	2.67
읍·면	5.4	31.4	52.9	10.3	100.0(940)	2.68
규모						
20명 이하	4.2	30.8	57.2	7.8	100.0(1,513)	2.69
21~39명	5.0	32.4	54.3	8.3	100.0(625)	2.66
40~79명	5.5	31.6	52.2	10.7	100.0(1,011)	2.68
80명 이상	4.7	31.2	55.1	8.9	100.0(914)	2.68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다) 보육정책 만족도

〈부록 표 40〉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20.3	42.4	30.6	6.7	100.0(4,062)	2.24
시설유형						
국공립	25.6	41.9	28.0	4.4	100.0(511)	2.11
사회복지법인	23.6	45.9	27.5	3.1	100.0(380)	2.10
법인·단체	21.1	50.3	25.4	3.2	100.0(283)	2.11
민간	19.9	41.9	31.1	7.2	100.0(1,145)	2.26
가정	18.3	41.3	32.6	7.8	100.0(1,472)	2.30
직장	20.6	47.6	25.9	5.9	100.0(271)	2.17
소재지						
대도시	17.6	41.3	33.6	7.5	100.0(1,493)	2.31
중소도시	21.5	42.7	29.5	6.4	100.0(1,630)	2.21
읍·면	23.3	43.9	27.2	5.7	100.0(939)	2.15
규모						
20명 이하	18.4	41.2	32.6	7.8	100.0(1,512)	2.30
21~39명	18.2	42.7	32.7	6.4	100.0(625)	2.27
40~79명	18.1	43.2	33.5	5.2	100.0(1,011)	2.26
80명 이상	24.4	42.9	26.1	6.7	100.0(914)	2.15
2012년 조사	9.8	31.5	47.3	11.4	100.0(3,998)	2.60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41〉 보육 전자행정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3.8	21.3	57.6	17.3	100.0(4,057)	2.88
시설유형						
국공립	2.0	15.9	58.5	23.6	100.0(510)	3.04
사회복지법인	2.3	16.9	61.4	19.4	100.0(380)	2.98
법인·단체	3.0	20.5	60.3	16.1	100.0(283)	2.90
민간	4.5	23.3	55.3	16.9	100.0(1,142)	2.85
가정	4.2	22.0	58.9	14.9	100.0(1,471)	2.85
직장	0.6	13.3	65.0	21.0	100.0(271)	3.06
소재지						
대도시	3.0	19.6	57.7	19.7	100.0(1,491)	2.94
중소도시	4.4	21.1	59.3	15.2	100.0(1,627)	2.85
읍·면	4.2	24.6	54.3	16.8	100.0(939)	2.84
규모						
20명 이하	4.2	22.0	58.8	15.0	100.0(1,511)	2.85
21~39명	5.1	21.7	56.7	16.4	100.0(624)	2.84
40~79명	3.2	19.5	60.2	17.0	100.0(1,009)	2.91
80명 이상	3.3	21.7	55.1	20.0	100.0(913)	2.92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42〉 아이행복 카드제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2.7	11.8	57.3	28.2	100.0(4,061)	3.11
시설유형						
국공립	1.8	9.6	55.6	33.0	100.0(511)	3.20
사회복지법인	5.0	10.1	53.1	31.8	100.0(380)	3.12
법인·단체	2.7	9.3	60.0	28.0	100.0(283)	3.13
민간	2.2	12.9	56.2	28.8	100.0(1,145)	3.12
가정	3.6	12.4	59.7	24.4	100.0(1,471)	3.05
직장	2.0	5.8	61.4	30.8	100.0(271)	3.21
소재지						
대도시	2.4	11.6	54.4	31.6	100.0(1,493)	3.15
중소도시	3.0	12.1	60.6	24.3	100.0(1,628)	3.06
읍·면	2.7	11.9	56.6	28.7	100.0(940)	3.11
규모						
20명 이하	3.6	12.3	59.7	24.4	100.0(1,511)	3.05
21~39명	1.8	14.5	55.2	28.5	100.0(625)	3.10
40~79명	2.5	11.8	57.3	28.4	100.0(1,011)	3.12

(부록 표 42 계속)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80명 이상	2.4	10.4	55.9	31.3	100.0(914)	3.16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43〉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단위: %(명), 점	
					계(수)	4점 평균
전체	4.0	20.5	56.4	19.2	100.0(4,041)	2.91
시설유형						
국공립	1.6	12.4	60.5	25.5	100.0(510)	3.10
사회복지법인	3.8	15.2	56.5	24.6	100.0(380)	3.02
법인단체	3.8	19.1	58.4	18.7	100.0(282)	2.92
민간	3.9	18.0	56.9	21.2	100.0(1,143)	2.96
가정	5.6	29.4	53.3	11.8	100.0(1,455)	2.71
직장	0.7	13.3	60.2	25.8	100.0(271)	3.11
소재지						
대도시	4.0	19.7	54.8	21.5	100.0(1,486)	2.94
중소도시	4.2	23.4	56.2	16.2	100.0(1,617)	2.84
읍면	3.6	16.6	59.4	20.4	100.0(938)	2.97
규모						
20명 이하	5.6	29.2	53.4	11.8	100.0(1,494)	2.71
21~39명	4.6	23.5	53.9	18.0	100.0(625)	2.85
40~79명	3.1	16.7	59.2	21.1	100.0(1,008)	2.98
80명 이상	2.9	14.0	58.0	25.0	100.0(914)	3.05
2012년 조사	4.2	25.3	55.0	15.5	100.0(3,978)	2.82

주: 2012년의 경우 5세 누리과정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44〉 0~5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단위: %(명), 점	
					계(수)	4점 평균
전체	23.4	28.4	28.7	19.6	100.0(4,060)	2.44
시설유형						
국공립	29.9	26.5	25.3	18.3	100.0(511)	2.32
사회복지법인	17.3	27.0	27.6	28.0	100.0(380)	2.66
법인단체	15.9	26.7	29.7	27.7	100.0(283)	2.69
민간	21.3	27.6	29.8	21.3	100.0(1,144)	2.51
가정	26.6	30.4	28.3	14.8	100.0(1,471)	2.31

(부록 표 44 계속)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직장	20.6	30.8	29.3	19.2	100.0(271)	2.47
소재지						
대도시	23.1	30.1	27.2	19.7	100.0(1,493)	2.44
중소도시	24.2	29.7	28.9	17.2	100.0(1,628)	2.39
읍·면	22.6	22.9	31.2	23.4	100.0(939)	2.55
규모						
20명 이하	26.5	30.3	28.4	14.8	100.0(1,511)	2.31
21~39명	24.1	27.9	29.1	18.8	100.0(624)	2.43
40~79명	23.6	30.4	29.3	16.6	100.0(1,011)	2.39
80명 이상	20.1	25.3	28.4	26.1	100.0(914)	2.61
2012년 조사	17.8	30.4	28.0	23.8	100.0(3,996)	2.58

주: 2012년의 경우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45〉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단위: %(명), 점
전체	21.5	30.4	34.8	13.3	100.0(4,061)	2.40
시설유형						
국공립	14.0	26.3	41.1	18.5	100.0(511)	2.64
사회복지법인	15.0	30.7	39.1	15.2	100.0(380)	2.55
법인단체	12.7	26.4	42.2	18.7	100.0(283)	2.67
민간	21.2	30.8	34.5	13.5	100.0(1,144)	2.40
가정	28.9	32.2	29.9	9.0	100.0(1,472)	2.19
직장	6.9	23.7	46.7	22.7	100.0(271)	2.85
소재지						
대도시	20.4	31.3	33.9	14.4	100.0(1,492)	2.42
중소도시	22.6	31.4	34.5	11.6	100.0(1,629)	2.35
읍·면	21.7	26.8	37.1	14.3	100.0(940)	2.44
규모						
20명 이하	28.8	32.2	30.0	9.0	100.0(1,512)	2.19
21~39명	20.1	33.6	34.1	12.2	100.0(625)	2.39
40~79명	18.7	28.8	38.9	13.7	100.0(1,010)	2.48
80명 이상	17.6	28.5	36.6	17.2	100.0(914)	2.53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46〉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9.8	32.5	45.9	11.8	100.0(4,051)	2.60	
시설유형							
국공립	7.9	29.6	50.5	12.0	100.0(508)	2.67	
사회복지법인	11.0	34.6	48.9	5.5	100.0(378)	2.49	
법인·단체	7.6	36.3	47.2	8.8	100.0(283)	2.57	
민간	10.6	32.0	44.3	13.2	100.0(1,144)	2.60	
가정	10.2	33.0	45.5	11.3	100.0(1,467)	2.58	
직장	2.7	37.4	50.5	9.4	100.0(271)	2.67	
소재지							
대도시	9.9	32.0	45.4	12.8	100.0(1,487)	2.61	
중소도시	10.0	31.8	48.0	10.3	100.0(1,626)	2.59	
읍·면	9.5	34.9	43.1	12.5	100.0(938)	2.59	
규모							
20명 이하	10.2	32.9	45.6	11.3	100.0(1,507)	2.58	
21~39명	10.8	29.5	47.4	12.2	100.0(624)	2.61	
40~79명	8.1	33.7	46.1	12.0	100.0(1,007)	2.62	
80명 이상	10.2	32.6	45.4	11.8	100.0(913)	2.59	
2012년 조사	8.2	30.8	45.7	15.7	100.0(3,966)	2.68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47〉 시간제 보육 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18.6	32.5	36.6	12.3	100.0(4,060)	2.43	
시설유형							
국공립	16.9	32.9	37.1	13.1	100.0(511)	2.46	
사회복지법인	12.5	34.0	41.7	11.9	100.0(380)	2.53	
법인·단체	12.2	34.5	43.8	9.5	100.0(283)	2.50	
민간	18.2	32.9	35.9	13.1	100.0(1,144)	2.44	
가정	22.2	31.4	35.6	10.8	100.0(1,471)	2.35	
직장	14.6	31.3	39.7	14.4	100.0(271)	2.54	
소재지							
대도시	19.5	33.5	34.7	12.3	100.0(1,492)	2.40	
중소도시	18.3	31.8	37.7	12.3	100.0(1,628)	2.44	
읍·면	17.4	32.0	38.3	12.3	100.0(940)	2.45	
규모							
20명 이하	22.0	31.3	35.8	10.9	100.0(1,511)	2.36	
21~39명	19.1	32.1	36.6	12.2	100.0(625)	2.42	

(부록 표 47 계속)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40~79명	16.4	34.4	37.1	12.0	100.0(1,010)	2.45
80명 이상	16.7	32.4	37.1	13.8	100.0(914)	2.48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48〉 정보공시제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단위: %(명), 점	
					계(수)	4점 평균
전체	6.5	24.0	53.0	16.5	100.0(4,056)	2.80
시설유형						
국공립	4.5	19.8	52.5	23.2	100.0(511)	2.94
사회복지법인	4.3	21.5	55.1	19.1	100.0(380)	2.89
법인·단체	3.2	28.6	53.7	14.5	100.0(283)	2.79
민간	7.1	24.5	52.3	16.1	100.0(1,142)	2.77
가정	7.6	25.8	53.6	13.0	100.0(1,469)	2.72
직장	2.6	15.8	54.5	27.1	100.0(271)	3.06
소재지						
대도시	6.9	23.5	50.4	19.1	100.0(1,490)	2.82
중소도시	6.5	24.6	55.1	13.8	100.0(1,627)	2.76
읍·면	5.7	23.8	54.0	16.6	100.0(939)	2.81
규모						
20명 이하	7.6	25.8	53.6	13.1	100.0(1,509)	2.72
21~39명	6.7	24.2	53.7	15.5	100.0(624)	2.78
40~79명	5.7	23.3	54.0	17.0	100.0(1,010)	2.82
80명 이상	6.0	22.7	51.6	19.6	100.0(913)	2.85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표 49〉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단위: %(명), 점	
					계(수)	4점 평균
전체	9.9	23.5	46.7	19.8	100.0(4,060)	2.76
시설유형						
국공립	6.2	14.3	47.1	32.4	100.0(511)	3.06
사회복지법인	11.1	27.1	42.9	18.9	100.0(380)	2.70
법인·단체	8.3	24.3	52.3	15.0	100.0(283)	2.74
민간	11.0	24.9	45.5	18.6	100.0(1,144)	2.72
가정	10.6	24.5	47.4	17.5	100.0(1,471)	2.72
직장	1.7	18.5	57.4	22.4	100.0(271)	3.00

(부록 표 49 계속)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4점 평균
소재지						
대도시	9.0	21.1	47.1	22.8	100.0(1,492)	2.84
중소도시	10.4	25.7	46.0	17.8	100.0(1,628)	2.71
읍·면	10.8	24.0	47.3	17.9	100.0(940)	2.72
규모						
20명 이하	10.5	24.3	47.6	17.5	100.0(1,511)	2.72
21~39명	8.4	24.3	47.4	19.9	100.0(625)	2.79
40~79명	8.4	24.3	46.0	21.3	100.0(1,010)	2.80
80명 이상	11.2	21.9	46.1	20.9	100.0(914)	2.77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

부록 2. 어린이집 조사표(전체)



승인(협의)번호
제33107호

조사기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제33조) 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결과공표 (예정시기)	2015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2016년 1월)	

2015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표)

어린이집 코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보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어린이집은 전국 어린이집의 10%인 4,300여개 어린이집이며, 귀 어린이집이 조사대상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는 조사원이 사전에 연락하고 방문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보내드리는 조사표에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와 조사지침서는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고, 개별 어린이집의 정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 조사진행 관련: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보육실태조사」 조사팀 (☎ 02-3702-2669, 2119)
 조사내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실태조사」 연구팀 (☎ 02-398-7727)

방문일시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 ~ ____ 시 ____ 분		
주소	____ 시/도 ____ 구/시/군 ____ 읍/면/동 ____ 로 ____ 길 ____	어린이집명	
응답자 성명	____	전화번호	조사원 성명

* 조사지 응답은 귀 어린이집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원장께서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부
육 아 정 책 연 구 소

I . 어린이집의 설치

I -A. 어린이집 유형 등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 |
|-------------------|--------------------|-----------------------|
| ① 국공립어린이집 (☞ 1-1) |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2) | ③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 1-2) |
| ④ 민간어린이집 (☞ 2) | ⑤ 직장어린이집 (☞ 1-3) | ⑥ 가정어린이집 (☞ 2) |
| ⑦ 부모협동어린이집 (☞ 2) | | |

1-1.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위탁 운영 형태는 어떠합니까?

- | | | | |
|---------|-------------|-----------|-----------|
| ① 직영 | ② 사회복지법인 위탁 | ③ 종교법인 위탁 | ④ 학교법인 위탁 |
| ⑤ 단체 위탁 | ⑥ 개인 위탁 | ⑦ 기타 | |

1-2.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경우)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 | |
|--------|--------|------------|------------|
| ① 종교법인 | ② 학교법인 | ③ 기타 법인() | ④ 기타 단체() |
|--------|--------|------------|------------|

1-3.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방식은 어떠합니까?

- | | | | |
|-------------|-----------|-------------|--------|
| ① 직영 | ② 학교법인 위탁 | ③ 전문운영기관 위탁 | ④ 개인위탁 |
| ⑤ 사회복지법인 위탁 | ⑥ 기타() | | |

2. 귀 어린이집은 공공형 또는 서울형입니까?

- | | | |
|---------------|---------------|-----------------|
| ① 공공형 (☞ 2-1) | ② 서울형 (☞ 2-1) | ③ 해당 안됨 (☞ 2-2) |
|---------------|---------------|-----------------|

2-1. (2번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 공공형 또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어린이집 이미지와 자부심 향상 | ② 원아모집 용이 | ③ 교사 근무 만족도 향상 |
| ④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⑤ 보육환경 개선(교재교구 구입 용이) | ⑥ 재정운영 안정 |
| ⑦ 교사 채용 용이 | ⑧ 기타() | |

2-2. (2번에서 ③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공공형 또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 | |
|------|------|
| ① 있음 | ② 없음 |
|------|------|

2-3. (2-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향후 공공형(지방), 서울형(서울지역)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십니까?

- | | | |
|----------------|----------------|------------------------------|
| ① 있음 (☞ 2-3-1) | ② 없음 (☞ 2-3-2) | ③ 해당없음(기존 정부 지원시설인 경우) (☞ 3) |
|----------------|----------------|------------------------------|

2-3-1. 운영 의사가 있으신 경우, 이유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재정 지원 | ② 원활한 원아 모집 | ③ 우수 보육인력 확보 |
| ④ 공보육 기관으로서의 자부심 | ⑤ 체계적인 품질관리 | ⑥ 기타() |

2-3-2. 운영 의사가 없으신 경우, 이유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운영비 부족 | ② 강화된 관리·감독에 대한 부담 | ③ 기타() |
|----------|--------------------|---------|

3. 귀 어린이집은 대표자가 단독 또는 공동대표입니까?

- | | |
|----------------|----------------------|
| ① 단독(1인) (☞ 4) | ② 2명 이상 공동대표 (☞ 3-1) |
|----------------|----------------------|

3-1.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간 관계는 어떠합니까?

- | | | | |
|------|---------|-------|---------|
| ① 부부 | ② 직계존비속 | ③ 친인척 | ④ 기타() |
|------|---------|-------|---------|

4. 귀 어린이집은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합니까?

- | | | |
|-------------|--------------|---------------------------|
| ① 동일함 (☞ 5) | ② 다름 (☞ 4-1) | ③ 국공립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임 (☞ 5) |
|-------------|--------------|---------------------------|

4-1. (대표자와 원장이 다르다면) 대표자나 원장이 이 어린이집 이외에 다른 어린이집이나 기관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다면 각각 그 개수를 적어 주십시오.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1) 대표자	개	개	개
2) 원장	개	개	개

5. 귀 어린이집 운영에 운영자(대표자와 원장 포함) 가족이나 친인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참여함 ([☞] 5-1) ② 참여하지 않음 ([☞] 6)

5-1. (가족 및 친인척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되는 일에 각각 참여 인원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 ① 보육교사(명) | ② 운전기사(명) | ③ 축사부(명) |
| ④ 사무원(명) | ⑤ 기타(명) | |

I -B. 어린이집 건물, 설비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6. 귀 어린이집의 건물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
|---|--------|--------------|--------|-------|
| ① 단독건물 | ② 아파트 | ③ 상가건물 | ④ 종교시설 | ⑤ 관리동 |
| ⑥ 공공시설 복합건물(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 부설 어린이집 등) | ⑦ 직장사옥 | ⑧ 기타() | | |

7. 귀 어린이집이 구비하고 있는 설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비하고 있는 설비를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조리실 | <input type="checkbox"/> ② 목욕실 | <input type="checkbox"/> ③ 영유아용 변기 | <input type="checkbox"/> ④ 성인용 변기 |
| <input type="checkbox"/> ⑤ 급배수 시설 | <input type="checkbox"/> ⑥ 비상계재 대비시설 | <input type="checkbox"/> ⑦ 옥외놀이터 | <input type="checkbox"/> ⑧ 실내놀이터 |
| <input type="checkbox"/> ⑨ 옥내중간놀이터 | <input type="checkbox"/> ⑩ 별도 식사공간 | <input type="checkbox"/> ⑪ 직원 휴게시설 | <input type="checkbox"/> ⑫ 도서관 |
| <input type="checkbox"/> ⑬ 상담실 | <input type="checkbox"/> ⑭ 양호실 | <input type="checkbox"/> ⑮ 강당 | <input type="checkbox"/> ⑯ 교사실 |
| <input type="checkbox"/> ⑰ 원장실 | <input type="checkbox"/> ⑱ 기타() | | |

8. 귀 어린이집이 설치 또는 확보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시설을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양방향 대피를 위한 비상구, 출구 | <input type="checkbox"/> ② 비상계단 | <input type="checkbox"/> ③ 미끄럼대 |
| <input type="checkbox"/> ④ 폐난총 | <input type="checkbox"/> ⑤ 내부 직통계단 2개이상 | <input type="checkbox"/> ⑥ 스프링클러 |
| <input type="checkbox"/> ⑦ 자동화재탐지설비 | <input type="checkbox"/> ⑧ 폐난교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9. 귀 어린이집의 소유 또는 임대 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 |
|----------------------------|----------------------------|-----------------------------|
| ① 자가 ([☞] 9-2) | ② 전세 ([☞] 9-1-1) | ③ 전월세 ([☞] 9-1-2) |
| ④ 월세 ([☞] 9-1-2) | ⑤ 무상 ([☞] 10) | ⑥ 기타 ([☞] 10) |

9-1. 임대하고 있는 경우, 금액과 기간은 어떠합니까?

9-1-1.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 ()만원 계약기간: ()개월
9-1-2. 월세의 경우 (전·월세 포함)	보증금 : ()만원 (보증금 없는 경우 0 기입) 월지금액: ()만원 계약기간: ()개월

9-2. 귀 어린이집의 최초 융자금과 현재 남은 융자금은 얼마입니까?

- | | |
|-------------------------|--|
| ① 최초 융자금: ()만원 | |
| ② 현재 남은 융자금: ()만원 | |
| ③ 해당없음 | |

10. (자가, 전세, 전·월세 등 모든 경우) 귀 어린이집 설치 시 권리금을 지불하셨습니까? 지불하였다면 얼마입니까?

()만원

11. 귀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놀이터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옥외놀이터 ([☞] 11-1) | <input type="checkbox"/> ② 실내놀이터 ([☞] 12) |
| <input type="checkbox"/> ③ 옥내중간놀이터 ([☞] 12) | <input type="checkbox"/> ④ 옥상놀이터 ([☞] 12) |
| <input type="checkbox"/> ⑤ 인근놀이터 ([☞] 12) | |

11-1. (옥외놀이터인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놀이터 놀이기구의 설치 검사를 받았습니까?

- | | |
|--------------------------------|-------------------------------|
| ① 검사받았음 ([☞] 11-1-1) | ② 검사받지 않았음 ([☞] 12) |
|--------------------------------|-------------------------------|

11-1-1. (옥외놀이터 검사를 받은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옥외놀이터 놀이기구 검사 후 놀이기구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였습니까?

- | | |
|---------------|------------|
| ① 교체·추가 설치하였음 | ② 설치하지 않았음 |
|---------------|------------|

12. 지난 3년간(2012~2014) 개보수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있다면 횟수를 적어 주십시오.

① 예 ()회 ([☞] 12-1, 12-2) ② 아니오 ([☞] 13)

12-1. 어떠한 이유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까?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전반적인 어린이집의 노후화 | <input type="checkbox"/> ② 평가인증 대비 | <input type="checkbox"/> ③ 시설 안전 강화 |
| <input type="checkbox"/> ④ 보육공간 확보 | <input type="checkbox"/> ⑤ 법적 기준 준수 |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

12-2. 지난 3년간(2012~2014) 개보수 공사시 정부지원금과 보증용자금은 얼마이고, 귀 어린이집은 얼마를 부담하였습니까?

- | |
|------------------|
| ① 정부지원금: ()만원 |
| ② 정부 보증용자: ()만원 |
| ③ 자부담: ()만원 |

13. 귀 어린이집에서 현재 필요한 개보수 공사는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 ① 방염공사 | ② 창호, 바닥, 방수, 지붕 등 기본 설비 | |
| ③ 석면 제거 공사 | ④ 도배 및 도색 | ⑤ 안전시설 정비(계단, 문턱 등) |
| ⑥ 놀이터 개보수 | ⑦ 편의시설 개보수 | ⑧ 비상재해대비시설 개보수 |
| ⑨ 보육공간 확보를 위한 개보수 | ⑩ 기타() | |

14. 지난 3년간(2012~2014) 증개축 공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신 적이 있다면 횟수를 적어 주십시오.

()회

14-1. 어떠한 이유로 증개축 공사를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전반적인 어린이집 노후화 | <input type="checkbox"/> ② (정원증가 없는) 보육실 면적 확대 |
| <input type="checkbox"/> ③ 조리실 등 부대시설 확보 | <input type="checkbox"/> ④ 정원 증가 |
| <input type="checkbox"/> ⑤ 실내 놀이터·강당 등 유희공간 확보 | <input type="checkbox"/> ⑥ 원장실·교직원 휴게실 공간 확보 |
| <input type="checkbox"/> ⑦ 장애아 치료공간 및 편의시설 확보 | <input type="checkbox"/> ⑧ 다목적공간 확보 |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

14-2. 지난 3년간 증개축 공사시 공사시 정부지원금과 보증융자금은 얼마이고, 귀 어린이집은 얼마를 부담하였습니까?		
① 정부지원금: ()만원	② 정부 보증융자: ()만원	③ 자부담: ()만원

15. 귀 어린이집에 장애아를 위한 설비를 마련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2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 ① 이동용보장구(휠체어 등) | ② 학습참여를 위한 보조기구 | ③ 장애인 의사소통도구 |
| ④ 휠체어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 ⑤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 ⑥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 시설 |
| ⑦ 보조견의 배치 | ⑧ 안전설비(바닥 안전 설비 및 안전봉 등) | ⑨ 화장실 편의시설 |
| ⑩ 경사로 | ⑪ 기타() | ⑫ 없음 |

II. 어린이집 운영

II-A.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 1~4번의 경우는 2015년 현재를 기준으로, 5, 6번 질문은 2014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현재 총 몇 개 반을 운영합니까?		총 반 수: ()개반 혼합연령반 수: ()개반
2. 어린이집 평일 운영시간을 기록합니다 (※ 예 09:00, 17:30)		문 여는 시간: ()시 ()분 문 닫는 시간: ()시 ()분
3. 토요일 보육	토요일 운영 여부	월 ()회 운영
	토요일 근무 보육교직원	교사 ()명 기타 ()명
4.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 영유아수	반 수 ()개반 총 ()명
5. 연간 휴원 일수 (※ 공휴일, 일요일 제외) (2014년 기준)		총 () 일
6. 자율 보육기간(방학) 운영 (2014년 1년 기준)	방학 횟수	년 () 회
	방학 일수	년 () 일

7. 귀원에 연령별 반편성 예외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연령별 반편성 예외 해당없음 ()	상위반 편성 (총 명)		하위반 편성 (총 명)		
	1, 2월 생 ()명	만 0세아 ()명	취학유예아동 ()명	장애아 ()명	하위반 희망아동 ()명

8. 귀하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구분	① 전혀 어렵지 않음	② 별로 어렵지 않음	③ 다소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
1) 원아모집				
2) 안전				
3) 급간식				
4) 보육 프로그램				
5) 시설설비				
6) 재정				
7) 행정				
8) 보육교직원				
9) 보호자				

9. 귀 어린이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 | |
|---------------------|----------------|
| ① 시설·설비 개선 | ② 보육프로그램 개선 |
| ③ 교재교구·기자재 구입 | ④ 교사, 아동 상호작용 |
| 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 ⑥ 보육교사 급여 및 처우 |
| ⑦ 교직원 전문성 향상 | ⑧ 기타 교직원 채용 |
| ⑨ 부모 교육 등 부모 참여 활성화 | ⑩ 기타() |
| ⑪ 없음 | |

10.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1개 선택)

- | | |
|----------------------|---------------------|
| ① 어린이집 환경 개선 | ② 교재교구·기자재 구입 비용 |
| ③ 교사 인건비 | ④ 교사 외 직원 인건비 |
| ⑤ 급간식비,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용 | ⑥ 프로그램 운영비(현장학습비 등) |
| ⑦ 임대료 등 기타 경비 부담 | ⑧ 사회보협료, 공과금 등 비용 |
| ⑨ 기타 | ⑩ 없음 |

11. 귀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떤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십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2가지만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① 보육교직원 재교육 기회 확대(보육과정 컨설팅 등) | ② 정보 및 자료 제공(교수자료 등) |
| ③ 보조인력 지원 | ④ 지역사회 연계(보건소, 시민문화회관 등) |
| ⑤ 재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 ⑥ 부모교육 및 상담 관련 지원 |
| ⑦ 기타() | ⑧ 없음 |

12. 귀 어린이집에서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체크 해 주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input type="checkbox"/> ① 표준보육과정 교육	<input type="checkbox"/> ① 표준보육과정 교육	<input type="checkbox"/> ① 표준보육과정 교육
<input type="checkbox"/> ② 안전 및 학대예방교육	<input type="checkbox"/> ② 안전 및 학대예방교육	<input type="checkbox"/> ② 안전 및 학대예방교육
<input type="checkbox"/> ③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input type="checkbox"/> ③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input type="checkbox"/> ③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input type="checkbox"/> ④ 대체교사 지원	<input type="checkbox"/> ④ 대체교사 지원	<input type="checkbox"/> ④ 대체교사 지원
<input type="checkbox"/> ⑤ 보육정보의 제공	<input type="checkbox"/> ⑤ 보육정보의 제공	<input type="checkbox"/> ⑤ 보육정보의 제공
<input type="checkbox"/> ⑥ 급간식 식단의 제공	<input type="checkbox"/> ⑥ 급간식 식단의 제공	<input type="checkbox"/> ⑥ 급간식 식단의 제공
<input type="checkbox"/> ⑦ 부모교육 지원	<input type="checkbox"/> ⑦ 부모교육 지원	<input type="checkbox"/> ⑦ 부모교육 지원
<input type="checkbox"/> ⑧ 의견 수렴 및 공동 대응	<input type="checkbox"/> ⑧ 의견 수렴 및 공동 대응	<input type="checkbox"/> ⑧ 의견 수렴 및 공동 대응
<input type="checkbox"/> ⑨ 보육관련 자료의 제공	<input type="checkbox"/> ⑨ 보육관련 자료의 제공	<input type="checkbox"/> ⑨ 보육관련 자료의 제공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13. 귀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를 아래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채용의 어려움	채용이 어려운 이유(1가지 선택)						
		① 자격소지자를 찾기 어려움	② 희망 인건비가 높음	③ 지역이나 시설특성상 구직자가 없음	④ 경험과 경력이 부족함	⑤ 전문성 및 자질이 부족함	⑥ 기타()	⑦ 어려움 없음
1) 보육교사								
2) 취사부								
3)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4) 영양사								
5) 간호사(간호조무사)								
6) 장애아전담교사(특수교사 등)								
7) 시간제보육 교사								
8) 누리과정 보조교사								

II-B. 어린이집의 보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응답해 주십시오.

1) 영유아 관련 종합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2) 상해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3) 사고배상 책임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4) 자동차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5) 화재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6) 놀이터 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7) 가스사고 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8) 기타()	① 가입	② 미가입

15. 작년 한 해 동안 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안전교육 횟수를 교육내용 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교통안전교육	연 ()회
2) 악물오남용교육	연 ()회
3) 재난대비교육	연 ()회
4)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연 ()회
5)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연 ()회

16. 작년 한 해 동안 교사가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받았던 안전교육 횟수를 교육 내용 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아동학대예방교육	연 ()회
2) 안전관리교육	연 ()회

17. 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2곳을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
|-------|-------------------|-------------------|-------------|---------|
| ① 보육실 | ② 이동 통로(계단, 복도 등) | ③ 실외놀이터 | ④ 등·하원 차량 내 | ⑤ 유희실 |
| ⑥ 식당 | ⑦ 화장실, 욕실 | ⑧ 원외공간(체험학습 장소 등) | ⑨ 현관 | ⑩ 기타() |

18. 작년 한 해 동안 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유형별 안전사고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해당되는 안전사고 유형별로 발생 건수를 적어 주십시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고 수준의 사고에 준함)

구분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이물질 삼입	화상	식중독/ 급식관련	통학버스/ 교통사고	원인미상	(기타)
사고건수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18-1. 사고원인은 무엇입니까?

구분	유아 부주의	시설물 하자	증사자 부주의	아동간 다툼	기타
사고건수	회	회	회	회	회

19. 귀원에서 안전과 관련한 아래 사항 중 마련하거나 실행하고 있는 것에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 ① 부모와의 비상연락망 확보 ② 어린이집 비상대피도 마련 ③ 응급처치동의서 비치
 ④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⑤ 비상대응 훈련계획 수립

20. 현재 귀 어린이집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상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있다면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 ① 소방서 ② 경찰서 ③ 가스유류 접점기관
 ④ 인근 어린이집 ⑤ 시청 또는 군청 ⑥ 병원 ⑦ 기타

21.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현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실내놀이터나 강당을 유희실 등으로 활용시 유희실에 포함, 없으면 0 기입 후 문항 23으로 이동

보육실 개수	실내 CCTV 설치(총 ___ 대)									전체	
	보육실 별도 놀이실	유희실(구)			식당 (별도 현관)	주출입 현관	복도	조리실	회장실	사무실	
		공동 놀이실	실내 놀이터	강당 (별도구획)							
개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총 대

21-1.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있다면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 ① 폐쇄회로 TV ② 네트워크 카메라(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정보 외부 송출가능)

21-2.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얼마입니까?

구분	폐쇄회로 TV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비용(한 대당 단가)	천원	천원
설치비용(전체)	천원	천원
유지비용(월)	천원	천원

21-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해상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0만 화소 미만 ② 50~130만 화소 미만 ③ 130~200만 화소 미만 ④ 200만 이상

21-4. 귀 어린이집에서 녹화한 영상정보 보존 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30일 이하 ② 31~60일 미만 ③ 60일 이상

22. 귀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등·하원 인계 과정에 대하여 등·하원 일지를 비치하고 작성합니다?

- ① 등·하원 일지를 비치하고 작성함 ② 등·하원 일지를 비치하나 작성하지 않음
 ③ 등·하원 일지를 비치하지 않고 작성하지 않음

23. 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정확하게 알고 있음 ②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
 ③ 잘 모르고 있음 ④ 전혀 모르고 있음

II-C. 어린이집의 차량운행 여부와 소유,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24. 귀 어린이집에서는 등·하원 차량을 운행합니까?

- ① 운행함 ② 운행하지 않음 (☞ 25)

24-1. 귀 어린이집에서 현재 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다음의 보기에서 번호를 찾아 적어 주십시오.

구분	소유형태	운전자	차량동승자	평균 아동수	월 평균 운행거리
	① 소유 ② 임대 ③ 기타 ()	① 원장 ② 보육교사 ③ 기타인력 ④ 운전기사 ⑤ 기타 ()	① 원장 ② 보육교사 ③ 기타인력 ④ 기타()	()명	① 1,000km 미만 ② 1,000~2,000km 미만 ③ 2,000~3,000km 미만 ④ 3,000~4,000km 미만 ⑤ 4,000~5,000km 미만 ⑥ 5,000km 이상
차량 1					명
차량 2					명
차량 3					명
차량 4					명

24-2.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 하루 1회 이용도 포함)

차량 이용 영유아수: ()명

24-3. 영유아들이 등·하원시 차량에 타고 있는 가장 긴 시간은 얼마입니까? 편도로 답해 주십시오. (※ 분으로 환산하여 응답함)

최대: ()분

24-4. 영유아 차량일지를 어떻게 작성하십니까?

- | | | |
|--------------|--------------|------------|
| ① 작성 안함 | ② 월 1회 이하 작성 | ③ 주당 1회 작성 |
| ④ 주당 2~3회 작성 | ⑤ 매일 작성 | |

24-5. 귀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차량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지원받는 경우, 총 얼마입니까?

- | | |
|------------|-------|
| ① 예 (월 만원) | ② 아니오 |
|------------|-------|

24-6. 귀 어린이집은 영유아 부모로부터 차량이용비를 받고 있습니까? 받는 경우, 1인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 | |
|------------|-------|
| ① 예 (월 만원) | ② 아니오 |
|------------|-------|

24-7.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확인하는 내용에 모두 ✓ 표 해 주십시오.(중복응답 가능)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input type="checkbox"/> ②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 <input type="checkbox"/> ③ 성범죄 경력 조회 |
| <input type="checkbox"/> ④ 아동학대 이력 조회 |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

24-8. 귀 어린이집에서 현재 차량 운행을 위해 준수하는 내용을 모두 ✓ 표 해 주십시오.(중복응답 가능)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 부착 | <input type="checkbox"/> ② 차량용 소화기 비치 |
| <input type="checkbox"/> ③ 차량 내 구급상자 | <input type="checkbox"/> ④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
| <input type="checkbox"/> ⑤ 36개월미만 영아용 보호장구 | <input type="checkbox"/> ⑥ 영유아 등퇴원일지 작성 |
| <input type="checkbox"/> ⑦ 금연상징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 |

II-D. 영유아의 건강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5. 귀 어린이집에서는 아픈 영유아를 주로 어디서, 누가 돌봅니까?

1) 장소	① 보육실	② 양호실	③ 교사실(회의실)	④ 원장실	⑤ 기타()
2) 담당자	① 원장	② 보육교사	③ 간호사(간호조무사)	④ 사무원	⑤ 기타()

26. 귀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건강 검진을 사전 안내하고, 확인서를 점검합니까?

1) 사전 안내 여부	① 사전 안내함	② 사전 안내를 하지 않음	
2) 확인서 점검 여부	① 철저하게 점검함	② 대략 점검함	③ 점검하지 않음

27. 2014년 지난 한 해 동안, 귀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예방접종 유무를 어떻게 확인하였습니까?

- ① 입소 시에만 보호자에게 확인함(☞27-1)
- ② 영유아들의 연령에 따라 입소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확인함(☞27-1)
- ③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달 확인함(☞27-1)
- ④ 특별히 확인하지 않음(☞28)

27-1. 예방접종 확인 후 미접종 아동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 ① 접종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함
- ② 보호자에게 안내 후 추후 접종사실을 재확인함
- ③ 별도 조치하지 않음

28. 귀 어린이집에서는 뇌염, 유행성 독감 등 계절별 예방접종을 확인, 관리합니까?

- ① 철저히 확인, 관리함
- ② 대체로 확인, 관리 함
- ③ 확인, 관리하지 못함

29. 2014년 지난 한 해 동안, 귀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까?

- ① 모든 교직원이 건강검진 받음
- ② 일부 교직원만 건강검진 받음
- ③ 교직원 중 아무도 건강검진 받지 않음

30. 전염성 질환에 대해 평소 어떤 준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평소 전염성 질환(폐렴, 수족구병 등)의 증상에 대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② 증상이 의심 시 병원진단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경우 출근할 수 있도록 사전 교사교육 실시
- ③ 영유아의 전염성 질환 의심 시 등원시키지 않도록 부모에게 안내
- ④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체열 체크

31. 전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이나 아동을 즉시 귀가 조치함
- ② 해당 시군구청에 의심 사례를 보고함
- ③ 병원진단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경우 출근 또는 등원하도록 함
- ④ 기타()

II-E.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 실내공기 질, 석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32. 귀 어린이집은 급식재료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32-1)
- ② 아니오 (☞ 33)

32-1. (참여한다면) 식재료 공동구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비용 절감
- ② 안정된 수급
- ③ 관리의 편리성
- ④ 표준 식단과 레시피 제공받음
- ⑤ 신선도 유지(생선, 야채, 과일 등)
- ⑥ 소량구매 가능
- ⑦ 기타
- ⑧ 없음

32-2. (참여한다면) 식재료 공동구매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식단 선택의 제한
- ② 식재료 구매·관리와 관련된 행정업무 증가
- ③ 개별적 욕구를 반영할 수 없음
- ④ 신선도 떨어짐
- ⑤ 개별구매보다 비용이 높음
- ⑥ 기타()
- ⑦ 없음

33. 귀 어린이집에서는 식단을 주로 어떻게 작성하십니까?

- ① 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를 그대로 이용
 - ② 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를 영양사가 수정
 - ③ 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를 조리사(취사부)가 수정
 - ④ 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를 원장·교사가 수정
 - ⑤ 영양사가 작성
 - ⑥ 기타()

34. 어린이집에서 조리는 주로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35. 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식사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1) 장소	① 영유아와 다른 장소	② 영유아와 함께 같은 장소
2) 식단	① 영유아와 다른 식단	② 영유아와 같은 식단

36. 귀하는 연면적 430m²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공기 질 측정 의무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 | |
|--------------|---------------|
| ① 정확하게 알고 있음 | ②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 |
| ③ 잘 모르고 있음 | ④ 전혀 모르고 있음 |

37. 귀 어린이집은 실내공기 질 측정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① 하고 있음 (☞ 37-1) ② 하고 있지 않음 (☞ 38)

37-1. 귀 어린이집에서는 실내공기 질 측정 검사를 몇 회나 실시하셨습니까?

2013년도 회 2014년도 회 2015년도 회

38. 연면적 430m²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 | |
|----------------------------|------------------------------|
| ① 정확하게 알고 있음
③ 잘 모르고 있음 | ②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
④ 전혀 모르고 있음 |
|----------------------------|------------------------------|

39. 귀 어린이집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올해 안에 석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이미 했음 ② 할 계획임 ③ 내년 이후 실시 ④ 계획 없음

40. 다음은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개발 보급된 매뉴얼의 인지 여부와 활용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뉴얼에 대한 인지 여부와 이의 활용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적어 주십시오.

구분	인지 여부	활용 정도	
		① 잘 알고 있음	② 대체로 알고 있음
1) 보육시설 응급처치 매뉴얼(2009)	③ 일부 알고 있음 ④ 잘 모름	① 잘 활용함 ③ 일부 활용함 ⑤ 매뉴얼 없음	② 대체로 활용함 ④ 전혀 활용하지 않음
2) 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2009)			
3)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2009)			
4) 보육시설 급식운영관리 매뉴얼(2010)			
5)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2011)			
6)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2012)			
7) 어린이집 석면관리 매뉴얼(2013)			
8)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매뉴얼(2014)			
9) 어린이집 아외활동 길라잡이(2014)			
10)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2015)			

III. 보육 영유아 현황

III-A. 보육 영유아 일반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다음은 보육 영유아 일반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인원을 적어 주십시오.

※ 1-1번은 연령별로 영유아수를 기입하고, 1-2번~1-11번은 영이수와 유아수로 나누어 적어 주십시오.

※ 2015년 7월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1-1. 현재 다니고 있는 영유아 총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구분	영이반(0-2세)	유아반(3-5세)
1-2.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 수	총	명
1-3. 다문화가족 영유아 수	총	명
14. 장애 영유아 수	총	명
1-5. 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	총	명
1-6. 취약계층 영유아 수(한부모, 조손, 복지시설 아동 등)	총	명
1-7. 시간연장보육	총 이용 영유아 수	총
	취업모	총
1-8. 24시간보육	총 이용 영유아 수	총
	취업모	총
1-9. 휴일보육	총 이용 영유아 수	총
	취업모	총
1-10. 시간제보육(1달 기준)	총 이용 영유아 수	총
	취업모	총
1-11. 토요보육 영유아 수	총	명

2. 귀 어린이집은 반 정원을 초과한 반이 있습니까? 있다면, 연령별 반 수와 초과된 영유아수를 연령별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반 수	반	반	반	반	반	반
초과 영유아수	명	명	명	명	명	명

3. 귀 어린이집은 신규 입소 영유아에게 어떠한 서류를 받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 ① 생활기록부
- ② 반편성 신청서
- ③ 귀가 동의서
- ④ 웅급처치 동의서(의료서비스 동의서 등)
- ⑤ 특별활동 동의서
- ⑥ 부모 재직증명서 등 취업증빙 서류
- ⑦ 예방접종확인서
- ⑧ 주민등록등본
- ⑨ 차량 이용 동의서
- ⑩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⑪ 기타()

4. 어린이집 입소 시에 우선 입소순위 자격을 부여하는데 다음의 각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보기>

- | | | |
|---|----------------------------|---------------------------------|
| ① 기초생활수급자 | ②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③ 차상위계층 자녀(최저생계비 120% 이하) |
| ④ 장애 부모 자녀 | 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 |
| ⑥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직업훈련 중 또는 학업 중인 부모 자녀 포함) | | |
| ⑦ 다문화가족 영유아 | ⑧ 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가 2자녀 이상 가구 | |
| ⑨ 조손 가족 영유아 | ⑩ 입양된 영유아 | ⑪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⑫ 기타 () |

5. 귀 어린이집은 입소 대기 영유아가 있습니까?

① 있음 (☞ 5-1)

② 없음 (☞ 6)

5-1. (입소 대기 영유아가 있는 경우) 총 대기 영유아는 몇 명입니까? 일반 영유아와 장애 영유아로 각각 나누어 적어 주십시오.
 총 대기 영유아: () 명 / 일반 영유아: () 명, 장애 영유아: () 명

5-2. 귀 어린이집에서 지금까지 최대로 관리해 본 대기자 수는 대략 몇 명입니까?
 ① 10명 이내 ② 11~29명 ③ 30~49명 ④ 50~69명
 ⑤ 70~99명 ⑥ 100~149명 ⑦ 150~199명 ⑧ 200명 이상

5-3. (입소 대기 영유아가 있는 경우) 입소 대기 영유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 선택)
 ① 인근 지역에 타 어린이집이 없음 ② 프로그램 및 운영을 선호함
 ③ 우수한 교사가 있음 ④ 정부의 보육료
 ⑤ 국공립(혹은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함 ⑥ 통학차량 운행함
 ⑦ 시설이 우수함 ⑧ 기타()

5-4. 입소대기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만족(= 5-5) ② 만족(= 5-5) ③ 보통(= 5-5) ④ 불만족(= 5-6) ⑤ 매우 불만족(= 5-6)

5-5. (입소대기 시스템에 대하여 만족도가 보통 또는 만족도가 높아진 경우) 새로운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서류관리·보관 등 번거로운 일이 줄었다
 ② 시스템에서 대기 순위가 결정되니 어린이집에서 관리할 부분이 없어 편리하다
 ③ 부모 민원이 줄었다(대기 순위 공정성 논란 등)
 ④ 대기자의 순위를 즉각 확인 가능해 결원 충원시 편리하다
 ⑤ 특별히 만족스러운 부분 없음
 ⑥ 기타()

5-6. (입소대기 시스템에 대하여 만족도가 낮아진 경우) 새로운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입소아동 결정에 대한 어린이집의 재량권이 없어집(형제자매 입소, 근거리 거주 등 입소우선순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입소가 바람직한 경우를 받아줄 수 없음)
 ② 부모 민원 증가(새 입소대기시스템에서 순위가 밀린 경우 발생 등)
 ③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대기자에 대한 관리 업무 증가
 ④ 수요자들이 지나치게 빨리 입소대기를 하게 됨
 ⑤ 기타()

5-7-1. (입소대기 가능 어린이집 개수를 제한한 자체 소재 어린이집) 올해부터 입소대기자들의 입소대기 가능 어린이집 수를 3개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중복대기 개수를 줄임으로써 결원 충원이 기관 수 제한 없이 대기를 허용했을 때보다 용이해졌습니까?
 ① 매우 그려함 ② 그려함 ③ 별 차이 없음 ④ 그렇지 않음 ⑤ 전혀 그렇지 않음

5-7-2. (입소대기 가능 어린이집 개수를 제한하지 않은 자체 소재 어린이집) 향후 입소대기자들의 입소대기 가능 어린이집 수를 제한할 경우, 중복대기 개수를 줄임으로써 귀 기관의 결원 충원이 기관 수 제한 없이 대기를 허용했을 때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려함 ② 그려함 ③ 별 차이 없음 ④ 그렇지 않음 ⑤ 전혀 그렇지 않음

6. 귀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의향 있음 (\square 6-1) ② 의향 없음 (\square 7) ③ 이미 운영 중임 (\square 7)

6-1.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있다면, 운영 가능한 취약보육을 모두 표해 주십시오.

- ① 24시간보육 ② 야간보육 ③ 시간연장보육 ④ 휴일보육 ⑤ 기타()

7. 귀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음 (☞ 7-1) ② 모름 (☞ 8)

- 7-1. 귀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7-1-1)
③ 모르겠음 ④ 이미 장애전담 혹은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등록되어 있음

- 7-1-1. 장애아통합아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장애아 및 일반 영유아 안전 관리의 어려움
 - ② 장애아 담당 교사 확보의 어려움
 - ③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의 어려움
 - ④ 장애아통합 보육 지식 및 정부보육으로 양질의 지원을 하지 못 할 것 같음
 - ⑤ 통합보육 제공으로 인한 과외 일에 대한 부담
 - ⑥ 학부모들의 통합보육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원아 모집의 어려움이 있음
 - ⑦ 통합보육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과 지원의 미흡
 - ⑧ 기타 ()

III-B. 장애 영유아를 1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만 응답합니다.
장애인아동이 없는 경우 8번부터 14번 질문을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8. 다음은 장애 영유아의 자격기준 및 장애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경우 인원수를 적어 주십시오.

8-1. 보육 총 장애아수	(명)			
8-2. 자격부여기준	① 장애인등록증 (명) ② 의사의 장애진단서 (명) ③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 (명) (※ 8-3-1) (※ 8-3-1) (※ 8-3-2)			
8-3-1. 장애유형 (※ 장애인등록증 소지 영유아, 의사 진단서 제출 영유아가 있는 경우만 응답)	① 지적장애 (명) ② 언어장애 (명) ③ 뇌병변장애 (명) ④ 자폐성장애 (명) ⑤ 지체장애 (명) ⑥ 청각장애 (명) ⑦ 정신장애 (명) ⑧ 시각장애 (명) ⑨ 간질장애 (명) ⑩ 간장애 (명) ⑪ 신장장애 (명) ⑫ 장루, 요루장애 (명) ⑬ 안면장애 (명) ⑭ 심장장애 (명) ⑮ 호흡기장애 (명) ⑯ 기타 (명)			
8-3-2. 장애유형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서 제출한 영유아가 있는 경우 응답)	① 시각장애 (명) ② 청각장애 (명) ③ 정신지체 (명) ④ 지체장애 (명) ⑤ 정서·행동장애 (명) ⑥ 자폐성 장애 (명) ⑦ 의사소통장애 (명) ⑧ 학습장애 (명) ⑨ 건강장애 (명) ⑩ 발달지체 (명) ⑪ 기타() (명)			
8-4. 장애등급 (※ 장애인등록증 소지 영유아가 있는 경우만 응답)	① 1등급 (명) ② 2등급 (명) ③ 3등급 (명) ④ 4등급 (명) ⑤ 5등급 (명) ⑥ 6등급 (명)			

9. 귀 어린이집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9-1. 귀 어린이집은 장애아를 보육하면서도 현재 장애아 전문 또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정 신청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 ② 지정 신청 기준은 갖추었으나 지정 시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신청 안함
 - ③ 지정 취소되었음 ④ 기타()

10.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의 연령별로(만 5세이상, 만 4세, 만 3세) 2016. 3. 1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령에 따른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1. 현재 배치된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교사는 몇 명 인가요?
* 자격요건(장애아동복지지원법)

 - 특수교사 :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유치원 과정만 해당)
 - 보육교사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취득하고,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8과목 24학점)을 이수

① 특수교사(명) 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명

12.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보육대상 장애영유아 3명 당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1명씩 배치하고, 2명 이하인 경우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장애영유아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장애영유아 3명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전담교사 배치
 - ② 특수교사 과견하여 순회교육 실시
 - ③ 보조인력 지원
 - ④ 장애영유아 1인당 보육료를 장애전담 또는 통합어린이집 기준으로 지원
 - ⑤ 장애영유아 모집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장애아동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음
 - ⑥ 장애영유아를 장애아전문 혹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이동시킴
 - ⑦ 잘 모름

13.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해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2세 이하 장애영아에 대한 인력 배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는 만 2세 이하의 장애영아 보육을 위해 어떠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한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와 동일 기준으로 인력 배치
 - ②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인력 배치 기준(장애영유아 3명 이상일 경우 전담교사, 9명 이상 경우 특수교사 배치) 적용
 - ③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만 배치
 - ④ 장애진단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필요 없음
 - ⑤ 잘 모름

14. 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하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① 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② 교재교구비 지원 ③ 특수교사 수당 인상
 - ④ 특수교사 외 장애영유아 담당 수당 지급 ⑤ 보조인력 지원 ⑥ 장애아를 위한 시설 및 설비 설치
 - ⑦ 교사 교육 ⑧ 기타()

III-C.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만 응답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 15번부터 19번 질문을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15. 귀 어린이집에 다니는 디문화가족 영유아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자신감, 자아정체감 부족
 - ②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 ③ 언어발달 지연
 - ④ 학습(인지) 발달 지연
 - ⑤ 기본생활습관 문제
 - ⑥ 위생, 건강 문제
 - ⑦ 기타()

16. 귀 어린이집은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답해 주십시오.

항목	운영 여부 ① 운영함 ② 운영안함	필요성 정도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음 ③ 어느 정도 필요함 ④ 매우 필요함
아동	1)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		
	2) 이중언어 프로그램		
	3) 인지발달 프로그램		
	4) 한글지도 프로그램		
부모	5) 알림장·가정통신문 외국어로 작성		
	6) 부모교육 프로그램		
	7) 부모상담		

17. 귀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제공한 적 있음 (☞ 17-1) ② 없음 (☞ 18)

17-1. (다문화 이해교육 기회를 제공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였습니까?

- ① 다문화지원센터 교육 참여 기회 제공 ② 보수교육 시
③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④ 인터넷으로
⑤ 기타()

18. 귀 어린이집은 일반 아동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합니까? 실시한다면, 얼마나 자주 합니까?

- ① 실시하지 않음 ② 1년에 한번 ③ 학기당 1회 ④ 분기당 1회 ⑤ 월 1회 이상

19. 귀 어린이집은 일반 아동과 다르게 다문화가족 부모에게 추가적으로 부모면담을 실시합니까? 실시한다면, 얼마나 자주 합니까?

- ① 일반 아동과 비슷하게 실시 ② 일반 아동에 비해 연 1~2회 더 많이 실시
③ 일반 아동에 비해 연 3~4회 더 많이 실시 ④ 일반 아동에 비해 연 5~6회 더 많이 실시
⑤ 일반 아동에 비해 연 7회 이상 더 많이 실시

III-D. 시간연장보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연장보육을 하지 않는 경우 20~25번 질문을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20. 영유아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맞벌이 가구로 부모의 퇴근이 늦어서 ② 이동하지 않고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③ 부모가 아이돌보는 것을 힘들어해서 ④ 야간근로 등으로 저녁시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⑤ 저녁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⑥ 기타()

21. 귀 어린이집은 저녁급식비를 별도로 받습니까? 받는다면 월 평균 얼마 정도 받습니까?

- ① 받음 (원) ② 받지 않음

22.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비용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와 동일 (시간당 2,800원) ② 상향조정 (원)

23. 현재 정부는 한 달 60시간의 시간연장보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음 ② 적당함 ③ 적음

23-1. (①과 ③에 응답한 경우만) 월 몇 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시간

24. 시간연장보육 이용 부모에게 출석부에 확인 서명을 받고 계십니까?

- ① 받은 적 없음 ② 가끔 받음 ③ 매번 받음 ④ 원에서 대신 함

25. 시간연장보육 제도 개선에 대한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을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인건비 지원단가 상향
- ② 시스템상 반당 5명 아동 등록에 대한 제한 완화
- ③ 취업모 또는 야간보육 필요 가정으로 이용 자격 제한
- ④ 대체인력풀 구축
- ⑤ 시간연장보육시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⑥ 혼합연령반의 연령 기준 마련
- ⑦ 기타()

III-E. 24시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만 응답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 26~28번 질문을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26. 24시간 보육 영유아는 대체적으로 부모가 얼마나 자주 데려갑니까?

- ① 3달에 한번
- ② 2달에 한번
- ③ 1달에 한번
- ④ 3주에 한번
- ⑤ 2주에 한번
- ⑥ 1주에 한번 이상
- ⑦ 기타()

27. 24시간 보육아동의 가정 유형별로 그 숫자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2015년 7월 기준으로 해당되는 가정 형태를 모두 적어 주십시오.

- ① 양부모 모두 있음(명)
- ② 한부모가정(명)
- ③ 조손가정(명)
- ④ 기타 등()(명)

28. 이용아동이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 ② 부모의 건강 문제
- ③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으로 주간 및 야간보육 필요
- ④ 기타()

III-F. 시간제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만 응답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 29~32번 질문을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29. 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 26조의2, 제2항에 따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일시보육서비스 제 공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까?

- ① 지정받음
- ② 지정받지 않음

30. 귀 어린이집에는 시간제보육 업무만을 담당하며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전담 보육교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추가)

- ① 있음(명) (☞ 30-1)
- ② 없음 (☞ 31)

30-1. 시간제보육 전담 보육교사의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여러 명일 경우 가장 경력이 낮은 보육교사 기준)

- ① 1년 미만
- ② 1년~2년 미만
- ③ 2년~3년 미만
- ④ 3년 이상

31.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 ① 어려움 없음
- ② 낮은 시간제보육료
- ③ 시간제보육 제공을 위한 장소 확보 어려움
- ④ 시간제보육을 위한 전담 인력 구인의 어려움
- ⑤ 일반 영유아 보육에 방해됨
- ⑥ 시간제보육 아동 수가 유동적으로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
- ⑦ 시간제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어려움
- ⑧ 낮은 상황에서의 영유아 적응
- ⑨ 기타()

32.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① 시간제보육료 단가 인상
- ② 시간제보육료 정부지원 비율 인상
- ③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조건 완화
- ④ 시간제보육 담당 인력 파견 등 인력 지원
- ⑤ 시간제보육 운영 컨설팅 제공
- ⑥ 시간제보육을 위한 리모델링비 지원액 확대
- ⑦ 기타()

IV. 보육교직원 운영실태 및 요구

IV-A. 보육교직원 전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전체(원장 제외)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1. 성별		1-2. 만 연령		1-3-1. 학력		1-3-2. 회교 전공		1-3-3. 자격증		1-4. 최초 자격취득 기관	
① 남	명	① 만 20~24세	명	① 고졸	명	① 원장	명	① 보육교사 교육원	명	① 보육교사 교육원	명
② 여	명	② 만 25~29세	명	② 대학재학	명	② 1급 보육교사	명	② 전문대학	명	② 전문대학	명
		③ 만 30~34세	명	③ 대학교 졸업	명	③ 2급 보육교사	명	③ 4년제대학	명	③ 4년제대학	명
		④ 만 35~39세	명	(3년제 이하)	명	④ 보육학	명	④ 대학교	명	④ 학점은행제	명
		⑤ 만 40~44세	명	⑤ 대학교 졸업	명	⑤ 가정학	명	⑤ 학점은행제	명	⑤ 이어마비대학	명
		⑥ 만 45~49세	명	⑥ 대학교 졸업	명	⑥ 간호학	명	⑥ 이어마비대학	명	⑥ 기타	명
		⑦ 만 50~54세	명	(4년제 이하)	명	⑦ 영어학	명	⑦ 중등직업 중.	명		
		⑧ 만 55세이상	명	⑧ 대학원 졸업	명	⑧ 교육학	명	⑧ 유치원교사	명	⑨ 특수교육학	명
		⑨ 만 55세이상	명	⑩ 대학원 졸업	명	⑩ 기타	명	⑩ 특수교육학	명		
1-5. 어린이집 경력		1-6. 근무 시간		1-7-1. 호봉		1-7-2. 기본급(월평균)		1-7-3. 제 수당(월기준)		1-7-4. 총액	
2015년 현재 기준 어린이집 종교(종교유치원·현우정역 포함)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간		현재 받고 있는 호봉(호봉기준 있는 경우 제외)		2015년도 계약연봉에 기재된 월평균 기본급		지난 달 동안 받은 기타수당(지자체 청와대선비, 농어촌특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군무경비기자전비, 누락수당, 기밀수당, 기밀수당, 청과수당, 정부수당, 기계보조수당, 교통급식비 등)		한달급여 수당을 합친 금액			
※ 종전경력은 어린이집 근무경력 포함 한것임 ※ 개월 수로 환산		(총경력)		① 1호봉		① 80만원 미만		① 없음		① 80만원 미만	
		② 2호봉		② 8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② 1~10만원 미만		② 8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② 80만원 이상~120만원 미만	
		③ 3호봉		③ 100만원 이상~120만원 미만		③ 10~2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12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140만원 미만	
		④ 4호봉		④ 120만원 이상~140만원 미만		④ 20~30만원 미만		④ 120만원 이상~140만원 미만		④ 120만원 이상~160만원 미만	
		⑤ 5호봉		⑤ 140만원 이상~160만원 미만		⑤ 30~40만원 미만		⑤ 140만원 이상~160만원 미만		⑤ 140만원 이상~180만원 미만	
		⑥ 6호봉		⑥ 160만원 이상~180만원 미만		⑥ 40~50만원 미만		⑥ 160만원 이상~180만원 미만		⑥ 16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⑦ 7호봉		⑦ 18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⑦ 50~60만원 미만		⑦ 18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⑦ 180만원 이상~220만원 미만	
		⑧ 8호봉		⑧ 200만원 이상~240만원 미만		⑧ 20~30만원 미만		⑧ 200만원 이상~240만원 미만		⑧ 200만원 이상~240만원 미만	
		⑨ 9호봉		⑨ 9~10시간 미만		⑨ 70~80만원 미만		⑨ 70~80만원 미만		⑨ 70~80만원 미만	
		⑩ 10호봉		⑩ 11호봉		⑩ 240만원 이상~260만원 미만		⑩ 240만원 이상~260만원 미만		⑩ 240만원 이상~260만원 미만	
		⑪ 11호봉		⑫ 12호봉		⑫ 260만원 이상~280만원 미만		⑫ 260만원 이상~280만원 미만		⑫ 260만원 이상~280만원 미만	
		⑬ 13호봉		⑭ 14호봉		⑭ 300만원 이상~320만원 미만		⑭ 300만원 이상~320만원 미만		⑭ 300만원 이상~320만원 미만	
		⑮ 15호봉		⑯ 16~20호봉		⑯ 모름		⑯ 모름		⑯ 모름	
		⑰ 21호봉 이상								⑰ 340만원 이상	

1-8. 올해 신규로 채용한 보육교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총 몇 명입니까? ① 있음 ()명/2015년 보육교사 총 ()명 ② 없음 (☞ 1-9) 중																			
1-8-1. 이 중 귀 어린이집이 첫 근무지인 초임 교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총 몇 명입니까? ① 있음 ()명 ② 없음																			
1-8-2. 첫 근무지인 초임교사의 세전 기준 기본급, 제수당(정부지원금 및 어린이집 지급액 포함), 총액은 얼마입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기본급</th> <th>제수당</th> <th>총액</th> </tr> </thead> <tbody> <tr> <td>교사 1</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사 2</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사 3</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본급	제수당	총액	교사 1				교사 2				교사 3			
구분	기본급	제수당	총액																
교사 1																			
교사 2																			
교사 3																			

1-9. 귀 어린이집에서 작년(2014년) 한해 동안 교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부/지자체에서 지급한 지원금(급여성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은 제외하고 적어주십시오.

지급주체	지급내역/항목	지급주기				총 횟수	금액(1회 지급액)
		①매월	②3개월마다	③6개월마다	④부정기적/기타		
어린이집	1) ()	①	②	③	④	연 () 번 () 원	
	2) ()	①	②	③	④	연 () 번 () 원	
	3) ()	①	②	③	④	연 () 번 () 원	
정부/지자체							

*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명절수당, 근속수당, 휴가수당 등), 성과급 포함

2. 담임교사를 제외한 보조교사(비담임교사), 시간제교사 등 보육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으나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에 대한 근무시간, 급여, 업무 내용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구분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급여	성별 ① 남자 ②여자	<업무 내용>				
				① 누리과정 일반아동	② 누리과정 장애아	③ 시간제	④ 영아반	⑤ 기타
교사 1	시간	만원						
교사 2	시간	만원						
교사 3	시간	만원						
교사 4	시간	만원						
교사 5	시간	만원						
교사 6	시간	만원						

3. 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기타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제외)은 몇 명이며, 월평균 보수는 얼마입니까?

구분	직원수	성별		1인당 월평균 급여 주3)		
		남	여			
1) 취사부		명	명	명		만원
2) 영양사(공동은 77을 기록함)		명	명	명		만원
3) 간호사		명	명	명		만원
4) 간호조무사		명	명	명		만원
5) 특수교사		명	명	명		만원
6) 치료사		명	명	명		만원
7) 운전기사 ^{주1)}		명	명	명		만원
8) 사무원 또는 관리인		명	명	명		만원
9) 누리과정 보육도우미		명	명	명		만원
10) 기타(^{주2)})		명	명	명		만원
총 계		명	명	명		만원

주1) 운전기는 고용운전수를 의미함. 자입차는 제외

주2) 기타인력

주3) 1인당 월평균 보수는 보육교직원 전체의 임금을 직원 수로 나눈 평균 보수로, 세전소득 기준

IV-B. 보육교직원 채용, 급여, 보수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귀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십니까?

- ① 매번 작성함 (☞ 4-1) ② 때때로 작성함 (☞ 4-1) ③ 작성하지 않음 (☞ 5)

4-1.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① 모두 기재되어 있음 ② 일부만 기재되어 있음 ③ 기재되어 있지 않음

5. 귀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합니까?

- ① 지급함 (☞ 5-1) ② 지급하지 않음 (☞ 6) ③ 시간외 근무 없음 (☞ 6)

5-1. (시간외 수당 지급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 ①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 ② 지급하되 상한선을 둠
③ 시간계산 없이 모든 교사에게 일괄 지급 ④ 기타()

6. 귀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명시한 퇴직급여제도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운영 중인 제도를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 ① 퇴직금 제도(개인퇴직계좌)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④ 기타()

7. 귀 어린이집에서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그만둔 보육교사는 몇 명입니까?

작년 그만둔 교사 ()명 / 2014년 보육교사 총 ()명 중

7-1.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을 그만둔 경우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상의 이유 ② 이사 및 장거리로 인한 출퇴근 시간 문제
③ 임신, 출산 ④ 급여 및 근무조건
⑤ 계약 만료 ⑥ 보육교직원, 부모와의 갈등 등 부적응 ⑦ 기타()

7-2.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을 그만둔 경우가 있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었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이직(다른 기관으로 옮김) ② 전직(직종을 바꿈)하거나 전직을 위하여 그만 둠
 ③ 일을 그만둠 ④ 모름

8. 2014년 대체교사(임시교사)를 쓰셨습니까? 쓰셨다면 지난 1년간 총 몇 명을 얼마동안 쓰셨습니까?

① 교사수: 총 ()명 ② 채용기간: 총 ()주 *없으면 0 기입

9. 귀 어린이집의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의 원장과 교사의 보수교육 현황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인원수를 적어 주십시오(대상자, 교육 이수자 없으면 0 기입함).

구분	일반직무		특별직무			보육교사		승급교육	
	보육교사	원장	영어보육	장애인 보육	방과후 보육	2급	1급		
1) 대상자	명	명	-	-	-	명	명	명	명
2) 교육 이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10. 귀 어린이집의 일반직무 및 승급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을 받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상자 모두 받음 ② 대체교사가 없어서
③ 어린이집 일정상 ④ 보육교사 개인사정으로
⑤ 영유아의 보호자가 싫어해서 ⑥ 정보를 몰라서
⑦ 교육장소가 멀어서 ⑧ 보수교육을 희망했으나 기회가 없어서
⑨ 기타()

11. 2014년 한 해동안 의무 보수교육이수 외 귀 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보육교사가 받은 교사 지원 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해당사항에 모두 표기해주세요.

- | | | |
|-----------|--------------|---------|
| ① 없음 | ② 자체 별도 보수교육 | ③ 컨설팅 |
| ④ 동료간 멘토링 | ⑤ 자율공부모임 | ⑥ 기타() |

11-1. 별도의 교육 또는 지원(컨설팅)을 받았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 | | |
|---------------|--------|---------|
| ① 아동학대 예방 | ② 평가인증 | ③ 안전 |
| ④ 보육과정 · 상호작용 | ⑤ 누리과정 | ⑥ 기타() |

V. 보육프로그램 운영

V-A.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환경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그려함 ② 그런 편임 ③ 별로 그렇지 않음 ④ 전혀 그렇지 않음
1) 보육계획안을 영유아의 연령, 흥미, 계절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연계성 있게 수립함	
2) 일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영유아의 연령 및 개별적 상황을 고려함	
3) 대집단·소집단·개별활동, 정적·동적활동, 실내·실외활동을 균형있게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함	
4) 보육과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보육과정 운영에 반영함	

2. 귀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역별 보육활동 실시 정도, 영역별 교재교구 비치 정도, 영역별 교재교구 활용 정도는 어떠한지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영아반>

구분	영역별 보육활동 실시 정도 ① 활발히 이뤄짐 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③ 활동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④ 별로 이루어지지 않음	영역별 교재교구 비치 정도 ① 충분함 ② 부족함	영역별 교재교구 활용 정도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중등 ④ 낮음
	① 활발히 이뤄짐 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③ 활동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④ 별로 이루어지지 않음	① 충분함 ② 부족함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중등 ④ 낮음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유아반>

구분	영역별 보육활동 실시 정도 ① 활발히 이뤄짐 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③ 활동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④ 별로 이루어지지 않음	영역별 교재교구 비치 정도 ① 충분함 ② 부족함	영역별 교재교구 활용 정도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중등 ④ 낮음
	① 활발히 이뤄짐 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③ 활동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④ 별로 이루어지지 않음	① 충분함 ② 부족함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중등 ④ 낮음
신체운동 ·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3. 귀 어린이집에서 보육프로그램 작성을 위하여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보건복지부 개발 보육 프로그램 | ② 교육부 개발 교육 프로그램 |
| ③ 어린이집 자체 개발 프로그램 |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 프로그램 |
| ⑤ 영유아 관련 잡지 제공 프로그램 | ⑥ 민간(기관)업체 제공 프로그램 |
| ⑦ 기타() | |

4. 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 | |
|---------------|--------------|------|
| ① 연령별로 모두 보유함 | ② 일부 연령만 보유함 | ③ 없음 |
|---------------|--------------|------|

5.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함 (☞ 5-1) | ② 활용하는 편임 (☞ 5-1) |
| ③ 별로 활용하지 않음 (☞ 5-2) | ④ 전혀 활용하지 않음 (☞ 5-2) |

5-1. (활용하는 경우)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 | | | |
|---------|------|-------|----------|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불만족 | ④ 매우 불만족 |
|---------|------|-------|----------|

5-2. (활용하지 않는 경우)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내용이 어려워서 | ② 시간적 제약때문에 |
| ③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명() | |
| ④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교재교구 준비가 어려워서 | |
| ⑤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⑥ 기타() |

6. 귀 어린이집이 보육 또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 ① 균형있는 발달 | ② 인성지도(정서 및 사회성 발달) | ③ 안전한 보호 |
| ④ 자유 놀이 중심 활동 | ⑤ 급급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 ⑥ 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
| ⑦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 ⑧ 특별활동프로그램 | ⑨ 충분한 휴식 |
| | | ⑩ 기타() |

V-B. 어린이집의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7번부터 14번까지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7. 귀 어린이집은 3-5세 누리과정 반 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3, 4, 5세 독립반	연령혼합반	3~5세 장애아 독립반	장애아 연령혼합반
개	개	개	개

8. 귀 어린이집이 3-5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 ②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
| ③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프로그램 | ④ 종전 유치원 지도서 |
| ⑤ 민간업체에서 판매(제공)하는 프로그램 | ⑥ 유아잡지 |
| ⑦ 유아교육 관련 온라인 사이트 | ⑧ 기타() |

9. 귀 어린이집은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활용합니까?

- | | |
|------------------------|----------------------|
| ①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함 (☞ 9-1) | ② 활용하는 편임 (☞ 9-1) |
| ③ 별로 활용하지 않음 (☞ 9-2) | ④ 전혀 활용하지 않음 (☞ 9-2) |

9-1. (활용하는 경우)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 | |
|---------|------|-------|----------|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불만족 | ④ 매우 불만족 |
|---------|------|-------|----------|

9-2. (활용하지 않는 경우)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내용이 어려워서 | ② 시간적 제약 때문에 |
| ③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명() | |
| ④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교재교구 준비가 어려워서 | |
| ⑤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⑥ 기타() |

10. 귀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 운영비를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적어주십시오.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① 보조교사 채용 | ② 교재교구 구입 |
| ③ 기자재 구입(실물화상기, 립프로젝터 등) | ④ 급간식비 |
| ⑤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에 따른 개선비용 | ⑥ 누리과정 운영도우미 채용 |
| ⑦ 아동안전 관련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 ⑧ 담당교사 제수당 및 기타 후생경비 |
| ⑨ 기타 | |

11. 귀하는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좋아진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적어 주십시오.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① 제정운영 안정화 | ② 교육·보육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 |
| ③ 교사처우 개선 | ④ 원아 모집 용이 |
| ⑤ 어린이집 이미지 향상 | ⑥ 물리적 환경 개선 |
| ⑦ 기타() | |

12. 귀 어린이집이 3-5세 누리과정 운영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적어 주십시오.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① 행정업무 증가 | ②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규제 강화 |
| ③ 누리과정 교육 이수의 어려움 | ④ 보조교사 부재(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
| ⑤ 교사들 간의 임금 형평성 문제 | ⑥ 누리과정 이수 교사 확보 어려움 |
| ⑦ 3~5세 혼합반 운영의 어려움 | ⑧ 새로운 프로그램에의 적응 어려움 |
| ⑨ 교재교구 확보 어려움 | ⑩ 누리운영비 지출 범위 제한 |
| ⑪ 기타() | |

13. 누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적어 주십시오.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① 제정지원 강화 | ② 프로그램 질 향상 |
| ③ 교사 교육 강화 | ④ 행정관리 간소화 |
| ⑤ 시설·설비 보완 | ⑥ 보조인력 지원 강화 |
| ⑦ 운영비 사용항목 확대 | ⑧ 기타() |

14. 귀 원에 속한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업무 내용 중 비중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수행빈도
1) 수업 전·후의 준비 및 정리	
2) 수업 및 놀이 활동 참여	
3) 누리과정 운영 관련 서류 등 행정업무	
4) 손 쟁기, 배식 등 일상생활 지도	
5) 등·하원지도	
6) 행사 지원	
7) 담임교사 일시부재시 업무지원	

V-C. 특별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5. 귀 어린이집에서 7월 한 달간 실시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형태 및 비용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수업료를 별도로 수납하며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경우만 해당)

구분 프로그램명	해당 사항에 √ 표 하세요		1인당 최대 비용 (1개월 기준)		참여 영유아 수			
	장소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원내	외부						
1 미술				천원		천원	명	명
2 음악				천원		천원	명	명
3 체육				천원		천원	명	명
4 발레				천원		천원	명	명
5 과학				천원		천원	명	명
6 수학				천원		천원	명	명
7 한글				천원		천원	명	명
8 컴퓨터				천원		천원	명	명
9 교구활동				천원		천원	명	명
10 한자				천원		천원	명	명
11 영어				천원		천원	명	명
12 기타 외국어				천원		천원	명	명
13 기타()				천원		천원	명	명

16. 귀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정한 특별활동 상한액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로 받고 있습니까?

- ① 상한액보다 적음 ② 상한액 수납 ③ 상한액보다 많음

17. 귀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업체 수와 외부 강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업체 수와 외부 강사 수를 각각 적어 주십시오.

업체()개, 강사()명

18. 귀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가장 많이 내는 영유아는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월 평균()천원

19. 귀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주로 어느 시간대에 이루어집니까?

- ① 오후 12시 ~ 오후 2시 ② 오후 2시 ~ 오후 4시 ③ 오후 4시 ~ 오후 6시

20.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들은 특별활동 시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 | | |
|---------------|-------------------------|
| ① 교사와 자유활동 | ② 특별활동 참관 |
| ③ 별도 프로그램 운영 | ④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가 없음 |
| ⑤ 일과만 참여 후 귀가 | ⑥ 기타() |

VI. 운영평가 및 관리

VI-A.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 어린이집의 자체 운영평가의 주기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분	① 분기별 1회 이상	② 분기별 1회	③ 반년에 1회	④ 실시안함
1) 운영전반				
2) 보육프로그램				
3) 교사 업무관리				
4) 재정 운영				
5) 부모만족도 조사				
6) 담당교사 평가				
7) 기타()				

2. 귀 어린이집의 현재 평가인증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신규인증 진행중([☞] 3) ② 신규인증([☞] 3) ③ 재인증(두번이상 인증받은 경우 모두 포함)([☞] 3)
 ④ 참여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함([☞] 3) ⑤ 참여해 본 경험 없음([☞] 2-1)

2-1.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어린이집만)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 | | |
|-------------------|------------------------|-----------------------|
| 01) 지표 이해의 어려움 | 02) 교사수급의 어려움 | 03) 재정소요의 어려움 |
| 04) 원장 및 교사의 업무과중 | 05) 조력의 부족 | 06) 임대시설로 인한 환경개선의 한계 |
| 0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08) 지표 적용으로 인한 변화를 꺼려서 | 09) 준비 미흡 |
| 10) 참여 취소 사항 발생 | 11) 기타() | |

3. 귀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4) ② 없다 ([☞] 3-1)

3-1.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지 않은 경우)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랐음(정보의 부족) | ②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음 |
|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외 다른 경로의 컨설팅을 이용함 | |
| ④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음 | ⑤ 기타() |

4. (평가인증에 참여해 본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업무 과중(서류 등) | ② 지표 수가 많음 | ③ 비용 소요 |
| ④ 적절한 컨설팅 부족 | ⑤ 우수 교사 확보의 어려움 | ⑥ 새로운 절차 이해 |
| ⑦ 별 어려움 없음 | ⑧ 시설 개보수 어려움 | ⑨ 기타() |

5. 귀 어린이집은 현재의 평가지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함 ([☞] 6) ② 적절하지 않음 ([☞] 5-1)

5-1. (평가지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평가지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 | |
|----------------------------|-----------------------|
| ①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음 | ②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음 |
| ③ 지표수가 너무 많음 | ④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 ⑤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⑥ 어린이집의 질 측정에 적합하지 않음 |
| ⑦ 기타() | |

6. 귀하는 향후 평가인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바람직함	② 바람직함	③ 바람직하지 않음	④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1) 평가인증 과정에 부모 참여				
2) 평가인증 과정에 자자체 참여 확대				
3) 관찰주간 고지없이 현장관찰(불시방문)				
4) 점수에 따른 인증기관 등급화				
5) 평가인증 의무화(의무평가제)				
6) 평가인증 유효기간 차등화				
7) 평가인증 결과와 정부 재정지원의 연계				

VI-B. 어린이집 행·재정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7. 재무회계규칙을 포함한 어린이집 수입·지출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정도에 √ 표 해주십시오.

구 분	① 매우 잘 준수함	② 대체로 준수함	③ 별로 준수하지 않음	④ 전혀 준수하지 않음	⑧ 해당사항 없음
1)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 별도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 사용					
2)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관련 근거서류 첨부					
3) 보육교직원의 근로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4)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5) 기타 운영비 15% 한도 준수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용자금의 이자, 차량 할부금 등)					

7-1. (7번 질문에서 1가지 이상 ③, ④를 선택한 경우)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어려워서 | ② 재무회계규칙이 실제 운영과 잘 맞지 않아서 |
| ③ 재무회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④ 재무회계규칙을 잘 알지 못해서 |
| ⑤ 기타() | |

8. 귀 어린이집은 재무관리를 주로 누가 담당합니까?

- ① 원장 ② 대표자 ③ 사무원 ④ 교사 ⑤ 외부에 위탁 ⑥ 기타 인력()

8-1. 재무관리 담당자는 2014년 지난 한 해동안 재무교육을 몇 회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을 경우 0 기입함)

연 () 회

9. 귀 어린이집에서는 클린카드(Clean-Card)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항상 사용함 ② 부분적으로 사용함 ③ 사용하지 않음 ④ 클린카드 없음

※ 클린카드(Clean-Card)는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모든 보육경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계좌의 카드이며,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음.

10. 귀 어린이집은 운영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때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 | | |
|------------------|----------------|-------------------|
| ① 보육교직원 보수 향상 지급 | ②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 ③ 교재교구 구입(기자재 포함) |
| ④ 어린이집 환경개선 | ⑤ 이월금으로 전환 | ⑥ 기타 운영비로 사용 |
| ⑦ 기타() | | |

11. 귀 어린이집의 연령별 추가보육료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 해당 보육연령이 없는 경우는 888 기입함.)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수납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12. 귀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필요경비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항목별로 수납액을 적어 주십시오. (※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입. 받고 있지 않는 항목은 888 기입함.)

구분	현장학습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입학준비금	차량운행비	시도 특성화 비용
수납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13. 귀 어린이집의 현재 보육료와 기타 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상한액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1) 보육료	① 상한액보다 적게 받음	② 상한액대로 받음
2) 기타 경비	① 상한액보다 적게 받음	② 상한액대로 받음

14. 귀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운영비를 일반 보육재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관리합니까?

- ① 다른 운영비와 구분하여 관리
 ② 일부 혼합, 일부 별도 관리
 ③ 혼합하여 관리
 ④ 기타()

VI-C. 운영위원회,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참여 등 열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15. 2014년 지난 1년간 공무원의 지도점검 또는 부모 모니터링단이 귀 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번입니까?

1) 보육 담당 공무원	① 있음 ()회	② 없음
2) 기타 관계 공무원	① 있음 ()회	② 없음
3) 부모 모니터링단	① 있음 ()회	② 없음

16. 부모 모니터링단의 컨설팅 및 현장개선지도가 어린이집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도움이 되었음(☞ 16-1)
 ② 도움이 되지 않음(☞ 16-2)

16-1. 도움이 되었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영양·안전 관리에 도움
 ② 부모인 수요자의 요구 반영
 ③ 보육의 공공성 높임
 ④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

16-2.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모니터링에 따른 업무 가중
 ② 다른 평가지표와의 혼란
 ③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원의 비전문성
 ④ 기타()

17.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각 해당되는 인원수를 적어 주십시오.

구분	① 보육교사 대표	② 학부모 대표	③ 지역사회 인사	④ 기타	⑤ 총계
인원	()명	()명	()명	()명	()명

2) 귀 어린이집은 2015년 상반기 몇 회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 기준 ()회

3) 귀 어린이집은 회의록을 공개합니까? 해당하는 보기애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 ① 홈페이지에 공개
 ② 어린이집 게시판에 공개
 ③ 부모에게 통보
 ④ 공개하지 않음

4) 귀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② 활성화된 편임
 ③ 다소 미약함
 ④ 매우 미약함

5) 귀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운영위원 일정 조정의 어려움 | ② 운영 경험 및 전문성 부족 |
| ③ 운영위원 인선의 어려움 | ④ 학부모 등 운영 위원의 낮은 관심 ⑤ 기타() |

18. 귀 어린이집은 부모(보호자)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합니까? 해당하는 칸에 √ 표 해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대화수첩(연락장) | <input type="checkbox"/> ② 전화 |
| <input type="checkbox"/> ③ 이메일 | <input type="checkbox"/> ④ 직접 대면(상담, 부모회의 등) |
| <input type="checkbox"/> ⑤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블로그 포함) | <input type="checkbox"/> ⑥ 문자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

19. 2015년 상반기 동안, 귀 어린이집은 부모교육, 부모 참여프로그램, 상담을 어느 정도 실시하였습니까?

항목	제공 내용	
19-1. 부모교육	1) 오리엔테이션, 교육설명회	회
	2) 강연회, 워크숍	회
	3) 프로그램화된 부모교육	개
	4) 부모교육 자료 배부	개
19-2. 부모참여	1) 아동행사(소풍, 전학, 발표회)	회
	2) 자원봉사(일일 등하원 및 급식 지원, 청소)	회
	3) 의사결정(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회
	4) 수업진행 참여	회
	5) 기관의 활동이 가정으로 연계된 활동 참여	회
19-3. 부모상담	1) 상담(원장 상담, 담임교사 상담)	회

20. 귀 어린이집 영유아는 2014년 1년 동안 견학 및 현장학습 등의 목적으로 지역 내 기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까? 연 평균 이용 횟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 이용하지 않은 경우 0 기입함.)

항목	이용 횟수
1) 보건소	연 () 회
2) 소방서	연 () 회
3) 경찰서(파출소)	연 () 회
4) 도서관	연 () 회
5) 문화시설(박물관, 공연장 등)	연 () 회
6) 육아종합지원센터	연 () 회
7) 기타(시설명:)	연 () 회

VI-D. 보육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 칸에 √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그려함	② 조금 그려함	별로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1) 보육은 공공서비스이다				
2)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대해 책무성을 지닌 기관이다				
3) 어린이집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4)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한다				

22. 지난 3년간 다음 각 부문에서 보육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칸에 √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향상됨	② 대체로 향상됨	별로 향상되지 않았음	전혀 향상되지 않았음
1) 보육사업의 공공성				
2) 보육내용의 충실성				
3) 어린이집 재정운영 안정화				
4) 보육교사의 전문성				

23.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보육정책들입니다.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해당 칸에 √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만족함	② 조금 만족함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2) 보육 전자행정시스템				
3) 아이행복 카드제				
4) 3-5세 누리과정				
5) 0-5세 보육료 절계층 지원				
6)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7)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제도				
8) 시간제보육 사업				
9) 정보공시제				
10)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				

VII. 원장 인적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몇 세입니까?
만 ()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 | | |
|------------|-----------------|----------------|
| ① 고졸(= 4) | ② 대학 재학 | ③ 대학 졸(3년제 이하) |
| ④ 대학교 재학 | ⑤ 대학교 졸(4년제 이상) | ⑥ 대학원 재학 |
| ⑦ 대학원 석사 졸 | ⑧ 대학원 박사 졸 | |
- 3-1.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 귀하의 최종 학교 전공은 무엇입니까?
- | | | |
|-------------|-------------|-----------|
| 01) 아동(복지)학 | 02) 유아교육학 | 03) 사회복지학 |
| 04) 보육학 | 05) 가정(관리)학 | 06) 간호학 |
| 07) 영양학 | 08) 교육학 | 09) 특수교육학 |
| 10) 기타() | | |
4. 귀하가 소유한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 표 하십시오.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원장 | <input type="checkbox"/> ② 1급 보육교사 | <input type="checkbox"/> ③ 2급 보육교사 | <input type="checkbox"/> ④ 3급 보육교사 |
| <input type="checkbox"/> ⑤ 간호사 | <input type="checkbox"/> ⑥ 유치원 교사 | <input type="checkbox"/> ⑦ 사회복지사 | <input type="checkbox"/> ⑧ 특수교사 |
| <input type="checkbox"/> ⑨ 초등학교 교사 |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 | |

5. 귀하가 최초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보육교사교육원 ② 전문대학 ③ 4년제 대학 ④ 대학원
 ⑤ 학점 은행제 ⑥ 사이버 대학 ⑦ 기타() ⑧ 해당없음

6. 귀하의 어린이집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어 주십시오.)

총 어린이집 교사 경력	() 개월
총 어린이집 원장 경력	() 개월
현 어린이집 원장 경력	() 개월

7. 현재 받고 있는 호봉 기준, 귀하의 호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 호봉

8. 귀하가 받고 있는 월급여는 얼마입니까?

기본급		() 만원
※ 세전 기본급		
수당	어린이집 지급액	() 만원
※ 지역체 체우개선비, 농어촌특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근무환경개선비, 누리수당, 기밀수당, 기계자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 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급식비, 성과수당 등	정부/지자체 지원금	() 만원
월 총액		() 만원
※ 한 달 기본급과 수당(정부지원금 포함)을 합친 금액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3. 보육교사 조사표(전체)



승인(협의)번호
제33107호

조사기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결과공표 (예정시기)	2015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2016년 1월)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2015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조사표)

어린이집 코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보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어린이집은 전국 어린이집의 10%인 4,300개 어린이집이며, 귀 어린이집이 조사대상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명(중간경력자)을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근무 조건과 복지, 보육정책에 관한 의견 등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 조사진행 관련: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보육실태조사」 조사팀 (☎ 02-3702-2669, 2119)
 조사내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실태조사」 연구팀 (☎ 02-398-7727)

방문일시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 ~ ____ 시 ____ 분		
주소	____ 시/도 ____ 구/시/군 ____ 읍/면/동 ____로 ____길 ____		어린이집명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조사원 성명

* 본 조사는 귀 어린이집에 2014년 1월 이전부터 근무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보육교사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이전부터 근무한 보육교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들 중 경력이 중간 정도에 있는 보육교사가 응답합니다.

보 건 복 지
육 아 정 책 연 구 소

I. 보육교사 근무조건과 처우 관련 질문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 담임교사 비담임교사([☞] 조사 중단)

2. 선생님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반은 몇 세반이며, 영유아 수는 몇 명입니까?

(※ 해당되는 반에 ✓ 표해주시고 담당 반의 협원을 적어주십시오)

반 구성	0세	1세	2세	0~1세 혼합반	1~2세 혼합반	3세 혼합반	2~3세 혼합반	4세	5세	3~5세 혼합반	장애아 반	누리 장애아반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 아침보육	시간연장 야간보육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반 협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선생님의 하루 및 주당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보육시간	하루 _____ 분
2) 보육준비/기타 업무시간	하루 _____ 분
3) 점심식사 시간	하루 _____ 분
4) 휴식시간	하루 _____ 분
5) 1일 총 근로시간 합	하루 _____ 분
6) 주당 총 근로시간 합	주당 _____ 시간

4. 선생님은 토요근무와 휴일근무를 한 달 평균 몇 번이나 하십니까? (* 주말근무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0 기입)

토요근무 월 ()회, 1일당 ()시간

휴일근무 월 ()회, 1일당 ()시간

5. 귀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편의공간이나 시설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 표해 주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교사실 | <input type="checkbox"/> ② 식사 공간 | <input type="checkbox"/> ③ 개인 책상 |
| <input type="checkbox"/> ④ 사물함 | <input type="checkbox"/> ⑤ 성인용 화장실 | <input type="checkbox"/> ⑥ 휴게실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 |

6. 선생님은 이 어린이집에서 초과 근무 시 시간외 수당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시간외 수당은 근무시간이 8시간일 경우, 초과된 근무시간만큼 지급하는 수당임.)

- ① 초과근무 시간만큼 지급받음 ② 지급받되 상한선에 맞춰 받음 ③ 시간 관계없이 모든 교사가 일괄 지급받음
 ④ 초과근무 수당 없음 ⑤ 초과근무 없음 ⑥ 기타

7. 선생님이 지난 2014년 동안 사용한 휴기는 모두 며칠입니까? 연월차 휴가와 기타 휴가를 각각 적어 주십시오.

1) 연월차 휴가(여름·겨울 정기 휴가 포함)	() 일
2) 기타 (생리휴가 등)	() 일

8. 선생님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이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1) 산전후 휴가	<input type="checkbox"/> 이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이용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2) 육아휴직	<input type="checkbox"/> 이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이용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9. 선생님은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 임용 시에 복무규정 내용을 안내받았습니까?

- ① 복무규정 전체 안내 받음 ② 복무규정 일부만 안내 받음
 ③ 안내받지 않음 ④ 복무 규정 없음

- 9-1. 선생님은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현재 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① 작성함 ② 작성하지 않음

9-2.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① 모두 기재되어 있음 ② 일부만 기재되어 있음 ③ 기재되어 있지 않음

10. 선생님이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노동관련 법령에 따른 최저임금법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① 잘 적용되고 있음 ② 적용되지 않음 ③ 모르겠음

11. 다음 중,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사용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선생님께서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① 국민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②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③ 산재보험
<input type="checkbox"/> ④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12. 선생님은 지난 2014년 동안 보수교육을 받았습니까? 보수교육 종류별로 교육받은 횟수를 적어 주십시오.
(※ 보수교육 받지 않은 경우 0 기입)

일반직무	특별직무			승급교육		기타 (적어주세요)		
	영아보육	장애인보육	방과후보육	2급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	()	()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12-1. (보수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은 경우) 어떤 형태의 보수교육을 받았습니까?

① 집합 교육 ②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 함께
③ 인터넷 등 온라인 교육 ④ 기타()

12-2. (보수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은 경우) 보수교육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지원되었습니까?

① 항상 지원되었음 ② 지원된 적 있음 ③ 지원된 적 전혀 없음
④ 온라인 교육만 받아 지원이 필요 없었음 ⑤ 기타()

12-3. (보수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은 경우) 현행 보수교육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12-4) ② 만족하는 편(☞ 12-4)
③ 다소 불만족(☞ 12-5) ④ 매우 불만족(☞ 12-5)

12-4. (현행 보수교육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인 경우) 현행 보수교육 중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을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교육 과정(거리율법, 강사진, 교재 등) ② 교육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등)
③ 교육 운영(기관, 시간(대), 신청 및 이수 관리 등) ④ 교육 비용
⑤ 보수교육 기회가 주어지는 것 ⑥ 기타(적어주세요:)

12-5. (현행 보수교육에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인 경우) 현행 보수교육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교육 과정(거리율법, 강사진, 교재 등) ② 교육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등)
③ 교육 운영(기관, 시간(대), 신청 및 이수 관리 등) ④ 교육 비용
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⑥ 기타(적어주세요:)

II. 근무만족도 관련 질문

1. 선생님은 현재 귀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소 얼마나 만족하는지 해당 칸에 ✓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하는 편	③ 다소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1) 일에 대한 보람				
2) 급여 수준				
3) 근무환경(전반)				
3-1) 물리적 환경(공간)				
3-2) 인적 환경(관계)				
4) 근로시간				
5)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선생님은 현재 귀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평소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어렵지 않음	② 별로 어렵지 않음	③ 다소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
1) 담당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2) 담당 영유아 부모와의 관계				
3) 보육프로그램 운영				
4) 행정·사무 등의 업무 처리				
5) 보육교직원과의 관계				
6) 개인적 문제(건강 등)				

3.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선생님이 평소 어떻게 느끼는지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그려함	② 조금 그려함	③ 별로 그렇지 않음	④ 전혀 그렇지 않음
1) 나는 보육프로그램이 갑자기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다				
2) 나는 어떤 연령의 영유아를 맡더라도 잘 할 수 있다				
3) 나는 보호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4) 나는 한명 한명의 영유아에게 적절한 놀이지도나 도움을 줄 수 있다				
5) 나는 영유아의 특성이나 활동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육 환경(인적, 물적)을 준비할 수 있다				

4. 선생님의 평소 스트레스 및 심리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별로 그렇지 않음	③ 조금 그려함	④ 매우 그려함
1) 보육교사로서 나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다				
2) 보육교사로서 나는 업무 피로도가 높은 편이다				
3) 보육교사로서 나는 하루 일과에 지쳐 신체적으로 힘들다				
4) 보육교사로서 나는 일을 잘하지 못해 의기소침할 때가 있다(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다)				

5. 선생님은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의 교사 지원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별로 그렇지 않음	③ 조금 그려함	④ 매우 그려함
1) 보육교사로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다				
2) 보육교사로서 직무상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6. 선생님은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사직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사직 또는 이직 계획 있음([☞] 6-1) ② 사직 또는 이직 고려 중([☞] 6-1)
 ③ 사직 또는 이직 계획 없음

6-1. (사직 또는 이직 계획이 있는 경우) 사직 또는 이직을 고려하거나 계획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 | | | |
|-------------|--------------------|------------|-----------|
| ① 향후 6개월 이내 | ② 6개월~1년 이내 | ③ 1년~2년 이내 | ④ 2~5년 이내 |
| ⑤ 5년 이후 | ⑥ 구체적인 시기는 계획하지 않음 | | |

6-2. (사직 또는 이직 계획이 있는 경우) 사직 또는 이직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상의 이유로	② 이사 등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③ 처우 등 근무여건 열악하여	④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⑤ 근무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⑥ 출산, 육아 때문에	⑦ 보육교사 일을 그만 두려고	⑧ 업무가 과중해서
⑨ 기타()							
6-3 (이직 계획이 있는 경우)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② 서울형 또는 공공형어린이집	③ (서울형 또는 공공형이 아닌) 민간어린이집	④ (서울형 또는 공공형이 아닌) 가정어린이집	⑤ 기타(법인·단체 등, 부모협동)			

III. 보육 정책 관련 질문

1. 선생님은 평소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그러함	② 조금 그러함	③ 별로 그렇지 않음	④ 전혀 그렇지 않음
1) 보육은 공공서비스이다				
2)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대해 책무성을 지닌 기관이다				
3) 어린이집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4)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한다				

2. 지난 3년간 다음 각 부문에서 보육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향상됨	② 대체로 향상됨	③ 별로 향상되지 않았음	④ 전혀 향상되지 않았음
1) 보육사업의 공공성				
2) 보육내용의 충실히				
3) 어린이집 재정운영 안정화				
4) 보육교사의 전문성				

3.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보육정책들입니다.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① 매우 만족함	② 조금 만족함	③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④ 전혀 만족하지 않음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2) 보육 전자행정시스템				
3) 아이행복 카드제				
4) 3-5세 누리과정				
5) 0-5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6)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7) 공공형/서울형 어린이집 제도				
8) 시간제 보육 사업				
9) 정보공시제				
10)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				

IV. 누리과정 관련 질문

1. 선생님은 3-5세 담당 교사입니까?

- ① 그려함 ② 아님

1-1. (누리과정 연수를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어떤 형태의 연수를 받았습니까?

- | | |
|----------|--------------------|
| ① 직접 교육 | ② 직접 교육과 온라인 교육 함께 |
| ③ 온라인 교육 | ④ 기타() |

2. (누리과정 연수를 받은 경우) 연수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지원되었습니까?

- | | | |
|--------------|------------|---------------|
| ① 항상 지원되었음 | ② 지원된 적 있음 | ③ 지원된 적 전혀 없음 |
| ④ 지원이 필요 없었음 | ⑤ 기타() | |

3. 선생님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3-5세아 보육 서비스의 질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높아짐 | ② 별 차이가 없음 | ③ 낮아짐 |
|-------|------------|-------|

4. (3-5세 반을 맡고 있는 경우)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선생님의 업무량에 변화가 있습니까?

- | | | |
|--------------|---------------|---------------|
| ① 업무량 변화가 없음 | ② 업무량이 다소 증가함 | ③ 업무량이 매우 증가함 |
|--------------|---------------|---------------|

5. (3-5세 반을 맡고 있는 경우)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달라졌습니까?

- | | | |
|-------------|----------|----------|
| ① 달라진 점이 없음 | ② 조금 달라짐 | ③ 많이 달라짐 |
|-------------|----------|----------|

V. 보육교사 인적사항 관련 질문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여자 | ② 남자 |
|------|------|

2.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 세

3. 선생님의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 | | | | | |
|------|------|------|------|---------|
| ① 미혼 | ② 기혼 | ③ 이혼 | ④ 사별 | ⑤ 기타() |
|------|------|------|------|---------|

4. 선생님의 자녀는 몇 명 있습니까?

총 자녀 () 명

5. 선생님은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미취학 자녀는 주로 누가 돌봄니까?

- | | | |
|---------------|--------------------|--------------------|
| ① 인근 어린이집에 다님 | ②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다님 | ③ 집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봄 |
| ④ 기타() | ⑤ 미취학 자녀 없음 | |

6.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 | | | |
|-----------------|-----------------|---------------|------------------|
| ① 고졸 | ② 대학 재학(3년제 이하) | ③ 대학졸(3년제 이하) | ④ 대학교 재학(4년제 이상) |
| ⑤ 대학교 졸(4년제 이상) | ⑥ 대학원 재학 | ⑦ 대학원 졸 | |

7. 선생님의 최종학력에서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 | | | |
|-----------|---------|---------|-------|
| ① 아동(복지)학 | ② 유아교육학 | ③ 사회복지학 | ④ 보육학 |
| ⑤ 가정(관리)학 | ⑥ 간호학 | ⑦ 영양학 | ⑧ 교육학 |
| ⑨ 특수교육학 | ⑩ 기타() | | |

8. 선생님이 취득하신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자격증을 모두 해 주십시오.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원장 | <input type="checkbox"/> ② 1급 보육교사 | <input type="checkbox"/> ③ 2급 보육교사 | <input type="checkbox"/> ④ 3급 보육교사 |
| <input type="checkbox"/> ⑤ 간호사 | <input type="checkbox"/> ⑥ 유치원 교사 | <input type="checkbox"/> ⑦ 사회복지사 | <input type="checkbox"/> ⑧ 특수교사 |
| <input type="checkbox"/> ⑨ 초등학교 교사 |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 | |

9. 선생님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어디에서 최초로 취득하였습니까?

(※ 예: 보육교사, 원장, 유치원교사, 간호사 등)

- | | | | |
|-----------|----------|----------|-------|
| ① 보육교사교육원 | ② 전문대학 | ③ 4년제 대학 | ④ 대학원 |
| ⑤ 학점은행제 | ⑥ 사이버 대학 | ⑦ 기타() | |

9-1.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귀하의 최초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전공은 무엇입니까?

- | | | | |
|-----------|---------|---------|-------|
| ① 아동(복지)학 | ② 유아교육학 | ③ 사회복지학 | ④ 보육학 |
| ⑤ 가정(관리)학 | ⑥ 간호학 | ⑦ 영양학 | ⑧ 교육학 |
| ⑨ 특수교육학 | ⑩ 기타() | ⑪ 특수교육학 | |

9-2.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최초 취득한 경우) 학점은행제 수강 방법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온라인교육 | ② 오프라인교육 |
| ③ 온라인교육 및 오프라인교육 병행 | ④ 기타() |

10. (이전 어린이집 경력이 있는 경우) 현재 근무중인 어린이집에서 급여를 책정할 때 기준 어린이집 경력이 반영되었습니다?

- | | |
|-----------------------|-----------|
| ① 반영됨(일부라도 반영될 경우 포함) | ② 반영되지 않음 |
|-----------------------|-----------|

11.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경력에 따른 급여상승이 이뤄집니까?

(※ 최저임금 상승, 공공형에서 국공립1호봉 기준 상승에 따라 반영되는 부분은 급여상승으로 보지 않음)

- | | |
|---------------------------|----------|
| ① 모두 반영됨(기준 어린이집 경력까지 반영) | ② 부분 반영됨 |
| ③ 전혀 반영되지 않음 | |

12. 선생님의 어린이집 총 교사 근무 경력과 현 어린이집의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종일제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등 근무 경력도 포함하여 개월 단위로 적어 주십시오.(※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어 주십시오)

1) 총 어린이집 경력	총 () 개월
2) 현 어린이집 근무 경력	() 개월

12-1. (현재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 바로 직전에 다른 시설에서 근무했던 경우) 해당 시설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 ① 국공립어린이집 |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③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
| ④ 민간어린이집 | ⑤ 직장어린이집 | ⑥ 가정어린이집 |
| ⑦ 부모협동어린이집 | ⑧ 유치원 | ⑨ 기타(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13. 선생님이 현재 받고 있는 호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 호봉기준이 없는 경우는 88 기입)

() 호봉

- 14-1. 선생님께서는 월급여 내역을 받으십니까?
 ① 매월 받는다 ② 받아본적 있다 ③ 전혀 받지 않는다

※ 응답 전 “7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응답해주세요.

- 14-2. 선생님의 세전 2015년 7월 급여를 기준으로 다음의 임금내역을 상세히 적어주십시오.

* ‘세전’은 4대 보험 자부담분과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 비해당 / 없음의 경우 0원을 기입해주세요.

구분	지급내역		월 지급액 () 원	지급주기			
	기본급*	-		① 매월	② 3개월마다	③ 6개월마다	④ 부정기적으로/기타
임금 수당	어린이집 수당**	1) 시간외수당 2) () 3) () 4) ()	() 원	() 원	() 원	() 원	() 원
	정부(중앙) 수당***	1)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처우개선비) 2) 0~2세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 3) 농어촌특별수당	() 원	() 원	() 원	() 원	() 원
	지자체 수당 ***	4) 지자체(시·도) 처우개선비 5) 지자체(시·군·구) 처우개선비 6) () 7) ()	() 원	() 원	() 원	() 원	() 원
	총 액		월 () 원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기본급

** 명절수당, 근속수당, 교통비, 주임수당(직책수당), 휴가수당, 성과급 등 포함

*** 정부(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 14-3. 선생님이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비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은 무엇입니까?

지급주체	지급내역	횟수	금액(1회 지급액)
어린이집	1) ()	연 () 번	() 원
	2) ()	연 () 번	() 원
	3) ()	연 () 번	() 원
지자체 (시·도 또는 시·군·구)	1) ()	연 () 번	() 원
	2) ()	연 () 번	() 원
	3) ()	연 () 번	() 원

* 명절수당, 근속수당, 휴가수당, 성과급, 생일축하금 등 포함

※ 응답 전 “201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응답해주세요.

- 14-4. 선생님의 ‘201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을 적어주십시오.

2014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I	근무처별 소득명세 계(⑯)	() 원
	II	비과세소득 계(⑰)	() 원

15. 선생님이 희망하는 임금은 얼마입니까?

(* 희망 임금은 세전 임금이며, 각종 수당(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월 () 만원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발행일 2016년 1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전화: 044) 202-2118

팩스: 044) 202-3974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962-12